정책 24-05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4 장애통계연보

곽나연·신은경·이주화·김태용·현지원·박진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 구 진

연구책임 : 곽나연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통계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신은경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주화 (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연구교수)

김태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통계팀 선임연구원)

현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통계팀 연구원)

박 진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통계팀 연구원)

발간사

오늘날 사회 현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 통계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계는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이자,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도구로 작용합니다.

우리 원은 장애인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 충족을 위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과 분석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부터 유엔 국제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라 '장애통계연보'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통계연보는 장애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서, 사회적 의사결정과 전략 개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통계연보'는 국내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및 정책과 관련된 주요 통계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와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독일, 스웨덴, 일본 등 복지 선진국의 장애 통계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국제적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통계연보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반이 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번 장애통계연보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09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 경 혜

목 차

Ⅰ. 2024 장애통계연보 체계 ····· 1

1. 작성배경 ····· 1
2. 작성목표 ····· 2
3. 작성방향 및 체계 ····· 3
4. 세부작성원칙 ····· 5
5. 장애통계연보 체계 ····· 6
   1) 국내지표 ····· 6
   2) 국외지표 ····· 17

Ⅱ. 국내통계 ····· 23

1. 장애인구 ····· 23
   1) 장애인구 ····· 25
2. 건강 및 보건 ····· 56
   1) 건강상태 ····· 58
   2) 건강행태 ····· 71
   3) 보건의료이용 ····· 84
   4) 정신건강 ····· 106
   5) 사망 ····· 114
3. 가족 ····· 117
   1) 가구구성 ····· 118
   2) 가족형성 ····· 122
   3) 다문화 가족 ····· 127
4. 주거 ····· 128
   1) 주거 ····· 130
   2) 주택 환경 ····· 136
   3) 주거복지사업 ····· 140

5. 교육 ····· 142
1) 교육수준 ····· 144
2) 보육 ····· 147
3) 유치원 ····· 151
4) 특수교육 ····· 153
5) 교육기관 편의시설 ····· 161
6. 노동과 직업재활 ····· 163
1) 경제활동 ····· 165
2) 의무고용 ····· 177
3) 기업체 장애인 고용 ····· 179
4) 장애인기업 ····· 181
5) 취업 관련 활동 경험 ····· 185
6) 직업재활 ····· 187
7. 재정 ····· 197
1) 재정 ····· 198
8. 소득과 소비 ····· 202
1) 소득 ····· 204
2) 소비 ····· 207
3) 빈곤 ····· 213
9. 문화 및 사회참여 ····· 215
1) 문화 및 여가활동 ····· 216
2) 사회참여 ····· 219
10. 사회보장 ····· 226
1) 사회보험 ····· 228
2) 공공부조 ····· 234
3) 사회서비스 ····· 245
11. 인권보호 ····· 275
1) 사회적 차별 ····· 277
2) 장애인 인권보호 ····· 288
3) 학대·폭력 경험 ····· 297
4) 성폭력 ····· 300
5) 학대피해 현황 ····· 309

12. 접근성 ····· 315
1) 물리적 접근성 ····· 317
2) 정보 접근성 ····· 338
3) 사법 접근성 ····· 341
13. 재난 및 안전 ····· 342
1) 장애인 응급안전망 ····· 343
2) 사망 현황 ····· 344
3) 장애인 안전시설 ····· 345
4) 장애인 보호구역 ····· 348
5)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 349

Ⅲ. 국외통계 ····· 351

1. OECD 회원국 ····· 351
1) 장애인구 ····· 353
2) 교육 ····· 357
3) 고용 ····· 359
4) 재정 ····· 363
5) 복지 ····· 378
6) 정신건강 ····· 379
2. EU ····· 385
1) 장애인구 ····· 387
2) 건강 ····· 389
3) 주거 ····· 391
4) 교육 ····· 394
5) 고용 ····· 396
6) 빈곤 ····· 400
3. 독일 ····· 405
1) 장애인구 ····· 407
2) 교육 ····· 411
3) 고용 ····· 415
4) 재정 ····· 422

5) 복지 ····· 424
6) 정신건강 ····· 427
4. 스웨덴 ····· 430
1) 장애인구 ····· 431
2) 건강 ····· 432
3) 고용 ····· 434
4) 복지 ····· 438
5) 인권 ····· 442
5. 일본 ····· 443
1) 장애인구 ····· 445
2) 교육 ····· 448
3) 고용 ····· 455
4) 재정 ····· 466
5) 복지 ····· 468
6) 정신건강 ····· 471

Ⅳ. 지표설명 ····· 472

1. 국내통계 지표 ····· 472
2. 국외통계 지표 ····· 488
1) OECD ····· 488
2) EU ····· 491
3) 독일 ····· 492
4) 프랑스 ····· 498
5) 일본 ····· 505

표목차

〈표 1-1-1〉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 25
〈표 1-1-2〉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 26
〈표 1-1-3〉 등록장애인 수 - 지역별, 연도별 ····· 28
〈표 1-1-4〉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 - 생애주기별 ····· 30
〈표 1-1-5〉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 31
〈표 1-1-6〉 신규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 33
〈표 1-1-7〉 신규 등록장애인 수(2023) - 장애유형별, 지역별 ····· 35
〈표 1-1-8〉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 연도별 ····· 36
〈표 1-1-9〉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비율 - 지역별, 연도별 ····· 37
〈표 1-1-10〉 장애인 출현율 - 연도별 ····· 38
〈표 1-1-11〉 장애영유아 현황 - 연령별, 연도별 ····· 39
〈표 1-1-12〉 장애영유아 현황 - 지역별, 연도별 ····· 40
〈표 1-1-13〉 장애영유아 현황(2023) -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정도별 ····· 43
〈표 1-1-14〉 장애아동 현황 - 연도별 ····· 44
〈표 1-1-15〉 장애아동 현황 - 지역별, 연도별 ····· 45
〈표 1-1-16〉 장애아동 현황(2023) -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48
〈표 1-1-17〉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연도별 ····· 49
〈표 1-1-18〉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지역별, 연도별 ····· 50
〈표 1-1-19〉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2023) -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 53
〈표 1-1-20〉 장애정도심사 - 연도별 ····· 54
〈표 1-1-21〉 장애정도심사 - 장애유형별 ····· 55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 ····· 58
〈표 2-1-2〉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60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 ····· 61
〈표 2-1-4〉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63
〈표 2-1-5〉 만성질환 유병률 - 장애유형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 ····· 64

〈표 2-1-5〉 만성질환 유병률 - 장애유형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계속) ····· 65
〈표 2-1-6〉 만성질환 유병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 · 66
〈표 2-1-7〉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67
〈표 2-1-8〉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69
〈표 2-2-1〉 장애인 흡연상태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71
〈표 2-2-2〉 장애인 하루 평균 흡연량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73
〈표 2-2-3〉 장애인 연간 음주 횟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75
〈표 2-2-4〉 장애인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77
〈표 2-2-5〉 장애인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79
〈표 2-2-6〉 장애인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81
〈표 2-2-7〉 규칙적 운동 실천률 - 장애인, 비장애인 ····· 83
〈표 2-3-1〉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 및 판정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84
〈표 2-3-2〉 장애인 암검진 수검 현황 - 검진종류별, 연도별 ····· 86
〈표 2-3-3〉 장애인 암검진 수검 현황(2022년) -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87
〈표 2-3-3〉 장애인 암검진 수검 현황(2022년) -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계속) ····· 88
〈표 2-3-4〉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 - 검진종류별, 연도별 ···· 89
〈표 2-3-5〉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2022년) -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90
〈표 2-3-6〉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 및 종합소견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92

〈표 2-3-7〉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94
〈표 2-3-8〉 장애인 진료비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96
〈표 2-3-9〉 장애인 의료비 수급권자 현황 - 수급자격별, 연도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98
〈표 2-3-10〉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 99
〈표 2-3-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장애유형별, 연도별 ····· 100
〈표 2-3-12〉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 101
〈표 2-3-13〉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장애유형별, 연도별 ····· 102
〈표 2-3-14〉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 103
〈표 2-3-15〉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장애유형별, 연도별 ·· 104
〈표 2-3-16〉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 105
〈표 2-4-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인지정도 - 장애유형별, 연도별 ····· 106
〈표 2-4-2〉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인지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107
〈표 2-4-3〉 우울감 경험률 - 장애유형별, 연도별 ····· 108
〈표 2-4-4〉 우울감 경험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 109
〈표 2-4-5〉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기분상태 및 우울증)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110
〈표 2-4-6〉 정신의료기관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 112
〈표 2-4-7〉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 연도별 ····· 113
〈표 2-5-1〉 장애인 조사망률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114
〈표 2-5-2〉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116
〈표 3-1-1〉 가구구성 - 장애유형별 ····· 118
〈표 3-1-2〉 가구규모 - 장애유형별 ····· 119
〈표 3-1-3〉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현황(2020) - 지역별 ····· 120
〈표 3-1-4〉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규모(2020) - 가구원수별 ····· 120

〈표 3-1-5〉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세대구성(2020) - 세대유형별 ····· 121
〈표 3-2-1〉 결혼상태 - 장애유형별 ····· 122
〈표 3-2-2〉 결혼상태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22
〈표 3-2-3〉 결혼 시 연령 - 장애유형별 ····· 123
〈표 3-2-4〉 결혼 시 연령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23
〈표 3-2-5〉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여부 - 장애유형별, 연도별 ····· 124
〈표 3-2-6〉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 124
〈표 3-2-7〉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장애유형별 ····· 125
〈표 3-2-8〉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25
〈표 3-2-9〉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장애유형별 ····· 126
〈표 3-2-10〉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26
〈표 3-3-1〉 다문화 가족의 등록장애인 현황 ····· 127
〈표 3-3-2〉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가구의 분포 -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 127
〈표 4-1-1〉 주택소유가구 현황 - 연도별, 가구주 연령별, 지역별 ····· 130
〈표 4-1-2〉 주택소유자 현황 - 연도별, 연령대별, 지역별 ····· 131
〈표 4-1-3〉 주택유형 현황 - 연도별 ····· 132
〈표 4-1-4〉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 현황 - 연도별 ····· 132
〈표 4-1-5〉 사용 방 수 현황 - 연도별 ····· 132
〈표 4-1-6〉 무주택 기간 현황 - 연도별 ····· 133
〈표 4-1-7〉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 연도별 ····· 133
〈표 4-1-8〉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연도별 ····· 134
〈표 4-1-9〉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연도별 ····· 134
〈표 4-1-1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135
〈표 4-2-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장애유형별 ····· 136
〈표 4-2-2〉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36
〈표 4-2-3〉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장애유형별 ····· 137
〈표 4-2-4〉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37
〈표 4-2-5〉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장애유형별 ····· 138
〈표 4-2-6〉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39
〈표 4-3-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 연도별 ····· 140
〈표 4-3-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연도별 ····· 140
〈표 4-3-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 연도별 ····· 141

〈표 5-1-1〉 장애인의 교육수준 - 전체 인구 비교 ····· 144
〈표 5-1-2〉 장애인의 교육수준 - 지역별 ····· 145
〈표 5-1-3〉 장애인의 교육수준 - 장애유형별 ····· 145
〈표 5-1-4〉 교육수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46
〈표 5-2-1〉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 147
〈표 5-2-2〉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48
〈표 5-2-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 149
〈표 5-2-4〉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 150
〈표 5-3-1〉 유치원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 151
〈표 5-3-2〉 유치원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52
〈표 5-4-1〉 특수학교 수 -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연도별, 지역별 ····· 153
〈표 5-4-2〉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 수
- 설립별, 학교과정별, 연도별, 지역별 ····· 155
〈표 5-4-3〉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장애영역별, 연도별, 지역별 ····· 156
〈표 5-4-4〉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설립별, 연도별, 지역별 ····· 157
〈표 5-4-5〉 특수학급 학생 수 - 설립별, 학교과정별, 연도별, 지역별 ····· 158
〈표 5-4-6〉 졸업생 진학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 159
〈표 5-4-7〉 졸업생 취업현황 - 취업분야별, 연도별, 졸업유형별 ····· 160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편의시설 유형별,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 161
〈표 6-1-1〉 경제활동상태(2023) ····· 165
〈표 6-1-2〉 경제활동상태 - 연도별 ····· 166
〈표 6-1-3〉 취업자의 인적 구성(2023) ····· 167
〈표 6-1-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2023) ····· 168
〈표 6-1-5〉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2023) - 종사상 지위별 ····· 169
〈표 6-1-6〉 취업자의 직업(2023) - 종사상 지위별 ····· 170
〈표 6-1-7〉 임금근로자 특성(2023) -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직업별,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여부별 ····· 171
〈표 6-1-8〉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2023)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 172
〈표 6-1-9〉 실업자의 인적 구성(2023)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 173

〈표 6-1-10〉 실업자의 구직활동(2023) ····· 174
〈표 6-1-11〉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2023) ····· 175
〈표 6-1-12〉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및 구직단념자 수(2023) ····· 176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 177
〈표 6-2-2〉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연도별 ····· 178
〈표 6-3-1〉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 179
〈표 6-3-2〉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 180
〈표 6-4-1〉 장애인기업 수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 181
〈표 6-4-2〉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 182
〈표 6-4-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 183
〈표 6-4-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 184
〈표 6-5-1〉 지난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 185
〈표 6-5-2〉 지난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 186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187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 장애유형별, 연도별 ····· 188
〈표 6-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 시설유형별 ····· 189
〈표 6-6-4〉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 일자리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 190
〈표 6-6-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 192
〈표 6-6-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의 사업별 지원자 수
- 연도별, 사업별 ····· 193
〈표 6-6-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 194
〈표 6-6-8〉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2022) - 지역별 ····· 195
〈표 6-6-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 196
〈표 7-1-1〉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 연도별 ····· 198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 연도별 ····· 199
〈표 7-1-3〉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 200
〈표 7-1-4〉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세부항목별 ····· 201
〈표 8-1-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 장애유형별, 연도별 ····· 204
〈표 8-1-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연도별 ····· 205

〈표 8-1-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구간별 비중 - 연도별 ····· 206
〈표 8-2-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지출 - 장애유형별, 연도별 ····· 207
〈표 8-2-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연도별 ····· 208
〈표 8-2-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비 소비지출액 - 연도별 ····· 209
〈표 8-2-4〉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 장애유형별, 연도별 ····· 210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 장애유형별, 연도별 ····· 211
〈표 8-3-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 연도별 ····· 213
〈표 8-3-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경상소득) - 연도별 ····· 214
〈표 9-1-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비율 - 장애유형별 ····· 216
〈표 9-1-2〉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비율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17
〈표 9-1-3〉 생활체육 실행 유형 - 연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 218
〈표 9-2-1〉 장애인 투표 참여 비율 - 장애유형별, 연도별 ····· 219
〈표 9-2-2〉 장애인 투표 참여 비율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 219
〈표 9-2-3〉 투표 미참여 이유 - 장애유형별 ····· 220
〈표 9-2-4〉 투표 미참여 이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20
〈표 9-2-5〉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수 및 고용률 - 연도별 ····· 221
〈표 9-2-6〉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연도별, 직급별 ····· 222
〈표 9-2-7〉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시도별 ····· 223
〈표 9-2-8〉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 224
〈표 9-2-9〉 사회적 고립도 - 도움 요청 대상 ····· 225
〈표 10-1-1〉 가입한 연금종류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 228
〈표 10-1-2〉 장애연금 수급현황 - 장애연금 등급별, 연도별 ····· 229
〈표 10-1-3〉 장애연금 수급현황(2023) - 장애연금 등급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 230
〈표 10-1-4〉 장해급여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해등급별, 지역별 ····· 231
〈표 10-1-5〉 건강보험 가입현황 - 가입형태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 233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 현황(전체 수급자 비교)
- 연도별, 지역별 ····· 234
〈표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현황 - 급여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 235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 236

〈표 10-2-4〉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2023)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 237
〈표 10-2-5〉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 238
〈표 10-2-6〉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 239
〈표 10-2-7〉 만성 정신질환 급여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240
〈표 10-2-8〉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 ····· 241
〈표 10-2-8〉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계속) ····· 242
〈표 10-2-9〉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 243
〈표 10-2-10〉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 244
〈표 10-2-1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 244
〈표 10-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 연도별 ····· 245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246
〈표 10-3-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 247
〈표 10-3-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령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 249
〈표 10-3-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 250
〈표 10-3-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급여 이용현황 - 급여종류별, 연도별, 지역별 ····· 251
〈표 10-3-7〉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별지원급여 이용현황 - 급여종류별, 연도별, 지역별 ····· 252
〈표 10-3-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현황 - 연도별 ····· 253
〈표 10-3-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현황 - 연도별,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 254
〈표 10-3-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현황 - 연도별 ····· 255
〈표 10-3-11〉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 연도별, 지역별 ····· 256
〈표 10-3-12〉 활동지원사 등록인원, 활동인원, 월평균근무시간, 월평균보수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 257

〈표 10-3-1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현황 - 연도별 ····· 258
〈표 10-3-14〉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259
〈표 10-3-15〉 양육지원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260
〈표 10-3-16〉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261
〈표 10-3-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262
〈표 10-3-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263
〈표 10-3-1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현황 - 연도별 ····· 264
〈표 10-3-2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현황 - 연도별 ····· 264
〈표 10-3-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265
〈표 10-3-2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266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 267
〈표 10-3-2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규모별, 연도별 ····· 269
〈표 10-3-2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시도별 ····· 270
〈표 10-3-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 272
〈표 10-3-27〉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 273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 ····· 277
〈표 11-1-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79
〈표 11-1-3〉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장애유형별, 연도별 ····· 280
〈표 11-1-4〉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 281
〈표 11-1-5〉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장애유형별, 연도별 ····· 282
〈표 11-1-6〉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 283
〈표 11-1-7〉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연도별, 동·읍면부별, 성별,
장애여부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 284
〈표 11-1-8〉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연도별, 동·읍면부별, 성별,
장애여부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 285
〈표 11-1-9〉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장애유형별, 연도별 ····· 286
〈표 11-1-10〉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 287
〈표 11-2-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 연도별 ····· 288

〈표 11-2-2〉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연도별 ····· 289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연도별, 장애유형별, 차별영역별 ····· 290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 ····· 291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계속) ····· 292
〈표 11-2-5〉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 - 영역별, 연도별 ····· 293
〈표 11-2-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 - 각하·기각 사유별 ····· 294
〈표 11-2-7〉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 - 입원유형별, 연도별, 기관유형별, 권역별 ··· 295
〈표 11-2-8〉 정신요양시설 입소 현황 - 입소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 296
〈표 11-3-1〉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 - 장애유형별 ··· 297
〈표 11-3-2〉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98
〈표 11-3-3〉 가정폭력 관련 시설 현황 ····· 299
〈표 11-4-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 300
〈표 11-4-2〉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301
〈표 11-4-3〉 성폭력 상담소 수 ····· 302
〈표 11-4-4〉 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 - 연도별 ····· 303
〈표 11-4-5〉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 연도별, 피해자 장애유형별, 피해유형별 ··· 304
〈표 11-4-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 지역별, 시설유형별 ····· 305
〈표 11-4-7〉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 연도별 ····· 306
〈표 11-4-8〉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 연도별 ····· 307
〈표 11-4-9〉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 - 연도별 ····· 308
〈표 11-5-1〉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사례별, 연도별, 지역별 ····· 309
〈표 11-5-2〉 장애인학대의심 사례판정 결과 - 사례별, 연도별, 지역별 ····· 310
〈표 11-5-3〉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311
〈표 11-5-4〉 장애인학대 피해자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 312
〈표 11-5-5〉 장애인학대 유형 - 학대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 313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구필요 및 소지여부 - 장애유형별 ····· 317
〈표 12-1-2〉 저소득층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실적 - 연도별, 지역별 ····· 319
〈표 12-1-3〉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품목별 ····· 321
〈표 12-1-4〉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323

〈표 12-1-5〉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품목별 ····· 324
〈표 12-1-6〉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급 현황 - 연도별, 분류별 ····· 325
〈표 12-1-7〉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현황 - 연도별, 분류별 ····· 326
〈표 12-1-8〉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현황 - 연도별, 품목별 ····· 327
〈표 12-1-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 장애정도별, 연도별, 장애유형별 ····· 328
〈표 12-1-10〉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 연도별 ····· 329
〈표 12-1-11〉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13년) 330
〈표 12-1-1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18년) 331
〈표 12-1-13〉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23년) 332
〈표 12-1-14〉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 ····· 333
〈표 12-1-15〉 교통약자 이용 교통수단 - 교통수단별 ····· 334
〈표 12-1-16〉 저상버스 도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335
〈표 12-1-16〉 저상버스 도입 현황 - 연도별, 지역별(계속) ····· 336
〈표 12-1-17〉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337
〈표 12-2-1〉 장애인 디지털정보화수준 현황 - 연도별 ····· 338
〈표 12-2-2〉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연도별 ····· 339
〈표 12-2-3〉 웹 접근성 현황 - 연도별, 산업분야별 ····· 340
〈표 12-3-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현황 ····· 341
〈표 13-1-1〉 응급 출동 현황 - 연도별 ····· 343
〈표 13-1-2〉 비의도적 손상 사망 현황(전체인구 비교) - 연도별, 사망원인별 ····· 344
〈표 13-2-1〉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시설유형별 ····· 345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 346
〈표 13-3-1〉 보호구역 지정현황 - 연도별, 지역별 ····· 348
〈표 13-4-1〉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 연도별 ····· 349
〈표 14-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 (2023) ····· 353
〈표 14-1-2〉 OECD 국가 연령별 장애인 출현율 (2023) ····· 355
〈표 14-2-1〉 OECD 국가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2023): 16-64세 ····· 357
〈표 14-2-2〉 OECD 국가 청년장애인 교육수준별 인구(2023년): 16-29세 이하 ···· 358
〈표 14-3-1〉 OECD 국가 장애인 고용률(15-64세, 2011년) ····· 359
〈표 14-3-2〉 OECD 국가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 360
〈표 14-3-3〉 OECD 국가 성별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 361
〈표 14-3-4〉 OECD 국가 장애인 실업률(15-64세, 2022) ····· 362

〈표 14-4-1〉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 363
〈표 14-4-2〉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 지출 비율 ····· 364
〈표 14-4-3〉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물급여 지출 비율 ····· 365
〈표 14-4-4〉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0년) ·· 366
〈표 14-4-5〉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1년) ·· 367
〈표 14-4-6〉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2년) ·· 368
〈표 14-4-7〉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3년) ·· 369
〈표 14-4-8〉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4년) ·· 370
〈표 14-4-9〉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5년) ·· 371
〈표 14-4-10〉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6년) · 372
〈표 14-4-11〉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7년) · 373
〈표 14-4-12〉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8년) · 374
〈표 14-4-13〉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9년) · 375
〈표 14-4-14〉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20년) · 376
〈표 14-4-15〉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21년) · 377
〈표 14-5-1〉 주요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 378
〈표 14-6-1〉 OECD 국가 인구 천 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 379
〈표 14-6-2〉 OECD 국가 인구 10만 명당 (공공)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 380
〈표 14-6-3〉 OECD 국가 의료공급기관별 정신건강 총 의료비 지출 ····· 381
〈표 14-6-4〉 주요 OECD 국가 국민 1인당 정신건강 지출 ····· 381
〈표 14-6-5〉 OECD 국가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382
〈표 14-6-6〉 OECD 국가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383
〈표 14-6-7〉 OECD 국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로 인한 평균 입원일수 ····· 384
〈표 15-1-1〉 EU 국가 장애출현율 - 연도별, 국가별 ····· 387
〈표 15-1-2〉 EU 국가 장애출현율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국가별 ····· 388
〈표 15-2-1〉 EU 국가 장애인의 만성질환자 비율 - 연도별, 국가별 ····· 389
〈표 15-2-2〉 EU 국가 장애인의 만성질환자 비율 (2022)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국가별 ····· 390
〈표 15-3-1〉 EU 국가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박탈률 - 연도별, 국가별 ····· 391
〈표 15-3-2〉 EU 국가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 - 연도별, 국가별 ····· 392
〈표 15-3-3〉 EU 국가 장애인의 주거지 내 환경 문제 - 연도별 ····· 393
〈표 15-4-1〉 EU 국가의 학업중단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 394

〈표 15-4-2〉 EU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 395
〈표 15-5-1〉 EU 국가의 고용률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 396
〈표 15-5-2〉 EU 국가의 고용률 -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 397
〈표 15-5-3〉 EU국가의 실업률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 398
〈표 15-5-4〉 EU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 399
〈표 15-6-1〉 EU국가 내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 400
〈표 15-6-2〉 EU국가 내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 402
〈표 15-6-3〉 EU국가 내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 403
〈표 16-1-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 407
〈표 16-1-2〉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 408
〈표 16-1-3〉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dB)·장애유형(2023년) ····· 409
〈표 16-1-4〉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원인별 ····· 410
〈표 16-2-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의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 411
〈표 16-2-2〉 학교유형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 현황
- 연도별 ····· 412

〈표 16-2-3〉 지원영역별 특수교육적 지원 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 현황
(2021/2022 대비 2022/2023년) ····· 413
〈표 16-2-4〉 특수학교 현황 - 연도별 ····· 414
〈표 16-3-1〉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일자리 - 연도별 ····· 415
〈표 16-3-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2022년) ····· 416
〈표 16-3-3〉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고용률 (2022년) ····· 417
〈표 16-3-4〉 사업장별 고용의무 이행 현황 (2022년) ····· 418
〈표 16-3-5〉 통합청(Integrationsämter) 지출 현황(2019/2020년) ····· 419
〈표 16-3-6〉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연도별) ····· 420
〈표 16-3-7〉 (준)중증장애인 실업 현황-성별, 연령별, 국적별(2022년) ····· 420
〈표 16-3-8〉 (준)중증장애인 장기 실업 현황(2022년 평균) ····· 421
〈표 16-4-1〉 재활 및 참여급여 지출 현황(2022년) ····· 422

〈표 16-5-1〉 장애인 통합지원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 424
〈표 16-5-2〉 장애인 통합지원 항목별 수급자 및 지출액(2022년) ····· 425
〈표 16-6-1〉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지원 수급자 현황(2021년) ····· 427
〈표 16-6-2〉 정신질환 관련 병원 및 병상 현황(2022년) ····· 428
〈표 16-6-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수(2022년) ····· 429
〈표 17-1-1〉 스웨덴의 장애인 출현율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연령별 ····· 431
〈표 17-1-2〉 스웨덴 취업인구 중 근로능력 저하 장애인 비율
-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 431
〈표 17-2-1〉 스웨덴의 만성질환 인구비율 - 연도별, 성별, 장애유무별 ····· 432
〈표 17-2-2〉 스웨덴의 만성질환 출현율 - 질환별, 성별, 장애유무별 ····· 432
〈표 17-2-3〉 스웨덴 장애인의 우울감 수준 - 성별, 장애유무별, 장애정도별 ····· 433
〈표 17-3-1〉 스웨덴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 장애유무별, 성별 ····· 434
〈표 17-3-2〉 스웨덴 장애인의 취업률 - 장애유무별, 성별 ····· 434
〈표 17-3-3〉 스웨덴 장애인의 실업률 - 장애유무별, 성별 ····· 434
〈표 17-3-4〉 근로능력저하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 후 지원을 받은 비율 ····· 436
〈표 17-3-5〉 근로능력저하 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별 비율 ····· 436
〈표 17-3-6〉 스웨덴 기관 형태별 장애인 취업 현황
- 기업형태별, 성별, 장애유무별 ····· 437
〈표 17-3-7〉 스웨덴 장애인 취업자 고용형태 - 장애유무별, 성별 ····· 437
〈표 17-4-1〉 스웨덴 장애인수당 수령자 수_성별, 연도별 ····· 438
〈표 17-4-2〉 스웨덴 장애아동 보육수당 수령자 수_성별, 연도별 ····· 438
〈표 17-4-3〉 SoL 서비스 수급 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서비스 유형별 ····· 439
〈표 17-4-4〉 2023년 SoL 서비스 수급 장애인 수 - 연령별, 성별, 서비스 유형별 439
〈표 17-4-5〉 LSS 서비스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 440
〈표 17-4-6〉 2023년 LSS 서비스 수급자 상세 - 연령, 성별 ····· 440
〈표 17-4-7〉 2023년 LSS 서비스 유형별 이용 장애인 수
- 성별, 서비스 유형별 ····· 441
〈표 17-5-1〉 노동 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
-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2022) ····· 442
〈표 17-5-2〉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차별의 종류 - 성별(2022) ····· 442
〈표 18-1-1〉 장애자수첩 소지자 수 - 성별, 장애유형별 ····· 445
〈표 18-1-2〉 일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령별 ····· 445

〈표 18-1-3〉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 446
〈표 18-1-4〉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 446
〈표 18-1-5〉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 446
〈표 18-1-6〉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장애정도별 ····· 446
〈표 18-1-7〉 일본 정신장애인 (외래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 447
〈표 18-1-8〉 일본 정신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 447
〈표 18-2-1〉 특별지원교육관련 연도별 예산 개요 ····· 448
〈표 18-2-2〉 특별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 ····· 448
〈표 18-2-3〉 특별지원학교의 운영 현황 ····· 449
〈표 18-2-4〉 특별지원학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 449
〈표 18-2-5〉 특별지원학교 교직원 수 ····· 450
〈표 18-2-6〉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 - 연도별 ····· 450
〈표 18-2-7〉 통급(通級) 지도를 받는 학생 수 - 장애유형별 ····· 451
〈표 18-2-8〉 통급(通級) 지도를 받는 학생 수의 추이 ····· 451
〈표 18-2-9〉 특별지원학교 중등부 졸업 후의 상황 ····· 453
〈표 18-2-10〉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 453
〈표 18-2-11〉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 졸업자의 취직 직업별 ····· 454
〈표 18-3-1〉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상황 ····· 455
〈표 18-3-2〉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연도별 ····· 455
〈표 18-3-3〉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기업규모별 ····· 457
〈표 18-3-4〉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산업별 ····· 458
〈표 18-3-5〉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제조업별 ····· 458
〈표 18-3-6〉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 기업규모별 ····· 459
〈표 18-3-7〉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 459
〈표 18-3-8〉 전년도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용 현황 ····· 460
〈표 18-3-9〉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460
〈표 18-3-10〉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 460
〈표 18-3-11〉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461
〈표 18-3-12〉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 461
〈표 18-3-13〉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461
〈표 18-3-14〉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 461
〈표 18-3-15〉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 462

〈표 18-3-16〉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 462
〈표 18-3-17〉 독립 행정법인등의 장애인 고용 현황 ····· 463
〈표 18-3-18〉 독립 행정법인등의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 463
〈표 18-3-19〉 일본 "Hello Work"를 통한 장애인 취업소개 현황 - 연도별 ····· 464
〈표 18-3-20〉 일본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건수 - 장애유형별 ····· 464
〈표 18-3-21〉 장애인 해고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 465
〈표 18-3-22〉 장애인 해고 수 - 해고 사유별 ····· 465
〈표 18-4-1〉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개요 - 2023~2024년도 ····· 466
〈표 18-5-1〉 장애가구를 위한 주택건설 - 공영주택,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 ····· 468
〈표 18-5-2〉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단차의 해소 ····· 469
〈표 18-5-3〉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장애인용 화장실 ····· 469
〈표 18-5-4〉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469
〈표 18-5-5〉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등 설치 상황 ····· 470
〈표 18-6-1〉 정신과병원의 상황 - 병원수, 병상수 ····· 471
〈표 18-6-2〉 정신과 병원의 개황 ····· 471

그림목차

[그림 1-1] 장애통계연보 체계 ····· 5
[그림 2-1-1]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구 비율 - 연도별 ····· 23
[그림 2-1-2]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구 비율 - 장애유형별 ····· 23
[그림 2-1-3]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구 비율 - 지역별 ····· 24
[그림 2-1-4] 전체 인구/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 연도별 ····· 24
[그림 2-2-1]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2021년) - 만성질환 유형별 ····· 56
[그림 2-2-2]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 연도별 ····· 56
[그림 2-2-3]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2021년) ····· 57
[그림 2-2-4] 장애인 조사망률 및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 - 연도별 ····· 57
[그림 2-3-1] 1인 가구 비율 - 장애유형별(2020년) ····· 117
[그림 2-3-2] 자녀 현황 및 장애 자녀 여부(2020년) ····· 117
[그림 2-4-1]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 장애인가구/비장애인가구 ····· 128
[그림 2-4-2]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장애인가구/비장애인가구 ····· 128
[그림 2-4-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129
[그림 2-4-4]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2021년) ····· 129
[그림 2-5-1] 장애인 교육수준 - 전체인구비교 ····· 142
[그림 2-5-2] 전문/통합 어린이집 수 및 장애아동, 교사 수(2023년) ····· 142
[그림 2-5-3]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교사 대비 장애아동 수(2023년) ····· 143
[그림 2-5-4]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률 ····· 143
[그림 2-6-1]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비교(2023년) ····· 163
[그림 2-6-2] 경제활동상태 - 성별비교(연도별) ····· 163
[그림 2-6-3] 임금근로자 근로 특성 - 전체인구 비교(2023년) ····· 164
[그림 2-6-4-1] 장애인 의무고용률 - 부문별(2023년) ····· 164
[그림 2-6-4-2]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별 ····· 164
[그림 2-7-1]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 197
[그림 2-7-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 및 장애인복지예산 ····· 197
[그림 2-8-1]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전체가구 비교(2022년) ····· 202

[그림 2-8-2]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전체가구 비교(2022년) ····· 202
[그림 2-8-3]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 비용(2020년) ····· 203
[그림 2-8-4] 연도별 상대적 빈곤율 - 전체가구 비교 ····· 203
[그림 2-9-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2020년) ····· 215
[그림 2-9-2]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연도별 ····· 215
[그림 2-10-1] 장애 관련 급여 수급자 현황 - 연도별 ····· 226
[그림 2-10-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및 월 평균 급여량 - 연도별 ····· 226
[그림 2-10-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규모 및 활동지원사 활동인원 - 연도별 ····· 227
[그림 2-10-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연도별 ····· 227
[그림 2-11-1]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연도별 ····· 275
[그림 2-11-2]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 연도별 ····· 275
[그림 2-11-3] 정신의료기관 입원 유형 - 연도별 ····· 276
[그림 2-11-4] 장애인 성폭력 현황 - 연도별 ····· 276
[그림 2-12-1]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현황(2021년) ····· 315
[그림 2-12-2] 저상버스 도입률(2022년) ····· 315
[그림 2-12-3]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전체가구 비교(2023년) ····· 316
[그림 2-13-1] 비의도적 손상 사망 현황(2022) - 전체인구, 장애인구 ····· 342
[그림 2-13-2]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 342
[그림 3-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2023년) ····· 351
[그림 3-1-2] OECD 국가 장애인 실업률(15-64세, 2022년) ····· 351
[그림 3-1-3]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2019년) ···· 352
[그림 3-1-4]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2023년) ····· 352
[그림 3-2-1] EU 국가의 장애인 출현율 - 장애정도별(2023년) ····· 385
[그림 3-2-2] EU 국가의 학업중단율(18-29세) - 장애유무별(2022년) ····· 385
[그림 3-2-3] EU 국가의 장애인 고용 현황 - 연도별 ····· 386
[그림 3-2-4] EU 국가의 빈곤 현황 - 장애유무별(2021년) ····· 386
[그림 3-3-1]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연령별 ····· 405
[그림 3-3-2]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2022년) ····· 405
[그림 3-3-3] 독일: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 현황(2021년) ····· 406
[그림 3-3-4] 독일: 중증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 - 연도별 ····· 406
[그림 3-4-1] 스웨덴: 장애인출현율 - 연도별, 장애정도별 ····· 430
[그림 3-4-2] 스웨덴: 만성질환 인구비율(2023년) - 연도별, 장애유무별, 연령별 ···· 430

[그림 3-5-1] 일본: 장애수첩 소지자 수 (2023년) ····· 443
[그림 3-5-2] 일본: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상황 – 장애별, 연도별 ····· 443
[그림 3-5-3] 일본: 장애인 시책 관련 예산 개요(2024년) ····· 444

I 2024 장애통계연보 체계

1. 작성배경

□ 생애주기별 다양화된 장애인 욕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 필수적인 관련 통계 생산 및 분석 필요

□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이하 CRPD)의 제31조(통계와 자료수집)에 의하면, '적절한 자료수집'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실태 및 장애인의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임을 규정

□ 그러나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집된 통계자료(CRPD의 제31조)들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통계자료의 내용 및 수준이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가 불가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United Nations, 2014)

□ 각 부처에서 발간된 통계들은 실태조사 및 투입지표들에 초점이 되어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모니터링 역할로써의 산출 및 성과지표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
  — 최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시급함

□ 장애인 인권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충족을 고려한 핵심 통계들의 수집이 요구됨
  — 인천전략과 CRPD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애통계연보 틀을 구축하고, 주요 지표들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 제기

2. 작성목표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과 장애인의 삶을 진단하는 역할을 함
— 장애통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실태분석 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복지 정책의 모니터링과 연동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들을 포함

□ 정부부처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수록하여,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수준과 정부부처의 정책과 노력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통계자료와의 차별성을 이루도록 함
—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들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함

□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독일, 스웨덴, 일본 등 국가들의 장애인 통계 지표들을 수록하여, 국외 국가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가능토록 함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통계 및 지표를 수집 및 생산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목적으로 함
— 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작성방향 및 체계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분류 및 중분류를 도출한 후 소분류(세부지표)를 개발
— 사회지표 대분류(11개), 보건복지통계연보 대분류(9개), 장애인통계(7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대분류(13개)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분류 구성함
— 중분류 및 소분류는 각각의 상위분류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각각의 분류들의 수준과 내용은 통일성을 기함

□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아동, 여성,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 조항에 대한 개선 및 관련 정책 강화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중분류 체계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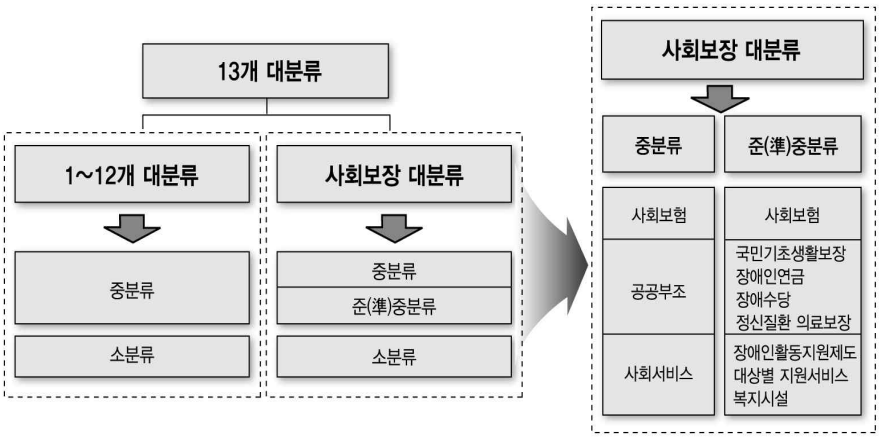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세부 지표들을 제시
—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및 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일자리 사업, 편의증진사업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소득보장제도들을 포괄

□ 기존에 생산되고 있던 장애인 소득 및 소득불평등 지표 수집
— 장애인 소득,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등

□ 장애인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사회조사,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웹접근성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수집

□ 수록된 통계 및 지표는 장애인 특성별(장애유형, 성별, 장애정도 등) 접근이 가능하고, 향후 대표성·연속성·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함

□ 특히 '사회보장' 대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중분류(3개)로 체계화 하였으며, 여타 중분류와 다르게 장애인복지서비스들을 명시하는 준(準)중분류를 추가 구성함으로써, 다른 중분류와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사회보장영역을 강조함



□ 위의 절차를 통해 구축된 장애통계연보 체계는 다음과 같음

— 대분류는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구, 건강 및 보건, 가족, 주거, 교육, 노동과 직업재활, 재정, 소득과 소비, 문화 및 사회참여, 사회보장, 인권보호, 접근성, 재난 및 안전 등임

— 중분류는 각 대분류에 1~6개로 구성되며, 대분류에 대한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사업들을 의미

— 소분류는 각 중분류에 1~10개로 구성되며, 주요 투입 및 산출지표로 구성



[그림 1–1] 장애통계연보 체계

4. 세부작성원칙

□ 2024년 장애통계연보의 자료 수록은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함
□ 각 세부지표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로 제시되도록 함
□ 필요시 전국가구와 비교를 가능토록 함
□ 각 세부지표에 대한 주요 설명 및 지표명을 제시하여, 통계 의미와 이해도를 높임
□ 주요지표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시함

5. 장애통계연보 체계

1) 국내지표

(1) 장애인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장애인구	장애인구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1-1-1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제1조 제2조
			장애유형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표 1-1-2		
			지역별, 연도별	표 1-1-3		
		지역별 등록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역별	표 1-1-4		
			장애유형별, 지역별	표 1-1-5		
		신규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표 1-1-6		
			장애유형별, 지역별	표 1-1-7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전체인구대비 등록장애인구	연도별	표 1-1-8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지역별, 연도별	표 1-1-9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인 출현율	연도별	표 1-1-10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영유아 현황	연령별, 연도별	표 1-1-1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지역별, 연도별	표 1-1-12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1-1-13		
		장애아동 현황	연도별	표 1-1-14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1-15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1-1-16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연도별	표 1-1-17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1-18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표 1-1-19	통계청 등록장애인,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정도심사	연도별	표 1-1-20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유형별	표 1-1-21		

(2) 건강 및 보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건강 및 보건	건강상태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ADL)	장애유형별	표 2-1-1	장애인실태조사	제25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1-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ADL)	장애유형별	표 2-1-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1-4		
		만성질환 유병률	장애유형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	표 2-1-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	표 2-1-6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1-7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건강검진통계연보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현황		표 2-1-8		
	건강행태	장애인 흡연상태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2-1		
		장애인 하루 평균 흡연량		표 2-2-2		
		장애인 연간 음주 횟수		표 2-2-3		
		장애인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신체일수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2-4		
		장애인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신체일수		표 2-2-5		
		장애인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		표 2-2-6		
		규칙적 운동 실천률	연도별, 장애인/비장애인	표 2-2-7	사회조사	
	보건의료 이용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 및 판정 결과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3-1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건강검진통계연보	
		장애인 암검진 수검 현황	검진종류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3-2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		표 2-3-3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 및 종합소견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2-3-4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3-5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장애인 진료비 현황		표 2-3-6		
		장애인 의료비 수급권자 현황	수급자격별, 연도별, 지역별	표 2-3-7	복지로 복지통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관련 기관 현황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표 2-3-8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2-3-9	장애인실태조사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장애유형별	표 2-3-10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3-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표 2-3-12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 월 평균 이용	장애유형별	표 2-3-13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3-1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서비스 월 평균 이용				
	정신건강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인지 정도	장애유형별	표 2-4-1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4-2		
		우울감 경험률	장애유형별	표 2-4-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4-4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기분상태 및 우울증)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4-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건강검진통계연보	
		정신의료기관 현황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표 2-4-6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보건 예산	연도별, 지역별	표 2-4-7		
	사망	장애인 조사망률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5-1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5-2		

(3) 가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가족	가구구성	가구구성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표 3-1-1	장애인실태조사	제6조 제7조 제23조
		가구규모		표 3-1-2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현황	지역별	표 3-1-3	통계청 인구조사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규모	활동제약자 없는 가구, 거주 가구 비교	표 3-1-4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세대구성		표 3-1-5		
	가족형성	결혼상태	장애유형별	표 3-2-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2		
		평균초혼연령	장애유형별	표 3-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4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장애유형별	표 3-2-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6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장애유형별	표 3-2-7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8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장애유형별	표 3-2-9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10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의 등록장애인 현황	연도별,	표 3-3-1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가구의 분포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표 3-3-2		

(4) 주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주거	주거	전체/장애인가구의 주택소유가구 현황	연도별, 가구주 연령별, 지역별	표 4-1-1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장애인)가구주의 연령별 주택소유 가구수	제19조
		전체/장애인의 주택소유 현황	연도별, 연령별, 지역별	표 4-1-2		
		주택유형 현황	연도별	표 4-1-3	주거실태조사	
		주택사용면적 현황		표 4-1-4		
		사용 방 수 현황		표 4-1-5		
		무주택 기간 현황		표 4-1-6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표 4-1-7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표 4-1-8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표 4-1-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표 4-1-10		
	주택 환경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장애유형별	표 4-2-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2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장애유형별	표 4-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4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장애유형별	표 4-2-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6		
	주거 복지사업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연도별	표 4-3-1	주거실태조사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		표 4-3-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연도별	표 4-3-3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5) 교육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교육	교육수준	장애인의 교육수준	전체 인구 비교	표 5-1-1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제7조 제24조 제26조
			지역별	표 5-1-2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유형별	표 5-1-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1-4		
	보육	보육시설 이용 현황	장애유형별	표 5-2-1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2-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	지원여부, 지역별	표 5-2-3	보육통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지역별	표 5-2-4		
	유치원	유치원 이용 현황	장애유형별	표 5-3-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3-2		
	특수교육	특수학교 수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 설치별	표 5-4-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교육통계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 수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 설치별	표 5-4-2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연도별, 시도별, 장애영역별	표 5-4-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표 5-4-4		
		특수학급 학생 수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표 5-4-5		
		졸업생 진학현황	연도별, 졸업유형별	표 5-4-6		
		졸업생 취업현황	취업분야별, 연도별, 졸업유형별	표 5-4-7		
	교육기관 편의시설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편의시설 유형별	표 5-5-1		

(6) 노동과 직업재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노동과 직업재활	경제활동	경제활동상태	전체인구, 장애인구 비교	표 6-1-1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제6조 제26조 제27조
			연도별 비교	표 6-1-2		
		취업자의 인적 구성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3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전체인구, 장애인구 비교	표 6-1-4		
		취업자의 산업	장애인 취업자, 전체인구 취업자 비교	표 6-1-5		
		취업자의 직업		표 6-1-6		
		임금근로자 특성	종사상지위별, 산업별, 직업별, 사업체규모별, 정규직여부별	표 6-1-7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8		
		실업자의 인적 구성		표 6-1-9		
		실업자의 구직활동	구직기간별, 구직경로별, 구직방법별	표 6-1-10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	희망고용형태별, 희망산업별, 희망직업별, 희망사업체별, 희망 근로시간별, 희망 월 평균소득별	표 6-1-11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및 구직단념자 수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12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연도별	표 6-2-2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기업체 장애인 고용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표 6-3-1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표 6-3-2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수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표 6-4-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표 6-4-2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표 6-4-3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규모별, 업종별	표 6-4-4		
	취업 관련 활동 경험	지난 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6-5-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지난 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표 6-5-2		
	직업재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벌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	시설유형별	표 6-6-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일자리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지역별	표 6-6-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표 6-6-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사업별 지원자 수	연도별, 사업별	표 6-6-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	기관유형별, 연도별	표 6-6-7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기관별)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	지역별	표 6-6-8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표 6-6-9		

(7) 재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재정	재정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연도별	표 7-1-1	SOCX Statistics	-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비율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고서	
		장애인 정책국 예산 추이	연도별	표 7-1-3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연도별, 세부항목별	표 7-1-4		

(8) 소득과 소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소득과 소비	소득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 평균 가구소득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8-1-1	가계동향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제28조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연도별	표 8-1-2	가계금융·복지조사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구간별 비중		표 8-1-3		
	소비	연도별, 장애유형별 월 평균 가구지출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8-2-1	가계동향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연도별, 장애유형별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연도별	표 8-2-2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도별, 장애유형별 비목별 연평균 비 소비지출액		표 8-2-3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8-2-4	장애인실태조사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표 8-2-5		
소득과 소비	빈곤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연도별	표 8-3-1	가계금융·복지조사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 분위별 가구소득		표 8-3-2		

(9) 문화 및 사회참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문화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장애유형별	표 9-1-1	장애인실태조사	제29조 제30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9-1-2		
		생활체육 참여형태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9-1-3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사회참여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장애유형별	표 9-2-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9-2-2		
		투표 미 참여 이유	장애유형별	표 9-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9-2-4		
		장애인 공무원 수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표 9-2-5	인사혁신통계연보	
		장애인 공무원 수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직급별	표 9-2-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연도별, 시도별	표 9-2-7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연도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장애유형별	표 9-2-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도	연도별	표 9-2-9	사회조사	
				표 9-2-10		
				표 9-2-11		
				표 9-2-12		

(10) 사회보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사회보장	사회보험		가입한 연금 종류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1-1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연금 수급현황	장애연금 등급별, 연도별	표 10-1-2	국민연금통계연보	
				장애연금 등급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 10-1-3		
			장해급여 수급현황	연도별, 성별, 장해등급별, 연령별	표 10-1-4	산재보험 사업연보,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건강보험 가입 현황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1-5	장애인실태조사	
사회보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전체 수급자 비교)연도별, 지역별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급여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2-2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연도별	표 10-2-3	복지통계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표 10-2-4		
		장애수당	장애수당 수급자 수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표 10-2-5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표 10-2-6		
		정신질환 의료보장	만성 정신질환 급여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0-2-7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연도별, 상병별	표 10-2-8	의료급여통계연보, 의료급여 주요통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사회 보장	공공부조	정신질환 의료보장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의료보장 현황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표 10-2-9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료보장 현황	연도별	표 10-2-10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의료보장 현황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표 10-2-11		
사회 보장	사회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연도별	표 10-3-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19조 제28조
			지원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0-3-2		
			수급자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표 10-3-3		
				연도별, 연령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10-3-4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표 10-3-5		
			안정조사 실시현황	연도별	표 10-3-6		
			기본급여 이용현황	연도별, 급여종류별, 지역별	표 10-3-7		
			추가급여 이용현황	연도별, 급여종류별	표 10-3-8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현황	연도별	표 10-3-9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현황	연도별, 급여이용률별	표 10-3-10		
			본인부담금 현황	연도별	표 10-3-11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연도별, 지역별	표 10-3-12		
			활동지원사 등록인원, 활동인원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 10-3-13		
		대상별 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현황	연도별	표 10-3-14		
			언어발달지원 사업 지원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0-3-15		
			양육지원 사업 지원 현황		표 10-3-16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		표 10-3-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실적		표 10-3-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현황		표 10-3-1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 현황	연도별	표 10-3-2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현황		표 10-3-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0-3-2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현황		표 10-3-23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시설유형별, 연도별, 시도별	표 10-3-24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유형별, 규모별, 연도별	표 10-3-2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연도별, 시도별	표 10-3-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표 10-3-27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재활기관 현황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표 10-3-28	국가정신건강현황	

(11) 인권보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인권 보호	사회적 차별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장애유형별	표 11-1-1	장애인실태조사	제5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2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개인)	장애유형별	표 11-1-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4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장애유형별	표 11-1-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6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연도별, 지역별, 성별, 장애유무별, 연령별, 학력별, 직종별, 소득별	표 11-1-7	사회조사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결과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표 11-1-8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장애유형별	표 11-1-9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10		
	장애인 인권 보호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연도별	표 11-2-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연도별, 장애유형별, 차별영역별	표 11-2-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연도별, 장애유형별, 차별영역별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연도별, 영역별,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	기각·각하 사유별	표 11-2-5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	기각·각하 사유별	표 11-2-6		
		정신의료기관 입원현황	입원유형별, 연도별, 기관유형별, 권역별	표 11-2-7	국가정신건강현황	
		정신요양시설 입소 현황	입소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표 11-2-8		
	학대폭력 경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	장애유형별	표 11-3-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3-2		
	가정 폭력	가정폭력 관련 시설 현황	시도별	표 11-3-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장애유형별	표 11-4-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4-2		
		성폭력 상담소 수	시도별	표 11-4-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현황	연도별	표 11-4-4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 실적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	연도별, 피해자 장애유형별, 피해유형별	표 11-4-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지역별, 시설유형별	표 11-4-6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연도별	표 11-4-7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실적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표 11-4-8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		표 11-4-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사례별, 연도별, 지역별	표 11-5-1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장애인학대의심 사례판정 결과		표 11-5-2		
		장애인학대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1-5-3		
		장애인학대 피해자 현황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표 11-5-4		
		장애인학대 유형	학대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표 11-5-5		

(12) 접근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여부	보조기구 종류별, 장애유형별	표 12-1-1	장애인실태조사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저소득층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적	연도별, 지역별	표 12-1-2	보건복지통계연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 현황	연도별, 품목별	표 12-1-3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현황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지급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2-1-4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급 현황	연도별, 품목별	표 12-1-5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급 현황	연도별, 분류별	표 12-1-6	공공데이터포털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현황		표 12-1-7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현황	연도별, 품목별	표 12-1-8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자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장애정도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2-1-9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연도별	표 12-1-10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표 12-1-11		
				표 12-1-12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설치 현황	지역별, 교통수단별, 여객시설별	표 12-1-13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교통약자 이용 교통수단	교통수단별	표 12-1-14		
		저상버스 도입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2-1-15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2-1-16		
	정보 접근성	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지수 현황	연도별	표 12-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표 12-2-2		
		웹 접근성 현황	연도별, 산업분야별	표 12-2-3	웹 접근성 실태조사	
	사법 접근성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현황	연도별	표 12-3-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13) 재난 및 안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재난 및 안전	장애인 응급안전망	응급출동현황	연도별	표 13-1-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10조 제11조 제14조
	비의도적사망사고	비의도적 손상 사망 현황(전체인구 비교	연도별, 사망원인별	표 13-1-2	사망원인통계 결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장애인 안전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연도별, 시설유형별	표 13-2-1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표 13-2-2		
	장애인 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현황	연도별, 시도별	표 13-3-1	행정안전통계연보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별	표 13-4-1	경찰통계연보	

2) 국외지표

(1) OECD 회원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OECD 회원국	장애인구	장애인 출현율	국가별, 성별	표 14-1-1	Eurostat, EU-SILC, 국가별 통계	-
			국가별, 연령별	표 14-1-2	Eurostat, EU-SILC	
	교육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국가별, 학력별	표 14-2-1	Eurostat, EU-SILC	
		청년장애인 교육수준별 인구: 16-29세 이하	국가별, 학력별	표 14-2-2	Eurostat, EU-SILC	
	고용	장애인 고용률	국가별, 장애여부, 성별	표 14-3-1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0),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	국가별, 근로형태별, 장애여부	표 14-3-2		
			국가별, 성별, 근로형태별	표 14-3-3		
		장애인 실업률	국가별, 장애여부, 성별	표 14-3-4		
	재정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국가별, 연도별	표 14-4-1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 지출 비율		표 14-4-2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물급여 지출 비율		표 14-4-3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	국가별, 연도별, 급여유형별	표 14-4-4		
				표 14-4-5		
				표 14-4-6		
				표 14-4-7		
				표 14-4-8		
				표 14-4-9		
				표 14-4-10		
				표 14-4-11		
				표 14-4-12		
	복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국가별, 장애여부	표 14-5-1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정신건강	인구 천 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국가별, 연도별	표 14-6-1	Health Statistics database, OECD	
		인구 10만 명당 (공공)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국가별	표 14-6-2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의료공급기관별 정신건강 총 의료비 지출	국가별, 의료공급기관별	표 14-6-3		
		국민 1인당 정신건강 지출	국가별	표 14-6-4	WHO Mental Health Atlas, 2020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국가별, 연도별, 성별	표 14-6-5	Health Statistics database, OECD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국가별, 연도별, 성별	표 14-6-6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로 인한 평균 입원일수	국가별, 연도별	표 14-6-7		

(2) EU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EU	장애인구	장애인 출현율	국가별, 연도별	표 15-1-1	EU-SILC	-
			국가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5-1-2	EU-SILC	
	건강	장애인의 만성질환자 비율	국가별, 연도별	표 15-2-1	Eurostat, EU-SILC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국가별	표 15-2-2		
	주거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박탈률	국가별, 연도별	표 15-3-1	Eurostat, EU-SILC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		표 15-3-2		
		장애인의 주거지내 환경 문제	연도별	표 15-3-3		
	교육	장애인의 학업중단율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표 15-4-1	EU-SILC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		표 15-4-2		
	고용	장애인의 고용률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표 15-5-1	EU-SILC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15-5-2		
		장애인의 실업률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표 15-5-3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표 15-5-4		
	빈곤	장애인의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표 15-6-1	EU-SILC	
		장애인의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 위험에 처한 비율		표 15-6-2		
		장애인의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표 15-6-3		

(3) 독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독일	장애인구	중증장애인 수	연도별, 성별, 연령별	표 16-1-1	연방건강보고, 중증장애인통계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표 16-1-2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표 16-1-3		
			연도별, 장애원인별	표 16-1-4		
	교육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 학생)의 통합교육비율	연도별	표 16-2-1	독일에서의 통합-정보와 요소, 교육문화부 장관협의회의 통계적 출판 - 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 세밀한 분석	
		학교유형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 학생 현황	연도별, 학교유형별	표 16-2-2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지원영역 변화	연도별, 학교유형별	표 16-2-3		
		특수학교 현황	연도별	표 16-2-4		
	고용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일자리	연도별	표 16-3-1	고용통계(노동시장의 통계), 연방노동에이전트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성별, 연령별, 대상별, 산업부문별	표 16-3-2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연도별, 민간, 공공부문별	표 16-3-3		
		고용의무 이행 현황	민간, 공공부문별	표 16-3-4		
		통합청 지출 현황	연도별, 지출항목별	표 16-3-5	연방노동에이전트 통합청연례보고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	연도별	표 16-3-6	BIH 연례보고서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성별, 연령별, 국적별	표 16-3-7	연방노동에이전트 통계	
		중증장애인 장기 실업 현황	연도별, 실업지속기간별	표 16-3-8	연방노동에이전트 통계	
	재정	재활 및 참여급여 지출	연도별, 급여유형별	표 16-4-1	재활정보	
	복지	장애인 통합지원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표 16-5-1	연방건강보고, 사회적 급여 통계-장애인을 위한 편입급여	
		장애인 통합지원 항목별 수급자 및 지출액	항목별	표 16-5-2		
	정신건강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지원 수급자 현황	성별, 연령별, 장소별	표 16-6-1	아동 및 청소년 급여의 통계 - 사회법전 제8권 제35조에 따른 편입급여	
		정신질환 관련 병원 및 병상 현황	병원유형별, 연도별	표 16-6-2	병원기본통계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수	환자 유형별, 병원유형별	표 16-6-3		

(4) 스웨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스웨덴	장애인구	장애인 출현율	장애의미별	표 17-1-1	EU-SILC	–
		취업인구 중 근로능력 저하 장애인 비율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표 17-1-2	Statistics Sweden	
	건강	만성질환 인구비율	연도별, 성별, 장애유무별	표 17-2-1	EU-HLTH	
		만성질환 출현율	연도별, 질환별, 성별, 장애유무별	표 17-2-2	Statista Consumer Insights (2024)	
		장애인의 우울감 수준	성별, 장애유무별, 장애정도별	표 17-2-3	EU-HLTH	
	고용	경제활동인구 비율	장애유무별, 성별	표 17-3-1	Statistics Sweden	
		장애인의 취업률		표 17-3-2		
		장애인의 실업률		표 17-3-3		
		근로능력저하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 후 지원을 받은 비율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표 17-3-4	Statistics Sweden	
		근로능력저하 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별 비율	성별	표 17-3-5		
		기관형태별 장애인 취업 현황	기업형태별, 성별, 장애유무별	표 17-3-6		
		장애인 취업자 고용형태	장애유무별, 성별	표 17-3-7		
	복지	장애인수당 수령자 수	연도별, 성별	표 17-4-1	Socialstyrelsen	
		장애아동 보육수당 수령자 수		표 17-4-2		
		SoL 서비스 수급 장애인 수	연도별, 성별	표 17-4-3		
			연령별, 성별, 서비스유형별	표 17-4-4		
		LSS 서비스 수급자 수	연도별, 성별	표 17-4-5		
			연령별, 성별, 수급그룹별	표 17-4-6		
			서비스유형별, 성별, 수급그룹별	표 17-4-7		
	인권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표 17-5-1	Statistics Sweden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차별의 종류	성별	표 17-5-2	Statistics Sweden	

(5)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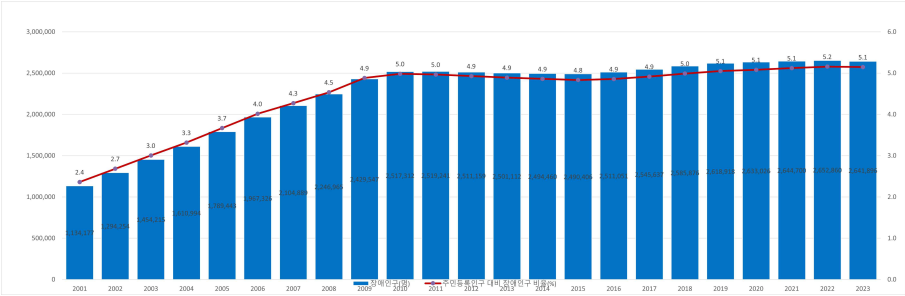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1	출처	CRPD
일본	장애인구	장애자수첩 소지자 수	성별, 장애유형별	표 18-1-1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
		일본 장애인 수	장애유형별, 연령별	표 18-1-2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환자조사	
		일본 신체장애인(재택환자) 수	연도별, 연령별	표 18-1-3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8-1-4		
		일본 지적장애인(재택환자) 수	연도별, 연령별	표 18-1-5		
			장애정도별	표 18-1-6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일본 정신장애인(외래환자) 수	연도별, 연령별	표 18-1-7	환자조사	
		일본 정신장애인 수	성별, 연령별	표 18-1-8		
	교육	특별지원교육관련 예산 개요	항목별, 연도별	표 18-2-1	특별지원교육자료	
		특별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	학교유형별	표 18-2-2		
		특별지원학교 운영 현황	학교유형별, 장애유형별	표 18-2-3		
		특별지원학교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8-2-4		
		특별지원학교 교직원 수	교원유형별	표 18-2-5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	연도별	표 18-2-6		
		통급 지도를 받는 학생 수	학교별, 장애유형별	표 18-2-7		
		통급 지도를 받는 학생 수의 추이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8-2-8		
		특별지원학교 중등부 졸업 후의 상황	국립, 공립, 사립, 장애유형별	표 18-2-9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국립, 공립, 사립, 장애유형별	표 18-2-10		
			졸업자의 취직 직업별	표 18-2-11		
	고용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상황	주요지표별	표 18-3-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연도별	표 18-3-2		
			기업규모별	표 18-3-3		
			산업별	표 18-3-4		
			제조업별	표 18-3-5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기업규모별	표 18-3-6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기업수, 근로자 수, 장애인 수	표 18-3-7		
		전년도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용 현황	기관별, 주요지표별	표 18-3-8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주요지표별	표 18-3-9		
			장애유형별	표 18-3-10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주요지표별	표 18-3-11		
			장애유형별	표 18-3-12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주요지표별	표 18-3-13		
			장애유형별	표 18-3-1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1	출처	CRPD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주요지표별	표 18-3-15		
			장애유형별	표 18-3-16		
		독립 행정법인등의 장애인 고용 현황	주요지표별	표 18-3-17		
			장애유형별	표 18-3-18		
		"Hello Work"를 통한 장애인 취업소개 현황	연도별	표 18-3-19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건수	장애유형별	표 18-3-20		
		장애인 해고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8-3-21		
			해고사유별	표 18-3-22		
	재정	장애인시책 관계 예산 개요	연도별	표 18-4-1	2023년 장애인백서	
	복지	장애가구를 위한 주택건설호수	연도별, 공영주택,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	표 18-5-1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단차의 해소	표 18-5-2	이동원활화실적보고서	
			장애인용 화장실	표 18-5-3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연도별, 교통수단별	표 18-5-4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등 설치 상황	연도별, 설치유형별	표 18-5-5	2022년 장애인백서	
	정신건강	정신과병원의 상황	병원수, 병상수, 병동수, 휴상중병동수	표 18-6-1	정신보건복지자료	
		정신과 병원의 개황	병원수, 병동수, 병상수, 병원유형별	표 1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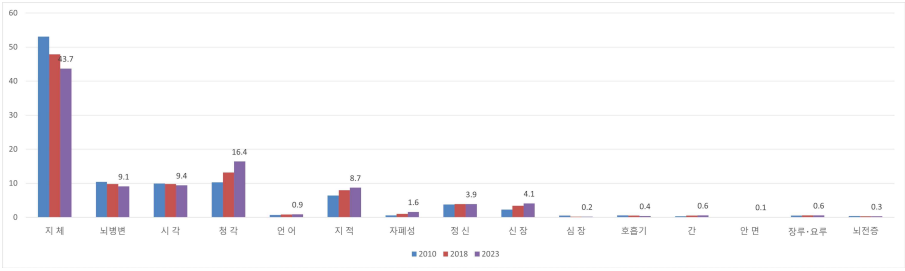
Ⅱ 국내통계

1. 장애인구

[그림 2-1-1]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구 비율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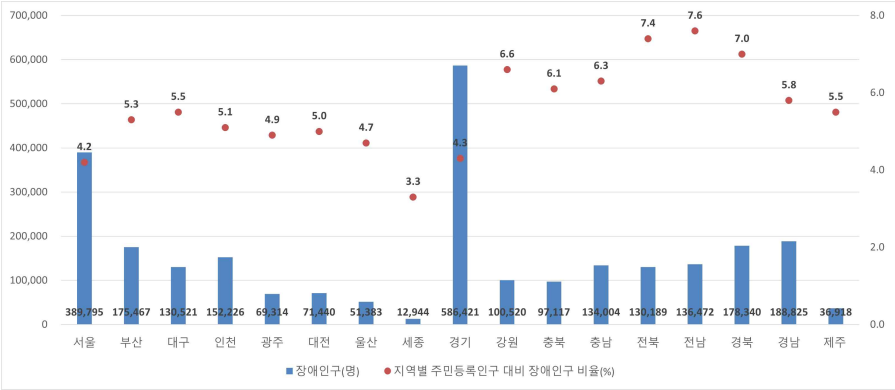
[그림 2-1-2]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구 비율 - 장애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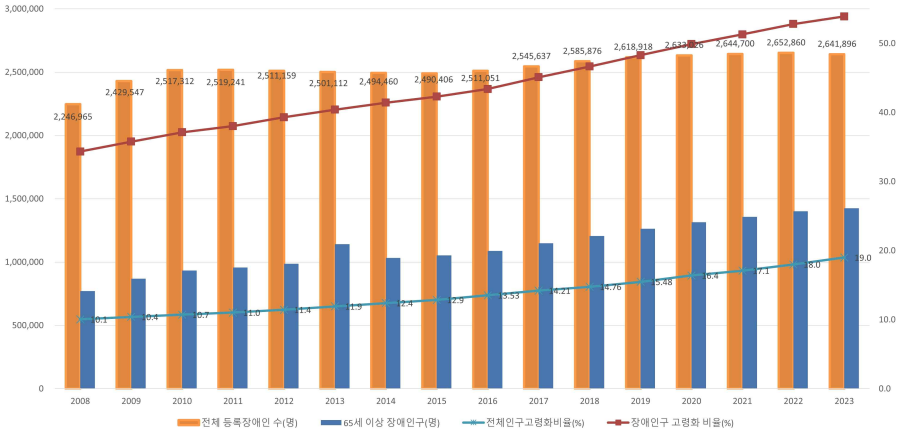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으로, 전체 인구(51,325,329명) 대비 5.1%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등록장애인 2016년부터 증가추세였으나 2023년 소폭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3.7%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16.4%, 시각장애 9.4%, 뇌병변장애 9.1%, 지적장애 8.7% 순임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 → 10개 유형(2000.1.) → 15개 유형(2003.7.)

[그림 2-1-3]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구 비율 - 지역별



[그림 2-1-4] 전체 인구/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 연도별



- 2023년 기준 지역별 등록장애인을 살펴보면, '경기'와 '서울'이 각각 586,421명, 389,795명으로 가장 많음
  - 지역별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은 '전남'이 7.6%로 가장 높고, '전북' 7.4%, '경북' 7.0% 등의 순임
-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2,641,896명)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425,095명(53.9%)으로 고령화수준은 2021년 50%를 돌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1) 장애인구

(1) 등록장애인

〈표 1-1-1〉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1	1,134,177	682,325	64,950	115,911	105,711		94,951	2,516	32,581	28,118	7,114	-	-	-	-	-
2002	1,294,254	754,651	91,998	135,704	123,823		103,640	4,014	39,494	32,094	8,836	-	-	-	-	-
2003	1,454,215	813,916	117,514	152,857	126,488	12,837	112,043	5,717	46,883	34,884	10,409	7,039	3,108	673	6,585	3,262
2004	1,610,994	883,296	142,804	170,107	141,908	13,474	119,207	7,740	54,333	38,175	11,634	9,768	4,072	1,114	8,182	5,180
2005	1,789,443	965,014	168,585	189,933	160,565	15,022	127,881	9,518	63,642	41,823	12,807	11,728	5,160	1,490	9,575	6,700
2006	1,967,326	1,049,396	195,253	196,507	182,361	22,794	137,596	10,926	75,058	44,571	13,739	13,035	5,875	1,863	10,461	7,891
2007	2,104,889	1,114,094	214,751	216,881	203,324	14,882	142,589	11,874	81,961	47,509	14,352	14,289	6,329	2,149	11,184	8,721
2008	2,246,965	1,191,013	232,389	228,126	223,102	15,458	146,898	12,954	86,624	50,474	14,732	14,984	6,968	2,337	11,740	9,166
2009	2,429,547	1,293,331	251,818	241,237	245,801	16,249	154,953	13,933	94,776	54,030	15,127	15,860	7,730	2,505	12,437	9,760
2010	2,517,312	1,337,722	261,746	249,259	260,403	17,207	161,249	14,888	95,821	57,142	12,864	15,551	7,920	2,696	13,072	9,772
2011	2,519,241	1,333,429	260,718	251,258	261,067	17,463	167,479	15,857	94,739	60,110	9,542	14,671	8,145	2,715	13,098	8,950
2012	2,511,159	1,322,131	257,797	252,564	258,589	17,743	173,257	16,906	94,638	63,434	7,744	13,879	8,588	2,709	13,374	7,806
2013	2,501,112	1,309,285	253,493	253,095	255,399	17,830	178,866	18,133	95,675	66,551	6,928	13,150	9,194	2,696	13,546	7,271
2014	2,494,460	1,295,608	251,543	252,825	252,779	18,275	184,355	19,524	96,963	70,434	6,401	12,445	9,668	2,689	13,867	7,084
2015	2,490,406	1,281,497	250,862	252,874	250,334	18,813	189,752	21,103	98,643	74,468	5,833	12,033	10,324	2,685	14,116	7,069
2016	2,511,051	1,267,174	250,456	252,794	271,843	19,409	195,283	22,853	100,089	78,750	5,507	11,831	11,042	2,680	14,404	6,956
2017	2,545,637	1,254,130	252,819	252,632	302,003	20,321	200,903	24,698	101,175	83,562	5,399	11,807	11,843	2,692	14,718	6,935
2018	2,585,876	1,238,532	253,083	252,957	342,582	20,744	206,917	26,703	102,140	87,892	5,304	11,761	12,524	2,689	15,027	7,021
2019	2,618,918	1,223,135	252,188	253,055	377,094	21,485	212,936	28,678	102,980	92,408	5,266	11,522	13,154	2,673	15,290	7,054
2020	2,633,026	1,207,368	250,407	252,324	395,789	22,391	217,108	30,802	103,525	97,530	5,233	11,544	13,808	2,677	15,427	7,093
2021	2,644,700	1,191,462	248,308	251,620	411,749	23,064	221,557	33,650	104,214	102,135	5,166	11,541	14,433	2,712	16,012	7,077
2022	2,648,424	1,174794	244,674	250,391	424,146	23,317	225,607	37,602	104,329	105,569	5,070	11,396	15,032	2,724	16,714	7,069
2023	2,641,896	1,153,501	240,546	248,360	432,854	22,830	229,780	42,744	104,197	108,623	4,933	11,029	15,634	2,757	17,117	6,991
	100.0	43.7	9.1	9.4	16.4	0.9	8.7	1.6	3.9	4.1	0.2	0.4	0.6	0.1	0.6	0.3

주: 2023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2023년 전체 등록장애인 2,641,896명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은 소폭 감소함
  -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3.7%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16.4%, 시각장애 9.4%, 뇌병변장애 9.1%, 지적장애 8.7% 순임

장애유형 변천사
- 1982년 2월: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자(「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제2조)
- 1990년12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으로 변경(「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 2000년 1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1단계 확대: 5유형 → 10유형)
- 2003년 7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2단계 확대: 10유형 → 15개 유형)
  ※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 지적·자폐성장애인으로 변경(2007년 10월 시행), 간질장애인 → 뇌전증장애인(2014년 6월 시행)

〈표 1-1-2〉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계		2,641,896	1,153,501	240,546	248,360	432,854	22,830	229,780	42,744
		100.0	43.7	9.1	9.4	16.4	0.9	8.7	1.6
성별	남	1,529,806	671,330	138,462	147,334	227,155	16,105	138,384	35,350
		57.9	58.2	57.6	59.3	52.5	70.5	60.2	82.7
	여	1,112,090	482,171	102,084	101,026	205,699	6,725	91,396	7,394
		42.1	41.8	42.4	40.7	47.5	29.5	39.8	17.3
생애주기별	영유아기	8,816	234	2,447	138	718	1,361	1,294	2,451
		0.3	0.0	1.0	0.1	0.2	6.0	0.6	5.7
	아동 청소년	83,544	2,993	7,193	1,912	3,032	3,430	40,735	22,988
		3.2	0.3	3.0	0.8	0.7	15.0	17.7	53.8
	청년기	153,249	19,954	11,356	9,693	7,417	917	77,629	15,110
		5.8	1.7	4.7	3.9	1.7	4.0	33.8	35.3
	중장년기	971,192	463,559	79,209	97,251	67,187	8,372	95,384	2,190
		36.8	40.2	32.9	39.2	15.5	36.7	41.5	5.1
	어르신	1,425,095	666,761	140,341	139,366	354,500	8,750	14,738	5
		53.9	57.8	58.3	56.1	81.9	38.3	6.4	0.0
장애정도	심한 장애	978,634	222,833	136,925	45,806	85,694	11,468	229,780	42,744
		37.0	19.3	56.9	18.4	19.8	50.2	100.0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1,663,262	930,668	103,621	202,554	347,160	11,362	-	-
		63.0	80.7	43.1	81.6	80.2	49.8	-	-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임
2)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는 '정부24'를 참고하여 영유아(0~5세), 아동청소년(6~18세),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어르신(65세 이상)으로 구분함
3)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은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등록장애인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등록장애인은 57.9%로 여성 등록장애인 42.1%보다 15.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애주기별로는 어르신이 53.9%로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기가 36.8%, 청년기가 5.8% 순임
  - 장애정도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는 63.0%로 심한 장애인 37.0%보다 26.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함

〈표 1-1-2〉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4,197	108,623	4,933	11,029	15,634	2,757	17,117	6,991
		3.9	4.1	0.2	0.4	0.6	0.1	0.6	0.3
성별	남	52,499	64,950	3,186	8,106	10,846	1,617	10,694	3,788
		50.4	59.8	64.6	73.5	69.4	58.7	62.5	54.2
	여	51,698	43,673	1,747	2,923	4,788	1,140	6,423	3,203
		49.6	40.2	35.4	26.5	30.6	41.3	37.5	45.8
생애주기별	영유아기	-	23	37	2	63	3	23	22
		-	0.0	0.8	0.0	0.4	0.1	0.1	0.3
	아동 청소년	36	182	231	39	331	21	143	278
		0.0	0.2	4.7	0.4	2.1	0.8	0.8	4.0
	청년기	5,760	2,738	677	167	517	192	282	840
		5.5	2.5	13.7	1.5	3.3	7.0	1.6	12.0
	중장년기	76,437	57,111	1,689	3,162	8,704	1,693	4,563	4,681
		73.4	52.6	34.2	28.7	55.7	61.4	26.7	67.0
	어르신	21,964	48,569	2,299	7,659	6,019	848	12,106	1,170
		21.1	44.7	46.6	69.4	38.5	30.8	70.7	16.7
장애정도	심한 장애	102,722	80,961	3,661	10,487	660	1,375	1,613	1,905
		98.6	74.5	74.2	95.1	4.2	49.9	9.4	27.2
	심하지 않은 장애	1,475	27,662	1,272	542	14,974	1,382	15,504	5,086
		1.4	25.5	25.8	4.9	95.8	50.1	90.6	72.8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임
2)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는 '정부24'를 참고하여 영유아(0~5세), 아동청소년(6~18세),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어르신(65세 이상)으로 구분함
3)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은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장애유형을 성별로 살펴보면, 자폐성 장애는 남성이 82.7%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언어·지적·자폐성·심장·뇌전증을 제외한 장애유형의 경우, 중장년기 이후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함
- 장애유형을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지적, 자폐성의 경우 심한장애의 비율이 100.0%를 차지하고, 정신·호흡기 장애 또한 심한장애의 비율이 약 95.0% 이상 나타남. 반면, 간·장루요루 장애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의 비율이 약 90.0% 이상 나타남

〈표 1-1-3〉 등록장애인수 - 지역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07	2,104,889	346,275	148,145	100,082	108,823	57,280	59,978	40,758	-
2008	2,246,965	368,955	156,966	106,448	116,697	61,575	64,348	44,402	-
2009	2,429,547	401,638	168,493	113,509	126,878	66,191	68,884	47,210	-
2010	2,517,312	414,522	172,765	117,141	131,815	68,518	71,164	49,013	-
2011	2,519,241	411,570	171,729	117,183	132,732	68,675	71,626	48,926	-
2012	2,511,159	407,528	170,743	116,839	133,467	68,534	71,647	48,982	7,081
2013	2,501,112	403,435	169,750	116,567	133,778	68,372	71,441	48,950	7,202
2014	2,494,460	398,908	168,663	115,983	133,855	68,288	71,198	49,014	7,943
2015	2,490,406	393,245	168,084	115,694	134,191	68,079	70,890	49,326	9,079
2016	2,511,051	391,027	168,950	117,111	135,623	68,569	71,425	49,533	9,845
2017	2,545,637	391,753	171,384	119,766	138,304	69,233	72,180	50,205	10,623
2018	2,585,876	392,920	173,820	123,070	141,771	69,884	72,927	50,640	11,404
2019	2,618,918	394,843	175,378	125,485	144,574	70,177	73,222	51,014	12,046
2020	2,633,026	394,190	176,293	126,398	146,321	70,061	72,853	51,122	12,346
2021	2,644,700	392,123	176,451	127,282	148,646	69,819	72,489	51,330	12,630
2022	2,648,424	390,997	176,069	127,439	150,892	69,454	71,915	51,402	12,848
2023	2,641,896	389,795	175,467	130,521	152,226	69,314	71,440	51,383	12,944
	100.0	14.8	6.6	4.9	5.8	2.6	2.7	1.9	0.5

주: 2023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2023년 말 기준 지역별 등록장애인 살펴보면, 경기도가 2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14.7%, 경남 7.1%, 경북 6.7%, 부산 6.6% 순임

〈표 1-1-3〉 등록장애인수 - 지역별, 연도별(계속)

(단위: 명,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407,247	85,594	79,826	107,895	116,141	125,731	143,009	151,785	26,320
2008	435,698	91,448	85,097	116,908	120,481	134,898	151,898	162,753	28,393
2009	477,021	97,604	90,958	125,556	130,807	144,039	164,885	175,198	30,676
2010	500,704	101,067	94,654	130,646	134,235	147,918	170,396	180,880	31,874
2011	505,052	101,283	94,855	131,108	134,239	146,524	170,479	181,044	32,216
2012	505,519	100,579	94,137	124,872	133,054	145,788	169,699	180,285	32,405
2013	506,464	99,660	93,563	124,561	132,006	144,324	168,836	179,530	32,673
2014	508,330	98,970	93,612	124,721	130,932	143,128	168,650	179,276	32,989
2015	512,882	98,324	93,536	124,801	129,769	141,837	168,089	179,070	33,510
2016	522,437	98,928	94,688	126,406	130,345	141,578	169,643	180,665	34,278
2017	533,259	99,959	95,844	128,503	131,303	142,174	172,533	183,510	35,104
2018	547,386	100,693	97,086	131,910	131,746	142,213	176,550	186,016	35,840
2019	559,878	101,484	97,688	133,724	132,364	141,888	180,898	187,968	36,287
2020	569,726	101,615	97,932	134,250	132,207	140,942	181,366	188,749	36,655
2021	578,668	101,714	97,839	134,749	132,057	139,868	182,538	189,621	36,876
2022	583,782	101,622	97,863	134,698	131,652	138,410	182,373	189,874	37,134
2023	586,421	100,520	97,117	134,004	130,189	136,472	178,340	188,825	36,918
	22.2	3.8	3.7	5.1	4.9	5.2	6.8	7.1	1.4

주: 2023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지역별 등록장애인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전남·전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증가 추이를 보임
  • 서울·전남·전북의 경우 2010년 이후로 감소추이를 보임

〈표 1-1-4〉 지역별 등록장애인수 - 생애주기별

(단위: 명, %)

구분	전국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어르신
계	2,641,896	8,816	83,544	153,249	971,192	1,425,095
	100.0	0.3	3.2	5.8	36.8	53.9
서울	389,795	1,343	11,815	24,999	136,581	215,057
	100.0	0.3	3.0	6.4	35.0	55.2
부산	175,467	605	5,212	9,280	61,735	98,635
	100.0	0.3	3.0	5.3	35.2	56.2
대구	130,521	486	3,942	7,636	47,854	70,603
	100.0	0.4	3.0	5.9	36.7	54.1
인천	152,226	505	4,953	8,789	58,461	79,518
	100.0	0.3	3.3	5.8	38.4	52.2
광주	69,314	224	2,798	5,210	27,782	33,300
	100.0	0.3	4.0	7.5	40.1	48.0
대전	71,440	254	2,640	5,214	28,105	35,227
	100.0	0.4	3.7	7.3	39.3	49.3
울산	51,383	181	1,944	3,334	20,624	25,300
	100.0	0.4	3.8	6.5	40.1	49.2
세종	12,944	86	691	941	5,188	6,038
	100.0	0.7	5.3	7.3	40.1	46.6
경기	586,421	2,403	22,202	38,269	229,514	294,033
	100.0	0.4	3.8	6.5	39.1	50.1
강원	100,520	224	2,318	4,632	35,614	57,732
	100.0	0.2	2.3	4.6	35.4	57.4
충북	97,117	285	2,952	5,845	36,342	51,693
	100.0	0.3	3.0	6.0	37.4	53.2
충남	134,004	450	3,895	6,913	47,865	74,881
	100.0	0.3	2.9	5.1	35.7	55.9
전북	130,189	284	3,272	6,134	44,479	76,020
	100.0	0.2	2.5	4.7	34.2	58.4
전남	136,472	273	3,076	5,869	45,612	81,642
	100.0	0.2	2.3	4.3	33.4	59.8
경북	178,340	457	4,457	8,247	60,118	105,061
	100.0	0.3	2.5	4.6	33.7	58.9
경남	188,825	592	5,731	9,603	71,348	101,551
	100.0	0.3	3.0	5.1	37.8	53.8
제주	36,918	164	1,646	2,334	13,970	18,804
	100.0	0.4	4.5	6.3	37.8	50.9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임
2)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는 '정부24'를 참고하여 영유아(0~5세), 아동청소년(6~18세),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어르신(65세 이상)으로 구분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2023년 말 기준 지역별 등록장애인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어르신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르신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50.0% 이상임
  • '어르신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9.8%)이며, 그 다음으로 경북(58.9%), 전북(58.4%), 강원(57.4%) 순임

〈표 1-1-5〉 지역별 등록장애인수 -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전국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계	2,641,896	1,153,501	240,546	248,360	432,854	22,830	229,780	42,744
	100.0	43.7	9.1	9.4	16.4	0.9	8.7	1.6
서울	389,795	160,403	38,940	40,706	63,858	3,308	28,025	8,305
	100.0	41.2	10.0	10.4	16.4	0.8	7.2	2.1
부산	175,467	73,936	18,616	17,583	27,198	1,593	12,862	2,862
	100.0	42.1	10.6	10.0	15.5	0.9	7.3	1.6
대구	130,521	49,676	12,228	11,854	28,780	1,154	11,129	1,802
	100.0	38.1	9.4	9.1	22.1	0.9	8.5	1.4
인천	152,226	66,609	13,281	13,794	28,060	1,506	11,749	2,343
	100.0	43.8	8.7	9.1	18.4	1.0	7.7	1.5
광주	69,314	28,340	6,646	7,097	10,257	609	7,645	1,191
	100.0	40.9	9.6	10.2	14.8	0.9	11.0	1.7
대전	71,440	30,718	6,887	6,811	10,060	618	7,176	1,329
	100.0	43.0	9.6	9.5	14.1	0.9	10.0	1.9
울산	51,383	22,632	4,745	4,788	8,037	451	4,792	900
	100.0	44.0	9.2	9.3	15.6	0.9	9.3	1.8
세종	12,944	5,784	1,098	1,231	1,806	128	1,233	352
	100.0	44.7	8.5	9.5	14.0	1.0	9.5	2.7
경기	586,421	260,670	54,230	54,685	89,417	5,266	49,698	11,767
	100.0	44.5	9.2	9.3	15.2	0.9	8.5	2.0
강원	100,520	48,186	8,720	9,210	15,018	787	8,675	1,068
	100.0	47.9	8.7	9.2	14.9	0.8	8.6	1.1
충북	97,117	43,778	8,203	8,702	14,251	713	11,177	1,155
	100.0	45.1	8.4	9.0	14.7	0.7	11.5	1.2
충남	134,004	60,854	10,438	12,051	22,892	1,053	12,924	1,586
	100.0	45.4	7.8	9.0	17.1	0.8	9.6	1.2
전북	130,189	60,330	10,947	10,844	21,236	1,306	12,848	1,210
	100.0	46.3	8.4	8.3	16.3	1.0	9.9	0.9
전남	136,472	65,662	10,647	13,125	19,974	1,053	12,613	1,202
	100.0	48.1	7.8	9.6	14.6	0.8	9.2	0.9
경북	178,340	75,032	14,704	15,103	37,170	1,312	16,864	1,823
	100.0	42.1	8.2	8.5	20.8	0.7	9.5	1.0
경남	188,825	86,998	16,835	16,783	28,085	1,545	16,620	2,964
	100.0	46.1	8.9	8.9	14.9	0.8	8.8	1.6
제주	36,918	13,893	3,381	3,993	6,755	428	3,750	885
	100.0	37.6	9.2	10.8	18.3	1.2	10.2	2.4

주: 2023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2023년 말 기준 지역별 등록장애인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체장애인의 비율은 전남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47.9%), 전북(46.3%), 경남(46.1%), 충남 45.4% 등의 순임

〈표 1-1-5〉 지역별 등록장애인수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4,197	108,623	4,933	11,029	15,634	2,757	17,117	6,991
	3.9	4.1	0.2	0.4	0.6	0.1	0.6	0.3
서울	16,551	19,121	942	2,112	2,790	393	3,122	1,219
	4.2	4.9	0.2	0.5	0.7	0.1	0.8	0.3
부산	8,190	8,377	415	922	937	226	1,198	552
	4.7	4.8	0.2	0.5	0.5	0.1	0.7	0.3
대구	6,003	5,363	229	387	758	147	684	327
	4.6	4.1	0.2	0.3	0.6	0.1	0.5	0.3
인천	4,945	6,740	264	596	791	147	1,008	393
	3.2	4.4	0.2	0.4	0.5	0.1	0.7	0.3
광주	3,206	2,740	129	273	417	63	433	268
	4.6	4.0	0.2	0.4	0.6	0.1	0.6	0.4
대전	3,268	3,024	118	272	387	82	427	263
	4.6	4.2	0.2	0.4	0.5	0.1	0.6	0.4
울산	1,476	2,296	159	253	388	76	270	120
	2.9	4.5	0.3	0.5	0.8	0.1	0.5	0.2
세종	481	535	25	58	85	14	89	25
	3.7	4.1	0.2	0.4	0.7	0.1	0.7	0.2
경기	20,195	26,617	1,243	2,475	4,046	651	4,033	1,428
	3.4	4.5	0.2	0.4	0.7	0.1	0.7	0.2
강원	3,239	3,447	127	452	559	104	706	222
	3.2	3.4	0.1	0.4	0.6	0.1	0.7	0.2
충북	3,682	3,519	141	333	520	92	624	227
	3.8	3.6	0.1	0.3	0.5	0.1	0.6	0.2
충남	5,328	4,313	197	515	599	125	851	278
	4.0	3.2	0.1	0.4	0.4	0.1	0.6	0.2
전북	5,458	3,797	146	330	521	124	683	409
	4.2	2.9	0.1	0.3	0.4	0.1	0.5	0.3
전남	5,620	4,115	168	447	668	92	722	364
	4.1	3.0	0.1	0.3	0.5	0.1	0.5	0.3
경북	7,277	5,721	270	600	998	192	908	366
	4.1	3.2	0.2	0.3	0.6	0.1	0.5	0.2
경남	7,966	7,261	291	779	950	200	1,132	416
	4.2	3.8	0.2	0.4	0.5	0.1	0.6	0.2
제주	1,312	1,637	69	225	220	29	227	114
	3.6	4.4	0.2	0.6	0.6	0.1	0.6	0.3

주: 2023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청각, 지적, 자폐성 장애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청각 장애인의 비율은 대구, 경북이 각각 22.1%, 20.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편임
  - 지적 장애인의 비율은 충북, 광주가 각각 11.5%, 11.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편임

〈표 1-1-6〉 신규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연도별	2021	86,957	14,428	13,217	6,497	28,525	2,001	5,214	2,085
	2022	79,757	13,352	12,104	5,939	25,554	1,866	4,797	2,531
	2023	86,287	14,417	13,166	6,356	26,917	1,688	5,297	3,312
		100.0	16.7	15.3	7.4	31.2	2.0	6.1	3.8
성별	남	49,587	7,558	7,541	3,609	14,353	1,196	3,305	2,608
		57.5	52.4	57.3	56.8	53.3	70.9	62.4	78.7
	여	36,700	6,859	5,625	2,747	12,564	492	1,992	704
		42.5	47.6	42.7	43.2	46.7	29.1	37.6	21.3
생애주기별	영유아기	3,984	53	580	39	117	804	740	1,594
		4.6	0.4	4.4	0.6	0.4	47.6	14.0	48.1
	아동 청소년	6,101	452	136	128	62	273	3,279	1,660
		7.1	3.1	1.0	2.0	0.2	16.2	61.9	50.1
	청년기	3,042	749	236	276	80	25	600	56
		3.5	5.2	1.8	4.3	0.3	1.5	11.3	1.7
	중장년기	24,568	5,965	4,971	2,305	2,962	266	656	2
		28.5	41.4	37.8	36.3	11.0	15.8	12.4	0.1
	어르신	48,592	7,198	7,243	3,608	23,696	320	22	-
		56.3	49.9	55.0	56.8	88.0	19.0	0.4	-
장애정도	심한 장애	29,720	1,702	6,252	666	443	568	5,297	3,312
		34.4	11.8	47.5	10.5	1.6	33.6	100.0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56,567	12,715	6,914	5,690	26,474	1,120	-	-
		65.6	88.2	52.5	89.5	98.4	66.4	-	-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은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
3)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는 '정부24'를 참고하여 영유아(0~5세), 아동청소년(6~18세),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어르신(65세 이상)으로 구분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2023년 신규 등록장애인 86,287명으로 2022년 대비 6,521명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가 26,917명으로 전체 신규 등록장애인 중 31.2%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16.7%, 뇌병변장애 15.3%, 신장장애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1-6〉 신규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연도별	2021	2,123	8,948	236	871	944	54	1,594	220
	2022	1,765	8,220	202	781	933	40	1,484	189
	2023	2,018	9,249	226	886	992	41	1,557	165
		2.3	10.7	0.3	1.0	1.1	0.0	1.8	0.2
성별	남	960	5,763	162	705	667	29	1,030	101
		47.6	62.3	71.7	79.6	67.2	70.7	66.2	61.2
	여	1,058	3,486	64	181	325	12	527	64
		52.4	37.7	28.3	20.4	32.8	29.3	33.8	38.8
생애주기별	영유아기	-	8	12	-	22	-	8	7
		-	0.1	5.3	-	2.2	-	0.5	4.2
	아동 청소년	21	21	10	6	20	-	11	22
		1.0	0.2	4.4	0.7	2.0	-	0.7	13.3
	청년기	604	285	17	20	30	4	24	36
		29.9	3.1	7.5	2.3	3.0	9.8	1.5	21.8
	중장년기	1,283	4,188	127	307	746	32	665	93
		63.6	45.3	56.2	34.7	75.2	78.0	42.7	56.4
	어르신	110	4,747	60	553	174	5	849	7
		5.5	51.3	26.5	62.4	17.5	12.2	54.5	4.2
장애정도	심한 장애	1,612	8,695	141	834	99	6	75	18
		79.9	94.0	62.4	94.1	10.0	14.6	4.8	10.9
	심하지 않은 장애	406	554	85	52	893	35	1,482	147
		20.1	6.0	37.6	5.9	90.0	85.4	95.2	89.1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은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
3)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는 '정부24'를 참고하여 영유아(0~5세), 아동청소년(6~18세),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어르신(65세 이상)으로 구분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성별로는 남성 신규 등록장애인은 57.5%로 여성 신규 등록장애인 42.5%보다 15.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애주기별로는 어르신이 56.3%로 가장 높고, 중장년기 28.5%, 아동청소년기 7.1% 순임
- 장애정도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는 65.6%로 심한 장애인 34.4%보다 31.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7〉 신규 등록장애인(2023) - 장애유형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전국	86,287	14,417	13,166	6,356	26,917	1,688	5,297	3,312	2,018	9,249	226	886	992	41	1,557	165
(100.0)	(100.0)	(16.7)	(15.3)	(7.4)	(31.2)	(2.0)	(6.1)	(3.8)	(2.3)	(10.7)	(0.3)	(1.0)	(1.1)	(0.0)	(1.8)	(0.2)
서울	14,476	2,158	2,261	1,190	4,826	214	574	596	424	1,560	20	160	169	6	288	30
(16.8)	(100.0)	(14.9)	(15.6)	(8.2)	(33.3)	(1.5)	(4.0)	(4.1)	(2.9)	(10.8)	(0.1)	(1.1)	(1.2)	(0.0)	(2.0)	(0.2)
부산	6,249	1,026	976	499	1,908	123	305	237	147	759	18	53	61	3	120	14
(7.2)	(100.0)	(16.4)	(15.6)	(8.0)	(30.5)	(2.0)	(4.9)	(3.8)	(2.4)	(12.1)	(0.3)	(0.8)	(1.0)	(0.0)	(1.9)	(0.2)
대구	4,887	578	669	302	2,160	73	274	137	108	428	12	25	45	4	63	9
(5.7)	(100.0)	(11.8)	(13.7)	(6.2)	(44.2)	(1.5)	(5.6)	(2.8)	(2.2)	(8.8)	(0.2)	(0.5)	(0.9)	(0.1)	(1.3)	(0.2)
인천	5,470	780	762	363	2,045	145	308	178	87	585	21	51	55	2	77	11
(6.3)	(100.0)	(14.3)	(13.9)	(6.6)	(37.4)	(2.7)	(5.6)	(3.3)	(1.6)	(10.7)	(0.4)	(0.9)	(1.0)	(0.0)	(1.4)	(0.2)
광주	2,218	419	365	161	506	53	197	84	63	276	6	19	31	1	36	1
(2.6)	(100.0)	(18.9)	(16.5)	(7.3)	(22.8)	(2.4)	(8.9)	(3.8)	(2.8)	(12.4)	(0.3)	(0.9)	(1.4)	(0.0)	(1.6)	(0.0)
대전	2,157	419	374	155	468	47	166	102	74	250	8	26	22	2	37	7
(2.5)	(100.0)	(19.4)	(17.3)	(7.2)	(21.7)	(2.2)	(7.7)	(4.7)	(3.4)	(11.6)	(0.4)	(1.2)	(1.0)	(0.1)	(1.7)	(0.3)
울산	1,568	308	287	124	336	36	116	60	32	182	3	22	22	5	30	5
(1.8)	(100.0)	(19.6)	(18.3)	(7.9)	(21.4)	(2.3)	(7.4)	(3.8)	(2.0)	(11.6)	(0.2)	(1.4)	(1.4)	(0.3)	(1.9)	(0.3)
세종	455	84	72	23	84	23	43	40	9	48	1	12	6	1	9	-
(0.5)	(100.0)	(18.5)	(15.8)	(5.1)	(18.5)	(5.1)	(9.5)	(8.8)	(2.0)	(10.5)	(0.2)	(2.6)	(1.3)	(0.2)	(2.0)	-
경기	19,602	3,317	2,999	1,435	5,742	438	1,286	887	445	2,119	57	222	251	10	356	38
(22.7)	(100.0)	(16.9)	(15.3)	(7.3)	(29.3)	(2.2)	(6.6)	(4.5)	(2.3)	(10.8)	(0.3)	(1.1)	(1.3)	(0.1)	(1.8)	(0.2)
강원	2,686	548	428	227	701	34	182	77	47	310	6	31	44	-	50	1
(3.1)	(100.0)	(20.4)	(15.9)	(8.5)	(26.1)	(1.3)	(6.8)	(2.9)	(1.7)	(11.5)	(0.2)	(1.2)	(1.6)	-	(1.9)	(0.0)
충북	2,826	565	424	213	687	56	248	113	62	330	13	32	30	-	49	4
(3.3)	(100.0)	(20.0)	(15.0)	(7.5)	(24.3)	(2.0)	(8.8)	(4.0)	(2.2)	(11.7)	(0.5)	(1.1)	(1.1)	-	(1.7)	(0.1)
충남	3,831	698	591	292	1,118	57	321	130	94	367	9	40	31	-	69	14
(4.4)	(100.0)	(18.2)	(15.4)	(7.6)	(29.2)	(1.5)	(8.4)	(3.4)	(2.5)	(9.6)	(0.2)	(1.0)	(0.8)	-	(1.8)	(0.4)
전북	3,908	657	599	248	1,406	110	223	87	74	370	4	25	33	2	65	5
(4.5)	(100.0)	(16.8)	(15.3)	(6.3)	(36.0)	(2.8)	(5.7)	(2.2)	(1.9)	(9.5)	(0.1)	(0.6)	(0.8)	(0.1)	(1.7)	(0.1)
전남	3,452	759	568	268	832	67	256	106	82	355	7	32	45	-	68	7
(4.0)	(100.0)	(22.0)	(16.5)	(7.8)	(24.1)	(1.9)	(7.4)	(3.1)	(2.4)	(10.3)	(0.2)	(0.9)	(1.3)	-	(2.0)	(0.2)
경북	5,625	855	761	327	2,292	83	339	155	100	476	13	49	69	3	92	11
(6.5)	(100.0)	(15.2)	(13.5)	(5.8)	(40.7)	(1.5)	(6.0)	(2.8)	(1.8)	(8.5)	(0.2)	(0.9)	(1.2)	(0.1)	(1.6)	(0.2)
경남	5,661	1,077	860	446	1,481	96	341	244	148	683	27	71	62	-	118	7
(6.6)	(100.0)	(19.0)	(15.2)	(7.9)	(26.2)	(1.7)	(6.0)	(4.3)	(2.6)	(12.1)	(0.5)	(1.3)	(1.1)	-	(2.1)	(0.1)
제주	1,216	169	170	83	325	33	118	79	22	151	1	16	16	2	30	1
(1.4)	(100.0)	(13.9)	(14.0)	(6.8)	(26.7)	(2.7)	(9.7)	(6.5)	(1.8)	(12.4)	(0.1)	(1.3)	(1.3)	(0.2)	(2.5)	(0.1)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임
2) 지역 하단에 표기한 ( )는 전체 신규 등록장애인 대비 지역별 신규 등록장애인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신규 등록장애인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9,602명으로 전체 신규 등록장애인 중 22.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서울 16.8%, 부산 7.2%, 경남 6.6%, 경북 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신규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신규등록장애인의 비율과 유사함

〈표 1-1-8〉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장애인구	장애인구 비율
2001	48,021,543	1,134,177	2.4
2002	48,229,948	1,294,254	2.7
2003	48,386,823	1,454,215	3.0
2004	48,583,805	1,610,994	3.3
2005	48,782,274	1,789,443	3.7
2006	48,991,779	1,967,326	4.0
2007	49,268,928	2,104,889	4.3
2008	49,540,367	2,246,965	4.5
2009	49,773,145	2,429,547	4.9
2010	50,515,666	2,517,312	5.0
2011	50,734,284	2,519,241	5.0
2012	50,948,272	2,511,159	4.9
2013	51,141,463	2,501,112	4.9
2014	51,327,916	2,494,460	4.9
2015	51,529,338	2,490,406	4.8
2016	51,696,216	2,511,051	4.9
2017	51,778,544	2,545,637	4.9
2018	51,826,059	2,585,876	5.0
2019	51,849,861	2,618,918	5.1
2020	51,829,023	2,633,026	5.1
2021	51,638,809	2,644,700	5.1
2022	51,439,038	2,648,424	5.1
2023	51,325,329	2,641,896	5.1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임
2) 비율은 장애인구/주민등록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통계청·각시도(정책)기획관리실, 행정자치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우리나라의 전체 주민등록 인구가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20년 이후 감소하는 것에 비해 장애인구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함
  •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41,896명으로 전체인구(51,325,329명) 대비 약 5.1%임.

〈표 1-1-9〉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비율 – 지역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4.3	3.4	4.1	4.0	4.1	4.1	4.1	3.7	-	3.7	5.7	5.3	5.4	6.2	6.5	5.3	4.7	4.7
2008	4.5	3.6	4.4	4.3	4.3	4.3	4.3	4.0	-	3.9	6.1	5.6	5.8	6.5	7.0	5.7	5.0	5.1
2009	4.9	3.9	4.8	4.6	4.7	4.6	4.6	4.2	-	4.2	6.5	6.0	6.2	7.1	7.5	6.2	5.4	5.5
2010	5.0	4.0	4.8	4.7	4.8	4.7	4.7	4.4	-	4.2	6.6	6.1	6.3	7.2	7.7	6.3	5.5	5.6
2011	5.0	4.0	4.8	4.7	4.7	4.7	4.7	4.3	-	4.2	6.6	6.1	6.2	7.2	7.7	6.3	5.5	5.6
2012	4.9	4.0	4.8	4.7	4.7	4.7	4.7	4.3	6.3	4.2	6.5	6.0	6.2	7.1	7.6	6.3	5.4	5.6
2013	4.9	4.0	4.8	4.7	4.6	4.6	4.7	4.2	5.9	4.1	6.5	5.9	6.1	7.0	7.6	6.3	5.4	5.5
2014	4.9	3.9	4.8	4.7	4.6	4.6	4.6	4.2	5.1	4.1	6.4	5.9	6.0	7.0	7.5	6.2	5.4	5.4
2015	4.8	3.9	4.8	4.7	4.6	4.6	4.7	4.2	4.3	4.1	6.3	5.9	6.0	6.9	7.4	6.2	5.3	5.4
2016	4.9	3.9	4.8	4.7	4.6	4.7	4.7	4.2	4.1	4.1	6.4	5.9	6.0	7.0	7.4	6.3	5.4	5.3
2017	4.9	4.0	4.9	4.8	4.7	4.7	4.8	4.3	3.8	4.1	6.4	6.0	6.1	7.1	7.5	6.4	5.4	5.3
2018	5.0	4.0	5.1	5.0	4.8	4.8	4.9	4.4	3.6	4.2	6.5	6.1	6.2	7.2	7.6	6.6	5.5	5.4
2019	5.1	4.1	5.1	5.1	4.9	4.8	5.0	4.4	3.5	4.2	6.6	6.1	6.3	7.3	7.6	6.8	5.6	5.4
2020	5.1	4.1	5.2	5.2	5.0	4.8	5.0	4.5	3.5	4.2	6.6	6.1	6.3	7.3	7.6	6.9	5.7	5.4
2021	5.1	4.1	5.3	5.3	5.0	4.8	5.0	4.6	3.4	4.3	6.6	6.1	6.4	7.4	7.6	6.9	5.7	5.4
2022	5.1	4.1	5.3	5.4	5.1	4.9	5.0	4.6	3.3	4.3	6.6	6.1	6.3	7.4	7.6	7.0	5.8	5.5
2023	5.1	4.2	5.3	5.5	5.1	4.9	5.0	4.7	3.3	4.3	6.6	6.1	6.3	7.4	7.6	7.0	5.8	5.5

주: 2023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1) 통계청·각시도(정책)기획관리실, 행정자치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지역에 따른 연도별 장애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장애인구의 비율은 유지 및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07년 대비 2023년에 가장 높은 장애인구 비율 증가를 보인 지역은 경북으로 약 1.7%p 만큼 증가했으며, 대구 1.5%p, 부산 1.2%p 순임
  - 그 외 전북(1.1%p), 전남(1.1%p), 경남(1.1%p), 제주(1.1%p), 인천(1.0%p), 울산(1.0%p), 충남(0.9%p), 강원(0.9%p), 대전(0.9%p) 은 전국 평균(0.8%p)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0.8%p), 광주(0.8%p), 충북(0.8%p)의 장애인구 비율은 유지되었고, 경기(0.6%p)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

(2) 장애인 출현율

〈표 1-1-10〉 장애인 출현율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중복장애
2011	5.61	2.72	0.59	0.51	0.50	0.04	0.28	0.01	0.23	0.10	0.04	0.04	0.02	0.00	0.03	0.02	0.48
2014	5.59	2.71	0.48	0.53	0.50	0.03	0.36	0.02	0.23	0.12	0.02	0.03	0.02	0.01	0.03	0.01	0.49
2017	5.39	2.51	0.52	0.51	0.52	0.03	0.38	0.03	0.22	0.15	0.01	0.02	0.02	0.01	0.03	0.02	0.42

주: 1) 2011년의 경우 시설 거주 장애인 중 중복 장애를 반영함
2) 2014, 2016년의 경우 재가장애인은 중복장애를 별도 산정하였으나, 시설장애인은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하여 중복장애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 가지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3) 2008, 2020년 조사는 등록장애인DB를 모집단으로 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출현율을 제시하지 않음(출처: 2020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111.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110.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1.22.

-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2014년 5.59%에서 2017년 5.39%로 다소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7년 출현율이 0.52%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한 것임

(3) 장애영유아 현황

〈표 1-1-11〉 장애영유아 현황 - 연령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영유아 인구	장애영유아 인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비율
2010	2,734,976	8,448	36	493	1,170	1,880	2,122	2,747	0.31
2011	2,777,209	7,933	37	401	1,023	1,569	2,322	2,581	0.29
2012	2,816,103	7,886	33	508	1,097	1,473	1,967	2,808	0.28
2013	2,769,255	7,442	29	437	1,088	1,549	1,908	2,431	0.27
2014	2,741,835	7,657	31	446	1,067	1,583	2,032	2,498	0.28
2015	2,739,901	8,122	26	459	1,066	1,566	2,196	2,809	0.30
2016	2,680,088	8,598	46	521	1,047	1,583	2,293	3,108	0.32
2017	2,568,516	8,983	46	517	1,157	1,640	2,313	3,310	0.35
2018	2,415,349	9,175	41	482	1,066	1,804	2,482	3,300	0.38
2019	2,285,605	9,679	43	483	1,014	1,721	2,898	3,520	0.42
2020	2,121,390	9,729	36	381	916	1,614	2,825	3,957	0.46
2021	1,943,208	9,692	28	409	801	1,599	2,734	4,121	0.50
2022	1,622,509	9,233	20	354	728	1,320	2,701	4,110	0.52
2023	1,668,293	8,816	25	330	730	1,180	2,324	4,227	0.53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영유아는「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근거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함: 「제2조(정의)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비율은 '장애영유아 인구/전체 영유아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4-06-10)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영유아 인구(1,668,393명) 대비 장애영유아 인구(8,816명)의 비율은 0.53%로 나타남
  • 연도별로 장애영유아 인구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함

〈표 1-1-12〉 장애영유아 현황 – 지역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2008	523,287	1,538	0.3	157,882	580	0.4	127,920	440	0.3	154,506	522	0.3	87,243	254	0.3	89,887	337	0.4
2009	511,746	1,507	0.3	153,636	539	0.4	124,359	434	0.3	152,192	555	0.4	85,754	266	0.3	87,627	337	0.4
2010	502,633	1,405	0.3	153,080	524	0.3	123,208	438	0.4	152,329	553	0.4	85,822	276	0.3	87,180	343	0.4
2011	502,766	1,331	0.3	156,472	489	0.3	124,198	422	0.3	158,758	513	0.3	87,003	252	0.3	89,215	319	0.4
2012	502,984	1,292	0.3	160,319	487	0.3	126,056	409	0.3	164,473	506	0.3	87,735	227	0.3	90,620	325	0.4
2013	489,543	1,261	0.3	159,465	497	0.3	123,728	387	0.3	163,530	479	0.3	85,828	192	0.2	89,639	287	0.3
2014	480,047	1,324	0.3	159,816	521	0.3	122,409	385	0.3	162,895	484	0.3	84,480	213	0.3	87,879	279	0.3
2015	472,648	1,420	0.3	162,479	565	0.3	122,626	402	0.3	162,895	500	0.3	83,026	222	0.3	85,620	250	0.3
2016	453,439	1,465	0.3	160,015	615	0.4	120,756	418	0.3	158,698	525	0.3	80,055	225	0.3	83,041	303	0.4
2017	429,218	1,539	0.4	152,465	672	0.4	115,998	444	0.4	150,553	539	0.4	76,483	241	0.3	78,013	320	0.4
2018	394,198	1,479	0.4	142,927	682	0.5	109,021	467	0.4	141,271	492	0.3	71,502	230	0.3	71,977	354	0.5
2019	369,938	1,486	0.4	134,093	734	0.5	102,851	473	0.5	133,224	550	0.4	67,419	225	0.3	66,304	339	0.5
2020	339,289	1,481	0.4	123,962	728	0.6	94,343	463	0.5	122,051	550	0.5	62,164	230	0.4	60,634	294	0.5
2021	307,525	1,449	0.5	112,344	701	0.6	85,308	474	0.6	112,522	538	0.5	57,894	238	0.4	55,312	277	0.5
2022	282,707	1,368	0.5	102,950	653	0.6	77,883	503	0.7	106,904	517	0.5	53,473	236	0.4	52,168	258	0.5
2023	263,305	1,343	0.5	94,922	605	0.6	72,799	486	0.7	103,151	505	0.5	48,933	224	0.5	49,085	254	0.5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근거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함: 「제2조(정의)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비율은 '장애영유아 인구/지역별 전체 영유아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4-06-10)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연도별, 지역별로 장애영유아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08년 대비 2023년 장애영유아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대구로 약 0.4%p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는 약 0.3%p 증가함(세종은 2008년 자료가 없으므로 비교에서 제외)

〈표 1-1-12〉 장애영유아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2008	67,142	184	0.3	-	-	-	733,284	2,266	0.3	78,474	244	0.3	85,787	262	0.3	117,283	344	0.3
2009	66,078	177	0.3	-	-	-	725,746	2,254	0.3	76,946	262	0.3	84,846	271	0.3	117,882	362	0.3
2010	66,090	200	0.3	-	-	-	734,996	2,183	0.3	75,851	237	0.3	85,391	256	0.3	119,513	342	0.3
2011	67,754	172	0.3	-	-	-	748,040	2,079	0.3	75,635	230	0.3	87,291	235	0.3	123,274	333	0.3
2012	69,826	196	0.3	7,360	11	0.1	758,105	2,091	0.3	75,796	217	0.3	88,139	225	0.3	120,211	334	0.3
2013	69,574	177	0.3	8,052	14	0.2	746,577	1,978	0.3	73,455	193	0.3	86,592	204	0.2	118,938	328	0.3
2014	70,124	177	0.3	11,783	19	0.2	737,803	2,065	0.3	72,309	191	0.3	85,340	214	0.3	117,484	347	0.3
2015	70,709	204	0.3	17,888	35	0.2	738,754	2,149	0.3	71,392	222	0.3	84,670	239	0.3	117,546	345	0.3
2016	69,468	196	0.3	20,671	39	0.2	729,339	2,329	0.3	69,029	233	0.3	82,861	258	0.3	115,819	366	0.3
2017	66,455	215	0.3	23,564	55	0.2	706,088	2,370	0.3	65,614	215	0.3	79,261	266	0.3	112,339	389	0.3
2018	61,743	208	0.3	25,520	69	0.3	677,880	2,507	0.4	61,381	194	0.3	75,035	268	0.4	106,134	391	0.4
2019	57,822	217	0.4	26,837	83	0.3	651,271	2,752	0.4	59,096	185	0.3	70,938	274	0.4	99,617	430	0.4
2020	52,566	250	0.5	26,208	104	0.4	615,708	2,766	0.4	56,583	187	0.3	66,339	278	0.4	92,278	475	0.5
2021	46,869	232	0.5	25,207	93	0.4	572,784	2,685	0.5	53,153	232	0.4	61,100	299	0.5	84,101	512	0.6
2022	41,857	213	0.5	23,853	68	0.3	533,496	2,509	0.5	50,371	219	0.4	55,804	272	0.5	77,210	472	0.6
2023	38,041	181	0.5	21,727	86	0.4	501,387	2,403	0.5	47,443	224	0.5	52,270	285	0.5	71,639	450	0.6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근거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함: 「제2조(정의)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비율은 '장애영유아 인구/지역별 전체 영유아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4-06-10)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표 1-1-12〉 장애영유아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2008	98,863	312	0.3	98,315	294	0.3	138,585	404	0.3	188,721	634	0.3	35,793	139	0.4
2009	96,787	323	0.3	95,844	293	0.3	134,724	422	0.3	187,727	599	0.3	34,643	141	0.4
2010	96,178	309	0.3	95,123	246	0.3	134,446	409	0.3	188,640	604	0.3	34,496	123	0.4
2011	97,233	283	0.3	96,196	237	0.2	136,529	360	0.3	192,054	561	0.3	34,791	117	0.3
2012	98,167	292	0.3	97,468	221	0.2	138,395	320	0.2	195,016	606	0.3	35,433	127	0.4
2013	96,006	263	0.3	95,456	192	0.2	136,156	319	0.2	191,336	546	0.3	35,380	125	0.4
2014	94,369	246	0.3	94,151	210	0.2	134,949	306	0.2	190,029	539	0.3	35,968	137	0.4
2015	93,151	259	0.3	94,460	237	0.3	135,507	320	0.2	189,730	595	0.3	36,800	158	0.4
2016	89,923	295	0.3	91,910	257	0.3	133,079	333	0.3	184,865	600	0.3	37,120	140	0.4
2017	84,546	328	0.4	87,010	250	0.3	126,956	375	0.3	177,307	645	0.4	36,646	120	0.3
2018	77,965	310	0.4	80,516	249	0.3	117,991	418	0.4	165,098	709	0.4	35,190	148	0.4
2019	72,052	313	0.4	75,543	244	0.3	110,542	484	0.4	154,348	738	0.5	33,710	152	0.5
2020	65,896	290	0.4	70,300	250	0.4	101,387	458	0.5	140,064	754	0.5	31,618	171	0.5
2021	59,169	298	0.5	63,771	266	0.4	91,859	473	0.5	124,927	760	0.6	29,363	165	0.6
2022	53,699	305	0.6	58,305	287	0.5	82,877	496	0.6	111,035	685	0.6	27,196	172	0.6
2023	49,227	284	0.6	54,397	273	0.5	74,941	457	0.6	100,004	592	0.6	25,022	164	0.7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근거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함: 「제2조(정의)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비율은 '장애영유아 인구/지역별 전체 영유아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4-06-10)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표 1-1-13〉 장애영유아 현황(2023) -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유아 비율
전체	2,641,896 (100.0)	8,816 (100.0)	25 (100.0)	330 (100.0)	730 (100.0)	1,180 (100.0)	2,324 (100.0)	4,227 (100.0)	0.33
지체	1,153,501 (43.7)	234 (2.7)	1 (4.0)	21 (6.4)	34 (4.7)	46 (3.9)	60 (2.6)	72 (1.7)	0.02
시각	248,360 (9.4)	138 (1.6)	- -	8 (2.4)	11 (1.5)	25 (2.1)	36 (1.5)	58 (1.4)	0.06
청각	432,854 (16.4)	718 (8.1)	24 (96.0)	90 (27.3)	117 (16.0)	142 (12.0)	161 (6.9)	184 (4.4)	0.17
언어	22,830 (0.9)	1,361 (15.4)	- -	- -	- -	106 (9.0)	443 (19.1)	812 (19.2)	5.96
지적	229,780 (8.7)	1,294 (14.7)	- -	- -	28 (3.8)	127 (10.8)	320 (13.8)	819 (19.4)	0.56
뇌병변	240,546 (9.1)	2,447 (27.8)	- -	196 (59.4)	499 (68.4)	550 (46.6)	573 (24.7)	629 (14.9)	1.02
자폐	42,744 (1.6)	2,451 (27.8)	- -	- -	13 (1.8)	151 (12.8)	676 (29.1)	1,611 (38.1)	5.73
정신	104,197 (3.9)	- -	- -	- -	- -	- -	- -	- -	-
신장	108,623 (4.1)	23 (0.3)	- -	5 (1.5)	5 (0.7)	2 (0.2)	5 (0.2)	6 (0.1)	0.02
심장	4,933 (0.2)	37 (0.4)	- -	- -	6 (0.8)	9 (0.8)	8 (0.3)	14 (0.3)	0.75
호흡기	11,029 (0.4)	2 (0.0)	- -	- -	- -	- -	2 (0.1)	- -	0.02
간	15,634 (0.6)	63 (0.7)	- -	8 (2.4)	10 (1.4)	14 (1.2)	17 (0.7)	14 (0.3)	0.40
안면	2,757 (0.1)	3 (0.0)	- -	- -	1 (0.1)	- -	- -	2 (0.0)	0.11
장루·요루	17,117 (0.6)	23 (0.3)	- -	2 (0.6)	2 (0.3)	3 (0.3)	12 (0.5)	4 (0.1)	0.13
뇌전증	6,991 (0.3)	22 (0.2)	- -	- -	4 (0.5)	5 (0.4)	11 (0.5)	2 (0.0)	0.31
남	1,529,806 (57.9)	5,624 (63.8)	13 (52.0)	184 (55.8)	418 (57.3)	682 (57.8)	1,473 (63.4)	2,854 (67.5)	0.37
여	1,112,090 (42.1)	3,192 (36.2)	12 (48.0)	146 (44.2)	312 (42.7)	498 (42.2)	851 (36.6)	1,373 (32.5)	0.29
심한 장애	978,634 (37.0)	6,647 (75.4)	14 (56.0)	229 (69.4)	525 (71.9)	871 (73.8)	1,727 (74.3)	3,281 (77.6)	0.68
심하지 않은 장애	1,663,262 (63.0)	2,169 (24.6)	11 (44.0)	101 (30.6)	205 (28.1)	309 (26.2)	597 (25.7)	946 (22.4)	0.13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근거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함: 「제2조(정의)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영유아 비율은 '장애영유아 인구/전체 장애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4-06-10)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2023년 기준 장애유형별 영유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 영유아 중 자폐성장애가 2,451명(27.8%)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 2,447명(27.8%), 언어장애 1,361명(15.4%), 지적장애 1,294명(14.7%)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장애인구 대비 영유아 비율을 살펴보면, 언어장애가 5.96%로 가장 높고, 자폐성장애 5.73%, 뇌병변장애 1.02% 순으로 나타남

(4) 장애아동 현황

〈표 1-1-14〉 장애아동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아동 인구	장애아동 인구	비율
2008	10,655,575	77,594	0.73
2009	10,396,743	81,687	0.79
2010	10,156,455	80,075	0.79
2011	9,921,012	78,186	0.79
2012	9,691,876	76,191	0.79
2013	9,431,699	74,617	0.79
2014	9,186,841	73,195	0.80
2015	8,961,805	72,583	0.81
2016	8,736,051	72,139	0.83
2017	8,480,447	72,260	0.85
2018	8,176,335	72,618	0.89
2019	7,928,907	74,362	0.94
2020	7,710,946	75,482	0.98
2021	7,483,944	77,961	1.04
2022	7,271,460	81,361	1.12
2023	7,077,206	86,211	1.22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4) 비율은 '장애아동 인구/전체 아동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통계청·각시도(정책)기획관리실, 행정자치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아동인구(7,077,206명) 대비 장애아동 인구(86,211명)는 1.22%로 나타남
  - 연도별로 장애아동 인구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증가 추이를 보임
  -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 인구 비율 추이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이는 전체 아동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장애아동 인구수는 증가하기 때문임

〈표 1-1-15〉 장애아동 현황 – 지역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2008	1,953,656	13,580	0.7	668,053	4,693	0.7	541,440	4,172	0.8	602,938	4,248	0.7	354,692	2,599	0.7	347,325	2,810	0.8
2009	1,894,778	14,024	0.7	642,125	4,771	0.7	524,549	4,270	0.8	585,764	4,537	0.8	348,594	2,708	0.8	338,023	2,946	0.9
2010	1,831,288	13,612	0.7	617,100	4,682	0.8	507,597	4,226	0.8	569,705	4,527	0.8	341,441	2,790	0.8	330,075	2,920	0.9
2011	1,768,278	13,117	0.7	595,314	4,500	0.8	491,525	4,137	0.8	560,738	4,408	0.8	333,635	2,749	0.8	324,241	2,863	0.9
2012	1,706,371	12,562	0.7	576,050	4,467	0.8	475,914	4,026	0.8	552,663	4,321	0.8	325,190	2,645	0.8	317,184	2,783	0.9
2013	1,643,201	12,203	0.7	557,009	4,364	0.8	458,458	3,897	0.9	541,461	4,297	0.8	315,000	2,560	0.8	309,484	2,733	0.9
2014	1,587,019	11,909	0.8	539,436	4,235	0.8	441,992	3,757	0.9	529,721	4,216	0.8	305,259	2,514	0.8	299,342	2,681	0.9
2015	1,528,191	11,688	0.8	526,093	4,216	0.8	426,830	3,692	0.9	518,543	4,172	0.8	294,090	2,478	0.8	285,984	2,575	0.9
2016	1,465,561	11,381	0.8	510,957	4,251	0.8	414,010	3,611	0.9	506,365	4,164	0.8	283,131	2,440	0.9	275,694	2,582	0.9
2017	1,404,967	11,314	0.8	491,887	4,260	0.9	399,139	3,523	0.9	490,472	4,188	0.9	272,417	2,419	0.9	263,207	2,580	1.0
2018	1,329,310	11,193	0.8	472,343	4,350	0.9	381,331	3,495	0.9	472,888	4,169	0.9	260,042	2,400	0.9	249,543	2,540	1.0
2019	1,277,981	11,273	0.9	455,670	4,552	1.0	366,094	3,501	1.0	458,390	4,289	0.9	250,112	2,458	1.0	237,783	2,517	1.1
2020	1,227,792	11,265	0.9	442,776	4,682	1.1	352,737	3,510	1.0	443,334	4,402	1.0	241,381	2,518	1.0	228,182	2,495	1.1
2021	1,173,816	11,383	1.0	428,695	4,872	1.1	338,746	3,629	1.1	432,106	4,525	1.0	233,384	2,550	1.1	219,070	2,504	1.1
2022	1,129,765	11,745	1.0	417,034	5,149	1.2	328,538	3,826	1.2	426,252	4,789	1.1	225,959	2,664	1.2	212,552	2,539	1.2
2023	1,093,009	12,284	1.1	406,296	5,456	1.3	321,580	4,144	1.3	422,117	5,110	1.2	218,076	2,804	1.3	206,401	2,679	1.3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4) 비율은 '장애아동 인구/전체 아동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통계청·각시도(정책)기획관리실, 행정자치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지역별, 연도별 장애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모든 지역에서 전체 아동인구 대비 장애 아동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2023년 기준 장애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1.6%)이며, 다음으로 충북(1.4%), 전북(1.4%), 경북(1.4%) 순임
  - 2008년 대비 장애아동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전북, 제주로 약 0.7%p 증가하였고 부산, 광주, 충남, 경북, 경남 0.6%p,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전남 0.5%p, 서울, 경기, 강원 0.4%p 순임(세종은 2008년 자료가 없으므로 비교에서 제외)

〈표 1-1-15〉 장애아동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2008	269,010	1,802	0.7	-	-	-	2,676,173	18,696	0.7	309,539	2,370	0.8	331,949	2,936	0.9	427,574	3,295	0.8
2009	260,126	1,891	0.7	-	-	-	2,635,330	19,502	0.7	302,355	2,505	0.8	325,247	2,998	0.9	423,034	3,432	0.8
2010	251,979	1,894	0.8	-	-	-	2,610,656	19,418	0.7	294,593	2,501	0.8	318,980	2,983	0.9	419,355	3,386	0.8
2011	245,450	1,788	0.7	-	-	-	2,570,035	19,101	0.7	287,131	2,494	0.9	312,736	2,911	0.9	416,209	3,344	0.8
2012	239,801	1,753	0.7	22,213	133	0.6	2,531,449	18,745	0.7	279,546	2,404	0.9	305,042	2,852	0.9	394,611	3,137	0.8
2013	233,033	1,673	0.7	24,164	130	0.5	2,483,663	18,277	0.7	270,744	2,371	0.9	296,753	2,776	0.9	388,503	3,117	0.8
2014	227,482	1,640	0.7	33,488	167	0.5	2,434,461	18,114	0.7	262,025	2,298	0.9	287,806	2,710	0.9	380,830	3,092	0.8
2015	221,872	1,674	0.8	49,240	234	0.5	2,393,096	18,150	0.8	253,556	2,231	0.9	278,845	2,663	1.0	374,044	3,090	0.8
2016	215,910	1,664	0.8	57,458	274	0.5	2,358,077	18,256	0.8	245,015	2,220	0.9	271,682	2,594	1.0	368,267	3,117	0.8
2017	208,500	1,672	0.8	66,834	332	0.5	2,313,378	18,404	0.8	235,464	2,164	0.9	262,948	2,599	1.0	362,295	3,183	0.9
2018	199,861	1,667	0.8	74,768	407	0.5	2,266,245	18,785	0.8	224,893	2,127	0.9	254,140	2,589	1.0	352,133	3,207	0.9
2019	193,047	1,694	0.9	80,513	486	0.6	2,223,563	19,467	0.9	217,388	2,135	1.0	246,187	2,641	1.1	341,552	3,324	1.0
2020	186,950	1,761	0.9	83,214	544	0.7	2,190,957	19,930	0.9	211,536	2,076	1.0	239,792	2,616	1.1	332,379	3,452	1.0
2021	179,967	1,792	1.0	85,513	588	0.7	2,151,071	20,825	1.0	205,720	2,153	1.0	233,067	2,697	1.2	323,460	3,607	1.1
2022	173,957	1,888	1.1	87,090	620	0.7	2,102,904	21,682	1.0	200,293	2,243	1.1	225,613	2,786	1.2	315,089	3,764	1.2
2023	168,488	1,984	1.2	86,357	739	0.9	2,058,859	22,998	1.1	193,668	2,361	1.2	219,627	2,980	1.4	307,573	4,052	1.3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4) 비율은 '장애아동 인구/전체 아동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통계청·각시도(정책)기획관리실, 행정자치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표 1-1-15〉 장애아동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2008	397,772	2,977	0.7	392,582	3,021	0.8	528,687	4,157	0.8	719,258	5,006	0.7	134,927	1,232	0.9
2009	387,946	3,279	0.8	380,970	3,165	0.8	511,529	4,341	0.8	704,295	5,232	0.7	132,078	1,312	1.0
2010	378,306	3,315	0.9	369,238	3,055	0.8	496,897	4,290	0.9	689,581	5,178	0.8	129,664	1,298	1.0
2011	369,200	3,267	0.9	359,112	2,987	0.8	485,334	4,224	0.9	674,667	5,043	0.7	127,407	1,253	1.0
2012	359,087	3,174	0.9	348,993	2,869	0.8	472,798	4,091	0.9	659,198	4,955	0.8	125,766	1,274	1.0
2013	347,912	3,160	0.9	337,216	2,801	0.8	458,739	4,139	0.9	641,986	4,840	0.8	124,373	1,279	1.0
2014	336,820	3,053	0.9	326,307	2,733	0.8	445,197	4,067	0.9	626,181	4,741	0.8	123,475	1,268	1.0
2015	326,202	3,006	0.9	317,374	2,707	0.9	433,483	3,983	0.9	611,250	4,745	0.8	123,112	1,279	1.0
2016	315,083	3,008	1.0	307,644	2,694	0.9	422,489	3,847	0.9	595,702	4,754	0.8	123,006	1,282	1.0
2017	302,482	3,004	1.0	295,837	2,674	0.9	408,233	3,858	0.9	579,947	4,812	0.8	122,440	1,274	1.0
2018	287,479	2,960	1.0	281,867	2,700	1.0	390,774	3,842	1.0	558,471	4,883	0.9	120,247	1,304	1.1
2019	274,429	3,009	1.1	270,670	2,730	1.0	377,416	3,961	1.0	540,294	5,003	0.9	117,818	1,322	1.1
2020	263,774	2,980	1.1	261,470	2,720	1.0	365,104	3,996	1.1	523,311	5,172	1.0	116,257	1,363	1.2
2021	253,190	3,069	1.2	252,214	2,820	1.1	353,786	4,124	1.2	505,713	5,398	1.1	114,426	1,425	1.2
2022	243,091	3,159	1.3	243,378	2,937	1.2	341,137	4,374	1.3	486,669	5,625	1.2	112,139	1,571	1.4
2023	233,870	3,312	1.4	235,793	3,111	1.3	327,216	4,600	1.4	469,249	5,899	1.3	109,027	1,698	1.6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4) 비율은 '장애아동 인구/전체 아동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통계청·각시도(정책)기획관리실, 행정자치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표 1-1-16〉 장애아동 현황(2023) -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86,211	2,805	9,113	1,839	3,489	4,742	38,359	24,573	17	178	239	37	367	20	155	278
	100.0	3.3	10.6	2.1	4.0	5.5	44.5	28.5	0.0	0.2	0.3	0.0	0.4	0.0	0.2	0.3
남	58,207	1,436	5,191	1,054	1,863	3,314	25,002	19,665	8	98	148	25	154	9	82	158
	67.5	51.2	56.8	57.4	53.9	70.5	65.1	80.7	42.1	59.3	58.5	71.1	41.1	40.9	55.3	57
여	28,004	1,369	3,922	785	1,626	1,428	13,357	4,908	9	80	91	12	213	11	73	120
	32.5	48.8	43.2	42.6	46.1	29.5	34.9	19.3	57.9	40.7	41.5	28.9	58.9	59.1	44.7	43
0-13세	61,516	1,417	7,102	1,101	2,482	4,562	24,154	19,890	-	92	171	13	243	12	109	168
	71.4	50.5	77.9	59.9	71.1	96.2	63.0	80.9	-	51.7	71.5	35.1	66.2	60.0	70.3	60.4
14-17세	24,695	1,388	2,011	738	1,007	180	14,205	4,683	17	86	68	24	124	8	46	110
	28.6	49.5	22.1	40.1	28.9	3.8	37.0	19.1	100.0	48.3	28.5	64.9	33.8	40.0	29.7	39.6
심한 장애	74,605	885	6,204	579	2,343	1,072	38,359	24,573	15	59	195	24	1	13	33	250
	86.5	31.6	68.1	31.5	67.2	22.6	100.0	100.0	88.2	33.1	81.6	64.9	0.3	65.0	21.3	89.9
심하지 않은 장애	11,606	1,920	2,909	1,260	1,146	3,670	-	-	2	119	44	13	366	7	122	28
	13.5	68.4	31.9	68.5	32.8	77.4	-	-	11.8	66.9	18.4	35.1	99.7	35.0	78.7	10.1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3) 장애정도에서 '심한'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3급, '심하지 않은'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4~6급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2023년 기준 장애아동 수는 86,211명으로,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4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로는 남자가 67.5%로 여자 32.5%에 비해 35.0%p 더 높음
  - 연령별로는 0-13세가 71.4%로 14-17세 28.6%에 비해 52.8%p 더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심한 장애가 86.5%로 심하지 않은 장애 13.5%에 비해 73.0%p 더 높음

(5)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표 1-1-17〉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장애인구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전체인구 고령화 수준
2007	2,104,889	688,884	32.7	9.9
2008	2,246,965	771,814	34.3	10.2
2009	2,429,547	869,059	35.8	10.6
2010	2,517,312	934,634	37.1	10.9
2011	2,519,241	957,824	38.0	11.2
2012	2,511,159	987,251	39.3	11.7
2013	2,501,112	1,009,721	40.4	12.2
2014	2,494,460	1,033,308	41.4	12.7
2015	2,490,406	1,053,364	42.3	13.2
2016	2,511,051	1,089,317	43.4	13.5
2017	2,545,637	1,149,910	45.2	14.2
2018	2,585,876	1,206,482	46.7	14.8
2019	2,618,918	1,263,952	48.3	15.5
2020	2,633,026	1,314,625	49.9	16.4
2021	2,644,700	1,357,215	51.3	17.1
2022	2,648,424	1,397,669	52.8	18.0
2023	2,641,896	1,425,095	53.9	19.0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이며, 연령별 통계는 2007년부터 생산되었음
2)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고령화 비율은 전체인구수 대비 65세 인구의 비율(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용어조회 '고령화율')이므로 전체 등록장애인구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구로 비율을 구성하였음
3)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 당해연도 65세 이상 장애인구/당해연도 전체 등록장애인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2) 통계청(각 년도). "고령인구비율(시도)"

-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2,641,896명)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425,095명(53.9%)으로 고령화수준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50.0%를 돌파함
  -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장애인구 중 50%가 노인이라는 의미는 노인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만, 고령화수준 측면만 고려할 때 이미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고령화는 1956년 UN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 사용한 용어로 각 국가의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져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충격을 줄 만큼 기형적인 연령 구조를 말함.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 함(권혁남, 전상길, 2009, 고령자의 고용장애 요인과 고령인구 활용에 과한 국가별 전략 연구, 국제 지역연구 18권 2호, 여름 p.39-78)

〈표 1-1-18〉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지역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2007	346,275	107,798	31.1	148,145	43,980	29.7	100,082	29,005	29.0	108,823	29,715	27.3	57,280	18,366	32.1	59,978	18,309	30.5
2008	368,955	121,014	32.8	156,966	49,195	31.3	106,448	32,521	30.6	116,697	33,761	28.9	61,575	20,544	33.4	64,348	20,588	32.0
2009	401,638	137,934	34.3	168,493	55,802	33.1	113,509	36,164	31.9	126,878	38,493	30.3	66,191	22,983	34.7	68,884	22,893	33.2
2010	414,522	149,235	36	172,765	59,590	34.5	117,141	38,772	33.1	131,815	41,673	31.6	68,518	24,528	35.8	71,164	24,522	34.5
2011	411,570	153,042	37.2	171,729	61,172	35.6	117,183	39,660	33.8	132,732	43,409	32.7	68,675	25,120	36.6	71,626	25,244	35.2
2012	407,528	157,861	38.7	170,743	63,415	37.1	116,839	40,917	35.0	133,467	45,579	34.2	68,534	25,907	37.8	71,647	26,056	36.4
2013	403,435	161,812	40.1	169,750	65,711	38.7	116,567	42,226	36.2	133,778	47,205	35.3	68,372	26,470	38.7	71,441	26,602	37.2
2014	398,908	165,049	41.4	168,663	67,829	40.2	115,983	43,342	37.4	133,855	48,744	36.4	68,288	26,953	39.5	71,198	27,089	38.0
2015	393,245	166,807	42.4	168,084	69,592	41.4	115,694	44,280	38.3	134,191	50,204	37.4	68,079	27,272	40.1	70,890	27,712	39.1
2016	391,027	170,404	43.6	168,950	72,493	42.9	117,111	46,588	39.8	135,623	52,194	38.5	68,569	28,086	41.0	71,425	28,767	40.3
2017	391,753	178,153	45.5	171,384	77,669	45.3	119,766	50,780	42.4	138,304	56,064	40.5	69,233	29,280	42.3	72,180	30,326	42.0
2018	392,920	184,857	47.0	173,820	82,170	47.3	123,070	55,151	44.8	141,771	60,165	42.4	69,884	30,116	43.1	72,927	31,555	43.3
2019	394,843	192,512	48.8	175,378	86,356	49.2	125,485	58,916	47.0	144,574	64,267	44.5	70,177	30,940	44.1	73,222	32,724	44.7
2020	394,190	199,620	50.6	176,293	90,320	51.2	126,398	61,896	49.0	146,321	68,218	46.6	70,061	31,671	45.2	72,853	33,552	46.1
2021	392,123	204,721	52.2	176,451	93,585	53.0	127,282	64,615	50.8	148,646	72,209	48.6	69,819	32,223	46.2	72,489	34,235	47.2
2022	390,997	210,437	53.8	176,069	96,355	54.7	127,439	66,719	52.4	150,892	76,237	50.5	69,454	32,731	47.1	71,915	34,821	48.4
2023	389,795	215,057	55.2	175,467	98,635	56.2	130,521	70,603	54.1	152,226	79,518	52.2	69,314	33,300	48.0	71,440	35,227	49.3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이며, 연령별 통계는 2007년부터 생산되었음
2) 비율은 고령화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2) 통계청(각 년도). "고령인구비율(시도)"

- 지역별, 연도별 장애인구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모든 지역에서 고령화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07년과 비교하여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부산으로 약 26.5%p 증가하였고 대구 25.1%p, 인천 24.9%p, 서울 24.1%p 순임(세종은 2007년 자료가 없으므로 비교에서 제외)

〈표 1-1-18〉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2007	40,758	11,182	27.4	-	-	-	407,247	120,233	29.5	85,594	31,238	36.5	79,826	27,680	34.7	107,895	39,542	36.6
2008	44,402	12,649	28.5	-	-	-	435,698	135,305	31.1	91,448	35,112	38.4	85,097	30,989	36.4	116,908	44,918	38.4
2009	47,210	13,919	29.5	-	-	-	477,021	153,730	32.2	97,604	38,837	39.8	90,958	34,534	38.0	125,556	50,272	40.0
2010	49,013	15,055	30.7	-	-	-	500,704	168,005	33.6	101,067	42,076	41.6	94,654	37,388	39.5	130,646	53,978	41.3
2011	48,926	15,364	31.4	-	-	-	505,052	174,078	34.5	101,283	43,221	42.7	94,855	38,121	40.2	131,108	54,977	41.9
2012	48,982	16,027	32.7	7,081	3,026	42.7	505,519	180,483	35.7	100,579	44,250	44.0	94,137	38,741	41.2	124,872	53,715	43.0
2013	48,950	16,608	33.9	7,202	3,107	43.1	506,464	185,811	36.7	99,660	44,692	44.8	93,563	39,054	41.7	124,561	54,703	43.9
2014	49,014	17,124	34.9	7,943	3,416	43.0	508,330	191,266	37.6	98,970	45,265	45.7	93,612	39,699	42.4	124,721	56,112	45.0
2015	49,326	17,825	36.1	9,079	3,840	42.3	512,882	197,161	38.4	98,324	45,596	46.4	93,536	40,219	43.0	124,801	57,151	45.8
2016	49,533	18,553	37.5	9,845	4,188	42.5	522,437	205,377	39.3	98,928	46,730	47.2	94,688	41,698	44.0	126,406	59,325	46.9
2017	50,205	19,809	39.5	10,623	4,613	43.4	533,259	218,781	41.0	99,959	48,997	49.0	95,844	43,648	45.5	128,503	62,231	48.4
2018	50,640	20,850	41.2	11,404	4,956	43.5	547,386	232,286	42.4	100,693	50,667	50.3	97,086	45,475	46.8	131,910	66,047	50.1
2019	51,014	21,794	42.7	12,046	5,332	44.3	559,878	246,642	44.1	101,484	52,597	51.8	97,688	46,988	48.1	133,724	69,086	51.7
2020	51,122	22,785	44.6	12,346	5,573	45.1	569,726	260,926	45.8	101,615	54,251	53.4	97,932	48,467	49.5	134,250	71,157	53.0
2021	51,330	23,719	46.2	12,630	5,797	45.9	578,668	273,427	47.3	101,714	55,689	54.8	97,839	49,647	50.7	134,749	72,750	54.0
2022	51,402	24,627	47.9	12,848	6,006	46.7	583,782	285,044	48.8	101,622	57,189	56.3	97,863	51,206	52.3	134,698	74,225	55.1
2023	51,383	25,300	49.2	12,944	6,038	46.6	586,421	294,033	50.1	100,520	57,732	57.4	97,117	51,693	53.2	134,004	74,881	55.9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이며, 연령별 통계는 2007년부터 생산되었음
2) 비율은 고령화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2) 통계청(각 년도). "고령인구비율(시도)"

〈표 1-1-18〉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전체	장애인구	%
2007	116,141	45,794	39.4	125,731	53,423	42.5	143,009	53,539	37.4	151,785	50,013	32.9	26,320	9,067	34.4
2008	120,481	49,420	41.0	134,898	59,490	44.1	151,898	59,635	39.3	162,753	56,214	34.5	28,393	10,459	36.8
2009	130,807	55,404	42.4	144,039	65,634	45.6	164,885	67,366	40.9	175,198	63,222	36.1	30,676	11,872	38.7
2010	134,235	58,458	43.5	147,918	69,718	47.1	170,396	71,420	41.9	180,880	67,394	37.3	31,874	12,822	40.2
2011	134,239	59,822	44.6	146,524	70,125	47.9	170,479	72,341	42.4	181,044	68,909	38.1	32,216	13,219	41.0
2012	133,054	61,140	46.0	145,788	71,853	49.3	169,699	74,151	43.7	180,285	70,513	39.1	32,405	13,617	42.0
2013	132,006	61,864	46.9	144,324	72,455	50.2	168,836	75,577	44.8	179,530	72,009	40.1	32,673	13,965	42.7
2014	130,932	62,610	47.8	143,128	73,397	51.3	168,650	77,305	45.8	179,276	73,848	41.2	32,989	14,260	43.2
2015	129,769	63,387	48.8	141,837	73,927	52.1	168,089	78,400	46.6	179,070	75,347	42.1	33,510	14,644	43.7
2016	130,345	65,025	49.9	141,578	75,357	53.2	169,643	81,079	47.8	180,665	78,246	43.3	34,278	15,207	44.4
2017	131,303	67,278	51.2	142,174	77,527	54.5	172,533	86,018	49.9	183,510	82,735	45.1	35,104	16,001	45.6
2018	131,746	68,860	52.3	142,213	78,573	55.3	176,550	91,551	51.9	186,016	86,516	46.5	35,840	16,687	46.6
2019	132,364	71,096	53.7	141,888	79,772	56.2	180,898	97,422	53.9	187,968	90,202	48.0	36,287	17,306	47.7
2020	132,207	73,101	55.3	140,942	80,865	57.4	181,366	100,599	55.5	188,749	93,659	49.6	36,655	17,965	49.0
2021	132,057	74,529	56.4	139,868	81,289	58.1	182,538	103,653	56.8	189,621	96,789	51.0	36,876	18,338	49.7
2022	131,652	75,842	57.6	138,410	81,741	59.1	182,373	105,870	58.1	189,874	99,851	52.6	37,134	18,768	50.5
2023	130,189	76,020	58.4	136,472	81,642	59.8	178,340	105,061	58.9	188,825	101,551	53.8	36,918	18,804	50.9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이며, 연령별 통계는 2007년부터 생산되었음
2) 비율은 고령화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2) 통계청(각 년도). "고령인구비율(시도)"

〈표 1-1-19〉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2023) -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전체		2,641,896	1,153,501	240,546	248,360	432,854	22,830	229,780	42,744	104,197	108,623	4,933	11,029	15,634	2,757	17,117	6,991
65세 이상		1,425,095	666,761	140,341	139,366	354,500	8,750	14,738	5	21,964	48,569	2,299	7,659	6,019	848	12,106	1,170
		53.9	57.8	58.3	56.1	81.9	38.3	6.4	0.0	21.1	44.7	46.6	69.4	38.5	30.8	70.7	16.7
	65세-74세	607,499	319,093	63,647	58,689	87,557	4,827	11,416	5	17,668	27,823	1,172	4,317	4,898	527	4,880	980
		42.6	47.9	45.4	42.1	24.7	55.2	77.5	100.0	80.4	57.3	51.0	56.4	81.4	62.1	40.3	83.8
	75세 이상	817,596	347,668	76,694	80,677	266,943	3,923	3,322	-	4,296	20,746	1,127	3,342	1,121	321	7,226	190
		57.4	52.1	54.6	57.9	75.3	44.8	22.5	-	19.6	42.7	49.0	43.6	18.6	37.9	59.7	16.2
남		710,696	311,659	72,897	72,711	182,468	6,084	7,845	2	9,037	27,860	1,520	5,970	4,186	436	7,427	594
		49.9	46.7	51.9	52.2	51.5	69.5	53.2	40.0	41.1	57.4	66.1	77.9	69.5	51.4	61.3	50.8
여		714,399	355,102	67,444	66,655	172,032	2,666	6,893	3	12,927	20,709	779	1,689	1,833	412	4,679	576
		50.1	53.3	48.1	47.8	48.5	30.5	46.8	60.0	58.9	42.6	33.9	22.1	30.5	48.6	38.7	49.2

주: 2023년 12월 말 기준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2) 보건복지부(2022). "전국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장애인수",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3-07-09)

- 2023년 기준으로 고령화(전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비율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장애가 81.9%로 가장 많고, 장루·요루장애가 70.7%, 호흡기장애가 69.4%, 뇌병변장애 58.3% 순임
  - 성별로는 여성 고령장애인이 50.1%로 남성 고령장애인 49.9%보다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5~74세가 42.6%, 75세 이상이 57.4%로, 75세 이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장애정도심사

〈표 1-1-20〉 장애정도심사 - 연도별

(단위: 건, %)

구 분	총계	장애정도결정			미해당	확인 불가	결정 보류
		소계	심한	심하지 않은			
누계	3,313,215	2,796,323	1,560,334	1,235,989	466,714	7,588	42,590
	(100.0)	(84.4)	(47.1)	(37.3)	(14.1)	(0.2)	(1.3)
2007	15,204	14,414	13,874	540	370	29	391
(0.5)	(100.0)	(94.8)	(91.3)	(3.6)	(2.4)	(0.2)	(2.6)
2008	26,683	25,113	23,697	1,416	811	71	688
(0.8)	(100.0)	(94.1)	(88.8)	(5.3)	(3.0)	(0.3)	(2.6)
2009	37,230	35,365	33,581	1,784	917	154	794
(1.1)	(100.0)	(95.0)	(90.2)	(4.8)	(2.5)	(0.4)	(2.1)
2010	163,943	152,058	136,134	15,924	7,996	837	3,052
(4.9)	(100.0)	(92.8)	(83.0)	(9.7)	(4.9)	(0.5)	(1.9)
2011	211,371	169,602	111,850	57,752	36,653	1,325	3,791
(6.4)	(100.0)	(80.2)	(52.9)	(27.3)	(17.3)	(0.6)	(1.8)
2012	239,854	192,724	113,568	79,156	42,105	762	4,263
(7.2)	(100.0)	(80.4)	(47.3)	(33.0)	(17.6)	(0.3)	(1.8)
2013	232,655	189,433	111,898	77,535	39,102	656	3,464
(7.0)	(100.0)	(81.4)	(48.1)	(33.3)	(16.8)	(0.3)	(1.5)
2014	237,548	194,901	118,091	76,810	38,406	768	3,473
(7.2)	(100.0)	(82.0)	(49.7)	(32.3)	(16.2)	(0.3)	(1.5)
2015	226,931	189,156	114,087	75,069	34,502	289	2,984
(6.8)	(100.0)	(83.4)	(50.3)	(33.1)	(15.2)	(0.1)	(1.3)
2016	236,419	200,616	102,999	97,617	33,208	130	2,465
(7.1)	(100.0)	(84.9)	(43.6)	(41.3)	(14.0)	(0.1)	(1.0)
2017	237,330	203,844	96,360	107,484	31,021	227	2,238
(7.2)	(100.0)	(85.9)	(40.6)	(45.3)	(13.1)	(0.1)	(0.9)
2018	253,075	216,230	95,393	120,837	34,016	318	2,511
(7.6)	(100.0)	(85.4)	(37.7)	(47.7)	(13.4)	(0.1)	(1.0)
2019	256,154	215,778	96,952	118,826	36,761	572	3,043
(7.7)	(100.0)	(84.2)	(37.8)	(46.4)	(14.4)	(0.2)	(1.2)
2020	231,502	194,948	94,080	100,868	33,615	431	2,508
(7.0)	(100.0)	(84.2)	(40.6)	(43.6)	(14.5)	(0.2)	(1.1)
2021	234,295	198,037	93,978	104,059	33,532	370	2,356
(7.1)	(100.0)	(84.5)	(40.1)	(44.4)	(14.3)	(0.2)	(1.0)
2022	226,440	193,155	94,641	98,514	30,733	346	2,206
(6.8)	(100.0)	(85.3)	(41.8)	(43.5)	(13.6)	(0.2)	(1.0)
2023	246,581	210,949	109,151	101,798	32,966	303	2,363
(7.4)	(100.0)	(85.5)	(44.3)	(41.3)	(13.4)	(0.1)	(1.0)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총계는 누계를 의미함
3) %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연도 하단에 표기한 ( )는 전체 장애정도심사 총계 대비 연도별 비율을 의미함
5) 장애정도 결정에서 '심한'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3급, '심하지 않은'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4~6급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장애정도심사 건수는 246,581건임. 심사결과별로 살펴보면, '장애정도결정'은 85.5%, '미해당' 13.4%로 나타남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정도심사 건수는 2007년부터 증가추이를 보이다, 2019년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 증감이 반복됨
  -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정도심사는 총 3,313,215건이 있었고, 이 중 84.3%(2,796,323명)가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장애정도 결정 건수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109.151건으로 심한 장애인 101,798건보다 7,353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21〉 장애정도심사 - 장애유형별

(단위: 건, %)

구분	총계	장애정도결정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소계	심한	심하지 않은			
전체	3,313,215	2,796,314	1,560,334	1,235,989	466,714	7,588	42,590
	(100.0)	(84.4)	(47.1)	(37.3)	(14.1)	(0.2)	(1.3)
뇌병변	572,510	506,033	274,090	231,943	57,772	1,336	7,369
(17.3)	(100.0)	(88.4)	(47.9)	(40.5)	(10.1)	(0.2)	(1.3)
지체	660,358	416,611	73,262	343,349	237,696	743	5,308
(19.9)	(100.0)	(63.1)	(11.1)	(52.0)	(36.0)	(0.1)	(0.8)
정신	347,374	297,835	295,992	1,843	42,028	337	7,174
(10.5)	(100.0)	(85.7)	(85.2)	(0.5)	(12.1)	(0.1)	(2.1)
지적	274,014	253,892	253,892	-	18,040	1,736	346
(8.3)	(100.0)	(92.7)	(92.7)	-	(6.6)	(0.6)	(0.1)
신장	423,204	422,478	409,765	12,713	157	8	561
(12.8)	(100.0)	(99.8)	(96.8)	(3.0)	(0.0)	(0.0)	(0.1)
시각	226,216	195,013	46,904	148,109	23,881	1,419	5,903
(6.8)	(100.0)	(86.2)	(20.7)	(65.5)	(10.6)	(0.6)	(2.6)
청각	492,793	450,059	48,672	401,396	38,438	793	3,494
(14.9)	(100.0)	(91.3)	(9.9)	(81.5)	(7.8)	(0.2)	(0.7)
중복	32,401	31,758	28,685	3,073	525	41	77
(1.0)	(100.0)	(98.0)	(88.5)	(9.5)	(1.6)	(0.1)	(0.2)
자폐성	62,342	58,490	58,490	-	3,802	31	19
(1.9)	(100.0)	(93.8)	(93.8)	-	(6.1)	(0.0)	(0.0)
뇌전증	40,397	26,347	5,549	20,798	10,356	66	3,628
(1.2)	(100.0)	(65.2)	(13.7)	(51.5)	(25.6)	(0.2)	(9.0)
호흡기	40,880	32,074	31,461	613	6,261	606	1,939
(1.2)	(100.0)	(78.5)	(77.0)	(1.5)	(15.3)	(1.5)	(4.7)
언어	56,713	44,247	19,384	24,863	8,418	387	3,661
(1.7)	(100.0)	(78.0)	(34.2)	(43.8)	(14.8)	(0.7)	(6.5)
장루·요루	35,678	33,388	2,069	31,319	712	3	1,575
(1.1)	(100.0)	(93.6)	(5.8)	(87.8)	(2.0)	(0.0)	(4.4)
심장	21,652	8,283	6,983	1,300	12,471	50	848
(0.7)	(100.0)	(38.3)	(32.3)	(6.0)	(57.6)	(0.2)	(3.9)
간	23,884	18,626	4,781	13,845	4,563	32	663
(0.7)	(100.0)	(78.0)	(20.0)	(58.0)	(19.1)	(0.1)	(2.8)
안면	2,799	1,180	355	825	1,594	-	25
(0.1)	(100.0)	(42.2)	(12.7)	(29.5)	(56.9)	-	(0.9)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총계는 누계를 의미함
3) %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장애유형 하단에 표기한 ( )는 전체 장애정도심사 총계 대비 장애유형별 비율을 의미함
5) 장애정도 결정에서 '심한'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3급, '심하지 않은'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4~6급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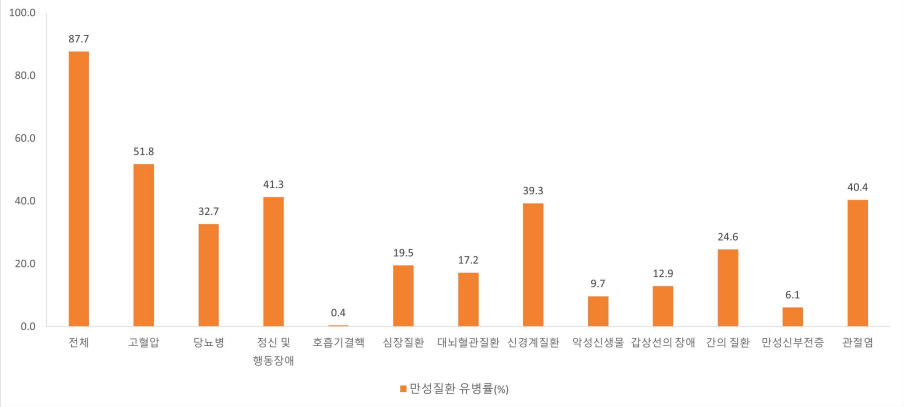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07년부터 2023년 사이 장애정도심사를 받은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19.9%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 17.3%, 청각장애 14.9%, 신장장애 12.8%, 정신장애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장장애 38.3%, 안면장애 42.2%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장애를 인정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지적, 신장, 청각, 자폐성, 장루·요루 장애의 장애인정률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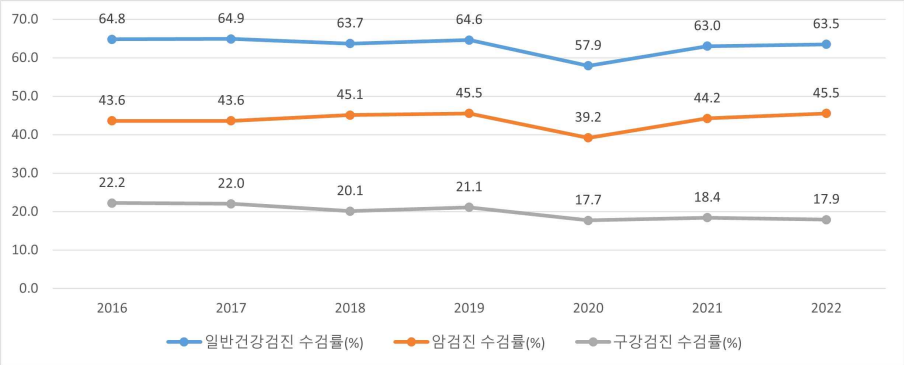
장애정도심사: 2007년 4월 중증장애인 장애판정 위탁업무 실시 → 2010년 1월 장애정도 심사제도 시행 및 확대
- 2007년 4월부터 의사중심의 장애정도심사 체계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재심사로 변경됨

2. 건강 및 보건

[그림 2-2-1]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2021년) - 만성질환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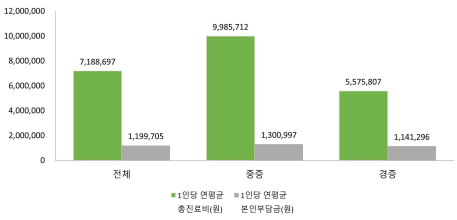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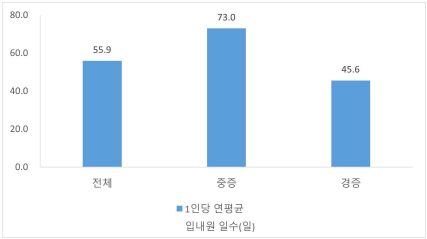
[그림 2-2-2]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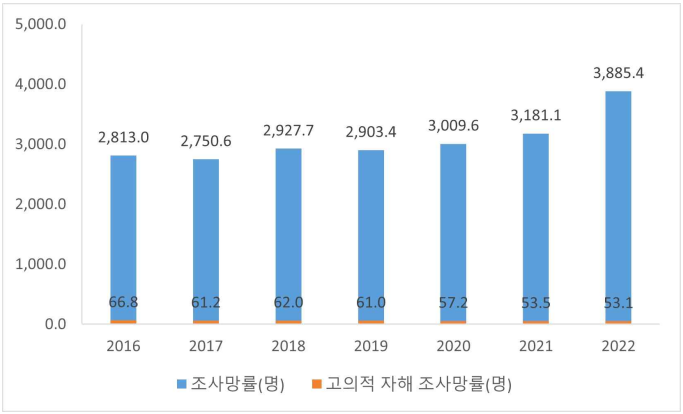
- 2021년 기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7.7%임
  - 만성질환 유형별로는 고혈압 유병률이 5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 41.3%, 관절염 4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호흡기결핵 유병률은 0.4%로 가장 낮음
- 2022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3.5%, 암검진 수검률은 45.5%, 구강검진 수검률은 17.9%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암검진 수검률, 구강검진 수검률 모두 2020년 기점으로 증가추이를 보임

[그림 2-2-3]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2021년)





[그림 2-2-4] 장애인 조사망률 및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 - 연도별



- 2021년 기준,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55.9일이며,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는 7,188,697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1,199,705원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이 더 크게 나타남
- 2022년 기준, 장애인 조사망률은 3,885.4명이고, 고의적 자해로 인한 조사망률은 53.1명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 조사망률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이고,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감소 추이를 보임

1) 건강상태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옷 갈아입기	지원 불필요	84.0	88.9	48.1	91.3	92.7	81.9	72.7	48.1
	일부 지원필요	8.0	6.5	18.3	5.2	3.9	10.3	14.3	33.6
	상당 지원필요	4.3	2.5	16.7	2.0	2.0	4.7	7.0	13.0
	전적 지원필요	3.7	2.1	16.8	1.5	1.4	3.2	6.0	5.2
목욕하기	지원 불필요	78.2	83.6	39.3	87.2	87.1	75.5	65.1	38.2
	일부 지원필요	10.0	9.0	19.3	6.7	6.4	9.8	15.4	27.8
	상당 지원필요	6.0	3.8	17.5	3.8	4.3	10.3	9.1	23.8
	전적 지원필요	5.8	3.6	23.9	2.3	2.3	4.4	10.4	10.2
구강청결	지원 불필요	88.1	93.7	61.7	94.3	93.9	85.9	71.5	47.6
	일부 지원필요	5.5	3.2	13.5	3.0	3.7	8.2	12.8	31.1
	상당 지원필요	3.2	1.5	10.2	1.3	1.1	4.2	9.2	13.2
	전적 지원필요	3.3	1.6	14.6	1.4	1.2	1.8	6.4	8.1
음식물 넘기기	지원 불필요	93.8	96.5	75.7	96.6	96.5	92.6	92.2	82.0
	일부 지원필요	3.0	2.0	9.0	2.0	1.8	3.2	3.6	12.0
	상당 지원필요	1.2	0.4	6.5	0.4	1.0	2.6	1.2	2.4
	전적 지원필요	1.9	1.1	8.8	1.0	0.7	1.6	3.0	3.7
식사하기	지원 불필요	90.7	94.4	67.8	93.3	94.9	90.5	85.4	71.3
	일부 지원필요	4.8	3.2	13.7	3.5	2.8	4.7	8.5	16.6
	상당 지원필요	2.1	1.1	8.1	1.7	1.2	3.2	2.7	7.0
	전적 지원필요	2.4	1.3	10.4	1.5	1.1	1.6	3.5	5.1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지원 불필요	91.3	93.6	64.1	96.2	96.5	92.1	92.2	83.4
	일부 지원필요	4.5	3.8	15.5	2.1	2.0	3.4	4.0	11.5
	상당 지원필요	1.7	1.1	8.5	0.8	0.7	2.3	1.0	1.9
	전적 지원필요	2.4	1.5	11.9	0.9	0.8	2.1	2.8	3.3
옮겨 앉기	지원 불필요	90.3	92.9	61.1	95.1	95.2	91.4	91.7	85.8
	일부 지원필요	4.8	3.8	15.1	2.8	3.1	4.2	4.1	8.7
	상당 지원필요	2.2	1.4	11.6	0.9	0.7	2.9	1.4	2.5
	전적 지원필요	2.7	2.0	12.2	1.1	1.0	1.6	2.9	3.0
앉은 자세 유지	지원 불필요	90.5	92.7	62.2	96.0	95.6	92.4	91.8	86.5
	일부 지원필요	4.9	4.1	16.2	2.2	2.6	3.4	4.2	8.0
	상당 지원필요	2.2	1.4	9.9	1.0	1.1	3.1	1.1	2.5
	전적 지원필요	2.5	1.7	11.7	0.9	0.7	1.0	2.9	3.0
보행	지원 불필요	80.5	82.2	43.7	84.6	88.9	81.9	85.0	79.2
	일부 지원필요	9.6	10.0	20.6	6.6	6.3	8.4	7.0	14.9
	상당 지원필요	5.1	4.1	16.8	5.0	2.8	6.7	3.4	3.6
	전적 지원필요	4.8	3.7	18.9	3.8	2.0	3.0	4.6	2.3
이동	지원 불필요	77.8	80.8	41.7	81.6	85.0	79.1	78.7	65.7
	일부 지원필요	8.7	8.4	16.2	6.4	7.9	8.2	6.8	17.2
	상당 지원필요	7.3	6.3	18.7	6.6	4.8	8.9	7.2	9.4
	전적 지원필요	6.2	4.5	23.4	5.3	2.4	3.8	7.4	7.7
배변	지원 불필요	90.5	93.9	64.7	95.8	95.7	90.4	85.8	74.5
	일부 지원필요	4.0	2.5	12.4	2.6	2.1	5.1	5.8	16.5
	상당 지원필요	2.6	1.6	10.3	0.7	0.9	3.5	4.0	5.1
	전적 지원필요	3.0	2.0	12.6	1.0	1.3	1.0	4.4	3.9
배뇨	지원 불필요	90.9	94.0	65.0	95.8	95.5	91.4	88.1	81.1
	일부 지원필요	3.8	2.4	13.0	2.5	2.1	4.6	4.9	11.8
	상당 지원필요	2.4	1.7	9.6	0.7	0.9	3.0	2.9	3.2
	전적 지원필요	2.9	1.9	12.4	1.1	1.4	1.0	4.1	3.9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만 6세 이상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74-275.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지원 불필요에 응답한 비율에서 '이동'이 77.8%, '보행'이 80.5%, '옷 갈아입기'가 84.0%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옷 갈아입기	지원 불필요	86.6	89.7	94.6	80.9	98.3	94.0	92.2	87.3
	일부 지원필요	7.9	5.4	3.8	8.6	1.7	6.0	4.4	5.5
	상당 지원필요	3.7	3.1	0.8	7.4	0.0	0.0	1.6	3.5
	전적 지원필요	1.8	1.8	0.8	3.1	0.0	0.0	1.8	3.7
목욕하기	지원 불필요	82.0	84.6	88.3	70.8	96.4	93.8	85.8	81.5
	일부 지원필요	9.8	6.7	9.0	12.9	2.4	5.3	5.5	9.3
	상당 지원필요	4.8	5.8	1.8	12.0	1.2	0.9	5.3	4.7
	전적 지원필요	3.4	3.0	0.8	4.3	0.0	0.0	3.4	4.6
구강청결	지원 불필요	88.9	92.5	95.7	87.1	98.3	95.8	93.3	90.0
	일부 지원필요	4.5	3.8	1.7	6.2	1.7	3.0	2.5	5.3
	상당 지원필요	4.0	2.3	2.6	3.0	0.0	1.2	2.4	1.7
	전적 지원필요	2.7	1.3	0.0	3.7	0.0	0.0	1.8	2.9
음식물 넘기기	지원 불필요	95.1	95.6	95.7	89.0	98.0	97.3	94.8	91.7
	일부 지원필요	3.1	2.4	1.7	4.8	2.0	2.7	2.6	6.0
	상당 지원필요	1.3	0.9	2.6	3.1	0.0	0.0	1.5	0.9
	전적 지원필요	0.4	1.1	0.0	3.1	0.0	0.0	1.1	1.4
식사하기	지원 불필요	92.9	93.7	93.9	88.5	98.0	95.5	92.7	93.8
	일부 지원필요	4.3	3.4	5.3	5.3	2.0	4.5	3.4	2.4
	상당 지원필요	2.1	1.8	0.8	3.1	0.0	0.0	1.9	2.5
	전적 지원필요	0.7	1.1	0.0	3.1	0.0	0.0	2.0	1.4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지원 불필요	95.2	94.7	94.6	88.0	98.3	94.9	94.6	95.3
	일부 지원필요	2.7	2.9	3.8	6.7	1.7	5.1	2.5	2.4
	상당 지원필요	1.4	1.0	1.6	2.2	0.0	0.0	1.2	0.9
	전적 지원필요	0.7	1.3	0.0	3.1	0.0	0.0	1.8	1.4
옮겨 앉기	지원 불필요	94.3	93.3	93.3	88.0	98.3	94.9	94.3	95.3
	일부 지원필요	3.8	4.0	3.8	6.7	1.7	5.1	2.8	3.4
	상당 지원필요	1.4	1.4	2.9	2.2	0.0	0.0	1.2	0.0
	전적 지원필요	0.5	1.3	0.0	3.1	0.0	0.0	1.8	1.4
앉은 자세 유지	지원 불필요	94.2	92.9	94.6	89.1	98.3	92.8	94.6	95.3
	일부 지원필요	3.9	2.6	3.5	5.6	1.7	6.0	1.5	1.7
	상당 지원필요	1.7	0.0	1.8	2.2	0.0	1.2	2.1	1.7
	전적 지원필요	0.2	0.1	0.0	3.1	0.0	0.0	1.8	1.4
보행	지원 불필요	91.0	85.0	91.2	76.8	96.4	93.7	89.1	87.3
	일부 지원필요	5.3	8.5	5.1	12.6	3.4	4.2	4.6	6.7
	상당 지원필요	2.7	3.7	3.7	7.0	0.1	2.1	3.6	3.8
	전적 지원필요	1.1	2.8	0.0	3.6	0.0	0.0	2.7	2.2
이동	지원 불필요	85.7	82.8	89.3	76.1	95.4	92.2	86.3	82.3
	일부 지원필요	7.0	7.8	8.1	9.9	3.7	4.6	4.4	9.0
	상당 지원필요	5.0	6.4	1.6	6.6	0.9	2.3	5.5	4.1
	전적 지원필요	2.3	3.1	1.1	7.3	0.0	0.9	3.8	4.6
배변	지원 불필요	94.5	94.2	94.6	88.2	99.9	95.5	58.3	94.5
	일부 지원필요	3.5	2.8	3.5	8.3	0.1	3.3	16.6	4.1
	상당 지원필요	1.8	1.2	1.8	1.1	0.0	1.2	12.7	0.0
	전적 지원필요	0.2	1.8	0.0	2.5	0.0	0.0	12.4	1.4
배뇨	지원 불필요	94.3	93.9	94.6	88.2	99.9	95.5	70.0	94.5
	일부 지원필요	3.8	2.5	3.5	8.3	0.1	3.3	14.5	4.1
	상당 지원필요	1.8	1.7	1.8	1.1	0.0	1.2	8.9	0.0
	전적 지원필요	0.2	1.8	0.0	2.5	0.0	0.0	6.6	1.4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만 6세 이상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74-275.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지원 불필요에 응답한 비율에서 '이동'이 77.8%, '보행'이 80.5%, '옷 갈아입기'가 84.0%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2〉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옷 갈아입기	지원 불필요	84.0	85.3	82.1	50.9	83.1	89.3	82.3	70.8	91.9
	일부 지원필요	8.0	7.5	8.7	25.4	7.8	5.2	9.1	12.7	5.2
	상당 지원필요	4.3	3.9	4.9	12.7	4.4	2.8	4.9	8.6	1.8
	전적 지원필요	3.7	3.3	4.2	11.1	4.7	2.6	3.7	7.9	1.1
목욕하기	지원 불필요	78.2	80.6	74.8	38.2	78.5	86.2	74.7	63.2	87.1
	일부 지원필요	10.0	9.1	11.2	29.5	8.6	6.5	11.8	14.2	7.5
	상당 지원필요	6.0	5.2	7.1	16.0	5.9	3.1	7.5	10.5	3.3
	전적 지원필요	5.8	5	6.8	16.3	7.1	4.2	6.0	12.1	2.0
구강청결	지원 불필요	88.1	88.9	87.1	49.3	84.1	92.6	88.2	76.4	95.2
	일부 지원필요	5.5	5.3	5.6	24.9	7.0	3.1	5.6	9.6	3.0
	상당 지원필요	3.2	2.7	3.7	14.0	4.4	1.9	3.1	6.8	1.0
	전적 지원필요	3.3	3.0	3.6	11.8	4.5	2.4	3.1	7.2	0.9
음식물 넘기기	지원 불필요	93.8	94.5	92.9	81.6	94.1	96.2	92.8	88.1	97.3
	일부 지원필요	3.0	85.3	82.1	11.5	2.1	1.6	3.7	5.1	70.8
	상당 지원필요	1.2	7.5	8.7	2.1	1.0	0.8	1.5	2.5	0.5
	전적 지원필요	1.9	3.9	4.9	4.9	2.8	1.5	1.9	4.3	0.5
식사하기	지원 불필요	90.7	91.8	89.3	71.9	89.6	94.3	89.6	82.3	95.8
	일부 지원필요	4.8	80.6	74.8	16.2	4.9	2.7	5.5	8.5	2.6
	상당 지원필요	2.1	9.1	11.2	6.9	2.5	1.1	2.4	4.2	0.9
	전적 지원필요	2.4	2.2	2.6	5.0	3.0	1.8	2.4	5.1	0.7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지원 불필요	91.3	92.2	90.2	87.8	92.5	93.7	89.6	83.8	95.9
	일부 지원필요	4.5	4.1	5.0	7.9	2.8	3.3	5.6	7.6	2.6
	상당 지원필요	1.7	1.6	1.9	1.0	1.2	1.1	2.3	3.3	0.8
	전적 지원필요	2.4	2.1	2.9	3.3	3.5	1.9	2.4	5.3	0.7
옮겨 앉기	지원 불필요	90.3	91.5	88.7	87.5	91.2	92.9	88.5	81.5	95.5
	일부 지원필요	4.8	85.3	82.1	7.2	3.1	3.4	6.0	70.8	2.6
	상당 지원필요	2.2	7.5	8.7	2.2	1.8	1.5	2.9	4.3	1.0
	전적 지원필요	2.7	3.9	4.9	3.1	3.9	2.2	2.7	5.8	0.8
앉은 자세 유지	지원 불필요	90.5	91.6	89.0	86.6	91.4	92.8	88.9	82.7	95.2
	일부 지원필요	4.9	80.6	74.8	7.8	2.9	3.8	5.9	7.7	3.1
	상당 지원필요	2.2	9.1	11.2	2.5	1.9	1.4	2.7	4.1	1.0
	전적 지원필요	2.5	2.2	2.9	3.1	3.7	2.0	2.5	5.5	0.7
보행	지원 불필요	80.5	84.2	75.5	78.9	86.1	86.0	75.4	70.7	86.4
	일부 지원필요	9.6	7.8	12.1	11.9	4.6	6.8	12.8	11.1	8.8
	상당 지원필요	5.1	3.9	6.7	3.8	3.5	3.4	6.7	8.1	3.3
	전적 지원필요	4.8	4.1	5.7	5.5	5.8	3.8	5.1	10.2	1.5
이동	지원 불필요	77.8	81.7	72.5	68.6	83.0	84.1	72.6	66.5	84.5
	일부 지원필요	8.7	7.5	10.4	14.0	5.2	6.5	10.9	10.3	70.8
	상당 지원필요	7.3	5.6	9.6	7.3	5.4	4.6	9.6	10.9	5.1
	전적 지원필요	6.2	5.2	7.5	10.1	6.5	4.8	6.8	12.3	2.5
배변	지원 불필요	90.5	91.0	89.8	73.4	88.9	93.7	89.7	81.7	95.8
	일부 지원필요	4.0	3.6	4.5	11.6	4.3	2.5	4.5	6.9	2.2
	상당 지원필요	2.6	2.5	2.6	6.9	3.1	1.5	2.9	5.1	1.0
	전적 지원필요	3.0	2.9	3.1	8.2	3.8	2.3	3.0	6.3	1.0
배뇨	지원 불필요	90.9	91.5	90.0	78.0	90.3	94.0	89.6	82.4	95.9
	일부 지원필요	3.8	3.4	4.5	10.7	3.3	2.4	4.6	6.8	2.1
	상당 지원필요	2.4	2.4	2.3	4.6	2.8	1.4	2.9	4.7	1.0
	전적 지원필요	2.9	2.7	3.2	6.7	3.6	2.2	3.0	6.1	0.9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만 6세 이상 기준

3)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56-559.

- 성별에 따른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주요 항목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7세 이하에서 '목욕하기'38.2%, '구강청결'49.3%, '옷 갈아입기'50.9%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이란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전화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83.4	93.8	63.4	89.6	77.3	59.5	56.7	29.3
	일부 지원필요	7.2	3.6	13.2	6.4	9.7	12.8	13.8	29.4
	상당 지원필요	3.5	0.7	6.5	1.9	6.8	12.6	9.9	11.7
	전적 지원필요	5.9	1.9	16.9	2.1	6.2	15.2	19.5	29.6
물건사기	지원 불필요	71.9	82.5	37.4	79.7	76.9	56.0	38.4	17.3
	일부 지원필요	11.9	9.4	17.1	7.4	13.3	15.7	22.2	22.6
	상당 지원필요	7.1	4.1	16.2	6.4	5.2	13.4	14.9	23.8
	전적 지원필요	9.1	4.0	29.3	6.5	4.6	14.9	24.5	36.3
식사준비*	지원 불필요	64.7	73.0	27.7	72.5	69.6	55.7	40.8	19.6
	일부 지원필요	15.9	15.3	19.7	11.3	17.1	14.3	18.5	17.5
	상당 지원필요	9.2	6.5	17.7	9.1	6.7	14.6	16.9	23.0
	전적 지원필요	10.2	5.2	34.8	7.1	6.6	15.4	23.8	39.8
청소*	지원 불필요	64.7	72.3	27.3	73.6	69.7	57.6	42.8	23.3
	일부 지원필요	15.6	14.7	19.0	11.4	16.9	12.3	20.1	14.8
	상당 지원필요	9.6	7.5	19.2	7.9	7.4	14.1	15.7	26.3
	전적 지원필요	10.1	5.4	34.5	7.1	6.1	16.0	21.4	35.6
빨래하기*	지원 불필요	64.7	72.7	26.8	74.6	69.2	56.4	41.8	19.6
	일부 지원필요	15.5	14.5	18.9	10.2	17.6	13.4	19.0	16.9
	상당 지원필요	9.4	7.1	19.4	8.1	6.6	14.1	15.7	26.3
	전적 지원필요	10.4	5.7	34.9	7.1	6.6	16.0	23.6	37.2
약 챙겨먹기*	지원 불필요	82.2	89.7	55.3	86.7	86.9	74.0	54.8	34.7
	일부 지원필요	8.8	6.4	16.1	7.2	8.7	13.1	17.0	12.9
	상당 지원필요	3.9	1.8	10.4	3.4	1.8	5.4	11.8	24.2
	전적 지원필요	5.1	2.2	18.2	2.7	2.7	7.5	16.5	28.1
금전관리	지원 불필요	73.5	85.7	43.9	81.9	78.8	61.2	27.4	9.5
	일부 지원필요	10.7	7.8	17.3	7.9	11.7	12.7	20.5	17.1
	상당 지원필요	6.5	3.0	11.3	5.5	4.9	11.2	20.1	23.8
	전적 지원필요	9.3	3.5	27.6	4.6	4.5	15.0	31.9	49.7
교통수단 이용하기	지원 불필요	66.9	75.8	3.0	75.0	74.3	57.9	39.2	15.7
	일부 지원필요	11.4	9.8	13.9	8.2	12.6	15.4	18.1	18.1
	상당 지원필요	8.9	7.2	16.6	7.7	7.0	12.0	13.6	18.8
	전적 지원필요	12.7	7.2	39.2	9.1	6.0	14.7	29.1	47.4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전체는 만 6세 이상 기준, *문항은 만 19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77-278.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전화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77.5	92.8	96.8	86.2	99.0	95.2	92.9	84.4
	일부 지원필요	11.3	3.8	2.4	9.3	1.0	2.9	4.3	7.6
	상당 지원필요	6.1	2.2	0.8	2.2	-	1.9	1.2	4.2
	전적 지원필요	5.2	1.2	-	2.3	-	-	1.6	3.8
물건사기	지원 불필요	64.7	83.0	87.0	64.2	94.6	94.6	83.2	75.5
	일부 지원필요	16.4	7.1	9.0	16.6	2.4	2.6	9.3	10.7
	상당 지원필요	10.5	5.1	3.2	10.0	3.0	1.9	3.0	5.4
	전적 지원필요	8.5	4.9	0.8	9.2	-	0.9	4.5	8.4
식사준비*	지원 불필요	56.3	69.3	77.5	51.5	80.9	80.3	66.9	70.1
	일부 지원필요	16.9	14.7	8.2	19.6	12.2	12.5	15.4	14.0
	상당 지원필요	16.4	8.8	10.9	13.4	6.4	4.6	11.1	5.6
	전적 지원필요	10.4	7.2	3.4	15.5	0.5	2.6	6.5	10.4
청소*	지원 불필요	59.8	69.2	70.6	49.0	79.4	82.6	67.3	71.0
	일부 지원필요	16.3	14.0	16.6	19.6	14.2	10.9	17.7	13.9
	상당 지원필요	13.4	9.2	10.4	14.4	5.8	2.9	8.1	7.6
	전적 지원필요	10.5	7.6	2.4	17.0	0.5	3.6	6.9	7.4
빨래하기*	지원 불필요	58.4	68.5	72.7	48.5	79.4	82.5	68.4	70.3
	일부 지원필요	18.3	15.7	14.6	20.1	14.3	10.1	16.3	13.4
	상당 지원필요	12.8	8.6	10.4	15.5	5.8	3.9	10.4	7.0
	전적 지원필요	10.6	7.3	2.4	15.9	0.5	3.6	4.9	9.3
약 챙겨먹기*	지원 불필요	70.7	89.0	91.0	80.0	97.1	95.3	89.6	82.5
	일부 지원필요	13.7	6.3	6.6	11.5	2.9	2.5	6.2	11.3
	상당 지원필요	10.6	2.4	-	3.6	-	1.0	1.8	2.8
	전적 지원필요	5.0	2.4	2.4	4.9	-	1.2	2.4	3.4
금전관리	지원 불필요	57.8	85.0	91.1	76.7	94.1	93.9	87.3	72.6
	일부 지원필요	15.9	6.4	6.7	8.7	4.6	4.2	4.1	9.5
	상당 지원필요	14.0	5.0	-	9.6	1.3	0.7	4.8	7.5
	전적 지원필요	12.3	3.6	2.2	5.1	-	1.2	3.8	10.4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기	지원 불필요	63.0	75.7	85.7	64.8	91.4	94.3	77.0	73.0
	일부 지원필요	15.9	9.5	8.0	11.5	4.7	-	7.0	7.4
	상당 지원필요	11.0	7.6	3.0	9.2	1.6	3.6	9.5	6.0
	전적 지원필요	10.1	7.4	3.2	14.5	2.2	2.1	6.5	13.6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전체는 만 6세 이상 기준, *문항은 만 19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77-278.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4〉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전화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83.4	84.4	81.9	44.3	77.8	88.7	83.3	67.7	92.7
	일부 지원필요	7.2	6.9	7.7	22.9	7.4	4.8	7.9	12.0	4.4
	상당 지원필요	3.5	3.5	3.5	7.4	5.4	2.3	3.6	7.1	1.3
	전적 지원필요	5.9	5.2	6.8	25.4	9.3	4.2	5.2	13.2	1.6
물건사기	지원 불필요	71.9	75.3	67.3	21.8	67.9	81.4	69.1	51.2	84.2
	일부 지원필요	11.9	10.1	14.4	23.9	12.0	8.2	13.7	16.8	9.0
	상당 지원필요	7.1	6.6	7.9	20.5	7.6	4.5	8.1	12.6	3.9
	전적 지원필요	9.1	8.1	10.4	33.8	12.5	5.9	9.0	19.4	2.9
식사준비*	지원 불필요	64.7	64.7	64.6	-	61.8	73.4	59.5	45.5	75.4
	일부 지원필요	15.9	15.5	16.3	-	11.8	12.3	19.3	18.8	14.2
	상당 지원필요	9.2	9.8	8.4	-	11.4	6.7	10.4	14.7	6.2
	전적 지원필요	10.2	9.9	10.6	-	15.0	7.6	10.8	21.1	4.2
청소*	지원 불필요	64.7	65.6	63.6	-	62.7	73.6	59.2	46.2	75.1
	일부 지원필요	15.6	15.0	16.3	-	12.6	12.2	18.6	18.4	13.9
	상당 지원필요	9.6	9.7	9.6	-	10.6	6.9	11.3	14.5	6.9
	전적 지원필요	10.1	9.7	10.5	-	14.1	7.3	10.9	20.8	4.0
빨래하기*	지원 불필요	64.7	65.2	64.1	-	62.2	73.8	59.2	45.6	75.5
	일부 지원필요	15.5	14.9	16.2	-	12.2	12.1	18.6	18.5	13.8
	상당 지원필요	9.4	9.9	8.6	-	10.6	6.5	11.0	14.3	6.6
	전적 지원필요	10.4	10.0	11.1	-	15.0	7.6	11.2	21.6	4.2
약 챙겨먹기*	지원 불필요	82.2	83.9	79.8	-	74.7	87.7	80.3	66.3	91.0
	일부 지원필요	8.8	7.7	10.4	-	9.3	5.8	10.7	14.1	5.9
	상당 지원필요	3.9	3.9	4.1	-	6.6	2.8	4.1	8.1	1.6
	전적 지원필요	5.1	4.6	5.7	-	9.4	3.7	4.9	11.6	1.4
금전관리	지원 불필요	73.5	76.0	70.1	16.5	61.1	83.6	72.8	52.7	85.9
	일부 지원필요	10.7	9.3	12.6	19.1	12.8	6.1	12.7	15.0	8.1
	상당 지원필요	6.5	6.4	6.8	20.0	10.7	4.3	6.2	12.0	3.3
	전적 지원필요	9.3	8.4	10.6	44.4	15.3	5.9	8.2	20.4	2.7
교통수단 이용하기	지원 불필요	66.9	71.4	60.8	18.4	65.8	77.5	62.6	47.4	78.6
	일부 지원필요	11.4	10.3	13.0	21.5	10.3	8.0	13.6	14.1	9.8
	상당 지원필요	8.9	7.4	11.0	16.9	7.8	6.3	10.6	13.2	6.4
	전적 지원필요	12.7	10.9	15.1	43.2	16.1	8.2	13.2	25.2	5.2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전체는 만 6세 이상, *문항은 만 19세 이상
3)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60-562.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자립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7세 이하의 자립정도가 낮음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이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이상의 것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환경적 상호작용 등이 요구되는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3) 만성질환

〈표 2-1-5〉 만성질환 유병률 - 장애유형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연도		2016	82.2	82.0	94.2	78.1	82.0	76.3	66.5	63.6
		2017	84.3	83.4	95.1	79.1	85.1	76.7	69.6	66.6
		2018	84.3	83.8	94.4	79.7	86.1	77.2	66.9	65.9
		2019	86.4	85.9	95.2	81.8	88.5	78.7	69.7	67.8
		2020	86.8	86.2	95.3	82.1	88.8	78.6	70.2	69.1
		2021	87.7	87.3	95.4	83.4	89.8	78.8	71.4	70.9
	만성질환 유형	고혈압	51.8	54.7	62.2	51.3	60.6	38.8	15.1	1.8
		당뇨병	32.7	33.7	34.3	33.7	34.3	22.1	13.9	3.5
		정신 및 행동장애	41.3	34.0	55.4	32.4	42.5	41.1	49.4	66.7
		호흡기결핵	0.4	0.4	0.4	0.4	0.6	0.3	0.2	0.0
		심장질환	19.3	19.3	20.9	18.1	24.2	16.3	5.0	1.3
		대뇌혈관질환	17.2	12.9	60.2	13.6	17.5	30.5	4.4	0.4
		신경계질환	39.3	37.6	62.4	32.5	39.6	33.6	23.4	15.2
		악성신생물	9.7	9.5	8.4	9.9	11.1	14.1	2.7	0.5
		갑상선의 장애	12.9	13.1	9.5	12.7	13.1	12.2	11.0	4.5
		간의 질환	24.6	27.1	17.6	24.7	23.7	16.5	16.7	6.6
		만성신부전증	6.1	2.5	3.5	3.3	3.5	2.3	0.7	0.1
		관절염	40.4	48.8	29.4	38.9	48.5	24.6	15.8	2.7

주: 1)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해당년도 장애인 중 12개의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을 의미함
2)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의료이용 내역에 근거한 결과로, 해당년도에 의료이용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이에 일반건강검진에 근거한 결과인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상태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20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27, 329, 331.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2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92, 394, 39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66, 368, 370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80, 382, 384.

- 2021년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7.7%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99.4%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고, 자폐성장애가 70.9%로 가장 낮음
  - 만성질환 유형별로는 고혈압 유병률이 5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 41.3%, 관절염 4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호흡기결핵 유병률은 0.4%로 가장 낮음

〈표 2-1-5〉 만성질환 유병률 - 장애유형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연도	2016	83.4	98.7	95.7	87.0	95.2	64.1	93.9	98.0
	2017	99.0	98.7	95.2	87.3	95.3	63.6	94.6	98.2
	2018	99.4	93.2	85.6	86.9	82.3	66.2	94.1	98.1
	2019	99.4	99.0	97.2	89.3	96.0	70.6	95.2	99.1
	2020	99.4	99.0	97.1	88.4	96.5	71.1	95.0	99.2
	2021	99.4	99.1	97.4	89.3	96.4	71.4	94.9	99
만성 질환 유형	고혈압	26.1	81.3	64.2	52.2	44.1	33.0	52.9	21.7
	당뇨병	28.3	62.1	38.8	31.5	45.0	21.8	33.8	17.3
	정신 및 행동장애	98.3	29.1	28.8	35.5	18.9	24.9	32.9	97.2
	호흡기결핵	0.4	0.9	0.4	2.7	0.6	0.5	0.6	0.3
	심장질환	8.6	42.6	85.7	32.5	14.2	9.8	20.9	8.8
	대뇌혈관질환	50.0	14.8	14.1	11.0	7.6	7.4	11.6	13.0
	신경계질환	62.0	39.3	32.1	34.7	25.5	25.1	35.0	45.6
	악성신생물	4.4	13.9	11.7	15.9	47.8	9.0	66.8	6.8
	갑상선의 장애	15.2	22.4	17.8	12.1	10.5	12.3	12.6	14.9
	간의 질환	25.6	31.3	24.3	23.1	82.7	23.2	24.8	22.6
	만성신부전증	1.1	89.8	9.0	3.6	8.2	0.9	8.1	1.1
	관절염	21.4	29.9	30.7	33.8	26.5	34.3	37.2	32.8

주: 1)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해당년도 장애인 중 12개의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을 의미함
2)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의료이용 내역에 근거한 결과로, 해당년도에 의료이용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이에 일반건강검진에 근거한 결과인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상태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20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27, 329, 331.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92, 394, 39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66, 368, 370.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80, 382, 384.

- 만성질환 유형 및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의 장애, 만성신부전증 유병률은 신장장애가 각각 81.3%, 62.1%, 22.4%, 89.8%로 가장 높음
  - 정신 및 행동장애 유병률은 정신장애와 뇌전증장애가 각각 98.3%, 97.2%로 높음
  - 심장질환의 유병률은 심장장애가 85.3%가 가장 높고, 신장장애 42.6%, 호흡기 장애 32.5% 순으로 나타남
  - 대뇌혈관질환 유병률은 뇌병변장애와 정신장애가 각각 60.2%, 50.0%로 높게 나타남
  - 간의 질환 유병률은 간장애가 82.7%로 높게 나타남
  - 악성신생물 유병률은 장루·요루장애와 간장애가 각각 66.8%, 47.8%로 높게 나타남
  - 관절염 유병률은 청각장애와 지체장애가 각각 48.8%, 48.5%로 높게 나타남
  - 신경계질환 유병률은 뇌병변장애와 정신장애가 각각 62.4%, 62.0%로 높게 나타남

〈표 2-1-6〉 만성질환 유병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0-64세	65세 이상	중증	경증
연도	2016	82.2	77.8	88.1	72.6	94.3	81.3	82.7
	2017	84.3	80.1	89.8	81.3	95.0	84.1	84.4
	2018	84.3	80.4	89.4	74.6	94.9	83.9	84.5
	2019	86.4	83.0	91.0	77.5	95.8	85.5	87.0
	2020	86.8	83.6	91.0	77.6	95.6	85.7	87.4
	2021	87.7	84.7	91.7	78.7	95.9	86.3	88.4
만성질환 유형	고혈압	51.8	48.4	56.5	32.4	69.6	43.1	56.9
	당뇨병	32.7	32.1	33.5	23.8	40.9	29.2	34.7
	정신 및 행동장애	41.3	35.2	49.5	34.1	47.9	49.4	36.6
	호흡기결핵	0.4	0.5	0.3	0.3	0.5	0.4	0.4
	심장질환	19.3	18.6	20.4	10.3	27.7	17.0	20.7
	대뇌혈관질환	17.2	15.9	18.8	9.0	24.7	17.6	16.9
	신경계질환	39.3	34.3	46.1	30.7	47.2	41.0	38.3
	악성신생물	9.7	10.4	8.6	6.6	12.4	7.4	11.0
	갑상선의 장애	12.9	9.8	17.0	11.7	13.9	12.4	13.2
	간의 질환	24.6	25.5	23.4	23.9	25.3	21.7	26.3
	만성신부전증	6.1	6.5	5.7	5.3	6.9	10.1	3.9
	관절염	40.4	33.2	50.0	27.6	52.2	29.0	47.0

주: 1)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해당년도 장애인 중 12개의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을 의미함
2)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의료이용 내역에 근거한 결과로, 해당년도에 의료이용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이에 일반건강검진에 근거한 결과인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상태와 차이가 있음
3)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20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26-331.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91-39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65-370.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79-384.

- 2021년 만성질환 유병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1.7%로 남성 84.7% 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95.9%, 0-64세 78.7%임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88.4%, 중증 86.3%임

〈표 2-1-7〉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계		주의군(1-2개)		대사증후군(3-5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연도	2016	702,824	583,914	83.1	342,261	48.7	241,653	34.4
	2017	709,646	594,705	83.8	341,309	48.1	253,396	35.7
	2018	302,987	259,845	85.8	143,452	47.3	116,393	38.4
	2019	314,149	269,775	85.9	146,735	46.7	123,040	39.2
	2020	274,004	238,279	87.0	125,928	46.0	112,351	41.0
	2021	320,175	278,660	87.0	146,146	45.6	132,514	41.4
	2022	316,600	276,068	87.2	141,397	44.7	134,671	42.5
성별	남	196,492	170,840	86.9	93,216	47.4	77,624	39.5
	여	120,108	105,228	87.6	48,181	40.1	57,047	47.5
연령별	20~44세	32,589	23,449	72.0	15,267	46.8	8,182	25.1
	45~64세	131,800	112,699	85.5	61,824	46.9	50,875	38.6
	65세 이상	152,211	139,920	91.9	64,306	42.2	75,614	49.7
장애유형	지체	172,446	151,963	88.1	75,059	43.5	76,904	44.6
	뇌병변	17,840	15,933	89.3	7,716	43.3	8,217	46.1
	시각	33,879	29,233	86.3	15,321	45.2	13,912	41.1
	청각	51,130	44,942	87.9	23,736	46.4	21,206	41.5
	언어	1,899	1,541	81.1	931	49.0	610	32.1
	지적	14,899	11,072	74.3	7,083	47.5	3,989	26.8
	자폐성	1,113	730	65.6	526	47.3	204	18.3
	정신	8,645	7,539	87.2	3,680	42.6	3,859	44.6
	신장	8,672	7,974	92.0	4,252	49.0	3,722	42.9
	심장	501	430	85.8	244	48.7	186	37.1
	호흡기	1,115	933	83.7	595	53.4	338	30.3
	간	1,711	1,528	89.3	953	55.7	575	33.6
	안면	379	299	78.9	177	46.7	122	32.2
	장루·요루	1,628	1,419	87.2	748	45.9	671	41.2
	뇌전증	743	532	71.6	376	50.6	156	21.0
장애정도	중증	83,156	70,328	84.6	37,702	45.3	32,626	39.2
	경증	233,444	205,740	88.1	103,695	44.4	102,045	43.7
지역	서울	45,327	39,325	86.8	19,582	43.2	19,743	43.6
	부산	19,784	17,209	87.0	9,364	47.3	7,845	39.7
	대구	14,034	12,038	85.8	6,629	47.2	5,409	38.5
	인천	18,315	16,091	87.9	8,033	43.9	8,058	44.0
	광주	8,482	7,379	87.0	3,854	45.4	3,525	41.6
	대전	8,753	7,546	86.2	3,857	44.1	3,689	42.1
	울산	6,462	5,504	85.2	3,100	48.0	2,404	37.2
	세종	1,745	1,473	84.4	789	45.2	684	39.2
	경기	70,746	61,373	86.8	31,016	43.8	30,357	42.9
	강원	12,123	10,818	89.2	5,189	42.8	5,629	46.4
	충북	11,846	10,304	87.0	5,314	44.9	4,990	42.1
	충남	16,714	14,813	88.6	7,123	42.6	7,690	46.0
	전북	16,643	14,833	89.1	7,182	43.2	7,651	46.0
	전남	18,188	16,343	89.9	8,083	44.4	8,260	45.4
	경북	21,282	18,463	86.8	9,928	46.6	8,535	40.1
	경남	22,198	19,118	86.1	10,595	47.7	8,523	38.4
	제주	3,958	3,438	86.9	1,759	44.4	1,679	42.4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199-214.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93-20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59-172.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49-362.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61-374.\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79-392.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45-358.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87.2%(2022년 기준)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 현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비율: 69.4%
· 주의군(1-2개): 47.5%, 대사증후군(3-5개): 22.0%

- 대사증후군(3-5개) 비율은 42.5%(2022년 기준)로, 2016년 34.4%에 비해 8.1%p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대사증후군(3-5개) 비율은 47.5%로, 남성 39.5%에 비해 8.0%p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대사증후군(3-5개) 비율이 49.7%로 가장 높고, 45-54세 38.6%, 20-44세 25.1%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정신, 지체, 신장, 청각, 장루·요루, 시각의 대사증후군(3-5개) 비율이 40.0% 이상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자폐성의 경우 20.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난 편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대사증후군(3-5개) 비율은 43.7%로 중증장애 39.2%에 비해 4.5%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의 장애인 대사증후군(3-5개) 비율이 46.4%로 가장 높고, 울산은 37.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은 아님

〈표 2-1-8〉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연도	2016	702,824	235,328	33.5	316,009	45.0	346,638	49.3	263,135	37.4	215,905	30.7
	2017	709,646	242,017	34.1	327,118	46.1	358,839	50.6	274,543	38.7	220,161	31.0
	2018	302,987	107,885	35.6	150,061	49.5	159,765	52.7	119,964	39.6	100,489	33.2
	2019	314,149	114,292	36.4	156,549	49.8	168,914	53.8	124,908	39.8	104,958	33.4
	2020	274,004	102,436	37.4	138,909	50.7	154,013	56.2	112,034	40.9	94,936	34.6
	2021	320,175	119,292	37.3	163,299	51.0	181,148	56.6	129,758	40.5	114,246	35.7
	2022	316,600	117,762	37.2	165,053	52.1	177,899	56.2	132,867	42.0	117,549	37.1
성별	남	196,492	70,082	35.7	99,458	50.6	113,340	57.7	81,522	41.5	58,986	30.0
	여	120,108	47,680	39.7	65,595	54.6	64,559	53.8	51,345	42.7	58,563	48.8
연령별	20~44세	32,589	11,969	36.7	8,187	25.1	11,762	36.1	11,821	36.3	6,983	21.4
	45~64세	131,800	43,670	33.1	60,326	45.8	73,264	55.6	57,284	43.5	43,081	32.7
	65세 이상	152,211	62,123	40.8	96,540	63.4	92,873	61.0	63,762	41.9	67,485	44.3
장애유형	지체	172,446	67,128	38.9	92,730	53.8	98,635	57.2	76,465	44.3	64,414	37.4
	뇌병변	17,840	6,828	38.3	10,841	60.8	10,398	58.3	7,111	39.9	7,254	40.7
	시각	33,879	11,308	33.4	16,929	50.0	19,012	56.1	14,707	43.4	12,350	36.5
	청각	51,130	17,596	34.4	28,168	55.1	29,235	57.2	19,560	38.3	19,291	37.7
	언어	1,899	577	30.4	853	44.9	943	49.7	678	35.7	543	28.6
	지적	14,899	5,356	35.9	4,010	26.9	5,776	38.8	4,797	32.2	4,425	29.7
	자폐성	1,113	493	44.3	150	13.5	244	21.9	326	29.3	205	18.4
	정신	8,645	4,361	50.4	2,536	29.3	4,985	57.7	4,006	46.3	3,831	44.3
	신장	8,672	2,309	26.6	6,189	71.4	5,188	59.8	3,080	35.5	3,408	39.3
	심장	501	155	30.9	212	42.3	295	58.9	183	36.5	193	38.5
	호흡기	1,115	325	29.1	552	49.5	630	56.5	325	29.1	265	23.8
	간	1,711	466	27.2	778	45.5	1,165	68.1	558	32.6	511	29.9
	안면	379	105	27.7	150	39.6	170	44.9	149	39.3	105	27.7
	장루·요루	1,628	490	30.1	789	48.5	969	59.5	687	42.2	595	36.5
	뇌전증	743	265	35.7	166	22.3	254	34.2	235	31.6	159	21.4
장애정도	중증	83,156	30,801	37.0	38,650	46.5	43,486	52.3	32,627	39.2	30,693	36.9
	경증	233,444	86,961	37.3	126,403	54.1	134,413	57.6	100,240	42.9	86,856	37.2
지역	서울	45,327	17,214	38.0	24,026	53.0	25,236	55.7	19,457	42.9	17,039	37.6
	부산	19,784	6,773	34.2	9,755	49.3	11,649	58.9	7,826	39.6	6,682	33.8
	대구	14,034	4,777	34.0	6,738	48.0	7,549	53.8	5,664	40.4	4,888	34.8
	인천	18,315	7,003	38.2	9,795	53.5	10,580	57.8	7,887	43.1	6,871	37.5
	광주	8,482	2,783	32.8	3,901	46.0	5,150	60.7	3,533	41.7	3,335	39.3
	대전	8,753	3,047	34.8	4,453	50.9	4,824	55.1	3,786	43.3	3,345	38.2
	울산	6,462	2,275	35.2	3,000	46.4	3,496	54.1	2,464	38.1	2,103	32.5
	세종	1,745	609	34.9	863	49.5	908	52.0	699	40.1	612	35.1
	경기	70,746	27,352	38.7	37,249	52.7	39,082	55.2	30,554	43.2	25,251	35.7
	강원	12,123	4,591	37.9	6,986	57.6	7,172	59.2	5,170	42.6	5,048	41.6
	충북	11,846	4,395	37.1	6,299	53.2	6,542	55.2	4,996	42.2	4,232	35.7
	충남	16,714	6,655	39.8	9,340	55.9	9,166	54.8	7,484	44.8	6,922	41.4
	전북	16,643	6,330	38.0	9,266	55.7	9,358	56.2	7,301	43.9	7,195	43.2
	전남	18,188	6,928	38.1	9,995	55.0	11,183	61.5	7,406	40.7	7,388	40.6
	경북	21,282	7,680	36.1	10,806	50.8	11,473	53.9	8,459	39.7	7,649	35.9
	경남	22,198	7,611	34.3	10,429	47.0	12,472	56.2	8,746	39.4	7,483	33.7
	제주	3,958	1,739	43.9	2,152	54.4	2,059	52.0	1,435	36.3	1,506	38.0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199-214.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93-20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59-172.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49-362.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61-374.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79-384.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59-372.

- 2022년 기준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현황(비율)을 살펴보면, 높은 혈당이 5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높은 혈압 52.1%, 높은 중성지방혈증 42.0%, 복부비만 37.2%,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37.1% 순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현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 복부비만(25.7%), 높은 혈압(45.4%), 높은 혈당(40.5%), 높은 중성지방혈증(18.8%),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6.7%)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5가지 위험요인 모두 대체로 증가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높은 혈당을 제외한 4가지 위험요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특히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의 격차는 18.8%p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높은 중성지방혈증을 제외한 4가지 위험요인의 경우 65세 이상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높은 중성지방혈증은 45-64세에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의 경우 복부비만, 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의 비율이 각각 50.4%, 47.7%, 44.3%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간장애는 높은 혈당의 비율이 68.1%, 신장장애는 높은 혈압의 비율이 71.4%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5가지 모든 위험요인이 경증장애가 중증장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복부비만은 제주가 43.9%, 높은 혈압은 충남이 55.9%, 높은 혈당은 전남이 61.5%, 높은 중성지방혈증은 충남이 44.8%,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은 전북이 43.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은 아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기준(출처: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보건통계」)

-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이상지질혈증(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한 개인이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주의군은 한 개인이 2가지 이하 가지고 있는 상태임

구분	기준
복부 비만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이완기혈압 85mmHg 이상 또는 문진표상 '고혈압'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높은 혈당	공복 혈당 100mg/dL 이상 또는 문진표상 '당뇨병'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높은 중성지방혈증	혈관 내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150mg/dL 이상 또는 문진표상 '이상지질혈증'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HDL 콜레스테롤이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미만 또는 문진표상 '이상지질혈증'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2) 건강행태

(1) 장애인 흡연상태 및 흡연량

〈표 2-2-1〉 장애인 흡연상태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현재흡연	현재금연	비흡연
연도	2016	703,375	19.8	20.9	59.3
	2017	710,368	19.2	21.5	59.3
	2018	773,523	18.4	21.5	60.1
	2019	769,533	18.0	20.4	61.6
	2020	672,700	17.7	20.5	61.8
	2021	751,918	17.6	19.7	62.7
	2022	750,146	17.4	19.9	62.8
성별	남	469,519	26.2	30.8	43.0
	여	280,627	2.6	1.6	95.8
연령별	19세 이하	168	6.0	0.0	94.0
	20~44세	95,686	20.5	10.3	69.2
	45~64세	309,566	25.6	21.7	52.7
	65세 이상	344,726	9.2	20.9	69.9
장애유형	지체	408,036	20.7	21.4	57.8
	뇌병변	40,056	11.4	22.8	65.8
	시각	79,988	18.8	21.0	60.1
	청각	114,947	11.5	19.5	69.0
	언어	4,577	16.5	20.9	62.6
	지적	45,474	8.4	2.6	88.9
	자폐성	3,752	0.7	0.4	98.9
	정신	18,892	24.3	8.4	67.3
	신장	20,143	9.9	27.0	63.1
	심장	1,247	9.7	30.0	60.3
	호흡기	2,386	6.7	36.3	56.9
	간	4,315	11.9	31.8	56.2
	안면	1,025	21.6	18.1	60.3
	장루·요루	3,647	11.5	28.7	59.8
	뇌전증	1,661	15.3	9.3	75.4
장애정도	중증	203,265	14.7	14.7	70.5
	경증	546,881	18.4	21.8	59.9
지역	서울	106,528	15.3	21.5	63.2
	부산	47,020	17.4	21.5	61.1
	대구	34,209	18.0	19.6	62.3
	인천	44,201	19.9	22.6	57.6
	광주	19,939	15.6	17.3	67.1
	대전	21,133	17.8	21.2	61.0
	울산	16,428	19.3	24.2	56.5
	세종	4,150	16.3	21.5	62.2
	경기	172,778	18.7	21.9	59.4
	강원	28,091	17.2	19.2	63.7
	충북	28,417	18.4	19.0	62.5
	충남	38,750	17.9	17.9	64.1
	전북	36,844	15.1	15.9	69.0
	전남	40,060	14.2	12.0	73.8
	경북	49,137	16.8	16.3	66.8
	경남	53,249	18.5	19.9	61.6
	제주	9,212	17.1	17.4	65.5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흡연상태는 현재흡연, 현재금연, 비흡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현재흡연: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
· 현재금연: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으나,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 비흡연: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없는 사람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p137-142.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p131-13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p109-114.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p299-304.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p311-316.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p329-334.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p295-300.

- 2022년 기준 장애인 흡연상태를 살펴보면, '현재흡연' 17.4%, '현재금연' 19.9%, '비흡연' 62.8%로 나타남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흡연상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현재흡연(19.2%), 현재금연(16.7%), 비흡연(64.1%)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흡연' 비율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현재흡연' 비율은 26.2%로 여성 2.6%에 비해 24.6%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4세, 45~64세의 '현재흡연' 비율이 각각 20.5%, 2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의 '현재흡연' 비율이 2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면장애 21.6%, 지체장애 20.7%, 시각장애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자폐성 장애의 '현재흡연' 비율은 0.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현재흡연' 비율이 18.4%로 중증장애 14.7%에 비해 3.7%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재흡연'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인천 19.9%, 울산 19.3, 경기 18.7%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전남 14.2%, 전북 15.1%, 서울 15.3% 등이 있음

〈표 2-2-2〉 장애인 하루 평균 흡연량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반갑 미만	반갑-한갑 미만	한갑-두갑 미만	두갑 이상
연도	2016	138,934	15.5	41.5	41.1	1.9
	2017	136,068	15.7	42.3	40.2	1.8
	2018	142,433	16.5	43.5	38.3	1.7
	2019	138,778	16.7	43.4	38.2	1.7
	2020	119,021	17.2	44.8	36.6	1.5
	2021	131,864	17.0	45.2	36.4	1.5
	2022	130,332	16.8	45.4	36.3	1.5
성별	남	123,046	15.4	45.5	37.5	1.6
	여	7,286	39.5	43.0	16.4	1.1
연령별	19세 이하	10	80.0	X	X	0.0
	20~44세	19,624	20.1	50.6	28.0	1.3
	45~64세	79,124	13.3	44.8	40.2	1.7
	65세 이상	31,574	23.4	43.6	31.8	1.2
장애유형	지체	84,554	14.3	46.3	37.9	1.4
	뇌병변	4,570	24.6	43.9	30.4	1.1
	시각	15,045	16.5	47.3	35.1	1.2
	청각	13,256	21.2	44.7	32.6	1.4
	언어	753	21.2	45.2	31.9	1.7
	지적	3,838	32.4	34.0	30.4	3.2
	자폐성	27	48.1	29.6	22.2	X
	정신	4,599	22.4	33.7	39.9	4.0
	신장	2,001	26.3	47.7	25.3	0.6
	심장	121	25.6	41.3	31.4	1.7
	호흡기	161	22.4	36.6	39.8	1.2
	간	515	24.7	51.5	23.5	0.4
	안면	221	15.4	41.2	41.2	2.3
	장루·요루	418	21.5	45.9	31.6	1.0
	뇌전증	253	22.5	43.5	32.4	1.6
장애정도	중증	29,936	21.9	42.1	34.0	2.0
	경증	100,396	15.2	46.4	37.0	1.4
지역	서울	16,256	19.6	46.6	32.4	1.3
	부산	8,200	17.1	47.0	34.5	1.4
	대구	6,173	17.1	43.6	38.0	1.3
	인천	8,778	16.3	47.4	35.3	1.1
	광주	3,105	16.1	45.8	36.4	1.7
	대전	3,744	17.9	44.1	36.6	1.4
	울산	3,168	15.4	50.6	32.8	1.2
	세종	676	16.7	47.3	34.8	1.2
	경기	32,313	16.6	47.1	35.0	1.3
	강원	4,821	16.2	44.1	38.4	1.3
	충북	5,239	16.1	44.6	37.4	1.9
	충남	6,940	15.9	43.8	38.5	1.8
	전북	5,565	16.3	41.3	40.3	2.1
	전남	5,700	14.9	41.0	41.6	2.5
	경북	8,263	16.4	42.8	38.9	2.0
	경남	9,816	16.0	44.2	38.2	1.7
	제주	1,575	15.6	40.3	41.3	2.9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현재 흡연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X):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X로 표기함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137-142.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31-13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09-114.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99-304.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11-316.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35-340.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01-306.

- 2022년 기준 현재 흡연 중인 장애인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살펴보면, '한갑 이상'(한갑-두갑 미만, 두갑 이상 포함)이 37.8%로 나타남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현재 흡여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반갑 미만(18.3%), 반갑-한갑 미만(51.6%), 한갑-두갑 미만(29.3%), 두갑 이상(0.7%)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갑 이상'인 비율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갑 이상'인 비율은 39.1%로 여성 17.5%에 비해 21.6%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5~64세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갑 이상'인 비율은 41.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갑 이상'인 비율이 4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호흡기장애 41.0%, 지체장애 39.3%, 시각장애 3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갑 이상'인 비율은 38.4%로 중증장애 36.0%에 비해 2.4%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갑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제주 44.2%, 전남 44.1%, 전북 42.4%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서울 33.7%, 울산 34.0%, 부산 35.9% 등이 있음

(2) 장애인 연간 음주 횟수

〈표 2-2-3〉 장애인 연간 음주 횟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일주일 중			한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
			1회 이하	2-4회	5-7회			
연별	2018	773,676	9.1	15.5	4.3	11.7	3.8	55.6
	2019	769,422	8.9	15.0	4.0	12.1	4.1	55.8
	2020	672,555	9.0	14.8	3.7	11.9	4.3	56.2
	2021	751,832	8.7	14.3	3.6	11.5	4.5	57.5
	2022	749,969	8.6	14.4	3.5	11.9	4.7	56.9
성별	남	469,379	11.4	20.7	5.4	13.8	4.4	44.4
	여	280,590	4.0	3.7	0.4	8.8	5.3	77.7
연령별	19세 이하	168	6.0	4.2	x	11.3	3.6	75.0
	20~44세	95,664	9.3	15.3	2.2	17.0	7.5	48.6
	45~64세	309,467	11.3	19.7	4.1	14.4	5.5	45.1
	65세 이상	344,670	6.0	9.3	3.4	8.3	3.2	69.7
장애유형	지체	407,923	10.0	17.9	4.2	13.1	4.8	50.0
	뇌병변	40,049	6.6	8.6	2.1	10.1	4.6	68.0
	시각	79,961	10.1	17.0	4.2	13.8	5.3	49.6
	청각	114,932	7.3	10.7	3.6	11.1	4.4	62.8
	언어	4,577	9.4	12.4	3.5	12.7	5.5	56.5
	지적	45,468	4.4	4.3	0.8	6.7	3.9	79.9
	자폐성	3,751	1.9	1.5	0.1	5.2	3.5	87.8
	정신	18,889	3.2	3.7	0.8	5.7	3.8	82.9
	신장	20,141	4.3	3.6	0.5	9.3	5.1	77.2
	심장	1,245	8.4	7.2	1.2	14.3	6.3	62.6
	호흡기	2,386	5.5	9.2	1.9	8.4	4.0	71.0
	간	4,316	4.8	4.9	0.6	6.4	2.9	80.3
	안면	1024	11.6	16.5	3.8	18.3	7.7	42.1
	장루·요루	3,646	6.9	10.7	3.2	10.4	5.1	63.7
	뇌전증	1,661	4.8	5.7	1.1	9.9	7.1	71.3
장애정도	중증	203,229	6.5	9.3	2.3	10.1	4.7	67.1
	경증	546,740	9.4	16.2	4.0	12.6	4.7	53.0
지역	서울	106,505	9.0	14.5	3.4	13.6	5.9	53.5
	부산	47,002	9.4	14.5	3.8	12.5	4.5	55.2
	대구	34,208	9.0	13.4	3.2	11.5	4.3	58.6
	인천	44,198	9.8	16.4	3.6	13.0	5.8	51.3
	광주	19,930	8.1	13.5	3.0	12.0	4.3	59.0
	대전	21,128	9.2	14.4	2.8	13.2	4.9	55.5
	울산	16,424	9.8	16.5	3.0	14.7	4.9	51.1
	세종	4,152	9.9	14.1	2.8	15.1	5.6	52.5
	경기	172,757	9.6	15.6	3.5	13.5	5.8	52.1
	강원	28,075	8.0	14.2	3.3	11.3	3.8	59.5
	충북	28,406	8.4	13.9	3.6	11.8	4.0	58.4
	충남	38,738	7.4	14.1	4.1	9.7	3.7	61.1
	전북	36,835	6.8	11.7	3.5	8.8	3.6	65.7
	전남	40,051	5.9	11.5	3.9	6.9	2.3	69.6
	경북	49,133	7.1	12.2	3.3	9.3	3.3	64.8
	경남	53,221	8.6	15.0	4.1	11.2	3.9	57.2
	제주	9,206	7.4	13.8	4.3	10.7	4.8	59.1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21-129.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11-319.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23-331.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41-349.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07-315.

- 2022년 기준 장애인의 연간 음주 횟수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고위험 음주 기준에 해당되는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일주일 중 2-4회, 5-7회 포함)'의 비율은 17.9%로 나타남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연간 음주 횟수(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일주일 중 1회 이하(13.5%), 일주일 중 2-4회(19.9%), 일주일 중 5-7회(2.8%), 한 달에 1회 이상(21.8%), 1년에 1회 이상(7.9%), 술을 마시지 않는다(34.1%)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음주 횟수가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인 비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연간 음주 횟수가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인 비율은 26.1%로 여성 4.1%에 비해 22.0%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5~64세의 연간 음주 횟수가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인 비율은 23.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의 연간 음주 횟수가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인 비율이 2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각장애 21.2%, 안면장애 20.3%, 언어장애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연간 음주 횟수가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인 비율은 20.2%로 중증장애 11.6%에 비해 8.6%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연간 음주 횟수가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인천 20.0%, 울산 19.5%, 경기, 경남 19.1%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전북 15.2%, 전남 15.4%, 경북 15.5% 등이 있음

(3) 장애인 신체활동 현황

〈표 2-2-4〉 장애인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연도	2018	773,397	70.2	8.3	6.1	6.0	2.5	3.5	1.3	2.2
	2019	769,461	69.6	7.9	6.2	6.3	2.6	3.8	1.3	2.2
	2020	672,641	69.6	8.1	6.4	6.1	2.5	3.8	1.3	2.2
	2021	751,968	69.7	8.2	6.3	6.2	2.5	3.8	1.3	2.1
	2022	750,201	68.8	8.1	6.5	6.5	2.6	4.0	1.3	2.1
성별	남	469,563	62.9	10.0	7.9	7.4	3.1	4.6	1.6	2.4
	여	280,638	78.7	4.9	4.3	5.0	1.7	3.0	0.8	1.6
연령별	19세 이하	168	51.2	13.1	14.9	7.1	1.2	7.7	1.2	3.6
	20~44세	95,689	56.9	13.4	10.0	8.0	3.1	5.4	1.4	1.8
	45~64세	309,582	61.1	11.3	8.7	7.9	3.2	4.5	1.5	1.7
	65세 이상	344,762	79.0	3.7	3.7	4.8	2.0	3.2	1.1	2.5
장애유형	지체	408,069	66.7	8.8	7.2	7.0	2.8	4.1	1.4	2.0
	뇌병변	40,062	76.7	5.2	4.4	4.8	1.9	3.5	1.2	2.4
	시각	79,993	66.6	8.9	6.9	7.0	2.8	4.3	1.4	2.1
	청각	114,955	73.0	6.2	5.2	5.6	2.3	3.9	1.3	2.5
	언어	4,578	67.5	8.8	5.9	6.5	2.8	4.7	1.3	2.6
	지적	45,475	71.5	7.5	5.9	5.0	2.0	4.8	1.0	2.3
	자폐성	3,752	52.9	9.3	9.5	9.5	3.5	8.8	2.0	4.6
	정신	18,892	79.1	6.6	3.8	4.0	1.2	2.7	0.8	1.8
	신장	20,143	69.6	8.4	7.2	7.1	2.6	2.8	0.8	1.4
	심장	1,247	68.7	7.9	7.9	7.2	2.6	3.0	1.4	1.3
	호흡기	2,386	76.9	5.6	4.4	5.3	2.1	3.1	1.1	1.6
	간	4,316	62.0	8.8	8.3	9.0	3.4	4.2	1.6	2.6
	안면	1,025	58.3	13.5	9.8	6.7	3.5	5.7	0.9	1.7
	장루·요루	3,647	69.9	7.2	5.8	6.1	2.7	4.0	1.4	2.9
	뇌전증	1,661	74.7	7.3	4.8	4.5	2.8	3.4	0.8	1.8
장애정도	중증	203,280	72.5	7.4	5.6	5.4	2.1	3.8	1.1	2.1
	경증	546,921	67.5	8.3	6.9	6.9	2.8	4.1	1.4	2.1
지역	서울	106,532	65.5	8.7	7.2	7.4	2.9	4.6	1.5	2.1
	부산	47,020	67.6	8.2	6.5	6.6	2.8	4.4	1.5	2.4
	대구	34,211	73.1	7.2	5.6	5.6	2.1	3.2	1.0	2.2
	인천	44,205	64.5	9.4	7.6	7.4	2.9	4.5	1.6	2.1
	광주	19,939	68.1	8.5	6.6	6.5	2.7	4.0	1.1	2.5
	대전	21,133	66.0	8.6	7.3	7.0	3.0	4.6	1.5	2.0
	울산	16,428	59.6	9.9	8.4	7.9	3.7	6.3	1.5	2.7
	세종	4,153	64.4	10.5	8.4	6.5	3.2	4.4	1.0	1.7
	경기	172,803	64.0	9.6	7.8	7.5	3.1	4.5	1.5	2.0
	강원	28,093	71.7	6.5	5.9	5.9	2.5	4.1	1.0	2.3
	충북	28,420	70.9	7.9	6.1	5.8	2.5	3.6	1.1	2.1
	충남	38,750	74.4	6.7	5.3	5.1	2.1	3.3	1.2	1.9
	전북	36,844	76.7	6.1	5.0	4.4	1.9	2.8	1.0	2.0
	전남	40,062	77.7	5.9	4.2	4.7	1.7	3.0	0.7	2.0
	경북	49,140	77.7	5.9	4.5	4.8	1.7	2.7	0.9	1.7
	경남	53,256	69.8	7.4	6.3	6.3	2.6	4.0	1.3	2.3
	제주	9,212	72.7	6.9	5.7	6.2	2.3	3.2	1.1	1.8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는 평소 1주일 동안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를 의미함
· 고강도 신체활동의 예: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건설 현장 노동, 계단으로 물건 나르기 등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30-138.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20-328.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32-340.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50-358.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16-324.

- 2022년 기준 장애인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를 살펴보면, '없음(0일)'이 68.8%이며, 다음으로 '1일' 8.1%, '2일' 6.5%, '3일' 6.5% 순으로 나타남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0일(54.6%), 1일(14.0%), 2일(10.9%), 3일(9.4%), 4일(3.7%), 5일(4.8%), 6일(1.4%), 7일(1.3%)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은 2018년(70.2%) 대비 2022년(68.8%) 감소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은 78.7%로 남성 62.9%에 비해 15.8%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의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이 7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호흡기장애 76.9%, 뇌병변장애 7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의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은 72.5%로 경증장애 67.5%에 비해 5.0%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경북 77.7%, 전남 77.7%, 전북 76.7%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울산 59.6%, 경기 64.0%, 세종 64.4% 등이 있음

〈표 2-2-5〉 장애인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연도	2018	773,399	48.8	8.0	8.2	10.3	4.5	8.2	3.0	9.0
	2019	769,480	47.0	8.0	8.4	10.8	4.7	8.7	3.2	9.2
	2020	672,642	45.2	8.2	8.6	10.9	5.0	9.0	3.2	9.9
	2021	751,976	43.5	8.5	8.7	11.1	5.1	9.3	3.2	10.6
	2022	750,210	42.2	8.3	8.9	11.6	5.2	9.7	3.3	11.0
성별	남	469,565	40.1	9.7	9.8	11.7	5.4	9.6	3.3	10.5
	여	280,645	45.8	5.9	7.4	11.4	4.9	9.9	3.1	11.7
연령별	19세 이하	168	49.4	13.1	10.1	6.0	1.8	9.5	1.8	8.3
	20~44세	95,689	41.2	13.3	12.0	11.5	4.5	10.4	2.2	5.0
	45~64세	309,582	40.5	11.0	11.0	12.5	5.5	9.3	2.9	7.4
	65세 이상	344,771	44.0	4.4	6.1	10.8	5.2	9.8	3.8	15.8
장애유형	지체	408,067	41.4	8.7	9.5	11.9	5.5	9.4	3.3	10.3
	뇌병변	40,061	48.2	5.8	6.5	9.5	4.2	9.0	3.4	13.4
	시각	79,996	38.4	8.7	9.6	12.6	5.6	10.5	3.5	11.1
	청각	114,964	42.1	6.7	7.4	11.0	5.1	10.0	3.6	14.0
	언어	4,578	42.8	8.8	7.6	11.3	5.0	9.9	3.5	11.2
	지적	45,475	50.0	9.1	8.2	8.8	3.4	10.4	2.1	8.0
	자폐성	3,752	33.2	9.7	12.2	11.6	5.6	15.5	3.3	8.8
	정신	18,892	51.4	7.8	6.5	9.4	3.7	9.2	2.3	9.7
	신장	20,143	40.1	8.6	10.7	15.1	6.4	8.1	2.4	8.7
	심장	1,247	38.3	9.1	9.9	13.0	6.5	9.9	2.7	10.5
	호흡기	2,386	47.2	6.5	7.3	10.0	5.2	8.7	3.6	11.4
	간	4,316	32.0	9.0	11.4	14.4	6.8	10.1	4.0	12.5
	안면	1,025	36.5	12.8	11.0	12.5	6.2	10.8	2.4	7.7
	장루·요루	3,647	38.0	7.3	8.4	12.0	5.8	10.4	4.3	13.7
	뇌전증	1,661	45.8	7.5	8.5	9.9	3.9	10.5	3.0	11.0
장애정도	중증	203,280	47.9	8.1	8.0	10.0	4.3	9.2	2.7	9.8
	경증	546,930	40.1	8.3	9.2	12.2	5.6	9.8	3.5	11.4
지역	서울	106,539	38.9	8.6	9.7	12.7	5.6	10.9	3.7	9.9
	부산	47,020	39.1	8.4	8.9	12.4	5.8	9.9	4.2	11.4
	대구	34,210	39.6	7.6	8.5	11.7	5.6	9.9	3.5	13.6
	인천	44,206	43.0	9.3	10.0	11.8	5.2	9.2	3.0	8.6
	광주	19,939	37.8	8.8	9.5	11.7	5.1	10.3	3.1	13.6
	대전	21,133	41.9	8.8	9.0	12.5	5.7	9.6	3.8	8.7
	울산	16,428	35.1	9.6	10.1	12.7	6.4	11.9	3.1	11.1
	세종	4,153	40.1	9.6	11.2	12.7	5.4	9.2	2.5	9.3
	경기	172,809	41.5	9.5	9.9	12.1	5.4	9.7	3.2	8.7
	강원	28,090	44.4	7.0	8.3	11.5	5.2	9.0	2.8	11.7
	충북	28,420	47.2	8.0	8.1	10.5	4.6	8.0	2.8	10.8
	충남	38,750	49.2	6.8	7.4	9.1	4.7	8.5	2.8	11.5
	전북	36,843	45.1	7.0	7.5	10.3	5.3	8.8	3.2	12.8
	전남	40,062	49.4	6.0	6.3	9.5	3.8	9.8	2.4	12.8
	경북	49,140	45.7	6.4	7.4	10.5	4.5	8.5	3.4	13.5
	경남	53,256	38.6	8.3	8.5	11.2	5.2	10.1	3.5	14.7
	제주	9,212	45.0	8.0	8.6	12.0	4.6	9.8	2.7	9.2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는 평소 1주일 동안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를 의미함
· 중강도 신체활동의 예: 빠르게 걷기, 복식 테니스,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가벼운 물건 나르기, 청소 등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39-147.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29-337.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41-349.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59-367.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25-333.

- 2022년 기준 장애인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를 살펴보면, '없음(0일)'이 42.2%이며, 다음으로 '3일' 11.6%, '7일' 11.0%, '5일' 9.7% 순으로 나타남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0일(33.6%), 1일(13.1%), 2일(13.6%), 3일(14.3%), 4일(6.1%), 5일(10.5%), 6일(2.8%), 7일(6.0%)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은 2018년(48.8%)부터 2022년(42.2%)까지 감소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은 45.8%로 남성 40.1%에 비해 5.7%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매일(7일)'의 비율은 15.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의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이 51.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적장애 50.0%, 뇌병변장애 4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의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은 47.9%로 경증장애 40.1%에 비해 7.8%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전남 49.4%, 충남 49.2%, 충북 47.2%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울산 35.1%, 경남 38.6%, 서울 38.9% 등이 있음

〈표 2-2-6〉 장애인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연도	2018	773,326	76.9	5.7	4.6	4.9	2.0	2.8	1.0	2.2
	2019	769,392	75.9	5.8	4.7	5.2	2.1	3.0	1.0	2.2
	2020	672,603	75.2	5.9	4.9	5.2	2.1	3.1	1.1	2.5
	2021	751,907	75.3	6.0	4.9	5.2	2.1	3.2	1.1	2.5
	2022	750,194	74.7	6.0	4.9	5.5	2.2	3.1	1.0	2.6
성별	남	469,558	67.6	7.5	6.2	7.0	3.0	4.1	1.4	3.4
	여	280,636	86.5	3.6	2.8	3.0	0.9	1.5	0.4	1.2
연령별	19세 이하	168	70.2	11.9	5.4	2.4	1.2	4.8	0.0	3.6
	20~44세	95,688	68.3	9.8	7.1	6.3	2.5	3.5	0.9	1.6
	45~64세	309,578	69.2	8.3	6.4	6.7	2.6	3.4	1.1	2.2
	65세 이상	344,760	81.4	2.9	3.0	4.1	1.7	2.7	1.0	3.2
장애유형	지체	408,062	64.8	8.3	6.9	7.7	3.3	4.2	1.5	3.3
	뇌병변	40,061	73.8	5.1	4.4	5.4	2.2	3.7	1.4	4.0
	시각	79,995	65.0	7.8	6.5	7.7	3.3	4.6	1.5	3.6
	청각	114,956	70.8	5.6	4.9	6.2	2.8	4.1	1.5	4.1
	언어	4,578	70.5	7.2	5.8	6.2	2.4	4.0	1.2	2.8
	지적	45,475	78.8	6.6	4.3	3.8	1.4	2.7	0.7	1.8
	자폐성	3,752	68.7	9.7	6.2	5.3	2.3	4.2	1.0	2.6
	정신	18,892	80.8	6.4	3.2	3.5	1.1	1.9	0.7	2.4
	신장	20,142	69.2	7.4	7.0	7.1	2.5	3.4	1.0	2.4
	심장	1,247	66.2	6.7	7.9	7.1	4.2	3.9	1.1	2.9
	호흡기	2,386	75.1	4.7	4.0	5.4	2.8	4.3	1.2	2.6
	간	4,316	60.5	8.8	7.4	9.0	3.5	5.4	1.8	3.7
	안면	1,025	60.3	12.7	8.3	7.5	3.8	4.8	1.3	1.4
	장루·요루	3,646	67.6	6.6	6.4	6.3	2.7	4.4	1.9	4.2
	뇌전증	1,661	72.1	5.3	5.8	5.1	2.9	4.3	0.8	3.7
장애정도	중증	203,279	73.9	6.5	4.9	5.3	2.1	3.3	1.1	2.8
	경증	546,915	65.2	7.8	6.7	7.6	3.3	4.4	1.5	3.6
지역	서울	106,533	62.9	8.0	7.0	8.1	3.4	5.0	1.7	3.8
	부산	47,019	65.0	7.5	6.0	7.7	3.3	4.7	1.8	3.9
	대구	34,211	70.6	6.3	5.1	6.2	2.8	3.7	1.2	4.1
	인천	44,207	64.8	8.3	6.7	7.8	3.3	4.3	1.5	3.2
	광주	19,939	67.1	8.1	6.3	6.8	2.8	3.9	1.3	3.6
	대전	21,133	66.0	8.0	6.4	7.0	3.2	4.5	1.5	3.3
	울산	16,428	56.9	8.9	8.0	9.0	4.1	5.8	2.7	4.6
	세종	4,153	64.2	9.5	7.2	7.4	2.9	4.9	1.1	2.8
	경기	172,798	64.5	8.5	6.9	7.6	3.3	4.5	1.5	3.2
	강원	28,091	71.2	6.0	5.9	6.7	2.4	3.3	1.1	3.5
	충북	28,420	70.9	7.0	5.9	5.8	2.5	3.6	1.0	3.2
	충남	38,749	74.5	6.3	5.1	5.3	2.2	3.1	0.9	2.6
	전북	36,844	74.4	6.1	4.7	5.3	2.2	3.1	1.0	3.2
	전남	40,062	76.0	6.1	4.6	5.5	1.9	2.8	0.8	2.4
	경북	49,139	76.8	5.2	4.4	5.1	2.2	2.6	1.0	2.7
	경남	53,256	66.8	7.4	6.5	6.8	3.1	4.1	1.4	3.7
	제주	9,212	71.4	6.4	4.9	6.8	2.6	2.8	1.4	3.7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근력운동 시행일수'는 평소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 근력운동 시행일수를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48-156.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38-34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50-358.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68-376.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34-342.

- 2022년 기준 장애인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를 살펴보면, '없음(0일)'이 74.7%이며, 다음으로 '1일' 6.0%, '3일' 5.5%, '2일' 4.9% 순으로 나타남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0일(64.3%), 1일(9.9%), 2일(8.2%), 3일(7.8%), 4일(3.1%), 5일(3.8%), 6일(1.1%), 7일(1.8%)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은 2018년(76.9%)부터 2022년(74.7%)까지 감소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은 86.5%로 남성 67.6%에 비해 18.9%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없음(0일)' 비율이 81.4%로 가장 높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의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이 8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적장애 78.8%, 호흡기장애 7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의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은 73.9%로 경증장애 65.2%에 비해 8.7%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가 '없음(0일)'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경북 76.8%, 전남 76.0%, 충남 74.5%, 전북 74.4%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울산 56.9%, 서울 62.9%, 세종 64.2% 등이 있음

〈표 2-2-7〉 규칙적 운동 실천률 - 장애인, 비장애인

(단위: %)

구분		2018	2020	2022
전체	계	100.0	100.0	100.0
	실천함	38.3	40.9	45.5
	실천하지 않음	61.7	59.1	54.5
장애인	계	100.0	100.0	100.0
	실천함	35.1	35.9	38.9
	실천하지 않음	64.9	64.1	61.1
비장애인	계	100.0	100.0	100.0
	실천함	38.5	41.2	45.9
	실천하지 않음	61.5	58.8	54.1

주 1) 연도는 조사연도를 의미함
2) '규칙적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려고 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함(출처: 사회조사 조사표)
3) 장애인복지카드 소유여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를 장애인으로 분류함
4) 통계청 사회조사의 각 연도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결측치 제외).(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3.1.29.)

- 2022년 기준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38.9%로 비장애인 45.9%에 비해 7%p 낮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2018년(35.1%)부터 2022년(38.9%)까지 증가 추이를 보임

3) 보건의료이용

(1)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표 2-3-1〉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 및 판정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			판정결과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전체	정상A	정상B (경계)	질환의심			유질환자
								계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연도	2016	1,085,875	703,526	64.8	100.0	2.7	21.4	35.0	32.2	8.8	40.9
	2017	1,093,947	710,486	64.9	100.0	2.6	20.7	33.9	31.0	8.8	42.9
	2018	1,213,784	773,676	63.7	100.0	4.8	21.5	28.1	24.4	8.9	45.6
	2019	1,192,713	770,163	64.6	100.0	4.0	17.5	31.9	28.8	9.2	46.6
	2020	1,161,556	672,863	57.9	100.0	3.5	16.1	32.6	29.6	9.6	47.8
	2021	1,193,333	752,157	63.0	100.0	3.3	15.6	32.2	29.3	9.7	48.9
	2022	1,181,951	750,241	63.5	100.0	3.2	15.1	31.3	28.5	9.6	50.4
성별	남	710,950	469,590	66.1	100.0	2.9	15.6	33.6	30.3	10.9	47.9
	여	471,001	280,651	59.6	100.0	3.6	14.1	27.6	25.4	7.3	54.7
연령별	19세 이하	216	168	77.8	100.0	13.7	44.6	40.5	37.5	10.1	1.2
	20~44세	156,504	95,690	61.1	100.0	9.6	31.4	46.8	43.9	10.8	12.2
	45~64세	462,173	309,593	67.0	100.0	3.5	18.5	34.5	30.8	11.1	43.5
	65세 이상	563,058	344,790	61.2	100.0	1.1	7.4	24.2	22.1	7.9	67.3
장애 유형	지체	574,396	408,090	71.0	100.0	3.0	15.5	29.0	25.8	9.6	52.6
	뇌병변	91,413	40,062	43.8	100.0	3.1	13.1	24.6	22.2	7.8	59.2
	시각	117,106	79,999	68.3	100.0	3.1	18.3	30.1	26.8	10.0	48.5
	청각	184,058	114,966	62.5	100.0	1.4	6.3	36.9	35.3	9.4	55.4
	언어	8,030	4,578	57.0	100.0	5.2	19.5	35.4	31.4	11.0	39.9
	지적	86,062	45,475	52.8	100.0	9.1	30.6	42.9	39.3	10.7	17.5
	자폐성	7,593	3,752	49.4	100.0	13.4	36.3	45.4	42.8	8.2	5.0
	정신	43,639	18,892	43.3	100.0	4.1	20.9	41.6	38.5	11.2	33.4
	신장	44,624	20,145	45.1	100.0	0.7	3.2	21.9	21.2	6.5	74.2
	심장	2,083	1,247	59.9	100.0	2.3	9.7	36.7	35.4	6.2	51.4
	호흡기	4,545	2,386	52.5	100.0	0.8	10.1	39.3	37.1	11.4	49.8
	간	6,993	4,316	61.7	100.0	2.1	12.3	34.8	32.1	11.5	50.7
	안면	1,399	1,025	73.3	100.0	6.9	22.4	37.1	34.5	9.3	33.6
	장루·요루	6,993	3,647	52.2	100.0	2.4	13.8	32.8	29.6	10.5	51.0
	뇌전증	3,017	1,661	55.1	100.0	4.6	21.0	55.5	53.6	8.7	19.0
장애 정도	중증	391,154	203,284	52.0	100.0	4.4	17.9	35.7	32.9	10.0	41.9
	경증	790,797	546,957	69.2	100.0	2.7	14.0	29.7	26.8	9.4	53.6
지역	서울	171,826	106,545	62.0	100.0	3.1	14.3	30.4	27.7	9.6	52.2
	부산	76,473	47,020	61.5	100.0	3.3	15.3	31.7	29.3	8.3	49.7
	대구	55,875	34,212	61.2	100.0	4.1	15.9	31.8	28.9	9.1	48.1
	인천	66,781	44,207	66.2	100.0	2.6	14.7	30.3	27.5	9.4	52.4
	광주	30,817	19,939	64.7	100.0	3.8	17.4	34.0	31.5	9.1	44.9
	대전	31,793	21,133	66.5	100.0	3.2	16.6	31.7	28.2	10.7	48.6
	울산	24,308	16,428	67.6	100.0	3.1	17.7	37.6	34.9	9.0	41.6
	세종	5,933	4,153	70.0	100.0	4.5	16.8	32.4	28.5	11.5	46.3
	경기	265,123	172,821	65.2	100.0	3.2	15.4	31.0	28.0	10.0	50.3
	강원	45,024	28,096	62.4	100.0	2.8	12.8	29.4	26.5	10.3	55.0
	충북	43,763	28,420	64.9	100.0	3.2	14.8	32.7	29.5	10.5	49.2
	충남	61,316	38,750	63.2	100.0	2.7	14.5	30.6	27.3	10.6	52.2
	전북	57,520	36,845	64.1	100.0	3.6	14.3	29.6	26.7	9.1	52.5
	전남	62,315	40,062	64.3	100.0	2.5	13.7	29.7	27.2	9.2	54.1
	경북	81,539	49,142	60.3	100.0	3.4	15.0	31.3	28.4	9.3	50.3
	경남	85,660	53,256	62.2	100.0	3.2	15.8	34.1	31.5	8.9	46.9
	제주	15,885	9,212	58.0	100.0	2.9	13.8	34.2	31.7	10.0	49.0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X):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X로 표기함
4) 수검률 = (수검인원/대상인원) X 100(%)
5) 판정현황 전체(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는 정상A, 정상B, 질환의심(계), 유질환자의 합을 의미함
6) 질환의심의 계는 일반 질환의심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간 중복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1-30.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1-30.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3-32.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1-37.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1-37.

- 2022년 기준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은 750,241명이고 수검률은 63.5%임. 판정결과를 살펴보면, '정상(A, B)' 18.3%, '질환의심' 31.3%, '유질환자'가 50.4%로 수검인원 중 80.0% 이상이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 및 판정 현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75.4%
· 판정결과: 정상A(10.8%), 정상B(29.8%), 질환의심(32.9%), 유질환자(26.5%)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수검률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판정결과 '유질환자' 비율은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수검률은 66.1%로 여성 59.6%에 비해 6.5%p 높고, 판정결과 '유질환자' 비율은 여성이 54.7%로 남성 47.9%에 비해 6.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4세의 수검률이 61.1%로 가장 낮은 편이고, 판정결과 '정상(A, B)' 비율은 19세 이상이 58.3%, '질환의심' 비율은 20-44세가 46.8%, '유질환자' 비율은 65세 이상이 67.3%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검률이 높은 장애유형으로는 안면장애 73.3%, 지체장애 71.0%, 시각장애 68.3%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유형으로는 정신장애 43.3%, 뇌병변장애 43.8%, 신장장애 45.1% 등이 있음. 판정결과 '정상(A, B)' 비율은 자폐성장애가 49.7%, '질환의심' 비율은 뇌전증장애가 55.5%, '유질환자' 비율은 신장장애가 7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의 수검률은 69.2%로 중증 장애 52.0%에 비해 17.2%p 높고, 판정결과 '유질환자' 비율은 경증장애가 53.6%로 중증 장애 41.9%에 비해 11.7%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검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세종 70.0%, 울산 67.6%, 대전 66.5%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제주 58.0%, 경북 60.3%, 대구 61.2% 등이 있음. 판정결과 '정상(A, B)' 비율은 세종이 21.3%, '질환의심'의 비율은 울산이 37.6%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유질환자' 비율은 강원이 55.0%로 높게 나타남

일반건강검진(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실시범위 및 대상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자임

구분	검진대상	실시주기
지역 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 ('17,'19, '21) 홀수년도, ('16,'18,'20, '22) 짝수년도	· 2년에 1회
직장 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년도 대상자	· 비사무직 1년 1회 · 사무직 2년 1회
직장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중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 ('17,'19, '21) 홀수년도, ('16, '18, '20, '22) 짝수년도	· 2년에 1회

- 주요항목
  -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결과 판정 기준

판정 결과	판정 기준
정상A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경계)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일반 질환의심	일반건강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고혈압·당뇨 질환의심 (확진검사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이 의심되어 검사 등이 필요한 자
유질환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

〈표 2-3-2〉 장애인 암검진 수검 현황 - 검진종류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2016	1,742,629	759,652	43.6	978,080	527,413	53.9	1,540,778	526,011	34.1
2017	1,805,397	786,422	43.6	988,519	530,515	53.7	1,613,242	559,606	34.7
2018	1,860,544	839,355	45.1	1,032,708	547,658	53.0	1,645,908	589,750	35.8
2019	1,909,436	869,315	45.5	1,040,764	558,000	53.6	1,695,219	612,630	36.1
2020	1,884,208	738,026	39.2	1,024,228	478,329	46.7	1,681,433	509,693	30.3
2021	1,887,627	833,425	44.2	1,047,675	545,023	52.0	1,676,622	569,280	34.0
2022	1,837,741	836,070	45.5	1,034,650	539,303	52.1	1,631,920	565,850	34.7

구분	간암 검진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폐암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2016	67,970	38,573	56.8	418,089	218,413	52.2	436,475	180,582	41.4	-	-	-
2017	66,447	38,602	58.1	427,428	219,007	51.2	446,530	183,451	41.1	-	-	-
2018	76,981	46,125	59.9	445,698	219,707	49.3	465,790	185,721	39.9	-	-	-
2019	78,369	47,637	60.8	450,804	222,095	49.3	471,540	187,662	39.8	-	-	-
2020	79,538	44,464	55.9	439,638	181,831	41.4	463,687	158,740	34.2	28,218	9,719	34.4
2021	79,364	47,967	60.4	449,140	209,859	46.7	466,441	181,124	38.8	26,128	11,967	45.8
2022	78,992	48,090	60.9	439,680	203,006	46.2	457,954	174,649	38.1	28,065	14,393	51.3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암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수검률 = (수검인원/대상인원) X 100(%)
3) 전체는 검진종류별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인원이 기준임
4) 검진종류별 검진주기와 검진대상이 상이하며, 관련 내용은 하단 설명문을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10.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0.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8.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8.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9.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8.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8.

- 2022년 기준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은 1,837,741명이고 수검률은 45.5%임. 검진종류별로 수검률을 살펴보면, 위암 52.1%, 대장암 34.7%, 간암 60.9%, 유방암 46.2%, 자궁경부암 38.1%, 폐암 51.3%임

2022년 기준 암검진 수검 현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전체(58.2%), 위암(63.8%), 대장암(40.4%), 간암(74.6%), 유방암(64.8%), 자궁경부암(60.3%), 폐암(50.9%)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검률은 2020년 감소하다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추이를 보임.

국가 암검진(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구분	검진대상	실시 주기
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2년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인 자 전체	1년
간암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등)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단, 전 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6개월 (연2회)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인 여성 중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2년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인 여성 중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2년
폐암 ('19년 8월부터 실시)	· 만 54-74세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2년

〈표 2-3-3〉 장애인 암검진 수검 현황(2022년) -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전체		1,837,741	836,070	45.5	1,034,650	539,303	52.1	1,631,920	565,850	34.7
성별	남	1,014,972	483,751	47.7	587,373	320,702	54.6	901,411	335,858	37.3
	여	822,769	352,319	42.8	447,277	218,601	48.9	730,509	229,992	31.5
연령별	20~29세	12,001	2,193	18.3	-	-	-	-	-	-
	30~39세	15,166	5,260	34.7	-	-	-	-	-	-
	40~49세	100,358	56,184	56.0	94,118	48,810	51.9	-	-	-
	50~59세	337,111	149,142	44.2	179,628	94,408	52.6	322,010	100,840	31.3
	60~69세	510,798	269,981	52.9	278,102	168,781	60.7	482,056	198,624	41.2
	70~79세	470,564	243,415	51.7	261,811	157,508	60.2	447,734	185,875	41.5
	80세 이상	391,743	109,895	28.1	220,991	69,796	31.6	380,120	80,511	21.2
장애유형	지체	889,775	461,826	51.9	510,666	306,089	59.9	799,032	314,130	39.3
	뇌병변	161,130	48,780	30.3	87,480	28,990	33.1	147,947	34,635	23.4
	시각	180,295	87,075	48.3	102,868	57,728	56.1	159,137	57,079	35.9
	청각	325,288	142,113	43.7	177,699	88,930	50.0	304,921	103,838	34.1
	언어	12,548	4,766	38.0	6,923	2,881	41.6	11,166	3,181	28.5
	지적	78,217	24,291	31.1	42,066	14,935	35.5	47,315	11,137	23.5
	자폐성	1,114	108	9.7	298	68	22.8	77	12	15.6
	정신	76,533	24,572	32.1	43,433	14,885	34.3	64,474	15,405	23.9
	신장	72,680	25,833	35.5	40,995	14,750	36.0	63,071	15,483	24.5
	심장	3,080	1,357	44.1	1,643	780	47.5	2,659	952	35.8
	호흡기	8,493	3,338	39.3	4,645	1,912	41.2	7,966	2,475	31.1
	간	10,988	5,137	46.8	5,721	2,865	50.1	9,419	3,289	34.9
	안면	1,806	954	52.8	1,045	627	60.0	1,425	559	39.2
	장루·요루	11,463	4,069	35.5	6,597	2,595	39.3	9,982	2,649	26.5
	뇌전증	4,331	1,851	42.7	2,571	1,268	49.3	3,329	1,026	30.8
장애정도	중증	587,805	210,398	35.8	325,536	130,681	40.1	502,304	135,949	27.1
	경증	1,249,936	625,672	50.1	709,114	408,622	57.6	1,129,616	429,901	38.1
지역	서울	273,027	116,690	42.7	150,625	75,279	50.0	243,222	81,330	33.4
	부산	121,816	53,323	43.8	69,774	35,202	50.5	108,270	34,546	31.9
	대구	88,396	36,318	41.1	49,763	24,755	49.7	78,098	20,375	26.1
	인천	103,964	50,408	48.5	58,026	31,627	54.5	92,337	36,618	39.7
	광주	47,086	21,878	46.5	26,705	14,599	54.7	40,874	13,328	32.6
	대전	47,156	22,325	47.3	26,754	14,698	54.9	41,172	14,554	35.3
	울산	34,914	16,791	48.1	19,626	10,645	54.2	30,813	11,180	36.3
	세종	8,254	4,195	50.8	4,784	2,810	58.7	6,963	2,416	34.7
	경기	397,074	187,539	47.2	221,625	117,276	52.9	349,041	132,062	37.8
	강원	73,675	32,894	44.6	41,028	20,947	51.1	66,225	23,930	36.1
	충북	65,458	30,662	46.8	37,462	20,682	55.2	57,660	20,192	35.0
	충남	92,780	43,308	46.7	53,065	27,833	52.5	82,848	30,042	36.3
	전북	93,828	43,963	46.9	53,038	28,306	53.4	84,399	30,298	35.9
	전남	101,247	49,522	48.9	58,681	32,853	56.0	91,131	32,035	35.2
	경북	132,579	57,672	43.5	74,399	36,541	49.1	119,723	38,741	32.4
	경남	131,074	59,021	45.0	75,302	38,838	51.6	116,688	38,289	32.8
	제주	25,413	9,561	37.6	13,993	6,412	45.8	22,456	5,914	26.3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암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수검률 = (수검인원/대상인원) X 100(%)
4) 전체는 검진종류별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인원이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84-203, p213-215, p232-234, p251-253, p260-262.

- 2022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암검진 수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전체 암검진 수검률은 47.7%로 여성 42.8%에 비해 4.9%p 높으며,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검진 수검률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와 60-69세의 전체 암검진 수검률이 각각 56.0%, 5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20-29세 18.3%, 80세 이상 28.1%는 낮게 나타남.

〈표 2-3-3〉 장애인 암검진 수검 현황(2022년) -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계속)

(단위: 명, %)

구분		간암 검진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폐암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전체		78,992	48,090	60.9	439,680	203,006	46.2	457,954	174,649	38.1	28,065	14,393	51.3
성별	남	51,883	31,761	61.2	-	-	-	-	-	-	27,446	14,134	51.5
	여	27,109	16,329	60.2	439,680	203,006	46.2	457,954	174,649	38.1	619	259	41.8
연령별	20~29세	-	-	-	-	-	-	11,997	2,193	18.3	-	-	-
	30~39세	-	-	-	-	-	-	15,152	5,260	34.7	-	-	-
	40~49세	8,538	5,359	62.8	29,355	14,957	51.0	29,183	13,263	45.4	-	-	-
	50~59세	19,185	11,548	60.2	55,793	30,499	54.7	55,493	28,138	50.7	6,726	3,087	45.9
	60~69세	26,321	17,084	64.9	101,197	62,696	62.0	99,612	55,655	55.9	15,850	8,482	53.5
	70~79세	17,334	10,933	63.1	120,282	66,004	54.9	116,819	52,340	44.8	5,489	2,824	51.4
	80세 이상	7,614	3,166	41.6	133,053	28,850	21.7	129,698	17,800	13.7	-	-	-
장애유형	지체	36,588	25,283	69.1	212,951	114,361	53.7	211,945	96,475	45.5	18,755	9842	52.5
	뇌병변	4,702	2,298	48.9	36,297	9,629	26.5	38,188	8,808	23.1	1,206	559	46.4
	시각	6,944	4,570	65.8	41,995	21,247	50.6	43,085	18,936	44.0	2,866	1501	52.4
	청각	9,909	6,205	62.6	82,471	33,385	40.5	82,306	27,435	33.3	3,025	1628	53.8
	언어	473	251	53.1	1,978	856	43.3	2,069	793	38.3	144	60	41.7
	지적	3,251	1,720	52.9	18,387	6,317	34.4	31,233	6,185	19.8	277	85	30.7
	자폐성	19	12	63.2	51	10	19.6	815	24	2.9	-	0	0.0
	정신	3,172	1,507	47.5	21,365	7,716	36.1	22,798	6,624	29.1	875	290	33.1
	신장	6,405	3,084	48.1	16,571	6,077	36.7	17,444	6,182	35.4	482	221	45.9
	심장	172	95	55.2	568	265	46.7	674	285	42.3	24	14	58.3
	호흡기	409	229	56.0	1,236	495	40.0	1,279	492	38.5	104	45	43.3
	간	6,261	2,457	39.2	1,662	888	53.4	1,806	922	51.1	90	48	53.3
	안면	75	52	69.3	429	247	57.6	476	238	50.0	31	15	48.4
	장루·요루	406	206	50.7	2,507	872	34.8	2,450	632	25.8	126	61	48.4
	뇌전증	206	121	58.7	1,212	641	52.9	1,386	618	44.6	59	24	40.7
장애정도	중증	25,963	13,937	53.7	134,404	48,121	35.8	153,583	43,758	28.5	6,300	2,858	45.4
	경증	53,029	34,153	64.4	305,276	154,885	50.7	304,371	130,891	43.0	21,765	11535	53.0
지역	서울	11,212	6,132	54.7	64,407	30,406	47.2	68,396	28,562	41.8	3,334	1,592	47.8
	부산	6,474	4,186	64.7	28,483	12,538	44.0	29,811	11,256	37.8	1,910	926	48.5
	대구	4,534	2,763	60.9	20,870	8,622	41.3	22,128	8,086	36.5	1,497	656	43.8
	인천	4,126	2,662	64.5	23,622	11,676	49.4	24,658	10,127	41.1	1,958	1,136	58.0
	광주	2,213	1,408	63.6	11,597	5,696	49.1	12,412	5,138	41.4	673	390	57.9
	대전	1,992	1,336	67.1	11,088	5,661	51.1	11,818	5,109	43.2	773	358	46.3
	울산	1,791	1,109	61.9	7,872	3,826	48.6	8,449	3,846	45.5	639	343	53.7
	세종	339	243	71.7	1,942	960	49.4	2,053	824	40.1	93	43	46.2
	경기	15,697	9,513	60.6	90,519	42,962	47.5	95,792	38,671	40.4	6,095	3,223	52.9
	강원	2,993	1,754	58.6	17,421	7,666	44.0	18,035	6,617	36.7	1,121	574	51.2
	충북	2,211	1,328	60.1	15,859	7,812	49.3	16,391	6,291	38.4	1,083	484	44.7
	충남	3,025	1,837	60.7	22,934	10,682	46.6	23,308	8,506	36.5	1,404	702	50.0
	전북	3,606	2,165	60.0	24,374	11,349	46.6	24,914	9,364	37.6	1,319	662	50.2
	전남	5,326	3,352	62.9	27,590	13,663	49.5	26,924	8,688	32.3	1,459	862	59.1
	경북	5,897	3,483	59.1	32,790	13,039	39.8	33,510	10,315	30.8	2,039	1,072	52.6
	경남	6,233	4,094	65.7	31,913	13,686	42.9	32,792	11,047	33.7	2,223	1,157	52.0
	제주	1,323	725	54.8	6,399	2,762	43.2	6,563	2,202	33.6	445	213	47.9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암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수검률 = (수검인원/대상인원) X 100(%)
4) 전체는 검진종류별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인원이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06-211, 228-230, 247-249, 266-268, 275-277.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면장애와 지체장애의 경우 각각 52.8%, 51.9%로 전체 암검진 수검률이 높은 반면, 자폐성장애는 9.7%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음. 검진종류별로는 자폐성장애의 자궁경부암 수검률이 2.9%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전체 암검진 수검률은 50.1%로 중증장애 35.8%에 비해 14.2%p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암검진 수검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세종 50.8%, 전남 48.9%, 인천 48.5%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제주 37.6%, 대구 41.1%, 서울 42.7% 등이 있음.

〈표 2-3-4〉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 - 검진종류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			간암 검진(상반기)		
	수검인원	위암		수검인원	대장암		수검인원	간암 의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6	527,413	979	0.19	526,011	153	0.03	15,530	150	0.97
2017	530,515	963	0.18	559,606	199	0.04	15,438	140	0.91
2018	547,658	985	0.18	589,750	414	0.07	23,476	259	1.10
2019	558,000	948	0.17	612,630	407	0.07	24,901	270	1.08
2020	478,329	862	0.18	509,693	358	0.07	24,195	221	0.91
2021	545,023	913	0.17	569,280	389	0.07	28,403	245	0.86
2022	539,303	883	0.16	565,850	354	0.06	27,469	218	0.79

구분	간암 검진(하반기)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폐암 검진		
	수검인원	간암 의심		수검인원	유방암 의심		수검인원	자궁경부암 의심		수검인원	폐암 의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6	23,043	156	0.68	218,413	369	0.17	180,582	47	0.03	-	-	-
2017	23,164	150	0.65	219,007	379	0.17	183,451	37	0.02	-	-	-
2018	22,287	214	0.96	219,707	329	0.15	185,721	35	0.02	-	-	-
2019	22,736	177	0.78	222,095	360	0.16	187,662	25	0.01	-	-	-
2020	20,269	190	0.94	181,831	344	0.19	158,740	21	0.01	9,719	430	4.42
2021	19,564	178	0.91	209,859	392	0.19	181,124	34	0.02	11,967	594	4.96
2022	20,621	166	0.81	203,006	397	0.20	174,649	27	0.02	14,393	545	3.79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암검진 수검자 기준임
2) 비율 = (암판정인원/수검인원) X 100(%)
3) 검진종류별 수검인원은 기존 암환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59, 70, 80, 89, 101, 104.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9, 69, 79, 87, 98, 101.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7, 47, 57, 65, 76, 79.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10, 229, 248, 256, 267.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12, 231, 250, 258, 269, 272, 279.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24, 243 ,262, 270, 281, 284, 290.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97, 216, 235, 243, 254, 257, 263.

- 2022년 기준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인원 수는 '위암'이 88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폐암 의심' 545명, '유방암 의심' 397명, '대장암' 354명, '간암 의심(상반기)' 218명, '간암 의심(하반기)' 166명, '자궁경부암 의심' 27명 순으로 나타남. 수검인원 대비 암판정 비율은 '폐암 의심'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2022년 기준 전체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위암(8,978명, 0.11%), 대장암(3,074명, 0.05%), 간암 의심(상반기)(2,996명, 0.69%), 간암 의심(하반기)(3,246명, 0.72%), 유방암 의심(7574명, 0.17%), 자궁경부암 의심(489명, 0.01%), 폐암 의심(4,709명, 3.38%)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암(의심) 판정 비율은 '폐암(의심) 판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매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5〉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2022년) -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			간암 검진(상반기)		
		수검인원	위암		수검인원	대장암		수검인원	간암 의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539,303	883	0.16	565,850	354	0.06	27,469	218	0.79
성별	남	320,702	648	0.19	335,858	261	0.08	18,056	141	0.78
	여	218,601	235	0.10	229,992	93	0.04	9,413	77	0.82
연령별	20~29세	-	-	-	-	-	-	-	-	-
	30~39세	-	-	-	-	-	-	-	-	-
	40~49세	48,810	14	0.05	-	-	-	2,807	16	0.57
	50~59세	94,408	73	0.09	100,840	50	0.05	6,367	38	0.60
	60~69세	168,781	244	0.12	198,624	118	0.06	9,870	77	0.78
	70~79세	157,508	332	0.19	185,875	124	0.07	6,425	57	0.89
	80세 이상	69,796	220	0.32	80,511	62	0.08	2,000	30	1.50
장애유형	지체	306,089	451	0.15	314,130	186	0.06	14,528	115	0.79
	뇌병변	28,990	54	0.19	34,635	30	0.09	1,335	9	0.67
	시각	57,728	98	0.17	57,079	33	0.06	2,670	20	0.75
	청각	88,930	207	0.23	103,838	67	0.06	3,605	41	1.14
	언어	2,881	4	0.14	3,181	2	0.06	126	X	X
	지적	14,935	10	0.07	11,137	5	0.04	970	4	0.41
	자폐성	68	0	0.00	12	0	0.00	7	0	0.00
	정신	14,885	19	0.13	15,405	6	0.04	894	4	0.45
	신장	14,750	25	0.17	15,483	10	0.06	1,759	13	0.74
	심장	780	X	X	952	0	0.00	49	0	0.00
	호흡기	1,912	2	0.10	2,475	5	0.20	131	X	X
	간	2,865	5	0.17	3,289	X	X	1,179	9	0.76
	안면	627	X	X	559	0	0.00	37	0	0.00
	장루·요루	2,595	5	0.19	2,649	6	0.23	113	*	
	뇌전증	1,268	X	X	1,026	3	0.29	66	0	0.00
장애정도	중증	130,681	200	0.15	135,949	87	0.06	7,933	58	0.73
	경증	408,622	683	0.17	429,901	267	0.06	19,536	160	0.82
지역	서울	75,279	120	0.16	81,330	64	0.08	3,360	34	1.01
	부산	35,202	62	0.18	34,546	17	0.05	2,508	17	0.68
	대구	24,755	50	0.20	20,375	13	0.06	1,588	15	0.94
	인천	31,627	49	0.15	36,618	29	0.08	1,595	9	0.56
	광주	14,599	23	0.16	13,328	9	0.07	758	7	0.92
	대전	14,698	35	0.24	14,554	14	0.10	825	8	0.97
	울산	10,645	9	0.08	11,180	4	0.04	652	3	0.46
	세종	2,810	6	0.21	2,416	0	0.00	144	2	1.39
	경기	117,276	176	0.15	132,062	85	0.06	5,301	47	0.89
	강원	20,947	27	0.13	23,930	17	0.07	952	4	0.42
	충북	20,682	47	0.23	20,192	12	0.06	775	7	0.90
	충남	27,833	54	0.19	30,042	18	0.06	1,075	11	1.02
	전북	28,306	40	0.14	30,298	15	0.05	1,152	7	0.61
	전남	32,853	57	0.17	32,035	14	0.04	1,926	14	0.73
	경북	36,541	66	0.18	38,741	23	0.06	1,979	9	0.45
	경남	38,838	60	0.15	38,289	20	0.05	2,425	19	0.78
	제주	6,412	2	0.03	5,914	0	0.00	454	5	1.10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암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X):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X로 표기함
4) 비율 = (암판정인원/수검인원) X 100(%)
5) 검진종류별 수검인원은 기존 암환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97-203, 216-222, 235-250, 243-250, 254-259, 263-268.

- 2022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암검진 수검 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암(의심) 판정 비율은 간암(상반기)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 보다 높게 나타남(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제외)
  - 연령별로 살펴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암(의심) 판정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유방암의 경우 연령이 낮아질수록 유방암 의심 비율이 높아짐

〈표 2-3-5〉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 -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계속)

(단위: 명, %)

구분		간암 검진(하반기)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폐암 검진		
		수검인원	간암 의심		수검인원	유방암 의심		수검인원	자궁경부암 의심		수검인원	폐암 의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20,621	166	0.81	203,006	397	0.20	174,649	27	0.02	14,393	545	3.79
성별	남	13,705	122	0.89	-	-	-	-	-	-	14,134	537	3.80
	여	6,916	44	0.64	203,006	397	0.20	174,649	27	0.02	259	8	3.09
연령별	20~29세	-	-	-	-	-	-	2,193	0	0.00	-	-	-
	30~39세	-	-	-	-	-	-	5,260	0	0.00	-	-	-
	40~49세	2,552	11	0.43	14,957	37	0.25	13,263	0	0.00	-	-	-
	50~59세	5,181	26	0.50	30,499	78	0.26	28,138	3	0.01	3,087	77	2.49
	60~69세	7,214	56	0.78	62,696	116	0.19	55,655	8	0.01	8,482	302	3.56
	70~79세	4,508	53	1.18	66,004	110	0.17	52,340	6	0.01	2,824	166	5.88
	80세 이상	1,166	20	1.72	28,850	56	0.19	17,800	10	0.06	-	-	-
장애유형	지체	10,755	90	0.84	114,361	195	0.17	96,475	13	0.01	9,842	360	3.66
	뇌병변	963	12	1.25	9,629	28	0.29	8,808	2	0.02	559	14	2.50
	시각	1,900	14	0.74	21,247	41	0.19	18,936	3	0.02	1,501	56	3.73
	청각	2,600	23	0.88	33,385	57	0.17	27,435	8	0.03	1,628	71	4.36
	언어	125	2	1.60	856	2	0.23	793	0	0.00	60	5	8.33
	지적	750	5	0.67	6,317	13	0.21	6,185	0	0.00	85	6	7.06
	자폐성	5	0	0.00	10	0	0.00	24	0	0.00	-	-	-
	정신	613	2	0.33	7,716	39	0.51	6,624	0	0.00	290	10	3.45
	신장	1,325	9	0.68	6,077	17	0.28	6,182	0	0.00	221	15	6.79
	심장	46	0	0.00	265	X	X	285	0	0.00	14	X	X
	호흡기	98	X	X	495	0	0.00	492	0	0.00	45	X	X
	간	1,278	5	0.39	888	0	0.00	922	0	0.00	48	X	X
	안면	15	X	X	247	X	X	238	0	0.00	15	0	0.00
	장루·요루	93	2	2.15	872	3	0.34	632	X	X	61	3	4.92
	뇌전증	55	0	0.00	641	0	0.00	618	0	0.00	24	0	0.00
장애정도	중증	6,004	49	0.82	48,121	123	0.26	43,758	2	0.00	2,858	126	4.41
	경증	14,617	117	0.80	154,885	274	0.18	130,891	25	0.02	11,535	419	3.63
지역	서울	2,772	19	0.69	30,406	64	0.21	28,562	3	0.01	1,592	62	3.89
	부산	1,678	17	1.01	12,538	33	0.26	11,256	2	0.02	926	33	3.56
	대구	1,175	3	0.26	8,622	17	0.20	8,086	X	X	656	30	4.57
	인천	1,067	7	0.66	11,676	14	0.12	10,127	4	0.04	1,136	43	3.79
	광주	650	5	0.77	5,696	8	0.14	5,138	0	0.00	390	19	4.87
	대전	511	2	0.39	5,661	18	0.32	5,109	0	0.00	358	17	4.75
	울산	457	3	0.66	3,826	5	0.13	3,846	0	0.00	343	13	3.79
	세종	99	X	X	960	2	0.21	824	X	X	43	2	4.65
	경기	4,212	50	1.19	42,962	86	0.20	38,671	3	0.01	3,223	121	3.75
	강원	802	4	0.50	7,666	17	0.22	6,617	X	X	574	17	2.96
	충북	553	3	0.54	7,812	11	0.14	6,291	3	0.05	484	8	1.65
	충남	762	6	0.79	10,682	23	0.22	8,506	X	X	702	44	6.27
	전북	1,013	6	0.59	11,349	24	0.21	9,364	2	0.02	662	17	2.57
	전남	1,426	17	1.19	13,663	21	0.15	8,688	0	0.00	862	27	3.13
	경북	1,504	6	0.40	13,039	19	0.15	10,315	3	0.03	1,072	40	3.73
	경남	1,669	13	0.78	13,686	33	0.24	11,047	3	0.03	1,157	44	3.80
	제주	271	4	1.48	2,762	2	0.07	2,202	0	0.00	213	8	3.76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암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X):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X로 표기함
4) 비율 = (암판정인원/수검인원) X 100(%)
5) 검진종류별 수검인원은 기존 암환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97-203, 216-222, 235-250, 243-250, 254-259, 263-268.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경증장애가 중증장애에 비해 암(의심) 판정 비율이 높고, 유방암, 간암(하반기), 폐암은 중증장애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2-3-6〉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 및 종합소견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구강검진 수검 현황			종합소견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계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필요
연도	2016	1,085,875	241,174	22.2	100.0	3.0	24.0	25.4	47.6
	2017	1,093,947	240,856	22.0	100.0	2.7	25.3	26.0	46.0
	2018	1,213,784	244,043	20.1	100.0	2.6	25.9	26.0	45.5
	2019	1,192,714	251,472	21.1	100.0	2.4	26.8	25.7	45.1
	2020	1,161,556	205,157	17.7	100.0	2.4	27.6	26.3	43.8
	2021	1,193,333	219,202	18.4	100.0	2.5	28.2	26.3	43.0
	2022	1,181,951	211,580	17.9	100.0	2.7	29.1	26.7	41.5
성별	남	710,950	140,380	19.7	100.0	2.8	27.8	26.4	43.1
	여	471,001	71,200	15.1	100.0	2.5	31.7	27.4	38.4
연령별	19세 이하	216	81	37.5	100.0	21.0	22.2	28.4	28.4
	20~44세	156,504	37,557	24.0	100.0	4.7	25.0	33.7	36.6
	45~64세	462,173	96,442	20.9	100.0	2.6	27.1	27.8	42.5
	65세 이상	563,058	77,500	13.8	100.0	1.8	33.6	22.0	42.7
장애유형	지체	574,396	115,088	20.0	100.0	2.5	30.3	27.5	39.7
	뇌병변	91,413	10,907	11.9	100.0	2.6	27.5	24.8	45.0
	시각	117,106	22,368	19.1	100.0	2.5	29.0	27.5	41.0
	청각	184,058	29,933	16.3	100.0	2.4	32.3	24.2	41.1
	언어	8,030	1,493	18.6	100.0	2.3	27.2	25.6	44.9
	지적	86,062	14,617	17.0	100.0	4.7	19.7	26.7	49.0
	자폐성	7,593	1,331	17.5	100.0	8.3	22.5	41.4	27.8
	정신	43,639	5,692	13.0	100.0	2.1	19.3	20.9	57.8
	신장	44,624	5,858	13.1	100.0	3.1	28.0	27.0	41.8
	심장	2,083	421	20.2	100.0	3.3	30.2	25.4	41.1
	호흡기	4,545	647	14.2	100.0	2.0	28.3	24.1	45.6
	간	6,993	1,351	19.3	100.0	1.8	30.1	26.5	41.6
	안면	1,399	368	26.3	100.0	4.9	25.8	26.9	42.4
	장루·요루	6,993	944	13.5	100.0	2.0	30.8	24.2	43.0
	뇌전증	3,017	562	18.6	100.0	1.8	26.5	31.5	40.2
장애정도	중증	391,154	59,546	15.2	100.0	3.2	25.7	25.9	45.3
	경증	790,797	152,034	19.2	100.0	2.4	30.5	27.0	40.0
지역	서울	171,826	31,443	18.3	100.0	2.9	28.3	28.6	40.2
	부산	76,473	13,353	17.5	100.0	1.2	30.1	26.6	42.2
	대구	55,875	8,432	15.1	100.0	1.8	19.7	31.6	46.9
	인천	66,781	15,759	23.6	100.0	2.4	30.2	23.5	43.9
	광주	30,817	6,186	20.1	100.0	0.4	29.5	31.3	38.8
	대전	31,793	8,581	27.0	100.0	2.5	34.9	25.7	36.9
	울산	24,308	8,220	33.8	100.0	9.6	47.1	14.2	29.2
	세종	5,933	1,162	19.6	100.0	2.8	31.5	29.3	36.5
	경기	265,123	46,408	17.5	100.0	2.4	25.7	31.5	40.5
	강원	45,024	7,232	16.1	100.0	4.1	22.2	27.0	46.8
	충북	43,763	10,468	23.9	100.0	3.7	29.5	21.1	45.7
	충남	61,316	9,457	15.4	100.0	3.5	29.1	25.3	42.1
	전북	57,520	13,125	22.8	100.0	2.0	28.3	26.3	43.4
	전남	62,315	6,455	10.4	100.0	2.0	31.8	23.7	42.6
	경북	81,539	9,320	11.4	100.0	2.9	32.7	22.6	41.9
	경남	85,660	13,107	15.3	100.0	1.5	31.0	22.8	44.7
	제주	15,885	2,872	18.1	100.0	0.4	35.1	25.0	39.6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수검률 = (수검인원/대상인원) X 100(%)
4) 종합소견 계(구강검진 수검인원)는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필요의 합을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107-113.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04-113.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82-91.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73-282.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84-293.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96-312.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69-285

- 2022년 기준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인원은 211,580명이고 수검률은 17.9%임. 종합소견을 살펴보면, '정상A' 2.7%, '정상B' 29.1%, '주의' 26.7%, '치료필요'가 41.5%로 수검인원 중 60.0% 이상이 구강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22년 기준 전체 구강검진 수검 및 종합소견 현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전체 구강검진 수검률: 26.5%
· 판정결과: 정상A(4.1%), 정상B(29.4%), 주의(34.0%), 치료필요(32.5%)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구강검진 수검률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합소견 결과 '치료필요'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정상A', '정상B', '주의'는 증가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9.7%로 여성 15.1%에 비해 4.6%p 높고, 종합소견 결과 '치료필요' 비율은 남성이 43.1%로 여성 38.4%에 비해 4.7%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의 구강검진 수검률이 37.5%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은 13.8%로 가장 낮게 나타남. 종합소견 결과 '정상A'의 비율은 19세 이하가 21.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치료필요'의 비율은 45세 이상(45-64세, 65세 이상)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구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장애유형으로는 안면장애 26.3%, 심장장애 20.2%, 지체장애 20.0%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유형으로는 뇌병변장애 11.9%, 정신장애 13.0%, 신장장애 13.1% 등이 있음. 종합소견 결과 '치료필요' 비율은 정신장애가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지적장애 49.0%, 호흡기장애 45.6% 등의 순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9.2%로 중증장애 15.2%에 비해 5.1%p 높고, 종합소견 결과 '치료필요' 비율은 중증 장애가 45.3%로 경증 장애 40.0%에 비해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구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울산 33.8%, 대전 27.0%, 충북 23.9%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전남 10.4%, 경북 11.4%, 대구15.1% 등이 있음. 종합소견 결과 '치료필요' 비율은 대구46.9%, 강원46.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구강검진

- 실시범위 및 대상(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구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직장 피부양자'임

구분	검진대상	실시주기
지역 가입자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 ('17, '19, '21) 홀수년도, ('16, '18, '20, 22') 짝수년도	· 2년에 1회
직장 가입자	· 비사무직근로자전체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년도 대상자	· 비사무직 1년 1회 · 사무직 2년 1회
직장 피부양자	· 만2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중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 ('17, '19, '21) 홀수년도, ('16, '18, '20, 22') 짝수년도	· 2년에 1회

- 주요항목(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6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 치아검사: 치아우식증,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
  - 치주조기검사: 치은염증, 치석
- 구강검진 결과 판정 기준(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6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

판정 결과	판정 기준
정상A	· 검진 결과 구강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	· 검진 결과 구강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이습관 상담,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및 치주관리 등이 필요한 자
주의	·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나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치료필요	· 명확한 우식치아가 있거나 치주질환으로 인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표 2-3-7〉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일, 원)

구분		적용인구	진료실인원	입내원일수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입내원 1회당 진료비
연도	2016	2,423,456	2,348,609	133,148,808	54.9	70,947.2
	2017	2,474,899	2,404,224	139,937,688	56.5	78,358.6
	2018	2,570,851	2,502,296	148,571,222	57.8	83,974.7
	2019	2,605,005	2,537,439	152,377,661	58.5	89,788.1
	2020	2,619,427	2,535,276	143,796,378	54.9	98,708.0
	2021	2,629,451	2,552,035	144,088,715	54.8	104,446.50
	2022	2,618,706	2,566,345	145,765,586	55.7	107,585.00
성별	남	1,514,539	1,474,925	76,326,473	50.4	112,876.50
	여	1,104,167	1,091,420	69,439,113	62.9	101,768.70
연령별	19세 이하	94,576	93,258	3,257,289	34.4	111,259.50
	20~44세	302,197	286,713	9,857,516	32.6	115,362.60
	45~64세	848,122	823,292	43,931,658	51.8	112,078.80
	65세 이상	1,373,811	1,363,082	88,719,123	64.6	104,360.70
장애유형	지체	1,165,372	1,141,551	51,471,497	44.2	91,634.50
	뇌병변	238,013	234,683	22,765,401	95.6	122,591.90
	시각	248,065	242,639	9,682,837	39.0	87,587.30
	청각	418,698	413,796	19,801,694	47.3	85,361.30
	언어	23,004	22,540	1,331,326	57.9	107,491.50
	지적	224,726	213,126	8,704,583	38.7	75,980.90
	자폐성	37,550	36,137	831,182	22.1	59,486.10
	정신	103,586	102,605	13,131,572	126.8	74,823.60
	신장	102,799	102,715	15,353,894	149.4	210,596.30
	심장	4,931	4,913	228,975	46.4	281,179.90
	호흡기	10,927	10,874	573,357	52.5	159,013.10
	간	14,896	14,870	626,573	42.1	378,083.20
	안면	2,709	2,606	83,410	30.8	83,563.50
	장루·요루	16,390	16,275	834,824	50.9	160,833.30
	뇌전증	7,040	7,015	344,461	48.9	95,030.80
장애정도	중증	965,390	938,582	70,448,312	73.0	121,152.70
	경증	1,653,316	1,627,763	75,317,274	45.6	94,894.40
지역	서울	388,997	380,964	20,923,238	53.8	115,677.10
	부산	174,840	171,470	11,973,918	68.5	104,989.20
	대구	126,786	124,482	7,667,251	60.5	104,926.80
	인천	148,328	145,162	7,764,519	52.3	113,447.50
	광주	69,142	67,844	4,254,131	61.5	106,659.60
	대전	71,575	70,304	4,070,533	56.9	104,464.00
	울산	51,045	50,058	2,928,106	57.4	108,507.30
	세종	12,503	12,295	644,915	51.6	111,079.50
	경기	575,001	562,498	27,901,843	48.5	115,654.00
	강원	100,189	97,925	4,561,811	45.5	108,736.10
	충북	96,451	94,473	4,903,293	50.8	105,769.80
	충남	132,411	129,809	7,036,334	53.1	101,598.30
	전북	130,069	128,089	8,453,818	65.0	94,671.70
	전남	137,041	134,795	8,897,558	64.9	97,827.70
	경북	179,980	176,278	10,033,439	55.7	102,596.40
	경남	187,617	183,991	11,728,301	62.5	102,072.30
	제주	36,731	35,908	2,022,578	55.1	97,518.70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적용인구'는 정부나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으로부터 기본 의료서비스(예방, 증진, 치료, 재활, 완화치료)를 제공받는 장애인 인구를 의미함
4) '진료실 인원'은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수로 실인원과 다를 수 있음
5)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정부나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으로부터 기본 의료서비스(예방, 증진, 치료, 재활, 완화치료)를 제공받는 장애인 1명이 1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방문 일수의 평균을 의미함
※ 입내원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 입내원일수/적용인구
6) '입내원 1회당 진료비'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한 명이 의료기관에 1일 입내원할 때 지출하는 진료비의 평균
※ 입내원 1회당 진료비 = 진료비/입내원일수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418-420.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91-393.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57-359.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47-549.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59-561.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97-599.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05-614.

- 2022년 기준 정부나 사회보장기금으로 부터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적용인구) 수는 2,618,706명이고, 진료실인원 수는 2,566,345명임. 입내원일수는 145,765,586일이며,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55.7일, 입내원 1회당 진료비는 107,585.00원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실인원, 입내원 1회당 진료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입내원일수와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는 2020년부터 감소하다 2022년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1인이 남성 1인에 비해 12.5일 더 오래 입내원하고, 남성 1인은 여성 1인에 비해 입내원 1회당 11,107.80원의 진료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높아짐. 65세 이상의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64.6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신장장애가 149.4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입내원 1회당 진료비는 간장애가 378,083.20원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 1인은 경증장애 1인에 비해 27.4일 더 오래 입내원하고, 입내원 1회당 26,258.30원의 진료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적용인구, 진료실인원, 입내원일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로 나타남.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가 높은지역으로는 부산 68.5일, 전북 65.0일, 전남 64.9일 등이 있고, 입내원 1회당 진료비가 높은 지역으로는 서울 115,677.10원, 경기 115,654.0원, 세종 111,079.50원 등이 있음

〈표 2-3-8〉 장애인 진료비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천원, 원)

구분		진료실인원(명)	총진료비(천원)	본인부담금(천원)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원)	본인부담금(원)
연도	2016	2,348,609	11,240,246,142	1,869,355,242	4,785,916	795,941
	2017	2,404,224	12,922,948,012	2,175,332,493	5,375,101	904,796
	2018	2,502,296	14,652,772,963	2,397,795,315	5,855,731	958,238
	2019	2,537,439	16,053,215,192	2,624,587,972	6,324,294	1,033,978
	2020	2,535,276	16,673,457,983	2,752,827,670	6,573,759	1,085,343
	2021	2,552,987	17,677,480,641	2,946,297,973	6,924,234	1,154,059
	2022	2,567,207	18,454,873,990	3,079,892,081	7,188,697	1,199,705
성별	남	1,475,573	10,102,680,864	1,631,095,742	6,846,615	1,105,398
	여	1,091,634	8,352,193,127	1,448,796,338	7,651,093	1,327,181
연령별	19세 이하	93,271	402,868,516	58,656,382	4,319,333	628,881
	20~44세	286,884	1,275,753,005	176,836,841	4,446,930	616,405
	45~64세	823,727	5,619,207,078	762,734,606	6,821,686	925,956
	65세 이상	1,363,325	11,157,045,391	2,081,664,251	8,183,702	1,526,902
장애유형	지체	1,142,010	5,971,803,313	1,232,480,308	5,229,204	1,079,220
	뇌병변	234,768	3,096,627,840	537,958,296	13,190,162	2,291,446
	시각	242,717	1,112,970,689	224,264,018	4,585,467	923,973
	청각	413,870	2,192,008,699	466,315,740	5,296,370	1,126,720
	언어	22,549	165,061,599	28,736,713	7,320,129	1,274,412
	지적	213,258	779,537,946	87,458,102	3,655,375	410,105
	자폐성	36,144	63,673,737	14,585,386	1,761,668	403,535
	정신	102,614	1,051,407,984	79,473,661	10,246,243	774,491
	신장	102,716	3,353,468,202	318,973,708	32,647,963	3,105,395
	심장	4,913	77,765,988	9,149,741	15,828,615	1,862,353
	호흡기	10,876	113,279,499	18,759,547	10,415,548	1,724,857
	간	14,870	266,032,957	31,059,676	17,890,582	2,088,748
	안면	2,608	8,804,990	1,706,235	3,376,147	654,231
	장루·요루	16,278	152,878,893	23,697,253	9,391,749	1,455,784
	뇌전증	7,016	49,551,654	5,273,698	7,062,664	751,667
장애정도	중증	938,937	9,375,954,181	1,221,554,465	9,985,712	1,300,997
	경증	1,628,270	9,078,919,810	1,858,337,616	5,575,807	1,141,296
지역	서울	381,042	2,841,381,289	466,214,993	7,456,872	1,223,527
	부산	171,499	1,453,307,130	230,659,163	8,474,143	1,344,959
	대구	124,498	941,578,872	146,103,853	7,563,004	1,173,544
	인천	145,187	1,038,560,371	166,844,200	7,153,260	1,149,168
	광주	67,851	524,830,010	84,566,279	7,735,037	1,246,353
	대전	70,324	501,857,264	80,517,918	7,136,358	1,144,956
	울산	50,064	364,115,523	63,362,615	7,273,001	1,265,632
	세종	12,300	84,325,784	14,982,210	6,855,755	1,218,066
	경기	562,724	3,811,993,724	653,932,786	6,774,180	1,162,084
	강원	98,082	602,847,659	103,305,337	6,146,364	1,053,255
	충북	94,524	615,124,517	104,138,611	6,507,601	1,101,716
	충남	129,846	855,505,178	150,499,135	6,588,614	1,159,059
	전북	128,136	955,192,620	158,600,936	7,454,522	1,237,755
	전남	134,822	1,022,289,906	176,835,618	7,582,516	1,311,623
	경북	176,344	1,221,487,117	205,839,835	6,926,729	1,167,263
	경남	184,049	1,385,963,406	233,458,951	7,530,404	1,268,461
	제주	35,915	234,513,622	40,029,640	6,529,685	1,114,566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진료실 인원'은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수로 실인원과 다를 수 있음
4) '총 진료비'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5)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1명이 1년 동안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지출하는 진료비의 평균을 말함
※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 총진료비/진료실인원
6)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청구명세서 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1명이 1년 동안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지출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의 평균을 말함
※ 1인당 연평균 본인 부담금 = (진료비-급여비)/진료실인원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430-432.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403-405.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69-371.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59-561.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71-573.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09-611.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05-614.

- 2022년 기준 장애인의 총 진료비는 약 18조 4천억 원 이상이며, 그 중 본인부담금 총액인 약 3조원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7,188,697원이며,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1,199,705원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은 매해 증가하고 있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1인이 남성 1인에 비해 연평균 총진료비가 804,478원 더 많고, 221,783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65세 이상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1,526,902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장장애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이 각각 32,647,963원, 3,105,395원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는 경증장애에 비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가 4,409,905원 더 많고, 159,701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료실인원, 총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로 나타남.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가 높은 지역으로는 부산 8,474,143원, 광주 7,735,037원, 전남 7,582,516원 등이 있고,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이 높은 지역으로는 부산 1,344,959원, 전남 1,311,623원, 경남 1,268,461원 등이 있음

〈표 2-3-9〉 장애인 의료비 수급권자 현황 – 수급자격별, 연도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연도	2017	93,499	100.0	39,382	42.1	54,117	57.9
	2018	91,882	100.0	37,991	41.3	53,891	58.7
	2019	91,007	100.0	36,859	40.5	54,148	59.5
	2020	91,537	100.0	37,040	40.5	54,497	59.5
	2021	92,671	100.0	35,491	38.3	57,180	61.7
	2022	91,981	100.0	34,478	37.5	57,503	62.5
	2023	91,948	100.0	33,060	36.0	58,888	64.0
장애정도	중증	42,206	100.0	17,311	41.0	24,895	59.0
	경증	49,742	100.0	15,749	31.7	33,993	68.3
지역	서울	14,602	100.0	5,938	40.7	8,664	59.3
	부산	7,792	100.0	3,003	38.5	4,789	61.4
	대구	5,659	100.0	2,009	35.5	3,650	64.5
	인천	5,652	100.0	2,247	39.8	3,405	60.2
	광주	3,436	100.0	1,450	42.2	1,986	57.8
	대전	2,860	100.0	1,240	43.4	1,620	56.6
	울산	1,242	100.0	493	39.7	749	60.3
	세종	255	100.0	85	33.3	170	66.7
	경기	15,056	100.0	5,034	33.4	10,022	66.6
	강원	3449	100.0	1157	33.6	2,292	66.5
	충북	2,850	100.0	1,064	37.3	1,786	62.7
	충남	3,198	100.0	1,171	36.6	2,027	63.4
	전북	6,800	100.0	2,056	30.2	4,744	69.8
	전남	5,534	100.0	1,542	27.9	3,992	72.1
	경북	6,078	100.0	1,979	32.6	4,099	67.4
	경남	6,049	100.0	2,011	33.3	4,038	66.8
	제주	1,436	100.0	581	40.5	855	59.5

주: 1) 각년도 12월말 기준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복지로 복지통계(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Iframe.do?datsNo=37&datsClNo=1045&datsClCrit=WS)(검색일 2023-6-23).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2023년 기준 전체 장애인 의료비 수급권자 수는 91,948명이며, 수급자격별로는 '의료급여 2종'은 33,060명(36.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58,888명(64.0%)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급권자 수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증감을 반복하였고, 2022년 대비 2023년 33명 감소함. 수급자격별로는 '의료급여 2종'은 2017년 대비 2023년 감소한 반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수급권자 수는 49,742명으로 중증장애 42,206명에 비해 7,536명이 더 많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의 전체 수급권자 수가 각각 14,602명, 15,056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의료비 지원(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I)」 p381-382)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분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표 2-3-10〉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연도	2020	76	6	16	10	26	18
	2021	100	10	16	10	46	18
	2022	107	14	19	10	46	18
	2023	120	17	22	10	53	18
	2024	120	17	22	10	53	18
지역	서울	18	2	2	1	7	6
	부산	13	1	4	1	6	1
	대구	8	1	–	1	5	1
	인천	8	1	1	1	3	2
	광주	5	1	–	1	3	–
	대전	8	1	1	–	4	2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15	2	1	1	11	–
	강원	5	1	1	1	1	1
	충북	7	1	1	–	4	1
	충남	4	1	–	1	2	–
	전북	3	1	–	1	1	–
	전남	2	1	1	–	–	–
	경북	7	1	3	–	2	1
	경남	11	1	5	–	3	2
	제주	6	1	2	1	1	1

주: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으로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장애인건강권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지정함
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 및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정한 곳을 의미함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치과)병원, 보건소 등에 설치·위탁·운영지원한 곳을 의미함
4) '재활의료기관'은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의 최소화 및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으로,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지정함
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제58조, 제59조 등에 근거하여 지정 및 운영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0). 「2020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참고·서식-」 p110-116.
2) 보건복지부(2021). 「2021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p258-266.
3) 보건복지부(2022). 「2022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p263-271.
4) 보건복지부(2023). 「2023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p266-276.
5) 보건복지부(2024). 「2023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p271-278.

- 2024년 기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관련 전체 기관수는 120개이며, 기관유형별로는 '재활의료기관' 53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2개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8개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17개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10개소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개소수는 2020년 76개소에서 2024년 120개소로 44개소 증가하였고, 기관유형별로는 해당기간동안 '재활의료기관' 27개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11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6개소가 증가하였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동일 개소수를 유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개소수는 서울 18개소, 경기 15개소, 부산 13개소, 경남 11개소 등이 운영되는 반면, 울산과 세종은 운영 및 지정된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기관운영별로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북을 제외한 지역에 1-5개소가 있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을 제외한 지역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고, '재활의료기관'은 울산, 세종,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 1-11개소가 운영됨. 마지막으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3)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표 2-3-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물리치료	20.3	26.7	29.6	9.1	11.7	5.3	5.6	–	7.6	4.7	11.5	2.5	4.2	21.9	8.5	3.3
	작업치료	1.0	0.2	4.0	0.4	–	–	2.4	12.1	3.1	–	–	–	–	11.2	–	–
	언어치료	1.5	0.1	2.1	0.1	0.6	11.0	12.5	45.3	0.3	–	–	–	–	–	–	–
	음악치료	0.9	–	0.9	0.1	0.3	2.4	5.5	22.1	6.4	–	–	–	–	–	–	–
	놀이치료	0.5	–	0.6	–	0.1	5.2	3.9	11.9		–	–	–	–	–	–	–
	미술치료	1.1	–	1.6	0.1	0.3	5.1	7.9	23.6	4.6	–	–	–	–	–	–	–
	심리행동치료	1.0	0.1	0.5	0.1	–	7.5	5.8	8.8	8.8	–	–	–	–	11.2	–	11.2
	기타	1.2	0.5	1.9	0.4	0.1	5.2	6.4	23.1	2.3	–	–	–	–	–	–	–
2014	물리치료	22.4	29.6	31.6	12.7	15.8	11.9	4.4	4.2	2.0	4.8	19.8	3.4	11.8	7.9	16.8	20.6
	작업치료	1.6	0.2	7.4	–	0.2	–	5.1	14.1	4.6	–	–	4.6	–	–	–	4.2
	언어치료	1.7	–	3.5	0.2	1.7	5.3	9.9	42.6	–	–	–	–	–	–	–	4.0
	음악치료	1.0	–	0.6	–	0.4	–	7.8	17.4	6.9	–	–	–	–	–	–	–
	놀이치료	0.7	–	0.9	–	0.4	–	3.5	14.5	4.6	–	–	–	–	–	–	–
	미술치료	1.1	–	0.8	0.2	0.4	3.5	7.4	28.5	4.2	–	–	–	–	–	–	–
	심리행동치료	1.1	0.2	0.7	0.2	–	–	4.8	23.1	6.6	–	1.4	–	–	–	–	3.3
	기타	1.1	0.3	1.5	–	0.2	1.8	6.7	26.8	1.4	–	–	3.2	–	–	–	–
2017	물리치료	22.9	29.6	34.2	14.3	16.0	4.1	6.0	2.3	8.9	10.2	14.5	18.1	5.8	26.1	4.2	3.4
	작업치료	1.5	0.4	6.0	0.5	–	–	5.1	13.6	1.1	–	–	–	–	–	–	–
	언어치료	2.1	0.1	3.1	0.2	0.5	26.3	13.7	41.0	–	–	–	–	–	–	–	–
	음악치료	0.9	–	1.0	–	–	6.7	6.6	15.2	2.5	–	–	–	–	–	–	–
	놀이치료	0.9	0.1	0.7	0.1	–	13.1	5.2	19.2	2.3	–	–	–	–	–	–	–
	미술치료	0.9	–	0.6	0.2	–	7.4	6.6	17.0	2.9	–	–	–	–	–	–	–
	심리행동치료	1.0	0.1	0.6	–	–	4.2	8.2	17.7	2.9	–	–	–	–	–	–	–
	기타	1.4	0.3	3.8	0.2	–	4.1	7.2	19.4	2.0	–	–	–	–	–	–	–
2020	물리치료	20.1	28.9	29.7	9.2	11.8	7.9	7.1	0.7	4.9	6.9	9.9	11.4	5.7	13.8	5.6	9.8
	작업치료	1.6	0.7	7.6	–	0.2	3.8	3.4	12.6	0.4	0.7	–	0.4	–	–	–	2.9
	언어치료	2.0	0.1	2.9	–	0.9	21.6	11.5	37.5	–	–	–	–	–	0.9	–	3.2
	음악치료	0.6	–	0.6	0.1	0.3	1.0	3.7	11.2	0.5	–	–	–	–	–	–	1.6
	놀이치료	0.7	–	0.6	0.1	0.2	6.6	4.6	16.7	0.1	–	–	–	–	–	–	–
	미술치료	0.7	–	0.4	0.1	0.2	3.0	3.7	18.6	0.5	–	–	–	–	–	–	0.9
	심리행동치료	1.0	0.2	0.5	0.2	–	1.9	4.3	16.8	6.8	0.4	–	–	1.2	–	–	1.7
	기타	0.6	0.3	0.8	–	0.3	3.3	1.9	14.1	1.0	–	–	–	–	–	–	0.8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215.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30.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49.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39.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의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물리치료가 20.1%로 가장 높았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지적장애를 제외하고 물리치료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재활치료로 나타남

〈표 2-3-12〉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물리치료	20.3	15.8	26.4	14.1	11.2	17.4	27.8	15.6	21.6	20.2
	작업치료	1.0	0.9	1.0	9.9	1.7	0.5	0.4	3.2	0.3	1.0
	언어치료	1.5	1.7	1.3	36.8	0.9	0.2	0.0	4.7	0.6	1.5
	음악치료	0.9	0.9	0.9	14.0	1.9	0.0	0.1	3.0	0.3	0.9
	놀이치료	0.5	0.5	0.4	9.3	0.6	0.1	0.1	1.6	0.2	0.5
	미술치료	1.1	1.1	1.0	20.6	1.8	0.1	0.1	3.2	0.5	1.1
	심리행동치료	1.0	1.1	0.8	13.7	1.9	0.4	0.0	2.1	0.7	1.0
	기타	1.2	1.2	1.2	15.6	1.3	0.6	0.4	2.9	0.7	1.2
2014	물리치료	22.4	16.2	30.8	16.8	7.1	19	31.4	16.8	25.7	22.2
	작업치료	1.6	1.9	1.2	24.3	2.3	0.8	0.6	9.7	0.3	1.6
	언어치료	1.7	1.9	1.3	45.9	1.4	0.2	0.2	3.9	0.2	1.6
	음악치료	1	1.1	0.9	14.5	2.9	0.4	-	2.7	-	1.1
	놀이치료	0.7	0.8	0.5	9.2	1.6	0.3	0.1	1.7	-	0.7
	미술치료	1.1	1.2	0.9	20.4	2.4	0.2	0.1	1.1	0.1	1.1
	심리행동치료	1	1.5	0.3	16.6	1.7	0.7	-	2.2	0.2	1
	기타	1.1	1.4	0.7	16.9	2	0.5	0.3	2.5	0.2	1.1
2017	물리치료	22.9	16.0	32.1	17.8	10.1	17.7	31.1	17.5	26.2	22.9
	작업치료	1.5	1.3	1.8	20.0	2.0	0.9	0.4	3.4	0.3	1.5
	언어치료	2.1	2.5	1.6	52.0	2.3	0.2	0.1	5.3	0.1	2.1
	음악치료	0.9	1.0	0.7	15.7	2.4	0.1	0.0	2.4	0.0	0.9
	놀이치료	0.9	1.1	0.7	17.7	1.7	0.1	0.1	2.2	0.1	0.9
	미술치료	0.9	0.9	0.9	15.7	2.7	0.1	0.0	2.4	0.0	0.9
	심리행동치료	1.0	1.1	1.0	18.4	2.3	0.3	0.0	2.5	0.1	1.0
	기타	1.4	1.4	1.5	21.8	2.2	0.7	0.3	3.0	0.4	1.4
2020	물리치료	20.1	15.9	25.9	16.6	10.1	19.0	23.7	15.2	23.1	20.1
	작업치료	1.6	1.5	1.7	20.9	2.0	1.0	0.7	3.1	0.6	1.6
	언어치료	2.0	2.5	1.3	55.6	1.3	0.4	0.1	4.7	0.4	2.0
	음악치료	0.6	0.6	0.6	13.8	0.7	0.1	0.1	1.4	0.1	0.6
	놀이치료	0.7	15.9	0.6	20.9	0.5	0.0	0.1	1.7	0.2	0.7
	미술치료	0.7	0.8	0.4	17.4	0.5	0.1	0.1	1.5	0.1	0.7
	심리행동치료	1.0	1.1	0.9	12.7	1.8	0.9	0.2	2.3	0.2	1.0
	기타	0.6	0.6	0.6	11.2	0.5	0.4	0.2	1.2	0.3	0.6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3)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437.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51.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531.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25-527.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은 25.9%로 남성 15.9% 보다 월등히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이 23.7%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17세 이하는 언어치료 비율이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장애가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은 23.1%로 중증장애에 17.5%에 비해 높은 반면, 그 외의 서비스에서는 중증장애가 경증장애보다 높게 나타남

〈표 2-3-13〉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물리치료	2.4	2.2	3.2	1.9	2.0	2.1	1.6	-	2.5	1.7	2.9	2.2	2.0	3.5	3.0	1.9
	작업치료	3.4	2.5	2.8	1.0	-	-	7.5	2.3	3.2	-	-	-	-	1.0	-	-
	언어치료	1.8	2.0	2.5	1.0	1.6	1.7	1.7	1.8	2.0	-	-	-	-	-	-	-
	음악치료	1.8	-	2.8	2.0	1.0	1.0	1.6	1.6	2.0	-	-	-	-	-	-	-
	놀이치료	2.7	-	3.1	-	1.0	1.2	2.4	1.5	4.2	-	-	-	-	-	-	-
	미술치료	1.8	2.0	2.4	1.0	1.0	1.3	1.4	1.6	2.4	-	-	-	-	-	-	-
	심리행동치료	1.5	1.0	1.1	1.0	-	1.2	1.5	1.9	1.6	-	-	-	-	1.0	-	1.0
	기타	2.9	4.0	3.7	5.0	1.0	2.0	2.3	2.6	1.0	-	-	-	-	-	-	-
2014	물리치료	2.4	2.3	3.2	2.3	2.2	2.5	2.6	2.1	1.6	1.9	2.4	1.9	2.5	1.0	2.3	1.6
	작업치료	4.5	3.9	3.5		1.6	-	7.3	2.8	6.3	-	-	1.0	-	-	-	1.0
	언어치료	2.0	2.0	2.3	2.7	2.7	1.5	1.7	1.8	-	-	-	-	-	-	-	1.0
	음악치료	2.2	1.0	2.4	-	4.0	-	2.4	1.2	2.0	-	-	-	-	-	-	-
	놀이치료	2.2	-	1.5	-	4.0	-	1.7	1.5	3.1	-	-	-	-	-	-	-
	미술치료	1.8	1.0	1.6	2.0	4.0	4.4	1.3	1.3	3.1	-	-	-	-	-	-	-
	심리행동치료	2.3	1.2	1.6	2.0	-	-	2.1	1.8	3.6	-	1.0	-	-	-	-	1.0
	기타	6.0	2.3	3.6	-	3.0	1.0	7.9	4.1	15.0	-	-	13.0	-	-	-	-
2017	물리치료	2.0	1.9	2.9	1.6	1.8	1.0	1.5	1.0	1.9	1.3	1.0	1.6	2.8	1.7	2.8	1.8
	작업치료	2.8	2.6	2.6	9.6	-	-	2.3	1.6	7.0	-	-	4.6	-	-	-	4.2
	언어치료	1.7	3.1	2.6	1.0	2.5	2.5	1.2	1.7	-	-	-	-	-	-	-	4.0
	음악치료	1.6	1.0	1.3	-	-	1.0	1.7	1.6	1.8	-	-	-	-	-	-	-
	놀이치료	2.0	1.0	1.7	5.0	1.0	1.5	1.6	3.3	2.1	-	-	-	-	-	-	-
	미술치료	1.8	-	0.6	2.0	1.0	1.0	1.9	2.7	1.4	-	-	-	-	-	-	-
	심리행동치료	1.4	1.7	1.7	-	1.0	0.5	1.4	1.3	2.1	-	-	-	-	-	-	-
	기타	2.9	2.8	2.8	1.0	-	1.1	2.7	2.0	5.2	-	-	-	-	-	-	-
2020	물리치료	2.7	2.6	3.1	2.9	2.7	3.5	2.6	1.0	3.6	3.2	1.8	2.0	1.6	2.3	19.9	2.0
	작업치료	4.0	7.5	3.5	-	1.4	1.3	2.2	2.1	2.7	14.6	-	2.0	-	-	-	2.5
	언어치료	2.4	8.5	1.5	-	2.0	6.2	1.9	2.1	-	-	-	-	-	4.0	-	2.0
	음악치료	1.4	-	1.7	2.0	0.8	1.3	1.5	1.5	1.0	-	-	-	-	-	-	1.5
	놀이치료	2.4	1	1.0	20.0	1.2	9.9	1.5	2.4	1.0	-	-	-	-	-	-	-
	미술치료	1.3	2.4	0.8	2.0	0.8	3.2	1.1	1.6	1.0	-	-	-	-	-	-	1.0
	심리행동치료	2.5	2.5	1.0	6.1	-	2.1	2.0	2.3	3.3	1.0	-	-	1.0	-	-	2.0
	기타	3.3	1.6	1.7	-	3.3	29.2	2.1	2.7	1.3	-	-	-		-	-	1.0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2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31.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50.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40.

- 2020년 기준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은 전체적으로 작업치료가 4.0시간으로 가장 높았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의 경우 놀이치료가 각각 20.0시간으로 다른 치료에 비해 더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신장장애의 경우 작업치료를 받는 시간이 14.6시간,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물리치료가 19.9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표 2-3-14〉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물리치료	2.4	2.5	2.3	2.2	2.6	2.4	2.3	3.2	2.2	2.3
	작업치료	3.4	4.3	2.3	1.8	5.3	5.0	1.7	3.2	3.9	3.4
	언어치료	1.8	1.7	2.1	1.7	3.1	2.1	1.0	1.9	1.6	1.8
	음악치료	1.8	1.6	2.2	1.6	2.1	1.0	2.6	1.9	1.5	1.8
	놀이치료	2.7	1.9	4.1	1.9	3.4	7.5	4.4	3.0	2.0	2.7
	미술치료	1.8	1.5	2.2	1.4	1.9	7.5	3.3	2.1	1.2	1.8
	심리행동치료	1.5	1.4	1.6	1.5	1.7	1.0	-	1.8	1.1	1.4
	기타	2.9	2.7	3.2	2.3	2.9	3.8	3.7	3.1	2.8	2.9
2014	물리치료	2.4	2.4	2.4	2.9	2.1	2.5	2.4	2.6	2.4	2.5
	작업치료	5.4	4.6	4.4	2.9	7.6	4.2	4.8	4.5	5.6	4.6
	언어치료	2.0	2.0	1.9	1.8	1.7	3.3	3.8	2.0	2.3	2.0
	음악치료	2.2	2.4	1.8	3.0	1.7	1.8	1.0	2.2	2.4	2.2
	놀이치료	2.2	2.3	1.9	1.8	2.3	2.7	2.1	2.2	1.0	2.2
	미술치료	1.8	1.7	1.9	1.5	2.1	2.5	1.5	1.7	3.4	1.8
	심리행동치료	2.3	2.3	2.3	1.6	3.8	1.8	-	2.4	1.2	2.3
	기타	6.0	7.4	2.0	5.1	8.0	6.3	3.4	6.5	2.0	5.9
2017	물리치료	2.0	2.0	2.0	1.8	1.7	2.0	2.0	2.3	1.9	2.0
	작업치료	2.8	3.8	1.9	1.2	3.1	4.7	4.7	2.4	5.7	2.8
	언어치료	1.7	1.9	1.5	1.7	1.6	2.4	3.0	1.7	3.4	1.8
	음악치료	1.6	1.7	1.3	1.3	2.1	1.6	1.0	1.6	-	1.6
	놀이치료	2.0	2.0	2.1	1.6	2.7	4.2	1.0	2.1	0.7	2.0
	미술치료	1.8	2.0	1.5	1.7	1.8	2.6	-	1.8	1.0	1.8
	심리행동치료	1.4	1.2	1.8	1.3	1.6	1.7	1.0	1.5	0.6	1.4
	기타	2.9	2.6	3.2	1.8	3.6	4.2	3.8	3.0	2.4	2.9
2020	물리치료	2.7	2.6	2.8	3.2	3.2	2.5	2.8	3.1	2.6	2.7
	작업치료	4.0	2.5	5.7	2.5	2.4	7.3	4.4	3.2	6.2	4.0
	언어치료	2.4	1.9	3.7	2.4	1.7	4.1	2.4	1.9	5.9	2.4
	음악치료	1.4	1.4	1.5	1.5	1.6	1.0	1.0	1.5	0.9	1.4
	놀이치료	2.4	1.9	3.4	2.5	1.8	1.0	3.3	1.7	6.7	2.4
	미술치료	1.3	1.4	1.1	1.3	1.4	1.0	1.5	1.3	1.3	1.3
	심리행동치료	2.5	2.4	2.7	2.1	2.3	2.7	3.8	2.4	2.7	2.5
	기타	3.3	2.6	4.3	4.5	2.0	1.5	2.5	2.3	5.7	3.3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3)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437.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51.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532.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28.

-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미술치료 시간이 0.3시간 많았고, 그 외의 치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에서는 기타치료, 18-44세 이하에서는 물리치료, 45-64세 이하, 65세 이상에서는 작업치료가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장애가 중증장애에 비해 작업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심리행동치료, 기타에 시간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15〉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물리치료	4.4	4.0	7.0	3.6	1.9	4.4	7.3	-	1.4	3.2	1.0	1.0	-	-	4.8	180.0
	작업치료	11.2	18.0	9.3	20.0	-	-	10.2	12.9	2.0	-	-	-	-	-	-	-
	언어치료	13.0	16.5	17.0	6.0	9.4	6.7	10.2	18.3	-	-	-	-	-	-	-	-
	음악치료	7.8	-	2.3	24.0	4.0	6.8	8.8	12.0	1.2	-	-	-	-	-	-	-
	놀이치료	6.9	-	7.2	-	5.0	7.3	5.1	17.3	1.0	-	-	-	-	-	-	-
	미술치료	6.8	26.0	2.8	3.0	-	18.4	7.0	7.8	1.0	-	-	-	-	-	-	-
	심리행동치료	10.2	1.0	14.8	2.5	-	3.4	11.3	30.6	2.0	-	-	-	-	1.0	-	2.0
	기타	11.1	5.7	9.1	1.0	6.0	14.5	12.5	23.9	1.0	-	-	-	-	-	-	-
2014	물리치료	2.7	2.5	4.9	2.6	1.4	1.5	2.3	0.9	1.4	1.7	3.4	0.9	5.1	2.0	5.7	0.5
	작업치료	5.2	3.7	6.7	-	1.0	-	4.2	11.8	0.1	-	-	-	-	-	-	2.9
	언어치료	9.3	-	7.2	5.6	6.1	4.2	9.0	16.2	-	-	-	-	-	-	-	4.0
	음악치료	2.5	-	5.5	-	-	-	2.5	6.4	0.8	-	-	-	-	-	-	-
	놀이치료	5.3	-	4.9	-	-	-	9.2	6.5	0.3	-	-	-	-	-	-	-
	미술치료	3.7	3.7	6.7	0.7	-	7.9	2.3	9.3	0.6	-	-	-	-	-	-	-
	심리행동치료	4.0	3.3	4.7	0.7	-	-	4.2	8.1	1.5	-	5.0	-	-	-	-	4.2
	기타	9.2	19.0	13.7	-	2.5	0.4	6.3	6.1	0.4	-	-	22.0	-	-	-	-
2017	물리치료	2.8	2.8	3.6	2.4	2.0	-	5.1	18.0	1.5	2.1	1.6	1.4	0.3	1.6	1.1	0.2
	작업치료	5.4	3.3	4.6	5.6	-	-	5.8	13.5	-	-	-	-	-	-	-	-
	언어치료	12.3	21.6	11.5	4.0	2.4	8.1	9.0	22.4	-	-	-	-	-	-	-	-
	음악치료	6.4	1.5	4.5	-	-	15.0	3.3	16.5	-	-	-	-	-	-	-	-
	놀이치료	7.1	0.1	1.7	4.0	24.0	17.0	3.3	14.7	-	-	-	-	-	-	-	-
	미술치료	7.0	-	4.4	4.0	24.0	12.0	4.5	16.9	0.7	-	-	-	-	-	-	-
	심리행동치료	7.6	-	11.6	-	60.0	-	5.6	16.7	2.9	-	-	-	-	-	-	-
	기타	8.7	5.1	10.1	1.0	-	4.6	7.1	18.1	2.7	-	-	-	-	-	-	-
2020	물리치료	2.4	2.5	2.3	2.9	2.5	4.6	1.5	16.8	0.7	0.9	1.6	1.2	2.3	2.3	1.4	0.6
	작업치료	5.6	4.4	3.0	-	0.5	4.7	11.6	12.6	3.4	1.2	-	1.0	-	-	-	2.1
	언어치료	8.0	41.9	5.3	-	4.7	12.2	6.0	9.8	-	-	-	-	-	5.0	-	3.8
	음악치료	5.1	-	10.7	5.0	0.8	4.0	4.2	7.2	0.0	-	-	-	-	-	-	0.9
	놀이치료	5.6	8.0	0.0	5.0	0.1	12.6	4.8	7.6	0.0	-	-	-	-	-	-	0.0
	미술치료	4.2	8.0	0.0	5.0	1.0	17.7	2.7	6.3	0.0	-	-	-	-	-	-	5.0
	심리행동치료	3.6	1.2	0.5	1.7	-	9.6	3.0	10.3	0.9	1.6	-	-	13.3	-	-	1.3
	기타	8.4	2.7	2.5	-	7.0	16.1	10.1	15.5	0.1	-	-	-	-	-	-	1.5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2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32.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51.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41.

- 2020년 기준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은 전체적으로 언어치료가 8.0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와 자폐성장애의 치료비용이 다른 장애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3-16〉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물리치료	4.4	4.6	4.2	15.0	4.7	5.5	3.1	6.5	3.9	4.3
	작업치료	11.2	13.2	8.8	11.9	5.7	23.7	8.5	11.8	9.3	11.2
	언어치료	13.0	12.8	13.3	13.1	13.7	12.2	5.0	15.0	9.9	13.3
	음악치료	7.8	7.8	7.9	9.5	4.7	4.0	3.0	6.9	10.6	7.8
	놀이치료	6.9	8.0	4.7	8.4	2.4	-	4.7	6.8	7.1	6.9
	미술치료	6.8	7.2	6.3	8.0	2.6	-	4.3	7.1	6.1	6.8
	심리행동치료	10.2	11.5	7.4	12.4	2.6	1.4	-	9.1	7.8	8.5
	기타	11.1	12.4	8.9	17.9	4.6	6.0	4.3	13.2	8.5	11.1
2014	물리치료	2.7	3	2.6	8.6	3.4	3.5	2.1	3.3	2.6	2.8
	작업치료	5.2	5.5	4.3	5.8	2.6	1.9	12.3	4	14.5	5
	언어치료	9.3	10.6	6.7	9.3	9.6	0.8	13.4	9.4	8.8	9.4
	음악치료	2.5	1.9	3.4	5.1	1	-	-	2.4	7.4	2.5
	놀이치료	5.3	5	5.8	9.3	3.4	-	3.2	4.6	20	4.8
	미술치료	3.7	4.5	2.2	5.8	1.5	-	4.7	3.4	12.0	3.7
	심리행동치료	4	4.3	2.3	4.7	4	2.7	-	3.5	5.6	3.8
	기타	9.2	6.5	16.7	10.7	4.4	11.3	13.3	7.2	18.2	8.6
2017	물리치료	2.8	3.0	2.7	7.2	5.2	3.4	2.2	3.4	2.7	2.9
	작업치료	5.4	5.6	5.2	6.3	5.7	1.3	8.1	6.0	0.6	5.4
	언어치료	12.3	12.4	12.0	11.8	12.4	13.0	36.0	12.3	13.9	12.4
	음악치료	6.0	7.7	2.4	7.2	4.9	-	1.5	6.0	-	6.0
	놀이치료	7.1	8.2	4.7	9.3	0.5	-	0.1	6.8	10.2	7.1
	미술치료	7.0	8.6	4.7	10.2	2.6	-	-	7.0	24.0	7.1
	심리행동치료	7.6	8.2	6.6	10.7	3.1	-	-	7.1	6.2	7.0
	기타	8.7	9.5	7.6	10.8	6.0	5.0	10.2	9.3	5.4	8.6
2020	물리치료	2.4	2.6	2.2	4.1	3.0	2.5	2.2	2.3	2.4	2.4
	작업치료	5.6	7.3	3.6	10.2	2.2	2.7	3.0	6.5	3.1	5.6
	언어치료	8.0	6.2	13.0	7.9	5.6	17.1	0.7	7.2	13.8	8.0
	음악치료	5.1	6.1	3.8	5.0	9.2	0.0	1.2	5.4	0.8	5.1
	놀이치료	5.6	7.0	3.2	6.2	1.3	0.0	3.7	5.4	6.8	5.6
	미술치료	4.2	4.6	3.1	4.4	4.8	0.0	3.7	4.3	3.9	4.2
	심리행동치료	3.6	4.4	2.3	7.1	2.1	0.9	1.9	3.9	2.3	3.6
	기타	8.4	9.2	7.3	12.1	7.7	2.4	4.1	10.0	4.7	8.4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3)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437.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52.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532.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28.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월 평균 비용을 성별로 살펴보면, 언어치료를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의 경우 의 경우 기타치료, 18-44세 이하의 경우 음악치료, 45-64세 이하의 경우 언어치료, 65세 이상의 경우 놀이치료 및 미술치료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정신건강

(1) 스트레스

〈표 2-4-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인지정도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11.5	10.0	16.1	14.6	7.8	18.8	6.3	19.9	18.0	19.3	6.1	10.7	19.9	23.9	13.1	22.5
	많이 느끼는 편	41.2	41.4	46.2	36.6	38.1	44.5	36.1	45.2	44.0	43.4	68.6	52.7	19.3	31.0	48.0	57.9
	조금 느끼는 편	34.5	37.4	26.6	34.4	38.5	20.9	36.0	23.9	21.8	31.5	24.7	24.3	35.9	30.1	30.8	13.9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2.8	11.6	11.1	14.3	15.6	15.8	21.6	11.1	16.2	5.7	0.7	12.3	24.9	15.0	8.2	5.7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많이 느낌	20.9	21.2	24.9	18.1	17.2	17.4	13.0	37.9	27.1	24.7	32.7	13.8	33.0	40.9	39.2	27.3
	느끼는 편	40.1	40.3	41.0	44.2	37.8	41.0	36.8	31.0	38.5	39.9	32.3	45.9	17.2	33.5	30.2	42.5
	보통	21.1	21.0	19.7	21.1	24.3	23.3	23.0	26.6	16.8	16.7	24.2	24.1	17.1	-	23.0	24.8
	느끼지 않는 편	15.0	15.3	10.6	13.2	17.7	15.5	22.3	-	13.7	13.7	10.8	12.9	30.7	25.6	7.6	5.4
	전혀 느끼지 않음	2.9	2.2	3.8	3.4	2.9	2.9	4.9	4.6	3.9	5.0	-	3.3	2.0	-	-	-
20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많이 느낌	18.0	18.7	23.1	16.0	14.2	19.6	9.6	21.2	20.6	23.1	16.3	34.0	13.1	4.7	16.1	20.9
	느끼는 편	40.1	40.4	41.2	41.5	37.5	29.9	37.6	41.1	39.5	39.9	52.7	36.3	41.8	53.4	50.0	45.8
	보통	20.6	20.1	16.5	22.3	24.8	34.9	22.9	24.4	15.9	20.2	16.2	20.1	22.4	27.9	13.5	15.6
	느끼지 않는 편	18.4	18.5	14.9	18.0	19.4	14.9	25.2	9.7	19.1	15.1	14.8	9.6	19.5	14.1	20.4	16.9
	전혀 느끼지 않음	3.0	2.3	4.3	2.1	4.2	0.8	4.6	3.6	4.9	1.7	0.0	0.0	3.2	0.0	0.0	0.8
20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5.1	7.4	4.1	2.1	9.7	4.5	3.3	6.7	8.9	5.4	8.2	5.6	3.8	6.4	10.0	5.0
	많이 느끼는 편	28.3	36.1	27.8	25.4	28.7	24.2	27.8	29.1	35.7	31.8	39.0	24.7	39.1	30.1	33.9	28.6
	조금 느끼는 편	52.8	46.9	55.3	54.7	50.6	49.7	45.3	49.6	45.7	50.9	43.6	53.4	48.8	54.0	49.3	52.0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3.8	9.6	12.8	17.8	10.9	21.6	23.5	14.5	9.6	11.9	9.2	16.3	8.3	9.5	6.8	14.4

주: 1) 무응답제외
2) 조사년도별로 조사대상의 연령기준이 상이함
· 2011년(전체 연령), 2014년(만 19세 이상), 2017년·2020년(만 12세 이상)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218.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47.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71.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64.

-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대단히 많이 느낌' 5.1%, '많이 느끼는 편' 28.3%, '조금 느끼는 편' 52.8%로 86.2%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33.4%는 대단히 또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심장장애는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이 4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신장애 44.6%, 장루·요루장애 43.9%, 지체장애 43.5%, 간장애 42.9%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표 2-4-2〉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인지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11.5	11.5	11.4	8.2	11.4	12.8	10.5	17.5	9.5	11.4
	많이 느끼는 편	41.2	40.6	42.1	34.8	41.2	43.6	39.3	42.7	41.0	41.4
	조금 느끼는 편	34.5	34.5	34.4	39.5	34.6	32.8	35.8	26.8	37.0	34.7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2.8	13.4	12.0	17.5	12.8	10.8	14.4	13.0	12.4	12.6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20.9	20.3	21.9	-	22.8	23.5	18.0	23.4	19.1	20.7
	많이 느끼는 편	40.1	39.5	40.9	-	41.6	40.9	38.8	39.5	40.3	40.0
	조금 느끼는 편	21.1	22.2	19.6	-	19.7	19.9	22.6	19.6	22.1	21.2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5.0	15.3	14.6	-	12.9	13.6	17.0	14.1	15.7	15.1
	전혀 느끼지 않음	2.9	2.8	3.0	-	2.9	2.1	3.5	3.4	2.8	3.0
2017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많이 느낌	18.0	17.7	18.5	15.2	16.4	21.6	15.8	20.7	16.2	17.9
	느끼는 편	40.1	40.5	39.5	47.5	43.8	40.2	38.6	39.4	40.5	40.1
	보통	20.6	20.2	21.1	13.7	20.8	19.7	21.4	19.5	21.4	20.7
	느끼지 않는 편	18.4	18.7	18.1	21.5	16.2	15.8	21	17.3	19.2	18.5
	전혀 느끼지 않음	3.0	3.0	2.9	2.0	2.8	2.8	3.2	3.0	2.8	2.9
20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5.0	5.0	5.0	4.9	4.5	5.5	4.8	6.5	4.1	5.0
	많이 느끼는 편	28.6	29.4	27.5	23.6	31.2	31.7	26.0	30.6	27.5	28.6
	조금 느끼는 편	52.0	51.7	52.4	48.8	50.6	51.8	52.6	49.1	53.7	52.0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4.4	13.8	15.1	22.8	13.7	11.1	16.6	13.8	14.7	14.4

주: 1) 무응답제외
2) 조사년도별로 조사대상의 연령기준이 상이함
· 2011년(전체 연령), 2014년(만 19세 이상), 2017년·2020년(만 12세 이상)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4)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438.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62.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54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49.

-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34.4%, 여성의 32.5%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또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46-64세 이하 중 37.2%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또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살펴보면, 중증장애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은 37.1%로 경증장애 31.6%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우울

〈표 2-4-3〉 우울감 경험률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21.0	17.6	33.2	17.4	14.3	12.4	14.1	12.7	49.6	28.3	23.3	26.1	38.8	25.3	22.1	58.0
2014	24.5	22.6	32.6	23.5	20.4	23.4	16.7	6.0	44.2	26.6	39.3	30.5	28.8	18.3	47.2	43.1
2017	18.4	16.1	28.0	17.6	13.2	27.6	9.2	35.7	38.2	25.5	31.0	40.9	11.0	29.8	28.2	32.4
2020	18.0	17.4	26.4	16.0	15.1	20.3	11.0	9.2	29.3	22.7	16.7	31.8	16.9	20.6	24.3	27.8

주: 1)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2) 무응답제외
3) 조사년도별로 조사대상의 연령기준이 상이함
· 2011년(전체 연령), 2014년(만 19세 이상), 2017년·2020년(만 12세 이상)
4)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218.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47.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71.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65.

-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0%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호흡기 장애의 우울감 경험률이 3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신장애 29.3%, 뇌전증장애 27.8%, 뇌병변장애 26.4%, 장루·요루장애 24.3%, 신장장애 2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4〉 우울감 경험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21.0	18.6	24.3	8.3	21.6	21.8	20.9	27.5	18.7	20.7
2014	24.5	21.1	29.2	-	20.6	24.8	25.7	28.1	21.2	23.8
2017	18.4	15.6	22.1	9.5	15.9	19.1	19.0	23.1	14.9	18.0
2020	18.0	15.2	21.9	10.7	14.1	19.2	18.5	21.3	16.1	18.0

주: 1) 무응답제외
2) 조사년도별로 조사대상의 연령기준이 상이함
· 2011년(전체 연령), 2014년(만 19세 이상), 2017년·2020년(만 12세 이상)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4)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438.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62.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54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49.

-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1.9%로 남성 15.2%에 비해 6.7%p 높음
  - 연령별로는 46-64세의 우울감 경험률이 19.2%로 가장 높고, 17세 이하는 10.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의 우울감 경험률이 21.3%로 경증장애 16.1%에 비해 5.2%p 높게 나타남

〈표 2-4-5〉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기분상태 및 우울증)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우울증상이 없음	가벼운 우울증상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심한 우울증 의심
연도	2019	105,028	79.3	13.5	6.1	1.1
	2020	90,592	79.9	13.2	6.0	0.9
	2021	92,411	79.8	13.5	5.9	0.9
	2022	97,503	80.0	13.4	5.8	0.9
성별	남	62,394	82.1	12.2	5.0	0.7
	여	35,109	76.2	15.3	7.3	1.2
연령별	20세	1,740	77.2	13.3	7.8	1.7
	30세	4,264	70.3	17.7	10.1	1.9
	40세	8,988	68.1	20.4	10.2	1.4
	50세	16,395	75.8	16.3	6.8	1.1
	60세	30,976	80.6	13.0	5.6	0.9
	70세	35,140	85.7	10.0	3.8	0.6
장애유형	지체	54,001	81.5	12.7	5.0	0.7
	뇌병변	5,705	73.8	15.4	9.1	1.8
	시각	10,389	80.8	13.5	5.0	0.6
	청각	10,527	82.1	12.5	4.8	0.6
	언어	628	76.8	16.1	5.7	1.4
	지적	7,123	79.6	12.0	7.1	1.4
	자폐성	527	78.2	14.8	6.3	0.8
	정신	3,448	62.7	20.9	13.0	3.5
	신장	3,104	76.4	15.9	7.0	0.7
	심장	180	77.2	17.2	5.6	0.0
	호흡기	300	75.7	16.0	7.7	0.7
	간	680	80.9	13.8	5.3	0.0
	안면	151	80.8	12.6	5.3	1.3
	장루·요루	435	82.8	11.7	4.8	0.7
	뇌전증	305	62.6	15.7	16.4	5.3
장애정도	중증	29,644	76.5	14.7	7.4	1.3
	경증	67,859	81.5	12.8	5.1	0.7
지역	서울	13,979	76.8	15.1	7.1	1.1
	부산	6,165	81.0	12.1	5.7	1.2
	대구	4,599	80.0	13.6	5.5	0.9
	인천	5,919	78.0	14.6	6.1	1.3
	광주	2,671	81.4	12.4	5.4	0.8
	대전	2,842	77.6	14.9	6.6	1.0
	울산	2,202	80.6	12.2	6.6	0.6
	세종	543	79.9	14.0	5.5	0.6
	경기	23,129	77.9	14.9	6.3	0.9
	강원	3,673	81.7	12.2	5.2	0.9
	충북	3,595	81.5	12.7	4.9	0.9
	충남	4,724	81.3	12.5	5.3	0.8
	전북	4,452	82.9	11.4	5.2	0.6
	전남	4,734	86.2	9.0	4.0	0.8
	경북	6,123	84.1	10.8	4.5	0.6
	경남	6,989	82.1	12.2	4.9	0.8
	제주	1,164	77.1	15.2	6.8	1.0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만 20, 30, 40, 50, 60, 70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은 제외함)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정신건강검사(기분상태 및 우울증) 세부항목(PHQ-9)은 다음과 같음
· 우울증상이 없음: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 평가결과 점수 0-4점
· 가벼운 우울증상: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 평가결과 점수 5-9점
·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 평가결과 점수 10-19점
· 심한 우울증 의심: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 평가결과 점수 20-27점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7-86.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9-88.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74-93.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74-89.

- 2024년 기준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기분상태 및 우울증)를 살펴보면 '우울증상이 없음'이 80.0%이고, '우울증상이 있음(가벼운 우울 증상,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심한 우울증 의심)'은 20.0%임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
· 우울증상이 없음(80.0%), 가벼울 우울증상(14.8%),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4.8%), 심한 우울증 의심(0.4%)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대비 2022년 '우울증상이 있음'의 비율이 0.2%p 감소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우울증상이 있음' 비율은 23.8%로 남성 17.9%에 비해 5.9%p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와 40세의 '우울증상 있음' 비율은 각각 29.7%, 31.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전증 장애의 '우울증상 있음' 비율은 37.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신장애 37.3%, 뇌병변장애 26.2%, 호흡기장애 24.3%, 신장장애 23.6%, 언어장애 2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의 '우울증상이 있음' 비율은 23.5%로 경증장애 18.5%에 비해 5.0%p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울증상이 있음'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서울 23.2%, 제주 22.9%, 대전 22.4%, 경기 22.1%, 인천 22.0% 등이 있음

(3) 정신의료기관 현황 및 예산

〈표 2-4-6〉 정신의료기관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단위: 개소, 병상, 명)

구분		기관수	병상수	입원환자 수
2015년		1,449	83,696	70,628
2016년		1,515	83,405	69,220
2017년		1,554	81,734	67,441
2018년		1,670	79,257	66,108
2019년		1,839	78,739	65,436
2020년		1,936	79,432	62,702
2021년		2,038	75,474	59,412
2022년		2,109	71,564	56,785
기관종류	종합병원 정신과	219	4,719	2,835
	병원 정신과	42	3,364	2,746
	정신병원	257	61,822	49,898
	요양병원 정신과	3	-	-
	한방병원 정신과	4	287	225
	의원 정신과	1,583	1,372	1,081
	한의원 정신과	1	-	-
지역별	서울	622	3,920	2,721
	부산	173	5,433	4,300
	대구	105	4,323	3,623
	인천	94	3,659	3,157
	광주	62	2,192	1,801
	대전	87	1,623	1,154
	울산	30	1,400	1,214
	세종	13	108	93
	경기	444	14,010	11,123
	강원	45	2,008	1,508
	충북	51	3,599	2,533
	충남	60	4,671	3,369
	전북	71	2,938	2,377
	전남	56	4,251	3,620
	경북	70	7,814	6,354
	경남	97	9,200	7,586
	제주	29	415	252

주: 1) 기관수는 전체기관수임
2) 병상 수에는 개방병상을 포함함
3) 202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p53.

- 2022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의 수는 2,109개소, 병상수는 71,564병상, 입원환자수는 56,785명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기관수는 증가 추이를, 병상수와 입원환자수는 감소 추이를 보임
  - 기관종류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의원 정신과가 1,583개소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수와 입원환자수는 정신병원이 각각 61,822병상, 49,898명으로 가장 많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622개소, 444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임. 병상수와 입원환자수는 경기가 각각 14,010병상, 11,123명으로 가장 많음

〈표 2-4-7〉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 연도별

(단위: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	5,326	5,309	5,587	6,208	6,845
부산	3,872	4,495	6,373	7,275	8,119
대구	3,788	3,939	4,382	5,133	6,296
인천	3,151	3,371	4,291	5,984	6,413
광주	7,995	7,787	8,314	9,391	10,054
대전	6,716	7,249	8,492	9,563	10,246
울산	3,836	4,193	4,669	5,782	7,698
세종	3,513	2,909	3,546	4,129	7,058
경기	4,376	5,312	5,298	6,207	6,716
강원	7,147	8,050	7,769	9,946	12,063
충북	6,051	7,021	7,693	8,927	11,335
충남	5,909	7,413	7,200	10,528	11,185
전북	7,554	8,865	9,609	12,036	13,975
전남	4,306	5,118	6,027	8,377	8,834
경북	4,121	5,406	6,148	8,414	9,057
경남	2,758	3,135	3,504	5,721	6,119
제주	5,985	6,423	6,062	8,319	8,662
전국(평균)	4,791	5,389	5,815	7,139	7,934

주: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 당해연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집행액 총액*/당해년도 추계인구수**
*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예산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당해년도 추계인구수(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p45.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p45.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p45.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p47.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p33.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7,934원으로, 전년 대비 795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13,975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 12,063원, 충북 11,335원, 충남 11,185원 등의 순임. 반면, 경남은 6,119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5) 사망

〈표 2-5-1〉 장애인 조사망률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10만 명당)

구분		연앙인구	사망인원	조사망률
연도	2016	2,498,757	70,290	2,813.0
	2017	2,525,879	69,478	2,750.6
	2018	2,560,296	74,957	2,927.7
	2019	2,597,048	75,402	2,903.4
	2020	2,620,914	78,879	3,009.6
	2021	2,636,127	83,858	3,181.1
	2022	2,648,800	102,916	3,885.4
성별	남	1,531,458	57,266	3,739.3
	여	1,117,342	45,650	4,085.6
연령별	19세 이하	93,368	294	314.9
	20~44세	307,769	1,565	508.5
	45~64세	868,258	12,594	1,450.5
	65세 이상	1,379,405	88,463	6,413.1
장애유형	지체	1,183,883	32,735	2,765.1
	뇌병변	246,893	21,096	8,544.6
	시각	251,197	8,320	3,312.1
	청각	418,501	22,385	5,348.9
	언어	23,206	847	3,650.0
	지적	223,631	2,333	1,043.2
	자폐성	35,627	36	101.0
	정신	104,317	2,420	2,319.9
	신장	103,990	9,177	8,824.9
	심장	5,122	328	6,404.4
	호흡기	11,497	1,335	11,612.2
	간	14,749	445	3,017.3
	안면	2,719	41	1,507.9
	장루·요루	16,396	1,275	7,776.3
	뇌전증	7,076	143	2,020.9
장애정도	중증	984,378	46,259	4,699.3
	경증	1,664,422	56,657	3,404.0
지역	서울	391,018	14,506	3,709.8
	부산	176,239	7,230	4,102.4
	대구	127,280	5,081	3,992.0
	인천	149,990	5,393	3,595.6
	광주	69,589	2,629	3,777.9
	대전	72,164	2,796	3,874.5
	울산	51,359	1,741	3,389.9
	세종	12,865	491	3,816.7
	경기	581,918	21,051	3,617.5
	강원	101,894	4,144	4,067.0
	충북	98,007	3,887	3,966.0
	충남	135,112	5,663	4,191.4
	전북	132,087	5,544	4,197.2
	전남	139,364	6,030	4,326.8
	경북	182,885	8,017	4,383.6
	경남	189,973	7,312	3,849.0
	제주	37,060	1,401	3,780.4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조사망률'은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연도의 추정된 연앙인구(해당연도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표현한 지표임
※ 조사망률 = 총 사망자 수/연앙인구 X 100,000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445-447.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417-419.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83-385.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73-575.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85-587, 623-625.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 623-625.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 687-689.

- 2022년 기준 장애인의 사망인원 수는 102,916명, 조사망률은 3,885.4명임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사망현황(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사망인원: 249,186명, 조사망률: 721.5명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인원 수와 조사망률은 증가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조사망률은 4,085.6명으로 남성 3,181.1명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조사망률은 6,413.1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호흡기장애의 조사망률은 11,612.2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장장애 8,824.9명, 뇌병변장애 8,544.6명, 장루·요루장애 7,776.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의 조사망률은 4,699.3명으로 경증장애 3,404.0명 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경북 4,383.6명, 전남 4,326.8명 전북 4,197.2명 등이 있음

〈표 2-5-2〉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10만 명당)

구분		순위	조사망률
연도	2016	7	66.8
	2017	7	61.2
	2018	7	62.0
	2019	8	61.0
	2020	10	57.2
	2021	11	53.5
	2022	12	53.1
성별	남	9	69.2
	여	12	31.1
연령별	10-19세	5	8.3
	20-29세	3	32.1
	30-39세	2	49.7
	40-49세	4	56.6
	50-59세	8	50.9
	60-69세	8	46.5
	70-79세	12	52.1
	80세 이상	11	76.8
장애유형	지체	11	47.6
	뇌병변	12	38.9
	시각	10	62.9
	청각	11	69.8
	언어	10	34.5
	지적	12	11.6
	자폐성	4	5.6
	정신	5	143.8
	신장	11	61.5
장애유형	심장	10	39.1
	호흡기	7	165.3
	간	11	27.1
	안면	9	36.8
	장루·요루	9	67.1
	뇌전증	3	141.3
장애정도	중증(1~3급)	12	52.1
	경증(4~6급)	11	53.7
지역	서울	12	49.6
	부산	12	58.4
	대구	12	57.4
	인천	11	52.7
	광주	12	56.0
	대전	8	76.2
	울산	12	42.8
	세종	8	93.3
	경기	12	48.5
	강원	10	68.7
	충북	11	58.2
	충남	11	68.8
	전북	11	50.7
	전남	11	50.2
	경북	11	55.8
	경남	12	40.5
	제주	12	32.4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사망원인 순위는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8차에 따라 사인을 집계하고, 사망원인 순위는 통계청의 57개 사인(일반사망선택분류표)을 46개 사인으로 재분류하여 사망률 순위에 따라 산정함
4)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고의적 자해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연도의 추정된 연앙인구(해당연도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현한 지표임 ※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 =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 수/연앙인구 X 100,000
5) 고의적 자해 사망자수가 0인 경우는 결과표에서 제외함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448-481.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420-450.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86-416.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76-604.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88-616, 626-656.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27-654.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90-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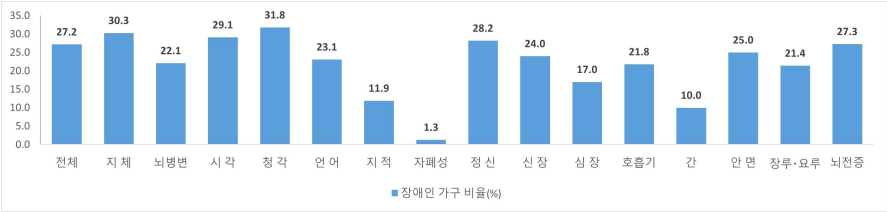
- 2022년 기준 장애인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는 12순위이며,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53.1명임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 현황(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사망자 수: 12,906명, 조사망률: 2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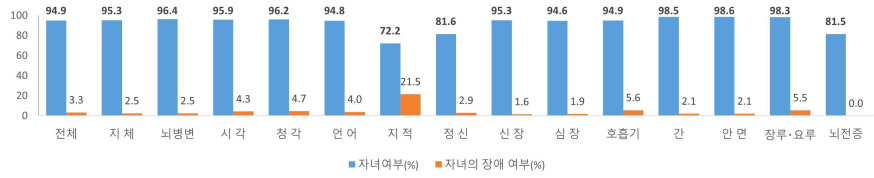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의 순위와 조사망률은 감소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69.2명으로 여성 31.1명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에서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이 76.8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30-39세의 경우 2순위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호흡기장애, 정신장애, 뇌전증장애의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165.3명, 143.8명, 141.3명으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반면, 자폐성장애의 경우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5.6명으로 낮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와 경증장애의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각각 52.1명, 53.7명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세종 93.3명, 대전 76.2명, 충남 68.8명 등이 있음

3. 가족

[그림 2-3-1] 1인 가구 비율 – 장애유형별(2020년)



[그림 2-3-2] 자녀 현황 및 장애 자녀 여부(2020년)



-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1인 가구 비율은 27.2%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비율은 청각장애가 31.8%로 가장 높고, 지체장애 30.3%, 시각장애 29.1%, 정신장애 28.2%, 뇌전증장애 2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94.9%가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3.3%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27.8%로 가장 높았고 뇌전증장애 18.5% 순임
  - 장애유형별로 장애자녀가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21.5%로 가장 높았고 호흡기장애 5.6%, 장루·요루장애 5.5% 순임

1) 가구구성

(1) 가구구성 및 규모

〈표 3-1-1〉 가구구성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가구	27.2	30.3	22.1	29.1	31.8	23.1	11.9	1.3
부부	29.0	32.3	34.5	26.7	35.1	25.8	5.4	-
기타1세대	1.4	0.8	0.4	0.5	0.4	1.7	4.7	0.8
부부+미 · 기혼자녀	23.3	20.7	22.5	23.4	14.6	32.7	45.2	75.6
편부+미혼자녀	2.6	2.0	2.6	2.7	1.6	1.4	7.1	3.5
편모+미혼자녀	8.4	6.4	8.2	8.5	7.2	8.0	15.1	6.7
부부+양친	0.1	0.1	-	0.2	0.1	-	0.2	-
부부+편부모	0.5	0.7	0.4	0.6	0.4	0.3	0.3	-
조부모+손자녀	1.0	1.1	0.4	0.7	1.4	-	0.8	1.9
기타2세대	0.6	0.2	1.4	0.3	0.8	0.9	1.4	1.4
부부+자녀+양친	0.1	0.0	0.3	0.2	0.1	1.5	0.3	0.5
부부+자녀+편부모	0.9	0.8	1.1	0.9	0.7	1.4	1.8	2.4
기타3세대	4.5	4.2	5.2	5.7	5.2	2.9	5.0	5.0
비혈연가구	0.2	0.2	0.5	0.1	0.3	-	0.5	1.0
기타	0.2	0.1	0.3	0.3	0.3	0.3	0.4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14.

〈표 3-1-1〉 가구구성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인가구	28.2	24.0	17.0	21.8	10.0	25.0	21.4	27.3
부부	11.1	30.1	34.8	49.9	40.1	26.1	40.7	11.4
기타1세대	9.1	1.8	2.9	-	2.3	1.2	0.8	3.6
부부+미 · 기혼자녀	20.6	27.9	29.8	17.2	29.5	24.4	16.8	28.2
편부+미혼자녀	3.9	2.3	2.5	1.8	4.6	-	2.4	4.0
편모+미혼자녀	23.1	7.8	7.4	4.3	6.2	14.7	5.1	22.2
부부+양친	-	-	-	-	1.5	-	-	-
부부+편부모	-	-	-	-	1.9	0.8	-	0.3
조부모+손자녀	0.6	0.4	1.0	-	0.5	1.5	1.1	-
기타2세대	1.0	0.7	-	0.3	-	1.0	1.5	1.6
부부+자녀+양친	-	0.3	-	-	-	-	0.2	-
부부+자녀+편부모	0.2	1.2	0.8	0.9	0.5	2.6	-	0.9
기타3세대	1.5	3.5	3.8	3.7	3.0	2.6	9.5	0.6
비혈연가구	0.5	-	-	-	-	-	-	-
기타	0.2	-	-	-	-	-	0.5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14.

-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부부 가구가 29.0%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27.2%, 부부+미 · 기혼자녀 23.3%, 편모+미혼자녀 8.4%, 기타 3세대 4.5%, 편부+미혼자녀 2.6%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에서 부부+미 · 기혼자녀 비율이 75.6%로 높았고, 편모/편부+미혼자녀의 비율은 정신장애가 27.0%로 높게 나타남

〈표 3-1-2〉 가구규모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27.2	30.3	22.1	29.1	31.8	23.1	11.9	1.3
2인 가구	38.2	39.7	42.4	34.5	42.3	32.3	23.4	7.1
3인 가구	17.7	15.6	18.8	16.5	13.5	20.0	32.6	33.8
4인 가구	11.7	10.3	11.0	14.1	7.6	18.4	20.5	40.5
5인 이상 가구	5.2	4.1	5.7	5.8	4.9	6.2	11.6	17.4

〈표 3-1-2〉 가구규모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27.2	30.3	22.1	29.1	31.8	23.1	11.9	1.3
2인 가구	38.2	39.7	42.4	34.5	42.3	32.3	23.4	7.1
3인 가구	17.7	15.6	18.8	16.5	13.5	20.0	32.6	33.8
4인 가구	11.7	10.3	11.0	14.1	7.6	18.4	20.5	40.5
5인 이상 가구	5.2	4.1	5.7	5.8	4.9	6.2	11.6	17.4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11.

- 2020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가구규모를 살펴보면, 2인 가구가 38.2%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27.2%, 3인 가구 17.7%, 4인 가구 11.7%, 5인 이상 가구 5.2%의 순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경우 청각장애 31.8%, 지체장애 30.3%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에서 대부분 1인 가구 및 2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가구원 수가 3인 이상 경우가 각각 64.7%, 91.7%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3〉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현황(2020) -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일반가구	활동제약 없는 가구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비율
			계	활동제약자 1명	활동제약자 2명	활동제약자 3명 이상	
전체	20,926,710	18,687,515	2,239,195	1,907,647	306,237	25,311	10.7
서울	3,982,290	3,580,321	401,969	339,500	57,643	4,826	10.1
부산	1,405,037	1,243,577	161,460	137,940	21,923	1,597	11.5
대구	985,816	882,950	102,866	88,127	13,494	1,245	10.4
인천	1,147,200	1,023,518	123,682	104,638	17,354	1,690	10.8
광주	599,217	536,774	62,443	53,130	8,510	803	10.4
대전	631,208	572,504	58,704	49,715	8,218	771	9.3
울산	444,087	404,360	39,727	34,041	5,273	413	8.9
세종	139,106	129,130	9,976	8,418	1,443	115	7.2
경기	5,098,431	4,600,244	498,187	425,289	66,637	6,261	9.8
강원	661,039	578,781	82,258	70,659	10,862	737	12.4
충북	678,922	603,796	75,126	64,380	9,981	765	11.1
충남	892,222	788,779	103,443	87,698	14,674	1,071	11.6
전북	755,575	657,348	98,227	83,776	13,457	994	13.0
전남	761,518	658,153	103,365	87,870	14,568	927	13.6
경북	1,131,819	993,514	138,305	118,029	19,070	1,206	12.2
경남	1,350,155	1,198,779	151,376	130,654	19,205	1,517	11.2
제주	263,068	234,987	28,081	23,783	3,925	373	10.7

주: 1) 2020년 기준임
2) 일반가구는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및 특별조사구를 제외하였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포함함
3) '활동제약자'는 다음 중 한 개 이상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자를 의미함
① 보는 것 ②듣는 것 ③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 ④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 ⑤스스로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등 ⑥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것
4) 비율은 전체 가구 중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표 3-1-4〉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규모(2020) - 가구원 수별

(단위: 명, %)

구분	활동제약자 없는 가구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계	18,687,515	100.0	2,239,195	100.0
1인 가구	6,021,859	32.2	621,495	27.8
2인 가구	5,061,281	27.1	804,460	35.9
3인 가구	3,776,781	20.2	424,716	19.0
4인 가구	3,031,195	16.2	237,715	10.6
5인 이상 가구	927,526	5.0	191,332	8.5

주: 1) 2020년 기준임
2) '활동제약자'는 다음 중 한 개 이상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자를 의미함
① 보는 것 ②듣는 것 ③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 ④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 ⑤스스로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등 ⑥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것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 2020년 기준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는 총 2,239,195가구로 일반가구 대비 10.7%를 차지함
  - 가구 내 활동제약자 수별로 살펴보면, '활동제약자 1명'이 1,907,647가구로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중 85.2%를 차지하고, '활동제약자 2명' 306,237가구(13.7%), '활동제약자 3명' 25,311가구(1.1%)임
  - 지역별로 일반가구 대비 활동제약자 거구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13.6%로 가장 높고, 다음을 '전북' 13.0%, '강원' 12.4%, '경북' 12.2% 등의 순임. 반면 세종은 7.2%로 일반가구 대비 활동제약자 거구 가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2020년 기준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규모를 살펴보면, '2인 가구'가 804,460가구(35.9%)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621,495가구(27.8%), '3인 가구' 424,716가구(19.0%), '4인 가구' 237,715가구(10.6%), '5인 이상 가구' 191,332가구(8.5%) 순으로 나타남
  - 활동제약자 없는 가구의 경우 '1인 가구'가 6,021,859가구(32.2%)로 가장 많음

〈표 3-1-5〉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세대구성(2020) - 세대유형별

(단위: 명, %)

구분	활동제약자 없는 가구		활동제약자 거구 자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계	18,687,515	100.0	2,239,195	100.0
1세대 가구	3,645,515	19.5	506,023	22.6
부부	3,331,944	17.8	473,066	21.1
부부+미혼형제자매	11,295	0.1	2,387	0.1
부부+기타친인척	19,824	0.1	3,775	0.2
가구주+미혼형제자매	172,641	0.9	8,801	0.4
가구주+기타친인척	56,627	0.3	8,072	0.4
1세대 가구 기타	53,184	0.3	9,922	0.4
2세대 가구	8,350,301	44.7	858,333	38.3
부부+미혼자녀	6,037,386	32.3	352,570	15.7
부+미혼자녀	369,941	2.0	40,518	1.8
모+미혼자녀	1,415,735	7.6	216,522	9.7
부부+양친	9,637	0.1	5,472	0.2
부부+한부모	64,293	0.3	62,539	2.8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25,574	0.1	3,375	0.2
조부모+미혼손자녀	31,972	0.2	10,020	0.4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41,452	0.2	21,306	1.0
2세대 가구 기타	354,311	1.9	146,011	6.5
3세대 가구	476,268	2.5	237,070	10.6
부부+미혼자녀+양친	54,654	0.3	21,328	1.0
부부+미혼자녀+부친	33,495	0.2	16,665	0.7
부부+미혼자녀+모친	171,902	0.9	103,554	4.6
3세대 가구 기타	216,217	1.2	95,523	4.3
4세대 이상 가구	2,722	0.0	3,266	0.1
1인 가구	6,021,859	32.2	621,495	27.8
비친족 가구	190,850	1.0	13,008	0.6

주: 1) 2020년 기준임
2) '활동제약자'는 다음 중 한 개 이상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자를 의미함
① 보는 것 ②듣는 것 ③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 ④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 ⑤스스로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등 ⑥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것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 2020년 기준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의 세대구성을 살펴보면, '2세대 가구'가 3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1인 가구' 27.8%, '1세대 가구' 22.6%, '3세대 가구'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세대 가구' 중 '부부'가 2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2세대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가 1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활동제약자 없는 가구 또한 '2세대 가구'가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1인 가구' 32.2%, '1세대 가구' 19.5%, '3세대 가구' 2.5% 등의 순임

2) 가족형성

(1) 결혼상태

〈표 3-2-1〉 결혼상태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51.3	57.4	55.0	52.0	53.6	52.3	13.5	0.0	18.2	59.6	63.3	72.0	72.4	53.3	65.2	26.1
사별	20.8	22.3	16.0	23.8	34.6	11.6	2.8	0.0	5.0	9.9	11.7	12.4	6.8	13.8	23.2	3.5
이혼	9.7	10.7	12.1	9.5	6.3	8.9	3.3	0.0	16.1	14.0	5.7	8.1	9.5	6.1	6.8	14.5
별거	0.7	0.5	1.1	1.2	0.5	0.8	0.8	0.0	1.2	0.5	2.9	0.9	3.2	0.0	0.3	0.7
미혼	17.4	9.1	15.8	13.3	4.9	25.8	79.5	100.0	59.6	16.0	16.5	6.6	8.2	26.8	4.1	55.2
기타(미혼모/부)	0.1	0.1	0.0	0.2	0.1	0.6	0.1	0.0	0.0	0.0	0.0	0.0	0.0	0.0	0.4	0.0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62.

〈표 3-2-2〉 결혼상태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51.3	60.4	39.1	-	26.1	57.1	53.9	40.1	57.6
사별	20.8	6.6	39.9	-	0.3	5.6	36.6	13.2	25.1
이혼	9.7	10.5	8.7	-	3.3	17.1	6.4	10.4	9.4
별거	0.7	0.7	0.7	-	0.2	0.9	0.7	0.8	0.6
미혼	17.4	21.8	11.5	-	70.1	19.2	2.4	35.4	7.3
기타(미혼모/부)	0.1	0.0	0.2	-	0.1	0.1	0.1	0.1	0.1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26.

- 장애인의 현재 결혼상태는 유배우자가 51.3%로 가장 많았고, 사별 20.8%, 미혼 17.4%, 이혼 9.7%, 별거 0.7%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의 미혼 비율이 10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적장애 79.5%, 정신장애 59.6%, 뇌전증장애 55.2%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유배우자 비율은 60.4%로 여성 39.1%에 비해 21.3%p 높은 반면, 여성은 사별한 비율이 39.9%로 남성 6.6%에 비해 33.3%p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유배우자 비율이 57.6%로 중증장애 40.1%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결혼 시 연령

〈표 3-2-3〉 결혼 시 연령 - 장애유형별

(단위: %, 세)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만 10-19세	6.6	6.8	6.2	5.8	9.4	0.5	2.6	-	0.5	2.1	4.6	1.9	1.3	4.3	3.0	2.1
만 20-29세	72.4	71.4	72.4	73.8	75.8	74.4	63.0	-	71.2	71.2	66.7	74.6	70.7	67.8	79.0	67.5
만 30-39세	18.5	18.8	19.2	18.5	13.3	23.5	27.1	-	24.7	24.7	28.1	19.9	27.1	26.6	16.0	21.8
만 40-49세	1.8	2.1	1.8	1.5	0.5	1.6	7.2	-	2.8	1.7	0.6	1.8	1.0	1.3	0.0	8.6
만 50세이상	0.7	0.9	0.4	0.4	0.9	0.0	0.0	-	0.8	0.3	0.0	1.7	0.0	0.0	0.0	0.0
평균연령	26.4	26.5	26.3	26.2	25.4	27.2	28.4	-	27.5	27.5	27.1	27.7	27.7	27.5	26.1	28.4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62.

〈표 3-2-4〉 결혼 시 연령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세)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만 10-19세	6.6	1.3	12.9	-	0.3	1.3	10.1	5.1	7.2	8.0
만 20-29세	72.4	66.5	79.5	-	51.9	68.0	76.6	70.7	73.1	70.0
만 30-39세	18.5	28.9	6.0	-	44.8	26.4	11.9	21.4	17.3	18.7
만 40-49세	1.8	2.5	0.9	-	2.9	3.4	0.8	2.4	1.6	2.5
만 50세이상	0.7	0.8	0.6	-	0.0	0.9	0.7	0.5	0.8	0.9
평균연령	26.4	28.5	23.8	-	29.5	28.3	25.0	26.8	26.2	26.4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26.

- 2020년 기준 장애인의 평균결혼연령은 26.4세이며, 결혼 시 연령 중 만 20-29세가 72.4%로 가장 많았고, 만 30-39세 18.5%, 만 10-19세 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만 20-39세 사이에 대부분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평균연령이 낮아짐을 알 수 있음

(3) 배우자의 장애여부

〈표 3-2-5〉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여부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배우자	2.5	1.7	0.8	3.1	4.7	2.4	25.4	-	4.4	0.6	0.0	9.0	0.0	0.0	4.6	1.3
2014 배우자	2.7	1.7	1.0	2.1	6.2	3.4	22.1	-	9.5	0.7	0.0	0.0	0.0	0.0	0.0	16.1
2017 배우자	2.4	1.4	2.3	2.5	4.1	7.3	21.1	-	4.1	1.0	-	4.1	-	14.7	0.4	9.8
2020 배우자	3.7	3.0	1.7	3.7	4.6	4.3	33.6	-	6.1	0.3	-	3.7	1.3	7.2	-	4.4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2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22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369.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63.

〈표 3-2-6〉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배우자	2.5	1.9	3.3	-	7.9	3.3	0.7	8.0	1.5	2.6
2014 배우자	2.7	2.1	3.4	-	10	3.8	0.7	7.1	0.8	2.7
2017 배우자	2.4	1.9	3.0	-	6.6	3.7	1.1	5.9	0.9	2.4
2020 배우자	3.7	3.2	4.3	-	7.8	7.0	1.5	8.0	2.0	-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07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26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26.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27.

- 2020년 결혼 당시 배우자의 장애여부는 3.7%로 나타났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지적장애가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면장애 7.2%, 정신장애 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4.3%로 남성 3.2%에 비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아짐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중증장애 8.0%로 경증장애 2.0%에 비해 높게 나타남

(4) 자녀 현황

〈표 3-2-7〉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 여부	예	94.9	95.3	96.4	95.9	96.2	94.8	72.2	-	81.6	95.3	94.6	94.9	98.5	98.6	98.3	81.5
	아니오	5.1	4.7	3.6	4.1	3.8	5.2	27.8	-	18.4	4.7	5.4	5.1	1.5	1.4	1.7	18.5
자녀 수	1명	15.1	15.1	17.2	13.0	10.3	16.1	33.1	-	39.0	21.5	18.3	18.6	16.2	22.3	9.8	22.4
	2명	43.3	44.7	45.6	45.2	33.6	47.5	49.9	-	39.8	52.3	47.2	48.2	64.3	51.3	44.8	62.0
	3명	22.5	22.2	23.3	23.6	25.4	19.7	13.9	-	14.3	15.8	24.8	21.8	15.4	17.3	24.2	14.1
	4명	10.1	9.3	7.1	11.1	15.7	10.1	3.1	-	4.0	7.3	3.8	8.2	4.1	9.1	11.6	1.5
	5명이상	8.9	8.7	6.8	7.1	15.1	6.5	0.0	-	3.0	3.1	5.9	3.3	0.0	0.0	9.6	0.0
자녀의 장애 여부	예	3.3	2.5	2.5	4.3	4.7	4.0	21.5	-	2.9	1.6	1.9	5.6	2.1	2.1	5.5	-
	아니오	96.7	97.5	97.5	95.7	95.3	96.0	78.5	-	97.1	98.4	98.1	94.4	97.9	97.9	94.5	100.0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67-368.

〈표 3-2-8〉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 여부	예	94.9	94.9	95.0	-	80.8	93.3	97.0	92.2	96.0
	아니오	5.1	5.1	5.0	-	19.2	6.7	3.0	7.8	4.0
자녀 수	1명	15.1	15.4	14.9	-	40.1	22.8	9.3	19.6	13.5
	2명	43.3	49.5	36.0	-	49.2	63.5	32.0	43.8	43.2
	3명	22.5	22.2	22.9	-	9.2	11.6	29.3	20.0	23.5
	4명	10.1	8.0	12.5	-	1.4	1.5	15.3	9.4	10.3
	5명이상	8.9	4.9	13.7	-	0.0	0.6	14.1	7.2	9.6
자녀의 장애 여부	예	3.3	2.5	4.3	-	3.4	3.7	3.1	4.3	3.0
	아니오	96.7	97.5	95.7	-	96.6	96.3	96.9	95.7	97.0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30.

- 2020년 기준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94.9%가 자녀가 있고, 자녀수는 2명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3.3%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자녀가 없는 비율'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27.8%로 가장 높았고, 뇌전증장애 18.5%, 정신장애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장애자녀가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21.5%로 가장 높았고, 호흡기장애 5.6%, 장루·요루장애 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5)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표 3-2-9〉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100.0	-	100.0
산후조리 도우미	남편	9.4	4.1	54.0	10.5	3.5	11.9	8.5	-	26.0	-	-	-	-		-	-
	친정식구	55.2	69.2	21.6	40.5	53.1	-	60.7	-	44.6	64.3	-	-	-		-	55.0
	시댁식구	7.1	2.9	-	9.9	7.1	38.1	14.4	-	10.6	-	-	-	-		-	15.1
	복지기관	-	-	-	-	-	-	-	-	-	-	-	-	-		-	-
	산후조리원	22.0	23.8	24.5	31.6	16.8	-	16.4	-	-	35.7	-	-	-		-	14.8
	산후도우미	3.5	-	-	2.4	19.5	50.0	-	-	-	-	-	-	-		-	-
	돌봐주는사람없었음(혼자했음)	2.3	-	-	2.6	-	-	-	-	18.7	-			-	100.0		15.1
	기타	0.5	-	-	2.5	-	-	-	-	-	-	-	-	-		-	-
산후조리의 충분도	매우 충분하다	11.6	11.4	-	17.6	19.3	-	-	-	-	32.0	-	-	-	-	-	5.4
	충분하다	55.8	59.1	28.1	41.8	57.8	50.2	56.5	-	81.3	68.0	-	-	-	-	-	79.5
	부족하다	27.8	23.9	71.9	29.0	22.8	49.8	43.5	-	18.7	-	-	-	-	-	-	15.1
	매우 부족하다	4.7	5.6	-	11.7	-	-	-	-	-	-	-	-	-	100.0	-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82-383.

〈표 3-2-10〉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00.0	-	100.0	-	100.0	100.0	-	100.0	100.0
산후조리 도우미	남편	9.4	-	9.4	-	9.6	9.1	-	11.5	7.8
	친정식구	55.2	-	55.2	-	62.8	46.2	-	49.8	59.0
	시댁식구	7.1	-	7.1	-	1.7	13.4	-	10.4	4.7
	복지기관	-	-	-	-	-	-	-	-	-
	산후조리원	22.0	-	22.0	-	21.4	22.7	-	17.4	25.4
	산후도우미	3.5	-	3.5	-	3.1	4.1	-	5.1	2.4
	돌봐주는사람없었음(혼자했음)	2.3	-	2.3	-	1.5	3.3	-	4.5	0.7
	기타	0.5	-	0.5	-	-	1.2	-	1.3	-
산후조리의 충분도	매우 충분하다	11.6	-	11.6	-	14.0	8.9	-	8.7	13.8
	충분하다	55.8	-	55.8	-	55.0	56.8	-	53.1	57.8
	부족하다	27.8	-	27.8	-	26.5	29.4	-	30.8	25.7
	매우 부족하다	4.7	-	4.7	-	4.5	4.9	-	7.4	2.7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41.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도움을 준 사람은 친정식구가 55.2%로 가장 많았고 산후 조리원 22.0%, 남편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여성 장애인의 67.4%가 충분했던 것으로, 32.5%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장장애인의 산후조리 충분도가 100.0%로 가장 높은 반면, 안면장애에서 산후조리의 부족함이 100.0%로 가장 높음
  - 연령별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18-44세 이하가 69.0%로 45-64세 이하 65.74%보다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친정식구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경증장애 59.0%로 중증장애 49.8%에 비해 9.2%p 높게 나타남
  - 산후조리의 충분함은 경증장애가 71.6%로 중증장애 61.8%에 비해 높음

3) 다문화 가족

(1) 다문화 가족 중 장애인 가구

〈표 3-3-1〉 다문화 가족의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

구분	장애인 가구비율	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타
2012	8.6	9.7	60.4	11.2	0.1	1.5	22.8	0.2	0.2	0.4	2.6	0.4	-
2015	6.4	10.7	61.6	9.5	-	1.7	14.9	-	0.1	0.4	-	1.0	0.1
2018	5.8	16.6	42.6	13.3	-	2.6	17.1	-	0.0	2.3	-	5.0	0.5
2021	7.3	14.9	54.1	10.7	0.3	1.3	18.0	-	0.1	-	-	0.6	-

주: 1) 다문화 가구원 개개인이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임
2) 본인은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을 의미하고, 배우자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를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2).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40-41.

- 2021년 다문화 가족의 장애인 가구 비율은 7.3%로 2018년 5.8%에 비해 높아졌으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른 국내 전체 장애인 가구원의 비율인 15.9%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8년에 비하여 2021년의 본인과 자녀의 등록장애 비율은 각각 1.7%p, 2.6%p 감소함
  - 반면, 배우자의 등록장애 비율은 1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2〉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가구의 분포 -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단위: %, 가구)

		있음	없음	계
전체		7.3 (25,383)	92.7 (320,634)	100.0 (278,036)
거주지역	동부	7.1	92.8	100.0
	읍면부	8.1	91.9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6.9	83.1	100.0
	100~200만원 미만	11.4	88.6	100.0
	200~300만원 미만	5.2	94.8	100.0
	300~400만원 미만	6.5	93.5	100.0
	400~500만원 미만	5.2	94.8	100.0
	500~600만원 미만	3.3	96.7	100.0
	600만원 이상	3.8	9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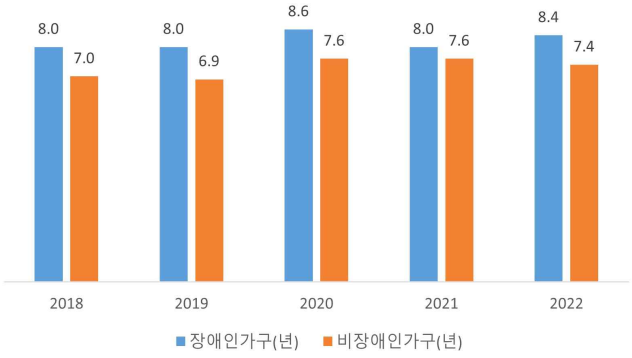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2).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40.

- 2021년 거주지역에 따른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 가구 분포는 동부가 7.1%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지원 체계가 취약한 읍면부가 8.1%로 더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16.9%,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11.4% 등 가구소득이 낮은 다문화 가구 집단에서 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5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가구와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장애인 비율이 각각 3.3%와 3.8% 씩으로 조사되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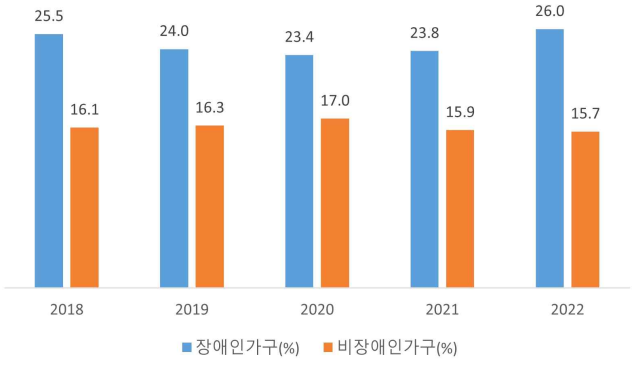
※ '다문화 가족'이란
-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4. 주거

[그림 2-4-1]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 장애인가구/비장애인가구



[그림 2-4-2]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장애인가구/비장애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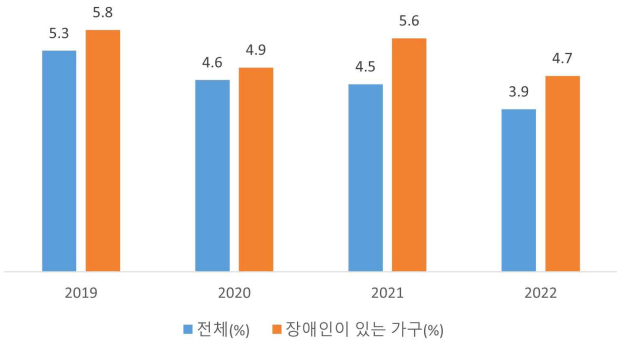


- 2022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장애인가구가 8.4년, 비장애인가구가 7.4년임
- 2022년 기준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장애인가구가 26.0%, 비장애인가구가 15.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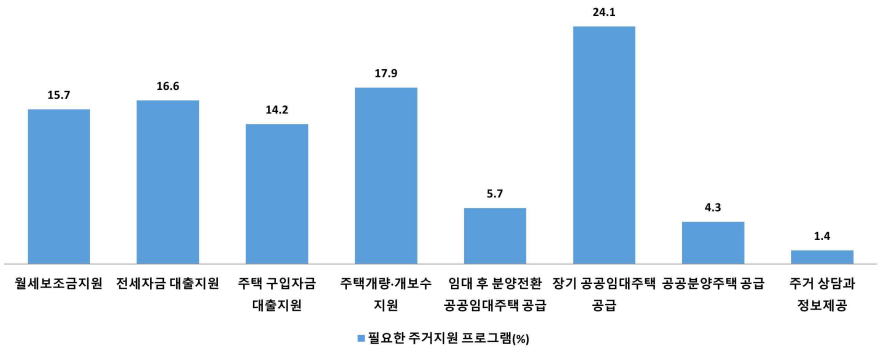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Rent-to-Income Ratio)

-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RIR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부담이 높아짐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RIR 수치가 20% 이상이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4-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그림 2-4-4]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2021년)



-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4.7%로 전체 3.9%에 비해 0.8%p 높음
-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24.1%로 가장 높고,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17.9%, 전세자금 대출지원 16.6% 순임

1) 주거

(1) 주택소유 현황

〈표 4-1-1〉 주택소유가구 현황 - 연도별, 가구주 연령별, 지역별

(단위: 천가구, %)

구분		전체			장애인		
		총 가구 (일반가구)	주택소유가구	주택 소유율	총 가구 (일반가구)	주택소유가구	주택 소유율
연도	2018	19,979	11,234	56.2	2,205	1,372	62.2
	2019	20,343	11,456	56.3	2,215	1,388	62.7
	2020	20,927	11,730	56.1	2,213	1,387	62.7
	2021	21,448	12,063	56.2	2,237	1,399	62.5
	2022	21,774	12,232	56.2	2,244	1,400	62.4
가구주 연령대별	30세미만	1,848	207	11.2	30	9	30.0
	30~39세	3,131	1,182	37.8	91	43	47.3
	40~49세	4,209	2,511	59.7	258	153	59.3
	50~59세	4,837	3,104	64.2	457	279	61.1
	60~69세	4,227	2,862	67.7	582	372	63.9
	70~79세	2,884	1,609	55.8	477	330	69.2
	80세이상	1,237	757	61.2	349	216	61.9
지역	서울	4,099	1,991	48.6	339	193	56.9
	부산	1,448	832	57.5	151	93	61.6
	대구	1,011	586	58.0	110	68	61.8
	인천	1,213	691	57.0	129	81	62.8
	광주	623	361	57.9	61	38	62.3
	대전	646	343	53.1	61	38	62.3
	울산	454	292	64.3	44	31	70.5
	세종	154	88	57.1	11	7	63.6
	경기	5,407	3,024	55.9	498	306	61.4
	강원	685	400	58.4	86	55	64.0
	충북	705	412	58.4	81	53	65.4
	충남	931	535	57.5	112	72	64.3
	전북	778	457	58.7	108	68	63.0
	전남	785	481	61.3	112	72	64.3
	경북	1,166	712	61.1	151	100	66.2
	경남	1,393	876	62.9	160	107	66.9
	제주	276	153	55.4	31	19	61.3

주: 1)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의미함
2) '주택 소유율'은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임
· 주택소유율 = (주택소유가구수/일반가구수)*100

자료: 1) 전체: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p.3.
2) 장애인: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OH0422&conn_path=I2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2023, 2023.11.14, (장애인) 가구주의 연령별 주택소유 가구수

- 2022년 기준, 장애인 가구 중 주택소유가구는 1,400천가구이고, 주택 소유율은 62.4%임
  - 전체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2%로, 장애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약 6.2%p 높음
  - 가구주 연령별로 주택 소유율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와 장애인 가구 모두 '70-79세'의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전체 70.4%, 장애인 69.0%), '50세 이상'은 60% 이상으로 나타남. 장애인 가구의 경우, '30세 미만'의 주택 소유율이 31.0%로 전체 11.2%에 비해 약 19.8%p 이상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주택 소유율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는 '울산'의 주택 소유율(전체 64.2%)이, 장애인 가구는 '세종'의 주택 소유율(70.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이 가장 낮게 나타남(전체 48.6%, 장애인 56.6%)

〈표 4-1-2〉 주택소유자 현황 - 연도별, 연령대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장애인	
		주택 소유자	비율	주택 소유자	비율
연도	2018	14,010,290	100.0	817,745	100.0
	2019	14,335,723	100.0	836,462	100.0
	2020	14,696,617	100.0	847,278	100.0
	2021	15,089,160	100.0	855,344	100.0
	2022	15,309,392	100.0	854,498	100.0
성별	남성	8,280,854	54.1	553,581	64.8
	여성	7,082,538	45.9	330,917	38.7
연령대별	30세미만	274,062	1.8	2,978	0.3
	30~39세	1,541,372	10.1	15,573	1.8
	40~49세	3,324,304	21.7	61,714	7.2
	50~59세	3,851,520	25.2	133,070	15.6
	60~69세	3,386,411	22.1	234,694	27.5
	70~79세	1,794,585	11.7	241,380	28.2
	80세이상	808,358	5.3	165,089	19.3
	사망자	328,780	2.1	-	-
지역	서울	2,628,669	17.2	118,830	13.9
	부산	1,030,185	6.7	57,295	6.7
	대구	717,264	4.7	41,102	4.8
	인천	839,794	5.5	48,792	5.7
	광주	436,853	2.9	22,875	2.7
	대전	425,773	2.8	23,162	2.7
	울산	363,002	2.4	19,155	2.2
	세종	113,799	0.7	4,298	0.5
	경기	3,815,559	24.9	180,898	21.2
	강원	484,622	3.2	34,318	4.0
	충북	499,702	3.3	32,002	3.7
	충남	654,084	4.3	44,116	5.2
	전북	555,750	3.6	42,590	5.0
	전남	593,542	3.9	45,489	5.3
	경북	873,702	5.7	62,055	7.3
	경남	1,080,564	7.1	66,337	7.8
	제주	196,528	1.3	11,184	1.3

주: 연령별 중 '사망자'는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미이전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1) 전체: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p.3.
2) 장애인: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OH0517&conn_path=I2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2022, 2023.11.14, (장애인) 거주지역/성별 주택소유자수

- 2022년 기준 장애인 주택소유자 수는 854,498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 15,309,392명 중 약 5.5%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주택소유자 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이나 2022년 소폭 하락함.
  - 성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주택 소유자 중 남성은 553,581명(64.8%), 여성은 330,917명(38.7%)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우 '60~69세'와 '70~79세'의 비율이 각각 27.5%, 28.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반면, 전체의 경우 '40~49세', '50~59세', '60~69세'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와 장애인 모두 '경기'의 비율이 각각 24.9%,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1) 주택유형

〈표 4-1-3〉 주택유형 현황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2019	100.0	42.3	41.0	2.4	9.9	2.0	2.4
2020	100.0	41.4	43.6	2.4	8.6	1.5	2.4
2021	100.0	41.0	45.2	1.9	7.9	1.1	2.8
2022	100.0	43.3	41.1	1.9	10.7	0.7	2.2

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12.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12.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12.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2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18.

(2) 주택사용면적

〈표 4-1-4〉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 현황 - 연도별

(단위: %, ㎡)

구분	전체	60㎡ 이하 (18평이하)	60㎡-85㎡ (18-25평)	85㎡-102㎡ (25-30평)	102㎡ 초과 (30평 초과)	모름/무응답	평균(㎡)
2019	100.0	49.8	30.0	11.4	8.7	0.2	65.0
2020	100.0	51.9	29.7	11.0	6.8	0.7	63.9
2021	100.0	51.2	31.5	9.6	7.0	0.8	63.0
2022	100.0	51.6	31.0	9.7	7.1	0.7	63.8

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4.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2.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4.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2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102.

(3) 사용 방 수

〈표 4-1-5〉 사용 방 수 현황 - 연도별

(단위: %, 개)

구분	전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평균(개)
2019	100.0	5.2	5.1	32.8	45.0	9.4	2.4	3.6
2020	100.0	5.9	6.1	33.2	45.0	8.4	1.4	3.5
2021	100.0	6.3	5.5	34.2	43.8	8.7	1.5	3.5
2022	100.0	5.4	6.3	31.8	47.3	8.0	1.2	3.5

주: 1)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2) 사용 방 수는 침실, 거실, 식당을 포함한 방의 수를 의미함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2.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0.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2.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2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8.

-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가 43.3%로 가장 높고, 아파트 41.1%, 다세대주택 10.7%, 주택이외의 거처 2.2% 순임
-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은 60㎡ 이하가 51.6%로 과반수가 넘고, 평균은 63.8㎡임
-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사용 방 수는 4개가 47.3%로 가장 높고, 3개가 31.8%. 5개 8.0% 순이며, 평균 방 수는 3.5개임

(4) 무주택 기간

〈표 4-1-6〉 무주택 기간 현황 - 연도별

(단위: %)

구분	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2019	100.0	3.8	2.4	2.7	7.0	13.4	70.7
2020	100.0	2.3	2.6	1.7	6.0	13.3	74.1
2021	100.0	1.9	2.2	2.5	6.2	11.6	75.6
2022	100.0	2.7	1.2	4.0	6.0	12.0	74.2

주: 1)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2)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무주택 기간을 의미함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40.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38.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40.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3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46.

(5)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표 4-1-7〉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 연도별

(단위: 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7.1	6.9	7.7	7.7	7.4
	장애인가구	8.0	8.0	8.6	8.0	8.4
	비장애인가구	7.0	6.9	7.6	7.6	7.4

주: 장애인가구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각 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3.06.20., 2024.07.22.)

-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0년 이상이 74.2%로 가장 높고, 5-10년 12.0%, 3-5년 6.0% 순임
- 2022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장애인가구가 8.4년, 비장애인가구가 7.4년임

(6) 주거비 부담 수준

〈표 4-1-8〉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없음
2019	100.0	19.0	41.8	16.7	3.5	18.9
2020	100.0	22.5	37.7	17.4	1.7	20.6
2021	100.0	21.0	35.9	20.1	4.4	18.7
2022	100.0	20.5	40.5	15.3	1.5	22.2

주: 1)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2) '해당없음'은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이면서 주택마련 및 임차 당시 대출을 했더라도 현재 모두 상환한 경우임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84.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82.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84.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2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0.

(7)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표 4-1-9〉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연도별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5.8	16.1	16.8	16.3	16.0
	장애인가구	25.5	24.0	23.4	23.8	26.0
	비장애인가구	16.1	16.3	17.0	15.9	15.7

주: 1) 장애인가구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로 정의함
2) 주택점유형태가 임차(전세, 월세, 연세, 일세)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3)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월임대료(중위수)/월가구소득(중위수)×100
* 월임대료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포함되며, 보증금에는 월세이율(월)을 적용함 ('22년 월세이율 0.48%)
* 월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 수혜금, 정부보조금,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됨

자료: 각 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원자료 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3.06.20., 2024.07.22.)

-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는 부담됨(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이 61.0%, 부담되지 않음(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16.8%임
- 2022년 기준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장애인가구가 26.0%, 비장애인가구가 15.7%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Rent-to-Income Ratio)
-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RIR 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부담이 높아짐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RIR 수치가 20% 이상이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볼 수 있음
(출처: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표 4-1-1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체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체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체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5.8	5.3	4.9	4.6	5.6	4.5	4.7	3.9
면적기준 미달가구	3.9	3.8	3.0	3.3	3.6	3.3	2.6	2.8
시설기준 미달가구	3.3	3.0	3.2	2.8	3.3	2.7	2.9	2.6
침실기준 미달가구	0.4	0.3	0.3	0.2	0.4	0.2	0.3	0.1

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산정방식은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 p.163-164를 따름
2)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면적기준, 시설기준, 침실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함
자료: 각 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원자료 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3.06.20., 2024.07.22.)

• 2022년도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4.7%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에 따라 살펴보면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2.6%, 시설기준 미달가구는 2.9%, 침실기준미달가구는 0.3%인 것으로 나타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총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주거의 양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임(출처: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
- 근거: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11.5.27)
• 시설기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면적 및 방 개수 기준

가구원수(명)	1	2	3	4	5	6
면적(m2)	14	26	36	43	46	55
방수(개)	1	1	2	3	3	4

2) 주택 환경

(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표 4-2-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 양호함	83.9	83.7	84.8	85.5	82.4	86.5	84.7	90.5	80.8	84.5	90.4	79.3	87.0	81.5	86.8	79.5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갖춤	86.3	86.2	87.0	87.2	86.4	88.9	85.2	91.4	83.5	85.9	93.2	81.4	90.3	87.0	89.1	79.7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있음	85.5	84.9	86.2	85.8	87.9	86.4	83.7	90.2	82.0	87.0	92.2	82.3	87.3	85.7	90.4	76.4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함	87.0	86.7	87.8	87.2	87.1	91.0	85.8	91.2	85.5	89.1	93.7	84.0	90.5	86.5	91.4	84.1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함	78.4	78.0	77.6	78.1	79.5	82.6	78.4	89.5	75.9	79.9	85.4	76.4	87.4	71.6	81.5	74.3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24-426.

〈표 4-2-2〉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6-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 양호함	83.9	84.0	83.8	87.6	88.6	84.2	82.2	84.3	83.6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갖춤	86.3	86.5	86.0	88.8	89.9	86.3	85.2	85.9	86.5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있음	85.5	85.1	86.1	86.9	87.0	85.2	85.2	85.2	85.7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함	87.0	86.9	87.1	90.4	90.0	87.4	85.7	87.3	86.8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함	78.4	79.0	77.6	87.9	81.8	79.6	76.2	78.5	78.4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66-667.

-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구조·성능 및 환경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함이 78.4%로 가장 열악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한 비율이 17세 이하가 87.9%, 18-44세 이하가 81.8%, 45-64세 이하가 79.6%, 65세 이상이 76.2%로 연령이 높을수록 충족도가 낮아짐
  - 자폐성의 경우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한 비율이 89.5%로 다른 장애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2)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표 4-2-3〉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편리함	17.2	17.2	13.8	17.2	17.9	17.5	22.1	30.6	11.4	16.3	18.9	8.5	23.9	16.4	14.5	10.5
약간편리함	60.5	60.3	59.5	60.7	60.6	59.7	58.8	60.5	66.2	61.1	62.0	63.2	63.9	67.8	64.7	65.4
약간불편함	19.2	19.3	22.9	19.3	19.1	20.9	15.6	7.8	19.7	19.9	17.9	24.0	11.8	13.7	17.8	22.4
매우불편함	3.1	3.2	3.7	2.8	2.5	1.8	3.6	1.2	2.7	2.8	1.2	4.2	0.4	2.1	3.0	1.8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27.

〈표 4-2-4〉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4.3	83.6
매우편리함	17.2	17.3	17.2	28.7	24.7	16.0	15.4	17.1	17.3
약간편리함	60.5	60.6	60.3	58.9	59.6	62.2	59.6	59.8	60.9
약간불편함	19.2	19.0	19.5	10.8	13.6	19.0	21.3	19.9	18.8
매우불편함	3.1	3.1	3.0	1.6	2.1	2.7	3.6	3.2	2.9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67.

- 장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77.7%는 집구조가 생활에 편리(매우 편리함 17.2%, 약간편리함 60.5%)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3.3%는 불편(약간불편함 19.2%, 매우불편함 3.1%)한 것으로 인식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집구조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낀 비율은 호흡기장애가 28.2%로 가장 높았으며, 자폐성장애가 9.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구조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집 구조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비율은 중증장애가 23.1%로 경증장애 21.7%에 비해 높게 나타남

(3)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표 4-2-5〉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 개조 의사	반드시 개조 원함	2.8	2.5	5.3	2.7	2.9	2.2	3.3	2.6	2.1	1.7	1.4	5.1	2.0	-	0.9	2.3
	가급적 개조 원함	12.8	13.7	15.4	9.8	12.1	12.3	12.2	6.3	13.1	9.2	9.8	12.4	5.8	18.3	9.0	12.9
	별로 개조 원치 않음	43.0	41.8	41.4	45.3	45.8	45.6	40.6	39.7	48.5	43.7	41.5	50.1	35.8	51.3	42.7	48.6
	전혀 개조 원치 않음	36.1	36.3	33.3	37.1	33.9	37.0	37.2	48.9	33.9	40.5	45.2	28.2	48.8	23.2	40.1	30.4
	이미 개조하였음	5.4	5.7	4.7	5.1	5.2	2.9	6.7	2.6	2.4	4.9	2.0	4.2	7.6	7.2	7.2	5.8
희망 개조 장소 (1순위)	침실	10.1	9.7	12.0	7.2	6.5	11.9	13.0	8.0	17.1	17.5	7.6	9.0	18.8	6.5	14.0	16.6
	거실	12.9	14.4	8.9	12.5	10.9	24.8	15.9	27.9	6.5	8.1	4.6	6.2	23.1	20.0	23.4	30.5
	주방	15.6	12.9	8.0	26.1	20.8	22.4	16.4	12.0	32.9	17.8	24.7	11.3	0.0	19.6	9.4	7.4
	화장실	34.7	32.2	43.6	30.7	37.9	28.4	30.6	31.9	35.7	41.1	48.3	49.7	40.5	38.7	37.8	24.9
	현관 (출입구)	17.3	20.5	20.7	16.6	13.8	5.8	12.2	10.2	4.7	7.3	14.7	3.6	12.8	4.1	8.8	11.3
	기타	9.3	10.3	7.0	6.9	10.0	6.8	11.9	10.1	3.1	8.2	0.0	20.2	4.7	11.2	6.6	9.2

주: 1) 희망 개조 장소 문항은 주택개조 의사 문항에 대해 '반드시 개조 원함'과 '가급적 개조 원함'으로 응답한 이들에 한해 조사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28.

- 주택 개조 의사를 살펴보면, 개조를 원치 않는 비율이 84.5%로 개조를 원한다고 답한 15.6%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장애유형별로 주택개조 의사(반드시 개조 원함 + 가급적 개조 원함)를 살펴보면, 뇌병변장애가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면장애 18.3%, 호흡기장애 17.5% 등의 순임
- 희망하는 개조 장소(1순위)는 화장실이 34.7%로 가장 많았고, 현관(출입구) 17.3%, 주방 15.6%, 거실 12.9% 등의 순임
  - 장애유형별 희망개조장소는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화장실 개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뇌전증장애만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거실 개조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음

〈표 4-2-6〉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주택개조 의사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반드시 개조 원함	2.8	2.9	2.7	1.1	2.6	3.0	2.9	4.0	2.1
	가급적 개조 원함	12.8	12.5	13.1	14.8	9.0	11.0	14.8	13.4	12.4
	별로 개조 원치 않음	43.0	42.3	44	42.1	38.5	41.7	45.1	41.9	43.6
	전혀 개조 원치 않음	36.1	37.1	34.6	37.9	44.2	38.4	32.2	34.9	36.8
	이미 개조하였음	5.4	5.2	5.6	4.2	5.6	5.8	5.0	5.8	5.1
희망 개조장소 (1순위)	침실	10.1	8.3	12.6	11.8	8.5	9.9	10.5	11.5	9.2
	거실	12.9	15.5	9.5	19.5	16.9	12.3	12.2	11.1	14.3
	주방	15.6	13.2	18.9	8.9	17.7	17.3	14.8	14.6	16.3
	화장실	34.7	38.6	29.5	24.0	34.4	34.3	35.5	37.2	32.9
	현관 (출입구)	17.3	14.8	20.6	22.1	7.5	18.3	18.2	17.0	17.5
	기타	9.3	9.7	8.8	13.8	15.0	7.9	8.9	8.6	9.9

주: 1) 희망 개조 장소 문항은 주택개조 의사 문항에 대해 '반드시 개조 원함'과 '가급적 개조 원함'으로 응답한 이들에 한해 조사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3)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68.

- 주택 개조 의사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개조의사가 15.8%로 남성 15.4%보다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주택개조의사가 17.7%로 가장 높고, 18-44세 이하가 11.6%로 가장 낮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의 개조의사가 17.4%로 경증 14.5%보다 2.9%p 높게 나타남
- 희망하는 개조 장소(1순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화장실이 각각 38.6%,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 장소로는 남성은 '거실'(15.5%), '현관'(14.8)의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현관'(20.6%), '주방'(18.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주거복지사업

(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표 4-3-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 연도별

(단위: %)

구분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지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공공 임대 주택	공공 분양 주택	민간 분양 특별 공급	임차 급여	수선 유지 급여	기타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주거 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2019	26.5	62.4	73.6	83.6	65.0	38.8	30.0	15.2	23.3	20.4
2020	25.3	64.1	75.3	81.5	62.4	36.8	29.5	15.9	17.6	17.1
2021	23.4	64.3	78.4	85.2	66.2	39.3	33.9	19.8	19.2	19.1
2022	23.9	65.9	77.6	82.4	66.7	39.1	31.3	17.8	16.6	18.7

주: 1)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2)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은 2019년부터 문항에 포함됨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28-246.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26-244.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28-246.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2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35-243.

(2) 주거지원 프로그램

〈표 4-3-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월세 보조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공공분야 주택 공급	주거 상담과 정보제공 등
2019	100.0	16.1	12.6	16.9	16.0	6.0	24.6	5.6	2.2
2020	100.0	18.0	15.5	19.0	14.7	5.4	18.8	4.5	4.1
2021	100.0	15.6	13.4	16.7	13.6	9.4	23.9	5.1	2.3
2022	100.0	15.7	16.6	14.2	17.9	5.7	24.1	4.3	1.4

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24.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22.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24.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2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32.

-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이 66.7%로 가장 높고,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 77.6%, 공공분양주택 66.7%,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 65.9% 순임. 반면 수선유지급여 17.8%, 기타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 16.6%는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낮은 편임
-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24.1%로 가장 높고,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17.9%, 전세자금 대출 지원 16.6% 순임

(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표 4-3-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 연도별

(단위: 백만원, 가구)

구분	지원액			총 지원가구	세부지원				
	계	국비	지방비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도배	싱크대 설치	기타
2006	4,000	2,000	2,000	1,091	544	76	102	95	466
2007	3,800	1,900	1,900	1,037	477	72	80	77	425
2008	3,800	1,900	1,900	1,075	491	111	193	160	291
2009	3,800	1,900	1,900	1,093	544	94	143	111	432
2010	3,800	1,900	1,900	1,090	487	128	151	137	444
2011	3,800	1,900	1,900	1,115	449	114	61	128	513
2012	3,800	1,900	1,900	1,054	423	107	58	123	489
2013	3,800	1,900	1,900	1,048	408	128	50	132	443
2014	3,420	1,710	1,710	934	387	102	69	120	385
2015	3,028	1,514	1,514	806	384	109	76	108	312
2016	1,508	753	755	413	188	76	81	59	145
2017	2,788	1,394	1,394	754	345	106	182	105	277
2018	3,318	1,659	1,659	877	424	119	181	111	231
2019	3,272	1,636	1,636	907	418	144	167	124	440
2020	3,326	1,663	1,663	921	369	145	217	131	403
2021	3,680	1,676	2,004	951	298	167	188	152	359
2022	3,420	1,710	1,710	920	353	127	205	113	371
2023	5,700	2,850	2,850	1,563	595	291	295	227	856

주: 1) 한 가구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음. 이에 세부지원 합과 총 지원가구의 합이 다름
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2016년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함
3) 2023년 12월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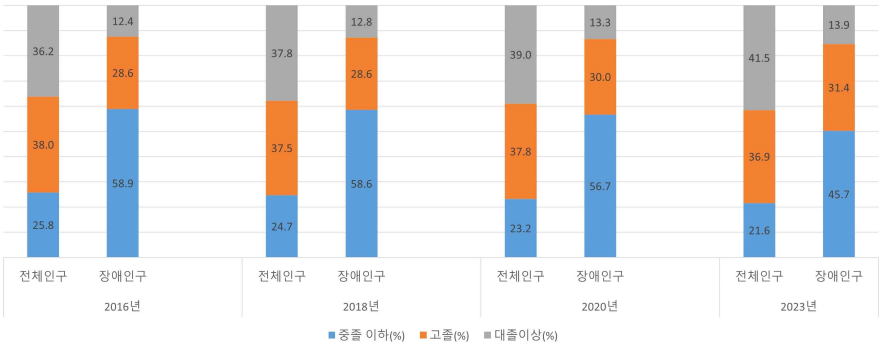
- 2023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태를 살펴보면, 지원액은 5,7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80백만원 증가하고 총 지원가구는 1,563가구로 643가구 증가함
  • 세부지원별로 살펴보면, 기타가 856가구로 가장 많고, 화장실 개조 595가구, 경사로 설치 295가구, 문턱 낮추기 291가구 등의 순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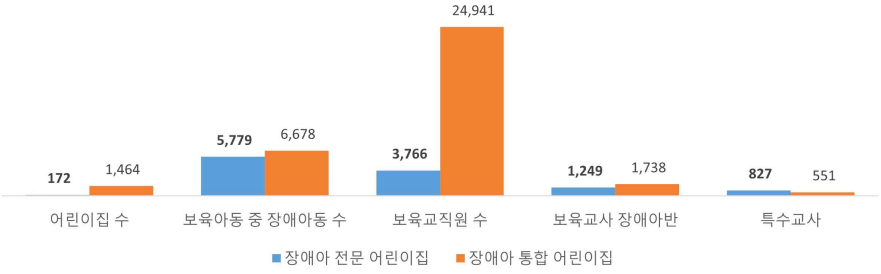
-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책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5. 교육

[그림 2-5-1] 장애인 교육수준 - 전체인구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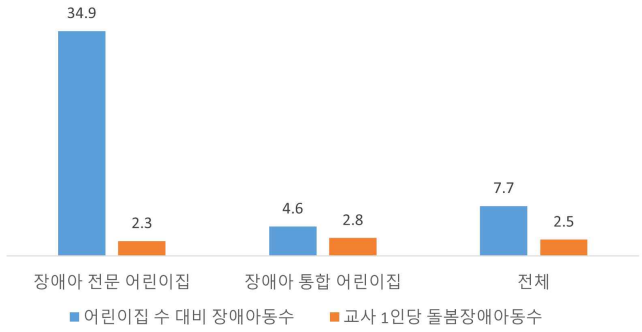


[그림 2-5-2] 전문/통합 어린이집 수 및 장애아동, 교사 수(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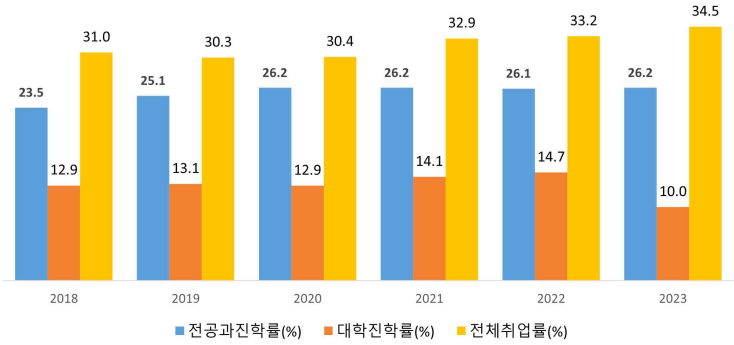
-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편임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2023년 기준 중졸 이하가 45.7%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31.4%, 대졸 이상 13.9% 순임
  - 반면 전체인구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1.5%로 가장 높고, 고졸이 36.9%, 중졸 이하 21.6% 순으로, 전체인구의 교육수준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2023년 장애아 전문 어린이 집은 전체 172개소이며,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 5,779명, 보육교직원 수 3,766명, 장애아반에 배치된 보육교사 수 1,249명, 특수교사 수 827명임
- 2023년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은 전체 1,464개소이며,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 6,678명, 보육교직원 수 24,941명, 장애아반에 배치된 보육교사 수 1,738명, 특수교사 수 551명임

[그림 2-5-3]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교사 대비 장애아동 수(2023년)



주: 교사 수는 장애아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를 합한 수임

[그림 2-5-4]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률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1곳 당 약 33.6명의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반면, 장애 통합 어린이집은 1곳당 4.6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사 1인당 돌봄 장애아동수는 전문 어린이집은 1명 당 2.3명, 통합 어린이집은 1명당 2.8명으로 나타남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의 전공과진학률, 대학진학률, 전체취업률은 증가 추이를 보임

1) 교육수준

(1) 교육수준

〈표 5-1-1〉 장애인의 교육수준 -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명	%	명	%	명	%
장애 인구	2015년	2,444,194	1,470,735	60.2	672,425	27.5	301,032	12.3
	2016년	2,441,167	1,438,700	58.9	699,331	28.6	303,136	12.4
	2017년	2,460,079	1,439,784	58.5	712,167	28.9	308,128	12.5
	2018년	2,495,041	1,462,403	58.6	713,451	28.6	319,187	12.8
	2019년	2,526,200	1,437,603	56.9	745,769	29.5	342,828	13.6
	2020년	2,562,873	1,453,052	56.7	769,660	30.0	340,160	13.3
	2021년	2,574,907	1,453,046	56.4	753,280	29.3	368,581	14.3
	2022년(A)	2,583,530	1,417,880	54.9	800,156	31.0	365,495	14.1
	2023년(B)	2,589,047	1,415,888	45.7	812,286	31.4	360,874	13.9
	증 감(B-A)	5,517	-1,992	-0.2	12,130	0.4	-4,621	-0.2
전체 인구	2015년	42,975,000	11,422,000	26.6	16,330,000	38.0	15,223,000	35.4
	2016년	43,387,000	11,192,000	25.8	16,487,000	38.0	15,708,000	36.2
	2017년	43,735,000	11,095,000	25.4	16,435,000	37.6	16,205,000	37.1
	2018년	44,141,000	10,882,000	24.7	16,569,000	37.5	16,690,000	37.8
	2019년	44,460,000	10,605,000	23.9	16,682,000	37.5	17,173,000	38.6
	2020년	44,756,000	10,377,000	23.2	16,916,000	37.8	17,463,000	39.0
	2021년	45,049,000	10,264,000	22.8	16,908,000	37.5	17,877,000	39.7
	2022년(A)	45,245,000	10,201,000	22.5	16,817,000	37.2	18,228,000	40.3
	2023년(B)	45,379,000	9,804,000	21.6	16,740,000	36.9	18,836,000	41.5
	증 감(B-A)	134,000	-397,000	-0.9	-77,000	-0.3	608,000	1.2

주: 1) '전체인구'는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이며, '장애인구'는 각년도 5월 15일 기준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2) 대졸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3) 증감은 '21년 대비 증감비율을 말함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5). 「2015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5.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3.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7). 「2017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3.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2018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1.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18.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0). 「202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19.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4.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 장애인 상반기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4.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 장애인 상반기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7.
10)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5월)」

- 2023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 41.5%는 장애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 13.9%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음
  -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 모두 202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부터 장애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감소하였음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2023년 기준 중졸 이하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31.4%, 대졸 이상 13.9% 순임
  - 반면 전체인구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1.5%로 가장 높고, 고졸이 36.9%, 중졸 이하 21.6% 순으로, 전체인구의 교육수준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5-1-2〉 장애인의 교육수준 - 지역별

(단위: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8.9	5.6	3.7	8.1	5.3	9.3	5.7	2.6	1.6	7.5	9.9	12.7	9.7	15.7	13.3	12.4	16.5	8.8
초등학교	28.6	23.6	29.0	25.6	23.8	23.8	27.7	24.5	28.1	29.8	30.8	29.4	36.4	31.0	40.6	29.7	25.8	28.0
중학교	17.8	16.8	23.6	22.3	22.1	17.9	13.4	23.1	6.7	19.2	16.7	16.8	14.6	11.2	10.9	20.2	15.6	16.7
고등학교	30.5	33.3	32.4	28.4	39.1	30.2	28.4	36.1	27.9	31.7	24.6	28.6	29.6	26.6	22.4	27.7	30.4	24.7
대학이상	14.3	20.7	11.4	15.7	9.7	18.7	24.9	13.8	35.7	11.8	18.0	12.4	9.8	15.5	12.8	10.0	11.6	21.7

주 1) 만 7세 이상 기준
2) 대학이상은 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함
3) 해당 지표는 내부연구진이 장애인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함(2023년 8월 기준)
원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장애인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표 5-1-3〉 장애인의 교육수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간질)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8.9	9.1	6.6	7.5	16.4	5.3	6.5	0.0	1.6	4.2	1.5	1.1	0.0	3.2	5.8	2.3
초등학교	28.6	28.9	28.3	27.5	37.6	28.2	25.2	41.9	13.9	16.1	17.4	30.8	13.9	19.3	29.5	14.9
중학교	17.8	20.1	18.2	14.7	16.5	18.2	13.4	8.2	15.2	14.1	16.1	24.2	15.8	13.0	20.2	16.0
고등학교	30.5	27.9	32.3	31.7	19.9	36.5	45.6	38.3	47.1	39.5	47.4	34.5	41.6	39.8	32.1	45.7
대학이상	14.3	14.0	14.7	18.4	9.7	11.8	9.3	11.6	22.3	26.2	17.7	9.4	28.7	24.8	12.4	21.1

주: 1) 만 7세 이상 기준
2) 대학이상은 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함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08.

- 장애인의 교육수준(최종학력)은 '고등학교'가 3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28.6%, '중학교' 17.8%, '대학이상' 14.3%, '무학' 8.9%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세종은 '대학 이상'이 35.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전남은 '초등학교' 비율이 40.6%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각각 37.6%, 41.9%로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4〉 교육수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8.9	2.9	16.9	2.1	0.7	2.9	15.4	7.0	9.9
초등학교	28.6	22	37.6	64.1	2.5	14.3	43.4	26.3	30.0
중학교	17.8	19.3	15.7	21.0	6.3	20.3	18.9	15.6	19.1
고등학교	30.5	37.1	21.5	11.9	52.8	44.1	16.3	35.9	27.3
대학이상	14.3	18.7	8.2	0.8	37.8	18.4	6.0	15.2	13.7

주: 1) 대학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2) 무응답제외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4)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87.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가 30.5%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28.9%, 중학교 17.8%, 대학이상 14.3%, 무학 8.9%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고등학교,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남성이 55.6%로 여성 29.7%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18-44세 이하가 90.6%로 가장 높고, 45-46세 이하 62.5%, 65세 이상 22.3% 순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중증장애가 51.1%로 경증장애 41.0%보다 높게 나타남

2) 보육

(1) 보육시설 이용

〈표 5-2-1〉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보육시설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100.0
	일반보육시설	11.3	-	6.5	41.9	32.7	21.0	9.4	5.8	-	-	-	-	27.3	-	-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3.9	-	2.5	-	-	14.3	3.2	4.4	-	-	-	-	-	-	-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5.5	-	5.0	-	-	-	-	5.0	-	-	-	-	-	-	-	-
	기타	5.5	-	6.9	-	-	10.6	8.2	1.4	-	-	-	-	-	-	-	-
	다니지 않음	77.2	-	79.1	58.1	67.3	54.1	79.1	83.4	-	100.0	100.0	-	72.7	100.0	100.0	100.0
1일 평균 이용시간	계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100.0	-	-	-
	1-5시간	32.4	-	45.1	-	-	40.9	24.7	48.6	-	-	-	-	100.0	-	-	-
	6-10시간	67.6	-	54.9	100.0	100.0	59.1	75.3	51.4	-	-	-	-	-	-	-	-
	평균이용시간	5.9	-	4.7	8.0	7.4	5.7	6.5	5.0	-	-	-	-	5.0	-	-	-
월 평균 비용	계	100.0	-	100	100	100	100	100	100	-	-	-	-	100	-	-	-
	무료	56.0	-	63.8	-	100.0	46.8	54.9	51.9	-	-	-	-	100.0	-	-	-
	1-5만원	28.6	-	36.2	100.0	-	25.1	28.0	21.2	-	-	-	-	-	-	-	-
	6-10만원	10.5	-	-	-	-	13.8	17.1	12.2	-	-	-	-	-	-	-	-
	11-15만원	0.9	-	-	-	-	6.0	-	-	-	-	-	-	-	-	-	-
	16-20만원	0.7	-	-	-	-	-	-	3.7	-	-	-	-	-	-	-	-
	21만원 이상	3.3	-	-	-	-	8.3	-	11.1	-	-	-	-	-	-	-	-
	평균비용	3.9	-	1.6	5.0	0.0	5.8	2.4	8.9	-	-	-	-	0.0	-	-	-

주: 1)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보육시설형태' 문항 중 일반보육시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13-314

-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니지 않음이 7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는 일반보육시설 11.3%, 장애아통합보육시설과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각각 3.9%, 5.5%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시설에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는 언어장애와 자폐성장애,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는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시각장애 8시간, 청각장애가 7.4시간 등의 순임
  -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은 무료가 56.0%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28.6%, 6-10만원 10.5%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은 자폐성장애가 8.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장애가 5.8만원 순임

〈표 5-2-2〉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보육시설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일반보육시설	11.3	14.0	3.2	11.3	-	-	-	9.9	19.1
	장애아통합보육시설	3.9	4.7	1.5	3.9	-	-	-	3.4	6.8
	장애아전담보육시설	2.1	2.8	-	2.1	-	-	-	2.5	-
	기타	5.5	3.8	10.6	5.5	-	-	-	6.0	3.0
	다니지 않음	77.2	74.7	84.7	77.2	-	-	-	78.3	71.1
1일 평균 이용시간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5시간	32.4	29.8	45.1	32.4	-	-	-	32.1	33.7
	6-10시간	67.6	70.2	54.9	67.6	-	-	-	67.9	66.3
	평균이용시간	5.9	5.9	6.1	5.9	-	-	-	5.9	6.3
월 평균 비용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무료	56.0	50.9	80.7	56.0	-	-	-	58.1	46.6
	1-5만원	28.6	33.5	4.4	28.6	-	-	-	27.7	32.4
	6-10만원	10.5	12.1	2.7	10.5	-	-	-	10.8	9.1
	11-15만원	0.9	1.1	-	0.9	-	-	-	-	5.0
	16-20만원	0.7	0.8	-	0.7	-	-	-	0.8	-
	21만원 이상	3.3	1.5	12.1	3.3	-	-	-	2.5	6.9
	평균비용	3.9	3.1	7.7	3.9	-	-	-	3.6	5.3

주: 1)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보육시설형태' 문항 중 일반보육시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3)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91.

-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시설에 다니는 여성의 비율은 3.2%로 남성 14.0%보다 10.8%p 낮게 나타남
  - 여성의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은 6.1시간으로 남성 5.9시간보다 길었으며, 월 평균 비용도 여성은 7.7만원, 남성은 3.1만원으로 여성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더 많았음
  - 장애정도별로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경증장애 71.1%, 중증장애 78.3%로 경증장애가 보육시설을 더 많이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표 5-2-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단위: 개, 명)

구분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보육교직원							
		정원	현원			전체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기타
			전체	장애아동	비장애아			장애아반	그 외				
2014년	171	8,271	6,699	5,812	887	3,273	171	876	233	1,140	483	178	204
2015년	173	8,348	6,781	5,856	925	3,278	172	817	225	1,180	486	183	215
2016년	174	8,387	7,045	6,106	939	3,449	174	802	271	1,268	498	184	252
2017년	176	8,468	7,023	6,105	918	3,529	176	829	291	1,258	524	187	264
2018년	176	8,397	7,065	6,211	854	3,596	176	909	318	1,202	549	187	255
2019년	176	8,444	7,095	6,301	794	3,730	176	948	400	1,185	567	189	265
2020년	176	8,447	6,923	6,205	718	3,737	176	1,028	414	1,099	562	190	268
2021년	177	8,427	6,912	6,261	651	3,794	177	1,138	465	977	567	192	278
2022년	176	8,365	6,695	6,169	526	3,807	176	1,211	469	906	553	192	300
2023년	172	8,189	6,461	5,779	484	3,766	171	1,249	483	827	537	188	311
서울	8	281	185	169	16	128	8	33	11	34	11	8	23
부산	15	566	476	473	3	282	15	73	26	86	45	15	22
대구	17	1,013	816	783	33	438	17	159	44	106	70	19	23
인천	7	148	129	128	1	115	7	34	32	9	14	7	12
광주	11	608	539	484	55	289	11	83	25	83	49	14	24
대전	4	98	84	84	-	62	4	19	11	10	8	5	5
울산	9	463	380	361	19	224	9	95	32	32	35	11	10
세종	1	39	14	14	-	13	1	5	2	-	2	1	2
경기	20	845	713	654	59	450	20	119	79	107	61	24	40
강원	4	199	117	114	3	66	4	26	10	11	5	4	6
충북	6	294	205	164	41	108	6	39	20	16	10	6	11
충남	10	441	359	298	61	212	10	74	36	28	26	10	28
전북	10	463	307	300	7	170	10	66	5	42	23	10	14
전남	13	799	592	537	55	323	13	114	38	70	54	16	18
경북	14	940	796	721	75	451	14	144	64	99	72	14	44
경남	19	791	564	563	1	337	18	121	40	70	46	19	23
제주	4	201	185	150	35	98	4	45	8	24	6	5	6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현황임
3) 보육교사: 장애아반 보육교사 / 그 외: 장애아반을 제외한 보육교사
4) 기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수
5) 장애아동: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 후) 장애아'인 아동

자료: 1) 보건복지부(2015). 「2014 보육통계」 p130-132.
2) 보건복지부(2016). 「2015 보육통계」 p131-133.
3) 보건복지부(2017). 「2016 보육통계」 p138-140.
4) 보건복지부(2018). 「2017 보육통계」 p139-141.
5) 보건복지부(2019). 「2018 보육통계」 p140-142.
6) 보건복지부(2020). 「2019 보육통계」 p146-148.
7) 보건복지부(2021). 「2020 보육통계」 p144-146.
8) 보건복지부(2022). 「2021 보육통계」 p144-146.
9) 보건복지부(2023). 「2022 보육통계」 p145-147.
10) 보건복지부(2024). 「2023 보육통계」 p147-149.

- 2023년 기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전체 172개소이며, 경기가 20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남 19개소, 부산 15개소 순으로 나타남
  -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는 대구가 1,01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940명, 경남이 892명 순임
  - 보육교직원 중 장애아반 보육교사가 1,249명으로 가장 많은 직원현황을 보였으며, 지역별 전체 보육 교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이 45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450명, 대구 438명 순임

(3)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표 5-2-4〉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단위: 개, 명)

구분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보육교직원							
		정원	현원			전체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기타
			전체	장애아동	비장애아			장애아반	그 외				
2014년	872	80,573	72,007	3,835	68,172	12,944	868	616	8,399	698	56	1,296	1,011
2015년	899	82,991	73,212	3,929	69,283	13,466	894	552	8,794	785	55	1,344	1,042
2016년	911	84,019	75,122	4,079	71,043	13,796	905	544	9,011	827	58	1,398	1,053
2017년	946	86,673	77,339	4,066	73,273	14,446	940	558	9,535	833	64	1,435	1,081
2018년	1,000	90,431	79,250	4,189	75,061	15,355	984	610	10,266	809	72	1,515	1,099
2019년	1,100	97,770	85,163	4,568	80,595	17,303	1,096	720	11,772	821	87	1,668	1,139
2020년	1,211	105,805	89,691	4,959	84,732	19,639	1,201	919	13,630	802	83	1,787	1,217
2021년	1,317	113,084	93,828	5,578	88,250	21,645	1,308	1,202	15,051	701	85	1,940	1,358
2022년	1,393	118,083	94,796	6,143	88,653	23,311	1,389	1,490	16,288	599	101	2,033	1,411
2023년	1,464	122,252	95,273	6,678	88,595	24,941	1,457	1,738	17,500	551	114	2,097	1,484
서울	423	36,431	27,612	1,950	25,662	7,550	423	432	5,169	271	63	581	611
부산	66	4,559	3,331	279	3,052	913	66	76	631	18	-	73	49
대구	10	767	576	85	491	160	10	21	99	7	-	13	10
인천	109	8,761	7,001	594	6,407	1,976	108	189	1,425	18	20	164	52
광주	11	645	505	20	485	155	11	3	118	3	-	13	7
대전	36	2,314	1,784	99	1,685	584	36	30	440	3	-	59	16
울산	18	1,548	1,232	101	1,131	312	18	27	216	8	-	29	14
세종	8	1,601	1,192	44	1,148	306	8	9	226	4	-	23	36
경기	546	46,648	38,247	2,483	35,764	9,326	540	672	6,695	182	26	839	372
강원	24	2,049	1,501	113	1,388	416	24	33	278	3	-	34	26
충북	11	918	528	45	483	142	11	11	93	3	-	12	12
충남	35	2,420	1,620	109	1,151	457	35	25	294	1	4	35	63
전북	10	952	498	36	462	139	10	11	94	1	-	12	11
전남	25	2,367	1,560	98	1,462	368	25	31	249	1	-	32	30
경북	20	1,827	1,223	138	1,085	336	20	42	209	2	1	21	41
경남	44	3,414	2,486	255	2,231	674	44	67	451	17	-	56	39
제주	68	5,031	4,377	229	4,148	1,127	68	59	813	9	-	101	77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보육교사: 장애아반 보육교사 / 그 외: 장애아반을 제외한 보육교사
3) 기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수
4) 장애아동: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 후) 장애아'인 아동

자료: 1) 보건복지부(2015). 「2014 보육통계」 p139-141.
2) 보건복지부(2016). 「2015 보육통계」 p140-142.
3) 보건복지부(2017). 「2016 보육통계」 p147-149.
4) 보건복지부(2018). 「2017 보육통계」 p148-150.
5) 보건복지부(2019). 「2018 보육통계」 p149-151.
6) 보건복지부(2020). 「2019 보육통계」 p155-157.
7) 보건복지부(2021). 「2020 보육통계」 p153-155.
8) 보건복지부(2022). 「2021 보육통계」 p153-155.
9) 보건복지부(2023). 「2022 보육통계」 p154-156.
10) 보건복지부(2024). 「2023 보육통계」 p156-158.

- 2023년 기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전체 1,464개소이며, 경기가 546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423개소, 인천 109개소 순임
  -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는 경기도가 2,48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950명, 인천 594명 순이었음
  - 보육교직원 중 장애아반 보육교사는 1,738명, 특수교사는 551명임

3) 유치원

(1) 유치원 이용

〈표 5-3-1〉 유치원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유치원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100.0	-
	일반유치원	6.5	-	3.6	41.9	37.9	10.1	4.0	-	-	-	34.5	-	-	-	-	-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	4.6	-	-	-	-	23.8	2.0	7.9	-	-	-	-	-	-	-	-
	특수학교 유치원(부)	1.8	-	-	-	-	-	2.7	3.2	-	-	-	-	-	-	-	-
	기타	0.1	-	-	-	-	1.4	-	-	-	-	-	-	-	-	-	-
	다니지 않음	86.9	-	96.4	58.1	62.1	64.8	91.3	89.0	-	100.0	65.5	-	100.0	100.0	100.0	100.0
1일 평균 이용 시간	계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
	1-5시간	37.0	-	-	-	-	28.4	69.3	61.8	-	-	-	-	-	-	-	-
	6-10시간	63.0	-	100.0	100.0	100.0	71.6	30.7	38.2	-	-	100.0	-	-	-	-	-
	평균이용시간	6.0	-	8.0	8.0	6.3	5.6	5.9	5.1	-	-	6.0	-	-	-	-	-
월 평균 비용	계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
	무료	44.4	-	-	-	27.3	53.8	46.4	77.8	-	-	-	-	-	-	-	-
	1-5만원	33.2	-	-	100.0	72.7	27.7	22.9	-	-	-	-	-	-	-	-	-
	6~10만원	13.3	-	100.0	-	-	3.9	30.7	-	-	-	-	-	-	-	-	-
	11~15만원	-	-	-	-	-	-	-	-	-	-	-	-	-	-	-	-
	16~20만원	2.5	-	-	-	-	-	-	5.5	-	-	100.0	-	-	-	-	-
	21만원 이상	6.6	-	-	-	-	14.7	-	16.7	-	-	-	-	-	-	-	-
	평균비용	4.9	-	10.0	5.0	2.2	6.0	3.3	6.1	-	-	20.0	-	-	-	-	-

주: 1)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유치원형태 문항 중 일반유치원,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부)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15-316.

- 유치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니지 않음이 8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니고 있는 유치원 중에서는 일반유치원 6.5%,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 4.6%, 특수학교 유치원(부) 1.8%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유치원에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에는 언어장애, 특수학교 유치원(부)에는 자폐성장애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은 6-10시간이 6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가 8.0시간, 청각장애 6.3시간 순임
  - 유치원 월 평균 비용은 무료가 44.4%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33.2%, 6-10만원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월 평균 비용은 심장장애가 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청각장애가 2.2만원으로 가장 낮음

〈표 5-3-2〉 유치원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유치원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일반유치원	6.5	7.9	2.4	6.5	-	-	-	4.3	19.8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4.6	4.0	6.3	4.6	-	-	-	3.6	10.4
	특수학교 유치원(부)	1.8	1.1	4.1	1.8	-	-	-	2.2	-
	기타	0.1	-	0.4	0.1	-	-	-	0.1	-
	다니지 않음	86.9	87.0	86.8	86.9	-	-	-	89.9	69.8
1일 평균 이용 시간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5시간	37.0	35.1	42.6	37.0	-	-	-	47.0	17.4
	6-10시간	63.0	64.9	57.4	63.0	-	-	-	53.0	82.6
	평균이용시간	6.0	5.9	6.4	6.0	-	-	-	5.9	6.3
월 평균 비용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무료	44.4	49.8	28.6	44.4	-	-	-	53.9	25.9
	1-5만원	33.2	42.8	5.1	33.2	-	-	-	13.3	72.1
	6~10만원	13.3	-	52.3	13.3	-	-	-	20.1	-
	11~15만원	-	-	-	-	-	-	-	-	-
	16~20만원	2.5	3.4	-	2.5	-	-	-	3.8	-
	21만원 이상	6.6	4.1	14.0	6.6	-	-	-	9.0	2.0
	평균비용	4.9	3.3	9.6	4.9	-	-	-	5.7	3.5

주: 1)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유치원형태 문항 중 일반유치원,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부)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3)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92-593.

- 유치원 이용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은 여성 86.8%, 남성 87.0%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낮음
  -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여성 6.4시간, 남성 5.9시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용시간이 길었으며, 월 평균 비용도 여성은 9.6만원, 남성은 3.3만원으로 여성의 유치원 이용비용이 더 많았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은 중증장애 89.9%, 경증장애 69.8%로 경증장애에 비해 중증장애가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음

4) 특수교육

(1) 특수학교 수

〈표 5-4-1〉 특수학교 수 -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교)

구분	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장애	영아 학급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공과
2010	150	5	55	90	12	18	95	18	7	18	118	140	139	136	83
2011	155	5	59	91	12	18	100	18	7	23	118	145	145	141	100
2012	156	5	60	91	12	16	102	19	7	23	116	145	146	143	108
2013	162	5	66	91	12	16	107	20	7	25	119	150	152	149	115
2014	166	5	69	92	12	15	112	20	7	22	120	154	157	155	121
2015	167	5	70	92	12	15	113	20	7	23	118	155	158	155	127
2016	170	5	74	91	12	14	119	18	7	24	124	158	161	160	133
2017	173	5	76	92	12	14	121	19	7	21	122	159	162	162	137
2018	175	5	78	92	13	14	121	20	7	26	125	161	164	163	143
2019	177	5	81	91	13	14	122	21	7	28	127	163	166	164	147
2020	182	5	87	90	13	14	126	22	7	28	133	167	170	169	154
2021	187	5	92	90	13	14	132	21	7	29	135	172	176	174	158
2022	192	5	97	90	13	14	137	21	7	31	138	176	180	179	163
2023	194	5	99	90	13	13	140	21	7	31	136	177	181	179	164
서울	32	3	11	18	3	4	16	6	3	7	24	28	28	27	26
부산	15	-	8	7	1	1	12	1	-	6	9	12	13	11	9
대구	11	-	5	6	1	1	6	2	1	-	4	10	10	11	10
인천	10	-	6	4	1	1	7	1	-	1	7	9	10	9	8
광주	5	-	3	2	1	-	3	1	-	4	5	5	5	5	4
대전	6	-	4	2	1	-	4	1	-	3	6	6	6	6	6
울산	4	-	2	2	-	1	3	-	-	-	3	4	4	4	4
세종	2	-	2	-	-	-	2	-	-	2	2	2	2	2	2
경기	38	2	14	22	-	2	32	3	1	4	31	33	35	35	28
강원	9	-	8	1	1	1	7	-	-	-	5	9	9	9	8
충북	11	-	4	7	2	1	5	2	1	1	10	10	10	10	10
충남	10	-	8	2	-	-	9	1	-	2	5	9	9	10	9
전북	10	-	6	4	1	1	6	2	-	1	4	9	9	9	9
전남	9	-	4	5	1	-	8	-	-	-	6	9	9	9	9
경북	8	-	3	5	-	-	7	-	1	-	5	8	8	8	8
경남	11	-	9	2	-	-	11	-	-	-	7	11	11	11	11
제주	3	-	2	1	-	-	2	1	-	-	3	3	3	3	3

주: 2022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1) 교육부(2010). 「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8-19.
2) 교육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8-19.
3)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8-19.
4) 교육부(2013).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7-18.
5)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1-12.
6)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0-11.
7)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8)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9)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10)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11) 교육부(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12) 교육부(2021).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13)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14) 교육부(2023).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 2023년 기준 특수학교의 수는 194개교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수학교의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8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32개교, 부산 15개교 등의 순임
  - 설립별로 살펴보면, 공립이 99개교로 가장 많으며, 사립 90개교, 국립 5개교 순임
  - 장애영역별로는 지적장애가 140개교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21개교, 시각장애, 청각장애 13개교 등의 순임
  - 학교과정별로는 중학교가 181개교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179개교, 초등학교 177개교 등의 순임

특수교육이란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특수학교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2) 특수학급 수

〈표 5-4-2〉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 수 - 설립별, 학교과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교, 개)

구분	학교수	계	설립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1	6,245	8,415	41	8,236	138	287	4,897	1,971	1,260
2012	6,598	8,927	45	8,726	156	344	4,999	2,144	1,440
2013	6,919	9,343	46	9,102	195	380	5,085	2,268	1,610
2014	7,148	9,617	48	9,363	206	464	5,073	2,353	1,727
2015	7,397	9,868	46	9,590	232	551	5,121	2,378	1,818
2016	7,543	10,065	46	9,781	238	640	5,155	2,353	1,917
2017	7,799	10,325	46	10,036	243	731	5,281	2,364	1,916
2018	7,954	10,676	46	10,377	253	853	5,480	2,372	1,971
2019	8,200	11,105	46	10,807	252	949	5,807	2,384	1,965
2020	8,523	11,661	46	11,351	264	1,086	6,132	2,468	1,975
2021	8,729	12,042	46	11,725	271	1,228	6,330	2,518	1,966
2022	9,056	12,712	46	12,391	275	1,437	6,701	2,614	1,960
2023	9,288	13,287	44	12,958	285	1,539	7,038	2,721	1,989
서울	1,588	1,588	7	1,539	42	148	834	322	284
부산	640	640	2	626	12	58	360	129	93
대구	469	469	4	463	2	46	265	92	66
인천	793	793	1	784	8	107	430	143	113
광주	322	322	4	307	11	29	177	70	46
대전	390	390	-	380	10	63	187	81	59
울산	341	341	-	341	-	42	173	69	57
세종	153	153	-	153	-	46	71	23	13
경기	3,628	3,628	-	3,572	56	498	1,824	751	555
강원	407	407	3	404	-	37	228	86	56
충북	579	579	8	567	4	78	303	116	82
충남	818	818	4	803	11	106	432	164	116
전북	505	505	3	494	8	61	281	97	66
전남	728	728	-	719	9	68	404	165	91
경북	727	727	-	673	54	43	414	158	112
경남	1,034	1,034	3	976	55	94	565	220	155
제주	165	165	5	157	3	15	90	35	25

주: 1) 학교 수 :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수
2) 각 년도별로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를 포함함
· (2011년) 2학급(인천 1, 경기 1), (2012년) 5학급(인천 공립 2, 경기 공립 3), (2013년) 7학급(인천 공립 2, 경기 공립4, 충북 1), (2014년) 8학급(대구 1, 인천 2, 경기 12, 충북 3), (2015년) 29학급(대구 1, 인천 3, 경기 22, 충북 3), (2016년) 32학급(대구 1, 인천 3, 경기 25, 충북 3), (2017~2019년) 33학급(대구 1, 인천 3, 경기 25, 충북 4), (2020년) 34학급 (대구 1, 인천 3, 경기 26, 충북 4), (2021년~2022년) 34학급(대구 2, 인천 2, 경기 26, 충북 4), (2023년) 34학급 (대구 2, 인천 3, 경기 26, 충북 3)

자료: 1) 교육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0, 31.
2)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0, 31.
3) 교육부(2013).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9, 28.
4)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3, 22.
5)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2, 21.
6)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37.
7)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37.
8)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37.
9)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43.
10) 교육부(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43.
11) 교육부(2021).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43.
12)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43.
13) 교육부(2023).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43.

- 2023년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수는 9,288개교, 특수학급 수는 13,278개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 특수학급 수를 설립별로 보면 공립이 12,958개로 가장 많았고 사립 285개, 국립 44개 순임
  - 학교과정별로는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7,038개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721개, 고등학교 1,989개, 유치원 1,539개 순임

특수학급이란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 특수학교·학급 학생 수

〈표 5-4-3〉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장애영역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2010	23,776	1,563	1,150	15,316	3,238	895	1,267	79	15	24	229
2011	24,580	1,495	1,153	15,819	3,371	429	1,917	86	20	35	255
2012	24,720	1,479	1,060	15,513	3,548	340	2,459	79	12	19	211
2013	25,138	1,468	1,053	15,172	3,584	279	3,191	113	38	33	207
2014	25,288	1,380	976	15,235	3,615	217	3,531	76	23	29	206
2015	25,531	1,353	952	14,891	3,707	199	4,000	85	13	48	283
2016	25,467	1,313	863	14,285	3,889	97	4,639	97	18	12	254
2017	25,798	1,307	819	14,379	3,858	229	4,747	88	15	33	323
2018	25,919	1,260	762	14,390	3,680	214	6,065	124	20	30	374
2019	26,084	1,221	709	14,205	3,730	210	5,424	134	17	16	418
2020	26,299	1,188	647	14,230	3,751	69	5,727	148	12	13	514
2021	27,027	1,130	605	14,356	3,826	79	6,247	159	19	7	599
2022	27,979	1,077	589	14,420	3,913	87	6,995	208	10	9	671
2023	28,942	1,079	560	14,540	3,905	68	7,781	206	10	13	780
서울	4,483	310	249	1,476	909	5	1,328	4	-	3	199
부산	2,022	81	22	874	316	12	584	19	2	-	112
대구	1,908	51	42	1,053	263	9	341	34	1	-	114
인천	1,946	79	37	1,040	208	4	529	26	1	-	22
광주	1,170	106	15	563	172	1	282	2	1	1	27
대전	1,122	119	12	545	124	1	309	-	-	-	12
울산	775	11	23	457	93	3	176	2	-	1	9
세종	229	2	1	95	37	-	80	3	-	-	11
경기	5,419	35	33	2,863	615	4	1,748	42	2	1	76
강원	866	46	3	494	70	3	212	4	1	1	32
충북	1,384	131	78	714	155	7	263	5	-	2	29
충남	1,342	2	6	758	190	4	348	13	-	1	20
전북	1,119	42	11	647	142	-	209	25	-	-	43
전남	1,197	48	15	738	123	5	234	4	-	1	29
경북	1,501	1	3	992	107	5	365	17	-	1	10
경남	1,914	12	7	979	304	5	571	2	2	1	31
제주	545	3	3	252	77	-	202	4	-	-	4

주: 1) 정신지체: 2016.2.3.부터 지적장애로 개정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장애구분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장애 구분과 다름

자료: 1) 교육부(2010). 「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2) 교육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3.
3)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3.
4) 교육부(2013).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0.
5)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4.
6)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3.
7)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9.
8)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9.
9)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9.
10)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11) 교육부(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12) 교육부(2021).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13)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14) 교육부(2023).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 2023년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8,94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963명 증가함
  -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5,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483명, 부산 2,022명 등의 순임
  - 장애영역별로는 지적장애가 14,540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과반이 넘어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7,781명, 지체장애 3,905명 등의 순임

〈표 5-4-4〉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설립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10	23,776	948	10,842	11,986
2011	24,580	946	11,313	12,321
2012	24,720	904	11,536	12,280
2013	25,138	892	12,232	12,014
2014	25,288	858	12,706	11,724
2015	25,531	856	13,087	11,588
2016	25,467	855	13,416	11,196
2017	25,798	853	13,874	11,071
2018	25,919	857	14,091	10,971
2019	26,084	877	14,455	10,752
2020	26,299	862	14,940	10,497
2021	27,027	838	15,740	10,449
2022	27,979	848	16,673	10,458
2023	28,942	837	17,575	10,530
서울	4,483	468	1,802	2,213
부산	2,022	-	1,441	581
대구	1,908	-	1,155	753
인천	1,946	-	1,558	388
광주	1,170	-	901	269
대전	1,122	-	861	261
울산	775	-	525	250
세종	229	-	229	-
경기	5,419	369	2,819	2,231
강원	866	-	797	69
충북	1,384	-	588	796
충남	1,342	-	1,142	200
전북	1,119	-	665	454
전남	1,197	-	611	586
경북	1,501	-	447	1,054
경남	1,914	-	1,670	244
제주	545	-	364	181

자료: 1) 교육부(2010). 「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2) 교육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3)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4) 교육부(2013).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1.
5)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
6)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4.
7)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0.
8)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0.
9)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0.
10)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11) 교육부(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12) 교육부(2021).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13)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14) 교육부(2023).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 2023 기준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전체 28,942명 중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대상자 수는 총 17,575명으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대상자 수 10,530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충북, 경북의 경우 사립학교 대상자 수가 국·공립학교 대상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국립학교 대상자의 경우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4-5〉 특수학급 학생 수 - 설립별, 학교과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명)

구분	계	설립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1	43,183	266	42,112	805	924	22,414	10,951	8,894
2012	44,433	261	43,248	924	1,138	21,695	11,659	9,941
2013	45,181	262	43,762	1,157	1,394	21,087	12,023	10,677
2014	45,803	267	44,349	1,187	1,675	20,586	11,973	11,569
2015	46,351	254	44,808	1,293	2,039	20,991	11,312	12,009
2016	46,645	233	45,123	1,289	2,504	21,192	10,602	12,347
2017	47,564	250	46,012	1,302	2,763	22,400	10,256	12,145
2018	48,848	256	47,295	1,298	3,058	24,169	9,990	11,631
2019	50,812	265	49,323	1,224	3,422	26,282	9,907	11,201
2020	52,744	253	51,204	1,287	3,866	27,713	10,327	10,838
2021	54,266	258	52,723	1,285	4,444	28,484	10,755	10,583
2022	57,948	245	56,359	1,344	5,291	30,964	11,317	10,376
2023	61,993	241	60,339	1,413	5,676	33,121	12,425	10,771
서울	7,167	46	6,929	192	565	3,777	1,541	1,284
부산	3,297	13	3,218	66	226	1,849	650	572
대구	2,205	21	2,178	6	191	1,217	426	371
인천	4,096	6	4,037	53	409	2,270	779	638
광주	1,582	23	1,499	60	115	836	337	294
대전	1,922	-	1,862	60	238	956	368	360
울산	1,621	-	1,621	-	162	847	321	291
세종	659	-	659	-	172	331	89	67
경기	17,535	-	17,238	297	1,708	9,143	3,512	3,172
강원	1,789	18	1,771	-	150	997	365	277
충북	2,584	40	2,527	17	332	1,316	486	450
충남	3,716	18	3,654	44	414	1,966	712	624
전북	2,220	12	2,165	43	223	1,201	447	349
전남	2,832	-	2,788	44	220	1,533	602	477
경북	3,159	-	2,887	272	151	1,781	666	561
경남	4,604	12	4,358	234	336	2,530	928	810
제주	1,005	32	948	25	64	571	196	174

주: 각 년도별로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을 고등학교에 포함
· (2012년) 30명(인천 10명, 경기 20명), (2013년) 46명(인천 13명, 경기 27명, 충북 6명), (2014년) 115명(인천 22명, 대구 11명, 경기 65명, 충북 17명), (2015년) 186명(대구 11명, 인천 33명, 경기 123명, 충북 19명), (2016년) 215명(대구 11명, 인천 27명, 경기 155명, 충북 22명), (2017년) 217명(대구 11명, 인천 22명, 경기 153명, 충북 31명), (2018년) 217명(대구 11명, 인천 22명, 경기 153명, 충북 31명), (2019년) 223명(대구 11명, 인천 25명, 경기 151명, 충북 36명), (2020년) 213명(대구 11명, 인천 19명, 경기 147명, 충북 36명), (2021년) 202명(대구 22명, 인천 15명, 경기 149명, 충북 34명), (2022년) 204명(대구 20명, 인천 14명, 경기 137명, 충북 33명), (2023년) 186명(대구 19명, 인천 15명, 경기 128명, 충북 24명)

자료: 1) 교육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2)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3) 교육부(2013).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2.
4)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6.
5)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
6)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1.
7)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1.
8)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1.
9)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6.
10) 교육부(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6.
11) 교육부(2021).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6.
12)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6.
13) 교육부(2023).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6.

- 특수학급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립은 2015년과 2016년에 학생 수가 줄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학교과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고등학교는 감소 추세가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의 학생이 17,535명으로 다른 지역의 학생 수보다 많았으며, 그 중 공립학교 학생 수가 17,23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공립학교의 학생 수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학교과정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졸업생 진로

〈표 5-4-6〉 졸업생 진학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진학률
			전체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2015		8,979	3,358	2,212	538	608	37.4
2016		9,482	3,471	2,246	560	665	36.6
2017		9,786	3,595	2,391	552	652	36.7
2018		10,063	3,688	2,367	579	742	36.6
2019		9,961	3,835	2,503	550	782	38.5
2020		9,699	3,755	2,513	530	712	38.7
2021		9,308	3,751	2437	495	819	40.7
2022		9,378	3,831	2,450	539	842	40.9
2023		8,899	3,799	2,328	581	890	42.7
고등학교	계	6,528	3,761	2,328	559	874	57.6
	특수학교	2,076	1,202	1130	7	65	57.9
	특수학급	3,354	1,883	1173	357	353	56.1
	일반학급	1,098	676	25	195	464	61.6
전공과	계	2,371	38	-	22	16	1.6
	특수학교	2,268	34	-	19	15	1.5
	특수학급	103	4	-	3	1	3.9

주: 1) 각 년도 4월 1일 기준
2) 진학률 = (진학자수/당해년도 졸업자수) * 100
3)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통계」 p8.

- 2023년 고등학교 및 전공과 전체 졸업생 8,899명 중 진학한 학생 수는 3,172명으로 42.9%의 진학률을 보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진학자수와 진학률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2023년 소폭 하락함
  - 졸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57.6%이고, 전공과 졸업자의 진학률은 1.6%임. 특히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의 진학률은 61.6%로 높게 나타남

〈표 5-4-7〉 졸업생 취업현황 - 취업분야별, 연도별, 졸업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졸업생수	취업분야													취업률
			전체	보건·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술	식품가공·제과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서비스	문화·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	
2015		8,979	1,710	43	522	21	15	119	64	17	150	211	12	125	68	343	30.4
2016		9,482	1,694	45	636	22	14	131	63	34	124	170	10	125	51	269	28.2
2017		9,786	1,847	73	633	14	10	109	80	59	153	262	10	140	29	275	29.8
2018		10,063	1,976	51	667	9	14	151	93	57	209	293	16	143	32	241	31.0
2019		9,961	1,855	81	498	5	8	81	71	37	253	333	21	174	35	258	30.3
2020		9,699	1,849	102	498	10	7	103	62	27	232	268	30	245	40	225	31.1
2021		9,308	1,826	102	477	9	16	117	38	24	245	244	23	232	49	250	32.9
2022		9,378	1,843	99	471	8	13	95	65	24	301	263	40	211	27	226	33.2
2023		8,899	1,760	99	491	16	12	127	41	26	220	264	53	166	44	201	34.5
고등학교	계	6,528	586	22	145	9	6	50	4	14	56	96	17	51	24	92	21.2
	특수학교	2,076	45	1	10	3	-	2	4	-	4	1	5	2	-	13	5.1
	특수학급	3,354	483	21	111	4	3	46	-	13	52	88	10	46	23	66	32.8
	일반학급	1,098	58	-	24	2	3	2	-	1	-	7	2	3	1	13	13.7
전공과	계	2,371	1,174	77	346	7	6	77	37	12	164	168	36	115	20	109	50.3
	특수학교	2,268	1,087	71	328	6	6	66	37	10	153	147	35	108	20	100	48.7
	특수학급	103	87	6	18	1	-	11	-	2	11	21	1	7	-	9	87.9

주: 1) 각 년도 4월 1일 기준
2)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 * 100

자료: 교육부(각년도). 「2023 특수교육통계」 p8.

- 2023년 전체 졸업생 수 8,899명 중 취업한 학생 수는 1,760명으로 34.5%의 취업률을 보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취업률은 증가 추이를 보임
  - 취업분야별로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제품제조'가 49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식음료 서비스' 264명, '청소·세탁' 220명, '기타' 201명, '식품가공·제과제빵' 1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졸업 유형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1.2%이고, 전공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50.3%로 나타남

5) 교육기관 편의시설

(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편의시설 유형별,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연도	2009	12,145	82.8	88.1	79.8	79.2	64.3	51.2
	2010	11,655	84.8	87.9	80.3	81.9	62.1	51.1
	2011	11,788	89.1	93.7	87.0	86.1	71.0	64.3
	2012	11,897	93.2	97.2	93.4	90.7	80.4	72.0
	2013	12,122	91.6	94.7	93.2	92.8	78.1	73.6
	2014	12,253	93.6	96.0	94.1	94.5	89.6	82.5
	2015	12,312	95.7	97.5	95.9	96.2	93.1	88.2
	2016	12,442	96.6	97.9	96.9	97.3	95.7	90.4
	2017	12,699	97.5	98.3	97.4	98.0	96.0	92.7
	2018	12,117	95.6	97.5	95.3	91.7	85.6	79.8
	2019	12,116	96.4	97.8	95.9	92.9	87.2	81.8
	2020	12,174	96.9	98.2	96.6	94.3	89.2	85.8
	2021	12,231	97.4	98.5	97.1	95.3	90.9	87.9
	2022	12,239	97.8	98.6	97.5	96.0	91.8	88.6
설립별	국공립	10,446	98.6	98.9	98.2	96.9	94.1	91.3
	사립	1,793	93.5	96.9	93.1	90.7	78.3	72.9
학교급별	초등학교	6,306	98.2	98.4	97.6	96.4	93.7	89.7
	중학교	3,269	97.8	99.1	97.8	95.8	90.5	87.2
	고등학교	2,391	96.8	99.0	96.7	94.9	87.9	87.4
	특수학교	192	99.5	97.9	100.0	100.0	100.0	98.4
	각종학교	81	92.6	92.6	88.9	90.1	86.4	79.0
학급설치여부	특수학급 설치학교	8,076	99.3	99.6	99.1	97.8	95.4	94.8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4,163	95.0	96.9	94.3	92.5	84.6	76.7

자료: 1) 교육부(2009). 「200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80-83.
2) 교육부(2010). 「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87-90.
3) 교육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86-89.
4)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87-90.
5)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79-86.
6)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92-95.
7)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92-95.
8)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63-66
9)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61.
10) 교육부(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61.
11) 교육부(2021).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61.
12)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62-63.
13) 교육부(2023).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10-111.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편의시설 유형별,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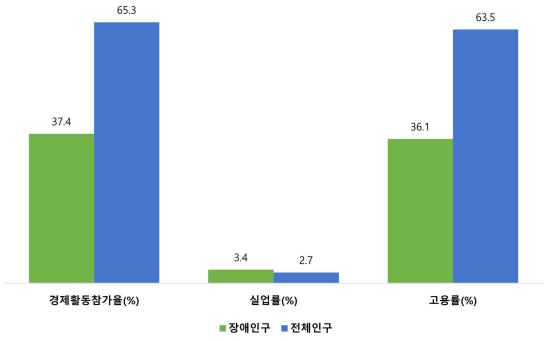
(단위: 교, %)

구분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연도	2009	81.9	-	-	-	-	75.3
	2010	80.4	67.9	35.8	37.1	48.0	65.2
	2011	88.8	81.1	57.5	51.9	67.2	76.2
	2012	94.0	87.6	72.9	70.1	80.3	84.7
	2013	92.3	79.8	68.8	55.8	75.0	81.4
	2014	93.0	82.6	72.6	64.8	77.8	85.6
	2015	94.9	87.1	80.2	70.9	84.3	89.5
	2016	95.8	90.0	83.4	75.5	85.4	91.4
	2017	96.7	92.1	86.2	79.9	86.7	92.9
	2018	96.3	90.7	90.0	85.5	81.9	90.0
	2019	96.9	91.8	91.7	87.7	84.3	91.3
	2020	92.5	97.4	93.1	89.7	86.5	92.7
	2021	93.2	97.9	94.5	91.2	88.4	93.8
	2022	98.1	93.6	95.0	91.9	89.7	94.4
학교별	국공립	98.5	94.2	96.0	92.8	90.8	95.5
	사립	95.5	90.0	89.5	86.2	83.3	88.2
학교급별	초등학교	98.0	94.4	95.6	92.4	90.2	95.0
	중학교	98.4	93.1	94.8	91.5	88.6	94.0
	고등학교	97.9	91.8	94.1	91.1	89.5	93.4
	특수학교	99.5	99.0	96.9	98.4	99.5	99.0
	각종학교	92.6	82.7	86.4	75.3	79.0	86.0
학급설치여부	특수학급 설치학교	99.5	95.2	97.1	94.0	92.2	96.7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95.3	90.4	91.0	87.7	84.9	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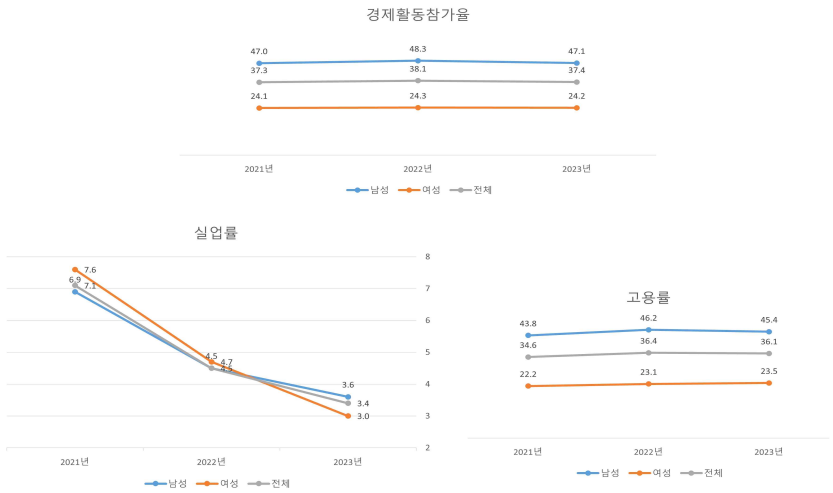
- 2022년 교육기관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4.4%로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편의시설 유형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설치가 용이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98.6%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계단 또는 승강기 88.6%, 경보 및 피난설비 89.7%는 다른유형들에 비해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이 95.5%로 사립학교 88.2%보다 설치율이 7.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설치율을 살펴보면, 특수학교가 99.0%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종학교는 86.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각종학교의 경우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율이 75.3%로 특수학교의 설치율 98.4%에 비해 23.1%p 낮음
  - 학급설치여부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급 설치학교가 96.7%로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89.9%에 비해 6.8%p 높음
    -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율이 76.7%로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설치율 94.8%에 비해 18.1%p 낮음

6. 노동과 직업재활

[그림 2-6-1]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비교(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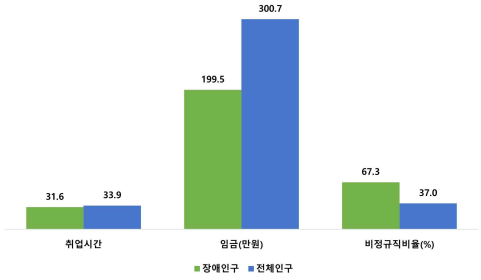


[그림 2-6-2] 경제활동상태 - 성별비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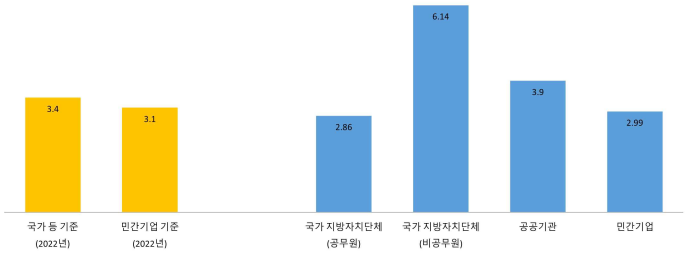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4%로 전체인구 65.3% 보다 27.9%p 낮음
  - 실업률은 장애인구 3.4%로 전체인구 2.7%보다 0.7%p 높으며, 고용률은 장애인구 36.1%로 전체인구 63.5% 보다 27.4%p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전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연도별(2021년-2023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실업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고용률은 45.4%로 여성 23.5%에 비해 21.9%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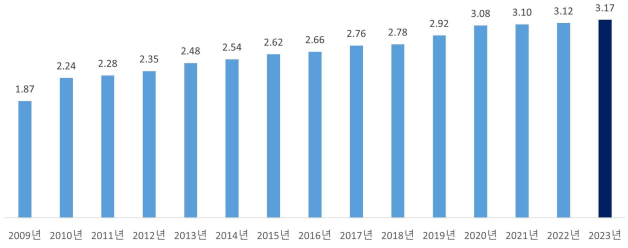
[그림 2-6-3] 임금근로자 근로 특성 - 전체인구 비교(2023년)



[그림 2-6-4-1] 장애인 의무고용률 - 부문별(2023년)



[그림 2-6-4-2]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별



주: 장애인 의무 고용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4%, 민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3.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함

- 2023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구의 주 평균 취업시간은 31.6시간으로 전체인구의 33.9시간과 비슷하며,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300.7만원인 것에 비해 장애인구는 199.5만원으로 전체인구의 약 66.3%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고용률은 3.17%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86%로 의무고용률 3.4%에 미치지 못한 반면 비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6.14%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90%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의무고용률 3.10%에 미치지 못함

1) 경제활동

(1) 경제활동상태

〈표 6-1-1〉 경제활동상태(2023)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수	비율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전체	2,589,047	100.0	916,582	880,929	35,653	1,672,465	35.4	3.9	34.0
	남성	1,491,392	57.6	665,422	639,125	26,298	825,970	44.6	4.0	42.9
	여성	1,097,655	42.4	251,159	241,804	9,355	846,496	22.9	3.7	22.0
	15-29세	126,779	4.9	44,720	41,459	3,261	82,059	35.3	7.3	32.7
	30-39세	112,321	4.3	57,119	55,532	1,587	55,202	50.9	2.8	49.4
	40-49세	220,897	8.5	134,583	129,003	5,580	86,314	60.9	4.1	58.4
	50-59세	410,764	15.9	219,311	210,820	8,491	191,453	53.4	3.9	51.3
	60세 이상	1,718,286	66.4	460,848	444,115	16,733	1,257,438	26.8	3.6	25.8
	서울	382,649	14.8	128,984	123,949	5,035	253,665	33.7	3.9	32.4
	경기도	567,702	21.9	217,258	209,832	7,426	350,444	38.3	3.4	37.0
	광역시도	631,402	24.4	208,859	198,369	10,490	422,543	33.1	5.0	31.4
	기타 시도	1,007,294	38.9	361,480	348,779	12,701	645,814	35.9	3.5	34.6
	중졸 이하	1,356,159	52.4	315,839	302,476	13,363	1,040,321	23.3	4.2	22.3
	고졸	856,037	33.1	374,862	361,594	13,268	481,175	43.8	3.5	42.2
	대졸 이상	376,851	14.6	225,881	216,859	9,022	150,970	59.9	4.0	57.5
전체인구	전체	45,452,000	100.0	29,390	28,764	627	16,062	64.7	2.1	63.3
	남성	22,386,000	49.3	16,472	16,096	376	5,914	73.6	2.3	71.9
	여성	23,066,000	50.7	12,918	12,668	250	10,148	56.0	1.9	54.9
	15-29세	8,327,000	18.3	4,075	3,866	209	4,252	48.9	5.1	46.4
	30-39세	6,782,000	14.9	5,549	5,423	127	1,233	81.8	2.3	80.0
	40-49세	7,921,000	17.4	6,340	6,248	92	1,582	80.0	1.5	78.9
	50-59세	8,608,000	18.9	6,807	6,710	97	1,801	79.1	1.4	77.9
	60세 이상	13,814,000	30.4	6,620	6,518	101	7,195	47.9	1.5	47.2
	서울	8,474,000	18.6	5,356,000	5,223,000	134,000	3,118,000	63.2	2.5	61.6
	경기	11,986,000	26.4	7,907,000	7,748,000	159,000	4,079,000	66.0	2.0	64.6
	광역시도	11,192,000	24.6	6,960,000	6,788,000	173,000	4,232,000	62.2	2.5	60.7
	기타 시도	13,801,000	30.4	9,169,000	9,006,000	162,000	4,634,000	66.4	1.8	65.3
	중졸 이하	9,813,000	21.6	3,667,000	3,611,000	56,000	6,146,000	37.4	1.5	36.8
	고졸	16,803,000	37.0	10,882,000	10,618,000	264,000	5,922,000	64.8	2.4	63.2
	대졸 이상	18,836,000	41.4	14,842,000	14,535,000	307,000	3,994,000	78.8	2.1	77.2

주: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4)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5)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3년 10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14-121.
2)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2023년 10월)」

- 2023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5.4%로 전체인구 64.7% 보다 29.3%p 낮음
- 실업률은 장애인구 3.9%로 전체인구 2.1%보다 1.8%p 높으며, 고용률은 장애인구 34.0%로 전체인구 63.3% 보다 29.3%p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지역 간, 연령 간 차이보다 성별, 학력별에 따른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고용률은 42.9%로 여성 22.0%에 비해 20.9%p 높음
  - 학력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57.5%로 가장 높고, 고졸 42.2%, 중졸 이하 22.3% 순임

〈표 6-1-2〉 경제활동상태 - 연도별

(단위: 명, %, %p)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20	2021	2022	2023	증감	2020	2021	2022	2023	증감	2020	2021	2022	2023	증감
전체	37.0	37.3	36.0	35.4	-0.6	5.9	7.1	4.5	3.9	-0.6	34.9	34.6	34.3	34.0	-0.3
남성	46.5	47.0	45.2	44.6	-0.6	5.8	6.9	4.3	4.0	-0.3	43.8	43.8	43.3	42.9	-0.4
여성	24.1	24.1	23.4	22.9	-0.5	6.1	7.6	5.2	3.7	-1.5	22.7	22.2	22.2	22.0	-0.2
15~29세	32.6	39.6	39.6	35.3	-4.3	14.7	8.6	6.5	7.3	0.8	27.8	36.2	37.0	32.7	-4.3
30~39세	60.1	62.7	58.2	50.9	-7.3	5.4	10.1	3.5	2.8	-0.7	56.8	56.4	56.2	49.4	-6.8
40~49세	60.5	59.2	56.2	60.9	4.7	5.7	7.1	5.5	4.1	-1.4	57.0	55.0	53.1	58.4	5.3
50~59세	52.4	53.5	55.5	53.4	-2.1	6.6	5.9	3.3	3.9	0.6	49.0	50.3	53.7	51.3	-2.4
60세 이상	27.1	27.4	26.3	26.8	0.5	4.7	7.1	4.9	3.6	-1.3	25.8	25.5	25.0	25.8	0.8
중증	21.3	23.8	23.2	22.3	-0.9	6.9	8.2	5.9	4.9	-1.0	19.9	21.8	21.8	21.2	-0.6
경증	44.2	43.3	41.6	41.1	-0.5	5.6	6.8	4.2	3.6	-0.6	41.7	40.3	39.9	39.6	-0.3
신체 외부 지체장애	46.6	45.9	45.1	44.4	-0.7	4.9	6.6	4.1	3.3	-0.8	44.4	42.8	43.3	43.0	-0.3
신체 외부 지체 외	14.9	16.2	15.2	13.8	-1.4	11.5	15.6	6.6	8.1	1.5	13.2	13.7	14.2	12.7	-1.5
감각 시각장애	44.6	43.0	42.6	45.2	2.6	5.4	7.8	5.2	4.2	-1.0	42.3	39.7	40.4	43.3	2.9
감각 시각 외	32.3	34.0	30.3	28.6	-1.7	6.5	5.5	3.3	4.3	1.0	30.2	32.2	29.3	27.4	-1.9
정신적	21.0	24.4	23.3	23.0	-0.3	10.7	8.5	7.6	5.7	-1.9	18.7	22.3	21.5	21.7	0.2
발달	-	30.1	27.6	27.2	-0.4	-	7.1	7.5	3.7	-3.8	-	28.0	25.5	26.2	0.7
신체내부	27.1	28.8	28.9	30.0	1.1	6.4	6.5	5.6	3.4	-2.2	25.4	27.0	27.3	29.0	1.7
서울	34.0	31.2	35.6	33.7	-1.9	7.9	7.0	3.3	3.9	0.6	31.3	29.0	34.4	32.4	-2.0
경기	37.3	38.8	38.4	38.3	-0.1	6.8	9.4	6.1	3.4	-2.7	34.8	35.2	36.1	37.0	0.9
광역시도	33.6	36.2	32.2	33.1	0.9	7.7	6.4	6.2	5.0	-1.2	31.0	33.9	30.2	31.4	1.2
기타 시도	40.1	39.4	37.1	35.9	-1.2	3.8	6.3	3.2	3.5	0.3	38.6	36.9	35.9	34.6	-1.3
중졸이하	25.9	26.0	23.7	23.3	-0.4	5.5	7.1	4.9	4.2	-0.7	24.5	24.2	22.6	22.3	-0.3
고졸	46.1	46.3	45.4	43.8	-1.6	6.3	7.2	5.0	3.5	-1.5	43.2	43.0	43.2	42.2	-1.0
대졸이상	64.0	63.3	63.7	59.9	-3.8	5.9	6.9	3.2	4.0	0.8	60.3	58.9	61.7	57.5	-4.2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4)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5)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6)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7) 2020년, 2021년 자료는 5월 기준, 2022년, 2023년 자료는 10월 기준임
8) 증감은 2023년 수치에서 2022년 수치를 뺀 값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0).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0.2)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5.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3.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2.

- 2022년 대비 2023년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활율, 실업률, 고용률 모두 각각 0.6%p, 0.6%p, 0.3%p 감소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용률은 40-49세가 5.3%p 증가한 반면, 15-29세, 30-39세는 각각 4.3%p, 6.8%p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업률은 발달장애가 3.8%p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고용률은 시각장애가 2.9%p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의 실업률은 0.8%p 증가하고, 고용률은 4.2%p 감소함

(2) 취업자 특성

〈표 6-1-3〉 취업자의 인적 구성(2023)

(단위: 명, %)

구분			전체인구 취업자		장애인구 취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28,764,000	100.0	880,929	100.0
성별	남성		16,096,000	56.0	639,125	72.6
	여성		12,668,000	44.0	241,804	27.4
연령별	15-29세		3,866,000	13.4	41,459	4.7
	30-39세		5,423,000	18.9	55,532	6.3
	40-49세		6,248,000	21.7	129,003	14.6
	50-59세		6,710,000	23.3	210,820	23.9
	60세 이상		6,518,000	22.7	444,115	50.4
장애정도별	중증		-	-	165,232	18.8
	경증		-	-	715,696	81.2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	-	505,087	57.3
		지체 외	-	-	30,537	3.5
	감각	시각	-	-	108,096	12.3
		시각 외	-	-	120,689	13.7
	정신적		-	-	70,045	8.0
	발달		-	-	57,476	6.5
	신체내부		-	-	46,475	5.3
지역별	서울		5,223,000	18.2	123,949	14.1
	경기		7,748,000	26.9	209,832	23.8
	광역시도		6,788,000	23.6	198,369	22.5
	기타 시도		9,006,000	31.3	348,779	39.6
학력별	중졸 이하		3,611,000	12.6	302,476	34.3
	고졸		10,618,000	36.9	361,594	41.0
	대졸 이상		14,535,000	50.5	216,859	24.6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함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4)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3년 10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31.
2)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2023년 10월)」

- 2023년 기준으로 취업자의 인적구성을 전체인구와 장애인구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 취업자의 남녀 성비는 56.0% 대 44.0%이며, 장애인구 취업자의 남녀성비는 72.6% 대 27.4%로 나타나 장애인구의 성별에 따른 격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 취업자는 연령별 분포가 비슷하나, 장애인구 취업자는 60세 이상이 50% 이상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 취업자는 대졸이상이 50.5%이며, 장애인구 취업자는 중졸 이하와 고졸이 75.4%로 나타남
-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구 취업자의 장애특성별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가 81.2%로 다수를 차지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외부장애가 6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감각장애 26.0%임

〈표 6-1-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2023)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80,929	100.0	28,764,000	100.0
임금근로자	소계	632,782	71.8	22,082,000	76.8
	상용근로자	329,215	37.4	16,240,000	56.5
	임시근로자	213,653	24.3	4,826,000	16.8
	일용근로자	89,914	10.2	1,016,000	3.5
비임금근로자	소계	248,147	28.2	6,682,000	23.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8,670	5.5	1,446,000	5.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75,753	20.0	4,287,000	14.9
	무급 가족 종사자	23,724	2.7	949,000	3.3

주: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3년 10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32.
2)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2023년 10월)」

- 2023년 기준으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임금근로자 비율은 76.8%이며, 장애인구는 71.8%임
  •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인구가 56.5%인 반면, 장애인구는 37.4%임

〈표 6-1-5〉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2023) - 종사상 지위별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인구 취업자	
	전체		장애인 임금 근로자		장애인 비 임금 근로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80,929	100.0	632,782	100.0	248,147	100.0	28,764,000	100.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88,271	10.0	6,822	1.1	81,448	32.8	1,665,000	5.8
제조업	120,241	13.6	104,868	16.6	15,373	6.2	4,448,000	15.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747	0.4	3,747	0.6	-	-	95,000	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7,510	0.9	4,898	0.8	2,613	1.1	139,000	0.5
건설업	68,833	7.8	59,342	9.4	9,491	3.8	2,153,000	7.5
도매 및 소매업	80,621	9.2	41,509	6.6	39,112	15.8	3,282,000	11.4
운수 및 창고업	53,761	6.1	27,512	4.3	26,250	10.6	1,664,000	5.8
숙박 및 음식점업	48,652	5.5	26,930	4.3	21,722	8.8	2,301,000	8.0
정보통신업	16,184	1.8	10,004	1.6	6,180	2.5	1,064,000	3.7
금융 및 보험업	13,796	1.6	13,766	2.2	30	0.0	788,000	2.7
부동산업	36,686	4.2	27,870	4.4	8,816	3.6	524,000	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511	2.1	14,295	2.3	4,216	1.7	1,369,000	4.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9,858	5.7	45,445	7.2	4,413	1.8	1,458,000	5.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1,932	9.3	81,932	12.9	-	-	1,279,000	4.4
교육 서비스업	32,661	3.7	25,969	4.1	6,692	2.7	1,870,000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1,877	12.7	109,066	17.2	2,811	1.1	2,930,000	1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512	1.6	10,426	1.6	4,087	1.6	519,000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483	3.3	15,631	2.5	13,852	5.6	1,127,000	3.9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3,791	0.4	2,751	0.4	1,040	0.4	89,000	0.3

주: 1)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3년 10월 기준임
2) 기타=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34-135.
2)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2023년 10월)」

- 2023년 기준으로 취업자의 직장(일자리)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제조업'이 15.5%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 11.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2% 순임. 장애인구는 '제조업'이 13.6%로 가장 높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7%,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0.0% 순임
  - 장애인 취업자 중 임근근로자의 직장(일자리)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2%, '제조업' 16.6% 등의 순이고, 비임금근로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32.8%, '도매 및 소매업' 15.8% 순임

〈표 6-1-6〉 취업자의 직업(2023) - 종사상 지위별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인구 취업자	
	전체		장애인 임금 근로자		장애인 비 임금 근로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80,929	100.0	632,782	100.0	248,147	100.0	28,764,000	100.0
관리자	5,019	0.6	3,617	0.6	1,402	0.6	478,000	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9,859	10.2	60,354	9.5	29,505	11.9	6,210,000	21.6
사무 종사자	119,702	13.6	100,830	15.9	18,872	7.6	5,031,000	17.5
서비스 종사자	73,487	8.3	53,209	8.4	20,278	8.2	3,499,000	12.2
판매 종사자	61,030	6.9	23,413	3.7	37,617	15.2	2,589,000	9.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3,170	9.4	1,580	0.2	81,590	32.9	1,613,000	5.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5,996	7.5	50,501	8.0	15,495	6.2	2,303,000	8.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7,038	12.2	73,157	11.6	33,881	13.7	3,040,000	10.6
단순노무 종사자	273,750	31.1	265,179	41.9	8,571	3.5	4,002,000	13.9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1,881	0.2	943	0.1	938	0.4	-	-

주: 1) 기타에는 군인 등이 포함됨
2)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3년 10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36
2)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2023 10월)」

- 2023년 기준으로 취업자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1.6%로 가장 높고, '사무종사자' 17.5%, '단순노무 종사자' 13.9% 등의 순임. 장애인구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1.1%로 가장 높고 '사무 종사자' 13.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2% 순임
  -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41.9%로 가장 높고, 비임금근로자의 직업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1-7〉 임금근로자 특성(2023) -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직업별,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여부별

(단위: 명, %, 시간, 만원)

구분		추정 수	취업시간	임금
전체인구		21,954,000	33.9	300.7
장애인구		632,782	32.0	202.8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29,215	38.6	275.8
	임시근로자	213,653	23.4	105.8
	일용근로자	89,914	28.1	169.3
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6,822	23.1	122.0
	제조업	104,868	39.3	290.2
	건설업	59,342	39.3	284.5
	도소매, 음식 숙박업	68,439	33.2	203.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331,575	27.2	149.1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59,926	37.6	281.7
직업	관리자, 전문가	63,971	38.5	339.4
	사무 종사자	100,830	37.0	296.8
	서비스, 판매 종사자	76,622	30.3	187.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80	40.0	247.1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123,658	38.2	260.9
	단순노무 종사자	265,179	26.1	111.8
사업체 규모	1-4인	131,077	27.9	151.0
	5-49인	370,095	32.1	191.4
	50-299인	66,198	40.4	299.6
	300인 이상	40,737	36.6	373.1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427,499	27.5	145.7
	정규직	205,284	41.2	324.1

주: 1) 취업시간은 '지난 주 평균 실제로 일한 시간', 임금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의미함
2) 취업시간과 임금의 임금노동자 추정 수는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취업시간의 추정 수를 표기함
3) 평균 취업시간은 일시 휴직자의 경우 0시간으로 대입하여 산정함
4)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에 대해 모름/응답 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5)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하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함
6) '관리자, 전문가'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의미함
7) '사업체'는 기업체의 하부조직으로 본사·지점·공장·영업소·상점 등을 의미함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49, 155.
2)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3년 8월)」

- 2023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 평균 취업시간은 장애인구 32.0시간, 전체인구 33.9시간으로 비슷하며, 월평균임금은 장애인구가 202.8만원으로 전체인구(300.7만원)의 약 67.4% 수준임
  -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의 취업시간과 월평균임금이 각각 38.6시간, 275.8만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남
  - 산업별로 살펴보면, 취업시간과 월평균임금은 '제조업'(39.3시간, 290.2만원)과 '건설업'(39.3시간, 284.5만원)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취업시간이 40.0시간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편이고, '관리자, 전문가'의 월평균임금이 339.4만원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편임
  - 사업체 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취업시간과 월평균임금이 높아지는 편임
  - 정규직 여부별로는 정규직의 취업시간과 월평균임금이 각각 41.2시간, 324.1만원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각각 1.5배, 2.2배 높은 편임

〈표 6-1-8〉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2023)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단위: %)

구분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전체인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전체			67.6	37.0
성별	남성		61.4	29.8
	여성		81.8	45.5
연령	15-29세		80.9	42.6
	30-39세		52.3	21.6
	40-49세		48.1	26.3
	50-59세		51.7	33.2
	60세 이상		83.0	68.7
장애정도	중증		73.1	-
	경증		66.0	-
장애유형	신체외부	지체	62.6	-
		지체 외	69.5	-
	감각	시각	66.5	-
		시각 외	77.1	-
	정신적		85.7	-
	발달		86.7	-
	신체내부		56.7	-
지역	서울		76.6	34.9
	경기		58.7	33.5
	광역시도		65.6	38.5
	기타 시도		71.2	40.6
학력	중졸 이하		85.1	74.2
	고졸		67.6	44.7
	대졸 이상		44.0	25.3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함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61
2)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3년 8월)」

- 2023년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6.3%로 전체인구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37.0% 비해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장애인구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81.8%로 매우 높은 편임
  - 연령별로는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에서 60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68.7%, 83.0%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의 비정규직 비율이 73.1%로 경증장애 66.0%에 비해 더 높고,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86.7%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모두 중졸 이하의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85.1%, 74.2%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이 44.0%와 25.3%로 가장 낮게 나타남

(3) 실업자 특성

〈표 6-1-9〉 실업자의 인적 구성(2023)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실업자		전체인구 실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35,653	100.0	627,000	100.0
성별	남성		26,298	73.8	376,000	60.0
	여성		9,355	26.2	250,000	39.9
연령별	15-29세		3,261	9.1	209,000	33.3
	30-39세		1,587	4.5	127,000	20.3
	40-49세		5,580	15.7	92,000	14.7
	50-59세		8,491	23.8	97,000	15.5
	60세 이상		16,733	46.9	101,000	16.1
장애정도별	중증		8,577	24.1	-	-
	경증		27,076	75.9	-	-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16,981	47.6	-	-
		지체 외	2,701	7.6	-	-
	감각	시각	4,731	13.3	-	-
		시각 외	5,369	15.1	-	-
	정신적		4,212	11.8	-	-
	발달		2,181	6.1	-	-
	신체내부		1,660	4.7	-	-
지역별	서울		5,035	14.1	134,000	21.4
	경기		7,426	20.8	159,000	25.4
	광역시도		10,490	29.4	173,000	27.6
	기타 시도		12,701	35.6	162,000	25.8
학력별	중졸 이하		13,363	37.5	56,000	8.9
	고졸		13,268	37.2	264,000	42.1
	대졸 이상		9,022	25.3	307,000	49.0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4)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3년 10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80.
2)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2023년 10월)」

- 2023년 기준으로 실업자의 인적구성을 전체인구와 장애인구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 실업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 60.0%, 여성 49.9%이며, 장애인구 실업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 73.8%, 여성 26.2%임
  - 연령별로는 전체인구 실업자의 경우 15-29세의 비율이 33.3%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구 실업자는 60세 이상의 비율이 46.9%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가 75.9%로 중증장애 24.1%보다 높음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외부장애가 55.2%로 전체 실업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학력별로는 전체인구의 경우 대졸이상의 비율이 49.0%로 가장 높으며, 장애인구는 중졸 이하가 37.5%로 가장 높음

〈표 6-1-10〉 실업자의 구직활동(2023)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실업자		전체인구 실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35,653	100.0	627,000	100.0
구직 기간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15,057	42.2	361,000	57.2
		3-6개월 미만	13,185	37.0	167,000	35.2
		모름 / 응답 거절	46	0.1	-	-
		소계	28,288	76.1	528,000	92.4
	6개월 이상	6-12개월 미만	5,231	14.3	93,000	6.6
		12개월 이상	2,133	9.6	6,000	1.0
		소계	7,364	23.9	99,000	7.6
구직 경로	공공 취업알선기관		15,684	44.0	-	-
	민간 취업알선기관		9,513	26.7	-	-
	대중매체(신문, 인터넷, 광고 등)		7,954	22.3	-	-
	학교, 학원		517	2	-	-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16,562	46.5	-	-
구직 방법	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 민간알선기관)		23,424	65.7	-	-
	시험접수, 시험응시		2,220	6.2	-	-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 제출		4,394	12.3	-	-
	취업(채용)박람회 참가		461	1.3	-	-
	자영업 준비		73	0.2	-	-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소개 부탁		18,952	53.2	-	-
	모름 / 응답거절		46	0.1	-	-

주: 1) '공공 취업알선기관'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워크투게더 포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포함),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가 포함됨
2) 구직경로와 구직방법은 두 개까지 응답받음
3)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3년 10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84-185.
2)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2023년 10월)」

- 2023년 기준으로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전체인구와 장애인구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비율은 전체인구 실업자는 7.6%인 반면, 장애인구 실업자는 23.9%를 차지함
  - 장애인 실업자의 구직경로는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이 46.5%로 가장 높고, '공공 취업알선기관' 44.0%, '민간 취업알선기관' 26.7% 순임
  - 장애인 실업자의 구직방법은 '구직등록, 구직응모'가 65.7%로 가장 높고,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소개 부탁' 53.2%,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 제출' 12.3% 순임

〈표 6-1-11〉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2023)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전체		35,653	100.0
희망 고용형태	임금근로	64,935	98.0
	비임금근로	718	2.0
희망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768	5.0
	제조업	7,564	21.2
	건설업	2,473	6.9
	도소매, 음식 숙박업	2,115	5.9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19,347	54.3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1,842	5.2
	모름/응답거절	544	1.5
희망직업	관리자, 전문가	1,766	5.0
	사무 종사자	4,719	13.2
	서비스, 판매 종사자	6,207	17.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기능, 기계조직 종사자	6,779	19.0
	단순노무 종사자	16,183	45.4
희망 사업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등)	1,502	4.3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9,005	25.8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301	12.3
	그 외 일반사업체	20,126	57.6
희망 근로시간	전일제 근로	21,107	60.4
	시간제 근로	13,828	39.6
희망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	470	1.3
	50-100만원 미만	5,643	15.8
	100-150만원 미만	4,630	13.0
	150-200만원 미만	7,997	22.4
	200-300만원 미만	12,495	35.0
	300만원 이상	4,418	12.4

주: 1) 희망 사업체, 희망 근로시간은 희망 고용형태를 '임금근로'로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함
2)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는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하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함
3) '관리자, 전문가'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의미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86-188.

- 실업자의 희망고용 형태는 임금근로자가 98.0%로 가장 높고, 희망산업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54.3%로 가장 많으며, 희망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45.4%로 가장 많음
- 희망사업체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와 같은 일자리보다 일반사업체를 희망하는 실업자가 57.6%로 가장 많음
- 희망 근로시간은 전일제 근로 60.4%, 시간제 근로 39.6%로 전일제 근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 평균 희망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5.0%로 가장 많음

(4)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표 6-1-12〉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및 구직단념자 수(2023)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전체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1,672,465	100.0	16,062,000	100.0
성별	남성		825,970	49.4	5,914,000	36.8
	여성		846,496	50.6	10,148,000	63.2
연령별	15-29세		82,059	4.9	4,252,000	26.5
	30-39세		55,202	3.3	1,233,000	7.7
	40-49세		86,314	5.2	1,582,000	9.8
	50-59세		191,453	11.4	1,801,000	11.2
	60세 이상		1,257,438	75.2	7,195,000	44.8
장애정도별	중증		606,551	36.3	-	-
	경증		1,065,914	63.7	-	-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652,531	39.0	-	-
		지체 외	207,191	12.4	-	-
	감각	시각	136,615	8.2	-	-
		시각 외	314,693	18.8	-	-
	정신적		249,167	14.9	-	-
	발달		159,343	9.5	-	-
	신체내부		112,268	6.7	-	-
지역별	서울		253,665	15.2	3,118,000	19.4
	경기		350,444	21.0	4,079,000	25.4
	광역시도		422,543	25.3	4,232,000	26.3
	기타 시도		645,814	38.6	4,634,000	28.9
학력별	중졸 이하		1,040,321	62.2	6,146,000	38.3
	고졸		481,175	28.8	5,922,000	36.9
	대졸이상		150,970	9.0	3,994,000	24.9
구직단념자 수	통계청 기준		12,908	0.8	35,000	2.2
	EDI 기준		34,055	2.0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2019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서 서울 경기 구분하고, 인천 광역시도에 넣어 통계 집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90, p196.
2)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2023년 10월)」

- 2023년 기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을 전체인구와 장애인구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 36.8%, 여성 63.2%이고, 장애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 49.4%, 여성 50.6%임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장애인구는 75.2%, 전체인구는 44.8%로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장애의 비율이 63.7%로 중증장애 36.3%보다 높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39.0%로 가장 높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중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각각 38.3%, 62.2%로 가장 높음

※ 통계청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EDI)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돼서 +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지난 1년 내 구직경험 여부 기준 제외)를 의미함

2) 의무고용

(1) 장애인 의무고용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체 수(개소)	상시근로자수(명)	장애인수(명)	고용률(%)
연도		2009	22,209	6,091,555	114,053	1.87
		2010	23,249	6,511,624	126,416	2.24
		2011	24,083	6,909,276	133,451	2.28
		2012	25,688	7,199,417	142,022	2.35
		2013	27,349	7,499,665	153,955	2.48
		2014	27,488	7,570,281	158,388	2.54
		2015	28,218	7,713,036	164,876	2.62
		2016	28,708	7,852,861	168,614	2.66
		2017	28,018	7,912,772	175,935	2.76
		2018	29,018	8,177,401	180,328	2.78
		2019	29,777	8,389,402	245,184	2.92
		2020	29,890	8,467,076	260,826	3.08
		2021	30,478	8,674,826	268,663	3.10
		2022	31,455	8,936,761	278,823	3.12
		2023	32,316	9,175,615	291,323	3.17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	318	968,828	27,707	2.86
		중앙행정기관	54	207,070	7,338	3.54
		헌법기관	4	25,163	720	2.86
		지방자치단체	243	314,623	11,655	3.70
		교육청	17	421,972	7,994	1.89
	근로자	계	307	412,689	25,346	6.14
		중앙행정기관	43	73,761	2,300	3.12
		헌법기관	4	3,485	99	2.84
		지방자치단체	243	148,441	15,646	10.54
		교육청	17	187,002	7,301	3.90
공공기관	소계		794	590,925	23,075	3.90
	공기업		32	150,151	6,070	4.04
	준정부기관		55	118,547	5,100	4.30
	기타공공기관		249	183,338	6,582	3.59
	지방공기업		153	82,946	3,472	4.19
	출자출연기관		305	55,943	1,851	3.31
민간기업			30,897	7,203,173	215,195	2.99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적용함
3) 장애인 근로자수는 순인원임
4)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각 년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통계청 KOSIS에서 자료 인출. (검색일: 2024.7.5.)
- 고용노동부,「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23, 2024.7.5,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고용률은 3.17%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90%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함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 및 상시 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3.2%
  -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3.4%
  -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3.6%
  - 2024년 이후: 3.8%
-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2015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2.7%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9%
  - 2019년 이후: 3.1%

(2) 장애인 고용부담금

〈표 6-2-2〉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b/a)
합계	88,007	6,104,470	83,948	5,935,845	4,059	168,625	97.2
2023	9,282	852,413	8,824	829,580	458	22,833	97.3
2022	9,338	786,072	8,875	763,688	463	22,384	97.2
2021	9,039	789,303	8,591	767,611	448	21,692	97.3
2020	9,250	773,911	8,841	755,756	409	18,155	97.7
2019	9,011	635,393	8,595	619,090	416	16,303	97.4
2018	9,456	567,773	9,031	552,121	425	15,652	97.2
2017	8,439	470,032	7,996	453,236	443	16,796	96.4
2016	8,283	449,178	7,877	434,718	406	14,460	96.8
2015	8,247	428,433	7,945	418,087	302	10,346	97.6
2014	7,662	351,962	7,373	341,958	289	10,004	97.2
2013이전	7,678	326,515	7,403	318,777	275	7,738	97.6

주: 미수납 및 불납결손한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2024).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p657.

-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부과건수가 매년 증가하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다만, 부과금액은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함
  -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건수는 9,282건, 부과금액은 852,413백만원임
  -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건수는 8,824건, 징수금액은 829,580백만원임
  - 부가금액 대비 징수금액인 징수율은 2023년 97.3%임

장애인 고용부담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신설)」 제32조의2. 시행 2017.1.1.)

3) 기업체 장애인 고용

(1) 기업체 장애인 고용

〈표 6-3-1〉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단위: 개, %)

구 분		전 체		장애인 고용기업체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기업체 수	비 율	기업체 수	비 율	기업체 수	비 율	
전 체		1,904,866	100.0	64,115	100.0	1,840,751	100.0	3.4
고용비의무 기업체	계	1,870,697	98.2	40,395	63.0	1,830,299	99.4	2.2
	1-4명	1,447,120	76.0	17,686	27.6	1,429,434	77.7	1.2
	5-49명	423,575	22.2	22,709	35.4	400,866	21.8	5.4
고용 의무기업체	계	34,172	1.8	23,720	37.0	10,451	0.6	69.4
	50-299명	30,346	1.6	20,008	31.2	10,338	0.6	65.9
	300-999명	3,172	0.2	3,063	4.8	109	0.0	96.6
	1,000명 이상	654	0.0	649	1.0	5	0.0	99.3
산업별	계	1,904,866	100.0	64,115	100.0	1,840,751	100.0	3.4
	제조업	306,239	16.1	18,443	28.8	287,796	15.6	6.0
	서비스업 1	718,446	37.7	11,790	18.4	706,656	38.4	1.6
	서비스업 2	704,598	37.0	29,965	46.7	674,633	36.6	4.3
	기타 산업	175,583	9.2	3,917	6.1	171,666	9.3	2.2
지역별	계	1,904,866	100.0	64,115	100.0	1,840,751	100.0	3.4
	수도권	1,037,521	54.5	38,101	59.4	999,420	54.3	3.7
	광역시권	338,526	17.8	9,824	15.3	328,699	17.9	2.9
	기타 지역	528,822	27.8	16,190	25.3	512,632	27.8	3.1

주: 1) 제조업, 서비스업 1(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2(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타 지역(수도권·광역시권 외 지역)
3) 장애인고용비율 = (장애인 고용기업체 수 / 전체기업체 수) * 1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2023). 「2023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p130-133.

- 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기업체 수 대비 장애인 고용 기업비율은 3.4%임
-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고용비의무 기업체의 경우 2.2%인 40,395개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였고, 고용의무기업체인 5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69.4%인 23,720개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함
  -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2'는 4.3%, '기타 산업'은 2.2%, '서비스업1'은 1.6%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은 '수도권'의 고용기업체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지역'은 3.1%, '광역시권'은 2.9% 순으로 나타남

(2)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표 6-3-2〉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단위: 명, %)

구 분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 체	비 율	장애인	비 율	
전 체		14,896,871	100.0	209,325	100.0	1.4
고용비의무 기업체	계	8,215,789	55.2	51,258	24.5	0.6
	1-4명	3,611,077	24.2	17,769	8.5	0.5
	5-49명	4,604,712	30.9	33,489	16.0	0.7
고용 의무기업체	계	6,681,082	44.8	158,067	75.5	2.4
	50-299명	3,162,787	21.2	68,821	32.9	2.2
	300-999명	1,494,710	10.0	34,548	16.5	2.3
	1,000명 이상	2,023,585	13.6	54,698	26.1	2.7
산업별	계	14,896,871	100.0	209,325	100.0	1.4
	제조업	3,782,657	25.4	57,461	27.5	1.5
	서비스업 1	3,180,367	21.3	24,244	11.6	0.8
	서비스업 2	6,854,779	46.0	119,594	57.1	1.7
	기 타	1,079,068	7.2	8,025	3.8	0.7
지역별	계	14,896,871	100.0	209,325	100.0	1.4
	수도권	8,914,771	59.8	137,892	65.9	1.6
	광역시권	2,378,730	16.0	28,916	13.8	1.2
	기타 지역	3,603,370	24.2	42,517	20.3	1.2

주: 1) 제조업, 서비스업 1(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2(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타 지역(수도권·광역시권 외 지역)

3)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전체 상시근로자 수) * 1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2023). 「2023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p135-137.

- 1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전체 209,325명으로,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4%임
- 고용비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6%951,258명), 고용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4%(158,067명)임
  - 고용의무기업체 중 '1,000명 이상' 규모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2.7%로 가장 높고, '300~999명' 2.3%, '50~299명' 2.2% 순임
  - 산업별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서비스업2'의 장애인 고용률은 1.7%로 가장 높고, '제조업' 1.5%, '서비스업 1' 0.8%, '기타 산업' 0.7% 순임
  - 지역별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1.6%로 가장 높고, 광역시권, 기타 지역은 각각 1.2%로 나타남

4) 장애인기업

(1) 장애인기업 수

〈표 6-4-1〉 장애인기업 수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단위: 개사, %)

구분			2018		2020		2022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전 체			95,589	100.0	115,347	100.0	164,660	100.0
규모별	소상공인		89,133	93.2	103,794	90.0	148,723	90.3
	중소기업		6,456	6.8	11,553	10.0	15,937	9.7
업종별	제조업		15,565	16.3	20,610	17.9	26,104	15.9
	도매 및 소매업		29,939	31.3	34,435	29.9	48,891	29.7
	숙박 및 음식점업		19,856	20.8	22,490	19.5	24,836	15.1
	개인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69	0.3	418	0.4	548	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23	2.1	2,999	2.6	5,512	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829	9.2	9,875	8.6	10,778	6.5
	기타	건설업	4,925	5.2	6,632	5.7	21,978	13.3
		정보통신업	592	0.6	896	0.8	2,459	1.5
		부동산업	3,997	4.2	5,022	4.4	7,305	4.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70	2.0	2,468	2.1	5,245	3.2
		교육 서비스업	1,981	2.1	2,432	2.1	2,748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07	1.4	2,012	1.7	2,251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436	4.6	5,058	4.4	6,005	3.6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41,037	42.9	-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0,071	21.0	-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3,226	24.3	-	-	-	-
	5억원 이상		11,255	11.8	-	-	-	-
	5억원 이하		-	-	94,210	81.7	-	-
	5 ~ 10억원 이하		-	-	9,403	8.2	-	-
	10 ~ 50억원 이하		-	-	9,226	8.0	-	-
	50 ~ 100억원 이하		-	-	1,458	1.3	-	-
	100 ~ 300억원 이하		-	-	850	0.7	-	-
	300억원 초과		-	-	200	0.2	-	-
	5천만원 미만		-	-	-	-	67,078	40.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24,308	14.8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	-	48,358	29.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	-	12,474	7.6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	-	-	11,188	6.8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	-	1,068	0.6
	100억원 이상		-	-	-	-	186	0.1

주: 1) 각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은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추정 수 및 비율임
3) 2018, 2020, 2022년 매출액 규모범주가 다름

자료: 1)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0). 「201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32.
2)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2). 「202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44.
3)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4).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3-4.

-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기업 수는 164,660개로, 2018년 대비 약 69,000개 증가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90.3%, 중소기업 9.7%임,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9.7%로 가장 비율이 높고, 제조업 15.9%, 숙박 및 음식점업 15.1% 등의 순임. 전체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원 이하 40.7%, 1억원이상 5억원 미만 29.4%, 5억원이상 15.1%,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14.8% 순임

장애인기업이란?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뜻함(「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2)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표 6-4-2〉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단위: %)

구분			2018		2020		2022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전 체			93.6	6.4	86.9	13.1	83.9	16.1
규모별	소상공인		96.8	3.2	92.8	7.2	87.1	12.9
	중소기업		49.2	50.8	34.1	65.9	54.1	45.9
업종별	제조업		88.4	11.6	78.5	21.5	79.6	20.4
	도매 및 소매업		95.3	4.7	89.8	10.2	91.3	8.7
	숙박 및 음식점업		99.8	0.2	99.1	0.9	99.6	0.4
	개인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73.7	26.3	43.1	56.9	43.7	5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2	18	74.3	25.7	80.3	19.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8.3	1.7	97.0	3.0	96.5	3.5
	기타	건설업	72.1	27.9	48.8	51.2	53.8	46.2
		정보통신업	64.2	35.8	49.8	50.2	58.4	41.6
		부동산업	97.1	2.9	91.4	8.6	86.4	13.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7.1	22.9	57.5	42.5	56.4	43.6
		교육 서비스업	94.6	5.4	95.5	4.5	94.7	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7.1	2.3	95.6	4.4	97.4	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9.2	0.8	98.4	1.6	92.9	7.1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98.8	1.2	-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9.0	1.0	-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94.8	5.2	-	-	-	-
	5억원 이상		62.1	37.9	-	-	-	-
	5억원 이하		-	-	94.6	5.4	-	-
	5 ~ 10억원 이하		-	-	75.0	25.0	-	-
	10 ~ 50억원 이하		-	-	41.8	58.2	-	-
	50 ~ 100억원 이하		-	-	11.8	88.2	-	-
	100 ~ 300억원 이하		-	-	5.5	94.5	-	-
	300억원 초과		-	-	2.0	98.0	-	-
	5천만원 미만		-	-	-	-	91.7	8.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88.7	11.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	-	85.4	14.6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	-	71.6	28.4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	-	-	42.4	57.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	-	10.7	89.3
	100억원 이상		-	-	-	-	3.8	96.2

주: 1) 각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기업 비율은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비율임
3) 2018, 2020, 2022년 매출액 규모범주가 다름

자료: 1)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0). 「201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130.
2)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2). 「202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213.
3)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4).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324-325.

- 장애인기업의 조직형태 비율은 개인사업체가 83.9%, 회사법인이 16.1%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회사법인의 비율은 증가 추이를 보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87.1%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45.9%가 회사법인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개인사업체의 비율이 회사법인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5억원 이하에서 개인사업체 비율이 대다수이고, 5억원 이상에서는 회사법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표 6-4-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단위: %)

구분			2018			2020		2022	
			단독 사업체	다수 사업체	모름/ 무응답	단독 사업체	다수 사업체	단독 사업체	다수 사업체
전 체			78.9	9.0	12.2	97.6	2.4	96.5	3.5
규모별		소상공인	74.3	10.3	15.4	98.2	1.8	96.6	3.4
		중소기업	82.8	7.8	9.4	92.1	7.9	95.4	4.6
업종별		제조업	79.2	12.1	8.7	96.6	3.4	97.2	2.8
		도매 및 소매업	68.8	8.3	22.9	97.4	2.6	98.2	1.8
		숙박 및 음식점업	38.9	61.1	-	98.6	1.4	97.0	3.0
	개인 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4.9	5.0	10.1	95.2	4.8	92.3	7.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6.8	8.5	4.6	93.8	6.2	91.5	8.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6.6	-	13.4	99.3	0.7	98.7	1.3
	기타	건설업	86.2	5.0	8.8	96.2	3.8	94.1	5.9
		정보통신업	77.6	8.2	14.2	92.6	7.4	93.4	6.6
		부동산업	61.5	7.7	30.8	98.3	1.7	95.6	4.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6.3	6.3	7.3	94.4	5.6	95.7	4.3
		교육 서비스업	66.7	33.3	-	96.7	3.3	91.0	9.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3.5	-	16.5	99.3	0.7	99.2	0.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	-	-	99.7	0.3	90.8	9.2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92.1	3.3	4.5	-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5.5	2.4	2.1	-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73.1	14.8	12.1	-	-	-	-
		5억원 이상	78.2	8.3	13.5	-	-	-	-
		5억원 이하	-	-	-	98.3	1.7	-	-
		5 ~ 10억원 이하	-	-	-	96.4	3.6	-	-
		10 ~ 50억원 이하	-	-	-	93.2	6.8	-	-
		50 ~ 100억원 이하	-	-	-	91.1	8.9	-	-
		100 ~ 300억원 이하	-	-	-	85.3	14.7	-	-
		300억원 초과	-	-	-	79.3	20.7	-	-
		5천만원 미만	-	-	-	-	-	96.6	3.4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	96.4	3.6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	-	-	96.8	3.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	-	-	96.3	3.7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	-	-	-	95.4	4.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	-	-	94.5	5.5
		100억원 이상	-	-	-	-	-	93.1	6.9

주: 1) 각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기업 비율은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비율임
3) 2018, 2020, 2022년 매출액 규모범주가 다름

자료: 1)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0). 「201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131.
2)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2). 「202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214.
3)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4).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221.

- 장애인기업의 사업체 유형은 단독사업체가 96.5%이며, 다수사업체가 3.5%임
  • 장애인기업의 사업체 유형은 규모, 업종 및 전체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체의 비율이 다수사업체 비율보다 높음

(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표 6-4-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단위: 명, %)

구분			2018			2020			2022		
			전체	장애인 종사자	장애인 종사자 비율	전체	장애인 종사자	장애인 종사자 비율	전체	장애인 종사자	장애인 종사자 비율
전 체			332,183	102,362	30.8	402,232	120,683	30.0	544,840	175,581	32.2
규모별		소상공인	206,615	93,971	45.5	267,726	108,614	40.6	345,576	151,879	43.9
		중소기업	125,568	8,392	6.7	134,505	12,069	9.0	199,264	23,701	11.9
업종별		제조업	71,401	17,556	24.6	109,654	22,428	20.5	126,628	28,636	22.6
		도매 및 소매업	66,743	31,344	47.0	90,398	35,275	39.0	118,787	51,846	43.6
		숙박 및 음식점업	52,614	20,674	39.3	58,058	23,208	40.0	66,818	24,954	37.3
	개인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38	298	14.6	2,392	379	15.8	2,989	603	2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576	2,086	18.0	14,505	3,029	20.9	20,953	5,642	26.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360	9,907	54.0	20,671	10,928	52.9	23,343	12,710	54.4
	기타	건설업	50,538	5,145	10.2	47,171	6,689	14.2	99,944	22,544	22.6
		정보통신업	3,183	627	19.7	4,542	957	21.1	11,438	2,552	22.3
		부동산업	9,300	4,086	43.9	11,507	5,023	43.6	18,256	7,549	4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2,889	2,569	11.2	16,274	2,973	18.3	25,182	5,952	23.6
		교육 서비스업	5,824	2,028	34.8	7,137	2,394	33.5	7,156	2,762	38.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385	1,503	16.0	9,913	2,207	22.3	8,763	3,369	38.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332	4,538	54.5	10,010	5,193	51.9	14,583	6,462	44.3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71,254	42,703	59.9	-	-	-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2,494	20,850	49.1	-	-	-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72,838	24,858	34.1	-	-	-	-	-	-
		5억원 이상	145,597	13,950	9.6	-	-	-	-	-	-
		5억원 이하	-	-	-	226,280	98,893	43.7	-	-	-
		5 ~ 10억원 이하	-	-	-	52,758	10,085	19.1	-	-	-
		10 ~ 50억원 이하	-	-	-	100,675	9,989	9.9	-	-	-
		50 ~ 100억원 이하	-	-	-	18,533	1,428	7.7	-	-	-
		100 ~ 300억원 이하	-	-	-	3,975	284	7.1	-	-	-
		300억원 초과	-	-	-	10	3	33.3	-	-	-
		5천만원 미만	-	-	-	-	-	-	122,679	70,161	57.2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	-	56,091	25,058	44.7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	-	-	-	164,972	51,153	31.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	-	-	-	63,273	13,193	20.9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	-	-	-	-	109,153	13,092	12.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	-	-	-	23,406	1,680	7.2
		100억원 이상	-	-	-	-	-	-	5,265	1,243	23.6

주: 1) 각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종사자 수와 비율은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비율임
3) 2018, 2020, 2022년 매출액 규모범주가 다름

자료: 1)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0). 「201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142.
2)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2). 「202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256.
3)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4).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246.

- 장애인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544,840명이며, 그중 장애인 종사자 수는 175,581명으로 32.2%를 차지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장애인 종사자 비율이 43.9%로 거의 절반 가까이 장애인 종사자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11.9%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54.4%로 가장 높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4.3%, 부동산업 41.4% 등의 순임
  - 전체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원 미만부터 100억 미만까지는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종사자 비율이 줄어드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장애인 종사자 비율이 23.6%로 높게 나타남

5) 취업 관련 활동 경험

(1) 취업 관련 활동 경험 현황

〈표 6-5-1〉 지난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단위: %)

구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남성	여성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1. 인터넷을 통한 채용, 창업정보 탐색	5.2	7.1	7.7	7.3	5.5	5.4	5.6	4.5	6.2
2. 신문, 취업정보지 등을 통해 채용, 창업정보 탐색	2.9	3.5	4.3	3.9	2.6	2.9	2.1	1.6	3.4
3. 공공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취업알선	5.1	5.3	8.4	8.4	4.3	3.7	6.2	6.8	3.2
4. 국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근로	4.4	5.6	6.8	4.0	4.4	4.1	5.2	8.3	2.6
5. 민간 취업알선업체 구직등록, 취업알선	3.5	2.6	3.7	3.9	2.5	2.7	1.8	2.2	2.6
6. 주변 지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취업 부탁	12.5	12.9	15.7	14.5	10.4	9.5	13.1	12.5	9.4
7. 직접 일자리에 채용 문의	4.9	4.7	4.2	4.3	2.4	2.4	2.5	1.1	3.0
8. 다른 일자리에 이력서 제출	1.6	1.5	1.2	1.6	0.8	0.7	1.1	0.5	0.9
9. 다른 일자리의 면접 참여	1.2	1.4	1.2	1.7	0.4	0.4	0.3	0.2	0.4
10. 공공/민간/사업체/학교 직업교육훈련 참여	0.5	0.8	0.5	0.3	0.2	0.1	0.3	0.1	0.2
11. 사설학원 외국어, 자격 취득, 채용시험 등 준비	0.1	0.3	0.3	0.2	0.2	0.1	0.3	0.1	0.2
12. 자격증 취득 준비	1.2	0.7	0.8	0.8	0.8	0.8	1.0	0.7	0.9
13. 일자리에서의 현장실습이나 인턴	0.2	0.5	0.3	0.1	0.2	0.2	0.3	0.1	0.3
14. 채용시험 준비	0.2	0.3	0.7	0.1	0.3	0.1	0.6	0.1	0.4
15. 창업을 위한 활동	0.4	2.1	1.6	1.6	1.8	1.7	2.1	1.9	1.8
16. 장애인 자립, 창업 자금 등 지원, 융자	0.4	0.4	0.4	0.1	0.3	0.3	0.2	0.2	0.3
17. 기타	0.1	0.1	0.0	0.1	0.0	0.0	0.0	0.0	0.0

주: 1) 3, 4, 5, 6, 7, 15는 지난조사 이후 구직경험이 없는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응답 받음
2) 8, 9는 취업자에게 응답 받음
3) "활동 경험 비율"은 모름/응답거절을 포함하여 산출
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자료: 장애인고용공단(2024).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8차조사)」 p190, 354.

- 전체 장애인 중 지난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은 '주변 지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취업 부탁'이 10.4%로 가장 높으며, '인터넷을 통한 채용, 창업정보 탐색' 5.5%, '국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근로' 4.4% 등의 순임

(2) 직업교육훈련 경험

〈표 6-5-2〉 지난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단위: %)

구 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남성	여성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험 횟수	1회	99.4	93.8	97.9	95.0	92.4	90.2	94.0	100.0	86.2
	2회 이상	0.6	6.2	2.1	5.0	7.6	9.8	6.0	0.0	13.8
종류	일반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	9.6	13.2	15.8	10.6	5.7	13.1	0.0	0.0	9.8
	장애인 전문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	48.6	8.3	59.1	13.8	28.6	28.3	28.9	40.2	20.4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	4.5	24.2	4.9	24.3	12.2	17.7	8.0	20.7	6.2
	장애인 전문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	10.6	14.4	8.7	0.0	18.2	4.3	28.9	39.1	3.2
	회사의 업무능력 향상훈련	1.8	1.0	0.7	8.3	0.0	0.0	0.0	0.0	0.0
	학교 직업교육훈련	7.8	4.7	3.4	3.1	3.9	8.9	0.0	0.0	6.6
	사설학원 교육훈련	9.9	12.7	0.2	37.8	9.4	20.3	1.0	0.0	16.1
	기타	0.8	0.1	2.8	0.0	0.0	0.0	0.0	0.0	0.0
	모름/응답거절	6.4	21.4	4.3	2.1	21.9	7.4	33.3	0.0	37.6
분야	농림어업, 광업 분야	1.4	0.0	12.4	0.0	0.0	-	-	-	-
	섬유 분야	0.0	0.0	0.0	0.0	0.0	-	-	-	-
	기계장비 및 금속 분야	0.8	0.0	0.0	7.5	0.0	-	-	-	-
	건설 및 운송 분야	0.0	2.2	0.0	1.4	1.4	-	-	-	-
	전기 · 전자 분야	3.1	2.6	0.0	4.4	4.7	-	-	-	-
	컴퓨터 정보 · 통신 분야	17.1	20.2	9.4	14.2	18.2	-	-	-	-
	서비스 분야	27.6	42.1	17.0	34.3	39.2	-	-	-	-
	사무, 업무관리 분야	8.8	7.4	6.3	3.8	1.4	-	-	-	-
	의료 분야	38.0	16.5	6.9	0.0	4.3	-	-	-	-
	산업응용 분야	0.0	0.0	4.9	4.5	10.4	-	-	-	-
	공예 분야	0.0	0.6	0.0	0.0	0.0	-	-	-	-
	공무원 · 교원, 일반 입사 준비	0.0	0.4	0.0	0.0	0.0	-	-	-	-
	토익, 토플 등 외국어 학습	2.6	1.0	0.0	9.6	0.2	-	-	-	-
	기타	0.0	0.0	3.0	17.3	16.8	-	-	-	-
	모름/응답거절	0.7	7.0	40.1	3.0	3.2	-	-	-	-

주: 1)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및 성과"에서 '공공/민간/사업체/학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사설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받음
2) 경험횟수는 훈련자 수 기준이며, 훈련 종류 및 분야는 훈련 총 수 기준임
3)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자료: 장애인고용공단(2024).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8차조사) p197-198, 358

- 지난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장애인의 경험횟수 중 1회는 92.4%인 반면, 2회 이상은 7.6%로 현저히 낮음
- 지난조사 이후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종류를 보면, 장애인 전문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이 28.6%로 가장 높고, 모름 21.9%, 장애인 전문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이 18.2%순임
  - 사설학원 교육훈련의 경우 2022년 37.8%에서 2023년 9.4%로 28.4%p 감소하였고,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의 경우 2022년 24.3%에서 2023년 12.2%로 12.1%p 감소함. 반면, 장애인 전문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의 경우 2022년 13.8%에서 2023년 28.6%로 14.8%p 증가하였음
  - 지난조사 이후 경험한 직업훈련교육 분야의 경우 서비스 분야가 39.2%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정보 · 통신 분야가 18.2%, 기타분야가 16.8% 등의 순임
  - 서비스 분야의 경우 2022년 34.3%에서 2023년 39.2%로 4.9%p 증가하였고 기타의 경우 17.3%에서 16.8%로 0.5%p 감소한 반면, 컴퓨터 정보 · 통신 분야에서는 4.0% 증가함

6) 직업재활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 수	종사자 수		이용 장애인 수
		인원	시설 평균	
2015	560	3,133	5.6	16,414
2016	582	3,256	5.6	17,131
2017	625	3,732	6.0	17,841
2018	651	4,024	6.2	18,205
2019	683	4,362	6.4	19,056
2020	720	4,688	6.5	19,734
2021	773	5,021	6.5	20,504
2022	792	5,160	6.7	20,819
2023	811	5,338	6.6	21,225
서울	139	921	6.6	4,115
부산	43	236	5.5	1,188
대구	41	212	5.2	1,190
인천	41	270	6.6	1,059
광주	30	242	8.1	891
대전	34	197	5.8	848
울산	17	83	4.9	325
세종	8	51	6.4	199
경기	188	1,401	7.5	4,682
강원	40	197	4.9	719
충북	28	236	8.4	935
충남	28	212	7.6	783
전북	29	163	5.6	677
전남	24	146	6.1	562
경북	48	294	6.1	1,291
경남	62	330	5.3	1,352
제주	11	147	13.4	409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p5.

-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수, 종사자 수, 이용 장애인 수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시설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88개소로 가장 많으며 서울 139개소, 경남 62개소, 경북 48개소, 부산 43개소 순임
  - 시설 평균 종사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13.4명으로 가장 많으며, 충북 8.4명, 광주 8.1명 순임
  - 이용 장애인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4,682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4,115명, 경남 1,352명, 경북 1,291명 순임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합계	지적	자폐성	지체	정신	시각	뇌병변	청각	언어	뇌전증	기타
2016	계	17,131	12,582	986	1,258	930	539	434	290	42	38	32
		(100.0)	(73.4)	(5.8)	(7.3)	(5.4)	(3.1)	(2.5)	(1.7)	(0.2)	(0.2)	(0.2)
	근로 장애인	10,688	7,554	595	1,047	617	224	303	253	34	33	28
		(100.0)	(70.7)	(5.6)	(9.8)	(5.8)	(2.1)	(2.8)	(2.4)	(0.3)	(0.3)	(0.3)
	훈련 장애인	6,443	5,028	391	211	313	315	131	37	8	5	4
		(100.0)	(78.0)	(6.1)	(3.3)	(4.9)	(4.9)	(2.0)	(0.6)	(0.1)	(0.1)	(0.1)
2017	계	17,841	13,236	1,086	1,151	949	568	419	310	40	43	39
		(100.0)	(74.2)	(6.1)	(6.5)	(5.3)	(3.2)	(2.3)	(1.7)	(0.2)	(0.2)	(0.2)
	근로 장애인	11,286	8,108	668	966	638	234	296	274	33	33	36
		(100.0)	(71.8)	(5.9)	(8.6)	(5.7)	(2.1)	(2.6)	(2.4)	(0.3)	(0.3)	(0.3)
	훈련 장애인	6,555	5,128	418	185	311	334	123	36	7	10	3
		(100.0)	(78.2)	(6.4)	(2.8)	(4.7)	(5.1)	(1.9)	(0.5)	(0.1)	(0.2)	(0.0)
2018	계	18,205	13,642	1,220	1,073	894	523	432	301	48	39	33
		(100.0)	(74.9)	(6.7)	(5.9)	(4.9)	(2.9)	(2.4)	(1.7)	(0.3)	(0.2)	(0.2)
	근로 장애인	11,498	8,355	722	900	621	233	294	277	34	32	30
		(100.0)	(72.7)	(6.3)	(7.8)	(5.4)	(2.0)	(2.6)	(2.4)	(0.3)	(0.3)	(0.3)
	훈련 장애인	6,707	5,287	498	173	273	290	138	24	14	7	3
		(100.0)	(78.8)	(7.4)	(2.6)	(4.1)	(4.3)	(2.1)	(0.4)	(0.2)	(0.1)	(0.0)
2019	계	19,056	14,328	1,317	1,055	945	509	445	324	50	45	38
		(100.0)	(75.2)	(6.9)	(5.5)	(5.0)	(2.7)	(2.3)	(1.7)	(0.3)	(0.2)	(0.2)
	근로 장애인	12,088	8,797	807	888	664	242	300	289	37	36	28
		(100.0)	(72.8)	(6.7)	(7.3)	(5.5)	(2.0)	(2.5)	(2.4)	(0.3)	(0.3)	(0.2)
	훈련 장애인	6,968	5,531	510	167	281	267	145	35	13	9	10
		(100.0)	(79.4)	(7.3)	(2.4)	(4.0)	(3.8)	(2.1)	(0.5)	(0.2)	(0.1)	(0.1)
2020	계	19,734	14,815	1,073	940	1,427	502	470	365	46	48	48
		(100)	(75.1)	(5.4)	(4.8)	(7.2)	(2.5)	(2.4)	(1.8)	(0.2)	(0.2)	(0.2)
	근로 장애인	12,712	9,251	905	682	854	261	320	329	33	40	37
		(100)	(72.8)	(7.1)	(5.4)	(6.7)	(2.1)	(2.5)	(2.6)	(0.3)	(0.3)	(0.3)
	훈련 장애인	7,022	5,564	168	258	573	241	150	36	130	8	11
		(100)	(79.2)	(2.4)	(3.7)	(8.2)	(3.4)	(2.1)	(0.5)	(1.9)	(0.1)	(0.2)
2021	계	20,504	15,421	1,072	952	1,534	490	489	400	43	56	47
		(100)	(75.2)	(5.2)	(4.6)	(7.5)	(2.4)	(2.4)	(2)	(0.2)	(0.3)	(0.2)
	근로 장애인	13,600	9,954	924	686	962	247	346	363	31	48	39
		(100)	(73.2)	(6.8)	(5)	(7.1)	(1.8)	(2.5)	(2.7)	(0.2)	(0.4)	(0.3)
	훈련 장애인	6,904	5,467	148	266	572	243	143	37	12	8	8
		(100)	(79.2)	(2.1)	(3.9)	(8.3)	(3.5)	(2.1)	(0.5)	(0.2)	(0.1)	(0.1)
2022	계	20,819	15,588	1,023	986	1,615	498	492	397	48	61	116
		(100)	(74.9)	(4.9)	(4.7)	(7.8)	(2.4)	(2.4)	(1.9)	(0.2)	(0.3)	(0.6)
	근로 장애인	14,228	10,441	888	712	1,050	257	352	352	36	51	89
		(100)	(73.4)	(6.2)	(5)	(7.4)	(1.8)	(2.5)	(2.5)	(0.3)	(0.4)	(0.6)
	훈련 장애인	6,591	5,147	135	274	565	241	140	45	12	10	27
		(100)	(78.1)	(2.0)	(4.2)	(8.6)	(3.7)	(2.1)	(0.7)	(0.2)	(0.2)	(0.4)

주: 장애유형 중 기타에는 신장, 안면, 심장, 장루·요루, 간, 호흡기 장애인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p4.

- 2021년 대비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20,504명에서 20,819명으로 소폭 상승함
  - 장애유형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률은 지적 장애인이 74.9%로 가장 높으며, 자폐성 장애인 7.8%, 지체 장애인 4.9%, 정신 장애인 4.7% 순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근로장애인이 14,228명, 훈련장애인이 6,591명으로 나타남

〈표 6-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 시설유형별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증감	전년대비증감
						수치	비율
전체시설	근로장애인임금	617	527	542	648	106	19.6
	훈련장애인수당	97	104	90	94	4	4.4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임금	1,160	1,172	1,206	1,255	49	4.1
	훈련장애인수당	181	166	80	184	104	130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임금	464	456	518	498	△20	△3.9
	훈련장애인수당	100	104	92	99	7	7.6
직업적응훈련시설	훈련장애인수당	13	4	4.9	47	42.1	859.2

주: 1) 월 평균 임금 및 수당 계산 시 임금을 받지 않는 이용장애인 제외
2)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임금 및 수당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2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p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체 근로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648천원이며, 근로사업장은 1,255천원, 보호작업장은 498천원임. 반면, 전체 훈련장애인의 월 평균수당은 94천원이며, 근로사업장은 184천원, 보호사업장은 99천원, 훈련시설은 47천원임
  - 시설유형에 따라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임금 및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며, 근로작업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보호작업장, 훈련시설 순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나뉨
-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
-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
-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직업적응훈련시설은 2015.12.31.자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형 시설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9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Ⅲ권.

(2)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표 6-6-4〉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 일자리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연도	2020	22,609	8,150	12,781	1,678
	2021	24,773	9,233	13,724	1,816
	2022	30,330	11,250	16,816	2,264
	2023	32,446	12,166	17,890	2,390
		(109.8)	(105.7)	(113.3)	(106.8)
성별	남	18,281	6,736	10,104	1,441
	여	14,165	5,430	7,786	949
연령별	29세 이하	5,237	1,552	3,062	623
	39세 이하	4,042	1,766	1,812	464
	49세 이하	3,656	1,875	1,550	231
	59세 이하	4,433	2,480	1,716	237
	65세 미만	2,817	1,546	1,103	168
	65세 이상	12,261	2,947	8,647	667
장애유형	지체장애	11,060	5,163	5,897	-
	뇌병변장애	2,638	1,263	1,375	-
	시각장애	3,367	899	1,251	1,217
	청각장애	2,657	926	1,731	-
	언어장애	234	104	130	-
	안면장애	30	23	7	-
	신장장애	744	443	301	-
	심장장애	61	39	22	-
	호흡기장애	91	66	25	-
	간장애	91	44	47	-
	장루·요루장애	117	62	55	-
	뇌전증(간질)장애	128	70	58	-
	지적장애	8,588	2,218	5,256	1,114
	자폐성장애	672	187	426	59
	정신장애	1,934	659	1,275	-
	기타(특수교육대상)	34	-	34	-
장애정도	심한	20,493	7,214	11,046	2,233
	심하지 않은	11,919	4,952	6,810	157
	등급 외	34	-	34	-
지역	서울	4,183	1,968	1,918	297
	부산	2,022	942	912	168
	대구	1,318	513	639	166
	인천	1,107	517	396	194
	광주	1,391	526	706	159
	대전	1,162	301	619	242
	울산	786	293	386	107
	세종	165	74	89	2
	경기	4,994	2,035	2,736	223
	강원	1,511	603	837	71
	충북	1,630	496	1,023	111
	충남	1,803	800	907	96
	전북	1,697	604	949	144
	전남	2,535	606	1,806	123
	경북	2,694	847	1,783	64
	경남	2,252	920	1,152	180
	제주	1,196	121	1,032	43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 )는 참여율(배정인원 대비 참여자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은 32,446명으로 참여율은 109.8%임. 일자리 유형별로는 '복지일자리'의 참여인원이 17,890명(참여율 113.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형일자리' 12,166명, '특화형일자리' 2,390명 순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는 매해 증가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참여인원은 남성이 18,281명으로 여성 14,165명 보다 더 많으며, 모든 일자리 유형에서 남성의 참여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참여인원은 65세 이상이 12,261명으로 가장 많고, 29세 이하 5,237명, 59세 이하 4,433명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참여인원은 지체장애가 11,060명으로 가장 많고, 지적장애 8,588명, 시각장애 3,367명 등의 순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참여인원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가 20,493명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1,919명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참여인원은 경기가 4,99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183명, 경북 2,694명, 전남 2,535명 등의 순임

장애인일자리사업은?(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사업내용
  - 일반형일자리: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직무형태로는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직업재활 시설지원 요원이 있음
  - 복지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미취업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직무형태로는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이 있음
  - 특화형일자리: 미취업 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직무형태로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음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및 지원자 수

〈표 6-6-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구분		계	직업 재활센터	직업 평가센터	장애인 단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직업적응 훈련기관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관	직업재활 프로그램 수행기관	현장중심 직업재활 센터
						직업 훈련시설	작업 활동시설	보호 작업시설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연도	2008	182	34	6	32	8	29	43	–	10	12	8	–
	2009	184	34	6	32	8	29	43	–	10	12	10	–
	2010	186	34	6	32	8	29	43	–	10	14	10	–
	2011	186	34	6	32	8	28	43	–	10	15	10	–
	2012	190	34	6	32	8	28	43	–	10	19	10	–
	2013	192	34	6	32	8	–	43	–	10	21	10	–
	2014	191	34	6	32	–	–	88	–	–	21	10	–
	2015	185	34	6	32	–	–	83	–	–	21	9	–
	2016	176	34	6	32	–	–	75	–	–	20	9	–
	2017	176	34	6	32	–	–	74	1	–	20	9	–
	2018	177	34	6	30	–	–	74	1	–	20	5	7
	2019	161	33	6	30	–	–	73	1	–	–	5	13
	2020	166	33	6	30	–	–	73	1	–	–	5	18
	2021	171	33	6	30	–	–	71	3	–	–	5	23
	2022	167	31	6	30	–	–	71	3	–	–	4	22
	2023	171	33	6	30	–	–	73	1	–	–	5	23
지역	서울	47	11	1	13	–	–	20	–	–	–	–	2
	부산	10	2	1	2	–	–	4	–	–	–	–	1
	대구	9	1	1	2	–	–	4	–	–	–	1	–
	인천	7	–	–	1	–	–	4	–	–	–	–	2
	광주	9	1	1	–	–	–	4	–	–	–	2	1
	대전	6	1	–	1	–	–	2	–	–	–	–	2
	울산	3	1	–	1	–	–	1	–	–	–	–	–
	세종	1	1	–	–	–	–	–	–	–	–	–	–
	경기	25	4	1	3	–	–	11	1	–	–	1	4
	강원	4	1	–	–	–	–	3	–	–	–	–	–
	충북	6	2	–	–	–	–	4	–	–	–	–	–
	충남	5	1	–	1	–	–	1	–	–	–	–	2
	전북	5	2	–	1	–	–	2	–	–	–	–	–
	전남	9	2	–	–	–	–	2	–	–	–	–	5
	경북	13	1	1	2	–	–	8	–	–	–	–	1
	경남	10	1	–	2	–	–	3	–	–	–	1	3
	제주	2	1	–	1	–	–	–	–	–	–	–	–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2018년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추가됨
3) 2019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지원고용의 고용노동부 이관으로 인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전체 수행기관 수는 171개소이며, 기관유형별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73개소, 직업재활센터 33개소, 장애인단체 30개소,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23개소 등의 순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행기관 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수행기관 수는 서울이 47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 25개소, 경북 13개소, 경남과 부산 10개소 등의 순임

〈표 6-6-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의 사업별 지원자 수 - 연도별, 사업별

(단위: 명)

구분		계	구인등록	구직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취업확정	적응지도	지원고용		적응훈련		
									계	취업	계	수료	취업
연도	2008	96,371	13,336	32,671	13,167	11,471	4,846	18,145	905	498	1,830	719	173
	2009	98,949	15,820	35,251	11,756	12,604	5,385	14,573	948	552	2,612	1,024	287
	2010	98,915	16,179	31,576	12,750	13,884	5,500	15,017	1,195	690	2,814	752	300
	2011	97,037	16,388	32,823	16,054	10,182	6,067	10,441	1,342	676	3,740	1,473	554
	2012	96,125	16,559	31,041	16,282	10,526	6,312	10,253	1,497	807	3,655	1,340	481
	2013	99,071	14,878	32,731	17,739	11,423	6,571	10,406	1,524	920	3,799	754	504
	2014	90,072	11,958	32,205	15,116	9,309	6,780	9,463	1,155	609	4,086	1,089	318
	2015	89,958	12,047	30,300	15,670	9,525	6,909	9,608	1,313	638	4,586	908	405
	2016	90,028	12,365	28,900	17,065	9,089	7,001	9,889	1,442	777	4,277	933	455
	2017	79,404	10,927	25,046	13,574	8,213	6,462	9,474	1,190	507	4,518	599	322
	2018	82,890	11,644	25,464	14,005	9,009	7,102	10,104	957	444	4,605	568	356
	2019	82,911	11,864	25,662	14,270	9,179	7,236	10,294	-	-	4,406	350	822
	2020	57,509	9,281	17,166	7,897	6,788	4,925	8,095	-	-	3,357	116	311
	2021	59,954	9,676	17,469	8,547	6,926	5,073	8,134	-	-	4,129	205	388
	2022	55,870	9,162	16,361	7,385	6,782	5,268	6,718	-	-	4,194	247	311
	2023	56,153	9,400	17,160	5,726	7,180	5,560	7,176	-	-	3,951	1,292	191
지역	서울	18,133	3,634	5,056	1,432	2,533	1,942	2,471	-	-	1,065	347	53
	부산	2,750	303	1,014	395	329	222	245	-	-	242	77	14
	대구	3,692	630	1,415	567	356	209	347	-	-	168	49	14
	인천	1,280	239	355	143	162	112	120	-	-	149	51	5
	광주	2,549	475	884	452	163	161	243	-	-	171	48	16
	대전	2,447	430	684	206	452	238	293	-	-	144	51	3
	울산	1,327	253	395	26	241	179	180	-	-	53	19	1
	세종	166	27	64	12	15	19	18	-	-	11	4	-
	경기	7,094	863	2,492	803	952	628	789	-	-	567	194	19
	강원	1,116	188	244	78	155	131	206	-	-	114	38	5
	충북	2,107	217	504	125	290	313	399	-	-	259	87	10
	충남	1,271	203	282	201	152	149	178	-	-	106	35	5
	전북	2,241	354	658	124	341	317	319	-	-	128	41	7
	전남	3,067	719	828	263	340	330	368	-	-	219	63	19
	경북	3,201	403	1,193	544	284	217	270	-	-	290	103	6
	경남	2,467	326	700	283	294	276	369	-	-	219	72	10
	제주	1,245	136	392	72	121	117	361	-	-	46	13	4

주: 2023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지원자 수는 56,15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사업 내용별로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구직상담으로, 2023년 기준 총 17,160명이 구직상담을 지원 받음
  - 한편 취업이 확정된 지원자는 2023년 기준 5,56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이란?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출처: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통합관리 시스템(https://vr.koddi.or.kr))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표 6-6-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		국가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2007	155,702	–	48,158	–	1,153	–	30,454	–	44,513	–	32,577	–
2008	132,016	–	41,950	–	1,927	–	39,063	–	30,119	–	20,884	–
2009	165,811	–	44,153	–	3,576	–	56,113	–	39,545	–	26,000	–
2010	190,179	–	28,018	–	670	–	71,250	–	42,584	–	48,327	–
2011	235,808	0.55	45,780	0.47	1,288	1.06	59,286	0.53	50,672	1.19	80,070	0.46
2012	251,828	0.49	52,437	0.62	979	0.89	52,864	0.40	37,361	0.68	109,166	0.62
2013	295,836	0.72	40,144	0.62	1,563	1.12	84,422	0.71	36,814	0.68	134,456	0.76
2014	352,998	0.91	59,541	1.06	1,729	1.27	90,416	0.83	34,299	0.72	168,742	0.97
2015	464,046	1.02	74,709	1.10	2,569	1.36	97,124	0.80	43,740	0.89	248,473	1.15
2016	531,214	1.13	96,447	1.41	4,384	2.37	111,123	0.90	46,307	0.89	277,337	1.23
2017	538,701	1.01	107,893	1.17	1,822	1.12	87,860	0.76	49,198	0.81	293,750	1.11
2018	575,701	1.07	111,662	1.18	2,370	1.36	105,712	0.85	51,018	0.80	307,308	1.21
2019	641,720	1.14	126,506	1.32	2,695	1.45	131,979	0.92	65,006	0.93	318,229	1.25
2020	702,391	1.12	137,521	1.21	2,521	1.18	150,340	0.92	73,230	1.11	341,300	1.20
2021	704,391	0.99	131,670	0.76	2,506	1.26	164,282	0.98	75,914	1.06	332,525	1.10
2022	700,537	1.01	126,036	0.92	2,660	1.61	155,893	0.89	86,717	0.96	331,891	1.13
2023	761,370	1.07	114,324	0.88	2,717	2.44	175,210	0.91	104,805	1.08	367,031	1.24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우선구매율은 총 구매액 대비 우선구매액의 비율을 의미함
3) 2010년 까지는 18개 품목별 우선구매, 2011년부터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0% 이상의 우선구매를 의무화 함
4) 보건복지부는 본부 구매실적에 한함(소속 및 산하기관 제외)
5) 합계는 보건복지부 구매실적이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370백만원이고, 우선구매율은 1.07%로 의무구매비율인 1.0%를 지킨 것으로 나타남. 기관유형별로 우선구매율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교육청', '공기업 등'은 각각 2.44%, 1.08%, 1.24%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구매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우선구매율은 2015년에 1.0%를 초과 달성한 이후 202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의무구매비율인 1.0%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3조)

〈표 6-6-8〉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2022) - 지역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연도	2016	87,581	0.83	13,425	0.47	74,157	0.96
	2017	87,860	0.76	13,983	0.50	73,877	0.84
	2018	105,712	0.85	16,328	0.57	89,384	0.93
	2019	131,979	0.92	22,069	0.70	109,910	0.98
	2020	150,340	0.92	25,016	0.69	125,325	0.98
	2021	164,281	0.98	26,473	0.72	137,808	1.05
	2022	155,893	0.89	24,597	0.68	131,296	0.95
	2023	175,210	0.91	29,030	0.74	146,180	0.96
지역	서울	26,316	1.20	9,374	1.13	16,941	1.24
	부산	3,848	0.68	1,171	0.67	2,677	0.69
	대구	2,998	0.69	584	0.33	2,414	0.94
	인천	9,441	1.43	1,646	0.75	7,796	1.76
	광주	2,520	1.14	407	0.52	2,113	1.47
	대전	1,853	0.68	948	0.72	905	0.64
	울산	3,806	1.14	903	0.76	2,903	1.36
	세종	903	0.61	903	0.61	-	-
	경기	43,661	1.22	1,842	0.54	41,818	1.30
	강원	5,696	0.43	682	0.44	5,014	0.43
	충북	4,948	0.69	473	0.42	4,475	0.73
	충남	17,658	1.43	506	0.30	17,152	1.61
	전북	6,758	0.79	263	0.23	6,495	0.88
	전남	6,043	0.41	754	0.33	5,289	0.42
	경북	7,923	0.48	1,046	0.44	6,877	0.48
	경남	7,682	0.53	919	0.54	6,763	0.53
	제주	3,839	1.20	2,175	1.20	1,664	1.19

주: 1) 각년도별 12월 말 기준
2) 우선구매율은 총 구매액 대비 우선구매액의 비율을 의미함
3) 2010년 까지는 18개 품목별 우선구매, 2011년부터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0% 이상의 우선구매를 의무화 함
자료: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p3.

- 2023년 지자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175,210백만원이고, 우선구매율은 0.91%로 의무구매비율인 1.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구매율이 0.96%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구매율이 0.74%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우선구매액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우선구매율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우선구매율을 살펴보면, 충남이 1.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세종과 전남이 각각 0.4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17개 시도 중 7개 지역(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제주)은 우선구매비율(1.0%)을 초과 달성하였고, 그 외 지역은 달성하지 못함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 6-6-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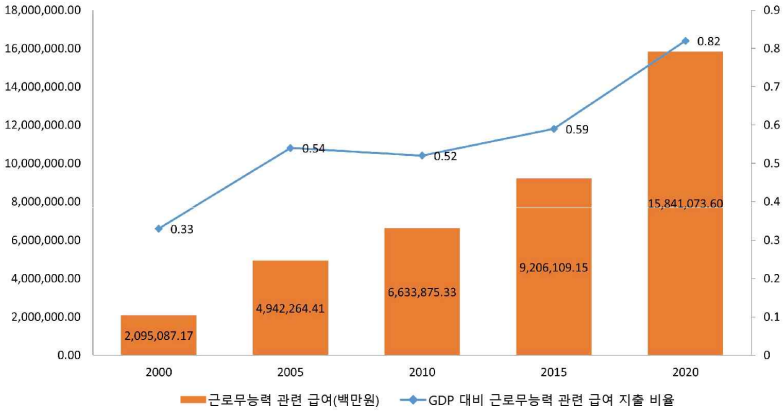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근로사업장	보호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연도	2009	153	22	108	23	-
	2010	196	28	130	38	-
	2011	260	34	178	48	-
	2012	352	48	213	91	-
	2013	379	49	227	103	-
	2014	402	53	246	103	-
	2015	417	54	253	110	-
	2016	492	55	304	133	-
	2017	544	56	333	149	6
	2018	580	57	375	142	6
	2019	630	57	406	161	6
	2020	674	59	437	171	7
	2021	722	61	469	185	7
	2022	762	63	504	187	8
	2023	790	58	529	195	8
지역	서울	119	6	82	27	4
	부산	39	1	20	18	-
	대구	37	5	27	5	-
	인천	45	3	31	10	1
	광주	32	5	17	10	-
	대전	20	2	15	3	-
	울산	14	1	12	1	-
	세종	14	1	6	6	1
	경기	209	13	120	75	1
	강원	35	3	29	3	-
	충북	30	1	25	4	-
	충남	36	1	25	10	-
	전북	35	2	22	11	-
	전남	26	2	19	5	-
	경북	35	2	31	2	-
	경남	52	6	42	4	-
	제주	12	4	6	1	1

주: 1) 각 년도별 12월 말 기준
2)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2항3호에 근거하여 2014년 11월부터 포함됨(자료의 한계상 해당 표에는 2017년부터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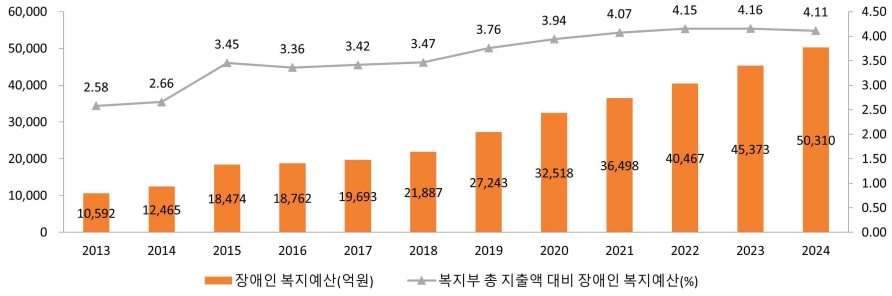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790개소로, 시설유형별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이 529개소로 가장 많고, '장애인복지단체' 19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 58개소,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8개소가 있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는 경기가 209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119개소, 경남 52개소, 인천 44개소 등의 순임

7. 재정

[그림 2-7-1]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그림 2-7-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 및 장애인복지예산



- 2020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은 15조 8,410억 7,360만원으로 GDP대비 0.82%임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은 2000년 0.32%에서 2009년 0.57%로 증가하였음. 2010년에는 0.48%로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0년 0.77%로 증가함
- 2024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액은 50,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37억원 증가함
  - 2024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4.11%로 전년(4.16%) 대비 소폭 감소함

1) 재정

(1) 장애인 복지 예산

〈표 7-1-1〉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 연도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백만원)	2,095,087.2	2,509,898.7	2,989,397.7	3,586,354.8	4,485,395.5	4,942,264.4	5,520,371.3
비율	0.32	0.36	0.38	0.43	0.49	0.52	0.55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백만원)	6,009,966.9	6,672,889.0	7,104,927.1	6,633,875.3	7,245,329.5	7,916,354.9	8,097,000.4
비율	0.55	0.58	0.59	0.50	0.52	0.55	0.54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백만원)	8,314,408.4	9,206,109.2	9,750,760.6	11,019,111.2	12,168,501.5	13,629,452.3	15,841,073.6
비율	0.53	0.56	0.56	0.60	0.64	0.71	0.82

주: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은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s)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합한 수치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SOCX) Database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검색일: 2024.9.27.)

- 2020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는 15조 8,410억 7,360만원으로 GDP대비 0.82%임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은 2000년 0.32%에서 2009년 0.57%로 증가하였음. 2010년에는 0.48%로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0년 0.77%로 증가함

※ OECD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SOCX) (출처: SOCX - Country Notes: Korea)
- OECD 사회지출(SOCX)에서 한국의 사회지출은 크게 노령(old age), 유족(survivors),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 related benefits), 보건(health), 가족(family),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our market programmes), 실업(unemployment), 주거(housing), 기타 사회정책 영역(other social policy areas)로 구분됨
- 지출의 출처(2018년 이후)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제공하는 결산자료임
-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 related benefits)는 장애연금(국민연금), 장해급여(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산재보험), 휴업급여(산재보험),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됨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 연도별

(단위: 억원,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 규모 (억원)	총 지출액(A)	410,673	468,995	534,725	558,436	576,628	631,554
	예산(B)	254,056	294,705	332,300	331,784	339,450	376,546
	기금	156,617	174,290	202,425	226,652	237,178	255,008
장애인 복지예산 (백만원)	총계(C)	1,059,206	1,246,530	1,847,392	1,876,213	1,969,345	2,188,659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040,472	1,227,238	1,826,750	1,856,284	1,949,184	2,167,865
	장애인재활지원	18,734	19,292	20,642	19,929	20,161	20,794
비율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A)	2.58	2.66	3.45	3.36	3.42	3.47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B)	4.17	4.23	5.56	5.65	5.80	5.81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 규모 (억원)	총 지출액(A)	725,148	825,269	895,766	974,767	1,091,830	1,223,779
	예산(B)	450,879	515,094	559,035	622,729	681,447	741,794
	기금	274,269	310,175	336,731	352,038	410,383	481,986
장애인 복지예산 (백만원)	총계(C)	2,724,292	3,251,800	3,649,788	4,046,710	4,537,284	5,031,048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및 재활지원	2,724,292	3,251,800	3,649,788	4,046,710	4,537,284	5,031,048
비율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A)	3.76	3.94	4.07	4.15	4.16	4.11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B)	6.04	6.31	6.53	6.50	6.66	6.78

주: 1)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액은 내부지출 및 보전지출을 제외한 기준이며,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장애인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 규모: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p.3.
2) 장애인복지예산: 2024년도 예산. 대한민국 국회. p.267, 270.

- 2024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액은 5조 310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37억 6,400만 원 증가함
  - 2024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4.11%로 전년 대비 0.04%p 감소함
  - 2024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6.78%로 전년 대비 0.12%p 증가함

(2)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표 7-1-3〉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단위: 백만원,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	694,582	814,074	937,649	1,026,274	1,271,434
증가액	-	119,492	123,575	88,625	245,160
증가율	-	17.2	15.2	9.5	23.9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1,881,636	1,909,078	2,067,026	2,221,333	2,782,493
증가액	610,202	27,442	101,869	154,307	561,160
증가율	48	4.4	5.2	7.5	25.3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3,276,229	3,678,543	4,085,394	4,544,688	5,041,387
증가액	493,736	402,314	406,851	459,294	496,699
증가율	17.7	12.3	11.1	11.2	10.9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감하는 예산 비율을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액(안)은 5조 413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66억 9,900만 원(10.9%) 증가함
  •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임

〈표 7-1-4〉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세부항목별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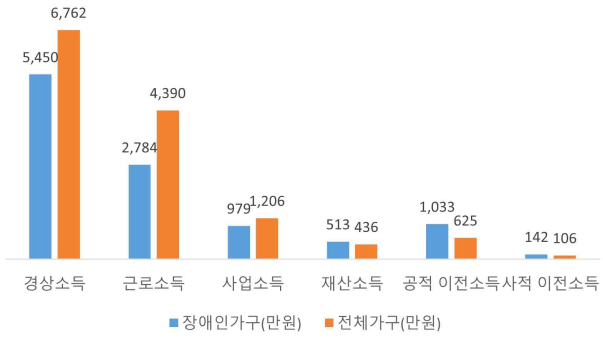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2024	증감액	증감률
합계	3,678,543	4,085,394	4,539,854	5,034,416	494,562	10.9
(일반회계) 계	3,649,971	4,062,222	4,532,630	5,024,272	491,642	10.8
장애수당(기초)	80,021	81,633	142,943	150,633	7,690	5.4
장애수당 (차상위 등)	57,314	60,785	72,054	68,518	△3,536	△4.9
장애정도심사 제도운영	34,740	38,821	42,684	43,805	1,121	2.6
장애인연금	829,084	832,631	878,663	893,157	14,494	1.6
장애인의료비	36,366	32,729	28,624	35,868	7,244	25.3
장애인실태조사	-	-	1,242	-	△1,242	△100.0
장애인보조기기지원	4,451	4,660	4,885	5,001	116	2.4
장애인지원관리	889	889	1,770	986	△784	△44.3
장애인자립자금지원	126	149	108	192	84	77.8
장애인활동지원	1,506,974	1,740,523	1,991,879	2,284,604	292,725	14.7
장애아동가족지원	117,326	149,151	175,706	194,047	18,341	10.4
여성장애인지원	2,744	2,764	2,513	2,544	31	1.2
발달장애인지원	152,352	208,017	256,886	357,738	100,852	39.3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7,631	35,476	26,415	28,732	2,317	8.8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580,436	622,396	634,600	669,549	34,949	5.5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9,212	9,602	10,390	10,995	605	5.8
장애인단체지원	7,338	7,338	7,660	6,843	△817	△10.7
장애인일자리지원	159,593	185,315	207,299	222,695	15,396	7.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6,668	8,918	7,325	9,432	2,107	28.8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4,902	4,367	5,621	4,962	△659	△11.7
장애인건강보건 관리사업	8,946	10,579	10,021	10,017	△4	△0.0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1,589	1,603	626	163	△463	△74.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19,115	21,428	19,551	19,911	360	1.8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촉진	1,971	2,268	2,405	2,720	315	13.1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	-	580	965	385	66.4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총액)	79	79	79	94	15	19.0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비총액)	104	101	101	101	-	-
(증진기금) 계	28,572	23,172	7,224	10,144	2,920	40.4
재활병원 건립	14,500	500	4,000	7,000	3,000	75.0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782	782	684	684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3,290	21,890	2,540	2,460	△80	△3.1

주: 증감액과 증감률은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을 비교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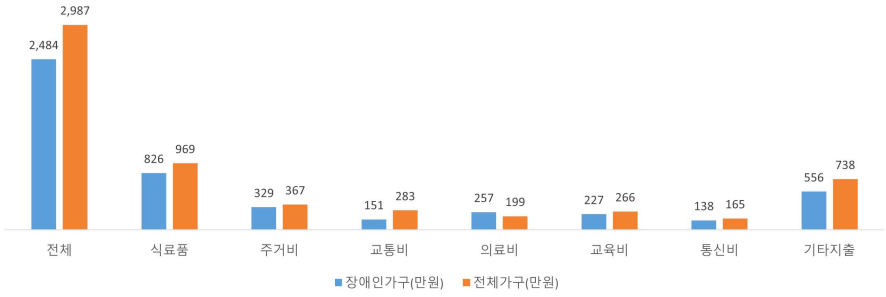
- 2024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세부항목 중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액이 2조 2,846억 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연금' 8,931억 5,7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695억 4,900만 원 등의 순임
- 2024년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배정된 30개의 항목 중 20개의 항목은 2023년 대비 예산이 증가하였고, 2개 항목은 유지, 8개의 항목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증감률을 살펴보면, '장애인자립자금지원'이 77.8%로 가장 높고, '재활병원 건립' 75.0%,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66.4% 등의 순임. 반면 2024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장애인실태조사'를 제외하고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이 △74.0%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장애인지원관리'의 감소율이 △44.3%로 높음

8. 소득과 소비

[그림 2-8-1]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전체가구 비교(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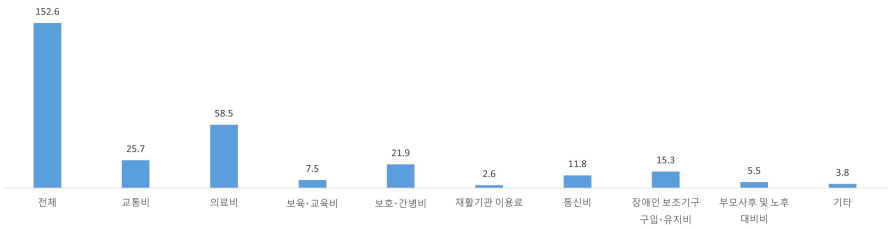
[그림 2-8-2]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전체가구 비교(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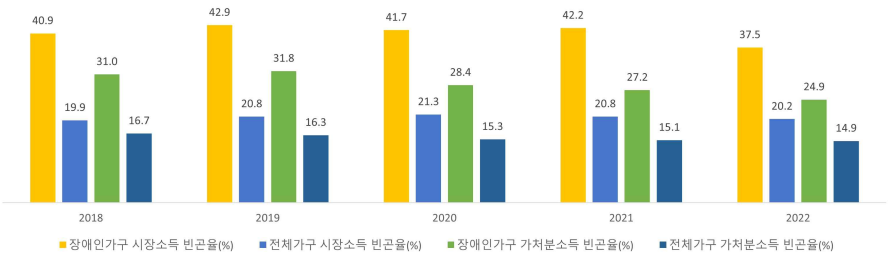
- 2022년 장애인가구 경상소득은 5,450만원으로 전체가구 6,762만원의 80.6% 수준임
- 장애인가구의 근로소득은 경상소득의 51.1%, 공적이전 소득은 1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가구는 각각 64.9%, 9.2%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가구가 전체가구에 비해 공적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보여줌

- 2022년 연간 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연평균 2,484만원으로 전체가구 2,987만원의 83.2% 수준임
  - 장애인가구는 전체 소비 지출액 중 의료비 지출 비율이 약 10.3%로 전체가구 약 6.7%에 비해 약 3.7%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8-3]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 비용(2020년)



[그림 2-8-4] 연도별 상대적 빈곤율 - 전체가구 비교



- 2020년 기준으로 월 평균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152.6천원으로 나타남
  -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비가 58.5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교통비 25.7천원, 보호·간병비 21.9천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5.3천원 등의 순임
- 2022년 기준 시장소득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37.5%로 전체가구 20.2% 보다 17.3%p 높게 나타나 전체가구에 비하여 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소득

(1) 월평균 가구소득

〈표 8-1-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총계	장애인가구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0	108.2	-	-	-	-	-	-	-	-	-	-	-	-	-	-	-
2005	157.2	-	-	-	-	-	-	-	-	-	-	-	-	-	-	-
2008	181.9	183.0	194.0	182.2	173.7	177.1	189.2	311.2	112.5	207.1	188.5	155.3	275.3	212.3	172.5	141.8
2011	198.2	204.4	179.4	198.2	185.6	227.1	215.8	297.7	148.1	230.2	181.1	208.2	243.7	108.0	128.4	148.0
2014	223.5	218.6	233.1	235.2	213.8	267.7	277.2	349.9	152.1	258.8	246.3	181.3	219.4	251.8	178.9	106.5
2017	242.1	243.2	227.7	239.9	209.2	310.9	294.0	435.6	180.4	251.4	283.4	239.3	376.3	428.3	209.4	304.5
2020	199.0	197.1	185.5	207.0	174.2	212.8	239.8	416.5	141.6	223.3	222.0	175.9	303.2	239.0	209.2	164.7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 장애인 실태조사」 p13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169.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1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18.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0.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0.
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0.

- 2020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199.0만원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가 416.5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간 장애 303.2만원, 지적장애 239.8만원, 안면장애 239.0만원 등의 순임
  - 이에 반해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장애유형은 정신장애 141.6만원, 뇌전증장애 164.7만원임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표 8-1-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전 이전소득
2020	4,986	2,469	912	454	1,010	142	6,180	3,855	1,135	432	657	101
2021	5,127	2,589	932	446	1,019	141	6,470	4,125	1,160	426	656	103
2022	5,450	2,784	979	513	1,033	142	6,762	4,390	1,206	436	625	106

주: 1)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2)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로서 봉급, 임금과 상여금
3)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자본이득) 및 실물자산소득(임대소득)
5)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장애수당 등
6) 사적이전소득: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및 민간회사나 교회,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사적인 생활비 보조금 등
7) 연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의미함
8)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된 자료임(등록장애인명부 연계 기준)
· 2023년부터 공적이전 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함(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2020년 자료부터 작성하여 제공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p23.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연간)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임
  - 전체가구는 2020년 6,180만원에서 2022년 6,762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임
  - 2022년 장애인가구 경상소득은 5,450만원으로 전체가구의 80.6% 수준에 불과함
  - 2022년 장애인가구의 근로소득은 경상소득의 51.1%, 공적이전 소득은 경상소득의 1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체가구는 각각 64.9%, 9.2%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가구가 전체가구에 비해 공적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보여줌

(3) 소득구간별 비중

〈표 8-1-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구간별 비중 - 연도별

(단위: %)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7,000만원 미만	7,000-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7,000만원 미만	7,000-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2020	100.0	9.8	33.5	19.5	13.3	12.4	11.6	100.0	6.0	23.9	21.2	16.5	16.5	15.9
2021	100.0	9	32.6	21.6	13	12.3	11.5	100.0	5.8	22.8	20.4	16.3	16.6	18.0
2022	100.0	8.6	31	19.3	14.7	13.3	13	100.0	5.2	21.6	19.8	16.4	17.0	20.0

주: 1) 연간 기준임
2)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된 자료임(등록장애인명부 연계 기준)
· 2023년부터 공적이전 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함(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2020년 자료부터 작성하여 제공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장애인가구: 통계청 KOSIS. (검색일: 2024.07.08):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특성별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전체가구: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2022년 기준 소득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39.6%가 3,0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분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0-3,0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는 2022년 장애인 가구의 31.0%(전체가구 21.6%)가 차지하고 있으며, 1,000만원 미만 구간에 8.6%(전체가구 5.2%)의 분포를 보여 장애인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구간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줌

2) 소비

(1) 월평균 가구지출

〈표 8-2-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지출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총계	장애인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0	98.9	-	-	-	-	-	-	-	-	-	-	-	-	-	-	-
2005	134.5	-	-	-	-	-	-	-	-	-	-	-	-	-	-	-
2008	155.5	156.3	160.6	158.7	146.7	147.8	166.8	263.8	95.4	179.1	168.4	137.2	248.6	189.0	151.1	125.8
2011	161.8	165.0	156.7	156.2	149.4	200.1	177.8	244.3	121.9	189.0	137.8	171.4	253.3	100.8	118.3	125.2
2014	170.6	165.9	182.1	166.7	164.9	199.3	215.1	310.9	122.0	207.2	198.5	148.0	209.5	212.3	154.2	102.0
2017	190.8	188.4	192.8	158.2	163.6	223.5	232.0	349.7	150.5	217.2	232.9	202.7	295.7	296.1	183.4	238.0
2020	178.5	176.2	181.4	180.4	150.2	188.9	220.0	338.8	134.0	207.6	201.3	153.5	239.9	180.0	176.9	154.8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 장애인 실태조사」 p13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169.
3)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1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18.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0.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0.
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0.

- 2020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199.0만원으로, 전체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2019년 6월 기준 385.6만원)의 51.6% 수준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가 416.5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간 장애 303.2만원, 지적장애 239.8만원, 안면장애 239.0만원 등의 순임
  - 이에 반해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장애유형은 정신장애 141.6만원, 뇌전증장애 164.7만원임

(2) 비목별 소비지출액

〈표 8-2-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지출	전체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지출
2016	2,015	594	269	184	228	202	140	397	2,473	709	304	317	162	260	172	550
2017	2,131	647	277	189	227	206	139	445	2,601	757	318	317	167	265	170	607
2018	2,205	670	279	183	236	214	133	491	2,692	793	315	318	177	263	166	660
2019	2,223	698	277	169	243	205	132	499	2,732	820	322	314	184	257	165	671
2020	2,310	721	295	182	260	204	138	510	2,766	868	330	297	186	254	168	663
2021	2,351	756	305	159	250	218	140	524	2,856	908	344	288	202	262	169	682
2022	2,484	826	329	151	257	227	138	556	2,987	969	367	283	199	266	165	738

주: 1) 식료품비: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를 포함한 비용임
2)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3) 교육비: 보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 등
4) 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 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 서비스 등
5)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차량구입비는 제외
6) 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기), 통신 서비스(일반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7) 기타 소비지출: 의류, 오락 문화,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등
8) 연간 기준으로 평균 소비 지출액을 의미함
9)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된 자료임(등록장애인명부 연계 기준)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비목별 소비지출

-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전체 소비지출액은 2016년 2,015만원에서 2022년 2,484만원으로 증가함
  - 전체가구의 연평균 소비지출액 역시 2016년 2,473만원에서 2021년 2,98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임
  - 2022년 장애인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은 전체가구의 83.2% 수준임
- 장애인가구는 전체 소비지출액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6.1%로 전체가구 9.5%에 비해 3.4%p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의료비는 장애인가구가 10.3%로 전체가구 6.7%에 비해 3.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비목별 비 소비지출액

〈표 8-2-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비 소비지출액 -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이자비용	전체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이자비용
2016	577	153	191	63	48	123	958	307	307	104	70	171
2017	614	167	197	77	46	127	1,034	343	322	125	66	179
2018	626	172	196	92	49	117	1,098	354	338	151	62	194
2019	659	169	204	99	42	144	1,106	357	353	146	55	195
2020	667	181	229	88	31	139	1,122	368	380	135	46	193
2021	644	178	230	91	26	119	1,185	400	400	137	39	209
2022	743	219	250	97	29	148	1,280	416	433	141	43	247

주: 1) 비 소비지출: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
2) 세금: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3)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 가구 간 이전지출: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 자녀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
5) 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6) 이자비용: 금융기관, 직장,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7) 연간 기준으로 평균 비소비지출액을 의미함
8)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된 자료임(등록장애인명부 연계 기준)
· 2018년부터 비소비지출(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공표함(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2016년 자료부터 작성하여 제공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비목별 비 소비지출

-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비 소비지출액은 2016년 662만원에서 2022년 885만원으로 증가함
  - 전체가구는 2016년 958만원에서 2022년 1,28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 2022년 장애인가구 전체 비 소비 지출액은 전체가구의 69.1% 수준임

비 소비지출
-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을 의미함

(4) 최소 생활비

〈표 8-2-4〉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만원)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년	154.0	157.5	152.2	149.4	139.6	159.2	168.4	270.3	119.1	169.0	145.7	147.6	237.5	99.8	134.9	139.3
2014년	164.9	162.7	173.2	160.3	154.2	178.5	190.1	273.9	133.1	178.6	229.7	146.6	210.6	156.9	144.2	135.6
2017년	187.9	185.6	196.9	177.4	165.5	183.2	219.4	341.7	157.0	204.8	231.3	191.6	264.3	241.1	196.8	181.8
2020년	196.3	192.5	198.7	196.6	171.7	221.5	237.6	352.3	158.2	221.7	223.9	187.7	253.4	188.7	204.2	186.7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9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03.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7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70.

- 2020년 장애인가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196.3만원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가 352.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장애 253.4만원, 지적장애 237.6만원, 심장장애 223.9만원, 신장장애 221.7만원 등의 순임
  - 반면에 월 평균 최소 생활비가 적은 장애유형으로는 정신장애가 158.2만원, 청각장애 171.7만원임

(5)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천원)

구 분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2005년		155.4	120.5	272.8	78.1	55.8	112.0	156.5	323.1
2008년		158.7	127.5	212.9	56.7	243.3	139.8	207.0	354.1
2011년		160.7	141.5	274.2	84.2	119.6	126.4	188.4	503.2
2014년		164.2	137.3	283.1	104.2	120.4	143.7	197.8	418.1
2017년		165.1	121.5	342.2	87.0	83.1	146.9	287.0	608.4
2020년	월 평균 총 추가비용	152.6	117.9	290.2	125.2	87.2	222.3	173.4	455.6
	교통비	25.7	25.6	33.1	19.1	7.8	26.8	30.1	60.4
	의료비	58.5	53.3	131.8	34.9	13.0	80.2	30.1	70.8
	보육·교육비	7.5	0.7	8.9	0.5	0.5	44.9	27.3	164.4
	보호·간병비	21.9	20.2	72.4	16.9	12.8	15.1	11.3	31.0
	재활기관 이용료	2.6	0.9	4.8	0.0	0.1	11.2	10.5	19.2
	통신비	11.8	1.1	1.4	37.5	14.5	27.6	38.0	32.4
	보조기구 구입·유지비장애인	15.3	10.8	13.8	14.8	37.4	5.0	0.8	0.1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5.5	0.2	8.9	1.3	0.9	9.9	23.4	76.8
	기타	3.8	5.0	15.3	0.0	0.2	1.4	1.9	0.3

주: 1) 월 기준임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239.
2)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347.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95.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04.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76.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77.

- 2020년 기준 월 평균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152.6천원임
  -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비가 58.5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교통비 25.7천원, 보호·간병비 21.9천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5.3천원 등의 순임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 장애유형별, 연도별(계속)

(단위: 천원)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5년		106.3	343.9	121.8	237.6	357.0	279.0	283.9	115.0
2008년		64.6	334.0	189.4	192.5	870.6	306.1	126.3	87.3
2011년		73.8	241.6	172.3	255.0	597.0	122.4	263.8	167.8
2014년		103.9	303.3	350.7	254.7	271.5	323.9	269.0	175.4
2017년		85.9	293.6	112.4	176.4	462.2	329.2	234.7	118.9
2020년	월 평균 총 추가비용	99.3	332.3	269.6	148.5	293.0	225.4	212.0	116.6
	교통비	18.2	96.5	47.0	23.6	42.3	28.0	34.5	18.1
	의료비	69.1	217.4	172.6	97.3	234.9	167.3	91.6	76.9
	보육·교육비	0.0	0.2	11.8	0.0	1.3	1.9	0.2	4.3
	보호·간병비	4.9	12.9	20.4	15	1.4	2.4	13.1	4.5
	재활기관 이용료	2.0	2.0	0.0	0.0	0.0	0.0	0.0	1.4
	통신비	0.5	0.3	0.0	0.0	0.7	3.1	0.2	3.6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0.7	1.7	1.4	12.6	0.0	21.6	71.8	0.3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2.6	1.3	12.6	0.0	1.9	1.0	0.3	7.0
	기타	1.1	0.0	3.8	0.0	10.5	0.0	0.4	0.4

주: 1) 월 기준임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239.
2)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347.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95.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04.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76.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77.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가 455.6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다음은 신장장애 332.3천원, 간장애 293.0천원, 뇌병변장애 290.2천원, 심장장애 269.6천원 등의 순임
- 반면에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이 적은 장애유형으로는 청각장애 87.2천원, 정신장애 99.3천원임

3) 빈곤

(1)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표 8-3-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 연도별

(단위: %)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상대적 빈곤율		평균 빈곤갭	상대적 빈곤율		평균 빈곤갭
	시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시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2	44.4	36.3	37.0	19.0	18.3	37.2
2013	43.2	35.6	38.3	19.1	18.4	37.0
2014	41.5	34.5	39.9	19.6	18.2	36.1
2015	39.0	30.8	37.3	19.5	17.5	35.4
2016	41.2	31.5	37.0	19.8	17.6	35.1
2017	38.9	30.0	35.3	19.7	17.3	35.5
2018	40.9	31.0	34.6	19.9	16.7	34.2
2019	42.9	31.8	30.5	20.8	16.3	32.7
2020	41.7	28.4	27.8	21.3	15.3	30.2
2021	42.2	27.2	31.9	20.8	15.1	32.2
2022	37.5	24.9	33.2	20.2	14.9	33.2

주: 1)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22년) 1,727만원) 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
2) 평균 빈곤갭: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과 빈곤선 이하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소득과의 차이를 빈곤선으로 나눈 값
3)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2017년 12월부터 변경)
4)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2017년 12월부터 변경)
5) 소득은 균등화 소득(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함.
6) 장애인 가구는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023년 조사부터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명부 행정자료 활용)
7) 빈곤율과 빈곤갭은 개인 단위로 추정한 값임.
8) 장애인가구 상대적 빈곤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표됨. 2017년 이후 장애인가구 빈곤율 및 빈곤갭은 내부 연구진이 산출함
9) 2023년부터 통계청은 2021-2022년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 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를 제공하므로, 본 보고서의 2022년 이전 자료는 통계청이 공표한 값과 다를 수 있음

자료: 1)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18-2023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함(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4.7.22.)
2) 통계청(2013-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4.9%로, 전체가구 14.9%에 비하여 약 1.7배 높음
-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와 전체가구의 평균 빈곤갭은 각각 33.2%, 32.2%임

상대적 빈곤율(relative poverty rate)

-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속한 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 내에 속한 전체인구 중 어느 정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지를 파악할 수 있음
  출처: 통계청(2022).「소득분배지표 이해하기」

평균 빈곤갭(mean poverty gap)

-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소득과의 차이를 빈곤선으로 나눈 값으로, 빈곤선 이하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음. 또한 빈곤갭이 작을수록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를 가짐
  출처: 통계청(2022).「소득분배지표 이해하기」

(2)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표 8-3-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경상소득) -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분위별 소득					전체	분위별 소득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2020	4,986	1,311	2,956	4,924	7,418	13,607	6,180	1,314	3,002	4,915	7,397	14,269
2021	5,127	1,342	3,114	5,088	7,732	14,948	6,470	1,347	3,133	5,110	7,731	15,026
2022	5,450	1,382	3,285	5,359	8,196	15,732	6,762	1,405	3,309	5,388	8,111	15,598

주: 1) 경상소득 기준임
2) 경상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
3) 연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의미함
4)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된 자료임(등록장애인명부 연계 기준)
· 2023년부터 공적이전 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함(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2020년 자료부터 작성하여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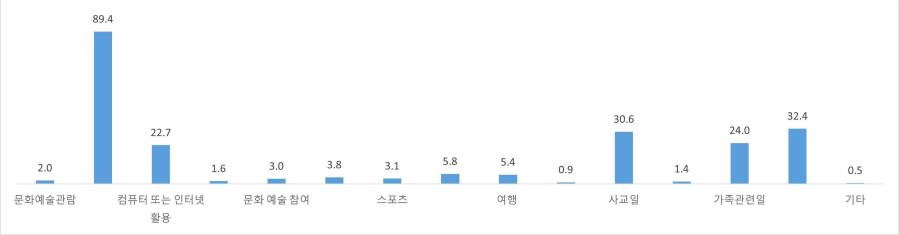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 장애인가구의 2022년 1분위소득(연간)은 1,382만원으로 2020년 1,311만원에 비해 71만원 증가함. 5분위소득은 2022년 15,732만원으로 2020년 13,607만원에 비해 2,125만원 증가함
- 장애인가구의 분위별 소득을 전체가구와 비교하면, 5분위소득간의 격차가 다른 분위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5분위 평균소득은 15,732만원으로 전체가구 15,598만원에 비해 134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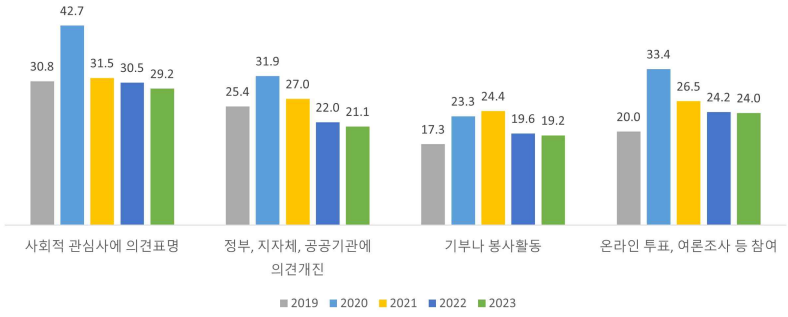
5분위 배율(숫자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해짐)
- 소득 5분위 평균소득/소득 1분위 평균소득
-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함

9. 문화 및 사회참여

[그림 2-9-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2020년)



[그림 2-9-2]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연도별



- 지난 1주일 동안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TV 시청이 89.4%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TV시청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 32.4%, 사교일 30.6%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율은 2020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임

1) 문화 및 여가활동

(1)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율

〈표 9-1-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비율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문화예술관람	2.0	2.4	1.7	2.1	0.9	2.4	2.1	3.5	1.0	2.3	2.9	0.0	5.8	3.3	0.8	1.2
TV시청 (유선방송, 비디오포함)	89.4	91.8	84.1	85.2	88.6	93.4	86.7	86.8	89.9	92.3	94.6	90.2	94.2	92.2	91.4	91.5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22.7	24.0	15.1	22.2	13.4	27.4	33.1	48.6	21.3	30.5	36.3	14.1	44.3	38.3	17.0	33.8
승부놀이 (바둑, 당구, 경마 등)	1.6	1.9	1.2	1.5	1.5	2.7	1.1	1.4	0.9	2.9	2.2	0.9	1.0	1.5	1.5	0.6
문화 예술 참여 (독서토론, 미술, 서예 등)	3.0	3.2	2.4	2.9	1.3	3.6	3.9	5.5	5.0	3.2	6.0	2.2	5.2	5.2	1.3	2.6
취미, 자기 계발 활동	3.8	4.0	2.3	5.6	2.4	3.9	3.4	6.0	3.5	5.5	8.3	2.1	7.9	4.6	1.7	3.3
스포츠 (축구, 테니스, 수영 등)	3.1	3.1	1.5	3.2	2.6	4.7	4.5	14.2	0.6	3.5	2.2	0.8	7.5	5.2	2.5	3.9
사회(자원)봉사, 종교 활동	5.8	6.8	3.6	6.2	5.8	3.2	4.6	5.5	3.9	4.5	6.7	4.2	6.6	4.2	6.2	7.5
여행(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5.4	6.6	2.4	7.2	4.6	5.3	2.8	10.1	1.6	3.8	3.9	0.7	11.6	12.1	2.5	2.0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0.9	1.1	0.8	1.6	0.4	0.0	0.1	1.8	0.0	0.4	0.8	0.6	0.6	0.9	0.0	1.3
사교 일 (친구, 친척만남, 모임 등)	30.6	36.9	16.0	35.6	32.6	24.9	15.2	15.0	13.0	27.5	39.1	17.5	45.0	30.2	31.4	20.7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모임	1.4	1.1	1.4	2.0	1.2	0.2	2.4	3.8	1.0	1.2	0.9	0.6	1.0	0.0	1.4	2.1
가족관련 일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24.0	26.3	13.8	29.1	25.1	28.2	17.5	27.6	14.8	23.3	29.3	15.3	38.9	29.1	27.9	15.4
휴식(사우나 등)	32.4	34.5	24.6	35.0	35.3	29.0	22.3	28.9	31.0	31.7	37.8	20.2	43.5	41.9	36.7	29.2
기타	0.5	0.5	0.2	0.8	0.3	1.3	0.5	0.6	1.4	0.2	1.3	0.0	0.0	0.0	0.5	0.0

주: 1) 중복 응답임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52.

-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비율은 TV 시청이 8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휴식 32.4%, 사교 일 30.6% 순으로 높음
  • 기타를 제외하고 참여율이 가장 낮은 여가활동은 해외여행(0.9%)으로 나타남

〈표 9-1-2〉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비율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문화예술관람	2.0	2.4	1.5	2.0	3.6	2.7	1.1	1.8	2.2
TV시청 (유선방송, 비디오포함)	89.4	89.9	88.8	86.6	89.0	91.4	88.4	86.9	91.0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22.7	29.0	14.0	48.9	57.1	31.5	6.0	25.0	21.3
승부놀이 (바둑, 당구, 경마 등)	1.6	2.5	0.5	1.0	2.1	2.1	1.3	1.6	1.7
문화 예술 참여 (독서토론, 미술, 서예 등)	3.0	3.6	2.2	7.5	6.0	3.3	1.7	3.3	2.8
취미, 자기 계발 활동	3.8	4.0	3.4	6.6	8.4	4.8	1.7	3.8	3.7
스포츠 (축구, 테니스, 수영 등)	3.1	4.4	1.2	12.7	6.7	3.4	1.3	3.1	3.1
사회(자원)봉사, 종교 활동	5.8	5.4	6.4	6.4	5.2	7.2	3.3	4.6	6.6
여행(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5.4	7.0	3.1	8.1	8.1	7.2	3.3	3.2	6.7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0.9	1.0	0.7	1.0	2.3	0.9	0.5	0.3	1.2
사교 일 (친구, 친척만남, 모임 등)	30.6	32.6	28.0	21.8	31.3	36.9	26.7	21.1	36.4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모임	1.4	1.7	0.9	2.0	2.7	1.6	0.9	2.3	0.8
가족관련 일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24.0	25.9	21.3	33.4	29.3	27.0	19.9	18.1	27.5
휴식(사우나 등)	32.4	33.9	30.3	20.0	33.3	36.7	29.9	26.2	36.1
기타	0.5	0.5	0.5	0.9	0.2	0.4	0.7	0.6	0.5

주: 1) 중복응답임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18.

- TV시청은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모든 집단에서 가장 참여율이 높은 여가활동으로 나타남
  - TV시청 다음으로 참여율이 높은 여가활동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와 18세~44세 이하에서는 컴퓨터·인터넷 활용 비율이 각각 48.9%, 57.1%로 높고, 45세~64세 이하는 사교 일(36.9%), 65세 이상은 휴식(29.9%)의 비율이 높음

(2) 생활체육

〈표 9-1-3〉 생활체육 실행 유형 - 연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단위: %)

구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자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있는 자	현재 운동하지 않고 운동 의지가 없는 자
연도	2014	14.1	51.7	20.5	13.7
	2015	15.8	54.6	16.5	13.1
	2016	17.7	57.1	13.2	12.0
	2017	20.1	55.8	12.8	11.3
	2018	23.8	52.5	12.3	11.4
	2019	24.9	52.1	12.1	10.9
	2020	24.2	25.2	35.1	15.5
	2021	20.2	19.4	43.7	16.6
	2022	26.6	24.6	20.4	28.4
	2023	33.9	23.8	19.9	22.4
장애 유형	지체	36.8	24.6	20.1	18.6
	시각	40.3	21.9	21	16.7
	청각·언어	41.9	19.3	19.6	19.2
	지적·자폐	31.2	24.7	19	25.1
	뇌병변	21.1	27.5	17.9	33.5
	기타	26.2	22.1	21.1	30.6
지역	서울	23.2	26.5	21.6	28.7
	부산	27.0	17.1	23.9	32.0
	대구	35.7	14.2	16.6	33.5
	인천	41.3	24.1	13.1	21.5
	광주	33.5	24.0	18.6	23.9
	대전	26.7	38.1	18.6	16.6
	울산	25.2	14.7	24.5	35.6
	세종	33.5	43.4	12.6	10.5
	경기	20.7	27.9	20.4	31.0
	강원	29.7	22.5	28.7	19.0
	충북	22.0	32.8	27.2	18.0
	충남	28.8	26.1	21.4	23.8
	전북	19.5	23.3	25.4	31.8
	전남	26.1	19.9	20.0	34.0
	경북	33.2	25.2	15.7	25.9
	경남	29.4	18.1	18.8	33.8
	제주	29.1	34.9	12.4	23.6

주: 1) 15개 장애유형을 연구편의상 6개 유형으로 재분류함

2)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개념

구분	최근 1년간 운동 여부	운동 목적	운동 횟수	운동 시간	운동 장소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실시	재활치료 이외	1주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실시	완전 실행자에 속하지 않는 운동 참여자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있는 자	미실시	-	-	-	-
현재 운동하지 않고 운동 의지가 없는 자	미실시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2023).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93,96.

- 장애인 생활체육의 완전실행자의 비율은 2014년 14.1%에서 2023년 33.9%까지 증가하였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비율은 청각·언어장애에서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이 41.3%로 가장 높고 전북이 19.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체육'이란 재활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주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집 밖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말함

2) 사회참여

(1) 투표 참여

〈표 9-2-1〉 장애인 투표 참여 비율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71.6	80.9	50.5	77.4	82.2	52.9	32.6	8.7	48.4	72.5	70.6	71.2	75.6	58.3	74.1	51.3
2014	74.8	85.1	59.8	78.0	81.4	62.5	32.8	14.9	42.7	75.2	81.3	75.0	93.2	85.0	76.6	64.7
2017	84.1	89.9	64.9	88.3	91.9	88.2	61.3	55.9	66.1	88.3	99.2	81.9	96.0	92.1	82.5	69.1
2020	78.4	86.3	56.4	81.3	85.5	72.7	48.2	42.3	52.0	82.8	85.1	75.5	87.9	85.5	89.4	72.5

주: 1) 2011년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7년은 제19대 대통령선거, 2020년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응답임
2) 2011년과 2014년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비해당(투표권 없음)이 포함된 반면, 2017년은 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결과에 비해당(투표권 없음) 제외됨
3) 2020년은 조사 결과에 비해당(투표권 없음) 제외됨
4)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21.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19.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366.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59.

〈표 9-2-2〉 장애인 투표 참여 비율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2011	71.6	73.7	68.8	54.6	80.1	76.9	47.4	78.9	71.7
2014	74.8	77.1	71.7	61.8	79.1	80.6	57.9	86.4	75.3
2017	84.1	86.8	80.6	77.0	87.3	83.7	73.0	91.0	84.4
2020	78.4	81.2	74.6	63.6	80.0	81.1	63.4	86.8	78.4

주: 1) 2011년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7년은 제19대 대통령선거, 2020년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응답임
2) 2011년과 2014년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비해당(투표권 없음)이 포함된 반면, 2017년은 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결과에 비해당(투표권 없음) 제외됨
3) 2020년은 조사 결과에 비해당(투표권 없음) 제외됨
4)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0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2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2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24.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장애인의 선거 투표 참여율은 78.4%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장루·요루장애의 선거 참여율이 89.4%로 가장 높고 간장애 87.9%, 지체장애 86.3% 순으로 참여율이 높음. 반면 자폐성 장애는 선거 참여율이 42.3%로 가장 낮음
  - 남성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81.2%로 여성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 74.6%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장애인의의 투표 참여율이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86.8%로 심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63.4%보다 높음

〈표 9-2-3〉 투표 미참여 이유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 불편	4.1	5.7	4.0	5.8	4.4	-	1.3	-	1.9	7.3	-	10.4	3.1	-	8.0	7.5
편의시설 부족	2.2	2.1	2.9	3.7	1.9	-	1.9	3.8	0.7	2.9	-	-	-	-	-	-
몸이 불편해서	49.5	53.5	72.2	44.8	53.0	65.1	25.7	21.9	31.9	53.2	38.4	80.1	27.9	14.5	48.3	38.7
도우미가 없어서	1.8	1.3	1.2	2.0	2.4	-	3.6	1.8	0.9	0.7	-	0.4	-	-	5.2	4.1
정보 부족	2.9	0.9	0.9	2.4	6.2	3.1	6.5	1.0	4.4	3.3	-	-	-	-	1.7	1.8
시간이 없어서	2.2	2.8	0.3	6.9	0.8	6.6	1.9	2.6	0.5	1.7	8.3	-	20.5	-	10.7	-
본인이 원치 않아서	31.0	30.4	14.9	26.1	25.8	23.1	48.0	46.3	48.7	26.2	53.2	6.9	34.4	62.1	14.0	42.0
주위의 시선 때문에	1.1	-	-	1.1	1.3	-	3.2	8.3	1.8	1.9	-	-	7.9	23.4	-	2.7
코로나19로 인해서	2.7	2.4	2.5	4.1	2.9	2.2	2.0	5.3	3.4	2.9	-	-	6.2	-	7.0	3.2
기타	2.5	1.0	1.2	2.9	1.2	-	6.0	9.0	5.8	-	-	2.2	-	-	5.0	-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59.

〈표 9-2-4〉 투표 미참여 이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 불편	4.1	4.2	4.1	0.8	2.7	6.9	3.9	4.6
편의시설 부족	2.2	1.9	2.5	2.3	1.9	2.4	2.0	2.5
몸이 불편해서	49.5	43.1	55.8	26.7	41.2	66.7	46.9	53.4
도우미가 없어서	1.8	2.1	1.4	1.7	2.8	1.0	2.6	0.5
정보 부족	2.9	3.4	2.3	6.1	2.3	1.7	3.4	2.0
시간이 없어서	2.2	2.7	1.6	4.4	2.7	0.7	1.1	3.8
본인이 원치 않아서	31.0	34.4	27.6	44.5	39.6	18.2	32.6	28.6
주위의 시선 때문에	1.1	1.6	0.6	2.8	1.2	0.3	1.6	0.5
코로나19로 인해서	2.7	2.9	2.5	5.0	2.9	1.4	2.7	2.7
기타	2.5	3.4	1.6	5.7	2.8	0.7	3.3	1.3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24.

- 장애인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의 비율이 4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본인이 원치 않아서'의 비율이 31.0%로 높음
  - '몸이 불편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호흡기 장애인에서 80.1%, 뇌병변 장애인에서 72.2%로 상대적으로 높음
- 장애인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18-44세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의 비율이 44.5%로 가장 높고, 45-64세와 65세 이상은 '몸이 불편해서'가 각각 41.2%, 66.7%로 가장 높음

(2) 장애인 공무원

〈표 9-2-5〉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수 및 고용률 - 연도별

(단위: 개소, 명, %)

구분	기관수	의무고용 대상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2009	45	171,713	4,037	2.35
2010	45	171,421	4,479	3.01
2011	45	168,146	4,665	3.20
2012	46	169,615	4,805	3.27
2013	47	169,872	4,830	3.29
2014	49	171,828	4,832	3.26
2015	49	170,443	5,000	3.41
2016	49	169,971	5,014	3.44
2017	50	171,995	5,107	3.47
2018	50	176,790	5,184	3.43
2019	50	186,982	5,697	3.56
2020	52	187,439	5,862	3.67
2021	53	193,564	6,034	3.68
2022	53	202,342	6,209	3.66
2023	54	207,070	6,138	3.54

주: 1) 의무고용 대상인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의 정원
2) 고용인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에 고용한 장애인 수
3) 고용률은 의무고용대상인원 대비 고용인원 비율임.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은 2배로 산정(2010년부터 시행)
4)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08년까지 2% 이상, '16년까지 3% 이상, '17년~'18년 3.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자료: 인사혁신처(각 년도). 「인사혁신통계연보」 p32.

-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수는 2009년 4,037명에서 2022년 6,209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6,13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함
  - 고용률 또한 2022년 3.66%에 비해 2023년 3.54%로 감소하였음

〈표 9-2-6〉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연도별, 직급별

(단위: 명)

구분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2014	8,633	267	589	592	2,310	1,112	1,888	236	663	976
	2015	8,975	284	589	588	2,376	1,200	2,032	214	634	1,058
	2016	9,236	296	598	589	2,360	1,193	2,036	239	669	1,256
	2017	9,465	288	577	633	2,401	1,130	2,127	251	703	1,355
	2018	9,471	304	584	577	2,454	1,105	2,164	269	671	1,343
	2019	9,542	327	629	671	2,446	1,070	2,149	250	682	1,318
	2020	9,872	367	647	822	2,466	1,021	2,186	259	632	1,472
	2021	9,710	361	652	740	2,419	977	2,264	240	652	1,405
	2022	9,576	377	681	653	2,496	1,017	2,311	193	511	1,337
	2023	9,494	360	682	747	2,400	939	2,205	279	545	1,337
일반직	소계	9,476	354	682	740	2,398	939	2,202	279	545	1,337
	1급	-	-	-	-	-	-	-	-	-	-
	2급	1	-	-	1	-	-	-	-	-	-
	3급	8	-	2	5	-	-	1	-	-	-
	4급	90	3	24	31	16	8	7	-	-	1
	5급	559	32	83	129	126	63	62	4	23	37
	6급	2,828	120	232	238	790	368	524	88	237	231
	7급	3,415	142	237	183	869	317	902	91	180	494
	8급	1,568	21	63	70	364	101	493	47	67	342
	9급	821	22	20	37	188	39	204	48	37	226
	시간선택제	18		3		8	1	3	1	-	2
	전문경력관	10	1	-	-	3	2	3	-	1	-
	전담직위	-	-	-	-	-	-	-	-	-	-
	일반(전문)임기제	51	6	6	7	9	16	3	-	-	4
	연구관	19	2	3	14	-	-	-	-	-	-
	연구사	40	4	7	22	5	2	-	-	-	-
	지도관	8	1	-	1	2	4	-	-	-	-
	지도사	38		2	2	17	17	-	-	-	-
특정직	소계	12	6	-	6	-	-	-	-	-	-
	교육직	12	6	-	6	-	-	-	-	-	-
	자치경찰	-	-	-	-	-	-	-	-	-	-
별정직	소계	5	-	-	1	2	-	2	-	-	-
	5급 상당 이상	-	-	-	-	-	-	-	-	-	-
	6급 상당 이하	5	-	-	1	2	-	2	-	-	-
정무직		1	-	-	-	-	-	1	-	-	-

주: 1)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
2) 더블 카운트를 적용하지 않음.

자료: 1) 행정자치부(2015). 「201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9.
2) 행정자치부(2016). 「201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9.
3) 행정자치부(2017). 「201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7.
4) 행정안전부(2018). 「2017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7.
5) 행정안전부(2019). 「20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7.
6) 행정안전부(2020). 「2019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5.
7) 행정안전부(2021). 「202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5.
8) 행정안전부(2022). 「202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5.
9) 행정안전부(2023). 「202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5.
10)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5.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은 2014년 8,633명부터 2020년 9,872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감소하여 2023년 기준 9,494명임
  • 직급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은 일반직 7급이 3,415명으로 가장 많음

〈표 9-2-7〉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시도별

(단위: 명)

구분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전국	9,494	360	682	747	2,400	939	2,205	279	545	1,337
서울	1,921	360	-	-	-	-	1,155	-	-	406
부산	671	-	157	-	-	-	390	8	-	116
대구	427	-	126	-	-	27	143	36	8	87
인천	417	-	133	-	-	14	175	3	5	87
광주	272	-	81	-	-	-	150	-	-	41
대전	240	-	73	-	-	-	124	-	-	43
울산	205	-	69	-	-	28	65	7	2	34
세종	57	-	43	-	-	-	-	3	5	6
경기	1,556	-	-	177	1,024	40	-	56	49	210
강원	459	-	-	71	183	103	3	26	48	25
충북	378	-	-	63	130	104	-	14	47	20
충남	459	-	-	63	190	94	-	14	72	26
전북	448	-	-	67	165	106	-	7	53	50
전남	549	-	-	69	166	179	-	26	81	28
경북	594	-	-	65	223	129	-	44	87	46
경남	689	-	-	89	287	115	-	27	83	88
제주	152	-	-	83	32	-	-	8	5	24

주: 1) 일반직 기준
2)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6.

- 2023년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는 서울 1,921명, 경기 1,556명 순으로 많으며, 세종 57명, 제주 152명 순으로 수가 적음

(3) 온라인 사회참여

〈표 9-2-8〉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사회적 관심사에 의견표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의견개진	기부나 봉사활동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등 참여
연도	2017	24.1	11.2	8.8	13.8
	2018	30.2	18.2	13.4	15.8
	2019	30.8	25.4	17.3	20.0
	2020	42.7	31.9	23.3	33.4
	2021	31.5	27.0	24.4	26.5
	2022	30.5	22.0	19.6	24.2
	2023	29.2	21.1	19.2	24.0
성별	남성	29.3	22.2	19.7	23.8
	여성	29.1	18.5	18.2	24.5
연령별	19세 이하	65.6	41.3	28.2	44.0
	20대	52.8	41.4	45.4	47.1
	30대	54.2	36.2	29.2	44.4
	40대	47.2	40.2	34.6	38.8
	50대	27.4	21.8	19.6	25.0
	60대 이상	19.0	11.2	11.0	14.0
장애 유형	지체장애	29.4	20.3	18.3	23.9
	뇌병변장애	31.4	23.7	22.5	27.8
	시각장애	28.3	22.1	21.2	24.1
	청각/언어장애	26.9	21.6	18.8	20.6

주: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함
- 표현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
- 행동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한 기부 및 봉사활동,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활동을 하는 것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자료: 1)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8).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289.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19.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20).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63.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73.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7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8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64.

- 2023년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의견개진' 활동 비율은 0.9%p 가량 감소함
-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등 참여' 비율은 여성 장애인이 더 높고, 나머지 유형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남성 장애인의 참여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는, '사회적 관심사에 의견표명' 참여율은 19세 이하에서 65.6%로 가장 높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의견개진', '기부나 봉사활동',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참여율은 20대에서 각각 41.4%, 45.4%, 47.1%로 가장 높음

(4) 사회적 고립도

〈표 9-2-9〉 사회적 고립도 - 도움 요청 대상

(단위: %, 명)

연도	구분		낙심, 우울 등으로 인한 대화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있음	인원(평균)	없음	있음	인원(평균)	없음	있음	인원(평균)	없음
2017	전체		83.6	3.12	16.4	78.5	2.40	21.5	51.9	2.35	48.1
	장애인	전체	71.4	2.50	28.6	67.8	2.16	32.2	36.6	1.99	63.4
		65세 미만	73.1	2.64	26.9	67.6	2.24	32.4	39.0	1.95	61.0
		65세 이상	69.1	2.31	30.9	68.0	2.05	32.0	33.6	2.06	66.4
	비장애인	전체	84.2	3.15	15.8	79.1	2.41	20.9	52.7	2.36	47.3
		65세 미만	85.8	3.27	14.2	79.6	2.47	20.4	55.5	2.40	44.5
		65세 이상	74.5	2.35	25.5	75.9	2.09	24.1	36.4	2.02	63.6
2019	전체		83.3	2.94	16.7	79.6	2.30	20.4	51.4	2.22	48.6
	장애인	전체	72.3	2.26	27.7	73.4	2.03	26.6	33.8	2.10	66.2
		65세 미만	74.7	2.37	25.3	73.6	2.04	26.4	39.2	2.10	60.8
		65세 이상	69.9	2.15	30.1	73.2	2.02	26.8	28.2	2.10	71.8
	비장애인	전체	83.9	2.97	16.1	79.9	2.31	20.1	52.4	2.22	47.6
		65세 미만	85.8	3.09	14.2	80.9	2.36	19.1	55.6	2.25	44.4
		65세 이상	73.1	2.22	26.9	74.7	2.04	25.3	34.2	1.91	65.8
2021	전체		79.6	2.94	20.4	72.8	2.34	27.2	50.1	2.23	49.9
	장애인	전체	66.0	2.25	34.0	68.5	2.08	31.5	33.0	2.01	67.0
		65세 미만	68.9	2.43	31.1	67.2	2.18	32.8	38.2	2.17	61.8
		65세 이상	63.4	2.07	36.6	69.7	1.99	30.3	28.2	1.81	71.8
	비장애인	전체	80.3	2.97	19.7	73.0	2.35	27.0	51.0	2.24	49.0
		65세 미만	82.2	3.10	17.8	73.9	2.41	26.1	54.3	2.28	45.7
		65세 이상	71.2	2.24	28.8	69.0	2.03	31.0	34.1	1.90	65.9
2023	전체		79.8	2.89	20.2	74.0	2.30	26.0	51.0	2.22	49.0
	장애인	전체	**66.7**	**2.17**	**33.3**	**70.0**	**1.91**	**30.0**	**34.4**	**1.93**	**65.6**
		65세 미만	68.0	2.35	32.0	68.8	2.03	31.2	35.7	2.11	64.3
		65세 이상	65.4	2.00	34.6	71.1	1.81	28.9	33.3	1.74	66.7
	비장애인	전체	80.5	2.92	19.5	74.2	2.32	25.8	51.9	2.23	48.1
		65세 미만	82.2	3.04	17.8	74.9	2.40	25.1	55.2	2.28	44.8
		65세 이상	72.6	2.29	27.4	71.5	2.01	28.5	36.7	1.88	63.3

주: 1) 사회조사(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함(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3.1.29, 2024.7.15.)
2) 장애인복지카드 소유여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를 장애인으로 분류함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상, 그 외는 만13세 이상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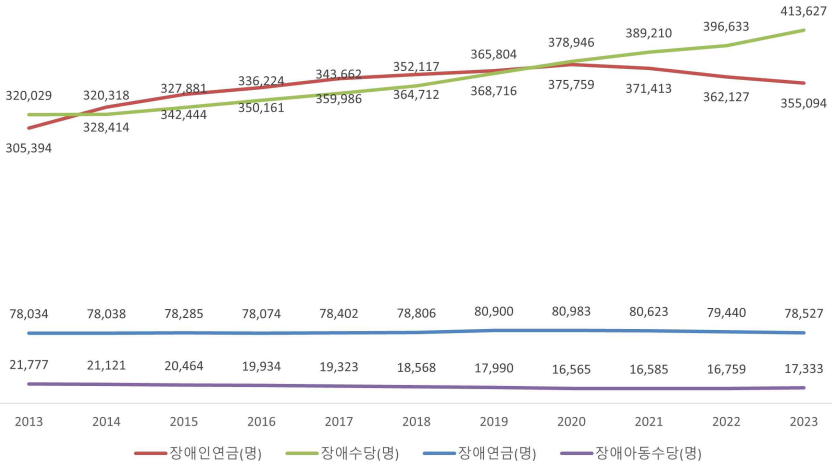
-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장애인의 비율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대화 상대가 필요할 경우' 33.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26.0%,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49.0%로 나타남(2023년 기준)
- 특히 '65세 미만' 연령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2023년 기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비율 차이는 '낙심, 우울 등으로 대화상대가 필요할 경우' 14.2%p,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6.1%p,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할 경우' 19.5%p로 나타남.

사회적 고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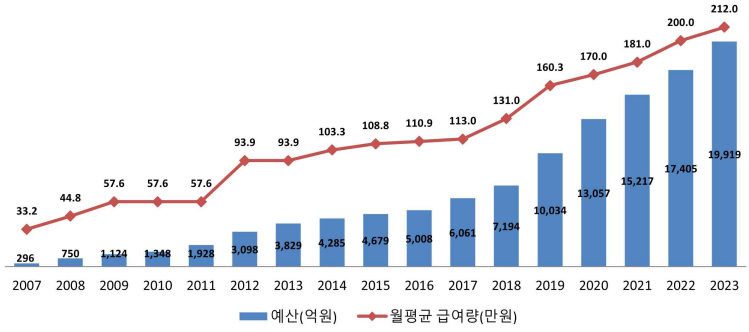
- 위기상황에서 인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출처: e-나라지표)

10. 사회보장

[그림 2-10-1] 장애 관련 급여 수급자 현황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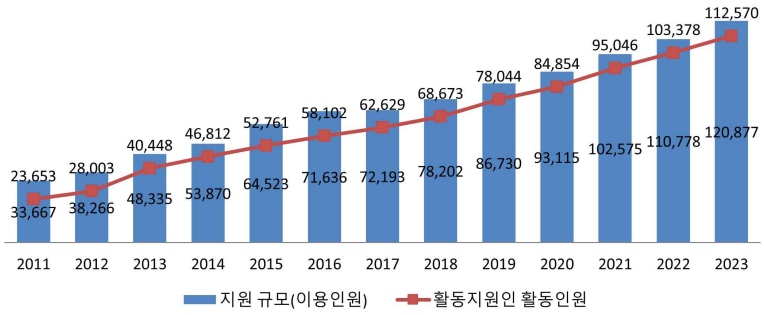


[그림 2-10-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및 월 평균 급여량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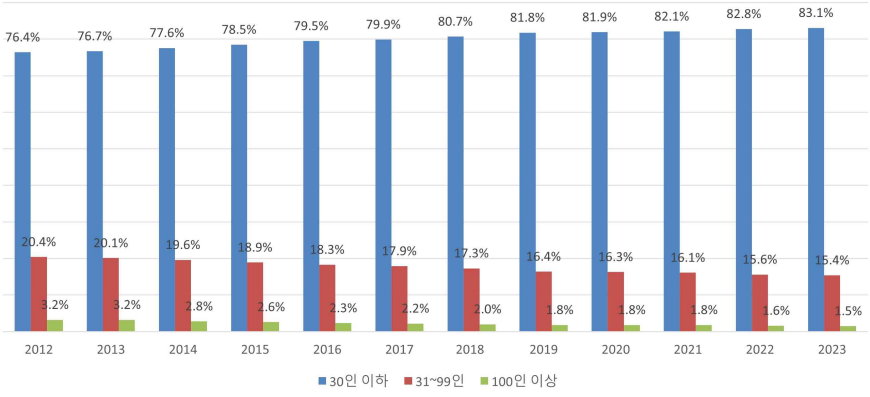


-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2013년 78,034명에서 2023년 78,527명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3년 305,394명에서 2023년 355,094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임
-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2013년 320,029명에서 2023년 413,627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임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2013년 21,777명에서 2023년 17,333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예산은 2007년 296억원에서 2023년 19,919억원으로, 월평균 급여량은 2007년 33.2만원에서 2022년 212.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그림 2-10-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규모 및 활동지원사 활동인원 - 연도별



[그림 2-10-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연도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지원 규모(이용인원)는 2011년 33,667명에서 2023년 120,87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활동지원사의 활동인원은 112,570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사업의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중 소규모시설 비율'의 경우, 정책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2012년 76.4% 대비 2023년 83.1%)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

① 가입한 연금 종류

〈표 10-1-1〉 가입한 연금종류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개인연금 (사적)	기타
	2005	20.8	0.8	-	0.0	0.1	-	2.1	0.0
	2008	34.4	1.4	0.3	0.5	0.9	-	0.3	-
	2011	32.9	1.4	0.2	0.4	1.9	-	3.2	0.1
	2014	35.0	2.1	0.4	0.3	1.9	-	3.8	0.2
	2017	37.7	2.1	0.4	0.3	1.5	0.0	3.0	-
	2020	33.3	1.7	0.3	0.4	-	0.05	2.4	-
성별	남	40.9	2.1	0.2	0.3	-	0.0	2.6	-
	여	23.0	1.1	0.3	0.7	-	0.1	2.2	-
장애 정도	심한 장애	26.1	1.5	0.2	0.4	-	0.05	1.7	-
	심하지 않은 장애	37.3	1.8	0.3	0.5	-	0.05	2.4	-
장애 유형	지체	38.5	1.7	0.4	0.6	-	0.0	3.2	-
	뇌병변	29.1	0.9	0.0	0.3	-	0.0	1.8	-
	시각	38.9	1.7	0.1	0.4	-	0.2	3.3	-
	청각	27.4	2.6	0.2	0.4	-	0.0	1.2	-
	언어	28.7	1.0	0.0	0.0	-	0.0	1.5	-
	지적	21.7	0.5	0.0	0.2	-	0.0	0.5	-
	자폐성	27.8	0.6	0.0	0.0	-	0.0	2.4	-
	정신	8.1	0.0	0.0	0.3	-	0.0	1.0	-
	신장	34.2	3.0	0.2	0.4	-	0.2	2.4	-
	심장	44.8	3.0	0.0	0.0	-	0.0	1.1	-
	호흡기	36.6	1.9	0.0	0.0	-	0.0	1.3	-
	간	44.7	3.8	0.6	0.0	-	0.4	3.9	-
	안면	42.9	2.5	0.0	0.0	-	0.0	2.9	-
	장루·요루	33.2	1.3	0.0	0.0	-	0.0	2.9	-
	뇌전증	18.9	0.5	0.0	0.0	-	0.0	0.7	-

주: 1) 중복응답임
2) 2020년은 만18세 이상 기준(개인연금은 전체기준)
3) 2020년에는 보훈연금 대신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조사됨
4)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494.
2)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34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58.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94.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722.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705

- 2020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은 33.3%이며, 개인연금 가입률은 2.4%로 나타남
  •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연금 가입률이 높으며,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보다 가입률이 높음

② 장애연금 수급

〈표 10-1-2〉 장애연금 수급현황 - 장애연금 등급별, 연도별

(단위: 명, 천원, %)

구분	계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4급)	
			1급		2급		3급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1998	14,870	38,095,257	2,307	8,043,784	4,396	12,220,064	6,542	11,104,102	1,625	6,727,307
1999	18,850	57,627,148	2,933	10,915,513	5,734	18,284,668	8,239	16,539,589	1,944	11,887,378
2000	24,084	85,897,388	3,873	16,753,668	7,751	27,930,670	10,290	25,413,897	2,170	15,799,154
2001	29,925	101,869,197	4,846	19,587,774	10,028	34,094,337	12,582	29,901,265	2,469	18,285,821
2002	35,070	120,267,604	5,848	24,294,311	12,313	43,283,260	14,715	36,271,443	2,194	16,418,591
2003	42,580	153,898,535	6,744	28,618,060	15,043	55,026,892	17,940	48,275,861	2,853	21,977,723
2004	50,849	192,926,434	7,680	33,496,668	17,607	67,363,536	21,973	62,768,895	3,609	29,297,315
2005	58,614	229,644,551	8,460	38,390,655	19,743	77,718,552	26,264	77,821,758	4,147	35,713,586
2006	66,660	269,846,599	9,199	43,732,985	21,888	88,072,930	30,675	93,801,148	4,898	44,239,536
2007	72,258	294,202,952	9,975	48,598,642	23,005	93,093,869	34,111	104,184,974	5,167	48,325,466
2008	77,068	316,021,060	10,600	52,202,523	24,203	98,918,486	37,363	116,979,543	4,902	47,920,508
2009	78,371	327,956,289	10,783	55,721,797	24,274	102,785,043	39,478	128,509,249	3,836	40,940,200
2010	79,727	333,603,890	11,007	57,972,283	25,145	107,518,566	40,128	130,813,857	3,447	37,299,185
2011	79,375	347,466,360	11,229	61,569,109	25,218	112,288,852	39,448	131,689,477	3,480	41,918,922
2012	78,796	349,116,465	11,307	64,383,918	25,400	116,872,640	39,227	133,206,299	2,862	34,653,608
2013	78,034	364,904,555	11,292	66,879,131	25,302	121,795,089	38,447	137,493,695	2,993	38,736,640
2014	78,038	366,074,576	11,357	68,102,787	25,749	124,895,468	38,281	138,605,095	2,651	34,471,226
2015	78,285	372,089,942	11,393	69,260,983	26,081	127,855,760	38,214	139,450,878	2,597	35,522,321
2016	78,074	373,380,465	11,657	70,885,857	26,820	132,030,529	37,020	134,416,071	2,577	36,048,008
2017	78,402	391,147,481	12,099	76,657,680	27,517	140,482,777	35,870	131,876,219	2,916	42,130,805
2018	78,806	405,867,495	12,863	83,692,092	27,719	144,285,004	35,152	131,221,036	3,072	46,669,363
2019	80,900	427,566,465	13,021	86,120,020	29,109	156,912,842	35,742	135,686,939	3,028	48,846,663
2020	80,983	431,397,074	12,668	84,433,252	29,946	163,410,649	35,465	135,186,814	2,904	48,366,360
2021	80,623	434,689,722	12,147	80,511,745	30,590	169,296,495	34,989	135,135,492	2,897	49,745,990
2022	79,440	441,230,091	11,517	79,007,610	30,808	176,046,206	34,393	136,323,037	2,722	49,853,238
2023	78,527	474,893,599	11,228	81,320,668	30,762	190,555,484	33,626	144,964,374	2,911	58,053,073
	(100)	(100)	(14.3)	(17.1)	(39.2)	(40.1)	(42.8)	(30.5)	(3.7)	(12.2)

주: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
2)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연금 1-3급을 지급 받음.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 받음

자료: 1) 국민연금관리공단(1999). 「1998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174-175.
2) 국민연금관리공단(2000). 「1999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44-245.
3) 국민연금관리공단(2001). 「2000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74-275.
4) 국민연금관리공단(2002). 「2001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74-275.
5) 국민연금관리공단(2003). 「200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56-257.
6) 국민연금관리공단(2004). 「2003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2-263.
7) 국민연금관리공단(2005). 「2004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6-267.
8) 국민연금관리공단(2006). 「2005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80-281.
9) 국민연금관리공단(2007). 「200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80-281.
10) 국민연금공단(2008). 「2007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74-275.
11) 국민연금공단(2009). 「2008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22-223.
12) 국민연금공단(2010). 「2009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22-223.
13) 국민연금공단(2011). 「2010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40-241.
14) 국민연금공단(2012). 「2011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0-261.
15) 국민연금공단(2013).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0-261.
16) 국민연금공단(2014). 「2013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8-269.
17) 국민연금공단(2015). 「2014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8-269.
18) 국민연금공단(2016). 「2015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8-269.
19) 국민연금공단(2017). 「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8-269.
20) 국민연금공단(2018). 「2017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8-269.
21) 국민연금공단(2019). 「2018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8-269.
22) 국민연금공단(2020). 「2019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70-271.
23) 국민연금공단(2021). 「2020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34-235.
24) 국민연금공단(2022). 「2021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34-235.
25) 국민연금공단(2023). 「202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34-235.
26) 국민연금공단(2024) 「2023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34-235.

- 2023년 기준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7만 8,527명, 수급액은 4,748억 9,359만 9천 원임
  - 장애연금 등급별로 살펴보면, 수급자 수는 3급이 33,626명(42.8%)으로 가장 많고, 수급액은 2급이 190,555,484천원(40.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10-1-3〉 장애연금 수급현황(2023) - 장애연금 등급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4급)	
				1급		2급		3급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전체		78,527	474,893,599	11,228	81,320,668	30,762	190,555,484	33,626	144,964,374	2,911	58,053,073
성별	남	59,547	370,672,695	9,108	67,585,798	22,540	144,501,617	25,732	112,251,250	2,167	46,334,031
	여	18,980	104,220,904	2,120	13,734,870	8,222	46,053,868	7,894	32,713,125	744	11,719,042
연령별	20-24세	35	240,283	4	16,689	11	60,589	6	21,043	14	141,962
	25-29세	307	2,007,378	51	325,975	81	387,967	115	511,564	60	781,871
	30-34세	999	5,931,682	132	904,442	329	1,680,546	417	1,636,083	121	1,710,610
	35-39세	2,057	11,965,626	314	1,963,888	792	4,268,091	786	3,168,491	165	2,565,155
	40-44세	4,851	28,902,225	737	4,975,359	1,947	11,447,208	1,884	7,652,174	283	4,827,484
	45-49세	7,462	46,202,610	1,027	6,955,786	2,953	18,566,282	3,096	13,722,982	386	6,957,560
	50-54세	12,313	78,724,196	1,692	11,961,616	4,967	32,047,767	5,073	22,560,529	581	12,154,284
	55-59세	16,248	111,785,288	2,188	17,246,682	6,403	44,799,710	6,861	31,821,341	796	17,917,556
	60-64세	14,993	93,624,995	2,277	17,073,898	5,842	37,148,502	6,372	28,428,291	502	10,974,304
	65-69세	6,890	34,579,206	1,310	9,147,365	2,812	14,995,073	2,765	10,414,581	3	22,188
	70세 이상	12,372	60,930,110	1,496	10,748,967	4,625	25,153,749	6,251	25,027,296	-	99
지역	서울	11,040	73,069,048	1,620	12,880,128	4,417	29,091,747	4,591	22,214,855	412	8,882,317
	부산	5,769	33,460,997	817	5,840,569	2,261	13,391,776	2,486	10,326,438	205	3,902,214
	대구	4,007	22,742,644	571	3,879,202	1,583	9,314,515	1,724	771,086	129	2,477,840
	인천	4,886	29,078,683	703	5,181,586	1,952	12,047,644	2,048	8,372,557	183	3,476,897
	광주	2,109	12,152,623	361	2,222,189	821	4,705,669	853	3,698,645	74	1,526,120
	대전	2,017	12,655,219	326	2,332,233	815	5,127,395	792	3,497,348	84	1,698,243
	울산	1,967	13,268,201	256	2,032,934	670	4,493,902	954	4,441,937	87	2,299,427
	세종	394	2,537,999	62	437,403	148	989,068	171	820,435	13	291,094
	경기	19,207	121,754,038	2,805	20,955,783	7,776	50,345,203	7,838	34,810,590	788	15,642,462
	강원	2,804	15,630,673	422	2,918,437	999	5,746,870	1,304	5,270,714	79	1,694,652
	충북	2,680	15,713,727	361	2,436,442	1,071	6,458,669	1,138	4,731,594	110	2,087,023
	충남	3,474	19,537,245	435	3,019,319	1,361	8,062,654	1,553	6,265,694	125	2,189,578
	전북	3,061	16,489,819	415	2,818,304	1,198	6,772,315	1,353	5,283,845	95	1,615,355
	전남	3,050	17,103,337	438	2,913,531	1,180	6,877,459	1,344	8,669,511	88	1,642,836
	경북	4,814	27,630,488	615	4,330,279	1,845	10,927,134	2,190	9,160,538	164	3,212,537
	경남	6,261	35,875,854	875	6,152,874	2,243	13,552,455	2,914	11,634,257	229	4,536,269
	제주	987	6,193,005	146	969,456	422	2,651,010	373	1,694,331	46	878,209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
3)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연금 1-3급을 지급받음.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음
4) 장애일시보상금의 70세 이상 수급자 수가 없으나, 미수령 수급액 지급에 의해 수급액이 발생함

자료: 국민연금공단(2024). 「2023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34-243.

- 장애연금 수급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9,547명으로 여성 18,980명의 약 3.1배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55-59세 수급자 수가 16,24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64세 14,993명, 70세 이상 12,372명, 50-54세 12,313명 순으로 많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연금 수급자는 경기(19,207명)와 서울(11,040명)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장애연금

- 장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법」 제67조부터 제71조에 의해 운영됨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에 의해 결정된 장애등급(1-4급)*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음(4급의 경우 일시보상금으로 기본연금액의 225%를 받음)

③ 산재보험 수급

〈표 10-1-4〉 장해급여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해등급별, 지역별

(단위: 명, 원)

구 분		수급자	금액
연도	2005	55,781	922,185,208,280
	2006	61,894	1,067,385,111,250
	2007	67,227	1,170,646,840,950
	2008	70,580	1,265,916,132,330
	2009	74,584	1,291,083,501,960
	2010	88,863	1,397,872,234,060
	2011	91,906	1,509,244,845,760
	2012	95,229	1,712,958,058,080
	2013	93,524	1,629,026,710,510
	2014	93,689	1,667,219,394,800
	2015	93,953	1,710,783,723,310
	2016	93,383	1,772,502,714,970
	2017	93,407	1,832,567,545,940
	2018	96,493	1,998,757,627,330
	2019	101,942	2,157,725,159,300
	2020	103,768	2,257,946,875,660
	2021	108,780	2,434,528,221,210
	2022	112,002	2,544,825,896,820
성별	남	98,895	2,375,660,289,860
	여	13,107	169,165,606,960
연령별	20세미만	57	485,094,750
	20-29세	1,976	23,984,352,520
	30-39세	4,830	69,008,210,130
	40-49세	12,662	231,119,947,780
	50-59세	27,123	608,830,444,370
	60-69세	37,950	926,089,282,150
	70-79세	20,161	501,655,689,150
	80-89세	6,921	175,196,484,080
	90-99세	309	8,077,520,680
	100세~	13	378,871,210

구 분		수급자	금액
장해등급	1급	3,826	190,164,627,880
	2급	3,730	147,653,615,950
	3급	4,904	181,496,201,420
	4급	2,868	92,573,464,670
	5급	9,266	241,600,698,670
	6급	15,644	363,767,955,280
	7급	18,431	361,819,399,970
	8급	1,405	79,289,574,220
	9급	2,388	102,021,930,150
	10급	3,775	141,429,728,950
	11급	9,631	234,793,691,760
	12급	7,267	136,150,274,150
	13급	7,582	117,017,382,060
	14급	22,400	155,047,351,690
지역	서울	12,845	292,263,326,480
	부산	7,907	166,567,526,890
	대구	5,069	101,886,013,870
	인천	7,781	174,477,006,890
	광주	3,036	66,998,042,220
	대전	3,015	65,648,305,990
	울산	4,071	101,039,924,990
	세종	363	8,693,648,380
	경기	23,690	522,523,117,500
	강원	9,473	245,756,372,050
	충북	4,117	93,974,136,390
	충남	5,043	114,653,102,720
	전북	4,309	98,936,934,480
	전남	4,139	96,649,669,400
	경북	6,876	167,069,919,770
	경남	9,496	208,711,266,930
	제주	539	12,604,775,880
	미분류	233	6,372,805,990

주: 1) 2022년 12월말 기준
2) 장해등급은 지급일 기준으로 장해등급별 수급자 수는 중복될 수 있음
3)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함

자료: 1) 고용노동부(2014). 「2013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16-317.
2) 고용노동부(2015). 「2014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13-314.
3) 고용노동부(2016). 「2015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18-319.
4) 고용노동부(2017).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22-323.
5) 고용노동부(2018). 「2017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24-325.
6) 고용노동부(2019). 「2018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24-325.
7) 고용노동부(2020). 「2019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24-325.
8) 고용노동부(2021). 「2020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26-327.
9) 고용노동부(2022). 「2021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32-333, 340-341.8)
10) 고용노동부(2023). 「2022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34-335, 342-343.
11) 지역별 통계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임

- 2022년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수급자 수는 112,002명이며, 총 수급액은 2조 5,448억 2,589만 6,820원임
  - 전년대비 수급자 수는 3,222명, 수급액은 전년대비 1,102억 9,767만 5,610원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수급자 수는 98,895명으로 여성 13,107명에 비해 7.5배 많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수급자 수는 60-69세가 37,95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59세 27,123명, 70-79세 20,161명 순으로 많음
  - 장해등급별로 살펴보면, 수급자 수는 14급이 22,40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급 18,431명, 6급 15,644명 순으로 많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해급여 수급자 수는 경기(23,690명)와 서울(12,845명)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산재보험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임.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임
  - 신청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 규모, 장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임.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됨
  - 단, 장해 1~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함

④ 건강보험 가입

〈표 10-1-5〉 건강보험 가입현황 - 가입형태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계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미가입
연도	2005	100.0	44.8	40.4	9.7	4.8	-	0.3
	2008	100.0	44.9	33.3	15.7	5.6	0.5	-
	2011	100.0	53.1	29.4	14.4	2.7	0.4	-
	2014	100.0	53.6	30.6	14.3	1.4	0.2	-
	2017	100.0	56.9	28.3	13.1	1.6	0.1	-
	2020	100.0	46.2	28.4	18.7	4.9	1.3	0.4
성별	남	100.0	46.2	29.8	18.1	4.0	1.2	0.6
	여	100.0	46.3	26.5	19.5	6.1	1.4	0.2
장애정도별	심한 장애	100.0	38.8	23.9	30.0	5.9	1.0	0.4
	심하지 않은 장애	100.0	50.7	31.1	11.9	4.3	1.5	0.4
장애유형별	지체	100.0	50.7	29.7	14.0	4.1	1.3	0.3
	뇌병변	100.0	43.8	23.8	25.5	5.6	1.2	0.1
	시각	100.0	46.4	32.8	13.0	5.3	1.6	0.9
	청각	100.0	49.3	30.7	12.6	4.5	1.8	1.0
	언어	100.0	41.9	31.7	14.2	8.5	2.5	1.2
	지적	100.0	34.3	21.3	37.0	5.8	1.1	0.5
	자폐성	100.0	52.0	32.5	10.6	3.6	1.4	-
	정신	100.0	15.6	14.5	58.1	11.3	0.5	-
	신장	100.0	42.2	30.8	21.5	5.0	0.2	0.3
	심장	100.0	46.8	30.6	17.9	1.6	0.8	2.3
	호흡기	100.0	43.8	26.9	20.3	7.4	1.6	-
	간	100.0	54.7	30.0	9.3	4.5	1.6	-
	안면	100.0	42.5	38.4	11.1	5.8	-	2.1
	장루·요루	100.0	50.0	33.2	13.0	2.4	1.4	-
	뇌전증	100.0	26.1	18.4	41.0	13.9	0.6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171.
2)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125.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21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10.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24.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15, 505.

- 2020년 기준 장애인의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률은 74.6%이며, 의료급여(1종+2종) 가입률은 23.6%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률은 남성(76.0%)이 여성(72.8%)보다 높고, 의료급여(1종+2종) 가입률은 여성(25.6%)이 남성(22.1%)보다 높음
  -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률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81.8%)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62.7%)보다 높고, 의료급여(1종+2종) 가입률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35.9%)이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6.2%)보다 높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은 간장애에서 54.7%로 가장 가입률이 높고, 지역건강보험은 안면장애에서 38.4%, 의료급여 1종은 정신장애에서 58.1%, 의료급여 2종은 뇌전증장애에서 13.9%로 가장 가입률이 높음

2)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 현황(전체 수급자 비교)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가구, 명, %)

구분		전체수급자		장애인세대 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비율
연도	2002	691,018	1,351,185	104,009	15.05
	2003	717,861	1,374,405	112,987	15.74
	2004	753,681	1,424,088	123,418	16.38
	2005	809,745	1,513,352	136,892	16.91
	2006	831,692	1,534,950	144,747	17.40
	2007	852,420	1,549,848	154,066	18.07
	2008	854,205	1,529,939	162,527	19.03
	2009	882,925	1,568,533	171,330	19.40
	2010	878,799	1,549,820	173,322	19.72
	2011	850,689	1,469,254	173,751	20.42
	2012	821,879	1,394,042	174,112	21.18
	2013	810,544	1,350,891	175,867	21.70
	2014	814,184	1,328,713	178,397	21.91
	2015	1,014,117	1,646,363	191,723	18.91
	2016	1,035,435	1,630,614	193,585	18.70
	2017	1,032,996	1,581,646	197,081	19.08
	2018	1,165,175	1,743,690	211,010	18.11
	2019	1,281,759	1,881,357	219,889	17.16
	2020	1,459,059	2,134,186	229,395	15.72
	2021	1,637,569	2,359,672	236,581	14.45
	2022	1,699,497	2,451,458	233,683	13.75
지역	서울	298,093	412,409	35,482	11.90
	부산	163,921	227,066	19,764	12.05
	대구	102,860	148,146	13,118	12.75
	인천	110,187	166,083	12,472	11.31
	광주	61,010	94,137	9,100	14.92
	대전	50,390	75,140	7,884	15.65
	울산	29,342	41,510	3,541	12.07
	세종	5,014	8,165	600	11.97
	경기	302,558	443,985	37,802	12.49
	강원	60,099	85,681	9,648	16.05
	충북	53,023	78,709	9,049	17.07
	충남	61,651	88,800	10,496	17.02
	전북	85,720	128,522	14,012	16.35
	전남	72,576	104,064	14,179	19.54
	경북	104,096	147,353	16,148	15.51
	경남	117,748	168,197	17,405	14.78
	제주	21,209	33,491	2,983	14.06

주: 1) 전체수급자 가구 수는 시설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가구 수임. 전체수급자 인원은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합한 수치임
2) 비율 = (장애인수급자 가구 수 / 전체수급자 가구 수) * 100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4-07-30)

- 2022년 장애인세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수는 23만 3,683가구로 전체 수급자 1,699,497가구의 13.75%를 차지함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세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수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이다 2022년 감소함
  - 지역별 전체 수급자 가구 대비 장애인 수급자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 19.54%, 충북 17.07%, 충남 17.02% 순으로 높음

〈표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현황 – 급여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연도	2017	15.0	16.2	14.4	1.4
	2020	19.1	25.0	14.7	1.8
성별	남	18.2	23.3	14.6	2.0
	여	20.4	27.2	15.0	1.6
장애정도별	심한 장애	29.2	37.8	21.8	2.9
	심하지 않은 장애	13.0	17.3	10.5	1.2
장애유형별	지체	14.6	18.9	12.2	1.2
	뇌병변	24.4	33.2	18.4	2.5
	시각	13.7	19.0	11.0	1.6
	청각	13.3	18.9	10.1	0.9
	언어	20.0	24.7	15.5	3.6
	지적	36.3	44.4	25.5	6.2
	자폐성	10.4	16.2	8.2	8.4
	정신	60.0	70.8	40.9	0.8
	신장	20.4	29.8	15.6	1.4
	심장	15.2	21.3	7.6	1.0
	호흡기	23.9	30.3	20.5	0.9
	간	10.1	14.7	8.0	1.4
	안면	13.6	18.3	11.3	3.1
	장루·요루	9.9	16.5	9.6	0.0
	뇌전증	45.1	57.6	34.7	4.3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61-463.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62-463, 700-701.

- 2020년 기준 급여유형별 수급 비율은 의료급여(25.0%), 생계급여(19.1%), 주거급여(14.7%), 교육급여(1.8%) 순으로 높음
  - 여성이 남성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비율이 높음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비율이 높음
  -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비율이 가장 높음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급여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하여 행하여짐. 다만 다른 급여의 보호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정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음
-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
  -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상),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상), 주거급여(중위소득 43%이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상)

(2) 장애인연금

① 장애인연금 수급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수급권자	수급자	수급률
연도	2013	511,979	305,394	59.65
	2014	509,164	328,414	64.50
	2015	508,927	342,444	67.29
	2016	512,314	350,161	68.35
	2017	518,657	359,986	69.41
	2018	521,304	364,712	69.96
	2019	521,180	368,716	70.75
	2020	520,176	375,759	72.24
	2021	518,705	371,413	71.60
	2022	515,498	362,127	70.25
	2023	508,975	355,094	69.77

주: 1) 각년도 12월 말 기준임
2) 수급률 = (수급자 수 / 수급권자 수) * 100
자료: 복지로 복지통계(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Iframe.do?datsNo=29&datsClNo=1043&datsClCrit=WS) (검색일 2024-6-13)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2023년 기준,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50만 8,975명, 수급자는 35만 5,094명이며, 수급률은 69.77%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수 및 수급률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2-4〉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2023)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수급자	
		인원	비율
전체		355,094	(100.0)
성별	남성	199,175	(56.1)
	여성	155,919	(43.9)
연령	18세~64세	219,478	(61.8)
	65세 이상	135,616	(38.2)
장애유형	지체	49,994	(14.1)
	시각	24,143	(6.8)
	청각	30,141	(8.5)
	언어	2,734	(0.8)
	지적	102,427	(28.8)
	뇌병변	53,236	(15.0)
	자폐성	13,055	(3.7)
	정신	26,689	(7.5)
	신장	48,157	(13.6)
	심장	408	(0.1)
	호흡기	3,046	(0.9)
	간	124	(0.0)
	장루·요루	94	(0.0)
	안면	270	(0.1)
	뇌전증	573	(0.2)
	장애유형 미상	3	(0.0)
장애정도	심한장애(중증)	354,730	(99.9)
	기타	364	(0.1)
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	173,423	(48.8)
	차상위계층	15,833	(4.5)
	차상위초과	138,530	(39.0)
	시설수급자	27,308	(7.7)
지역	서울	50,271	(14.2)
	부산	25,435	(7.2)
	대구	18,091	(5.1)
	인천	18,755	(5.3)
	광주	10,785	(3.0)
	대전	10,656	(3.0)
	울산	6,379	(1.8)
	세종	1,467	(0.4)
	경기	70,607	(19.9)
	강원	13,566	(3.8)
	충북	14,143	(4.0)
	충남	18,258	(5.1)
	전북	19,254	(5.4)
	전남	20,552	(5.8)
	경북	25,303	(7.1)
	경남	26,536	(7.5)
	제주	5,036	(1.4)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유형별 중 '장애유형 미상'은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급취소 등의 사유로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3) 장애정도별 중 '기타'는 장애정도 심사 결정보류 및 확인불가인 자를 의미함

자료: 복지로 복지통계(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Iframe.do?datsNo=34&datsClNo=1043&datsClCrit=WS) (검색일 2024-6-13)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6.1%, 여성이 43.9%로, 남성이 12.2%p 더 많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64세 수급자 수는 21만 9,478명(61.8%)이고 65세 이상은 13만 5,616명(38.2%)임
-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2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뇌병변장애인 15.0%, 지체장애인 14.1%, 신장장애인이 13.6%임
- 장애정도별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99.9%로 대다수를 차지함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4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차상위초과가 39.0%, 시설수급자가 7.7%, 차상위계층이 4.5%를 차지함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경기에 19.9%, 서울에 14.2% 분포함

장애인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임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함

(3) 장애수당

① 장애수당 수급

〈표 10-2-5〉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수급자 수	비율
연도	2010	297,041	-
	2011	306,480	-
	2012	318,483	-
	2013	320,029	-
	2014	320,318	-
	2015	327,881	-
	2016	336,224	-
	2017	343,662	-
	2018	352,117	-
	2019	365,804	-
	2020	378,946	-
	2021	389,210	-
	2022	396,633	-
	2023	413,627	(100.0)
성별	남성	196,229	(47.4)
	여성	217,398	(52.6)
연령별	18세~64세	155,742	(37.7)
	65세 이상	257,885	(62.3)
장애유형별	지체	156,775	(37.9)
	시각	35,281	(8.5)
	청각	78,083	(18.9)
	언어	3,318	(0.8)
	지적	32,001	(7.7)
	뇌병변	40,533	(9.8)
	자폐성	333	(0.1)
	정신	53,329	(12.9)
	신장	3,543	(0.9)
	심장	663	(0.2)
	호흡기	1,481	(0.4)
	간	1,632	(0.4)
	안면	345	(0.1)
	장루.요루	3,129	(0.8)
	뇌전증	3,181	(0.8)
장애정도별	심한 장애	130,844	(31.6)
	심하지 않은 장애	282,783	(68.4)
소득계층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90,491	(70.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848	(3.6)
	시설입소자	108,288	(26.2)
지역별	서울	61,278	(14.8)
	부산	34,428	(8.3)
	대구	24,603	(5.9)
	인천	25,904	(6.3)
	광주	12,545	(3.0)
	대전	11,915	(2.9)
	울산	6,073	(1.5)
	세종	1,206	(0.3)
	경기	72,519	(17.5)
	강원	17,385	(4.2)
	충북	14,618	(3.5)
	충남	17,275	(4.2)
	전북	24,388	(5.9)
	전남	23,551	(5.7)
	경북	30,086	(7.3)
	경남	30,959	(7.5)
	제주	4,894	(1.2)

주: 1) 연도별 자료는 각 년도별 12월 말 기준임
2) 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장애정도별/소득계층별/지역별 자료는 2023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41만 3,627명으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음
  - 수급자 중 여성이 52.6%, 65세 이상이 62.3%를 차지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37.9%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 18.9%, 정신장애인 12.9% 순으로 많음
  - 장애정도별로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전체 수급자 중 68.4%를 차지함
  - 소득계층별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70.2%, 시설입소자가 26.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3.6%를 차지함
  - 장애수당 수급자는 경기에 17.5% 서울에 14.8%, 부산에 8.3% 분포하고 있음

장애수당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게 지원함

② 장애아동수당 수급

〈표 10-2-6〉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수급자 수	비율
연도	2010	18,945	-
	2011	19,466	-
	2012	18,631	-
	2013	21,777	-
	2014	21,121	-
	2015	20,464	-
	2016	19,934	-
	2017	19,323	-
	2018	18,568	-
	2019	17,990	-
	2020	16,565	-
	2021	16,585	-
	2022	16,759	-
	2023	17,333	(100.0)
성별	남성	11,127	(64.2)
	여성	6,206	(35.8)
연령별	18세 미만	15,579	(89.9)
	18-20세	1,747	(10.1)
	20세 초과	7	(0.0)
장애유형별	지체	379	(2.2)
	시각	250	(1.4)
	청각	469	(2.7)
	언어	550	(3.2)
	지적	11,402	(65.8)
	뇌병변	1,438	(8.3)
	자폐성	2,638	(15.2)
	정신	13	(0.1)
	신장	32	(0.2)
장애유형별	심장	42	(0.2)
	호흡기	4	(0.0)
	간	40	(0.2)
	안면	8	(0.0)
	장루.요루	18	(0.1)
	뇌전증	50	(0.3)
장애정도별	심한 장애	15,956	(92.1)
	심하지 않은 장애	1,377	(7.9)
소득계층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863	(51.1)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296	(36.3)
	시설입소자	2,174	(12.5)
지역별	서울	2,117	(12.2)
	부산	1,225	(7.1)
	대구	894	(5.2)
	인천	1,088	(6.3)
	광주	811	(4.7)
	대전	630	(3.6)
	울산	344	(2.0)
	세종	55	(0.3)
	경기	3,444	(19.9)
	강원	579	(3.3)
	충북	803	(4.6)
	충남	765	(4.4)
	전북	1,079	(6.2)
	전남	890	(5.1)
	경북	1,163	(6.7)
	경남	1,073	(6.2)
	제주	373	(2.2)

주: 1) 연도별 자료는 각 년도별 12월 말 기준임
2) 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장애정도별/소득계층별/지역별 자료는 2023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1만 7,333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함
  - 장애아동 수급자 중 남성이 64.2%, 18세 미만이 89.9%를 차지함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아동의 비중이 65.8%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장애가 심한 아동이 전체 수급자 중 92.1%를 차지함
  - 소득계층별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51.1%,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6.3%, 시설 입소자는 12.5%를 차지함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경기에 19.9%, 서울에 12.2%, 부산에 7.1% 분포하고 있음

※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함

(4) 정신질환 의료보장

① 만성 정신질환 급여

〈표 10-2-7〉 만성 정신질환 급여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명, %, 일, 백만원)

구분		의료보장 적용인구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인원	비율				
연도	2013	51,448,491	2,679,975	5.2	60,573,044	351,255,548	3,476,993	2,835,071
	2014	51,757,146	2,741,609	5.3	63,965,263	404,192,088	3,848,742	3,122,054
	2015	52,034,424	2,857,828	5.5	67,069,255	429,546,532	4,130,656	3,335,307
	2016	52,272,755	3,039,137	5.8	71,005,336	467,315,609	4,511,888	3,625,008
	2017	52,426,625	3,185,509	6.1	74,146,666	495,101,365	4,834,917	3,859,761
	2018	52,556,653	3,421,605	6.5	77,668,892	542,754,520	5,280,105	4,225,370
	2019	52,880,293	3,643,813	6.9	79,265,873	596,357,805	5,687,080	4,573,192
	2020	52,870,968	3,747,397	7.1	79,684,042	646,772,399	6,029,052	4,864,183
	2021	52,928,662	4,068,632	7.7	81,382,050	712,004,398	6,532,168	5,269,805
	2022	52,932,270	4,308,043	8.1	80,659,222	761,670,166	6,753,600	5,453,014
지역	서울	9,755,308	796,538	8.2	10,217,400	136,766,063	936,847	739,873
	부산	3,369,020	319,494	9.5	9,015,198	61,667,151	706,764	579,300
	대구	2,399,163	212,590	8.9	4,476,203	37,407,160	362,552	299,839
	인천	3,061,952	225,693	7.4	3,480,267	39,051,539	290,857	236,320
	광주	1,459,064	108,403	7.4	2,821,412	18,741,552	235,682	191,587
	대전	1,472,041	126,362	8.6	2,093,434	22,021,502	163,807	132,669
	울산	1,133,588	78,423	6.9	1,952,107	14,105,676	151,284	120,869
	세종	391,185	27,824	7.1	400,407	4,516,441	33,613	26,391
	경기	14,112,941	1,016,863	7.2	13,999,709	176,393,652	1,232,079	976,589
	강원	1,558,971	133,384	8.6	1,982,913	23,564,291	159,770	129,857
	충북	1,646,888	140,251	8.5	2,331,184	24,183,662	186,535	151,395
	충남	2,214,188	194,438	8.8	3,673,351	35,039,491	303,650	243,681
	전북	1,803,057	178,201	9.9	4,385,632	31,719,065	363,088	296,424
	전남	1,854,960	177,480	9.6	5,101,709	31,385,741	434,899	353,885
	경북	2,653,875	240,362	8.2	6,410,207	44,401,219	521,717	428,377
	경남	3,349,801	274,838	8.2	7,617,344	50,263,901	610,181	497,821
	제주	696,268	56,899	8.2	700,745	10,442,060	60,270	48,130

주: 1) 만성질환 중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 현황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 주요 만성질환으로 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
2) 연말 주민등록 실거주지 기준임
3) 수진기준(의료이용은 약국제외, 급여일수,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포함)이며, 의료급여 포함함
4) 진료실인원의 비율은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 대비 만성 정신질환 진료실인원의 비율로, 내부연구진에서 산출함
5)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출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 진료실인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수
· 내원일수: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
· 급여일수(진료일수):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총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진료에 소용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
· 급여비(공단부담금): 심사결정된 총진료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자료: 1)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2013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p44-45.
2) 2014년-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각 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p50-51.
3)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2022 지역별의료 이용 통계연보」 p50-51.

- 2022년 기준 만성 정신질환의 진료 실인원은 430만 8,043명(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 대비 8.1%)이며, 총 진료비는 6조 7,536억 원, 급여비는 5조 4,530억 1,400만 원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만성 정신질환의 진료실인원,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 대비 비율,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가 전년 대비 증가함 (전년대비 증감률: 진료 실인원(5.9%), 급여일수(7.0%), 진료비(3.4%), 급여비(3.5%))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서울의 경우 만성 정신질환의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반면,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 대비 만성 정신질환 진료실인원의 비율은 전북 9.9%, 전남 9.6%, 부산 9.5% 등이 높게 나타남

② 정신질환 의료급여

〈표 10-2-8〉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

(단위: 명, 건, 일, 천원)

구 분		진료 실인원	급여건수	입내원 일수	총 진료비	기금부담금	건당		내원일당	
							진료비	기금부담금	진료비	기금부담금
2013		353,289	3,302,454	22,903,389	1,106,842,965	1,098,006,186	335	332	48	48
2014		362,945	3,459,377	23,628,260	1,159,758,861	1,150,887,083	335	333	49	49
2015		381,137	3,616,648	24,264,510	1,198,994,952	1,189,894,900	332	329	49	49
2016		405,465	3,935,040	25,352,961	1,268,469,767	1,258,487,913	322	320	50	50
2017		415,077	4,374,889	25,756,717	1,303,508,991	1,284,404,519	298	294	51	50
2018	계	438,490	4,766,890	26,411,105	1,374,792,724	1,350,448,759	288	283	52	51
2019		457,744	5,181,844	26,769,979	1,456,978,718	1,430,783,061	281	276	54	53
2020		470,003	5,489,809	27,025,367	1,563,962,188	1,535,565,267	285	280	58	57
2021		489,271	5,819,567	27,238,927	1,771,572,636	1,718,342,823	304	295	65	63
2022		496,069	5,940,600	26,742,022	1,854,887,842	1,789,295,985	312	301	69	67
2023		529,934	6,386,495	27,536,135	2,009,730,210	1,938,851,625	315	304	72	70
1.치매 (F00-F03)	계	132,384	1,268,003	8,512,604	699,833,400	677,036,530	551	533	82	79
	입원	40,052	299,546	7,548,856	611,143,233	589,471,159	2,040	1967	80	78
	외래	96,410	640,070	635,361	32,912,682	31,932,967	51	49	51	50
	약국	59,449	328,387	328,387	55,777,485	55,632,404	169	169	169	169
2.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행동장애 (F10)	계	26,462	251,742	2,425,615	163,856,224	156,539,927	650	621	67	64
	입원	12,841	96,706	2,269,197	152,713,493	145,708,722	1,579	1,506	67	64
	외래	18,180	138,333	139,715	9,864,461	9,560,583	71	69	70	68
	약국	3,119	16,703	16,703	1,278,269	1,270,622	76	76	76	76
3.기타 정신 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1-F19)	계	1,789	7,546	13,837	1,592,859	1,533,936	211	203	115	110
	입원	509	779	7,094	911,075	866,629	1,169	1,112	128	122
	외래	971	5,240	5,216	415,554	401,778	79	76	79	77
	약국	592	1,527	1,527	266,230	265,528	174	173	174	173

주: 1) 질병현황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기재한 상병기호(검사 등 포함) 기준임
2) 현황 및 계는 반올림하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출처: 의료급여 주요통계)
· 진료실인원: 특정기간 동안 진료 받은 환자를 중복 제외하여 집계한 인원 수. 한명의 수급권자가 여러 번 진료 받더라도 진료실인원은 1명으로 집계됨
· 급여건수: 의료급여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중, 심사결정 혹은 지급결정된 건수
· 입내원일수: 수급권자가 실제로 의료급여기관에 내원 또는 입원한 일수
· 총진료비(의료급여비용 총액):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기금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
· 기금부담금: 의료급여법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금액

자료: 1) 2013년-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각 년도). 「의료급여통계연보」 제3장 상병통계현황 제7표 정신질환상병 의료급여 종별 진료현황(계)
2)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 p748-749.
3)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2017 의료급여통계연보」 p466-467.
4) 2018년-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각 년도). 「의료급여통계연보」 p750-751.
5)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2022 의료급여 주요통계」 p92-93.
6)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2023 의료급여 주요통계」 p86-87.

- 2023년 기준 정신질환 진료 실인원은 52만 9,934명이며, 급여건수는 636만 6,495건, 총진료비는 2조 97억 3,021만 원, 기금부담금 1조 9,388억 5,162만 5천 원임. 급여 1건당 진료비는 31만 5천 원, 급여 1건당 기금부담금은 30만 4천 원이며, 내원 1일당 진료비는 7만 2천 원, 내원 1일당 기금부담금은 7만 원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실인원, 급여건수, 입내원일수, 총 진료비, 기금부담금은 증가추이를 보이며, 급여 1건당 진료비와 기금부담금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추이를 보임

〈표 10-2-8〉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계속)

(단위: 명, 건, 일, 천원)

구 분		진료 실인원	급여건수	입내원 일수	총 진료비	기금부담금	건당		내원일당	
							진료비	기금부담금	진료비	기금부담금
4.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20-F29)	계	98,423	1,321,987	10,201,284	691,594,031	664,809,150	523	502	67	65
	입원	34,756	329,669	9,103,925	603,626,602	578,742,478	1,831	1,755	66	63
	외래	73,082	916,315	1,021,356	81,412,165	79,545,998	88	86	79	77
	약국	10,785	76,003	76,003	6,555,264	6,520,675	86	85	86	85
5.기분(정동성) 장애 (F30-F39)	계	147,906	1,718,707	2,742,841	184,198,095	178,478,539	107	103	67	65
	입원	8,835	46,324	1,055,258	73,360,432	70,088,482	1,583	1,513	69	66
	외래	139,865	1,463,941	1,479,141	97,701,126	95,373,602	66	65	66	64
	약국	32,613	208,442	208,442	13,136,537	13,016,455	63	62	63	62
6.신경증적,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40-F48)	계	83,362	654,116	730,324	42,505,169	41,371,091	64	62	58	56
	입원	1,713	4,555	79,285	5,891,340	5,631,967	1,293	1,236	74	71
	외래	77,740	547,014	548,492	31,299,670	30,479,333	572	557	57	55
	약국	24,705	102,547	102,547	5,314,159	5,259,792	51	51	51	51
7.정신지체 (F70-F79)	계	19,876	193,137	1,213,137	80,226,458	77,031,306	415	398	66	63
	입원	4,499	38,772	1,051,146	69,688,624	66,744,509	1,797	1,721	66	63
	외래	16,223	134,317	141,943	9,033,721	8,791,013	67	65	63	61
	약국	3,120	20,048	20,048	1,504,114	1,495,785	75	74	75	74
8.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F04-F09, F50-F69, F80-F99)	계	94,200	675,744	1,134,600	72,932,210	70,736,825	107	104	64	62
	입원	3,413	19,354	479,963	33,337,115	31,897,017	1,722	1,648	69	66
	외래	87,098	493,455	491,702	27,948,414	27,253,999	56	55	56	55
	약국	38,862	162,935	162,935	11,646,680	11,585,809	71	71	71	71
9.뇌전증 (G40-G41)	계	31,234	275,513	561,893	72,991,764	71,314,320	264	258	129	126
	입원	4339	16,869	308,897	41,936,911	40,647,536	2,486	2,409	135	131
	외래	28,428	174,334	168,686	11,035,664	10,682,490	63	61	65	63
	약국	18,181	84,310	84,310	20,019,189	19,984,294	237	237	237	237

주: 1) 질병현황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기재한 상병기호(검사 등 포함) 기준임
2) 현황 및 계는 반올림하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출처: 의료급여 주요통계)
· 진료실인원: 특정기간 동안 진료 받은 환자를 중복 제외하여 집계한 인원 수. 한명의 수급권자가 여러 번 진료 받더라도 진료실인원은 1명으로 집계됨
· 급여건수: 의료급여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중, 심사결정 혹은 지급결정된 건수
· 입내원일수: 수급권자가 실제로 의료급여기관에 내원 또는 입원한 일수
· 총진료비(의료급여비용 총액):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기금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
· 기금부담금: 의료급여법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금액
4) 정신과질환 상병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기호 F00-F99 및 G40-G41

자료: 1) 2013년-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각 년도). 「의료급여통계연보」 제3장 상병통계현황 제7표 정신질환상병 의료급여 종별 진료현황(계)
2)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 p748-749.
3)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2017 의료급여통계연보」 p466-467.
4) 2018년-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각 년도). 「의료급여통계연보」 p750-751.
5)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2022 의료급여 주요통계」 p92-93.
6)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2024). 「2023 의료급여 주요통계」 p86-87.

- 상병별 진료실인원은 기분(정동성) 장애가 14만 7,90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치매 13만 2,384명,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9만 8,423명 순으로 많음
- 급여 1건당 진료비는 알코올 사용에 의한 행동장애가 65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치매가 55만 1천 원으로 많음
- 내원 1일당 진료비는 뇌전증이 12만 9천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정신 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가 11만 5천 원으로 많음

③ 정신보건 의료보장 이용

〈표 10-2-9〉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1종	2종	
연도	2018	143,156	77,773	64,112	6,949	503
	2019	138,882	74,971	62,710	6,673	440
	2020	122,829	63,844	57,317	5,633	379
	2021	115,121	60,075	53,767	4,681	303
	2022	116,277	62,125	52,554	4,693	264
기관종류	종합병원 정신과	22,213	18,435	3,437	439	33
	병원 정신과	7,360	3,518	3,732	307	4
	정신병원	88,161	41,120	45,757	3,978	227
	요양병원 정신과	5	1	4	-	-
	한방병원 정신과	408	136	254	26	-
	의원 정신과	2,856	1,826	1,003	89	-
지역	서울	12,314	9,343	2,675	438	35
	부산	9,383	4,792	4,350	404	83
	대구	8,589	4,544	3,972	357	3
	인천	8,759	5,699	2,859	410	5
	광주	4,075	2,297	1,701	180	-
	대전	2,710	1,437	1,234	113	-
	울산	2,640	1,423	1,157	113	16
	세종	124	32	92	2	-
	경기	26,095	15,995	9,781	940	46
	강원	3,286	1,510	1,707	156	1
	충북	4,239	1,965	2,242	173	10
	충남	5,760	2,759	2,960	179	5
	전북	5,281	2,300	2,881	242	1
	전남	6,248	2,128	4,045	266	3
	경북	9,639	3,378	6,177	406	8
	경남	12,166	5,036	6,990	479	52
	제주	768	471	283	45	-

주: 1)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이며, 만 15세 이상 치매 제외 F코드 전체의 실인원을 의미함
2) 기타에는 보훈, 외국인 근로자, 행려환자 등이 포함됨
3) 시도별 현황은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분석함
4) 2회 이상 입원환자는 입원 시점별로 의료보장이 상이할 수 있어, 기관 종류별 또는 시·도별 실인원의 합계는 전체 실인원의 값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p79.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p81.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p81.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p81.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p68.

- 2022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입원한 환자의 실인원은 총 11만 6,277명임. 입원환자의 의료보장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6만 2,125명, 의료급여(1종+2종) 5만 7,247명, 기타 264명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실인원 수는 감소 추이를 보이다 2022년 다소 증가함
  - 정신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인원 수는 정신병원이 8만 8,16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정신과 2만 2,213명, 병원 정신과 7,360명 등의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인원 수는 경기가 2만 6,09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만 2,314명, 경남 1만 2,166명 등의 순으로 많음

〈표 10-2-10〉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구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1종	2종	
연도	2018	9,518	1,171	8,316	22	9
	2019	9,252	1,105	8,124	19	4
	2020	8,828	1,002	7,797	20	9
	2021	8,537	886	7,538	99	14
	2022	8,249	844	7,379	15	11

주: 1)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임
2) 기타에는 보훈, 외국인 근로자, 행려환자 등이 포함됨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p86.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p87.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p87.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p87.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p74.

〈표 10-2-1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1종	2종	
연도	2018	88,273	48,945	29,998	6,453	2,877
	2019	87,075	46,898	30,806	6,328	3,043
	2020	89,293	48,421	30,805	6,160	3,907
	2021	93,522	52,291	31,330	6,449	3,452
	2022	94,145	53,147	30,809	6,420	3,769
기관종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80,513	46,356	25,228	5,560	3,36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7,204	3,977	2,325	641	261
	정신재활시설	6,428	2,814	3,256	219	139
지역	서울	12,042	5,929	4,476	1,083	554
	부산	5,524	2,623	2,215	470	216
	대구	3,332	1,592	1,297	205	238
	인천	6,168	3,341	1,996	572	259
	광주	2,982	1,461	1,158	274	89
	대전	1,885	902	799	125	59
	울산	1,541	941	455	99	46
	세종	376	274	56	12	34
	경기	24,830	16,231	6,267	1,472	860
	강원	5,358	2,484	2,170	370	334
	충북	5,798	4,273	1,107	275	143
	충남	4,647	3,262	1,041	196	148
	전북	3,168	1,363	1,410	249	146
	전남	3,764	1,674	1,693	273	124
	경북	4,875	2,520	1,834	298	223
	경남	6,137	3,227	2,344	352	214
	제주	1,718	1,050	491	95	82

주: 1)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임
2) 기타에는 보훈, 외국인 근로자, 행려환자 등이 포함됨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p98.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p100.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p100.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p100.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p86.

- 2022년 기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수는 8,249명임. 입소자의 의료보장 유형은 의료급여(1종+2종) 7,394명, 건강보험 844명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수는 감소 추이를 보임
- 2022년 기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수는 9만 4,145명임. 등록자의 의료보장 유형은 건강보험 5만 3,147명, 의료급여(1종+2종) 3만 7,229명임
  - 기관종류별로 살펴보면, 등록자 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8만 0,513명으로 가장 많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등록자 수는 경기가 2만 4,83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만 2,042명, 인천 6,168명 등의 순으로 많음

3) 사회서비스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① 개요

〈표 10-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 연도별

(단위: 억원, 명, 만원, 시간)

구분	예산	지원 규모(이용자)	월평균 급여량	월평균 지원시간
2007	296	14,515	33.2	46
2008	750	19,498	44.8	56
2009	1,124	27,818	57.6	72
2010	1,348	29,409	57.6	72
2011	1,928	33,667	57.6	83
2012	3,098	38,266	93.9	83
2013	3,829	48,335	93.9	110
2014	4,285	53,870	103.3	120
2015	4,679	64,523	108.8	123
2016	5,008	71,636	110.9	123
2017	6,061	72,193	113.0	123
2018	7,194	78,202	131.0	122
2019	10,034	86,730	160.3	124
2020	13,057	93,115	170.0	126
2021	15,217	102,575	181.0	129
2022	17,405	110,778	200.0	135
2023	19,919	120,877	212.0	136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지자체 예산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예산임
3) 월평균 지원시간은 월평균 급여량을 시간당 단가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예산은 2007년 296억원에서 2023년 19,919억원으로, 지원 규모는 2007년 14,515명에서 2023년 120,87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월평균 급여량은 212.0만원, 월평균 지원시간은 136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만원, 1시간 증가함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개정) 참고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음(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 자격 인정 여부 결정
  -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되며, 심의결과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을 선정함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의 상태, 가정환경 및 사회활동 정도,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됨. 급여는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구성됨(활동지원급여:1~15구간,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성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명, 개, 명)

구분		수급자	이용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록인원	활동인원
연도별	2011	46,502	33,667	592	214	125	31,234	23,653
	2012	50,520	38,266	614	223	122	42,467	28,003
	2013	60,435	48,335	689	229	121	67,823	40,448
	2014	64,906	53,870	723	224	110	56,531	46,812
	2015	72,212	64,523	751	227	105	61,366	52,761
	2016	79,926	71,636	756	143	33	64,145	58,102
	2017	86,926	72,193	767	142	26	68,167	62,629
	2018	94,496	78,202	774	138	26	72,981	68,673
	2019	105,569	86,730	802	146	34	82,448	78,044
	2020	115,017	93,115	834	145	29	88,551	84,854
	2021	127,363	102,575	883	152	26	98,873	95,046
	2022	139,509	110,778	912	150	27	109,243	103,378
	2023	151,259	120,877	964	147	25	118,180	112,570
지역별	서울	26,536	21,600	144	8	-	21,660	21,010
	부산	10,176	8,701	65	1	1	7,134	8,469
	대구	7,045	5,600	41	4	-	5,430	5,372
	인천	8,173	6,644	39	10	3	5,421	6,417
	광주	5,998	5,354	31	3	-	5,341	5,200
	대전	5,431	4,382	26	-	-	4,035	4,321
	울산	2,373	1,859	12	1	1	1,925	1,733
	세종	839	666	7	-	-	1,238	650
	경기	35,039	26,824	205	20	9	30,832	24,844
	강원	4,069	2,886	37	17	2	3,271	2,478
	충북	4,561	3,656	29	7	4	3,489	3,402
	충남	7,060	5,554	52	13	-	5,549	4,662
	전북	6,506	5,010	47	22	1	4,622	4,402
	전남	7,156	5,988	65	11	2	5,535	5,165
	경북	7,356	5,605	63	11	-	6,378	4,938
	경남	10,687	8,769	94	17	1	10,011	8,018
	제주	2,254	1,779	7	2	1	1,570	1,489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활동지원사 중 다수의 지역에 등록한 경우가 있음. 이에 활동지원사 등록인원 전체(순계 인원)와 시도별 합계 인원이 불일치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2011년 46,502명에서 2023년 151,25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수는 2011년 33,667명에서 2023년 120,87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활동지원기관 수는 2023년 기준으로 활동보조 964개, 방문목욕 147개, 방문간호 25개임
- 활동지원사 등록이원과 활동인원은 2011년 각각 31,234명, 23,653명에서 2023년 각각 118,180명, 112,57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에 수급자, 이용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② 수급자 수

〈표 10-3-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연도별	2011	46,502	10,606	8,383	297	8	12,798	8,775	4,621
	2012	50,520	11,097	9,143	322	5	14,396	9,157	5,344
	2013	60,435	11,648	9,439	361	52	19,651	9,874	7,430
	2014	64,906	11,831	9,716	379	70	21,979	10,205	8,428
	2015	72,212	12,344	10,199	404	141	25,603	11,120	9,574
	2016	79,926	12,823	10,685	438	197	29,645	11,979	10,789
	2017	86,926	13,232	11,044	476	284	33,128	12,744	12,141
	2018	94,496	13,570	11,471	519	344	37,060	13,481	13,553
	2019	105,569	14,857	12,123	612	477	42,090	14,702	15,226
	2020	115,017	16,045	12,461	729	704	45,964	16,248	16,346
	2021	127,363	17,640	12,925	843	1,023	50,764	18,157	18,043
	2022	139,509	18,869	13,443	955	1,385	55,412	19,944	20,190
	2023	151,259	19,818	13,810	1,021	1,608	59,954	21,549	22,997
		(100.0)	(13.1)	(9.1)	(0.7)	(1.1)	(39.6)	(14.2)	(15.2)
성별	남	93,424	12,125	8,176	573	1,067	34,777	12,643	18,876
		(100.0)	(13.0)	(8.8)	(0.6)	(1.1)	(37.2)	(13.5)	(20.2)
	여	57,835	7,693	5,634	448	541	25,177	8,906	4,121
		(100.0)	(13.3)	(9.7)	(0.8)	(0.9)	(43.5)	(15.4)	(7.1)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145,010	18,016	13,175	931	1,062	59,954	18,788	22,997
		(100.0)	(12.4)	(9.1)	(0.6)	(0.7)	(41.3)	(13.0)	(15.9)
	심하지 않은 장애인	6,249	1,802	635	90	546	-	2,761	-
		(100.0)	(28.8)	(10.2)	(1.4)	(8.7)	-	(44.2)	-

주: 2023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2011년 46,502명에서 2023년 151,52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59,954명(39.6%)으로 가장 많으며, 자폐성장애 22,997명(15.2%), 뇌병변장애 21,549명(14.2%), 지체장애 19,818명(13.1%), 시각장애 13,810명(9.1%) 순임

〈표 10-3-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장애유형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연도별	2011	266	436	17	264	24	7	-	47
	2012	253	455	18	253	19	8	-	50
	2013	641	971	29	225	24	9	1	80
	2014	740	1,191	27	215	23	9	1	92
	2015	1,034	1,347	35	251	23	9	6	122
	2016	1383	1,477	39	280	24	10	5	152
	2017	1,668	1,638	46	297	20	13	14	181
	2018	2,066	1,856	46	276	22	14	18	200
	2019	2,607	2,190	50	295	26	15	28	271
	2020	3,208	2,452	57	335	31	18	43	376
	2021	3,950	2,989	65	374	36	21	68	465
	2022	4,634	3,440	77	423	44	22	99	572
	2023	5,300	3,816	92	426	49	20	114	685
		(3.5)	(2.5)	(0.1)	(0.3)	(0.0)	(0.0)	(0.1)	(0.5)
성별	남	2,361	2,098	42	245	23	9	54	355
		(2.5)	(2.2)	(0.0)	(0.3)	(0.0)	(0.0)	(0.1)	(0.4)
	여	2,939	1,718	50	181	26	11	60	330
		(5.1)	(3.0)	(0.1)	(0.3)	(0.0)	(0.0)	(0.1)	(0.6)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5,254	3,734	84	418	22	20	43	512
		(3.6)	(2.6)	(0.1)	(0.3)	(0.0)	(0.0)	(0.0)	(0.4)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	82	8	8	27	-	71	173
		(0.7)	(1.3)	(0.1)	(0.1)	(0.4)	-	(1.1)	(2.8)

주: 2023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성별로는 남성 수급자 수가 93,424명으로 여성 수급자 57,835명 보다 많은 편임
- 장애정도별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34,499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96.4%를 차지함

〈표 10-3-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령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6-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2011		46,549	907	11,450	8,000	5,771	6,907	8,307	3,226	1,981
2012		50,520	2,659	12,956	8,222	6,171	7,449	8,584	3,417	1,062
2013		60,435	4,084	16,614	10,074	6,834	8,194	9,694	3,660	1,281
2014		64,906	4,519	17,668	11,639	7,026	8,496	10,064	3,877	1,617
2015		72,212	5,399	18,790	13,619	7,648	9,176	10,983	4,596	2,001
2016		79,926	4,912	19,966	16,408	8,556	9,464	12,045	5,474	3,101
2017		92,535	7,961	21,674	18,939	9,883	10,399	14,008	6,572	3,099
2018		94,496	8,074	21,867	19,426	10,128	10,514	14,385	6,833	3,269
2019		105,569	8,999	23,072	21,644	11,436	11,848	16,279	8,270	4,021
2020		115,017	8,846	24,237	23,537	12,636	12,969	18,159	9,841	4,792
2021		127,363	9,348	26,218	25,003	14,154	14,406	20,236	11,784	6,214
2022		139,509	9,346	28,569	26,111	15,928	15,436	22,082	13,628	8,409
2023		151,259	11,182	30,284	26,973	17,490	16,533	24,240	15,023	9,534
		(100.0)	(7.4)	(20.0)	(17.8)	(11.6)	(10.9)	(16.0)	(9.9)	(6.3)
성별	남	93,424	7,957	20,498	17,200	10,866	9,286	13,783	8,631	5,203
		(100.0)	(8.5)	(21.9)	(18.4)	(11.6)	(9.9)	(14.8)	(9.2)	(5.6)
	여	57,835	3,225	9,786	9,773	6,624	7,247	10,457	6,392	4,331
		(100.0)	(5.6)	(16.9)	(16.9)	(11.5)	(12.5)	(18.1)	(11.1)	(7.5)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145,010	10,534	29,827	26,859	17,275	15,896	22,256	13,292	9,071
		(100.0)	(7.3)	(20.6)	(18.5)	(11.9)	(11.0)	(15.3)	(9.2)	(6.3)
	심하지 않은 장애인	6,249	648	457	114	215	637	1,984	1,731	463
		(100.0)	(10.4)	(7.3)	(1.8)	(3.4)	(10.2)	(31.7)	(27.7)	(7.4)

주: 2023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기준으로 연령별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10-19세가 30,284명(20.0%)로 가장 많고 20-29세 26,973명(17.8%), 50-59세 24,240명(16.0%) 순임

〈표 10-3-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단위: 명)

구분		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총계		151,259	145,010	6,249
인정조사(등급)	소계	1,814	1,812	2
	1	232	232	-
	2	432	431	1
	3	558	558	-
	4	592	591	1
종합조사(구간)	소계	136,217	130,006	6,211
	1	37	37	-
	2	205	205	-
	3	886	886	-
	4	684	676	8
	5	150	150	-
	6	638	631	7
	7	1,793	1,771	22
	8	1,671	1,668	3
	9	3,942	3,898	44
	10	4,460	4,430	30
	11	7,501	7,449	52
	12	20,266	19,909	357
	13	40,845	39,571	1,274
	14	40,230	37,208	3,022
	15	12,909	11,517	1,392
산정특례		13,228	13,192	36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2019년 7월 1일부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인정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와 종합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로 구분함

3) 종합조사 결과 15개 구간으로 분류되며, 각 구간별 종합점수는 다음과 같음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종합점수	465점 이상	464점 ~ 435점	434점 ~ 405점	404점 ~ 375점	374점 ~ 345점	344점 ~ 315점	314점 ~ 285점	284점 ~ 255점	254점 ~ 225점	224점 ~ 195점	194점 ~ 165점	164점 ~ 135점	134점 ~ 105점	104점 ~ 75점	74점 ~ 42점

4) 산정특례는 기존에 인정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가 변경신청 또는 갱신신청을 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받은 후 월 한도액이 감소한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인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활동지원제도 수급자를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인정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급자는 1,814명이고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새롭게 도입된 종합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는 136,217명, 산정특례 13,228명임
  - 종합조사 결과를 통해 분류된 15구간별로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13구간이 40,845명으로 가장 많고, 14구간 40,230명, 12구간 20,266명 순임

③ 활동지원급여 이용

〈표 10-3-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급여 이용현황 - 급여종류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건)

구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소계	일반	심야	공휴	소계	차량 내	가정 내	소계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연도별	2011	636,801	607,145	-	29,656	1,067	636	431	345	43	79	223
	2012	616,905	589,922	26,983	29,804	2,127	1,519	608	422	42	165	215
	2013	1,014,725	984,494	30,231	85,260	4,510	3,289	1,221	787	107	307	373
	2014	1,175,466	1,136,746	38,720	85,434	5,426	3,965	1,461	853	64	356	433
	2015	1,341,188	1,292,820	48,368	103,886	6,440	4,839	1,601	958	113	324	521
	2016	1,594,834	1,442,438	54,023	98,373	6,827	5,299	1,533	816	-	-	-
	2017	1,687,877	1,485,285	54,280	148,312	6,823	5,221	1,602	697	79	309	309
	2018	2,082,360	1,828,073	59,574	194,713	7,229	5,626	1,603	778	135	281	362
	2019	2,676,601	2,338,223	72,461	265,917	8,524	6,853	1,671	777	60	314	403
	2020	2,996,563	2,654,297	83,008	259,258	9,773	7,926	1,847	922	112	324	486
	2021	3,453,504	3,053,422	97,615	302,467	11,019	9,253	1,766	1,092	176	379	537
	2022	3,699,083	3,303,727	109,191	286,165	11,392	9,819	1,573	1,268	113	466	689
	2023	3,951,473	3,414,972	115,613	420,888	11,431	10,007	1,424	1,333	115	533	685
지역별	서울	610,988	514,617	34,979	61,392	630	436	194	114	-	46	68
	부산	305,600	264,000	4,938	36,662	105	102	3	8	1	7	-
	대구	157,713	132,082	4,866	20,765	885	883	2	-	-	-	-
	인천	228,843	201,495	6,284	21,064	2,270	2,091	179	216	38	75	103
	광주	201,801	174,579	2,515	24,707	141	113	28	-	-	-	-
	대전	166,014	142,538	2,230	21,246	-	-	-	-	-	-	-
	울산	69,439	61,856	754	6,829	95	95	-	158	3	49	106
	세종	22,637	19,610	493	2,534	8	8	-	-	-	-	-
	경기	898,273	768,161	37,881	92,231	1,195	685	510	510	16	221	273
	강원	87,905	75,927	3,033	8,945	771	513	258	11	8	3	-
	충북	123,353	107,509	1,968	13,876	328	303	25	75	9	36	30
	충남	199,888	177,311	3,033	19,544	725	669	56	-	-	-	-
	전북	163,269	140,699	2,819	19,751	1,881	1,823	58	99	-	65	34
	전남	188,525	168,705	2,715	17,105	765	753	12	23	-	13	10
	경북	187,018	166,268	2,316	18,434	464	399	65	63	-	2	61
	경남	288,441	255,864	3,776	28,801	1,022	988	34	18	2	16	-
	제주	51,766	43,751	1,013	7,002	146	146	-	38	38	-	-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급여종류별 급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의 이용건수는 2023년 3,951,47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2023년 방문목욕 이용건수는 11,43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9건 증가하고, 방문간호는 1,33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65건 증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활동보조 이용건수는 수급자가 많은 경기와 서울이 각각 898,273건, 610,988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방문목욕의 이용건수는 인천이 2,270건, 방문간호의 이용건수는 경기가 510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임

④ 특별지원급여 이용

〈표 10-3-7〉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별지원급여 이용현황 - 급여종류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건)

구분		계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연도별	2021	245	17	82	146
	2022	296	21	114	161
	2023	396	41	157	198
지역별	서울	102	6	42	54
	부산	21	1	10	10
	대구	35	1	24	10
	인천	18	2	10	6
	광주	14	2	5	7
	대전	9	5	-	4
	울산	5	2	1	2
	세종	4	-	-	4
	경기	84	9	39	36
	강원	10	-	-	10
	충북	16	2	13	1
	충남	7	3	1	3
	전북	14	1	1	12
	전남	11	1	-	10
	경북	19	3	8	8
	경남	24	3	3	18
	제주	3	-	-	3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급여종류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출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유·사산 포함)한 경우
· 자립준비: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
· 보호자 일시부재: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에 대한 부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활동지원제도 특별지원급여 이용건수는 2023년 39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건 증가함
  - 급여종류별로는 보호자 일시부재가 198건으로 가장 많고, 자립준비 157건, 출산 41건임
  - 지역별로는 서울이 102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84건, 대구 35건, 경남 24건 순임

⑤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현황

〈표 10-3-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구분	긴급지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2011	1	7
2012	33	27
2013	50	47
2014	97	67
2015	166	68
2016	258	90
2017	341	100
2018	380	116
2019	489	127
2020	571	81
2021	176	317
2022	422	1,238
2023	182	1,849

주: 1) 각년도 12월 말 기준
2) 긴급활동지원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됨
3)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상황과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기준 긴급지원이용자는 182명이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1,849명임

⑥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표 10-3-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현황 - 연도별,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단위: 명, 원)

구분		계	급여 이용률					1인 평균 생성액	1인 평균 이용액
			미사용	0-50% 미만	50-80% 미만	80-100% 미만	100%		
2014		52,819	440	678	1,543	22,674	27,484	1,060,869	1,049,679
2015		59,428	530	552	1,255	26,705	304	1,088,271	1,091,319
2016		65,368	696	674	1,456	24,217	38,325	1,109,771	1,107,490
2017		70,990	742	668	1,435	37,498	30,647	1,128,602	1,128,892
2018		76,992	800	671	1,554	42,175	31,792	1,307,438	1,311,870
2019		85,474	1,150	955	1,929	42,639	38,801	1,603,572	1,591,788
2020		91,526	1,192	1,037	2,451	27,035	59,811	1,756,044	1,745,698
2021		100,605	1,226	1,172	2,776	51,972	43,459	1,878,372	1,863,759
2022		108,361	1,330	1,210	3,063	46,187	56,571	1,999,703	1,992,713
2023		118,320	1,230	1,230	3,068	63,323	49,469	2,128,561	2,119,601
인정조사 (등급)	소계	383	-	2	10	184	187		
	1	72	-	1	2	33	36	2,987,597	2,958,811
	2	126	-	-	6	63	57	1,641,109	1,676,141
	3	116	-	-	2	55	59	1,298,166	1,356,747
	4	69	-	1	-	33	35	1,025,572	1,052,431
종합조사 (구간)	소계	106,637	1,174	1,157	2,815	57,544	43,947		
	1	34	1	1	-	19	13	7,475,000	7,166,369
	2	201	1	1	2	123	74	7,008,557	6,959,208
	3	817	1	10	21	385	400	6,524,988	6,463,703
	4	591	7	20	41	249	274	6,002,489	5,682,393
	5	140	3	-	5	73	59	5,589,211	5,464,210
	6	549	10	11	31	233	264	5,122,827	4,952,661
	7	1,520	12	29	102	809	568	4,654,415	4,529,156
	8	1,493	6	9	64	704	710	4,161,306	4,116,076
	9	3,438	30	54	187	1,727	1,440	3,713,938	3,625,367
	10	3,955	14	43	130	2,149	1,619	3,238,601	3,214,430
	11	6,335	40	64	146	3,595	2,490	2,771,872	2,760,669
	12	17,382	124	156	401	9,932	6,769	2,309,084	2,310,469
	13	33,125	276	333	816	16,356	15,344	1,846,003	1,850,416
	14	29,312	460	335	706	16,260	11,551	1,390,555	1,390,842
	15	7,745	189	91	163	4,930	2,372	929,381	927,574
긴급활동지원		19	10	3	-	3	3	1,870,000	734,405
산정특례		11,281	46	68	243	5,592	5,332	2,780,647	270,482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2019년 7월 1일부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인정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와 종합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로 구분함
3) 긴급활동지원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가족의 사망 등으로 장애인을 돌볼 가족이 부재한 경우, 천재지변 및 화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함
4) 산정특례는 기존에 인정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가 변경신청 또는 갱신신청을 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받은 후 월 한도액이 감소한 경우, 유효기간 동안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급여를 제공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률을 살펴보면 80-100% 미만이 63,323명으로 가장 많고, 100% 49,469명, 50-80% 미만 3,068명, 0-50% 미만 1,230명 순임. 미사용자는 1,230명임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인 평균 생성액과 이용액은 각각 2,128,561원, 2,119,601원으로 비슷한 수준임

⑦ 본인부담금 수준

〈표 10-3-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원)

구분	전체	면제	2만원	2-4 만원	4-6 만원	6-8 만원	8-10 만원	10-12 만원	12만원 이상	1인 평균 부담액
2011	40,894	13,856	4,250	4,778	8,102	6,025	3,776	58	49	24,851
2012	50,212	15,751	5,663	6,257	10,127	7,200	5,059	88	67	25,597
2013	60,524	28,738	5,430	2,334	4,875	7,220	10,045	1,147	675	34,887
2014	64,419	28,634	6,005	2,666	5,949	8,239	10,637	1,461	828	36,870
2015	71,707	21,811	7,858	4,315	9,407	11,275	9,918	5,784	1,339	46,731
2016	79,233	24,292	8,121	3,866	10,882	13,006	6,640	10,544	1,882	47,459
2017	86,388	26,476	8,633	4,655	12,453	11,224	8,076	12,376	2,495	48,040
2018	93,823	29,303	8,891	2,481	7,548	16,367	9,421	15,662	4,110	53,065
2019	104,218	33,740	10,104	2,518	7,991	10,882	10,917	19,273	8,793	57,628
2020	113,952	38,863	10,870	2,583	8,590	13,830	13,550	7,229	18,437	56,173
2021	126,175	44,834	11,740	3,627	10,976	15,431	6,899	11,051	21,617	55,354
2022	137,829	50,413	11,938	3,989	12,665	17,176	7,024	11,380	23,244	56,546
2023	150,302 (100.0)	56,480 (37.6)	12,379 (8.2)	3,986 (2.7)	13,368 (8.9)	12,750 (8.5)	13,526 (9.0)	12,053 (8.0)	25,760 (17.1)	59,219

주: 각년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1인 평균 부담액은 59,219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73원 증가함
  - 면제를 제외하면 본인부담금으로 12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가 25,760건(17.1%)으로 가장 많고, 8-10만원 13,526건(9.0%), 4-6만원 13,368건(8.9%), 6-8만원 12,750건(8.5%) 순임

⑧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표 10-3-11〉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구분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전체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IL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요양 장기기관	사회복지관	기타복지	사회시설 기타	
2011	931	592	214	125	590	117	137	83	114	25	35	43	36	39
2012	959	614	223	122	614	128	140	87	110	32	32	47	38	41
2013	1,039	689	229	121	689	138	148	110	106	30	45	54	56	41
2014	1,057	723	224	110	723	157	143	114	108	47	31	59	64	42
2015	1,083	751	227	105	751	164	143	120	104	49	33	59	79	42
2016	945	756	143	33	756	130	125	158	80	20	23	4	216	53
2017	964	767	142	26	798	69	107	125	73	20	25	66	313	51
2018	973	774	138	26	799	69	105	127	70	20	24	66	318	56
2019	982	802	146	34	755	68	98	122	64	20	22	64	297	58
2020	1,008	834	145	29	837	74	110	133	69	22	26	69	334	60
2021	1,061	883	152	26	978	100	111	142	64	24	27	94	416	62
2022	1,089	912	150	27	996	96	114	145	60	25	29	96	431	65
2023	1,136	964	147	25	1,020	102	107	148	55	23	22	98	465	65
서울	152	144	8	-	185	7	18	57	7	2	3	14	77	10
부산	67	65	1	1	81	11	6	13	3	-	1	16	31	4
대구	45	41	4	-	43	4	4	2	2	-	2	10	19	3
인천	52	39	10	3	50	3	4	7	2	4	-	2	28	2
광주	34	31	3	-	34	4	1	9	-	2	1	1	16	2
대전	26	26	-	-	28	6	3	1	1	-	-	2	15	2
울산	14	12	1	1	17	-	-	2	-	1	-	3	11	3
세종	7	7	-	-	5	-	-	-	-	-	-	-	5	2
경기	234	205	20	9	170	11	21	30	4		4	15	85	11
강원	56	37	17	2	39	3	9	2	6	2	2	-	15	2
충북	40	29	7	4	30	4	5	4	-	1	1	-	15	2
충남	65	52	13	-	55	9	9	7	4	1	-	5	20	3
전북	70	47	22	1	49	11	6	1	5	-	2	5	19	4
전남	78	65	11	2	70	4	6	4	5	6	2	5	38	3
경북	74	63	11	-	63	9	10	1	9	2	2	12	18	6
경남	112	94	17	1	94	14	5	8	7	2	2	7	49	3
제주	10	7	2	1	7	2	-	-	-	-	-	1	4	3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활동지원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 기준이며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기관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활동보조기관(유형별)은 국민연금공단 업무시스템 내 자료 기준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의 활동지원기관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 등록된 현황 기준
5)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활동지원기관 합계에는 주간활동이 포함되어 있음(2016년 13개소, 2017년 29개소, 2018년 35개소, 2019년 8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활동지원기관은 1,136개소, 활동보조기관은 1,020개소,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65개소임
  -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활동보조 제공기관이 964개소로 가장 많고, 방문목욕 제공기관은 147개소, 방문간호 제공기관은 25개소임
  - 활동보조기관의 경우 기타가 465개소로 가장 많고, IL센터 148개소, 장애인복지관 107개소, 장애인단체 102개소 등의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기관은 각각 서울, 경기, 경남이 많고,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경우 경기와 서울이 10개소 이상 있음

⑨ 활동지원사 현황

〈표 10-3-12〉 활동지원사 등록인원, 활동인원, 월평균근무시간, 월평균보수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단위: 명, 시간, 원)

구분		등록인원	활동인원	월평균근무시간	월평균보수
2011		31,234	23,653	-	-
2012		42,467	28,003	112	756,795
2013		67,823	40,448	130	941,499
2014		56,531	46,812	128	916,323
2015		61,366	52,761	125	936,221
2016		64,145	58,102	135	1,267,490
2017		68,167	62,629	122	982,898
2018		72,981	68,673	96	1,106,269
2019		82,448	78,044	100	1,729,043
2020		88,551	84,854	118	1,483,710
2021		98,873	95,046	95.1	1,516,619
2022		109,243	103,378	88.3	1,528,054
2023		118,180	112,570	86.0	1,671,450
성별	남	14,868	13,947		
	여	103,312	98,623		
연령별	20대 미만	43	40		
	20대	1,582	1,452		
	30대	4,373	4,072		
	40대	18,665	17,846		
	50대	44,746	42,794		
	60대	42,961	40,862		
	70대 이상	5,810	5,504		
지역별	서울	21,660	21,010		
	부산	7,134	8,469		
	대구	5,430	5,372		
	인천	5,421	6,417		
	광주	5,341	5,200		
	대전	4,035	4,321		
	울산	1,925	1,733		
	세종	1,238	650		
	경기	30,832	24,844		
	강원	3,271	2,478		
	충북	3,489	3,402		
	충남	5,549	4,662		
	전북	4,622	4,402		
	전남	5,535	5,165		
	경북	6,378	4,938		
	경남	10,011	8,018		
	제주	1,570	1,489		

주: 2023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활동지원사의 활동인원은 112,570명으로 매해 증가 추세임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활동지원 활동인원이 98,623명으로 남성 13,947명에 비해 월등히 많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활동지원 활동인원이 89,160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79.2%를 차지함
  - 지역별 활동인원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많은 경기, 서울이 각각 21,010명, 24,844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음

(2) 대상별 지원서비스

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실적

〈표 10-3-1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현황 - 연도별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2010	42,779	801	3,070	28,313
2011	48,111	996	4,166	35,119
2012	56,111	1,178	4,647	39,486
2013	63,811	1,520	5,166	46,979
2014	62,911	1,570	5,526	50,769
2015	65,192	1,646	5,025	51,609
2016	70,019	1,791	5,358	52,200
2017	69,813	1,882	5,398	52,830
2019	82,970	2,153	5,503	62,361
2020	88,999	2,197	5,380	60,410
2021	94,968	2,327	13,305	84,411
2022	100,037	2,592	13,248	91,044
2023	127,032	2,615	13,458	97,469

주: 연도별 수치는 각 해당 연도 12월 말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은 2023년 127,03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995백만원 증가함
  - 제공기관은 2023년 2,615개소로 전년도 대비 23개소 증가하였고, 제공인력은 13,458명, 이용자는 97,469명임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함
  -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함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②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4〉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2013	1,930	97	–	1,222
2014	624	140	288	368
2015	1,930	185	389	498
2016	507	194	454	534
2017	507	184	400	510
2018	507	171	340	466
2019	796	166	317	458
2020	796	169	318	413
2021	796	177	309	435
2022	651	165	312	405
2023	651	174	304	400
서울	88	27	41	71
부산	17	6	11	7
대구	12	5	6	8
인천	29	12	15	16
광주	62	12	32	42
대전	26	4	12	17
울산	18	8	18	12
세종	3	0	0	0
경기	117	45	59	84
강원	8	2	2	2
충북	28	5	9	13
충남	38	12	20	21
전북	93	10	27	39
전남	25	5	11	16
경북	37	13	21	27
경남	29	7	12	15
제주	21	4	12	10

주: 연도별 수치는 각 해당 연도 12월 말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언어발달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651백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음
  - 제공기관은 2023년 174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9개소 증가하였고, 제공인력은 304명, 이용자는 400명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의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수가 많으며,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광주, 전북의 이용자 수가 많음

언어발달지원사업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자격기준은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무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양쪽 부모(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받음
  -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가구를 선정함(소득별 차등지원)

③ 양육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5〉 양육지원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돌보미		이용자	
			등록	활동	계획	실 인원
2010	1,570	16	509	282	688	714
2011	4,038	17	1,372	994	2,500	3,149
2012	4,038	17	1,485	1,335	2,500	3,259
2013	4,663	18	1,647	1,443	3,000	3,684
2014	7,091	18	1,962	1,836	3,000	3,012
2015	8,043	18	2,205	2,073	3,300	3,331
2016	8,206	18	2,137	2,022	3,300	3,318
2017	8,960	17	2,252	2,013	3,725	3,349
2019	17,186	17	2,800	2,452	4,005	3,711
2020	20,873	17	2,848	2,608	4,005	3,907
2021	21,562	17	3,413	2,979	4,005	4,071
2022	48,163	17	4,468	3,388	6,500	4,290
2023	47,561	17	5,903	4,394	6,500	4,988
서울	2,207	1	492	474	659	536
부산	3,090	1	382	274	395	294
대구	2,543	1	322	294	328	297
인천	3,212	1	370	302	413	323
광주	2,451	1	260	161	317	196
대전	2,491	1	301	227	322	262
울산	2,502	1	180	179	326	190
세종	526	1	48	47	70	59
경기	6,660	1	1,134	667	852	699
강원	1,773	1	105	115	228	166
충북	2,570	1	329	207	334	240
충남	2,556	1	233	228	331	232
전북	3,621	1	319	275	465	382
전남	2,148	1	185	163	277	193
경북	3,085	1	336	251	396	341
경남	3,935	1	573	352	503	387
제주	2,191	1	334	178	284	191

주: 각년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은 2023년 47,56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602백만원 감소함. 활동하고 있는 돌보미 수는 4,394명, 이용자 실 인원은 4,98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예산, 활동 중인 돌보미 수, 실 이용자 인원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등의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임

④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실적

〈표 10-3-16〉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사업실적	
			프로그램 수	연 인원
2009	640	16	230	61,786
2010	640	16	300	70,000
2011	640	28	340	63,682
2012	640	30	336	62,542
2013	576	31	307	50,024
2014	893	31	383	50,187
2015	612	35	296	45,782
2016	1,596	48	419	55,196
2017	1,596	42	421	69,888
2018	1,620	42	412	99,930
2019	1,637	42	414	106,850
2020	1,772	42	414	76,000
2021	1,785	43	448	106,000
2022	1,805	43	454	57,861
서울	189	4	23	2,786
부산	94	2	20	3,525
대구	94	2	34	4,607
인천	150	3	52	5,115
광주	94	2	13	1,412
대전	94	3	23	3,551
울산	94	2	32	2,432
세종	37	1	13	579
경기	150	2	23	1,846
강원	95	4	32	4,074
충북	94	3	40	7,057
충남	94	3	33	4,734
전북	94	2	14	1,556
전남	150	3	47	5,545
경북	94	2	18	2,540
경남	94	3	27	5,466
제주	94	2	10	1,036

주: 1) 2022년 12월 말 기준
2) 여성장애인교육사업은 2009년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의 2022년 예산은 18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00만원 증가함.
  • 제공기관은 43개소, 프로그램 수는 454개, 연 이용인원 수는 57,861명임

여성장애인교육지원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장애여성을 지원하고, 저소득이거나 저학력장애인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실적

〈표 10-3-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예산	결산	집행건수
2012	876	388	579
2013	876	391	587
2014	639	410	610
2015	1,426	779	1,160
2016	1,124	850	1,271
2017	1,222	942	1,404
2018	1,222	812	1,219
2019	1,122	829	1,235
2020	959	737	1,100
2021	959	684	1,006
2022	959	687	1,021
서울	93	73	145
부산	51	36	51
대구	49	22	31
인천	57	45	64
광주	38	36	52
대전	37	31	44
울산	24	11	16
세종	13	3	9
경기	224	171	243
강원	39	27	39
충북	39	22	32
충남	53	34	48
전북	48	38	55
전남	49	37	53
경북	57	35	50
경남	65	50	71
제주	24	13	18

주: 1) 2022년 12월 말 기준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의 2022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각각 9억 5,900만 원, 6억 8,700만 원이며, 집행건수는 1,021건임
  • 지역별로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경기'의 집행건수가 24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을 '서울' 145건, '경남' 71건, '인천' 64건 등의 순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경우에 지원함

⑥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실적

〈표 10-3-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양성인원	심판청구 건수	활동인원
2013	646	211	868	27	15
2014	1,158	504	714	290	127
2015	1,023	704	924	177	182
2016	1,501	776	815	119	211
2017	1,176	789	900	366	278
2018	1,176	1,061	721	466	401
2019	1,531	1,531	720	601	540
2020	1,541	1,541	1,536	710	704
2021	1,668	2,075	1,429	763	863
2022	2,360	2,370	1,188	733	1,006
서울	192	192	123	101	113
부산	168	168	157	54	74
대구	120	120	59	37	39
인천	106	106	121	33	45
광주	266	266	18	63	136
대전	90	90	63	41	32
울산	75	75	44	26	23
세종	46	46	61	10	9
경기	214	214	111	45	77
강원	127	127	23	47	72
충북	147	147	111	49	58
충남	151	151	32	29	48
전북	133	133	55	36	61
전남	165	165	60	38	66
경북	123	133	91	35	47
경남	162	162	49	71	76
제주	75	75	10	18	30

주: 1) 2022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2013년 9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2022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각각 23억 6,000만 원, 23억 7,000만 원임. 사업실적 측면에서는 양성인원은 1,188명, 심판청구 건수는 733건, 활동인원은 1,006명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액과 결산액은 광주가 각각 26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양성인원은 부산이 157명, 심판청구 건수는 서울이 101명, 활동인원은 광주가 13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권리의 보장을 돕는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음

* 발달장애 외 다른 유형의 장애인 중 지방자치단체, 법원에서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도 포함

〈표 10-3-1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현황 - 연도별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결산	제공기관	이용인원
2013	1,279	108	60	367
2014	1,608	360	247	682
2015	1,608	332	162	858
2016	900	335	137	661
2017	900	413	234	673
2018	601	450	287	847
2019	730	730	200	790
2020	730	730	202	783
2021	730	730	203	812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10-3-2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현황 - 연도별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총 인원	발달장애인	가족	도우미
2015	500	386	4,712	1,567	2,261	884
2016	1,000	905	9,028	2,816	4,592	1,620
2017	1,000	989	8,993	3,308	4,360	1,896
2018	1,210	1,104	10,556	2,979	6,025	1,552
2019	1,478	1,478	12,312	3,566	5,677	3,069
2020	1,478	1,478	12,312	3,566	5,677	3,069
2021	1,478	1,416	12,352	11,803		549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2015년 8월부터 시행됨
3) 기존의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통합 운영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의 2021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7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제공기관은 1개소 증가하였고, 이용인원은 29명 증가함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2021년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4억 7,800만원이며, 결산액은 14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200만원 감소함. 사업실적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는 2021년 12,35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0명 증가함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함. 또한 부모 양육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을 제공함. 서비스 대상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겨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함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지단서)가 있으면 서비스 이용 가능함

〈표 10-3-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기관,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제공기관	지원인원
2019	19,103	17,823	183	2,506
2020	43,417	43,417	284	4,335
2021	91,304	76,319	366	6,366
2022	140,786	128,295	492	9,211
2023	173,504	173,504	626	12,676
서울	8,820	8,820	57	1233
부산	11,845	11,845	69	990
대구	8,522	8,522	29	617
인천	8,382	8,382	21	608
광주	5,102	5,102	21	383
대전	4,827	4,827	29	427
울산	5,121	5,121	20	351
세종	966	966	4	93
경기	36,145	36,145	121	2,542
강원	9,431	9,431	35	662
충북	6,941	6,941	16	524
충남	10,027	10,027	28	616
전북	10,826	10,826	34	735
전남	9,384	9,384	23	533
경북	11,082	11,082	37	624
경남	24,304	24,304	72	1563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3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2023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모두 1.735억 4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327억 1,800만 원, 452억 900만 원 증가함. 사업실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제공기관은 626개소, 지원인원은 12,67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134개소, 3,465명 증가함
  • 지역별로는 경기가 예산, 결산, 제공기관, 지원인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함
- 만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으로,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표 10-3-2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기관,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제공기관	지원인원
2019	9,169	6,146	212	2,015
2020	19,406	19,406	273	4,123
2021	44,637	35,710	297	6,241
2022	47,136	41,671	361	8,933
2023	53,703	53,050	429	11,961
서울	6,020	5,855	47	1,906
부산	2,923	2,923	35	766
대구	2,693	3,146	14	735
인천	3,103	2,955	22	762
광주	1,504	1,449	12	259
대전	1,566	1,566	20	429
울산	1089	1441	17	289
세종	258	177	3	84
경기	12,210	14,389	109	3,859
강원	2,132	1,733	15	356
충북	2,042	1,879	13	316
충남	2,862	2,793	11	312
전북	2,822	2,592	21	412
전남	2,177	1,979	12	158
경북	2,979	2,236	13	278
경남	6,543	5,157	53	805
제주	780	780	12	235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2023년 예산액은 537억 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5억 6,700만원 증가하였고, 결산액은 53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3억 7,900만원 증가함. 사업실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제공기관은 429개소, 지원인원은 11,96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68개소, 3,028명 증가함
  • 지역별로는 경기가 예산, 결산, 제공기관, 지원인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 서비스 대상은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임. 다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3) 복지시설

① 장애인 거주시설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2009	397	26,912	23,243	38	2,697	2,230	14	1,096	760	11	792	519	172	10,733	9,539
2010	452	28,571	24,294	40	2,640	2,055	14	1,092	744	10	732	462	196	11,463	10,178
2011	490	29,419	25,345	39	2,594	2,102	15	1,122	787	9	552	361	226	12,161	10,788
2012	1,348	35,545	30,640	40	2,563	2,057	16	1,151	786	8	519	335	278	13,366	11,748
2013	1,397	35,813	31,152	39	2,468	1,978	16	1,151	770	8	482	320	293	13,422	12,001
2014	1,457	35,860	31,406	44	2,627	2,208	15	991	632	7	373	270	309	13,562	12,136
2015	1,484	35,746	31,222	39	1,933	1,668	16	970	628	7	373	255	321	13,971	12,369
2016	1,505	35,232	30,980	40	2,178	1,766	17	1,010	711	7	373	228	317	13,450	12,112
2017	1,517	34,855	30,693	39	2,047	1,690	17	1,011	700	7	363	232	313	13,394	12,008
2018	1,527	34,345	30,152	33	1,754	1,418	16	907	662	7	363	223	320	13,319	11,865
2019	1,557	33,954	29,662	33	1,600	1,304	15	866	615	7	373	216	313	12,858	11,485
2020	1,539	33,071	29,086	28	1367	1121	16	798	579	7	373	205	317	12,713	11349
2021	1,535	32,969	28,565	28	1,415	1,055	15	790	569	7	363	196	310	12,691	11,205
2022	1,532	32,658	27,946	26	1,154	882	15	770	562	7	363	177	307	12,491	10,859
2023	1,529	32,229	27,352	25	1,092	849	15	770	557	7	363	172	308	12,324	10,689
서울	249	3,599	3,013	2	80	71	3	142	97	1	62	25	14	678	571
부산	63	1,394	1,209	3	135	107	0	0	0	0	0	0	14	666	583
대구	52	1,706	1,329	0	0	0	0	0	0	0	0	0	9	754	592
인천	69	1,166	906	2	109	70	1	70	41	1	50	17	6	205	173
광주	80	1,072	918	3	70	55	1	30	30	0	0	0	16	524	428
대전	84	1,438	1,198	1	70	55	1	70	41	0	0	0	8	428	374
울산	28	737	636	0	0	0	0	0	0	1	55	15	1	50	50
세종	6	162	154	0	0	0	0	0	0	0	0	0	3	102	97
경기	319	6,385	5,464	5	97	74	4	118	84	2	86	54	77	2,599	2,256
강원	68	1,649	1,447	0	0	0	1	80	58	0	0	0	18	653	592
충북	89	2,026	1,714	1	68	57	2	110	75	1	85	46	19	671	608
충남	54	1,877	1,643	0	0	0	0	0	0	0	0	0	18	1,044	905
전북	69	1,861	1,560	3	146	96	1	50	42	0	0	0	30	1,054	919
전남	70	1,583	1,321	2	100	60	1	100	89	1	25	15	27	887	754
경북	92	2,853	2,463	1	97	89	0	0	0	0	0	0	26	1,035	925
경남	97	2,068	1,806	2	120	115	0	0	0	0	0	0	15	753	665
제주	40	653	571	0	0	0	0	0	0	0	0	0	7	221	197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임
2)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은 기존에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4.10., 일부개정)
자료: 1) 2009년: 보건복지부(2010). 「2010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5. 2) 2010-2011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3.
3) 2012년: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7. 4) 2013-2023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3.

- 2023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 시설수는 1,529개소,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수(현원)는 27,352명임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746개소로 가장 많고,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수(현원)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10,689명으로 가장 많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시설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며,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장애인 수(현원)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이를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시설수와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수(현원)는 경기가 각각 319개소, 5,46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각각 249개소, 3,013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계속)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2009	153	11,042	9,728	9	552	467	-	-	-	-	-	-
2010	182	12,052	10,364	10	592	491	-	-	-	-	-	-
2011	191	12,404	10,798	10	586	509	-	-	-	-	-	-
2012	201	12,536	11,006	10	592	510	128	1,683	1,438	667	3,140	2,760
2013	216	12,904	11,412	9	528	473	131	1,724	1,432	685	3,134	2,766
2014	223	12,802	11,344	9	539	466	137	1,766	1,495	713	3,200	2,855
2015	233	12,762	11,314	10	622	541	141	1,783	1,548	717	3,276	2,862
2016	233	12,514	11,192	9	522	452	146	1,902	1,616	736	3,283	2,903
2017	233	12,256	10,996	9	522	429	147	1,948	1,697	752	3,314	2,939
2018	239	12,221	10,995	9	522	398	150	1,975	1,671	753	3,284	2,920
2019	251	12,335	10,978	9	522	382	159	2,064	1,733	770	3,336	2,949
2020	251	12069	10866	9	514	361	157	2002	1733	754	3235	2872
2021	249	11,843	10,568	9	507	357	164	2,126	1,792	753	3,234	2,823
2022	252	11,978	10,450	9	461	332	165	2,219	1,871	751	3,222	2,813
2023	252	11,796	10,220	9	461	324	167	2,232	1,735	746	3,191	2,806
서울	23	1,424	1,176	2	95	65	40	435	401	164	683	607
부산	8	330	315	2	91	62	3	40	30	33	132	112
대구	10	732	552	1	50	43	2	26	22	30	144	120
인천	11	459	394	1	50	34	5	55	41	42	168	136
광주	5	185	157	0	0	0	4	59	52	51	204	196
대전	11	450	377	0	0	0	20	244	207	43	176	144
울산	9	485	446	0	0	0	7	107	88	10	40	37
세종	1	52	49	0	0	0	0	0	0	2	8	8
경기	52	2,375	2,103	1	100	63	28	338	234	150	672	596
강원	15	691	613	0	0	0	9	112	81	25	113	103
충북	14	731	676	0	0	0	6	171	80	46	190	172
충남	16	663	616	0	0	0	7	98	74	13	72	48
전북	12	463	368	1	35	32	2	25	24	20	88	79
전남	8	310	274	0	0	0	5	57	37	26	104	92
경북	35	1,453	1,226	0	0	0	11	183	149	19	85	74
경남	15	73	633	1	40	25	11	194	153	53	231	215
제주	7	263	245	0	0	0	7	88	62	19	81	67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임
2)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은 기존에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4.10., 일부개정)

자료: 1) 2009년: 보건복지부(2010). 「2010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5. 2) 2010-2011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3.
3) 2012년: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7. 4) 2013-2023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3.

장애인 거주시설별 종류 및 기능(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표 10-3-2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규모별, 연도별

(단위: 개소, 명, (%))

구분	장애인 거주시설 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현원			
	시설 규모별			계	시설 규모별			계
	30인 이하	31인~99인	100인 이상		30인 이하	31인~99인	100인 이상	
2012	1,030	275	43	1,348	9,091	14,936	6,613	30,640
	(76.4)	(20.4)	(3.2)	(100.0)	(29.7)	(48.7)	(21.6)	(100.0)
2013	1,071	281	45	1,397	9,579	14,901	6,672	31,152
	(76.7)	(20.1)	(3.2)	(100.0)	(30.7)	(47.8)	(21.4)	(100.0)
2014	1,130	286	41	1,457	10,337	14,991	6,078	31,406
	(77.6)	(19.6)	(2.8)	(100.0)	(32.9)	(47.7)	(19.4)	(100.0)
2015	1,165	280	39	1,484	10,913	14,575	5,734	31,222
	(78.5)	(18.9)	(2.6)	(100.0)	(35.0)	(46.7)	(18.4)	(100.0)
2016	1,196	275	34	1,505	11,597	14,316	5,067	30,980
	(79.5)	(18.3)	(2.3)	(100.0)	(37.4)	(46.2)	(16.4)	(100.0)
2017	1,212	272	33	1,517	11,918	13,941	4,834	30,693
	(79.9)	(17.9)	(2.2)	(100.0)	(38.8)	(45.4)	(15.7)	(100.0)
2018	1,232	264	31	1,527	12,256	13,393	4,503	30,152
	(80.7)	(17.3)	(2.0)	(100.0)	(40.6)	(44.4)	(14.9)	(100.0)
2019	1,274	255	28	1,557	12,791	12,846	4,018	29,655
	(81.8)	(16.4)	(1.8)	(100.0)	(43.1)	(43.3)	(13.5)	(100.0)
2020	1,261	251	27	1,539	12,820	12,457	3,809	29,086
	(81.9)	(16.3)	(1.8)	(100.0)	(44.1)	(42.8)	(13.1)	(100.0)
2021	1,261	247	27	1,535	12,855	12,031	3,680	28,566
	(82.1)	(16.1)	(1.8)	(100.0)	(45.0)	(42.1)	(12.9)	(100.0)
2022	1268	239	25	1532	13027	11587	3332	27946
	(82.8)	(15.6)	(1.6)	(100.0)	(46.6)	(41.5)	(11.9)	(100.0)
2023	1,271	235	23	1,529	13,088	11,260	3,004	27,352
	(83.1)	(15.4)	(1.5)	(100.0)	(47.9)	(41.2)	(11.0)	(100.0)

주: 1) 각 연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포함
3) '시설규모' 구분 기준은 '시설소규모화정책' 추진을 위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기 성과목표 구분기준인 '100인 이상 대규모비율 축소'와 변경된 '30인 이하 시설 비율 확대'의 기준을 따라 '30인 이하', '30~99인', '100인 이상'으로 재범주화 함(김성희 외(2017).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수립방안 연구」 (2017). 참고)
4)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내부 연구진이 재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2024).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2023년 기준 30인 이하 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1,271개소로 전체 장애인거주시설의 83.1%를 차지함. 또한, 30인 이하 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13,088명으로 전체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47.9%를 차지함
  - 장애인 거주시설 중 30인 이하 규모 시설의 비율은 2012년 76.5%에서 2023년 83.1%로 증가하였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30인 이하 규모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2012년 29.7%에서 2023년 47.9%로 증가하였음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사업

- 장애인거주시설을 30인 이하 규모로 소규모화 하고 체험홈 등 시설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및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단계적으로 전환 또는 분리하거나,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권장하여 전체 시설에서 소규모시설의 비율이 80%가 되도록 연차별로 확대함
-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살펴보면 장애유형별시설의 경우 30인 이하 규모가 54.9%,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100.0%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3항 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③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표 10-3-2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시도별

(단위: 시설 수)

구분	지역사회 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합계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	체육시설	수어 통역센터	이동 지원센터	점자 도서관	도서 및 출판시설	수련시설	재활 치료시설	
2012	1,140	205	526	28	191	156	30	4	-	-	18
2013	1,184	219	558	29	199	155	23	1	-	-	18
2014	1,213	223	592	29	193	156	19	1	-	-	18
2015	1,248	224	625	30	193	156	19	1	-	-	18
2016	1,303	231	663	34	194	159	20	2	-	-	20
2017	1,333	237	690	33	194	157	20	1	1	-	19
2018	1,373	241	724	33	195	159	19	1	1	-	19
2019	1,468	254	769	28	197	164	21	2	1	32	18
2020	1,519	258	797	28	199	164	19	1	1	52	18
2021	1,568	261	818	31	202	165	22	2	1	66	18
2022	1,601	263	840	31	204	165	22	2	1	73	18
2023	1,621	266	849	30	206	165	19	1	0	66	19
서울	226	51	135	7	26	1	0	0	0	0	6
부산	98	17	67	1	7	1	1	0	0	3	1
대구	71	6	53	2	6	2	1	0	0	0	1
인천	65	11	43	0	1	1	1	0	0	6	2
광주	51	7	39	1	0	1	1	0	0	2	0
대전	76	8	48	3	5	1	1	0	0	8	2
울산	56	5	42	2	3	1	1	0	0	2	0
세종	9	2	3	0	2	1	1	0	0	0	0
경기	288	39	158	4	32	31	5	0	0	18	1
강원	70	11	19	0	19	19	1	0	0	0	1
충북	64	12	26	1	12	11	1	0	0	0	1
충남	66	17	19	0	15	15	0	0	0	0	0
전북	98	14	35	5	15	15	1	0	0	13	0
전남	90	18	29	0	21	21	1	0	0	0	0
경북	119	20	51	2	21	23	1	0	0	0	1
경남	122	22	51	2	20	20	1	1	0	3	2
제주	52	6	31	0	1	1	1	0	0	11	1

주: 각 년도 12월 말 기준임

자료: 1) 2012년: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8, 217-219.
2) 2013-2023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4.

- 2023년 기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는 1,621개소, 의료재활시설 수는 19개소임
  - 시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간보호시설이 849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266개소, 수어통역센터 206개소, 이동지원센터 165개소 등의 순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증가 추이를 보이며, 의료재활시설 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8개소로 동일하다가 2023년 19개로 증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재활시설 수는 경기가 288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226개소, 경남 122개소, 경북 119개소 등의 순임
  - 의료재활시설은 서울이 6개소로 가장 많고,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은 인천, 세종, 강원, 전남, 제주로 나타남
  - 점자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광주이며, 도서 및 출판시설은 서울과 경남에만 설치됨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류 및 기능(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 교육 · 직업 ·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 · 취미 · 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 ·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수어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 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 · 미술 · 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 10-3-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시설 수	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종사자	
			시설 수	근로 장애인	시설 수	근로 장애인	시설 수	근로 장애인	정원	현원
2010	422	11,932	45	1,817	377	10,115	–	–	2,203	2,052
2011	456	12,870	53	2,190	403	10,680	–	–	2,504	2,260
2012	478	13,758	56	2,384	422	11,374	–	–	2,763	2,488
2013	511	14,739	64	2,653	447	12,086	–	–	3,187	2,820
2014	539	15,641	64	2,721	475	12,920	–	–	3,551	3,158
2015	560	16,414	64	2,798	496	13,616	–	–	3,590	3,133
2016	582	17,131	63	2,762	516	14,335	–	–	4,115	3,256
2017	625	17,841	62	2,724	553	14,960	–	–	4,534	3,732
2018	651	18,205	63	2,690	573	15,262	15	253	4,770	4,024
2019	683	19,056	65	2,823	593	15,796	25	437	5,139	4,362
2020	720	19,734	67	2,875	619	16,147	34	712	5,360	4,688
2021	773	20,504	68	2,923	667	16,791	38	790	5,709	5,021
2022	792	20,819	70	2,951	682	17,017	40	851	5,759	5,160
2023	811	21,225	69	2,910	704	17,437	38	878	5,900	5,338
서울	139	4,115	11	597	119	3,311	9	207	999	921
부산	43	1,188	1	29	41	1,126	1	33	281	236
대구	41	1,190	5	212	36	978	–	–	272	212
인천	41	1059	3	150	38	909	–	–	291	270
광주	30	891	5	202	25	689	–	–	246	242
대전	34	848	4	165	25	586	5	97	270	197
울산	17	325	1	28	15	271	1	26	104	83
세종	8	199	1	31	7	168	–	–	52	51
경기	188	4,682	16	663	157	3,671	15	348	1,448	1,401
강원	40	719	3	83	36	619	1	17	220	197
충북	28	935	1	65	24	774	3	96	249	236
충남	28	783	1	37	27	746	–	–	231	212
전북	29	677	2	62	24	561	3	54	191	163
전남	24	562	2	72	22	490	–	–	165	143
경북	48	1,291	2	96	46	1,195	–	–	336	294
경남	62	1,352	7	231	55	1,121	–	–	397	330
제주	11	409	4	187	7	222	–	–	148	147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수는 훈련장애인수 포함임

자료: 1) 2010-2011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4. 2) 2012년: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9.
3) 2013-2023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5.

- 2023년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811개소, 근로장애인 수 21,225명, 종사자 수(현원 기준) 5,338명임
  - 시설유형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작업장 시설수는 704개소로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약 86.8%를 차지함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시설 수, 근로장애인 수, 종사자 수 모두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임
  - 지역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327개소(약 40.3%)가 서울·경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서울·경기에 24개소가 있는 반면,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류 및 기능(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④ 정신건강 관련 기관

〈표 10-3-27〉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정신건강증진시설									
		계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종합병원 정신과	병원 정신과	정신병원	요양병원 정신과	한방병원 정신과	의원 정신과	한의원 정신과		
2018	2,415	2,077	202	176	144	–	–	1,148	–	348	59
2019	2,562	2,247	200	256	84	–	–	1,299	–	349	59
2020	2,661	2,345	215	195	123	–	–	1,403	–	350	59
2021	2,759	2,443	218	70	247	3	4	1,494	2	346	59
2022	2,844	2,519	219	42	257	3	4	1,583	1	351	59
서울	758	727	42	4	12	1	1	561	1	102	3
부산	214	194	19	0	23	0	0	131	0	18	3
대구	137	126	8	1	16	0	0	80	0	18	3
인천	126	108	13	1	17	1	0	62	0	12	2
광주	88	77	7	3	9	0	0	43	0	11	4
대전	132	122	9	1	7	0	0	70	0	31	4
울산	42	34	4	0	7	0	0	19	0	3	1
세종	19	17	1	0	1	0	0	11	0	3	1
경기	563	513	44	13	51	1	2	333	0	63	6
강원	71	48	10	1	9	0	0	25	0	3	0
충북	83	66	8	4	10	0	0	29	0	11	4
충남	109	90	6	2	17	0	1	34	0	20	10
전북	118	99	8	1	10	0	0	52	0	24	4
전남	88	63	14	7	11	0	0	24	0	3	4
경북	121	93	11	2	26	0	0	31	0	18	5
경남	133	106	10	0	29	0	0	58	0	5	4
제주	42	36	5	2	2	0	0	20	0	6	1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임
2) 정신의료기관의 기관유형은 의료기관개설허가서 기준임
3) 지역사회재활기관 중 자살예방센터는 독립 자살예방센터만 포함됨(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는 미포함)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p58.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p58.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p58.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p60-61.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p46-47, p57.

- 2022년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2,844개소로, 정신건강증진시설 2,519개소, 지역사회재활기관 325개소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수는 매년 증가 추이를 보임(전년도 대비 85개소 증가)
  -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의원 정신과가 1,583개소(6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사회재활기관 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244개소(7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지역별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758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 563개소, 부산 214개소 등의 순임

〈표 10-3-27〉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계속)

(단위: 개소)

구분	지역사회재활기관					
	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광역	기초	기본		
2018	309	16	235	8	50	-
2019	315	16	241	2	49	7
2020	316	16	244	-	50	6
2021	316	16	244	-	50	6
2022	325	17	244	-	58	6
서울	31	1	25	-	3	2
부산	20	1	16	-	3	-
대구	11	1	8	-	2	-
인천	18	1	11	-	5	1
광주	11	1	5	-	5	-
대전	10	1	5	-	4	-
울산	8	1	5	-	2	-
세종	2	1	1	-	-	-
경기	50	1	37	-	9	3
강원	23	1	18	-	4	-
충북	17	1	14	-	2	-
충남	19	1	16	-	2	-
전북	19	1	14	-	4	-
전남	25	1	22	-	2	-
경북	28	1	25	-	2	-
경남	27	1	20	-	6	-
제주	6	1	2	-	3	-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임
2) 정신의료기관의 기관유형은 의료기관개설허가서 기준임
3) 지역사회재활기관 중 자살예방센터는 독립 자살예방센터만 포함됨(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는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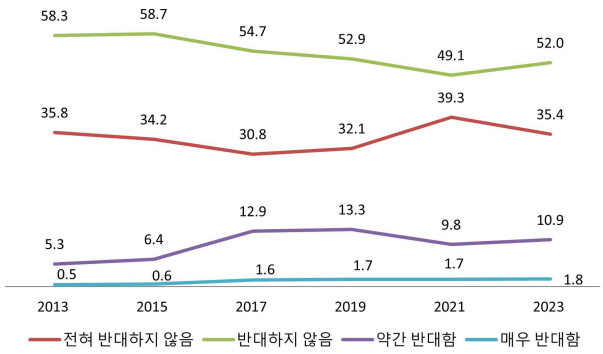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p58.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p58.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p58.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p60-61.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p46-47, p57.

정신건강 관련 기관 종류 및 기능(출처: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https://www.mentalhealth.go.kr/portal/main/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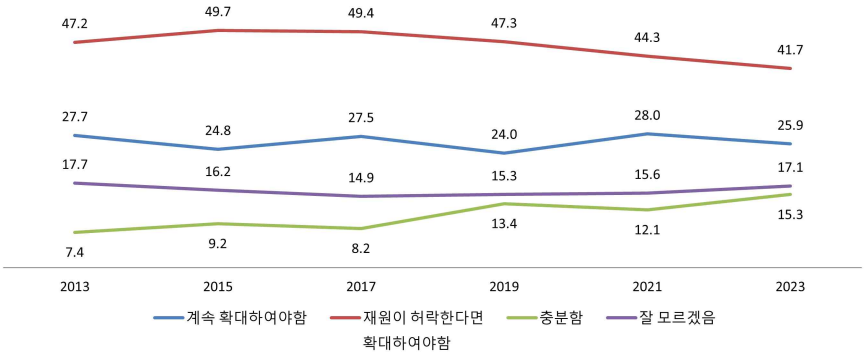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생활지도 등 제공하는 기관
- 정신요양시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제공하는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수립, 조정,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광역, 기초로 구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
- 자살예방센터: 지역사회 내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1. 인권보호

[그림 2-11-1]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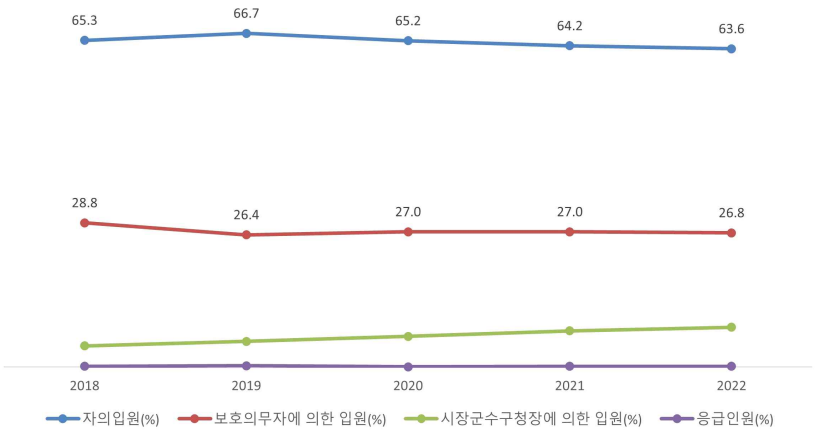


[그림 2-11-2]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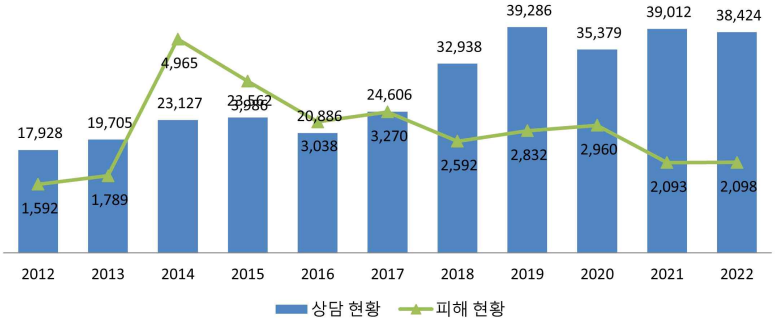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전혀 반대하지 않음+반대하지 않음) 비율은 87.4%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12.7%로 2021년 11.5%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으로 41.7%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함'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2013년 27.7%에서 2023년 25.9%로 감소 추이를 보임

[그림 2-11-3] 정신의료기관 입원 유형 - 연도별



[그림 2-11-4] 장애인 성폭력 현황 - 연도별



- 2022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전체 입원자 중 자의입원 비율은 63.6%이고, 비자의적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비율은 34.8%임
- 2022년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38,424건으로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건수는 2,098건으로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1) 사회적 차별

(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입학 및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24.7	17.0	21.2	7.4	10.4	14.5	33.8	42.2
	초등학교	37.2	41.8	44.8	22.1	32.6	29.8	39.0	34.5
	중학교	33.5	32.6	43.7	15.7	23.9	36.4	41.8	33.7
	고등학교	26.5	22.5	37.6	9.8	19.8	38.5	35.8	32.0
	대학교	8.8	7.4	19.1	5.8	16.0	-	13.8	12.9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6.9	4.8	17.9	4.8	7.8	5.3	18.3	-
	또래학생으로부터	29.4	27.6	30.1	24.0	26.6	33.2	55.2	68.6
	학부모로부터	12.1	10.1	15.1	7.7	18.3	5.9	21.3	-
결혼		17.7	18.5	26.3	12.5	17.0	15.0	-	39.7
자녀 양육교육		2.7	2.3	2.4	2.6	2.7	5.8	-	10.5
취업		21.5	21.9	18.6	19.2	18.8	24.9	17.3	28.1
직장 생활	소득(임금)	13.6	14.2	13.8	10.5	10.6	8.5	26.5	14.9
	동료와의 관계	13.5	12.1	12.5	14.2	15.4	14.9	26.4	5.0
	승진	7.8	7.7	7.5	8.2	6.7	8.3	13.3	9.2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2.8	2.8	3.0	4.5	1.6	1.6	7.2	2.5
보험제도상(계약 시)		13.9	12.9	12.0	14.4	10.5	14.8	21.6	22.3
의료기관 이용 시		3.7	2.5	6.2	2.7	3.9	2.9	7.1	6.4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4.6	3.1	4.8	3.5	6.0	3.9	8.7	3.4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6.8	3.6	7.2	3.7	8.1	12.0	22.7	28.1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2020년 사회차별경험 구분에서 자녀 양육·교육 항목이 추가됨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19.

- 2020년 기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초등학교 입학·전학 37.2%, 중학교 입학·전학 33.5%,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29.4%의 순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인은 초등학교 입학·전학 과정과 중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각각 41.8%, 32.6%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뇌병변장애인은 초등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이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중학교 입학·전학 43.7%, 고등학교 입학·전학 3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시각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와 초등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각각 24.0%, 22.1%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청각장애인은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32.6%,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26.6%, 언어장애인은 고등학교 입학·전학 시 38.5%,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33.2%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지적장애인의 경우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55.2%, 중학교 입학·전학 시 41.8%,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68.6%,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 시 42.2%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입학 및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21.3	33.7	-	-	19.2	8.0	-	32.5
	초등학교	47.1	44.2	22.9	32.0	20.1	29.7	45.5	37.9
	중학교	54.5	37.3	21.4	12.5	-	25.2	41.7	36.7
	고등학교	40.9	24.3	10.0	15.8	10.1	19.7	28.2	36.5
	대학교	2.9	1.6	-	-	-	-	-	-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2.5	3.5	-	12.9	-	12.9	-	9.8
	또래학생으로부터	24.9	4.7	36.1	18.8	19.3	54.1	-	33.7
	학부모로부터	9.3	4.7	-	18.8	-	29.8	-	18.1
결혼		8.4	-	9.4	-	20.6	-	24.0	17.7
자녀 양육교육		0.9	-	2.6	-	10.8	-	9.1	2.7
취업		13.0	17.3	14.1	-	54.5	18.6	32.9	21.5
직장 생활	소득(임금)	16.3	7.7	12.8	10.8	15.6	24.4	7.1	16.9
	동료와의 관계	16.9	4.8	10.1	9.8	11.8	37.0	10.2	27.8
	승진	10.2	4.6	5.9	5.9	6.5	24.9	6.6	14.6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4.7	1.2	1.6	2.1	3.8	3.7	1.1	10.8
보험제도상(계약 시)		19.6	23.8	20.1	10.8	20.3	29.3	15.5	22.2
의료기관 이용 시		8.0	2.5	3.1	2.1	2.7	6.3	4.1	3.8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9.9	6.6	5.7	1.5	3.1	6.2	7.1	7.0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13.1	1.6	1.2	4.0	3.2	10.6	3.3	10.1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2020년 사회차별경험 구분에서 자녀 양육·교육 항목이 추가됨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19.

- 정신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54.5%가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24.9%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신장장애인은 초등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44.2%, 취업과정에서 17.3%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보험제도상(계약 시) 23.8%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호흡기 장애인은 초등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32.0%, 간 장애인은 취업과정에서 54.5%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안면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54.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장루·요루장애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전학 시 각각 45.5%, 41.7%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취업과정에서도 32.9%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1-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입학 및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24.7	24.0	25.9	39.7	29.2	9.2	12.0	28.7	13.2
	초등학교	37.2	33.8	42.8	30.6	37.1	33.7	45.5	37.1	37.5
	중학교	33.5	32.0	36.5	27.1	36.5	31.1	32.6	36.8	28.2
	고등학교	26.5	25.8	28.3	9.1	29.1	24.2	24.5	30.7	19.6
	대학교	8.8	6.5	14.6	-	10.1	7.4	6.8	11.3	6.1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6.9	7.4	6.2	-	13.9	5.2	7.5	9.3	4.9
	또래학생으로부터	29.4	27.9	31.7	-	34.5	29.6	27.4	34.3	25.0
	학부모로부터	12.1	11.7	12.7	-	11.0	10.7	14.4	13.5	10.8
결혼		17.7	18.5	16.6	-	14.3	18.8	17.8	25.4	12.6
자녀 양육·교육		2.7	2.3	3.2	-	3.3	4.0	1.9	7.0	1.1
취업		21.5	23.5	17.5	-	32.4	26.0	14.9	27.5	18.7
직장 생활	소득(임금)	13.6	15.3	10.2	-	17.8	17.5	9.2	19.2	11.1
	동료와의 관계	13.5	15.3	10.1	-	18.8	17.3	9.1	17.1	11.7
	승진	7.8	9.6	4.6	-	13.8	11.0	3.9	11.7	6.1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2.9	3.2	2.1	-	4.9	4.1	1.2	4.9	2.1
보험제도상(계약 시)		13.9	14.4	13.0	23.1	22.3	16.7	8.8	20.4	10.6
의료기관 이용 시		3.7	3.4	4.2	8.3	4.2	3.6	3.4	6.4	2.1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4.6	4.3	4.9	6.5	5.5	4.6	4.3	6.7	3.4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6.8	7.5	5.7	18.4	14.5	5.7	4.8	13.1	3.0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53-657.

-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입학 및 전학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 경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특히 보험제도 상(계약시)의 경우, 17세 이하의 차별 경험 비율이 23.1%이고, 65세 이상은 8.8%로 다른 영역에 비해 연령별 비율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별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 시, 결혼, 고등학교 입학·전학 시, 그리고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경우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비해 각각 15.5%p, 12.8%p, 11.1%p, 10.1%p 차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개인)

〈표 11-1-3〉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항상 느낀다	8.7	5.8	11.1	7.9	10.5	27.7	18.1	29.5	18.7	5.1	1.1	4.9	7.8	25.9	10.0	19.4
	가끔 느낀다	31.2	27.3	35.2	30.6	39.7	40.8	40.5	31.6	38.6	24.4	23.3	26.1	27.0	72.4	17.2	39.1
	별로 느끼지 않는다	36.4	38.4	38.4	34.9	36.5	25.8	24.5	17.0	28.5	36.2	30.3	46.6	40.6	0.0	47.1	34.3
	전혀 느끼지 않는다	23.7	28.6	15.4	26.5	13.3	5.7	16.9	21.9	14.2	34.3	45.3	22.5	24.5	1.7	25.7	7.2
2014	항상 느낀다	6.2	3.7	10.1	6.0	6.0	5.3	16.1	10.1	12.8	3.3	8.3	3.4	4.8	0.0	5.8	4.3
	가끔 느낀다	31.6	23.0	40.0	32.6	40.3	43.3	52.9	67.6	50.3	20.4	29.1	38.3	23.3	66.1	34.6	43.8
	별로 느끼지 않는다	41.7	46.8	37.8	41.2	40.5	39.4	24.5	15.3	26.4	48.1	51.2	27.6	36.7	31.8	42.9	31.2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5	26.4	12.0	20.2	13.2	12.1	6.4	6.9	10.5	28.2	11.4	30.8	35.2	2.1	16.7	20.7
2017	항상 느낀다	7.6	4.5	13.7	4.5	7.8	11.1	16.6	27.2	13.3	7.4	4.6	4.2	4.9	18.4	1.2	13.2
	가끔 느낀다	27.2	21.6	34.8	25.2	34	41.5	39.5	59.4	38.5	16.9	24.7	23.2	9.3	19.1	26.6	36.6
	별로 느끼지 않는다	45.5	48.2	39.1	47.8	46.4	42.3	35.1	11.2	43.6	53.5	46.7	50.0	51.0	26.0	46.1	35.0
	전혀 느끼지 않는다	19.7	25.6	12.3	22.5	11.8	5.1	8.8	2.3	4.7	22.2	24.1	22.7	34.7	36.5	26.0	15.3
2020	항상 느낀다	1.7	1.0	1.1	0.8	1.0	2.4	7.2	7.0	2.8	0.6	1.2	0.7	0.7	2.8	1.0	1.8
	가끔 느낀다	27.6	21.5	39.0	26.7	25.5	38.7	45.1	42.9	48.0	19.8	16.0	23.0	14.4	45.5	21.8	39.5
	별로 느끼지 않는다	55.4	58.8	49.4	54.0	59.5	49.9	41.6	43.8	43.0	62.6	63.1	63.1	58.4	45.7	63.3	48.0
	전혀 느끼지 않는다	15.3	18.6	10.6	18.4	13.9	9.0	6.1	6.3	6.1	17.0	19.6	13.2	26.5	6.1	13.9	10.6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6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6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16.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09.

- 2020년 기준 장애 때문에 본인이 사회에서 차별을 항상 또는 가끔 느낀다고 인식한 장애인의 비율은 29.3%이며, 별로 또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70.7%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 중 52.3%가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을 느낀다(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 포함)고 하였고, 정신장애 50.8%, 자폐성장애 49.9% 안면장애 4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1-1-4〉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2011	항상 느낀다	8.8	9.8	7.4	14.8	9.3	10.8	5.9	16.0	6.7	8.8
	가끔 느낀다	31.2	31.5	30.7	39.0	37.8	30.6	28.1	40.6	28.8	31.5
	별로 느끼지 않는다	36.4	34.8	38.5	21.0	30.5	36.0	40.7	28.8	38.3	36.1
	전혀 느끼지 않는다	23.7	23.9	23.4	25.1	22.3	22.6	25.3	14.7	26.2	23.6
2014	항상 느낀다	6.2	6.9	5.2	14.3	11.0	7.2	3.0	11.6	2.9	6.3
	가끔 느낀다	31.6	31.5	31.7	53.7	41.0	32.1	26.1	43.9	23.3	31.4
	별로 느끼지 않는다	41.7	40.8	43.0	21.8	30.6	40.1	48.6	33.9	46.6	41.6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5	20.8	20.1	10.2	17.4	20.6	22.3	10.6	27.2	20.7
2017	항상 느낀다	7.6	8.2	6.7	20.5	13.2	8.2	4.4	13.9	3.5	7.5
	가끔 느낀다	27.2	28.4	25.6	40.0	33.0	28.2	23.9	37.2	20.7	27.1
	별로 느끼지 않는다	45.5	43.5	48.2	28.6	37.1	43.2	51.0	38.2	50.5	45.8
	전혀 느끼지 않는다	19.7	19.8	19.5	10.9	16.7	20.4	20.6	10.7	25.2	19.6
2020	항상 느낀다	1.7	1.6	1.8	4.6	6.3	1.4	0.5	3.6	0.5	-
	가끔 느낀다	27.6	28.1	26.9	43.3	37.1	30.4	22.3	39.7	20.4	-
	별로 느끼지 않는다	55.4	55.1	55.8	42.4	44.4	53.6	60.3	47.4	60.2	-
	전혀 느끼지 않는다	15.3	15.2	15.5	9.6	12.2	14.7	16.9	9.3	18.9	-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3) 장애정도는 각 연도 별로 2011년 중증(1-2급), 경증(3-6급), 2014년과 2017년은 중증(1-3급), 경증(4-6급), 2020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33.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56.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59.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57.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7세 이하는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을 느낀다(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 포함)는 비율이 47.9%로 다른 연령에 비해 사회적 차별을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을 인식한 비율은 심한장애가 43.3%, 심하지 않은 장애가 20.9%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3)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사회)

〈표 11-1-5〉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전혀 없다	0.8	1.0	0.7	0.9	0.6	1.1	1.4	0.0	0.3	0.0	0.0	0.0	0.0	0.0	0.0	0.0
	별로 없다	18.5	20.0	16.9	15.6	20.1	16.5	10.5	1.6	17.5	20.8	28.4	20.1	9.6	0.0	34.1	12.6
	약간 많다	48.3	48.3	47.1	50.9	51.1	27.1	45.0	41.2	45.6	43.9	44.8	62.2	66.8	61.2	52.2	49.0
	매우 많다	32.4	30.7	35.2	32.6	28.2	55.2	43.1	57.2	36.6	35.3	26.8	17.7	23.6	38.8	13.8	38.4
2014	전혀 없다	1.0	1.2	0.8	0.2	0.4	0.0	0.6	0.7	0.7	3.6	0.0	9.4	0.0	0.0	2.4	0.0
	별로 없다	26.4	30.4	20.5	28.5	24.7	28.2	9.8	14.1	19.9	28.0	21.0	15.3	26.4	23.4	33.2	31.7
	약간 많다	46.2	46.0	46.5	43.9	51.4	41.7	43.5	42.5	53.9	40.0	37.5	41.7	54.4	29.3	40.8	37.9
	매우 많다	26.4	22.4	32.1	27.4	23.5	30.1	46.2	42.8	25.4	28.4	41.5	33.7	19.2	47.2	23.6	30.4
2017	전혀 없다	1.8	2.1	2.2	1.3	2.0	1.6	1.0	0.0	1.6	0.6	0.0	0.0	0.9	0.0	1.2	0.8
	별로 없다	18.3	20.8	15.3	19.2	18.5	14.0	7.1	0.0	16.6	21.6	26.6	25.3	17.0	27.7	14.8	11.1
	약간 많다	46.0	46.2	44.8	48.9	50.7	42.2	41.6	24.0	40.5	44.9	45.6	48.6	55.9	19.1	53.2	37.2
	매우 많다	33.9	30.9	37.7	30.6	28.8	42.2	50.4	76.0	41.3	32.9	27.9	26.0	26.1	53.2	30.8	51.0
2020	전혀 없다	3.6	4.2	1.7	5.2	3.7	2.2	1.5	2.1	1.0	4.5	4.9	4.6	3.9	-	2.9	2.5
	별로 없다	32.9	34.9	27.0	35.5	36.4	27.9	24.1	20.5	25.3	33.1	34.7	34.8	35.0	32.5	34.8	24.8
	약간 많다	53.8	52.7	61.3	49.5	52.6	54.8	54.0	53.4	61.5	53.6	55.9	49.9	58.0	58	57.1	60.7
	매우 많다	9.8	8.2	10.0	9.8	7.4	15.1	20.4	24.0	12.2	8.9	4.4	10.7	3.1	9.5	5.2	12.1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65.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6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16.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09.

- 2020년 기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은 '약간 많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고, '별로 없다' 3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매우 많다'가 9.8%로 나타났으며, '약간 많다'의 경우 53.8%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63.6%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의 차별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폐성장애가 2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적장애 20.4%, 언어장애 15.1%, 정신장애 12.2% 등의 순임

〈표 11-1-6〉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2011	전혀 없다	0.8	0.8	0.9	1.2	0.9	0.4	1.3	0.8	0.8	0.8
	별로 없다	18.5	17.0	20.5	9.4	11.6	16.2	24.7	14.0	19.6	18.3
	약간 많다	48.3	48.1	48.6	42.6	48.5	48.0	49.0	45.4	49.0	48.2
	매우 많다	32.4	34.1	30.0	46.9	39.0	35.4	25.0	39.8	30.6	32.7
2014	전혀 없다	1.0	0.8	1.3	0.4	0.3	0.4	1.9	1.1	0.9	1.0
	별로 없다	26.4	23.7	30.0	8.9	13.5	24.3	34.1	18.4	31.7	26.5
	약간 많다	46.2	47.0	45.2	44.9	47.1	45.1	47.0	46.2	45.6	45.8
	매우 많다	26.4	28.5	23.4	45.7	39.1	30.2	17.0	34.4	21.8	26.7
2017	전혀 없다	1.8	2.0	1.6	1.3	1.2	1.6	2.2	1.3	2.2	1.8
	별로 없다	18.3	17.4	19.5	7.1	10.8	14.9	24.0	13.6	21.4	18.4
	약간 많다	46.0	45.7	46.4	31.4	43.5	44.1	49.2	42.3	48.4	46.0
	매우 많다	33.9	34.9	32.5	60.2	44.5	39.4	24.6	42.8	28.1	33.8
2020	전혀 없다	3.6	3.6	3.6	2.2	1.8	3.5	4.2	2.2	4.5	-
	별로 없다	32.9	32.3	33.6	26.2	23.2	28.9	38.5	26.3	36.8	-
	약간 많다	53.8	54.6	52.6	51.0	56.6	56.8	51.1	57.0	51.8	-
	매우 많다	9.8	9.5	10.2	20.6	18.4	10.8	6.2	14.5	6.9	-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장애정도는 각 연도 별로 2011년 중증(1-2급), 경증(3-6급), 2014년과 2017년은 중증(1-3급), 경증(4-6급), 2020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3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56.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60.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58.

- 2020년 기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는 '매우 많다'의 비율이 20.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반면, 65세 이상은 '매우 많다'의 비율이 6.2%로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심한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비해 '매우 많다'의 비율이 7.6%p 정도 높게 나타남

(4)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표 11-1-7〉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연도별, 동·읍면부별, 성별, 장애여부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단위: %)

구분	계	전혀 반대하지 않음	반대하지 않음	약간 반대함	매우 반대함
2009	100	37.9	55.4	6.2	0.5
2011	100	35.9	57.9	5.7	0.5
2013	100	35.8	58.3	5.3	0.5
2015	100	34.2	58.7	6.4	0.6
2017	100	30.8	54.7	12.9	1.6
2019	100	32.1	52.9	13.3	1.7
2021	100	39.3	49.1	9.8	1.7
2023	100	35.4	52	10.9	1.8
도시(동부)	100	35.5	48.9	9.9	1.8
농어촌(읍면부)	100	34.8	50.2	9.5	1.5
남자	100	36.0	52.0	10.1	1.9
여자	100	34.7	52.0	11.6	1.7
장애인	100	43.8	46.0	8.8	1.4
비장애인	100	34.9	52.3	11.0	1.8
13 – 19세	100	40.9	47.1	10.6	1.4
20 – 29세	100	38.0	49.7	10.0	2.2
30 – 39세	100	34.8	51.5	11.4	2.2
40 – 49세	100	38.3	49.3	10.9	1.6
50 – 59세	100	35.9	52.7	10.0	1.4
60세 이상	100	30.9	55.7	11.6	1.8
65세 이상	100	29.8	56.7	11.7	1.8
초졸 이하	100	34.0	53.5	10.4	2.2
중졸	100	34.8	53.2	10.4	1.6
고졸	100	36.8	51.6	10.0	1.7
대졸 이상	100	34.7	51.6	11.8	1.8
전문 관리	100	37.8	49.8	10.5	1.9
사무	100	33.9	51.7	12.8	1.6
서비스판매	100	35.8	51.9	10.7	1.6
농어업	100	24.9	61.1	11.8	2.3
기능노무	100	38.2	51.1	8.8	1.9
100만원 미만	100	35.0	53.6	9.8	1.6
100-200만원 미만	100	34.0	54.8	9.7	1.5
200-300만원 미만	100	37.2	51.9	9.4	1.5
300-400만원 미만	100	36.3	51.9	10.4	1.5
400-500만원 미만	100	34.8	53.0	10.6	1.7
500-600만원 미만	100	37.0	50.6	10.6	1.7
600만원 이상	100	33.9	50.3	13.3	2.5

주: 1)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2) 2015년 사회조사까지는 '장애인 관련 시설'의 문항에서 시설의 예시를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으로 명시한 반면, 2017년 사회조사에는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으로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함

자료: 1) 통계청(2009). 「2009년 사회조사 주요결과」 p34.
2) 통계청(2011). 「2011년 사회조사 주요결과」 p40.
3) 통계청(2013). 「2013년 사회조사 주요결과」 p38.
4) 통계청(2015). 「2015년 사회조사보고서」 p122.
5) 통계청(2017). 「2017년 사회조사보고서」 p122.
6)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p122.
7)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보고서」 p122.
8) 통계청(2023) 「2023년 사회조사보고서」 p130.

- 2023년 기준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전혀 반대하지 않음+반대하지 않음) 비율은 87.4%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12.7%로 2021년 11.5%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장애여부별로 살펴보면, 반대하지 않는 비율은 장애인이 89.8%로 비장애인 87.2%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10.0%이상이 반대하는 가운데 65세 이상이 14.5%, 60세 이상이 13.4%로 연령층이 높은 집단이 장애인 관련 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표 11-1-8〉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연도별, 동·읍면부별, 성별, 장애여부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단위: %)

구분	계	계속 확대하여야함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함	충분함	잘 모르겠음
2007	100.0	36.6	47.4	2.2	13.8
2009	100.0	34.7	44.5	3.5	17.3
2011	100.0	33.6	45.2	5.7	15.5
2013	100.0	27.7	47.2	7.4	17.7
2015	100.0	24.8	49.7	9.2	16.2
2017	100.0	27.5	49.4	8.2	14.9
2019	100.0	24.0	47.3	13.4	15.3
2021	100.0	28.0	44.3	12.1	15.6
2023	100.0	25.9	41.7	15.3	17.1
도시(동부)	100.0	26.3	42.4	14.1	17.2
농어촌(읍면부)	100.0	23.8	38.2	21.1	16.9
남자	100.0	25.5	42.4	15.7	16.4
여자	100.0	26.2	41	15	17.8
장애인	100.0	32.7	35.2	16.9	15.3
비장애인	100.0	25.5	42	15.2	17.2
13 - 19세	100.0	28.8	38	10.2	23
20 - 29세	100.0	26.5	40.3	13.1	20.1
30 - 39세	100.0	26.7	44.2	12.6	16.4
40 - 49세	100.0	31.8	43.2	11.4	13.6
50 - 59세	100.0	29.1	43.4	13.6	14
60세 이상	100.0	21	43.1	19.7	16.2
65세 이상	100.0	16.9	37.6	25.9	19.6
초졸 이하	100.0	14.8	33.3	25.8	26
중졸	100.0	19.6	33.8	23.1	23.4
고졸	100.0	22.1	38.7	18.4	20.9
대졸 이상	100.0	25.7	41.7	15.6	17.1
전문 관리	100.0	28.7	44.6	12.2	14.5
사무	100.0	31.4	45.9	10.2	12.5
서비스판매	100.0	28.5	46.6	11.5	13.5
농어업	100.0	26.4	43.2	15.3	15.1
기능노무	100.0	16.9	36.7	29.5	16.9
100만원 미만	100.0	24.3	40.9	17.2	17.5
100 - 200만원 미만	100.0	19.8	33.2	24.6	22.3
200 - 300만원 미만	100.0	22.4	38.7	20.5	18.4
300 - 400만원 미만	100.0	24	41.2	16.7	18.1
400 - 500만원 미만	100.0	25.1	42.3	15.2	17.5
500 - 600만원 미만	100.0	26.4	42.7	14.5	16.4
600만원 이상	100.0	29.5	42.3	12.6	15.6

주: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자료: 1) 통계청(2009). 「2009년 사회조사 주요결과」 p35.
2) 통계청(2011). 「2011년 사회조사 주요결과」 p41.
3) 통계청(2013). 「2013년 사회조사 주요결과」 p39.
4) 통계청(2015). 「2015년 사회조사보고서」 p124.
5) 통계청(2017). 「2017년 사회조사보고서」 p124.
6)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p124.
7)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보고서」 p124.
8) 통계청(2023) 「2023년 사회조사보고서」 p132.

- 2023년 기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함'이 41.7%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2021년 25.9%로 2021년 28.0%에 비해 하락함
  - 장애여부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장애인이 32.7%로 비장애인 25.5%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50대를 기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6)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표 11-1-9〉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알고 있다	7.8	8.6	5.3	8.5	5.8	9.8	7.5	16.6	4.7	11.8	7.9	6.9	24.7	15.3	2.0	13.2
	들어본 적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1.3	24.1	17.7	21.9	14.5	15.6	17.9	31.8	15.7	25.9	10.4	37.0	35.9	17.0	20.9	8.4
	알지 못한다	70.8	67.3	77.0	69.6	79.7	74.6	74.6	51.6	79.6	62.3	81.7	56.1	39.4	67.7	77.2	78.4
2014	알고 있다	8.3	8.9	7.3	7.4	5.3	2.5	10.4	28.9	4.2	9.0	18.4	11.7	15.1	15.5	8.5	4.8
	들어본 적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3.1	24.0	23.7	24.5	18.1	19.0	21.1	40.2	20.7	26.5	13.0	7.9	27.1	46.8	13.4	33.6
	알지 못한다	68.7	67.2	68.9	68.1	76.6	78.4	68.4	30.9	75.1	64.5	68.6	80.4	57.8	37.7	78.1	61.6
2017	알고 있다	13.9	13.6	15.9	13.1	10.5	20.4	15.5	43.8	7.1	20.2	13.0	9.2	29.2	23.4	11.8	19.3
	들어본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3	26.1	26.0	22.3	21.0	27.2	25.1	35.8	27.3	28.0	31.0	30.9	37.0	44.1	25.8	17.9
	모른다	60.7	60.4	58.1	64.6	68.5	52.4	59.4	20.3	65.6	51.8	56.0	59.9	33.8	32.5	62.5	62.8
2020	알고 있다	10.5	11.2	9.7	11.3	7.6	8.4	11.0	20.0	6.6	15.0	19.4	8.6	12.4	12.4	7.7	17.2
	들어본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9	27.5	23.6	28.2	21.7	32.0	20.7	23.3	20.5	36.3	32.2	35.1	36.8	35.2	28.7	25.6
	모른다	63.6	61.4	66.7	60.5	70.7	59.5	68.3	56.7	72.8	48.8	48.4	56.2	50.7	52.5	63.6	57.2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65.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65.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17.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10.

- 2020년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알지 못한다'가 63.6%로 가장 많았고, '알고 있다'는 10.5%에 불과함
  - 장애유형별로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정신장애가 72.8%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 70.7%, 지적장애 68.3%, 뇌병변장애 66.7%, 장루·요루장애 6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제정(2008년 4월 11일 시행)

〈표 11-1-10〉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2011	알고 있다	7.8	10.4	4.3	10.3	12.8	9.4	3.8	10.5	7.2	8.0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1.3	24.1	17.5	23.4	29.2	24.3	14.5	21.6	21.7	21.6
	알지 못한다	70.8	65.5	78.2	66.3	58.0	66.3	81.7	68.0	71.1	70.4
2014	알고 있다	8.3	10.0	6.0	18.6	12.7	10.9	3.6	10.5	7.2	8.5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3.1	26.4	18.5	35.6	33.9	26.6	15.1	23.9	23.3	23.6
	알지 못한다	68.7	63.6	75.5	45.8	53.4	62.5	81.2	65.7	69.5	68.0
2017	알고 있다	13.9	16.7	10.2	28.9	22.9	18.0	7.1	17.5	12.0	14.1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3	29.0	20.3	34.8	29.4	30.7	19.2	26.0	25.0	25.4
	모른다	60.7	54.2	69.5	36.3	47.7	51.2	73.7	56.5	62.9	60.4
2020	알고 있다	10.5	13.0	7.2	18.0	20.0	13.8	5.4	12.6	9.3	-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9	29.0	21.7	25.1	29.4	31.5	21.2	24.1	27.0	-
	모른다	63.6	58.0	71.1	56.9	50.6	54.7	73.4	63.3	63.7	-

주: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장애정도는 각 연도 별로 2011년 중증(1-2급), 경증(3-6급), 2014년과 2017년은 중증(1-3급), 경증(4-6급), 2020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3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57.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60.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58.

2) 장애인 인권보호

(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및 수용

〈표 11-2-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계	149	63	84	2
2010	6	-	6	-
2011	5	2	3	-
2012	4	3	1	-
2013	7	6	1	-
2014	7	3	3	1
2015	9	3	5	1
2016	15	10	5	-
2017	12	7	5	-
2018	13	6	7	-
2019	12	2	10	-
2020	18	3	15	-
2021	18	4	14	-
2022	13	4	9	-

주: 누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4)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3). 「2022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32.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장애인 관련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총 누계 건수는 149건으로, 63건이 권고, 84건이 의견표명, 2건이 의견제출로 나타남
  • 2021년도 현황은 권고 4건, 의견표명 14건으로 총 18건임

〈표 11-2-2〉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연도별

(단위: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 중	권고 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 수용	불수용		
누계	63	59	28	31	-	4	100.0
2010	-	-	-	-	-	-	-
2011	2	2	-	2	-	-	100.0
2012	3	3	1	2	-	-	100.0
2013	6	6	3	3	-	-	100.0
2014	3	3	2	1	-	-	100.0
2015	3	3	1	2	-	-	100.0
2016	10	10	6	4	-	-	100.0
2017	7	7	3	4	-	-	100.0
2018	6	6	2	4	-	-	100.0
2019	2	2	2	-	-	-	100.0
2020	3	3	-	3	-	-	100.0
2021	4	4	2	2	-	-	100.0
2022	4	-	-	-	-	4	-

주: 1) 누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4)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2) 검토중인 경우 권고수용률에 포함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3). 「2022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33.

-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살펴본 결과, 2022년까지의 누적 권고건수 총 63건 중 수용은 28건, 일부 수용은 31건, 검토 중은 4건인 것으로 나타남
  • 2022년에는 총 4건이 권고되어 4건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연도별, 장애유형별, 차별영역별

(단위: 건)

구분		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6,679	886	1,340	1,313	1,138	1,148	1,512	1,435	1,139	1,216	1,051	754	742
장애 유형별	지체	5,263	297	494	382	403	333	628	424	313	315	417	194	195
	시각	4,394	142	192	299	290	440	329	580	430	296	352	240	201
	뇌병변	1,124	57	85	70	91	93	102	98	94	60	48	29	57
	청각	1,611	72	140	251	112	101	93	98	80	77	95	67	59
	지적(발달)	1,791	214	231	115	104	102	247	103	128	97	50	67	52
	언어	117	8	13	7	13	5	7	12	14	5	6	4	3
	정신장애	614	48	47	50	55	31	61	54	20	47	24	29	17
	기타	1,765	48	138	139	70	43	45	66	60	319	59	124	128
차별 영역별	고용	1,068	64	82	75	94	67	56	79	55	80	78	72	74
	교육	1,555	62	97	45	67	55	536	92	61	72	86	91	126
	재화·용역	10,419	488	807	708	678	734	644	1,002	788	735	805	503	499
	사법행정	452	77	36	30	42	38	46	26	20	28	–	–	–
	참정권	181	3	57	41	19	–	16	3	14	1	–	–	–
	괴롭힘 등	1,800	105	113	305	121	123	89	94	113	201	82	88	43
	기타	1,204	87	148	109	117	131	125	139	88	99	–	–	–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4.11.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3). 「2022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125-126.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511건, 2017년 1,435건, 2018년 1,139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에 1,216건으로 2018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20년 1,051건, 2021년 754, 2022년 742건으로 감소 추이에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가 201건, 지체장애가 195건으로 많이 나타남.
  - 2022년 기준으로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재화·용역 499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사법행정, 참정권은 0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3)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6,403	1,284	7	5	795	11	10	10	446	15,111	9,033	60	6,006	12	8
2008		413	34	-	-	22	-	-	-	12	379	221	-	157	1	-
2009		721	57	-	-	10	-	-	-	47	664	353	6	301	4	-
2010		1,101	85	-	1	25	3	-	-	56	1,016	663	15	332	6	-
2011		952	156	1	-	119	4	-	-	32	796	381	4	410	1	-
2012		1,508	137	1	-	115	-	-	-	21	1,370	615	1	754	-	1
2013		1,563	108	-	-	27	1	1	-	79	1,455	755	1	699	-	-
2014		1,096	79	-	1	15	2	-	-	61	1,014	560	5	449	-	3
2015		1,085	36	-	-	14	-	3	-	19	1,049	663	6	380	-	-
2016		1,641	51	-	3	19	-	-	-	29	1,590	1,199	7	384	-	-
2017		1,091	92	-	-	68	1	2	-	21	999	634	4	361	-	-
2018		1,326	39	2	-	23	-	2	1	11	1,286	780	1	505	-	1
2019		900	82	2	-	65	-	-	1	14	818	564	1	253	-	-
2020		1,341	203	-	-	175	-	2	8	18	1,137	762	-	375	-	1
2021		835	67	1	-	49	-	-	-	17	768	466	4	298	-	-
2022		830	58	-	-	49	-	-	-	9	770	417	5	348	-	2
고용	소계	81	9	-	-	8	-	-	-	1	72	30	-	42	-	-
	모집·채용	30	3	-	-	3	-	-	-	-	27	11	-	16	-	-
	임금·복리후생	3	1	-	-	1	-	-	-	-	2	1	-	1	-	-
	배치	18	2	-	-	2	-	-	-	-	16	8	-	8	-	-
	승진	5	-	-	-	-	-	-	-	-	5	2	-	3	-	-
	직무관련	10	1	-	-	-	-	-	-	1	9	2	-	7	-	-
	퇴직·해고	2	-	-	-	-	-	-	-	-	2	-	-	2	-	-
	교육	7	2	-	-	2	-	-	-	-	5	3	-	2	-	-
	기타	6	-	-	-	-	-	-	-	-	6	3	-	3	-	-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3). 「2022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33, 236.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830건으로 2020년 1,341건에 비해 51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전체 차별 진정건수는 830건으로 그중 인용된 사건은 58건, 진정접수 후 각하, 이송, 기각 등의 사유로 미인용된 사건은 770건으로 전체 92.8% 수준임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계속)

(단위: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긴급구제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교육	소계	96	4	-	-	4	-	-	-	-	92	70	-	22	-	-
	전·입학 거부	6	-	-	-	-	-	-	-	-	6	4	-	2	-	-
	시설물 접근·이용	49	2	-	-	2	-	-	-	-	47	40	-	7	-	-
	수업·시험 편의제공	14	1	-	-	1	-	-	-	-	13	8	-	5	-	-
	수업 등교 내 활동배제	2	-	-	-	-	-	-	-	-	2	1	-	1	-	-
	특수학급설치	4	-	-	-	-	-	-	-	-	4	3	-	1	-	-
	괴롭힘	5	-	-	-	-	-	-	-	-	5	3	-	2	-	-
	기타	16	1	-	-	1	-	-	-	-	15	11	-	4	-	-
재화·용역	소계	587	43	-	-	35	-	-	-	8	544	292	2	250	-	-
	재화·용역	198	18	-	-	15	-	-	-	3	180	113	1	66	-	-
	보험·금융	39	1	-	-	1	-	-	-	-	38	25	-	13	-	-
	시설물 접근	75	12	-	-	10	-	-	-	2	63	46	-	17	-	-
	이동교통수단	90	4	-	-	3	-	-	-	1	86	19	-	67	-	-
	정보접근·의사소통	127	5	-	-	4	-	-	-	1	122	58	-	64	-	-
	문화·예술·체육	13	1	-	-	1	-	-	-	-	12	8	-	4	-	-
	기타	45	2	-	-	1	-	-	-	1	43	23	1	19	-	-
괴롭힘 등	소계	66	2	-	-	2	-	-	-	-	62	25	3	34	-	2
	따돌림	2	-	-	-	-	-	-	-	-	2	-	-	2	-	-
	유기·방치	1	-	-	-	-	-	-	-	-	1	-	1	-	-	-
	폭행·학대	6	1	-	-	1	-	-	-	-	5	1	-	4	-	-
	금전착취	4	-	-	-	-	-	-	-	-	4	3	1	-	-	-
	모욕·비하	41	1	-	-	1	-	-	-	-	39	19	1	19	-	1
	기타	12	-	-	-	-	-	-	-	-	11	2	-	9	-	1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3). 「2022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33, 236.

- 차별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용역이 587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 96건, 고용 81건, 괴롭힘 등 66건 순으로 나타남
- 각 영역별 진정건수 대비 미인용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고용 88.9%, 교육 95.8%, 재화·용역 92.7%, 괴롭힘 등 93.9% 수준으로 나타남

〈표 11-2-5〉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 - 영역별, 연도별

(단위: 건)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누 계	1,284	95	98	857	42	18	126	48
2008	34	2	11	15	1	4	1	-
2009	57	5	5	37	1	-	8	1
2010	85	14	11	44	2	-	12	2
2011	156	8	1	126	4	-	14	3
2012	137	2	4	117	3	1	3	7
2013	108	4	6	78	2	-	9	9
2014	79	8	10	33	1	8	12	7
2015	36	7	2	18	-	-	8	1
2016	51	3	2	39	-	-	6	1
2017	92	5	11	34	24	-	12	6
2018	39	7	10	15	1	-	5	1
2019	82	3	3	58	1	4	8	5
2020	203	8	14	160	1	1	15	4
2021	67	10	4	40	1	-	11	1
2022	58	9	4	43	-	-	2	-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3). 「2022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35.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을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누계 기준), 재화·용역이 85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괴롭힘 등이 126건, 교육 98건, 고용 95건, 기타 48건, 사법·행정 42건, 참정권 18건 순으로 나타남

〈표 11-2-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건)

구 분	합 계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법 제32조 제3항	기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5,039	9,033	1,311	44	164	105	186	12	119	6,950	115	6	21	6,006	944	1,677	3,385
2008	378	221	54	1	6	11	2	1	2	139	5	-	-	157	20	56	81
2009	654	353	56	-	9	5	14	1	10	238	19	1	-	301	39	107	155
2010	995	663	227	2	10	19	16	-	6	369	13	1	-	332	61	94	177
2011	791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	410	59	146	205
2012	1,369	615	62	3	14	9	16	4	9	494	3	-	1	754	74	115	565
2013	1,454	755	215	5	37	2	20	-	6	459	9	1	1	699	62	102	535
2014	1,009	560	52	3	8	11	17	1	2	452	10	-	4	449	85	123	241
2015	1,043	663	49	1	8	7	14	1	12	561	8	-	2	380	62	139	179
2016	1,583	1,199	101	12	11	4	16	-	3	1,048	3	-	1	384	67	119	198
2017	995	634	60	1	11	7	13	1	5	529	6	-	1	361	81	113	167
2018	1,285	780	127	1	13	4	6	-	8	614	5	-	2	505	70	129	306
2019	817	564	58	10	6	5	15	1	7	458	3	-	1	253	68	94	91
2020	1,137	762	46	1	14	5	4	1	10	675	5	-	1	375	68	133	174
2021	764	466	62	1	4	5	12	-	26	345	8	-	3	298	55	111	132
2022	765	417	48	-	6	7	4	-	6	341	1	-	4	348	73	96	179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3). 「2022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29.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을 기각·각하 사유별로 살펴보면(누계 기준), 각하는 9,033건으로 사유별로는 제32조 제8호가 6,950건으로 가장 많고, 제1호 1,311건 등의 순임. 기각은 6,006건으로 사유별로는 제39조 제3호가 3,385건으로 가장 많음

(4)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유형 현황

〈표 11-2-7〉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 - 입원유형별, 연도별, 기관유형별, 권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A+B)	자의입원			비자의적 입원			응급 인원	기타	비자의 입원율 B/(A+B)
		계(A)	자의 입원	동의 입원	계(B)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2018	66,108	43,170	30,092	13,078	21,795	19,049	2,746	65	1,078	33.5
	(100.0)	(65.3)	(45.5)	(19.8)	(33.0)	(28.8)	(4.2)	(0.1)	(1.6)	
2019	65,436	43,665	29,792	13,873	20,616	17,298	3,318	107	1,048	32.1
	(100.0)	(66.7)	(45.5)	(21.2)	(31.5)	(26.4)	(5.1)	(0.2)	(1.6)	
2020	62,702	40,873	27,430	13,443	20,710	16,912	3,798	25	1,094	33.6
	(100.0)	(65.2)	(43.7)	(21.4)	(33.0)	(27.0)	(6.1)	(0.0)	(1.7)	
2021	59,412	38,115	25,689	12,426	20,299	16,026	4,273	66	932	34.8
	(100.0)	(64.2)	(43.2)	(20.9)	(34.2)	(27.0)	(7.2)	(0.1)	(1.6)	
2022	56,785	36,171	24,396	11,775	19,693	15,210	4,483	83	838	35.3
	(100.0)	(63.6)	(42.9)	(20.7)	(34.6)	(26.8)	(7.9)	(0.1)	(1.5)	
종합병원 정신과	2,835	2,090	1,382	708	729	-	-	-	-	25.9
	(100.0)	(73.7)	(48.7)	(25.0)	(25.7)	-	-	-	-	
병원정신과	2,746	1,906	1,400	506	835	-	-	-	-	30.5
	(100.0)	(69.4)	(51.0)	(18.4)	(30.4)	-	-	-	-	
정신병원	49,898	30,955	20,797	10,158	18,044	-	-	-	-	36.8
	(100.0)	(62.0)	(41.7)	(20.4)	(36.2)	-	-	-	-	
한방병원 정신과	-	-	-	-	-	-	-	-	-	-
	-	-	-	-	-	-	-	-	-	
정신과의원	225	205	95	110	20	-	-	-	-	8.9
	(100.0)	(91.1)	(42.2)	(48.9)	(8.9)	-	-	-	-	
수도권	1,081	1,015	722	293	65	-	-	-	-	6
	(100.0)	(93.9)	(66.8)	(27.1)	(6.0)	-	-	-	-	
전라권	-	-	-	-	-	-	-	-	-	-
	-	-	-	-	-	-	-	-	-	
경상권	17,001	11,813	7,042	4,771	5,130	3,941	1,189	28	30	30.3
	(100.0)	(69.5)	(41.4)	(28.1)	(30.2)	(23.2)	(7.0)	(0.2)	(0.2)	
강원권	8,050	5,819	3,865	1,954	2,195	1,773	422	27	9	27.4
	(100.0)	(72.3)	(48.0)	(24.3)	(27.3)	(22.0)	(5.2)	(0.3)	(0.1)	
충청권	23,077	13,297	10,076	3,221	9,759	7,510	2,249	20	1	42.3
	(100.0)	(57.6)	(43.7)	(14.0)	(42.3)	(32.5)	(9.7)	(0.1)	(0)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개인 식별 문제로 인하여 일부 값은 비공개 처리함
3)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입원유형을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응급입원'으로 분류함
4) 비자의 입원률은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정신의료기관 자의적·비자의적 입원자 중 비자의 입원의 형태로 입원한 대상자의 비율임. 이때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기타(치료감호소, 법원의 명령) 미포함
· 비자의 입원률(%) = (해당시점 비자의적 입원환자수 / 해당시점 자의적·비자의적 입원환자 수)×100.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 p35.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p35.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p35.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 p37.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p23.

- 2022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전체 입원자 수는 56,785명이고, 비자의 입원율은 35.3% 수준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입원자 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이고, 비자의 입원율은 2019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임
  - 기관유형별로는 '정신병원'의 입원자 수가 49,898명으로 약 87.8%를 차지하고, 비자의 입원율 또한 36.8%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높은 편임
  - 권역별로는 '경상권'의 입원자 수가 23,077명으로 가장 많고, 비자의 입원율 또한 42.3%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편임

〈표 11-2-8〉 정신요양시설 입소 현황 - 입소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자의적 유형			비자의적 유형
		계(A)	자의입소	동의입소	
2018	9,518	7,522	5,485	2,037	1,996
	(100.0)	(79.0)	(57.6)	(21.4)	(21.0)
2019	9,252	7,744	5,521	2,223	1,508
	(100.0)	(83.7)	(59.7)	(24.0)	(16.3)
2020	8,828	7,499	5,307	2,192	1,329
	(100.0)	(84.9)	(60.1)	(24.8)	(15.1)
2021	8,537	7,363	5,257	2,106	1,174
	(100.0)	(86.2)	(61.6)	(24.7)	(13.8)
2022	8,249	7,179	5,170	2,009	1,070
	(100.0)	(87.0)	(62.7)	(24.4)	(13.0)
서울	475	468	411	57	7
	(100.0)	(98.5)	(86.5)	(12.0)	(1.5)
부산	404	370	282	88	34
	(100.0)	(91.6)	(69.8)	(21.8)	(8.4)
대구	237	195	153	42	42
	(100.0)	(82.6)	(64.6)	(17.7)	(17.7)
인천	177	173	127	46	4
	(100.0)	(97.7)	(71.8)	(26.0)	(2.3)
광주	540	514	505	9	26
	(100.0)	(95.2)	(93.5)	(1.7)	(4.8)
대전·세종	411	375	224	151	36
	(100.0)	(91.2)	(54.5)	(36.7)	(8.8)
울산	93	43	30	13	50
	(100)	(46.2)	(32.3)	(14.0)	(53.8)
경기	136	87	79	8	49
	(100.0)	(64.0)	(58.1)	(5.9)	(36.0)
충북	1,214	1,132	876	256	82
	(100.0)	(93.2)	(72.2)	(21.1)	(6.8)
충남	709	672	479	193	37
	(100.0)	(94.8)	(67.6)	(27.2)	(5.2)
전북	1,024	593	323	270	431
	(100.0)	(57.9)	(31.5)	(26.4)	(42.1)
전남	642	626	444	182	16
	(100.0)	(97.5)	(69.2)	(28.3)	(2.5)
경북	677	602	445	157	75
	(100.0)	(88.9)	(65.7)	(23.2)	(11.1)
경남	785	659	416	243	126
	(100.0)	(83.9)	(53.0)	(31.0)	(16.1)
제주	557	502	291	211	55
	(100.0)	(90.1)	(52.2)	(37.9)	(9.9)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강원 지역은 정신요양시설이 없음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p87.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p89.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p89.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p89.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p76.

- 2023년 기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수는 8,249명이고, 자의적 유형 입소는 7,179명(87.0%), 비자의적 유형입소는 1,070명(13.0%)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입소자 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이고, 비자의적 유형 비율 또한 감소 추이를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입소자 수는 '경기'가 1,214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1,024명, '경북' 785명, 등의 순임, '울산'과 '충남'은 비자의적 유형의 비율이 각각 53.8%, 42.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3) 학대·폭력 경험

(1) 학대·폭력 경험

〈표 11-3-1〉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학대·폭력 정도	자주 있음	1.4	0.5	1.4	0.6	1.3	2.0	7.2	4.4	1.8	-	-	-	-	1.8	0.2	2.9
	가끔 있음	9.5	5.9	10.8	8.1	8.6	17.7	23.6	26.7	24.2	5.9	8.3	7.1	4.4	15.7	4.6	18.9
	없음	89.1	93.6	87.8	91.3	90.1	80.2	96.2	68.9	74.0	94.1	91.7	92.9	95.6	82.5	95.2	78.1
학대·폭력 유형	언어폭력	68.5	57.9	67.6	57.3	75.7	81.3	79.2	84.8	69.7	50.7	56.0	86.6	-	84.2	22.7	79.7
	신체적학대	16.1	12.3	11.2	7.9	9.7	11.2	30.9	23.3	14.9	3.0	-	-	15.5	-	-	21.1
	정서적학대	49.9	53.1	51.6	50.6	46.9	41.4	46.7	61.1	44.0	57.3	77.6	80.0	81.4	63.5	77.3	28.7
	경제적착취	4.3	2.9	6.5	6.2	1.6	-	7.1	3.7	2.7	3.0	-	-	-	-	-	4.9
	성적학대	3.5	2.2	3.4	1.0	1.5	2.0	7.9	2.3	2.9	-	-	-	-	-	3.8	3.8
	방임 및 유기	4.5	3.2	11.6	2.5	2.0	2.3	4.7	7.8	4.2	6.9	-	-	-	5.3	-	6.1
	기타	1.9	3.2	1.2	3.3	2.2	-	0.8	0.7	-	4.9	5.0	4.4	3.2	-	-	3.8
주 가해자	동거 가족	4.3	6.1	6.1	1.1	3.6	-	2.0	0.7	7.3	5.1	29.9	13.0	-	-	-	15.2
	비동거 가족	3.9	3.8	4.7	-	2.6	8.9	3.0	2.7	11.7	-	-	-	-	5.1	-	-
	친인척	1.6	1.0	1.9	4.1	1.0	-	0.5	2.7	4.7	3.3	-	-	-	-	-	-
	이웃 및 지인	29.3	30.8	32.3	34.0	31.1	20.1	24.9	24.4	27.5	36.1	32.0	66.9	51.2	22.1	5.4	21.0
	고용주 및 직장동료	5.3	7.5	2.6	6.1	8.0	2.7	5.0	2.5	-	6.1	-	-	-	7.0	-	5.0
	(복지) 기관 종사자	0.9	-	1.0	2.5	0.3	-	1.7	0.7	-	4.4	-	-	-	-	-	1.8
	모르는 사람	48.8	49.6	44.1	51.4	46.4	59.4	50.7	49.3	47.6	41.7	38.1	20.0	48.8	65.7	90.8	54.1
	기타	5.8	1.2	7.3	0.9	6.9	8.9	12.1	17.0	1.2	3.3	-	-	-	-	3.8	2.9

주: 1) '학대·폭력 유형', '주가해자'에 대한 문항은 학대·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질문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91-394.

- 2020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없음'이 8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9%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대·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68.5%로 가장 많으며, 정서적 학대 49.9%, 신체적 학대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이웃 및 지인 29.3%, 고용주 및 직장 동료가 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경험한 경우(자주 있음, 가끔 있음 포함)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 장애인 31.1%, 지적장애인 30.8%, 정신장애 26.0%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많은 무시와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호흡기장애, 자폐성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의 경우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86.6%, 84.8%, 84.2%, 81.3%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주 가해자를 살펴보면, 호흡기 장애의 경우 이웃 및 지인으로부터의 차별·폭력 경험이 66.9%로 나타났으며, 심장장애의 경우 동거 가족으로부터의 차별·폭력 경험이 29.9%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3-2〉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학대·폭력 정도	자주있음	1.4	1.3	1.5	3.5	4.1	1.3	0.6	3.0	0.4
	가끔있음	9.5	10.7	7.9	24.0	18.1	10.9	5.5	16.3	5.5
	없음	89.1	88.0	90.6	72.6	77.7	87.8	94.0	80.7	94.2
학대·폭력 유형	언어폭력	68.5	70.2	65.4	72.7	78.7	64.7	62.6	72.2	61.1
	신체적학대	16.1	17.9	13.1	18.5	26.4	12.7	10.3	19.9	8.5
	정서적학대	49.9	47.7	53.7	59.8	46.3	45.4	56.8	49.0	51.6
	경제적착취	4.3	5.2	2.7	1.6	8.1	4.1	1.6	4.8	3.3
	성적학대	3.5	1.3	7.3	-	8.4	2.6	1.0	4.5	1.5
	방임 및 유기	4.5	3.3	6.6	8.5	3.9	4.3	4.4	5.5	2.5
	기타	1.9	1.6	2.4	0.0	2.5	2.5	1.0	1.3	3.1
주 가해자	동거 가족	4.3	1.4	9.3	2.7	2.1	6.2	4.2	3.7	5.5
	비동거 가족	3.9	3.6	4.5	1.1	1.8	7.0	2.5	4.4	3.0
	친인척	1.6	1.6	1.6	2.2	1.0	1.9	1.8	1.4	2.1
	이웃 및 지인	29.3	28.2	31.3	15.5	22.2	29.2	40.2	27.0	33.9
	고용주 및 직장동료	5.3	6.3	3.5	-	8.0	6.0	3.1	4.6	6.7
	(복지) 기관 종사자	0.9	1.2	0.3	2.5	0.8	0.3	1.2	1.1	0.3
	모르는 사람	48.8	51.1	44.8	50.3	54.8	47.2	45.0	50.2	46.2
	기타	5.8	6.5	4.6	25.6	9.2	2.2	2.0	7.6	2.2

주: 1) '학대 · 폭력 유형', '주가해자'에 대한 문항은 학대·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질문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47-650.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가정폭력 관련 시설

〈표 11-3-3〉 가정폭력 관련 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상담소		124 (28)	12 (1)	11 (5)	3 (2)	6 (2)	4 (1)	3 (1)	3 (1)	20 (4)	9 (3)	5 (1)	7 (2)	8 (1)	8 (1)	9 (2)	13 -	3 (1)	- -
보호시설	계	65	12	3	3	1	4	1	1	10	5	3	4	4	4	1	6	2	-
	일반시설	42	8	2	2	1	2	1	1	10	4	1	1	2	2	1	3	-	-
	가족보호시설	23	4	1	1	-	2	-	-	-	1	2	3	2	2	-	3	2	-

주: 1) 2023년 6월 30일 기준
2) ( )는 통합상담소 개소 수, 통합상담소는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개소 수에 포함
3) 장애인 상담소 4개소: 일반 1개소(광주), 통합 3개소(부산, 대구, 제주)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p1, 7.
여성가족부(2024). 「2023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p1, 8.

-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소는 124개소이며, 그 중 장애인 상담소는 4개소로 일반상담소에 비해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임
- 전국의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65개소로 그 중 장애인보호시설은 2(서울, 광주)개소에 불과함

4) 성폭력

(1) 장애인 성폭력

〈표 11-4-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경험 여부	있다	0.7	0.3	0.7	0.1	0.3	0.4	3.9	0.7	2.4	-	-	0.8	-	-	0.2	1.4
	없다	99.3	99.7	99.3	99.9	99.7	99.6	96.1	99.3	97.6	100.0	100.0	99.2	100.0	100.0	99.8	98.6
주 가해자	근친(가족)	2.0	-	-	-	-	-	4.2	-	-	-	-	-	-	-	-	-
	이웃	31.2	28.4	-	-	43.3	-	39.2	-	35.0	-	-	-	-	-	-	-
	먼 친척	-	-	-	-	-	-	-	-	-	-	-	-	-	-	-	-
	모르는 사람	38.5	59.0	40.2	-	-	100.0	38.2	-	31.4	-	-	-	-	-	-	100.0
	학교·학원 관계자	1.2	-	-	-	-	-	-	100.0	-	-	-	-	-	-	-	-
	이성 친구	2.0	-	-	-	-	-	4.1	-	-	-	-	-	-	-	-	-
	종교인	2.1	-	-	-	-	-	-	-	14.7	-	-	-	-	-	-	-
	채팅상대자	-	-	-	-	-	-	-	-	-	-	-	-	-	-	-	-
	서비스제공자 (복지인력 등)	2.3	-	22.5	-	-	-	-	-	-	-	-	-	-	-	-	-
	직장 상사 및 동료	12.2	12.6	21.7	100.0	56.7	-	3.8	-	5.7	-	-	100.0	-	-	-	-
	기타	8.6	-	15.7	-	-	-	10.4	-	13.2	-	-	-	-	-	100.0	-
대처 방법	그냥 있었음	37.8	48.4	37.3	100.0	43.4	-	33.1	100.0	30.6	-	-	-	-	-	100.0	-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17.2	23.2	-	-	-	100.0	20.3	-	20.3	-	-	-	-	-	-	-
	그 자리에서 항의함	3.2	-	-	-	15.4	-	3.8	-	-	-	-	100.0	-	-	-	-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	8.6	-	-	-	41.3	-	7.0	-	17.9	-	-	-	-	-	-	60.2
	몰라서 그냥 넘어감	13.9	28.4	19.8	-	-	-	4.9	-	31.1	-	-	-	-	-	-	-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19.2	-	42.9	-	-	-	30.9	-	-	-	-	-	-	-	-	39.8
	기타	-	-	-	-	-	-	-	-	-	-	-	-	-	-	-	-

주: 1) '주가해자', '대처방법'은 '경험 여부' 문항 중 '있음'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질문함
2)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질문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94, 396, 397.

- 2020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는 없다의 응답이 9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0.7%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주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38.5%로 가장 많으며, 이웃 31.2%, 직장동료 12.2% 순임. 대처방법으로는 그냥 있었음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이 19.2%,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이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각각 3.9%, 2.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 가해자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와 호흡기장애의 경우 직장 상사 및 동료로부터가 100.0%, 언어장애와 뇌전증장애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100.0%, 자폐성장애의 경우 학교·학원관계자가 100.0%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와 자폐성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그냥 있었음의 응답이 100.0%로 나타남

〈표 11-4-2〉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경험 여부	있다	0.7	0.1	1.4	-	3.1	0.6	0.1	1.4	0.2
	없다	99.3	99.9	98.6	100.0	96.9	99.4	99.9	98.6	99.8
주 가해자	근친(가족)	2.0	16.6	-	-	3.3	-	-	2.6	-
	이웃	31.2	-	35.5	-	40.1	17.0	18.5	33.6	23.2
	먼 친척	-	-	-	-	-	-	-	-	-
	모르는 사람	38.5	31.7	39.4	-	25.9	51.1	76.9	31.9	61.1
	학교·학원 관계자	1.2	9.8	-	-	1.9	-	-	1.5	-
	이성 친구	2.0	-	2.2	-	3.2	-	-	2.5	-
	종교인	2.1	-	2.4	-	-	7.4	-	2.7	-
	채팅상대자	-	-	-	-	-	-	-	-	-
	서비스제공자(복지인력 등)	2.3	-	2.6	-	-	8.1	-	-	10.2
	직장 상사 및 동료	12.2	10.1	12.5	-	14.9	9.2	4.6	14.2	5.4
	기타	8.6	31.8	5.4	-	10.7	7.2	-	11.0	-
대처 방법	그냥 있었음	37.8	37.8	37.8	-	33.7	30.7	79.4	38.7	34.6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17.2	28.9	15.6	-	11.3	34.8	4.5	16.1	21.2
	그 자리에서 항의함	3.2	15	1.6	-	4.5	-	4.6	4.1	-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	8.6	2.8	9.4	-	9.4	5.8	11.4	10.7	1.5
	몰라서 그냥 넘어감	13.9	15.6	13.7	-	19.8	6.6	-	11.2	23.2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19.2	-	21.8	-	21.3	21.9	-	19.1	19.5
	기타	-	-	-	-	-	-	-	-	-

주: 1) '주가해자', '대처방법'은 '경험 여부' 문항 중 '있음'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질문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50-651.

- 성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1.4%로 남성 0.1%에 비해 피해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주 가해자는 남성의 경우 기타가 31.8%, 모르는 사람이 31.7%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모르는 사람 39.4%, 이웃 35.5%로 나타남
  - 대처방법은 남성의 경우 그냥 있었음이 37.8%,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이 28.9%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그냥 있었음 37.8%,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이 21.8%로 나타남
- 연령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18-44세 이하의 피해경험 비율이 3.1%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주 가해자는 18-44세 이하는 이웃이 40.1%로 가장 많았으며, 45-6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모르는 사람이 각각 51.1%, 7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대처방법은 18-4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그냥 있었음이 각각 33.7%와 79.4%로 가장 많았으며, 45-64세 이하는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이 34.8%로 가장 높음

(2) 성폭력 상담소

〈표 11-4-3〉 성폭력 상담소 수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8주2)	171	21	6	4	4	12	5	4	2	35	8	8	16	8	9	11	15	3
	(25)	(4)	(1)	(1)	(2)	(1)	(2)	(1)	-	(3)	-	(1)	(2)	(2)	(1)	(2)	(1)	(1)
2019주2)	168	20	7	4	4	8	5	4	2	34	9	9	16	7	9	11	15	4
	(25)	(4)	(1)	(1)	(2)	(1)	(2)	(1)	-	(3)	-	(1)	(2)	(2)	(1)	(2)	(1)	(1)
2020주2)	167	22	7	4	5	7	4	4	2	31	10	8	17	7	9	11	15	4
	(27)	(4)	(1)	(1)	(2)	(1)	(2)	(1)	-	(3)	(2)	(1)	(2)	(2)	(1)	(2)	(1)	(1)
2022주2)	166	20	6	4	5	7	5	4	2	31	9	8	19	7	9	11	15	4
	(27)	(4)	(1)	(1)	(2)	(1)	(2)	(1)	-	(4)	(1)	(1)	(2)	(2)	(1)	(2)	(1)	(1)
2023주2)	165	19	6	4	5	7	5	4	2	31	9	8	20	7	9	10	15	4
	(28)	(4)	(1)	(1)	(2)	(1)	(2)	(1)	-	(5)	(1)	(1)	(2)	(2)	(1)	(2)	(1)	(1)
2024주2)	173	18	7	4	7	7	5	5	2	32	8	8	24	7	9	11	15	4
	(28)	(4)	(1)	(1)	(2)	(1)	(2)	(1)	-	(5)	(1)	(1)	(2)	(2)	(1)	(2)	(1)	(1)

주: 1) ( )는 장애인 상담소 수임
2) 2018년 4월, 2019년 4월, 2020년 12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기준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2024년 6월 검색) 성폭력 피해 상담소 현황.

-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현황은 2018년 171개소에서 2023년 165개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2024년 173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상담소는 2018년 25개소에서 2024년 28개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상담소에 비해 낮은 설치율을 보임
- 2024년 각 시도별로 성폭력 상담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 173개 상담소 중 경기가 32개소로 가장 많으며, 충남 24개소, 서울 18개소 등의 순임
- 한편, 장애인 상담소는 전국에 총 28개소가 있으며, 세종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1-5개소가 있음

(3) 장애인 성폭력 상담

〈표 11-4-4〉 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2010	14,310	9,044	5,266	1,047	214	94	106	770	286	26	2,723
	100.0	63.2	36.8	7.3	1.5	0.7	0.7	5.4	2.0	0.2	19.0
2011	17,455	12,457	4,998	1,140	288	22	58	844	340	-	2,306
	100.0	71.4	28.6	22.8	5.8	0.4	1.2	16.9	6.8	-	46.1
2012	24,671	17,928	6,743	1,355	336	95	43	1,018	760	243	2,891
	100.0	72.7	27.3	5.5	1.4	0.4	0.2	4.1	3.1	1.0	11.7
2013	26,065	19,705	6,360	1,242	172	43	71	1,350	762	10	2,711
	100.0	75.6	24.4	4.8	0.7	0.2	0.3	5.2	2.9	0.0	10.4
2014	29,135	23,127	6,008	1,020	144	91	124	1,771	721	12	2,125
	100.0	79.4	20.6	3.5	0.5	0.3	0.4	6.1	2.5	0.1	6.9
2015	30,196	23,562	6,634	1,048	103	120	66	2,136	1,239	24	1,898
	100.0	78.0	22.0	3.5	0.3	0.4	0.2	7.1	4.1	0.1	6.3
2016	28,203	20,886	7,317	1,090	113	86	234	2,241	496	7	3,050
	100.0	74.1	25.9	14.9	1.5	1.2	3.2	30.6	6.8	0.1	41.7
2017	34,418	24,606	9,812	1,774	195	25	77	2,793	651	95	4,202
	100.0	71.5	28.5	5.2	0.6	0.1	0.2	8.1	1.9	0.3	12.2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가족 문제	성상담	학교폭력	기타
2018	44,030	32,938	11,092	1,822	347	71	1,044	3,344	52	4,412
	100.0	74.8	25.2	4.1	0.8	0.2	2.4	7.6	0.1	10.0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데이트 폭력	스토킹	학교 폭력	기타
2019	48,683	39,286	9,397	3,423	172	69	64	2,017	584	5	53	5	68	2,937
	100.0	80.7	19.3	7.1	0.4	0.1	0.1	4.2	1.2	0.0	0.1	0.0	0.1	6.0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성상담	학교폭력	기타
2020	46,785	35,379	11,406	3,678	149	131	2	974	1,906	62	4,504
	100.0	75.6	24.4	7.9	0.3	0.3	0.0	2.1	4.1	0.1	9.6
2021	52,543	39,012	13,531	5,331	417	80	97	1,117	2,222	103	4,164
	100.0	74.2	25.8	10.2	0.8	0.2	0.2	2.1	4.2	0.2	7.9
2022	53,208	38,424	14,784	4,875	499	193	28	1,299	2,697	164	5,029
	100	72.2	27.8	9.2	0.9	0.4	0.1	2.4	5.1	0.3	9.5

주: 1) 2020년, 2021년 기준, 기타상담 중 가족문제는 부부갈등, 이혼 등 가족 간 발생한 문제를 의미함
2) 2020년, 2021년 기준, 기타상담 중 기타에는 중독 등이 포함됨

자료: 1) 2010-2017년: 여성가족부(2018).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4.
2) 2018년: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2.
3) 2019년: 여성가족부(2020).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2.
4) 2020-2022년: 여성가족부(각 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2.

- 2022년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38,424건으로 2021년 39,012건에 비해 감소함
  - 2022년 장애인 전체 상담 중 성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72.2%로 2021년 74.2%보다 감소함
  - 기타 상담에서는 기타가 9.5%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폭력이 9.2%, 성상담 5.1% 등의 순임

(4) 장애인 성폭력 피해

〈표 11-4-5〉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 연도별, 피해자 장애유형별, 피해유형별

(단위: 명,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피해자	계		2,832	2,960	2,093	2,098
			(100.0)	(100.0)	(100.0)	(100.0)
	장애유형	지체	118	90	86	78
			(4.2)	(3.0)	(4.1)	(3.7)
		뇌병변	64	109	55	54
			(2.3)	(3.7)	(2.6)	(2.6)
		시각	28	50	36	33
			(1.0)	(1.7)	(1.7)	(1.6)
		청각, 언어	53	67	71	64
			(1.8)	(2.3)	(3.4)	(3.1)
		정신 지체 (발달)	2,217	2,195	1,534	1,633
			(78.3)	(74.2)	(73.3)	(77.8)
		정신 장애	252	340	169	129
			(8.9)	(11.5)	(8.1)	(6.1)
		기타장애	24	29	80	36
			(0.8)	(1.0)	(3.8)	(1.7)
		중복장애	76	80	62	71
			(2.7)	(2.7)	(3.0)	(3.4)
피해유형	계		39,316	22,085	39,012	38,424
			(100.0)	(100.0)	(100.0)	(100.0)
		강간 및 유사강간	23,375	22,085	22,964	22,531
			(59.4)	(62.4)	(58.9)	(58.6)
		강제추행	11,293	9,550	10,666	10,748
			(28.7)	(27.0)	(27.3)	(28.0)
		카메라 등 이용 촬영	420	704	1,074	1,066
			(1.1)	(2.0)	(2.8)	(2.8)
		통신매체 이용음란	1,793	1,772	2,923	1,843
			(4.6)	(5.0)	(7.5)	(4.8)
		성희롱	400	443	699	776
			(1.0)	(1.3)	(1.8)	(2.0)
		기타	2,035	825	686	1,460
			(5.2)	(2.3)	(1.8)	(3.8)

주: 장애유형 중 기타장애에는 내부 장기 장애 등이 포함됨

자료: 1) 2019년: 여성가족부(2020).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3.

2) 2020-2022년: 여성가족부(각 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3.

- 2022년 기준 성폭력 피해 장애인 수는 2,098명으로 2020년 2,093명 보다 소폭 증가함
  -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2년 기준 장애인 성폭력 피해건수는 38,424건으로 2021년 39,012건 보다 소폭 증가함
  - 피해유형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이 58.6%로 가장 높고, '강제추행' 28.0% 순으로 나타남

(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표 11-4-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 지역별, 시설유형별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5	2	3	1	2	3	2	1	-	4	1	3	1	2	2	2	3	3
일반	17	2	1	1	1	1	-	1	-	3	1	1	-	2	1	-	-	2
장애인	8	-	1	-	-	1	1	-	-	-	-	1	1	-	1	-	1	1
특별지원(친족피해 청소년)	4	-	-	-	-	-	1	-	-	1	-	-	-	-	-	1	1	-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3	-	-	-	1	-	-	-	-	-	-	-	-	-	-	1	1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3	-	1	-	-	1	-	-	-	-	-	1	-	-	-	-	-	-

주: 1) 2023년 12월 기준
2) 35개소 모두 국비 지원 시설임
3) 「성폭력방지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는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이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5개소 중 장애인 보호시설은 8개소이며,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지역에만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 9개 지역에는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부산, 광주, 충북 3곳에 설치되어 있음

〈표 11-4-7〉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구분		연도 중 입소인원	연도 중 퇴소인원	연말 현원
2009	전체	312	299	142
	장애인	90	69	66
2010	전체	282	230	187
	장애인	90	62	88
2011	전체	226	226	181
	장애인	64	64	87
2012	전체	236	209	184
	장애인	78	78	105
2013	전체	238	230	218
	장애인	103	79	83
2014	전체	258	222	285
	장애인	113	92	167
2015	전체	277	262	286
	장애인	110	107	165
2016	전체	201	193	295
	장애인	84	70	180
2017	전체	201	203	285
	장애인	91	97	173
2018	전체	180	181	284
	장애인	79	92	164
2019	전체	190	185	287
	장애인	94	90	168
2020	전체	159	153	295
	장애인	62	68	166
2021	전체	147	184	256
	장애인	61	83	145
2022	전체	118	136	237
	장애인	48	55	138

자료: 1) 2009-2017년: 여성가족부(2018).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0.
2) 2018년: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6.
3) 2019년: 여성가족부(2020).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4.
4) 2020-2022년: 여성가족부(각 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4.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장애인의 연도 중 입소인원은 48명으로 전체인원의 40.6%를 차지함
  - 장애인의 연도 중 퇴소인원은 55명으로 전체인원 136명의 40.4% 수준임
  - 보호시설에 남아있는 인원은 전체 237명이며 그 중 장애인은 138명(58.2%)으로 절반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표 11-4-8〉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계	5세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3	전체	238	5	15	113	44	60	1
		(100.0)	(2.1)	(6.3)	(47.5)	(18.5)	(25.2)	(0.4)
	장애인	103	-	3	36	26	37	1
		(100.0)	-	(2.9)	(35.0)	(25.2)	(35.9)	(1.0)
2014	전체	285	2	19	141	59	63	1
		(100.0)	(0.7)	(6.7)	(49.5)	(20.7)	(22.1)	(0.4)
	장애인	167	-	4	66	42	54	1
		(100.0)	-	(2.4)	(39.5)	(25.1)	(32.3)	(0.6)
2015	전체	286	4	20	132	77	53	-
		(100.0)	(1.4)	(7.0)	(46.2)	(26.9)	(18.5)	-
	장애인	165	-	4	62	54	45	-
		(100.0)	-	(2.4)	(37.6)	(32.7)	(27.3)	-
2016	전체	295	1	13	117	95	68	1
		(100.0)	(0.3)	(4.4)	(39.7)	(32.2)	(23.1)	(0.3)
	장애인	180	-	2	54	69	55	-
		(100.0)	-	(1.1)	(30.0)	(38.3)	(30.6)	-
2017	전체	285	1	15	123	77	69	-
		(100.0)	(0.4)	(5.3)	(43.2)	(27.0)	(24.2)	-
	장애인	173	-	3	54	60	56	-
		(100.0)	-	(1.7)	(31.2)	(34.7)	(32.4)	
2018	전체	284	2	14	123	71	73	1
		(100.0)	(0.7)	(4.9)	(43.3)	(25.0)	(25.7)	(0.4)
	장애인	164	-	4	48	51	60	1
		(100.0)	-	(2.4)	(29.3)	(31.1)	(36.6)	(0.6)
2019	전체	287	1	15	125	71	74	1
		(100.0)	(0.3)	(5.2)	(43.6)	(24.8)	(25.8)	(0.3)
	장애인	168	-	6	47	52	60	3
		(100.0)	-	(3.6)	(28.0)	(31.0)	(35.6)	(1.8)
2020	전체	295	1	16	114	88	66	10
		(100.0)	(0.3)	(5.4)	(38.6)	(29.8)	(22.4)	(3.4)
	장애인	166	-	4	46	48	59	9
		(100.0)	-	(2.4)	(27.7)	(28.9)	(35.5)	(5.4)
2021	전체	256	-	14	99	73	70	-
		(100.0)	-	(5.5)	(38.7)	(28.5)	(27.3)	-
	장애인	145	-	5	39	41	60	-
		(100.0)	-	(3.4)	(26.9)	(28.3)	(41.4)	-
2022	전체	237	-	11	86	66	73	1
		100	-	4.6	36.3	27.9	30.8	0.4
	장애인	138	-	4	31	38	65	-
		100	-	2.9	22.5	27.5	47.1	-

주: 2021년 12월 말 기준 현원 기준

자료: 1) 2013-2017년: 여성가족부(2018).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1.
2) 2018년: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7.
3) 2019년: 여성가족부(2020).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4.
4) 2020-2022년: 여성가족부(각 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4.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전체입소자 중 13-18세 이하의 비율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의 경우 25-64세 이하의 비율이 47.1%로 가장 높음

〈표 11-4-9〉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1개월 이하	2~6개월 이하	7개월~1년 이하	1년~2년 이하	2년~3년 이하	3년 초과
2013년	전체	230	67	86	30	24	19	4
		(100.0)	(29.1)	(37.4)	(13.0)	(10.4)	(8.3)	(1.7)
	장애인	79	13	37	12	7	9	1
		(100.0)	(16.5)	(46.8)	(15.2)	(8.9)	(11.4)	(1.3)
2014년	전체	222	62	77	31	31	10	11
		(100.0)	(28.0)	(34.7)	(14.0)	(14.0)	(4.5)	(5.0)
	장애인	92	14	38	16	14	6	4
		(100.0)	(15.2)	(41.3)	(17.4)	(15.2)	(6.5)	(4.3)
2015년	전체	262	70	95	33	33	11	20
		(100.0)	(26.7)	(36.3)	(12.6)	(12.6)	(4.2)	(7.6)
	장애인	107	21	33	15	17	8	13
		(100.0)	(19.6)	(30.8)	(14.0)	(15.9)	(7.5)	(12.1)
2016년	전체	193	43	48	33	37	14	18
		(100.0)	(22.3)	(24.9)	(17.1)	(19.2)	(7.3)	(9.3)
	장애인	70	9	21	13	13	7	7
		(100.0)	(12.9)	(30.0)	(18.6)	(18.6)	(10.0)	(10.0)
2017년	전체	203	43	54	36	26	23	21
		(100.0)	(21.2)	(26.6)	(17.7)	(12.8)	(11.3)	(10.3)
	장애인	97	15	23	15	15	18	12
		(100.0)	(15.5)	(23.7)	(14.4)	(15.5)	(18.6)	(12.4)
2018년	전체	181	28	51	30	26	14	32
		(100.0)	(15.5)	(28.2)	(16.6)	(14.4)	(7.7)	(17.7)
	장애인	92	11	26	14	9	9	23
		(100.0)	(12.0)	(28.3)	(15.2)	(9.8)	(9.8)	(25.0)
2019년	전체	185	25	64	18	27	17	34
		(100.0)	(13.5)	(34.6)	(9.7)	(14.6)	(9.2)	(18.4)
	장애인	90	8	30	5	11	10	26
		(100.0)	(8.9)	(33.3)	(5.6)	(12.2)	(11.1)	(28.9)
2020	전체	153	23	38	32	21	18	21
		(100.0)	(15.0)	(24.8)	(20.9)	(13.7)	(11.8)	(13.7)
	장애인	68	11	18	10	9	8	12
		(100.0)	(16.2)	(26.5)	(14.7)	(13.2)	(11.8)	(17.6)
2021	전체	184	27	41	27	29	20	40
		(100.0)	(14.7)	(22.3)	(14.7)	(15.8)	(10.9)	(21.6)
	장애인	83	10	9	14	8	15	27
		(100.0)	(12.1)	(10.8)	(16.9)	(9.6)	(18.1)	(32.5)
2022	전체	136	28	30	17	21	15	25
		100	20.6	22.1	12.5	15.4	11	18.4
	장애인	55	11	8	7	7	5	17
		100	20	14.5	12.7	12.7	9.1	30.9

주: 연도중 퇴소인원 대상 보호기간

자료: 1) 2013-2017년: 여성가족부(2018).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3.
2) 2018년: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8.
3) 2019년: 여성가족부(2020).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5.
4) 2020-2022년: 여성가족부(각 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5.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전체입소자 중 2-6개월 이하의 비율이 22.1%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의 경우 3년 초과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입소자에 비하여 장애인의 보호기간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음

5) 학대피해 현황

〈표 11-5-1〉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사례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건, %)

구분		계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연도별	2018	3,658	100.0	1,835	50.2	1,823	49.8
	2019	4,376	100.0	1,923	43.9	2,453	56.1
	2020	4,208	100.0	2,069	49.2	2,139	50.8
	2021	4,957	100.0	2,461	49.6	2,496	50.4
	2022	4,958	100	2,641	53.3	2,317	46.7
지역별	서울	826	100	204	24.7	622	75.3
	부산	380	100	181	47.6	199	52.4
	대구	322	100	154	45.0	168	52.2
	인천	213	100	117	54.9	96	45.1
	광주	117	100	70	59.8	47	40.2
	대전	180	100	99	55.0	81	45.0
	울산	210	100	151	71.9	59	28.1
	세종	99	100	62	62.6	37	37.4
	경기	998	100	569	57.0	429	43.0
	강원	204	100	125	61.3	79	38.7
	충북	276	100	188	68.1	88	31.9
	충남	216	100	136	63.0	80	37.0
	전북	217	100	92	42.4	125	57.6
	전남	178	100	123	69.1	55	30.9
	경북	178	100	144	80.9	34	19.1
	경남	191	100	144	75.4	47	24.6
	제주	153	100	82	53.6	71	46.4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학대의심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말함
3) 일반사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차별, 개인적 분쟁, 정보 문의 등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요소가 없는 사례를 말함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58.
2)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0).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62.
3)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62.
4)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62, 64.
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62.

- 2022년 기준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4,958건이고, 그 중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는 2,641건(53.3%), 일반사례는 2,317건(46.7%)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신고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22년 4,958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2021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건수는 1건,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는 180건 증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신고건수는 경기가 998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826건, 부산 380건, 충북 276건 등의 순임.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는 경기가 56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04건, 충북 188건, 부산 181건 등의 순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업무와 예방업무를 수행

〈표 11-5-2〉 장애인학대의심 사례판정 결과 - 사례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건, %)

구분		계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조사 중인 사례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연도별	2018	1,835	100.0	889	48.4	796	43.4	150	8.2	-	-
	2019	1,923	100.0	945	49.1	783	40.7	195	10.1	-	-
	2020	2,069	100.0	1,008	48.7	683	33.0	218	10.5	160	7.7
	2021	2,461	100.0	1,124	45.7	933	37.9	307	12.5	97	3.9
	2022	2,641	100	1,186	44.9	1,070	40.5	230	8.7	155	5.9
지역별	서울	204	100	98	48.0	82	40.2	24	11.8	-	-
	부산	181	100	76	42.0	59	32.6	37	20.4	9	5.0
	대구	154	100	44	28.6	97	63.0	5	3.2	8	5.2
	인천	117	100	67	57.3	37	31.6	12	10.3	1	0.9
	광주	70	100	35	50.0	30	42.9	5	7.1	-	-
	대전	99	100	54	54.5	22	22.2	10	10.1	13	13.1
	울산	151	100	68	57.0	65	43.0	17	11.3	1	0.7
	세종	62	100	18	29.0	34	54.8	8	12.9	2	3.2
	경기	569	100	225	39.5	286	50.3	39	6.9	19	3.3
	강원	125	100	96	76.8	26	20.8	2	1.6	1	0.8
	충북	188	100	80	42.6	102	54.3	6	3.2	-	-
	충남	136	100	68	50.0	35	25.7	30	22.1	3	2.2
	전북	92	100	40	43.5	36	39.1	7	7.6	9	9.8
	전남	123	100	40	32.5	28	22.8	7	5.7	48	39.0
	경북	144	100	46	31.9	84	58.3	3	2.1	11	7.6
	경남	144	100	73	50.7	31	21.5	12	8.3	28	19.4
	제주	82	100	58	70.7	16	19.5	6	7.3	2	2.4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에 대해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로 분류함
· 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함
· 비대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함
· 잠재위험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말함
· 조사 중인 사례는 학대조사가 끝나지 않아 사례판정을 하지 않은 사례를 말함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p75.
2)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0).「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p79.
3)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p96.
4)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p96, 97.
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p87.

- 2022년 기준 학대의심사례 2,641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186건(44.9%), 비학대사례 1,070건(40.5%), 잠재위험사례 230건(8.7%), 조사 중인 사례 155건(5.9%)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학대사례 건수는 2018년 889건에서 2022년 1,186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사례 중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 난 비율은 2019년 49.1%에서 2022년 44.9%로 감소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학대사례 건수는 경기가 22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98건, 강원 96건 등의 순임.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 난 비율은 강원이 76.8%로 가장 높고, 제주 70.7%, 인천 5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1-5-3〉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건)

구분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횟수	사례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
연도	2018	1,835	15,885	8.7
	2019	2,310	24,785	10.7
	2020	2,438	20,215	8.3
	2021	3,082	22,874	7.4
지역	서울	258	2,039	7.9
	부산	204	1,316	6.5
	대구	147	914	6.2
	인천	179	1,801	10.1
	광주	97	1,159	11.9
	대전	116	1,048	9.0
	울산	145	1,136	7.8
	세종	109	490	4.5
	경기	582	3,715	6.4
	강원	161	1,659	10.3
	충북	229	875	3.8
	충남	179	603	3.4
	전북	134	2,433	18.2
	전남	149	1,666	11.2
	경북	153	399	2.6
	경남	163	1,275	7.8
	제주	77	346	4.5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당해년도에 접수된 사례와 전년도에 접수되어 종결되지 않은 사례의 상담 및 지원을 당해년도에 함께 실시함
3) 2019년에는 접수된 년도의 구분 없이 당해년도에 지원한 상담 및 지원의 총 횟수를 합하여 통계를 제공하였으나 2020년부터 당해년도와 이전년도에 접수 된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횟수를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77.
2)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0).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81.
3)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99.
4)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99, 100.

- 2021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와 전년도에 종결되지 않은 학대의심사례는 총 3,082건이며, 학대의심사례 1건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 횟수는 7.4회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학대의심사례가 매해 증가한 만큼 상담 및 지원횟수 또한 매해 증가 추이를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담 및 지원 횟수는 경기가 3,715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 2,433건, 서울 2,039건 등의 순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전북이 18.2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 11.9건, 전남 11.2건 등의 순임

〈표 11-5-4〉 장애인학대 피해자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수	비율
연도	2018년	889	100.0
	2019년	945	100.0
	2020년	1,008	100.0
	2021년	1,124	100.0
성별	남성	563	50.1
	여성	561	49.9
연령	17세 이하	166	14.8
	18~19세	40	3.6
	20대(20~29세)	287	25.5
	30대(30~39세)	184	16.4
	40대(40~49세)	176	15.7
	50대(50~59세)	145	12.9
	60~64세	72	6.4
	65세 이상	54	4.8
장애유형	지체장애	68	6.0
	뇌병변장애	62	5.5
	시각장애	31	2.8
	청각장애	39	3.5
	언어장애	11	1.0
	지적장애	761	67.7
	자폐성장애	46	4.1
	정신장애	49	4.4
	신장장애	1	0.1
	뇌전증장애	4	0.4
	미등록	52	4.6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1,024	95.5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48	4.5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한 피해자 현황임
3) 2021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1,124건의 사례 중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1,072건(95.4%),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52건(4.6%)임. 이에 피해장애인 장애정도의 합은 1,072건임
4)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임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기존 1-3등급의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기존 4-6등급의 장애인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85.
2)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0).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89.
3)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07.
4)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07-111.

- 2021년 기준 학대피해장애인은 1,124명으로, 2020년 1,008건 대비 116건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중 남성은 563건(50.1%), 여성은 561건(49.9%)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87건(25.5%)으로 가장 많고 30대 184건(16.4%), 40대 176건(15.7%), 17세 이하 166건(14.8%) 등의 순임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761건(67.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장애정도별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1,024건(95.5%)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11-5-5〉 장애인학대 유형 - 학대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 건, %)

구분		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연도별	2018년	1,234	339	221	111	302	32	229
		(100.0)	(27.5)	(17.9)	(9.0)	(24.5)	(2.6)	(18.6)
	2019년	1,258	415	253	119	328	15	128
		(100.0)	(33.0)	(20.1)	(9.5)	(26.1)	(1.2)	(10.2)
	2020년	1,264	378	311	134	321	-	120
		(100.0)	(29.9)	(24.6)	(10.6)	(25.4)	-	(9.5)
	2021년	1,400	482	289	149	366	-	114
		(100.0)	(34.4)	(20.6)	(10.6)	(26.1)	-	(8.1)
	2022년	1,567	538	401	219	273	3	133
		(100.0)	(34.3)	(25.6)	(14.0)	(17.4)	(0.2)	(8.5)
피해자 성별	남성	792	287	218	51	153	2	81
		(100.0)	(36.2)	(27.5)	(6.4)	(19.3)	(0.3)	(10.2)
	여성	775	251	183	168	120	1	52
		(100.0)	(32.4)	(23.6)	(21.7)	(14.5)	(0.1)	(6.7)
피해자 연령	17세 이하	334	154	100	31	8	-	41
		(100.0)	(46.1)	(29.9)	(9.3)	(2.4)	-	(12.3)
	18~19세	42	18	11	7	5	-	1
		(100.0)	(42.9)	(26.2)	(16.7)	(11.9)	-	(2.4)
	20대(20~29세)	402	129	90	88	79	2	14
		(100.0)	(32.1)	(22.4)	(21.9)	(19.7)	(0.5)	(3.5)
	30대(30~39세)	256	83	59	52	44	-	18
		(100.0)	(32.4)	(23.0)	(20.3)	(17.2)	-	(7.0)
	40대(40~49세)	196	59	42	23	52	-	20
		(100.0)	(30.1)	(21.4)	(11.7)	(26.5)	-	(10.2)
	50대(50~59세)	191	56	50	12	51	1	21
		(100.0)	(29.3)	(26.2)	(6.3)	(26.7)	(0.5)	(11.0)
	60~64세	76	15	25	2	25	-	9
		(100.0)	(19.7)	(32.9)	(2.6)	(32.9)	-	(11.8)
	65세 이상	70	24	24	4	9	-	9
		(100.0)	(34.3)	(34.3)	(5.7)	(12.9)	-	(12.9)

주: 1)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됨
2) 중복 장애를 개별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임(중복 학대 미분류)
3)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임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00.
2)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0).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08.
3)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23.
4)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24-127.
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16-119.

〈표 11-5-5〉 장애인학대 유형 - 학대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 건, %)

구분		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피해자 장애유형	지체장애	73	30	22	5	13	-	3
		(100.0)	(41.1)	(30.1)	(6.8)	(17.8)	-	(4.1)
	뇌병변장애	137	47	48	26	9	1	6
		(100.0)	(34.3)	(35.0)	(19.0)	(6.6)	(0.7)	(4.4)
	시각장애	35	15	12	1	3	-	4
		(100.0)	(42.9)	(34.3)	(2.9)	(8.6)	-	(11.4)
	청각장애	32	11	9	4	4	-	4
		(100.0)	(34.4)	(28.1)	(12.5)	(12.5)	-	(12.5)
	언어장애	17	7	5	1	2	-	2
		(100.0)	(41.2)	(29.4)	(5.9)	(11.8)	-	(11.8)
	지적장애	1,045	334	235	159	213	2	102
		(100.0)	(32.0)	(22.5)	(15.2)	(20.4)	(0.2)	(9.8)
	자폐성장애	101	53	35	5	3	-	5
		(100.0)	(52.5)	(34.7)	(5.0)	(3.0)	-	(5.0)
	정신장애	41	15	6	6	11	-	3
		(100.0)	(36.6)	(14.6)	(14.6)	(26.8)	-	(7.3)
	신장장애	2	-	2	-	-	-	-
		(100.0)	-	(100.0)	-	-	-	-
	뇌전증장애	6	2	2	1	1	-	-
		(100.0)	(33.3)	(33.3)	(16.7)	(16.7)	-	-
	미등록	78	24	25	11	14	-	4
		(100.0)	(30.8)	(32.1)	(14.1)	(17.9)	-	(5.1)

주: 1)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됨
2) 중복 장애를 개별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임(중복 학대 미분류)
3)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임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00.
2)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0).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08.
3)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23.
4)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24-127.
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16-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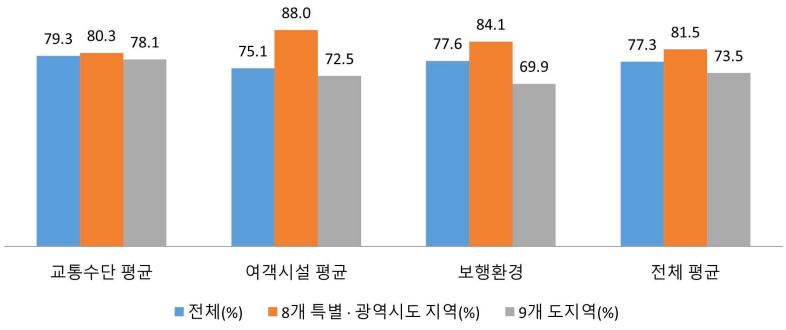
- 2022년 전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한 1,186건을 학대유형별로 세분화하면 총 1,567건임(중복학대 314건 미분류)
-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538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401건(25.6%), 경제적 착취 273건(17.4%), 성적 학대 219건(14.0), 방임 133건(8.5%), 유기 3건(0.2%) 순임
  - 피해자 성별로는 남성은 신체적 학대가 287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18건(27.5%), 경제적 착취 153건(19.3%), 방임 81건(10.2%), 성적 학대 51건(6.4), 유기 2건(0.3%) 순임. 여성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251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183건(23.6%), 성적 학대 168건(21.7), 경제적 착취 120건(15.5%), 방임 52건(6.7%), 유기 1건(0.1%)으로 나타남.
  - 피해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 성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17세이하에서는 신체적 학대 비율이 높음.
  - 피해자 장애 유형별로는 자폐성 장애가 신체적 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서적 학대는 신장장애가 비율이 높음. 성적 학대는 뇌병변장애가 비율이 높았고, 경제적 착취는 정신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남.

장애인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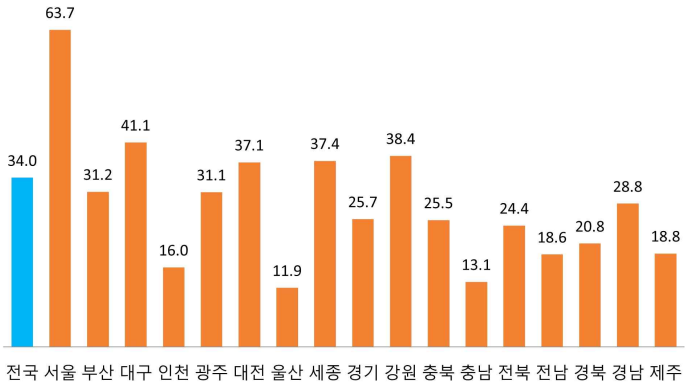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언어적인 방법(폭언, 협박, 비하 등)이나 비언어적인 방법(무시, 비웃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이나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
  -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놓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
  - 유기 · 방임: 유기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사람,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방임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12. 접근성

[그림 2-12-1]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현황(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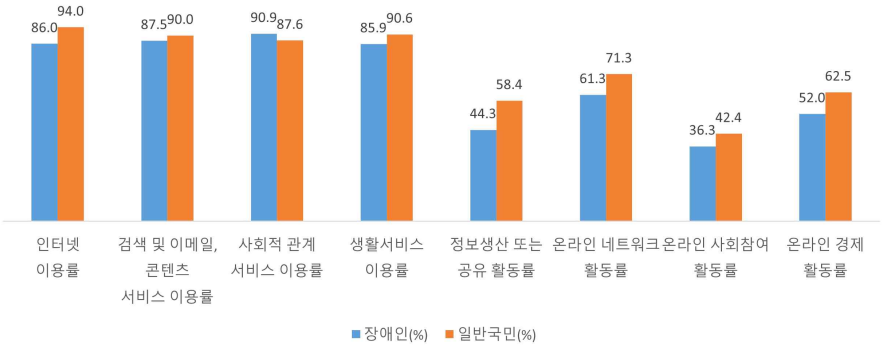


[그림 2-12-2] 저상버스 도입률(2022년)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전체 평균 기준 적합률은 77.3%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수단 평균 기준 적합률은 79.3%, 여객시설 평균 기준 적합률은 75.1%, 보행환경 기준 적합률은 77.6%임
  - 8개 특별·광역시도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9개 도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2년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4.0%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63.7%로 가장 높았고 대구 41.1%, 강원 38.4% 순임. 반면 울산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이 11.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2-12-3]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전체가구 비교(2023년)



- 2023년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90.9%,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87.5%, 인터넷 이용률 86.0%, 생활서비스 이용률 85.9% 등의 순임
  -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사회적 관계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이용률이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 편임. 특히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용률은 장애인이 44.3%로 일반국민 58.4%에 비해 14.1%p 낮은 편임

1) 물리적 접근성

(1) 장애인 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여부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구필요 및 소지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	상지의지	2.7	1.8	시각장애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1.9	1.6
	하지의지	4.1	2.5		음성손목/탁상시계	4.4	2.6
	척추보조기	5.8	3.9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0.5	0.1
	상지보조기	1.9	0.8		점자프린터	0.6	0.2
	하지보조기	5.3	3.5		화면해설기	1.8	0.8
	맞춤형 교정용신발	3.2	2.0		음성유도장치	2.4	1.0
	지팡이	16.8	15.8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0.8	0.4
	목발	2.6	2.6		점자라벨기	0.7	0.3
	보행기	7.5	6.5		데이지플레이어	0.5	0.2
	전동휠체어	5.9	3.9		기타	0.5	0.2
	수동휠체어	6.1	5.4	청각장애	보청기	13.2	12.4
	전동스쿠터	3.3	2.2		화상전화기	3.3	1.4
	수동휠체어 보조동력장치	0.9	0.5		골도전화기	1.4	0.5
	자세보조용구	2.8	1.8		헤드폰(청취증폭기)	2.9	0.9
	상하지운동기구	2.7	0.8		인공와우	4.1	2.4
	팔받침대	1.1	0.6		자막수신기	4.2	1.6
	기타	1.0	0.9		신호표시(시각,음향)	1.8	0.6
시각장애	안경(콘택트렌즈)	22.1	20.0		진동시계	3.4	1.6
	저시력보조기	6.4	3.2		기타	-	0.1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7.6	6.3				
	의안	6.0	5.4				
	스크린 리더	2.1	1.2				
	화면 확대기	5.3	3.1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86-290.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지팡이가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행기 7.5%, 수동휠체어 6.1% 등의 순이며, 소지여부는 지팡이 15.8%, 보행기 6.5%, 수동휠체어 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안경(콘택트렌즈)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7.6%, 저시력보조기 6.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지하고 있는 보조기구는 안경(콘택트렌즈) 20.0,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6.3%, 의안 5.4%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각장애 관련 보조기구 필요여부는 보청기가 13.2%로 가장 높았으며, 소지여부도 보청기가 1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구필요 및 소지여부(계속)

(단위: %)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지적, 자폐성장애	의사소통보조기구	0.4	0.2
	교육과목훈련용 보조기구	1.7	0.2
	터치모니터	2.0	0.4
	기타	0.7	0.2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5.8	4.4
	기타	0.7	0.6
호흡기장애	산소발생기	43.3	32.7
	인공호흡기	26.3	18.4
	호흡근육훈련기	5.6	6.6
	기타	0.4	0.6
안면장애	압력옷	-	-
	기타	0.6	0.6
장루, 요루장애	장루주머니	71.5	70.8
	피부보호판	32.7	33.2
	기타	4.8	5.0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1.0	0.6
	음성증폭기	1.9	0.8
	기타	0.4	0.4
전체	욕창방지용매트	0.9	0.6
	욕창방지용방석	0.8	0.5
	침대 (전동 및 수동)	1.1	0.8
	기립보조기구	0.4	0.2
전체	기저귀매트	0.7	0.4
	목욕의자 및 이동욕조	0.8	0.6
	이동변기	0.9	0.7
	특수 키보드	0.0	-
	특수 마우스	0.0	-
	각종 스위치	0.1	0.0
	음성인식장치	0.1	0.0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0.0	-
	환경제어장치	0.1	-
	이동식 전동리프트	0.2	0.0
	주택개조	0.3	0.1
	승강용보조기기	0.0	-
	장애인용 의복	0.1	-
	자동차개조/운전보조장치	0.1	0.0
	경보 시스템	0.1	0.0
	고용/직업훈련용 보조기구	0.0	-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구 (장애인용 자전거 등)	0.0	0.0
	배회 감지기	0.0	0.0
	안전 손잡이	0.4	0.3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0.1	0.1
	기타	0.2	0.2
	호흡보조기 산소발생기	0.3	0.3
	호흡보조기 인공호흡기	0.2	0.1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86-290.

- 지적, 자폐성 장애관련 보조기구의 필요도는 터치모니터가 2.0%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도는 음성증폭기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호흡기 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산소발생기가 43.3%로 가장 높았으며 소지여부도 32.7%로 산소발생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에 해당하는 보조기구 중 침대(전동 및 수동)의 필요도가 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욕창방지용매트와 이동변기의 필요도가 모두 0.9%로 나타남

(2)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운영 현황

〈표 12-1-2〉 저소득층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실적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

구 분		계	와상용 욕창예방보조기기	음향신호기 및 음성탁상시계	리모콘	시각 신호 표시기	자세보조용구	기타
연도	2004	10,608	5,480	3,181	1,577		311	59
	2005	11,508	5,741	3,289	1,423		393	662
	2006	9,044	4,635	2,530	1,021		372	480
	2007	9,269	4,866	2,368	1,004		253	778
	2008	9,002	4,248	2,117	558		203	1,876
	2009	9,056	3,964	2,222	585		162	2,123
	2010	7,178	3,297	1,407	371		153	1,950
	2011	7,011	2,724	1,236	275		733	2,043
	2012	6,711	2,687	1,199	257		508	2,060
	2013	7,114	2,998	1,305	148		381	2,282
	2014	6,810	2,707	1,084	115		-	2,904
	2015	6,036	1,557	785	90		-	3,604
	2016	5,689	37	785	77		-	4,790
	2017	5,566	24	687	104		-	4,751
	2018	5,257	15	510	86		-	4,646
	2019	4,671	3	424	71		-	4,173
	2020	3,687	4	313	61		-	3,309
	2021	3,548	1	268	84		-	3,195
	2022	3,480	1	204	48			3,221
지역	서울	514	1	25	4		-	484
	부산	199	1	4	0		-	194
	대구	195	-	15	3		-	177
	인천	214	1	12	4		-	197
	광주	108	-	7	-		-	101
	대전	286	1	23	10		-	252
	울산	89	-	1	1		-	87
	세종	12	-	0	-		-	12
	경기	448	-	19	4		-	425
	강원	133	1	17	0		-	115
	충북	252	2	20	2		-	228
	충남	137	-	5	4		-	128
	전북	237	-	11	10		-	216
	전남	204	-	7	-		-	197
	경북	142	-	9	3		-	130
	경남	138	-	6	2		-	130
	제주	172	-	23	1		-	148

주: 1)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2) '기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품목 외에 시·도에서 발굴 추진한 보조기기도 포함됨
3) 2014년부터 교부품목 중 자세보조용구는 제외됨
4) 2016년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여 교부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자료: 1) 보건복지부(2010).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p236.
2) 보건복지부(2011).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p240.
3) 보건복지부(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p256.
4) 보건복지부(2013).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p259.
5) 보건복지부(2014).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 p276.
6) 보건복지부(2015).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p282.
7) 보건복지부(2016).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p290.
8)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p310.
9) 보건복지부(2018).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 p302.
10) 보건복지부(2019).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p302.
11) 보건복지부(2020).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p312.
12) 보건복지부(2021).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p320.
13) 보건복지부(2022).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p312.
14) 보건복지부(2023).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 p300.

-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제공된 보조기기는 총 3,480개임. 보조기기 종류별로는 '기타'가 3,221개로 가장 많았고, '음향신호기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 204개, '시각 신호 표시기' 48개, '와상용 욕창방지용매트' 7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제공된 보조기기 수는 2005년 11,508개에서 2022년 3,48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받은 지역으로 '서울'(514개), '경기'(448개), '대전'(286개), '전북'(237개), '인천'(214개) 등이 있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출처: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품목: 보조기기 38종 품목 지원
- 교부제한
  - 202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 받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 동일한 품목을 지자체 또는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 받은 경우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행복e음 신청 등록)

〈표 12-1-3〉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품목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37,685	119,224	131,564	110,539	105,599	85,230	115,959	88,607	124,110	91,920	134,075	93,217
전동휠체어		2,783	5,270	2,525	4,782	1,611	3,046	1,346	2,548	1,969	3,734	1,745	3,335
전동스쿠터		8,193	12,378	8,200	12,372	6,450	9,725	6,107	9,226	6,270	9,475	5,340	8,190
자세보조용구		780	958	814	1,001	769	926	835	1,022	773	955	821	1,008
수동휠체어	소계	15,916	7,043	15,581	7,257	10,999	5,283	10,708	5,134	9,909	4,785	9,597	4,650
	일반형	15,434	6,678	14,072	6,092	9,478	4,110	9,239	4,010	8,502	3,695	8,197	3,563
	활동형	88	80	416	375	401	362	341	308	412	371	411	371
	틸팅형	147	107	456	330	391	284	408	295	416	302	408	296
	리클라이닝형	247	178	637	460	729	526	720	521	579	417	581	420
다리의지		2,825	4,437	2,809	4,372	2,596	4,023	2,759	5,175	2,622	5,162	2,663	5,280
팔의지		1,058	458	1,014	438	843	368	905	483	871	483	848	463
다리보조기		9,689	3,841	9,708	3,841	8,612	3,482	8,885	3,632	8,126	3,263	8,061	3,089
팔보조기		829	111	704	90	619	84	733	97	639	91	686	105
척추보조기		866	273	888	278	867	276	736	232	628	199	539	190
골반보조기		34	4	99	11	50	5	64	7	84	9	35	5
소켓 및 라이너		-	-	-	-	-	-	1,607	765	1,377	661	1,297	622
맞춤형교정용신발		11,309	2,554	12,436	2,807	10,066	2,274	9,715	2,194	8,548	1,932	8,112	1,833
지팡이		1,644	30	1,675	30	1,097	20	1,009	18	834	15	744	13
목발		75	1	79	1	45	1	59	1	52	1	49	1
전방보행차		211	9	149	7	126	6	66	3	61	3	63	3
후방보행차		184	50	199	54	185	49	186	51	166	45	131	35
이동식전동리프트		531	1,208	719	1,633	747	1,560	548	898	562	986	547	1,010
욕창예방매트리스		1,928	690	2,096	748	1,639	585	1,255	426	959	281	961	286
욕창예방방석		2,003	452	3,273	740	2,607	589	1,965	425	1,383	261	1,547	312
의안		2,680	1,552	2,651	1,535	2,217	1,284	2,279	1,314	2,375	1,370	2,426	1,391
저시력안경		811	72	739	66	823	73	622	55	534	48	651	58
돋보기		275	24	234	20	217	19	205	18	209	18	214	19
콘택트렌즈		58	4	51	4	58	4	51	4	43	3	48	3
망원경		13	1	13	1	9	1	8	1	7	1	16	1
흰지팡이		88	1	110	2	305	6	302	6	252	5	255	5
보청기		65,257	76,661	57,119	67,304	45,265	50,529	55,543	53,893	57,924	56,668	61,377	59,485
(보청기)후기적합관리		-	-	-	-	-	-	1,372	62	10,192	460	18,883	852
음성증폭기		103	46	105	47	100	45	114	51	97	44	86	39
전동보조기기전지		7,542	1,094	7,574	1,098	6,677	967	5,975	866	6,644	963	6,333	934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수동휠체어는 유형세분화 이전 건은 일반형으로 분류함
· 2018년 7월부터 일반형 수동휠체어에서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됨(「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시행 2018.7.1.), [보건복지부령 제582호, 2018. 6. 29., 일부개정])
3) 다리의지 소켓 및 라이너를 2021년 3월부터 신규 급여로 포함함
4) 검수절차개선으로 2019년 보청기 급여실적은 11개월분 급여비만 해당됨
5) 2020년 7월 구입한 보청기부터 제품 검수확인 후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되어 나누어 지급됨
· (종전) 단일금액 지급 → (변경) 보청기 제품 급여, 초기 적합관리 급여, 후기 적합관리 급여
· 초기 적합관리 급여는 검수확인이 완료된 이후 제품급여와 같이 지급되며,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실제 적합관리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지급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4). "장애인보조기기 연간 지급현황(2023)"(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6700m01.do?mode=view&articleNo=10840822&article.offset=0&articleLimit=10)(2024.6.18. 검색)

- 2023년 기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 건수는 134,075건, 지급액은 93,217백만원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이 감소하였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하였음
  - 지급품목별로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보청기'가 61,377건으로 가장 많고, '(보청기)후기적합관리' 18,883건, '수동휠체어(소계)' 9,597건, '맞춤형교정용신발' 8,112건, '다리보조기' 8,061건 등의 순임
  - 지급품목별로 지급액을 살펴보면, '보청기'가 59,485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동스쿠터' 8,190백만원, '다리의지' 5,280백만원, '수동휠체어(소계)' 4,650백만원 등의 순임

※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제도(출처: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
- 지원내용: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가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표 12-1-4〉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건)

구 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연도별	2018	2,783	8,193	15,434	88	147	247
	2019	2,525	8,200	14,072	416	456	637
	2020	1,611	6,450	9,478	401	391	729
	2021	1,346	6,107	9,239	341	408	720
	2022	1,969	6,270	8,502	412	416	579
	2023	1,745	5,340	8,197	411	408	581
지역별	서울	295	470	1,276	69	73	94
	부산	113	164	485	24	27	39
	대구	98	166	413	14	24	31
	인천	111	154	346	27	9	21
	광주	56	96	196	10	13	18
	대전	43	144	284	11	19	20
	울산	36	35	181	6	14	19
	세종	8	18	37	4	8	4
	경기	422	636	1,790	144	144	167
	강원	15	39	87	6	5	10
	충북	34	159	190	15	11	14
	충남	91	414	432	21	19	32
	전북	70	815	639	17	7	26
	전남	71	811	516	15	6	22
	경북	90	715	537	13	15	20
	경남	138	412	548	22	37	27
	제주	16	28	99	7	1	4

주: 각 년도 12월 말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4). "장애인보조기기 연간 지급현황(2023)"(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6700m01.do?mode=view&articleNo=10840822&article.offset=0&articleLimit=10)(2024.6.18. 검색)

- 2023년 기준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동휠체어 1,745건, 전동스쿠터 5,340건, 수동휠체어(일반형) 8,197건, 수동휠체어(활동형) 411건, 수동휠체어(틸팅형) 408건, 수동휠체어(리클라이닝형) 581건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부터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지급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지급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임. '전북', '전남' '경북'은 '전동스쿠터' 지급건수가 각각 815건, 811건, 715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임

〈표 12-1-5〉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품목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5,338	31,690	37,569	32,885	33,180	27,530	33,692	26,665	33,125	25,946	35,126	26,580
팔의지	어깨가슴의지 등 8종	259	156	265	178	198	119	208	146	186	130	202	146
다리의지	골반의지 등 7종	1,201	2,149	1,152	2,066	1,200	2,134	1,154	2,487	1,078	2,418	1,152	2,616
팔보조기	어깨보조기 등 4종	257	43	269	47	224	40	230	39	182	32	190	36
척추보조기	목보조기 등 5종	294	97	306	98	242	79	267	90	174	56	194	71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5	1	13	2	8	1	10	1	9	1	4	0.6
다리보조기	무릎보조기 등 4종	2,418	1,000	2,591	1,048	2,264	929	2,169	907	1,977	804	2,045	768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신발	2,814	703	3,284	821	2,896	724	2,911	728	2,462	617	2,720	681
그 밖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4,560	2,236	4,796	2,497	4,067	2,161	3,933	2,082	3,720	1,971	3,678	1,934
	지팡이	468	9	462	9	322	6	303	6	238	5	268	5
	목발	61	1	72	1	48	1	64	1	55	0.8	55	0.8
	의안	299	202	343	237	244	163	242	162	225	154	268	180
	저시력 보조안경	245	24	268	26	289	29	220	22	201	20	223	22
	콘택트렌즈	10	1	12	1	16	1	9	0.7	10	0.8	7	0.6
	돋보기	61	6	58	5	69	7	56	5	46	4	53	5
	망원경	3	0	5	0	2	0	1	0.1	3	0.2	1	0.1
	흰지팡이	72	1	82	1	129	3	155	4	97	2	118	3
	보청기	8,235	10,744	8,161	10,684	6,278	7,754	8,182	8,733	9,389	8,908	11,148	9,447
	개인용 음성증폭기	20	10	14	7	24	12	21	11	11	6	14	7
	전동휠체어	2,256	4,696	2,220	4,625	1,809	3,770	1,419	2,955	1,628	3,398	1,274	2,682
	전동스쿠터	3,834	6,384	3,747	6,243	3,355	5,596	3,007	5,016	2,662	4,439	2,814	4,873
	자세보조용구	306	401	281	368	265	356	309	414	276	378	316	428
	욕창예방방석	1,092	271	1,808	451	1,696	423	1,234	299	1,044	232	1,083	251
	욕창예방매트리스	861	340	983	386	982	388	799	307	604	209	613	213
	이동식전동리프트	560	1,395	887	2,215	824	1,926	529	1,020	483	914	523	1,009
	전·후방 보행차	98	11	99	8	113	11	60	6	64	6	51	6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2개1세트)	5,049	807	5,391	861	5,616	898	5,617	898	5,708	913	5,533	894
	의지 소모품 8종	-	-	-	-	-	-	583	325	593	327	579	301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2023년 하반기부터 '전동 스쿠터'는 '의료용 스쿠터'로 명칭이 변경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기준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급 건수는 35,126건, 지급액은 26,58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01건, 634백만원 증가함
  - 지급품목별로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보청기'가 11,14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5,533건, '수동휠체어' 3,678건, '의료용 스쿠터' 2,814건, '맞춤형 교정용신발' 2,720건 등의 순임
  - 지급품목별로 지급액을 살펴보면, '보청기'가 9,447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료용 스쿠터' 4,873백만원, '전동휠체어' 2,682백만원 등의 순임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제도(출처: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표 12-1-6〉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급 현황 - 연도별, 분류별

(단위: 건,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8,547	10,491,181	9,028	11,396,308	11,119	12,235,084	10,776	14,634,328
정보접근용	4,428	5,581,697	4,566	6,394,037	3,958	6,558,309	2,607	6,936,263
작업기구용	2,828	3,738,182	2,316	3,149,992	2,311	2,741,961	3,205	3,510,481
의사소통용	1,100	1,100,768	1,933	1,766,227	3,644	2,413,057	2,693	3,088,596
사무보조용	178	38,488	206	45,140	1,194	452,427	2,271	1,098,988
운전보조	7	5,646	4	4,262	4	3,800	-	-
탑재보조	2	9,300	-	-	-	-	-	-
승·하차보조	4	17,100	3	36,650	8	65,530	-	-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보조공학기기 종류는 '2022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를 참고하였고, 각 종류별 보조공학기기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정보접근용: 점자정보단말기, 스크린리더단말기, 스크린리더S/W, 화면확대S/W, 탁상형/휴대용 점자출력기, 점자변환및출력S/W, 탁상형/휴대용 확대기, 데이지플레이어, 대형/터치모니터, 모니터 이동보조도구, 특수키보드, 센서형/접촉형/호흡형 마우스, 전자입력보조기기, 기타입력보조기기, 특수시계, 기타 정보접근기기
· 작업기구용: 일반형/탁상형/이동형 높낮이조절테이블, 작업용의자, 기립형전동휠체어, 전동이동보조기기, 이동기기용주변기기, 휴대용경사로, 위치감지기, 센서형이동감지기, 작업물운반기기, 기타작업기구기기
· 의사소통용: 신호기기, 영상전화기, 소리증계기기, 소리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기타의사소통기기
· 사무보조용: 팔/가슴/등 지지대, 욕창방지방석, 기타신체보조기기, 물건집게, 필기보조도구, 독서보조도구, 기타사무보조기기
· 운전보조: 핸들봉, 확장스티어링, 세컨더리 컨트롤, 조작력 저감 장치, 핸드컨트롤러, 우측턴시그널, 자동변속기, 좌측엑셀페달, 페달 확장, 경련방지 플레이트, 주차브레이크개조, 족동장치, 벨트류, 자세유지
· 탑재보조: 크레인, 도넛형연료통
· 승·하차보조: 이동(회전)시트, 사이드서포트, 리프트, 멀티리프트, 경사로(램프), 자동문, 고정장치, 보조발판, 하이루프

자료: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index.do)(2023.7.19. 검색)

- 2022년 기준 장애인 보조공학 기기 지급 건수는 10,776건, 지급액은 14,634,328천원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건수 및 지급액 모두 증가 추이를 보임
  -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급 건수는 '작업 기구용'이 3,20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사소통용' 2,693건, '정보접근용' 2,607건, '사무보조용' 2,271건 순이며, 지급액은 '정보접근용'이 6,936,26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 지원주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자체의 장, 장애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 지원내용: 신청대상 및 지원 구분에 따라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방법: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표 12-1-7〉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현황 - 연도별, 분류별

(단위: 건,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28,838	7,033,705	30,145	7,697,183	30,161	7,775,244	31,685	8,527,277	31,652	7,814,924	32,554	8,075,526
의지·보조기	팔의지	1,718	697,890	1,404	683,594	1,276	549,031	1,184	636,870	1,510	669,192	1,169	686,852
	다리의지	467	579,097	437	580,370	517	715,320	490	767,967	474	828,804	489	916,800
	팔보조기	2,229	326,680	2,852	395,441	2,936	405,561	3,212	452,112	3,057	422,045	3,224	454,405
	척추보조기	4,768	1,314,963	5,324	1,377,578	5,171	1,328,790	5,248	1,371,461	4,805	1,238,899	4,999	1,391,844
	골반보조기	57	6,563	59	6,344	57	6,223	48	5,182	48	5,438	82	11,651
	다리보조기	3,387	780,026	3,762	862,124	3,591	828,414	3,534	816,939	3,588	807,493	3,741	879,038
	교정용신발류	184	44,945	145	34,218	141	33,060	134	33,091	142	35,155	129	32,165
	기타	10,445	2,300,122	11,838	2,677,622	12,290	2,897,497	13,484	3,301,697	13,326	2,594,210	14,285	2,546,481
	소모품	226	245,498	211	236,269	200	211,432	200	218,749	223	262,094	193	189,808
수리료	팔의지	690	169,102	735	200,357	682	187,189	686	209,683	643	189,426	683	250,497
	다리의지	1,800	516,114	1,885	591,006	1,899	567,875	2,070	667,760	2,410	717,441	2,149	671,890
	보조기	21	1,082	21	1,245	10	697	14	838	14	635	9	704
	휠체어	2,805	50,738	1,458	50,105	1,379	43,574	1,369	44,242	1,396	42,979	1,387	42,490
	전동스쿠터	28	628	11	768	6	296	11	638	12	924	11	718
	기타	13	257	3	143	6	286	1	48	4	190	4	183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재활보조기구 분류는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2023.9.11.기준)(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하였고, 각 분류별 재활보조기구 유형은 다음과 같음

〈의지·보조기: 102품목〉

- 팔 의지: 어깨가슴/어깨관절/위팔/팔꿈치관절/아래팔/손목관절/손/손가락 의지, 아주 짧은 아래팔/짧은 아래팔/표준 아래팔/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
- 다리 의지: 골반/엉덩이관절/넓적다리/무릎관절/종아리/발목/발 의지
- 팔 보조기: 어깨/팔꿈치-손목-손/손목-손/손가락/짧은팔 보조기
- 척추 보조기: 목/등-허리/허리-엉치/등-허리-엉치/허리/목뼈/등·허리뼈 보조기
-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 다리 보조기: 엉덩-무릎-발목-발/무릎-발목-발/무릎/발목-발/발/무릎관절 보조기
-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 기타: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보청기, 개인용 음성 증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설치형 전동리프트, 보행차, 가발, 집뇨기,
-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의지 소켓, 무릎관절 의지 소켓, 종아리 의지 소켓, 발목 의지 소켓,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수리료: 126품목〉

- 팔 의지: 위팔 의지 소켓/관절장식 교환,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훅크 교환, 의수 교환, 케이블 교환, 어깨밴드 교환, 실리콘 의수 교환,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근전전동의수 소켓/배터리/변속기부/모터부/기어부/골격부/센서부/제어부/외피/내피/손목깎임장식 교환, 위팔의지 폼카바/스타키넷트 교환, 상완밴드 교환
- 다리 의지: 넓적다리 의지 허리벨트/무릎관절장식/발목장식/폼카바/스타키넷트/스타키넷트카바 교환,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발목장식 교환, 족부외피 교환, 흡인 밸브 교환, 종아리 의지 폼카바/스타키넷트/스타키넷트카바/장식/콜셋밴드/실리콘 슬리브 교환,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회전테이블 교환,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소켓 교환,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더마실 교환, 디지털 컵 교환
- 보조기: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장식 교환, 듀랄루민 커프 교환, 발목장식 교환,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무릎띠 교환, 크렌자크식 발목-발 보조기 장식 교환, 다리보조기용 속신/정형용 구두 교환
- 휠체어: 시트 교환, 등받이 교환, 뒷바퀴/앞바퀴 교환, 팔받침 교환, 발판 교환, 핸드림 교환, 브레이크 교환, 옆받이 교환, 요크 교환, 팔걸이 교환, 발걸이 교환
- 전동스쿠터: 10인치/11인치/12인치 앞바퀴 전체/뒷바퀴 전체/타이어/튜브 교환
- 기타: 이동식 리프트용 배터리 교환, 벨크로 교환

자료: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건수는 3,2554건, 지급액은 8,075,526천원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재활보조기구 지급건수 및 지급액은 증가추이를 보임
  - 분류별로 살펴보면, 의지·보조기의 경우 '기타'의 지급건수 및 지급액이 각각 14,285건, 2,546,481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수리료의 경우 '다리의지'의 지급건수 및 지급액이 각각 2,149건, 671,890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지급대상: 산재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유형 및 용도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 및 수리비 지원

〈표 12-1-8〉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현황 - 연도별, 품목별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3,295	3,351	3,450	3,369	4,842	6,603
시각	화면낭독SW	115	108	108	127	83	108
	독서확대기	111	85	81	80	179	212
	점자단말기	82	69	29	54	148	158
	음성출력기	372	267	332	307	41	117
	화면확대S/W	3	-	-	1	-	1
	광학문자판독기	-	-	-	-	427	497
	모바일제어	-	-	-	-	34	-
	인터페이스	-	-	-	-	132	131
	점자출력기	-	-	-	-	2	8
	점자디스플레이	-	-	-	-	1	-
	기타	88	69	40	90	11	32
지체·뇌병변	입력보조기	102	63	58	45	-	-
	특수마우스	46	50	19	15	24	34
	특수키보드	15	11	7	4	2	3
	스위치	-	-	-	-	1	17
	터치모니터	-	-	-	-	58	48
	독서보조기	-	-	-	-	1	-
청각·언어	영상전화기	246	72	54	168	201	224
	의사소통보조기	1,087	1,472	1,227	1,297	1,942	2,570
	음성증폭기	75	61	95	102	101	57
	무선신호기	41	114	267	192	210	149
	골도음향기기	12	14	14	7	8	
	언어훈련S/W	895	896	1,119	880	1,236	2,237
	기타	3	-	-	-	-	-

주: 각 년도 12월 말 기준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내부자료

- 2023년 기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건수는 6,603건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건수는 매년 증가 추이를 보임
  - 품목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의사소통보조기'와 '언어훈련S/W'의 지급건수가 각각 2,570건, 2,237건으로 전체 지급건수 중 72.8%를 차지함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출처: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s://www.at4u.or.kr/index.asp))

- 관련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근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 보급품목: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실적

〈표 12-1-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 장애정도별,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건)

구분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
2014	650,542	81,352	104,946	107,331	96,178	187,506	73,138	91
2015	638,285	81,227	105,256	105,014	96,905	186,465	63,399	19
2016	498,164	66,161	88,891	85,064	76,646	146,446	34,946	10
2017	502,777	71,224	94,147	88,085	80,861	152,329	16,126	5
2018	517,458	73,438	99,064	90,027	83,931	156,763	14,232	3

구분		소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기타
2019		514,636	261,916	252,717	3
2020		513,361	262,102	251,259	–
2021		507,031	260,040	246,991	–
2022		513,115	264,001	249,114	–
2023		516,479	267,013	249,466	
지체	지체(전환대상)	75	44	31	–
	지체(상지절단)	1,647	909	738	–
	지체(하지절단)	9,910	5,958	3,952	–
	지체(상지관절)	2,361	427	1,934	–
	지체(하지관절)	81,551	5,712	75,839	–
	지체(상지기능)	6,844	4,697	2,147	–
	지체(하지기능)	98,566	54,630	43,936	–
	지체(척추)	97,558	13,569	83,989	–
	지체(변형)	909	84	825	–
시각		79,772	64,044	15,728	–
청각	청각(전환대상)	29,102	16,871	12,231	–
	청각(청력)	2	2	–	–
	청각(평형기능)	5,880	1,895	3,985	–
언어		268	59	209	–
지적장애		2,189	1,496	693	–
뇌병변장애		23,052	23,052	–	–
자폐성장애		26,833	26,833	–	–
정신		913	903	10	–
신장		44,388	41,912	2,476	–
심장		537	487	50	–
호흡기		2,876	2,801	75	–
간		374	190	184	–
안면		91	46	45	–
장루.요루		435	127	308	–
뇌전증		346	265	81	–
기타		–	–	–	–

주: 1)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은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
2) 2023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516,47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364건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하지기능)장애가 98,5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척추)장애 97,558건, 지체(하지관절)장애 81,551건, 뇌병변장애 79,772건 등의 순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4) 편의시설 설치

〈표 12-1-10〉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 연도별

(단위: 개, %)

편의시설 종류	2013년도					2018년도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9,034,890	7,243,294	80.2	6,754,701	74.8
매개시설	2,729,583	1,897,877	69.5	1,706,129	62.5	3,791,947	3,116,303	82.2	2,950,482	77.8
내부시설	1,929,421	1,555,422	80.6	1,392,127	72.2	3,299,282	2,762,138	83.7	2,560,854	77.6
위생시설	1,250,126	583,869	46.7	478,392	38.3	1,489,298	1,055,077	70.8	959,091	64.4
안내시설	195,730	82,643	42.2	70,711	36.1	295,558	197,551	66.8	181,197	61.3
기타시설	200,514	163,868	81.7	147,789	8.0	124,179	93,540	75.3	84,392	68.0
비치용품	-	-	-	-	-	34,626	18,685	54.0	18,685	54.0

주: 1) 설치기준 항목 수: 건물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항목을 모두 합한 것
2) 편의시설 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100
자료: 1)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3).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31.
2)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238.
3)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23).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06.

〈표 12-1-10〉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 연도별(계속)

편의시설 종류	2023년도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6,440,413	5,743,896	89.2	5,099,250	79.2
매개시설	2,153,933	2,011,613	93.4	1,812,782	84.2
내부시설	2,858,498	2,549,814	89.2	2,273,371	79.5
위생시설	1,109,576	942,438	84.9	817,632	73.7
안내시설	212,829	156,938	73.7	121,658	57.2
기타시설	80,304	69,730	86.8	60,444	75.3
비치용품	25,273	13,363	52.9	13,363	52.9

주: 1) 설치기준 항목 수: 건물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항목을 모두 합한 것
2) 편의시설 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100
자료: 1)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3).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31.
2)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238.
3)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23).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06.

- 2018년도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이었으나, 2023년도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증가함
  • 2023년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은 매개시설이 9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치용품이 52.9%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2-1-11〉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13년)

(단위: 개, %)

구분		2013년도					
		대상 건물 수	대상 편의 시설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시도별	서울	18,529	698,539	469,537	67.2	423,987	60.7
	부산	9,672	445,606	318,466	71.5	293,709	65.9
	대구	7,002	236,084	170,423	72.2	152,237	64.5
	인천	10,450	415,069	277,264	66.8	247,923	59.7
	광주	5,052	229,268	161,775	70.6	140,738	61.4
	대전	3,535	109,913	78,329	71.3	70,351	64.0
	울산	3,606	173,880	122,601	70.5	116,142	66.8
	세종	-	-	-	-	-	-
	경기	29,541	1,326,389	923,628	69.6	827,777	62.4
	강원	4,467	157,822	112,669	71.4	101,542	64.3
	충북	4,927	252,523	152,183	60.3	133,251	52.8
	충남	7,538	367,452	237,977	64.8	201,350	54.8
	전북	7,159	333,595	227,433	68.2	202,147	60.6
	전남	7,553	404,951	260,484	64.3	209,999	51.9
	경북	10,270	515,110	334,029	64.8	286,019	55.5
	경남	9,351	493,597	333,975	67.7	293,858	59.5
	제주	2,921	145,576	102,906	70.7	94,118	64.7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11,973	733,461	539,767	73.6	456,772	62.3
	민간시설	129,600	5,571,913	3,743,912	67.2	3,338,376	59.9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27,050	1,001,853	701,339	70.0	612,251	61.1
	2종 근린생활시설	10,190	301,604	199,605	66.2	181,666	60.2
	문화·집회시설	1,563	98,369	74,073	75.3	65,840	66.9
	종교시설	4,669	142,909	100,510	70.3	89,431	62.6
	판매시설	1,526	79,737	58,500	73.4	52,750	66.2
	의료시설	2,537	179,940	134,855	74.9	118,955	66.1
	교육연구시설	14,765	925,477	653,449	70.6	573,285	61.9
	노유자 시설	19,698	1,158,246	691,116	59.7	606,439	52.4
	수련시설	424	32,997	24,256	73.5	20,930	63.4
	운동시설	1,317	46,605	32,880	70.6	29,982	64.3
	업무시설	9,706	563,796	404,033	71.7	355,133	63.0
	숙박시설	4,335	212,873	149,000	70.0	132,230	62.1
	공장	5,483	263,260	138,490	52.6	124,925	47.5
	자동차관련시설	1,501	35,931	25,087	69.8	22,541	62.7
	방송통신시설	205	9,763	7,246	74.2	6,373	65.3
	교정시설	36	1,998	1,559	78.0	1,303	65.2
	묘지관련시설	98	4,199	2,731	65.0	2,426	57.8
	관광휴게시설	235	10,289	8,310	80.8	7,492	72.8
	장례식장	298	19,869	13,500	67.9	11,468	57.7
	공원	1,418	27,656	15,307	55.3	13,557	49.0
	공동주택	34,099	1,161,272	830,279	71.5	750,881	64.7
	기숙사	420	26,731	17,554	65.7	15,290	57.2

주: 2013년도 조사에서 세종시는 충청남도에 포함되어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3).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60, 99, 105.

- 2013년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대구가 7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부산 71.5%, 강원 7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울산이 66.8%로 가장 높았고, 부산 65.9%, 제주 6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설주체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공공이 민간보다 6.4%p 높으며, 적정설치율은 공공이 민간보다 2.6%p 높게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이 80.8%%로 가장 높았고, 교정시설 78.0%, 문화·집회시설 75.3% 등의 순임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이 72.8%로 가장 높았고 문화·집회시설 66.9%, 판매시설 66.2% 등의 순임

〈표 12-1-1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18년)

(단위: 개, %)

구분		2018년도					
		대상 건물 수	대상 편의 시설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185,947	9,034,890	7,243,294	80.2	6,754,701	74.8
시도별	서울	27,856	1,281,950	1,126,201	87.9	1,084,340	84.6
	부산	11,542	556,144	450,345	81.0	412,842	74.2
	대구	8,206	426,993	344,582	80.7	322,959	75.6
	인천	12,260	539,621	429,301	79.6	394,810	73.2
	광주	7,065	352,632	289,910	82.2	282,980	80.2
	대전	3,881	210,210	174,163	82.9	161,341	76.8
	울산	3,887	191,761	163,218	85.1	157,194	82.0
	세종	919	49,855	44,316	88.9	42,248	84.7
	경기	38,247	1,760,119	1,446,055	82.2	1,366,155	77.6
	강원	5,794	318,419	250,496	78.7	231,362	72.7
	충북	8,632	446,844	316,577	70.8	279,507	62.6
	충남	8,016	416,073	324,729	78.0	296,256	71.2
	전북	11,317	551,305	425,521	77.2	392,363	71.2
	전남	10,440	517,090	378,530	73.2	338,328	65.4
	경북	11,842	605,288	450,702	74.5	412,590	68.2
	경남	12,466	639,345	495,402	77.5	454,976	71.2
	제주	3,577	171,241	133,246	77.8	124,450	72.7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13,352	916,007	734,622	80.2	663,373	72.4
	민간시설	172,595	8,118,883	6,508,672	80.2	6,091,328	75.0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33,656	1,485,132	1,177,667	79.3	1,088,170	73.3
	2종 근린생활시설	13,760	422,324	319,236	75.6	302,960	71.7
	문화·집회시설	2,101	160,677	135,851	84.5	126,715	78.9
	종교시설	5,449	188,172	147,054	78.1	136,018	72.3
	판매시설	1,824	120,309	102,656	85.3	96,985	80.6
	의료시설	3,830	320,052	267,648	83.6	251,111	78.5
	교육연구시설	19,243	1,422,689	1,190,633	83.7	1,105,823	77.7
	노유자시설	23,950	1,324,789	966,538	73.0	884,849	66.8
	수련시설	518	39,212	31,932	81.4	29,142	74.3
	운동시설	1,653	60,604	49,979	82.5	47,096	77.7
	업무시설	12,323	861,319	720,108	83.6	671,801	78.0
	숙박시설	3,623	204,736	162,601	79.4	152,955	74.7
	공장	7,027	327,578	224,206	68.4	210,509	64.3
	자동차관련시설	1,546	38,250	32,241	84.3	30,840	80.6
	방송통신시설	208	12,818	10,420	81.3	9,561	74.6
	교정시설	47	2,829	2,299	81.3	2,074	73.3
	묘지관련시설	138	6,589	5,023	76.2	4,603	69.9
	관광휴게시설	297	14,724	12,704	86.3	11,893	80.8
	장례식장	338	25,305	20,589	81.4	18,787	74.2
	공원	1,949	66,393	43,989	66.3	41,474	62.5
	공동주택	51,753	1,888,072	1,587,369	84.1	1,501,216	79.5
	기숙사	714	42,317	32,551	76.9	30,119	71.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34, 198, 221.

- 2018년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8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87.9%, 울산 8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세종이 84.7%로 가장 높았고 서울 84.6%, 울산 8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설주체별로 살펴보면, 설치율은 공공과 민간 모두 80.2%로 동일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은 민간이 공공보다 2.6%p 높게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관광휴게시설이 86.3%로 가장 높았고, 판매시설 85.3%, 문화·집회시설 84.5%, 자동차관련시설 8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 80.8%로 가장 높았고, 판매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80.6%, 공동주택 7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2-1-13〉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23년)

(단위: 개, %)

구분		2023년도					
		대상 건물 수	대상 편의 시설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217,188	6,440,413	5,743,869	89.2	5,099,250	79.2
시도별	서울	34,440	812,487	747,930	92.1	682,738	84
	부산	16,320	440,244	396,768	90.1	349,422	79.4
	대구	8,018	263,653	237,186	90	214,106	81.2
	인천	12,555	358,048	323,222	90.3	282,107	78.8
	광주	7,711	227,541	203,779	89.6	178,692	78.5
	대전	3,945	134,611	121,277	90.1	109,774	81.6
	울산	2,686	92,885	84,107	90.6	76,757	82.6
	세종	1421	57,530	53,897	93.7	49,854	86.7
	경기	44,352	1,286,189	1,172,564	91.2	1,063,908	82.7
	강원	8,930	288,648	245,749	85.1	213,159	73.9
	충북	8,028	231,005	203,961	88.3	179,874	77.9
	충남	11,208	343,658	303,847	88.4	269,117	78.3
	전북	11,212	391,752	341,557	87.2	294,994	75.3
	전남	10,722	361,499	305,110	84.4	258,609	71.5
	경북	14,782	468,721	406,321	86.7	359,225	76.6
	경남	15,111	523,647	456,515	87.2	393,964	75.2
	제주	5,747	158,295	140,106	88.5	122,950	77.7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9,891	594,430	506,879	85.3	436,863	73.5
	민간시설	181,100	5,845,933	5,237,017	89.6	4,662,387	79.8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39,490	1,093,733	940,527	86	828,618	75.8
	2종 근린생활시설	16,910	318,018	280,497	88.2	253,430	79.7
	문화·집회시설	1,669	108,993	98,602	90.5	88,470	81.2
	종교시설	4,586	123,996	111,862	90.2	99,826	80.5
	판매시설	1,504	75,857	68,584	90.4	61,358	80.9
	의료시설	2,619	202,971	187,048	92.2	168,367	83
	교육연구시설	13,240	849,633	772,834	91	685,629	80.7
	노유자 시설	17,968	837,708	727,696	86.9	637,968	76.2
	수련시설	588	38,143	33,966	89	29,938	78.5
	운동시설	1,075	31,072	28,904	93	26,983	86.8
	업무시설	13,987	760,783	687,850	90.4	609,636	80.1
	숙박시설	2,170	105,803	94,988	89.8	84,444	79.8
	공장	4,850	193,409	171,360	88.6	156,740	81
	자동차관련시설	3,353	30,590	28,632	93.6	26,124	85.4
	방송통신시설	76	4,576	4,071	89	3,578	78.2
	교정시설	10	535	485	90.7	422	78.9
	묘지관련시설	135	4,644	4,166	89.7	3,787	81.5
	관광휴게시설	191	8,409	7,980	94.9	7,339	87.3
	장례식장	292	19,031	16,716	87.8	14,702	77.3
	공원	2,488	53,777	42,298	78.7	37,955	70.6
	공동주택	63,194	1,548,422	1,407,681	90.9	1,250,048	80.7
	기숙사	596	30,310	27,149	89.6	23,888	78.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23).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53, 154, 531, 537.

- 2023년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9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92.1%, 울산 9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세종이 86.7%로 가장 높았고 서울 84.0%, 울산 8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설주체별로 살펴보면, 설치율은 민간시설이 89.6%로 공공시설보다 4.3%p높게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민간이 공공보다 6.3%p 높게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관광휴게시설이 94.9%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관련시설 93.6%, 운동시설 93.0%, 의료시설 9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 87.3%로 가장 높았고, 운동시설 86.8, 자동차관련시설 8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5) 이동 편의시설 설치

〈표 12-1-14〉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p)

구분		전국	8개 특별 · 광역시도 지역					9개 도지역			
		2021	2016	2017	2019	2021	증감	2018	2020	2021	증감
교통수단	버스차량	90.0	89.1	90.7	94.1	95.1	1.0	86.7	88.4	86.6	△1.8
	철도차량	96.0	91.7	94.2	95.4	96.0	0.6	79.6	86.6	93.1	6.5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차량	98.9	93.8	93.3	98.6	98.9	0.3	98.6	98.6	98.9	0.3
	항공기	73.7	98.7	79.9	72.6	73.7	1.1	69.7	73.7	73.7	-
	여객선	37.8	17.6	52	30.5	37.8	7.3	34.3	35.4	38.4	3.0
	평균	79.3	78.2	82	78.3	80.3	2.0	73.8	76.5	78.1	1.6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64.0	56.6	59.7	66.0	69.2	3.2	63.3	67.1	62.5	△4.6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역사	89.9	83.6	88.5	90.9	90.9	-	85.8	87.4	87.6	0.2
	철도역사	82.5	78.8	81.1	86.5	88.4	1.9	84.1	85.2	81.2	△4.0
	공항여객터미널	86.8	82.9	80.0	83.1	86.0	2.9	84.3	88.3	88.2	△0.1
	여객선터미널	82.2	71.3	87.4	87.8	88.3	0.5	81.8	81.2	80.6	△0.6
	버스정류장	45.4	44.4	52.6	56.9	57.1	0.2	32.8	34.6	34.9	0.3
	평균	75.1	69.3	74.9	78.5	88.0	9.5	72.0	74.0	72.5	△1.5
보행 환경		77.6	72.0	78.0	81.3	84.1	2.8	64.2	65.9	69.9	4.0
전체 평균		77.3	73.1	78.3	79.4	81.5	2.1	70.0	72.1	73.5	1.4

주: 1) 2016년(전국)의 기준적합설치율은 2019년(8개 특별·광역시) 조사범위와 동일하게 재산정한 수치임
2) 2018년의 기준적합설치율은 "교통약자 이용정보 편의서비스 제공" 수치를 제외하여 재산정한 수치임
3) 2019년(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도지역)
4) 2021년(8개 특별·광역시 및 9개 도지역)

자료: 1) 국토교통부(2020).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89.
2) 국토교통부(2021).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91.
3) 국토교통부(202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54.

- 2021년 전국기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은 77.3%임
  - 전국기준 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79.3%이며,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차량 98.9%, 철도차량 96.0% 등의 순임
  - 전국기준 여객시설의 이동약자 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75.1%이며,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역사가 89.9%, 공항여객터미널 86.8% 등의 순임

〈표 12-1-15〉 교통약자 이용 교통수단 - 교통수단별

(단위: %)

구분			버스	지하철	걸어서 (또는 휠체어 이용)	자가용	장애인 택시	지자체 운영 특별교통 수단 (특장차)	무료 셔틀버스	택시	기타
지역 내	전체		53.7	14.7	13.4	8.3	3.1	2.5	2.1	2.0	0.2
	비교통약자		58.7	15.8	11.6	11.2	0.1	1.8	0.3	0.2	0.3
	교통약자	전체	51.6	14.2	14.2	7.0	4.4	2.8	2.9	2.7	0.1
		장애인	40.4	13.1	13.9	6.0	10.7	2.1	7.1	6.7	0.0
		지체	38.9	15.4	12.3	7.0	8.1	0.9	11.9	5.5	0.0
		시각	34.6	7.2	13.5	4.3	20.2	5.3	2.4	12.5	0.0
		청각	50.8	14.1	18.6	5.1	6.2	1.7	0.6	2.8	0.0
		임산부	60.7	13.3	8.6	12.9	0.0	4.5	0.0	0.0	0.0
		고령자	58.2	15.8	17.3	5.1	0.4	2.6	0.1	0.1	0.4

구분			승용차	고속 (시외) 버스	기차 (KTX, 새마을호 등)	장애인 택시	비행기	지자체 운영 특별교통 수단	택시	여객선	기타
지역 간	전체		65.7	16.5	9.3	2.4	1.5	1.6	0.8	0.3	1.9
	비교통약자		64.7	18.9	10.7	0.3	0.0	2.2	0.7	0.5	2.1
	교통약자	전체	66.2	15.5	8.7	3.3	2.1	1.4	0.8	0.2	1.8
		장애인	63.0	10.7	8.1	8.1	5.3	0.8	0.9	0.0	3.3
		지체	59.8	10.6	8.7	5.7	8.7	0.7	0.5	0.0	5.2
		시각	67.7	7.1	5.6	14.1	2.0	1.0	1.5	0.0	1.0
		청각	65.5	14.9	9.2	6.9	0.6	0.6	1.1	0.0	1.1
		임산부	87.9	7.4	3.2	0.0	0.0	0.7	0.0	0.2	0.5
		고령자	57.9	24.7	12.3	0.1	0.0	2.4	1.2	0.4	1.0

자료: 2) 국토교통부(2022).「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부록」p371, 380.

- 지역 내 이동 시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51.6%로 가장 높고, 걸어서(또는 휠체어 이용)와 자가용이 14.2% 등의 순임
  - 장애인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걸어서(또는 휠체어 이용) 13.9%, 지하철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시각, 청각장애 모두 지역 내 이동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체장애의 경우 지하철이 15.4%, 시각장애의 경우 장애인 택시가 20.2%, 청각장애는 걸어서(또는 휠체어 이용)가 18.6% 순으로 나타남
- 지역 간 이동시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66.2%로 가장 높고, 고속(시외)버스 15.5%, 기차 8.7% 등의 순임
  - 장애인 또한 승용차의 이용비율이 63.0%로 가장 높고, 고속(시외)버스 10.7%, 기차와 장애인택시가 8.1% 등의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시각, 청각장애 모두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체장애와 청각장애의 경우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10.6%와 14.9%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택시의 이용비율이 14.1% 순으로 나타남

〈표 12-1-16〉 저상버스 도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대,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전국	8,038	23.4	9,016	26.2	9,840	27.8
서울	3,332	45.0	3,945	53.3	4,272	57.8
부산	557	22.1	638	25.3	687	27.3
대구	526	34.6	546	33.8	565	34.9
인천	423	17.9	469	19.9	528	22.7
광주	213	20.5	215	20.6	261	25.0
대전	279	27.5	289	28.4	318	31.3
울산	96	11.6	101	12.1	104	12.3
세종	54	23.0	66	23.2	68	27.9
경기	1,343	12.7	1,422	13.4	1,608	14.1
강원	193	34.8	187	34.3	187	36.1
충청	122	20.8	131	20.6	128	20.1
충청	61	7.0	74	9.2	88	10.0
전라	182	22.0	186	22.4	195	23.5
전라	87	12.1	97	13.4	101	11.5
경상	164	13.9	177	15.0	196	16.2
경상	318	18.7	370	21.6	406	23.6
제주	88	22.6	103	26.5	128	32.9

주: 1) 각 년도 12월 기준임
2) 저상버스 보급률은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수를 시내버스 대수로 나누어 산정함
3) 실제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1) 국토교통부(2020).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93.
1) 국토교통부(2021).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95.
2) 국토교통부(202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269.
3)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검색일: 2024.09.11)

〈표 12-1-16〉 저상버스 도입 현황 - 연도별, 지역별(계속)

(단위: 대, %)

구분	2021년		2022년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전국	10,828	30.6	11,838	34.0
서울	4,412	59.7	4,711	63.7
부산	728	28.9	785	31.2
대구	608	37.5	642	41.1
인천	580	26.3	352	16
광주	297	29.7	325	31.1
대전	339	33.4	385	37.1
울산	103	12.1	104	11.9
세종	100	37.3	95	37.4
경기	2,112	19.2	2,728	25.7
강원	203	39.7	186	38.4
충청	137	21.5	163	25.5
충청	89	9.9	118	13.1
전라	187	22.9	205	24.4
전라	124	16.8	134	18.6
경상	222	17.3	253	20.8
경상	439	25.2	496	28.8
제주	148	17.8	156	18.8

주: 1) 각 년도 12월 기준임
2) 저상버스 보급률은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수를 시내버스 대수로 나누어 산정함
3) 실제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1) 국토교통부(2020).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93.
1) 국토교통부(2021).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95.
2) 국토교통부(202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269.
3)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검색일: 2024.09.11)

- 2022년 저상버스는 총 11,838대로 2021년 대비 1,010대가 증가하였으며, 보급률 또한 2021년 30.6%에서 2022년 34.0%로 향상됨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63.7%로 가장 높았고, 대구 41.1%, 강원 38.4%, 세종 37.4% 등의 순임

〈표 12-1-17〉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대, %)

구분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	운행대수	보급률
2013		2,780	1,752	63.0
2014		2,692	2,298	85.4
2015		2,726	2,601	95.4
2016		2,731	2,820	103.3
2017		2,327	2,932	126.0
2018		2,699	3,187	118.1
2019		4,697	3,457	73.6
2020		4,694	3,914	83.4
2021		4,738	4,074	86.0
소계		1,888	1,469	77.8
8개 특별 광역시	서울	725	622	85.8
	부산	319	206	64.6
	대구	216	163	75.5
	인천	254	169	66.5
	광주	128	116	90.6
	대전	134	96	71.6
	울산	90	76	84.4
	세종	22	21	95.5
소계		2,850	2,605	91.4
9개도	경기	1027	1157	112.7
	강원	195	149	76.4
	충북	180	116	64.4
	충남	236	163	69.1
	전북	236	192	81.4
	전남	247	179	72.5
	경북	317	214	67.5
	경남	344	369	107.3
	제주	68	66	97.1

주: 1) 2021년 12월 기준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법정기준대수
· 법정기준대수 산정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의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산정하였음
· 제5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①항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정의)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자료: 1) 국토교통부(2014). 「201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64.
2) 국토교통부(2015).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58.
3) 국토교통부(2016). 「2015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65.
4) 국토교통부(2017). 「2016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68.
5) 국토교통부(2018).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77.
6) 국토교통부(2019).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78.
7) 국토교통부(2020).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97.
8) 국토교통부(2021).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99.
9) 국토교통부(202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276.

- 2021년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4,074대로 법정대수 4,738대 대비 86.0%의 보급률로 나타남
- 8개 특별·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77.8%(1,469대)로 세종이 95.5%로 가장 높고, 광주 90.6%, 서울 85.8% 등의 순임
- 9개 도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91.4%(2,605대)로 경기가 112.7%, 경남이 107.3%로 법정 기준대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제주 97.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은 64.4%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정보 접근성

(1)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

〈표 12-2-1〉 장애인 디지털정보화수준 현황 - 연도별

(단위: %)

구분	디지털정보화수준	디지털정보화접근수준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	디지털정보화활용수준
2014	60.2	79.9	45.0	59.7
2015	62.5	83.5	47.0	62.4
2016	65.4	88.1	49.8	64.6
2017	70.0	91.6	57.7	71.5
2018	74.6	92.0	66.9	73.6
2019	75.2	92.6	67.8	74.0
2020	81.3	95.4	74.2	81.4
2021	81.7	95.6	74.9	81.5
2022	82.2	96.7	75.2	82.0
2023	82.8	98.0	75.6	82.5

주: 1) 디지털정보화수준(디지털정보격차지수)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격차수준(종합) = 디지털정보화접근 수준(0.2) + 디지털정보화역량 수준(0.4) +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0.4)
2) 디지털정보화접근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접근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접근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화접근수준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3)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기기 이용능력(0.5)
4) 디지털정보화활용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활용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활용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화활용수준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18).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6-4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19).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6-4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8-44.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42-48.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42-48.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8-44.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41.

-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은 2014년 이후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100)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2023년 기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 격차가 가장 적은 부문은 디지털정보화접근수준으로 98.0%이며,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75.6%로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남

〈표 12-2-2〉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연도별

(단위: %, %p)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국민	장애인	차이(%p)	일반국민	장애인	차이(%p)	일반국민	장애인	차이(%p)	일반국민	장애인	차이(%p)	일반국민	장애인	차이(%p)
인터넷 이용률	91.8	78.3	▽13.5	91.9	80.3	▽11.6	93.0	82.9	▽10.1	93.0	85.5	▽7.5	94.0	86.0	▽8.0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92.5	91.4	▽1.1	91.9	92.2	0.3	89.7	86.3	▽3.4	91.4	85.3	▽6.1	90.8	87.5	▽3.3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91.2	92.0	0.8	91.2	91.2	-	89.0	85.3	▽3.7	91.8	87.4	▽4.4	87.6	90.9	▽3.3
생활서비스 이용률	88.7	84.3	▽4.4	90.3	87.5	▽2.8	88.3	81.8	▽6.5	89.3	84.4	▽4.9	90.6	85.9	▽4.7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	63.0	41.7	▽21.3	66.3	53.9	▽12.4	61.8	46.6	▽15.2	59.2	46.5	▽12.7	58.4	44.3	▽14.1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	82.5	67.5	▽15.0	75.9	67.9	▽8.0	73.3	61.1	▽12.2	72.4	63.7	▽8.7	71.3	61.3	▽10.0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36.7	38.9	2.2	45.5	50.4	4.9	44.2	43.2	▽1.0	38.9	38.7	▽0.2	42.4	36.3	▽6.1
온라인 경제활동률	59.2	39.0	▽20.2	54.3	46.5	▽7.8	63.3	48.6	▽14.7	62.8	48.6	▽14.2	62.5	52.0	▽10.5

주: 1) 이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2) 모바일 스마트 기기(스마트폰/스마트패드/기타주변기기 중 하나) 보유율
3) 본 조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로 규정
4)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은 정보 및 뉴스 검색, 이메일, 미디어콘텐츠 교육콘텐츠 이용 여부(다소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5) 생활 서비스 이용률은 교통정보 및 지도, 제품구매 및 예약/예매, 금융거래, 행정서비스,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다소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6)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은 직접 만든 정보나 타인이 만든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7)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8)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9)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 여부(가끔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10) 온라인 경제 활동률은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가끔 이용 +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로 측정

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62-7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66-8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53-57.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49-53.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50-65.

- 2023년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90.9%,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87.5%, 인터넷 이용률 86.0%, 생활서비스 이용률 85.9% 등의 순임
  -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생활서비스 이용률,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을 제외한 영역에서 2022년도에 비하여 격차가 증가 됨
  -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 14.1%, 온라인 경제활동률 10.5% 등의 순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

(2) 정보 접근성

〈표 12-2-3〉 웹 접근성 현황 - 연도별, 산업분야별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2년 대비 2023년 증감
전체	53.7	60.7	60.8	60.9	65.8	4.9
도매 및 소매업	57.9	55.3	58.8	57.7	66.1	8.4
숙박 및 음식점업	59.2	53.6	63.4	61.1	65.1	4.0
정보통신업	51.8	63.0	60.2	60.4	66.0	5.6
금융 및 보험업	60.7	71.5	69.5	70.2	73.1	2.9
부동산업	58.7	60.8	52.6	55.7	58.2	2.5
교육서비스업	58.2	62.9	64.4	66.2	70.2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5.6	59.3	57.5	66.0	62.2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2	61.1	68.2	67.2	69.4	2.2

주: 1)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최신 전국 산업체 조사 산업 분류(대분류 8개) 및 종사자 규모(9개 구간) 기반 모집단 구성
2) 웹사이트 1000개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조사가이드에 따라 2개 전문가 그룹이 교차 평가
3)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24개 항목 준수 조사
4) 2018년도와 동일기준 미적용(2019년 이전 연도와 기준 차이가 있어 비교불가)

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19 웹 접근성 실태조사」 p26, 28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 p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2021 웹 접근성 실태조사」 p3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 웹 접근성 실태조사」 p31-3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3 웹 접근성 실태조사」 p25.

-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8개 분야와 종사자 규모(9개 구간)를 고려하여 모집단을 대표하는 총 1,000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2022년 평균 65.8점으로 2022년에 비해 평균 4.9점 증가하였음
  -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7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서비스업이 70.2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9.4점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전년도에 비하여 점수가 낮아진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점으로 나타남

정보 접근성(Accessibility)
- 웹 및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따라 2015년부터는 모든 기관·기업의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

3) 사법 접근성

(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표 12-3-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96.10.1.-'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민사	건	32,409	2,692	4,728	5,706	6,007	5,571	5,561	5,761	3,926
	금액	6,706	645	1,072	1,143	1,101	1,009	1,062	1,084	841
형사	건	4,872	317	461	384	359	362	393	343	279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민사	건	1,968	2,233	1,951	1,979	1,179	1,223	1,268	1,571	85,733
	금액	430	547	524	488	316	347	405	634	18,354
형사	건	187	166	80	64	10	7	6	8	8,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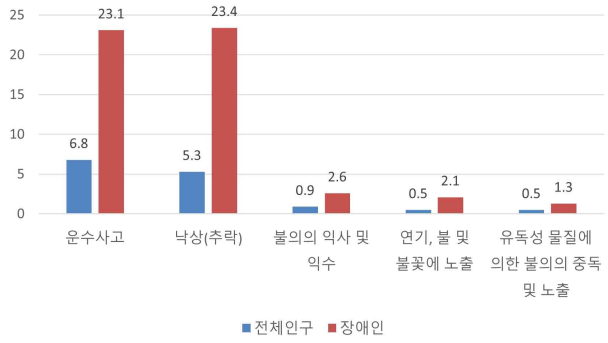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자료

-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중 민사소송 건수는 1,571건(금액 634억원), 형사소송 건수는 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3년까지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전체 실적은 민사소송 85,733건(금액 18,354억원), 형사소송 8,298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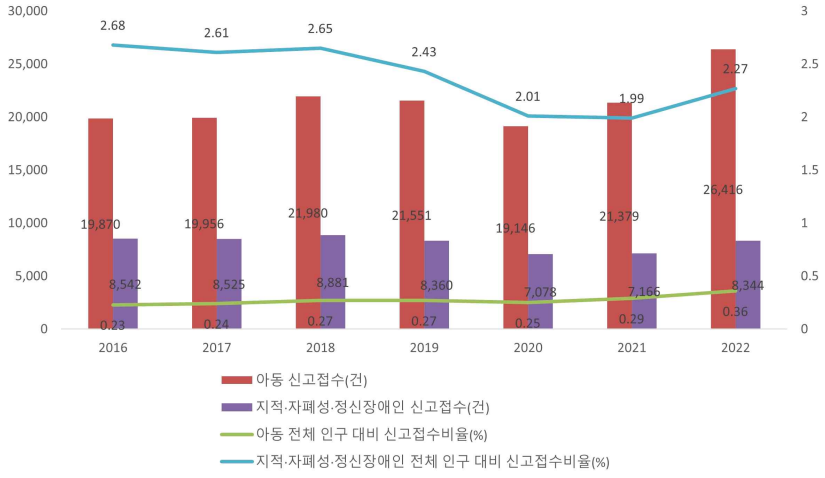
장애인 무료법률구조(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장애인
- 지원내용: 무료로 민·가사 사건의 소송대리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은 본인부담)

13. 재난 및 안전

[그림 2-13-1] 비의도적 손상 사망 현황(2022) - 전체인구, 장애인구



[그림 2-13-2]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 2022년 장애인의 비의도적 손상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낙상(추락)' 23.4명, '운수사고' 23.1명, '불의의 익사 및 익수' 2.6명,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2.1명,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1.3명임
  -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모든 원인에서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높음. 특히 '낙상(추락)',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은 장애인이 전체인구에 대비 조사망률이 약 4배 이상으로 나타남
- 2022년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접수 건수는 8,344건으로 2021년에 비해 1,178건 증가함
  - 전체 인구 대비 실종 신고접수 비율을 살펴보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2022년 2.27%로 아동 0.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장애인 응급안전망

(1) 응급 출동

〈표 13-1-1〉 응급 출동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구분		합계	응급상황			
			화재	가스	응급호출	119호출
2013년		25	2	-	7	16
2014년		339	53	-	99	187
2015년		509	28	1	69	411
2016년		448	67	7	66	308
2017년		966	78	2	63	823
2018년		1,353	78	4	58	1,213
2019년		1,331	92	-	64	1,175
2020년		1,192	67	2	32	1,091
2021년	계	1,281	47	-	20	1,214
	1월	78	8	-	3	67
	2월	80	1	-	-	79
	3월	112	3	-	1	108
	4월	114	5	-	4	105
	5월	93	2	-	3	88
	6월	101	3	-	-	98
	7월	109	-	-	1	108
	8월	122	1	-	2	119
	9월	140	5	-	3	132
	10월	124	9	-	2	113
	11월	92	5	-	1	86
	12월	116	5	-	-	11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응급출동 현황은 2021년 1,28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응급상황별로 살펴보면 119호출이 1,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47건, 응급호출 20건 순으로 나타남

2) 사망 현황

〈표 13-1-2〉 비의도적 손상 사망 현황(전체인구 비교) - 연도별, 사망원인별

(단위: 10만 명당)

구분	2016		2017		2018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운수사고	10.1	32.5	9.8	30.8	9.1	27.7
낙상(추락)	5.1	20.8	5.2	21.2	5.2	21.1
불의의 익사 및 익수	1.3	3.9	1.1	3.3	1.1	3.2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0.6	1.6	0.6	1.1	0.6	1.5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0.6	2.2	0.6	1.9	0.6	2.7

구분	2019		2020		2021		2022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운수사고	8.2	26.4	7.7	25.3	7.1	24.1	6.8	23.1
낙상(추락)	5.2	22.5	5.2	23.7	5.3	24.0	5.3	23.4
불의의 익사 및 익수	0.9	2.6	1.0	2.7	0.9	2.7	0.9	2.6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0.5	2.1	0.5	2.3	0.5	1.2	0.5	2.1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0.4	1.0	0.5	1.6	0.5	2.2	0.5	1.3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
2) '비의도적 손상'은 교통사고, 추락, 화재, 익사, 중독, 자연 재해 등 불의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을 의미함(출처: 한국의 사회동향 2018, 통계개발원)
3) 비의도적 손상에 의한 사망원인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 제공한 '사인순위 선정을 위한 일반사망선택분류표(57개 항목)' 중 비의도적 손상과 관련 있는 '운수사고(V01-V99)', '낙상(추락)(W00-W19)', '불의의 익사 및 익수(W65-W74)',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X00-X09)',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X40-X49)'을 선정함
4) 비의도적 손상에 의한 사망률은 비의도적 손상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연도의 추정된 연양인구(해당연도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표현한 지표임 (※ 비의도적 손상 사망률(사망원인별) = 비의도적 손상에 의한 사망자 수/연양인구 X 100,000)
5) 전체인구 자료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참고함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448.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420.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86.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76.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88, 626.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64.

- 2022년 기준 장애인의 비의도적 사망 원인별 조사망률을 살펴보면, '운수사고' 23.1명, '낙상(추락)' 23.4명, '불의의 익사 및 익수' 2.6명,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2.1명,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1.3명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은 2021년 대비 2022년 감소한 반면,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은 증가함
  - 전체인구와 장애인의 비의도적 사망 원인별 조사망률 격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인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낙상(추락)'과 '운수사고'의 격차는 각각 18.1명, 16.3명으로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장애인 안전시설

〈표 13-2-1〉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시설유형별

(단위: 개, %)

구분	2008년도					2013년도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유도 및 안내 설비	5,612	1,389	24.8	896	16.0	16,237	8,523	52.5	7,720	47.5
경보 및 피난 설비	5,612	3,824	68.1	1,339	23.9	32,564	25,522	78.4	19,840	60.9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	17,770	9,137	51.4	5,263	29.6	28,508	9,032	31.7	7,459	26.2
승강기	173,763	152,065	87.5	138,852	79.9	73,350	70,813	96.5	68,211	93.0

구분	2018년도					2023년도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유도 및 안내 설비	116,670	67,068	57.5	63,334	54.3	40,960	39,666	96.8	36,688	89.6
경보 및 피난 설비	97,673	79,105	81.0	70,247	71.9	95,312	78,244	82.1	49,973	52.4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	81,215	51,378	63.3	47,616	58.6	76,557	39,082	51	34,997	45.7
승강기	86,054	80,734	93.8	77,148	89.7	500,148	481,740	96.3	459,706	91.9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3).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p127, 130.
2)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15, 325.
3)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23).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14, 163.

- 2023년 기준 장애인 안전시설 유형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유도 및 안내설비' 96.8%, '경보 및 피난설비' 82.1%,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 51.0%, '승강기' 96.3%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을 제외한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율이 2018년 대비 2023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안전시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22, 행정안전부)에서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안전시설 종류로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음향교통신호기를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았음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단위: 개, %)

구분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40,960	39,666	96.8	36,688	89.6	95,312	78,244	82.1	49,973	52.4
시설 주체	공공시설	8,753	8,510	97.2	8,020	91.6	14,124	12,074	85.5	7,858	55.6
	민간시설	32,207	31,156	96.7	28,668	89.0	81,188	66,170	81.5	42,115	51.9
	계	43,339	38,111	87.9	37,689	87.0	93,679	76,796	82.0	49,274	52.6
건물 유형	1종 근린생활시설	-	-	-	-	-	4,420	3,117	70.5	2,053	46.5
	2종 근린생활시설	56	52	92.9	49	88	176	120	68.2	54	30.7
	문화 및 집회시설	3,498	2,224	63.6	2,031	58.1	1,119	1,082	96.7	1,030	92.1
	종교시설	-	-	-	-	-	4,040	3,695	91.5	2,349	58.1
	판매시설	-	-	-	-	-	2,672	2,456	91.9	1,614	60.4
	의료시설	6,176	5,979	96.8	5,589	90.5	6,492	6,300	97.0	4,352	67.0
	교육연구시설	17,709	17,178	97.0	15,458	87.3	21,504	20,083	93.4	12,721	59.2
	노유자시설	4,162	4,029	96.8	3,764	90.4	4,516	4,001	88.6	2,696	59.7
	수련시설	-	-	-	-	-	800	660	82.5	462	57.8
	운동시설	-	-	-	-	-	-	-	-	-	-
	업무시설	8,753	5,810	97.2	8,020	91.6	9,804	9,037	92.2	5,863	59.8
	숙박시설	-	-	-	-	-	3,048	2,879	94.5	1,900	62.3
	공장	-	-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	-	-	-	-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56	53	94.6	32	57.1
	교정	-	-	-	-	-	-	-	-	-	-
	묘지관련시설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	-	-	-	-	-	-	-
	장례식장	-	-	-	-	-	272	260	95.6	176	64.7
	공원	2,985	2,839	95.1	2,778	93.1	-	-	-	-	-
	공동주택	-	-	-	-	-	34,412	22,730	66.1	13,764	40.0
	기숙사	-	-	-	-	-	348	323	92.8	208	59.8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22, 행정안전부)에서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안전시설 종류로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음향교통신호기를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23).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407-524, 397-395.

- 2023년 기준 유도 및 안내설비와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율은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에서 높게 나타났음
  - 유도 및 안내설비의 설치율은 업무시설 97.2%, 교육연구시설 97.0%,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96.8% 등의 순으로 높음
  -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율은 의료시설 97.0%, 문화 및 집회시설 96.7%, 장례식장 95.6% 등의 순으로 높음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계속)

(단위: 개, %)

구분		점자블록					승강기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76,557	39,028	51.0	34,997	45.7	500,148	481,740	96.3	459,706	91.9
시설 주체	공공시설	29,394	14,922	50.8	13,090	44.5	22,248	21,976	98.8	21,264	95.6
	민간시설	47,163	24,106	51.1	21,907	46.5	477,900	459,764	96.2	438,442	91.7
	계	75,811	39,334	51.9	34,695	45.8	500,130	481,649	96.3	459,706	91.9
건물 유형	1종 근린생활시설	31,647	12,682	40.1	10,910	34.5	33,624	32,831	97.6	31,629	94.1
	2종 근린생활시설	114	5	4.4	4	3.5	135	118	77.1	107	69.9
	문화 및 집회시설	2,752	2,530	91.9	1,729	62.8	10,467	10,215	97.6	9,828	93.9
	종교시설	-	-	-	-	-	-	-	-	-	-
	판매시설	-	-	-	-	-	9,126	8,836	96.8	8,516	93.3
	의료시설	7,857	5,138	65.4	4,719	60.1	22,752	22,269	97.9	21,401	94.1
	교육연구시설	12,465	8,374	67.2	7,678	61.6	81,972	79,774	97.3	76,342	93.1
	노유자시설	3,390	2,141	63.2	1,935	57.1	52,245	50,744	97.1	48,555	92.9
	수련시설	-	-	-	-	-	2,925	2,848	97.4	2,764	94.5
	운동시설	-	-	-	-	-	-	-	-	-	-
	업무시설	7,353	5,566	75.7	5,067	68.9	106,110	101,565	95.8	96,882	91.3
	숙박시설	2,268	1,326	58.5	1,232	54.3	6,570	6,376	97.1	6,103	92.9
	공장	-	-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	-	-	-	-	27	27	100.0	27	100.0
	방송통신시설	-	-	-	-	-	414	399	96.4	378	91.3
	교정	-	-	-	-	-	-	-	-	-	-
	묘지관련시설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	-	-	-	-	-	-	-
	장례식장	501	236	47.1	217	43.3	1,548	1,508	97.4	1,442	93.2
	공원	7,464	1,336	17.9	1,204	16.1	-	-	-	-	-
	공동주택	-	-	-	-	-	172,215	164,139	95.3	155,732	90.4
	기숙사	-	-	-	-	-	-	-	-	-	-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22, 행정안전부)에서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안전시설 종류로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음향교통신호기를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23).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407-524, 397-395.

- 점자블록의 설치율은 문화 및 집회시설 79.4%, 업무시설 75.7%, 교육연구시설 67.2% 등의 순으로 높음
- 승강기의 설치율은 자동차관련시설 100%, 의료시설 97.9%, 1종 근린생활시설 97.6% 등의 순으로 높음

4) 장애인 보호구역

〈표 13-3-1〉 보호구역 지정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2012	15,730	15,136	566	28
2013	16,105	15,444	626	35
2014	16,537	15,799	697	41
2015	16,995	16,085	859	51
2016	17,531	16,355	1,107	69
2017	17,939	16,555	1,299	85
2018	18,494	16,765	1,639	90
2019	18,941	16,912	1,932	97
2020	19,269	16,896	2,287	86
2021	19,551	16,759	2,673	119
2022	19,954	16,641	3,194	119
서울	1,896	1,709	178	9
부산	953	868	83	2
대구	817	752	59	6
인천	880	688	186	6
광주	506	439	56	11
대전	608	477	127	4
울산	465	333	130	2
세종	131	125	6	-
경기	4,303	3,850	424	29
강원	878	761	114	3
충북	1,123	720	396	7
충남	1,811	1,055	745	11
전북	1,053	1,001	51	1
전남	1,146	1,053	90	3
경북	1,545	1,237	307	1
경남	1,368	1,235	129	4
제주	471	338	113	20

주: 1) 2022년 12월 말 기준
2) 보호구역은 어린이(1995년), 노인(2008년), 장애인(2012년) 순으로 지정됨
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14.11.19.]'에 의하면,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복지시설)에 지정된 보호구역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2023).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p254-255.

- 2022년 기준 지정된 보호구역은 총 19,554개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보호구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이 16,641개소로 가장 많고 장애인 보호구역이 119개소로 가장 적음
  - 장애인 보호구역은 경기가 29개소로 가장 많고, 제주 20개소, 광주·충남 11개소 순인 반면, 세종은 한 개도 지정되지 않음

5)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표 13-4-1〉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 연도별

(단위: 명, 건, %)

구분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체 인구수	신고접수	미해제	전체 인구 대비 신고접수 비율	전체 인구수	신고접수	미해제	전체 인구 대비 신고접수 비율
2016	8,736,051	19,870	4	0.23	318,205	8,542	3	2.68
2017	8,480,447	19,956	4	0.24	326,776	8,525	2	2.61
2018	8,176,335	21,980	4	0.27	335,760	8,881	7	2.65
2019	7,928,907	21,551	8	0.27	344,594	8,360	15	2.43
2020	7,710,946	19,146	13	0.25	351,435	7,078	10	2.01
2021	7,483,944	21,379	79	0.29	359,421	7,166	33	1.99
2022	7,271,460	26,416	58	0.36	367,538	8,344	29	2.27

주: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 아동은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불문), 치매환자(연령불문)를 포함함
2) 전체 인원수는 해당년도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총 인구수를 의미함
3) 신고접수는 발생년도와 무관하며, 과거 발생건에 대한 당해연도 접수건을 포함함
4) 미해제는 계속해서 추적·수사중인 사건을 의미하며, 접수연도와 관계없이 실종발생 당해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이에 최근 연도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음
5) 미해제 현황은 2021년 12월 말 기준임
6) 전체 인구 대비 신고접수 비율은 내부연구진에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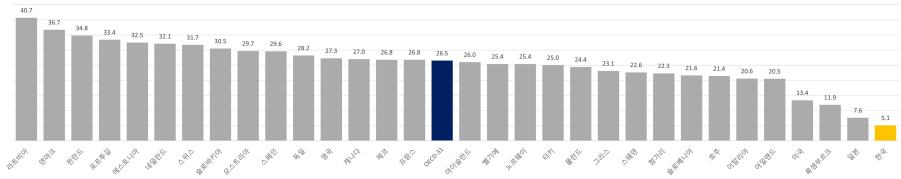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2023). 「2022 경찰통계연보」 p98.

- 2022년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접수 건수는 8,344건으로 2021년에 비해 1,178건 증가함
  - 2022년 기준 실종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미해제 건수는 29건임
  - 전체 인구 대비 실종 신고접수 비율을 살펴보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2022년 2.27%로 아동 0.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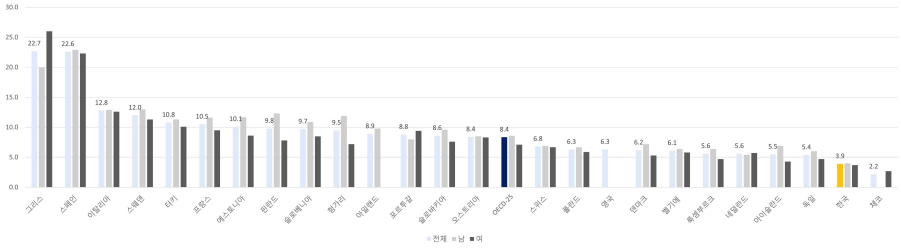
Ⅲ 국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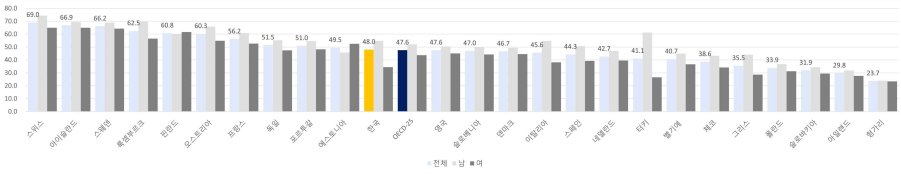
1. OECD 회원국

[그림 3-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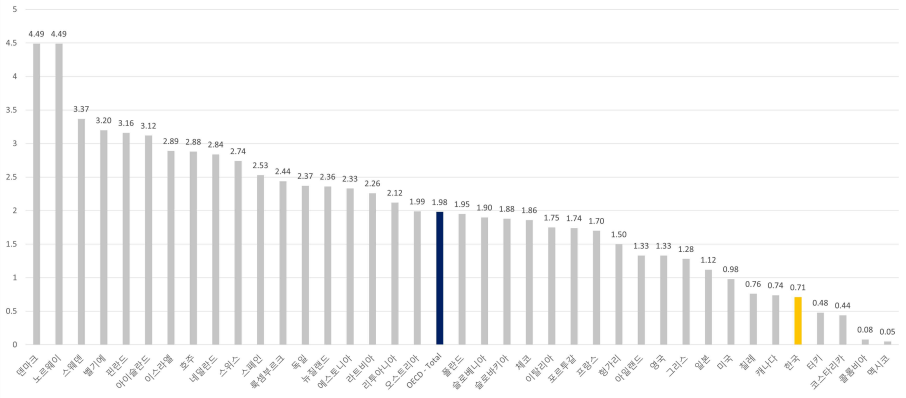
[그림 3-1-2] OECD 국가 장애인 실업률(15-64세,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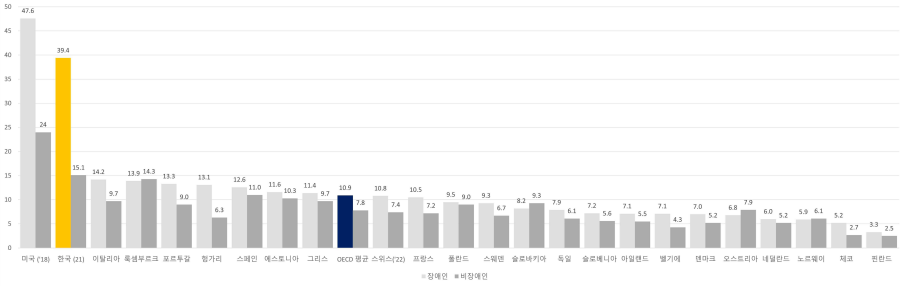


- 2023년 OECD 국가(31개 국가) 장애인 출현율은 평균 26.5%이며, 한국 장애인 출현율(2020년 기준)은 5.1%임
  -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장애인 출현율을 보이는 반면, 한국 5.1%, 일본 7.6%은 출현율이 낮은 편임
- 2022년 OECD 국가의 장애인 평균 실업률은 8.35%로 비장애인 5.07%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3.9% 이며, 남성 4.0%, 여성 3.7%임(2023년 기준)

[그림 3-1-3]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2019년)



[그림 3-1-4]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2023년)



- 2019년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98%로 한국의 0.71%에 비해 약 2.8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장애인복지지출은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의 장애인복지지출 1.12%(2019년)비해 낮은 수준이며, OECD국가들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OECD 국가의 2023년대 중반 장애인 빈곤위험률은 평균 10.9%로 비장애인의 7.8%에 비하여 약 1.4배 높음.
  - 한국의 경우, 2021년 기준 장애인 빈곤율은 39.4%로 OECD 국가의 평균 10.9%보다 약 3.6배, 비장애인 15.1%에 비해 약 2.6배 높음

1) 장애인구

(1) 장애출현율

〈표 14-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 (2023)

(단위: %)

구 분	전체(16세이상)			16-64세 이하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벨기에	25.4	22.9	27.8	20.3	18.3	22.3
체코	26.8	24.1	29.2	17.0	15.7	18.2
덴마크	36.7	33.6	39.6	32.8	29.8	35.8
독일	28.2e	26.2e	30.1e	19.4e	18.5e	20.4e
에스토니아	32.5	29.6	35.0	23.4	23.1	23.7
아일랜드	20.5	19.1	21.9	16.0	14.9	17.1
그리스	23.1	21.1	24.9	10.0	9.7	10.3
스페인	29.6	26.8	32.2	23.2	21.7	24.7
프랑스[p]	26.8	24.3	29.1	19.9	17.5	22.1
이탈리아	20.6	18.7	22.5	10.4	10.7	10.1
라트비아	40.7	35.9	44.3	29.3	28.0	30.4
룩셈부르크	11.9	10.3	13.5	9.6	8.2	11.1
헝가리	22.3	19.2	25.1	12.7	12.0	13.4
네덜란드	32.1	29.3	34.9	25.9	23.3	28.4
오스트리아	29.7	27.6	31.7	23.9	22.9	25.0
폴란드	24.4	22.3	26.1	15.4	15.1	15.7
포르투갈	33.4	28.4	37.9	23.3	20.1	26.3
슬로베니아	21.6	21.1	22.1	16.0	16.5	15.6
슬로바키아	30.5	28.0	32.9	20.6	19.8	21.4
핀란드	34.8	30.9	38.8	28.5	24.9	32.4
스웨덴	22.6	19.6	25.7	19.4	16.3	22.6
아이슬란드('18)	26.0	20.2	32.0	23.4	17.8	29.4
노르웨이	25.4b	20.5b	30.4b	23.3b	18.0b	28.8b
스위스('22)	31.7	27.8	35.6	27.4	23.9	30.9
영국('18)	27.3	25.0	29.5	21.8	19.7	23.8
터키('22)	25.0	20.9	29.0	19.4	16.5	22.2
미국('22)	13.4(전 연령)	13.2[주3)]	13.7[주3)]	11.0(18-64세)	10.9[주3)]	11.1[주3)]
캐나다('22)	27.0(15세 이상)	23.9	29.9	23.4(15-64세)	20.2	26.6
한국('20)	5.1(전 연령)	5.9[주6)]	4.3[주6)]	-	-	-
일본	7.6	-	-	23.6[주7)]	-	-
호주('22)	21.4(전 연령)	21.0	21.8	-	-	-
OECD-31	26.5	24.3	29.7	20.4	18.7	22.4

주: 1) OECD평균은 31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 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 호주 : 활동 및 핵심활동제한(의사소통, 이동, 자기관리) 및 참여제한(학교 또는 고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이 있는 사람
- 미국 : 듣기, 보기, 집중 및 기억/의사결정(인지), 걷거나 계단 오르기(보행), 옷 입거나 목욕하기(자기관리), 병원 및 쇼핑(자립생활)의 어려움 등에 한 가지 이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한국 : 신체나 정신상에 이상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등록 장애인과 15개 법정장애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추가등록이 가능한 장애인을 의미함),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포함
- 캐나다 :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보기, 듣기, 걷거나 계단 사용(이동)/손 및 손가락 사용, 허리 굽히기 및 물건집기 등, 학습, 발달, 인지, 기억, 통증, 정서적/ 정신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예상되어야 함)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의 빈도가 '때때로', '자주', '항상' 있으며, 일상생활의 제한의 난이도 정도가 '어려움', '할 수 없음'과 결합되어야 함)

- 일본 : 신체장애인(재가, 시설 포함-고령자 시설입소자 제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뇌전증과 알츠하이머 포함)을 의미함

3) 각 나라별로 출현율 측정 기준년도는 다음과 같음
   - 유럽국가 : 2023년 기준 (2024.07.27.인출).
     • 스위스, 터키: 2022년 자료, 아이슬란드: 2018년 자료, 영국: 2018년 자료 (2024.07.27.인출).
   - 미국: 전 연령 및 18-64세 2023년 (2023.09.15.인출).
   - 한국: 전 연령 2020년
   - 호주: 전 연령 및 15-64세. 2018년 자료 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3,
   - 캐나다: 15세 이상, Statistics Canada,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22.
4) 장애출현율 = 장애인 인구/전체 인구 * 100
5) 캐나다, 한국, 호주의 경우 연령별 공표 단위가 상이하여 별도 기재함
6) 한국의 경우, 성별 장애출현율은 시설 거주 장애인은 제외한, 재가 장애인임
7) 일본: 18세 이상-65세 미만, 2016년
8) p: 잠정치

자료: 1)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다운로드일: 2024-07-27)
2) 호주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2
3) 캐나다 - Statistics Canada,「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22」, 2023
4) 한국 - 보건복지부,「2020 장애인실태조사」, 2021
5) 미국 - U.S. Census Bureau. "Disability Characteristics."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1-Year Estimates Subject Tables, Table S1810, 2022, https://data.census.gov/table/ACSST1Y2022.S1810?q=disability by sex. 다운로드일: 2024-08-20
6) 일본 - 내각부,「2021 障碍者白書」, 2021.

- 2023년 OECD 국가(31개 국가) 장애인 출현율은 평균 26.5%이며, 한국의 장애인 출현율(2020년 기준)은 5.1%임
• 한국(5.1%)과 일본(7.6%)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출현율을 보임

한국의 2020년 장애인 출현율

- 한국의 2020년 장애인 출현율(재가+시설 장애인 포함)은 5.1%로 2017년 5.39%, 2014년 5.6%, 2011년 5.6%에 비해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전체 연령 기준).
  • 인구 증가폭보다 장애인 증가율이 낮으며,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교통사고의 감소 등 장애의 후천적 원인 발병의 감소에 따라 감소추이를 보임(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성별 장애인 출현율은(재가 장애인 기준) 남성 5.9%, 여성 4.3%임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등록 장애인DB를 모집단으로 하여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출현율은 제시되지 않음(장애인실태조사, 2020)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비교 시 주의사항

- 장애인 출현율은 국가별 장애정의 및 조사된 장애측면(손상 중심 또는 활동 및 참여제한 중심 등),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목적, 자연재해,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의 추세, 전쟁 및 폭력 사태, 인구학적 노인 증가, 경제 및 빈곤, 접근 가능한 환경 부재, 교육 및 건강상의 기회 부족, 문화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국가별 장애출현율 단순 비교 시 유의해야 함(WHO & World Bank, 2011; Al Ju'beh, 2017; Thompson, 2017).

〈표 14-1-2〉 OECD 국가 연령별 장애인 출현율 (2023)

(단위: %)

구 분	65세 이상	16-24	25-34	35-44	45-64	65-74	75세 이상
벨기에	42.1	8.5	12.6	17.7	29.6	34.9	51.1
체코	56.1	6.3	9.4	13.4	25.5	45.6	70.8
덴마크	48.3	24.8	26.8	29.7	40.6	44.1	53.6
독일	54.7e	7.1e	10.2e	14.2e	30.0e	46.1e	64.3e
에스토니아	59.2	12.6	13.1	16.8	35.6	50.8	69.4
아일랜드	40.1	10.5	11.9	12.3	22.6	33.6	49.3
그리스	58.9	2.5	4.6	7.5	15.3	42.1	75.5
스페인	50.5	9.5	16.5	20.6	31.1	40.7	61.2
프랑스[p]	45.7	8.9	12.7	16.8	28.8	37.0	55.0
이탈리아	47.8	3.6	6.9	6.8	14.9	33.3	61.6
라트비아	72.2	13.2	17.0	21.0	41.7	63.0	82.9
룩셈부르크	23.3	2.7	5.0	7.1	15.7	18.6	33.3
헝가리	53.3	3.5	4.2	7.9	20.2	45.5	65.6
네덜란드	52.2	13.2	17.0	24.6	36.1	47.1	58.7
오스트리아	50.9	13.9	14.0	18.7	33.9	43.6	60.3
폴란드	49.8	6.9	8.3	12.4	22.1	40.4	65.8
포르투갈	59.2	11.9	14.1	18.5	32.3	49.6	69.3
슬로베니아	39.8	4.6	6.9	11.8	25.4	33.2	49.9
슬로바키아	67.5	6.6	10.1	13.0	34.5	59.2	85.1
핀란드	51.3	23.1	25.5	22.5	35.2	43.1	60.8
스웨덴	32.2	17.8	19.1	15.8	22.0	25.7	38.6
아이슬란드('18)	38.1	20.7	19.2	21.1	28.7	32.6	45.7
노르웨이	32.8b	14.1e	15.2b	22.1b	32.2b	32.1b	33.7b
스위스('22)	47.1	22.3	21.2	24.5	33.6	40.3	55.5
영국('18)	45.5	16.1	16.2	17.8	28.5	37.5	55.3
터키('22)	62.2	6.0	10.1	17.0	34.6	55.9	74.2
미국	33.1	8.3(18-34세)[주4]			12.6	24.3	45.9
캐나다('22)	40.4	20.1[주5]	20.5		27.7	35.0	47.8
호주('18)	49.7	9.3[주5]	7.2	9.9	19.8	39.1	63.7
OECD-30(28[주2])	48.8	11.2	13.2	16.2	28.3	40.6	59.5

주: 1)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 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2) OECD평균은 30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세부 연령별 평균은 미국, 캐나다는 제외한 27개국 단순 평균함
3) (P)는 잠정치를 의미함
4) 미국: 18-34세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다운로드일: 2024-08-20)
https://data.census.gov/table?q=disability: ACS 1-Year Supplemental Estimates Subject Tables
5) 캐나다: Statistics Canada,「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22」, 2023
호주: 15-24세-2018년 자료(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3),
유럽국가 : 연령은 16세 이상, 2023년 기준(2024.7.27.인출).
• 스위스, 터키(2022년) 자료임
• 아이슬란드, 영국: 2018년 자료
4) 장애출현율 = 장애인 인구/전체 인구 * 100
5) 캐나다, 미국의 경우 연령별 공표 단위가 상이하여 별도 표시하였음

자료: 1)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24-07-27)
2) 호주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3

3) 캐나다 - Statistics Canada,「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22」, 2023
4) 미국 -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https://data.census.gov/table?q=disability: ACS 1-Year Supplemental Estimates Subject Tables

- OECD 국가(28개 국가)의 연령별 장애출현율은 16-24세 11.2%, 25-34세 13.2%, 35-44세 16.2%, 45-64세 28.3%, 65-74세 40.6%, 75세 이상 59.5%로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출현율이 높음

미국, 캐나다, 호주 연령별 장애출현율

- 미국은 2022년 18-34세 8.3%, 35-64세 12.6%, 65-74세 24.3%, 75세 이상 45.9% 임
  캐나다는 2022년 15-24세 20.1%, 25-44세 20.5%, 45-64세 27.7%, 65세-74세 35.0%, 75세 이상 47.8% 임
  호주는 2018년 15-24세 9.3%, 25-34세 7.2%, 35-44세 9.9%, 45-64세 19.8%, 65-74세 39.1%, 75세 이상 63.7% 임

※ 참고자료
- 미국 :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 캐나다 : Statistics Canada,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22, 2023
  호주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3

2) 교육

(1)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표 14-2-1〉 OECD 국가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2023): 16-64세

(단위: %)

구 분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
벨기에	32.9	21.8	14.1
체코	19.7	19.0	10.6
덴마크	38.0	38.3	25.4
독일	23.0e	21.3e	13.7e
에스토니아	26.9	26.1	17.5
아일랜드	28.8	15.5	11.8
그리스	16.5	8.8	7.4
스페인	28.3	22.2	18.0
프랑스P	28.3	21.2	13.0
이탈리아	15.0	8.7	6.3
라트비아	29.2	34.1	23.0
리투아니아	22.8	20.9	10.7
룩셈부르크	15.8	11.6	5.3
헝가리	21.5	13.1	5.4
네덜란드	33.7	27.5	20.9
오스트리아	31.6	26.7	13.1
폴란드	25.1	17.2	9.0
포르투갈	32.3	17.7	16.1
슬로베니아	23.6	18.9	9.1
슬로바키아	21.7	22.5	15.1
핀란드	31.0	32.0	22.3
스웨덴	25.5	20.8	13.6
아이슬란드('18)	27.3	23.9	20.4
노르웨이	28.8b	25.2b	18.0b
스위스('22)	34.9	28.7	23.8
영국('18)	34.8	22.4	17.0
터키('22)	25.8	13.2	9.7
구분	무학·초등이하	중·고등	대학이상
한국(전 연령)	35.3	47.3	17.4
OECD-28	26.8	21.3	14.3

주: 1)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 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2) OECD평균은 28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3)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는 각 학력수준별 졸업 인구 중 장애인 인구 비율임
4) 아이슬란드, 영국: 2018년 자료, 터키: 2022년 자료 (2024-7-22 인출)
5) 한국: 16-64세 기준임
6) 한국: 2023년 자료(장애인실태조사 2024). 전체 장애 인구 기준.

자료: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HLTH_SILC_07, 다운로드일 2024-07-22)

- OECD 국가의 2023년 근로가능연령대(16-64세) 학력 수준별 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ISCED 0-2) 졸업 인구 중 26.8%, 중등교육(ISCED levels 3~4)은 21.3%, 고등교육(ISCED levels 5~8)은 중 14.3%로 나타남
  -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장애인의 비율은 낮아지는 편임

※ OECD국가는 학력수준을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연결할 수 있음

(2) 청년장애인(16-29세) 교육수준별 인구

〈표 14-2-2〉 OECD 국가 청년장애인 교육수준별 인구(2023년): 16-29세 이하

(단위: %)

구 분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
벨기에	14.4	8.8	7.7
체코	8.4	6.7	8.5
덴마크	22.5	31.9	21.4
독일	9.2e	7.9e	6.0e
에스토니아	13.8	13.1	11.3
아일랜드	16.6	9.9	10.0
그리스	5.0	2.5	1.8
스페인	13.0	10.5	9.0
프랑스P	11.4	9.9	8.3
이탈리아	5.6	3.9	3.9
라트비아	15.4	11.5	17.7
리투아니아	10.6	6.6	8.6
룩셈부르크	3.3	3.1	2.7
헝가리	6.3	3.3	1.8
네덜란드	14.4	14.8	11.8
오스트리아	13.1	17.0	9.3
폴란드	10.9	7.0	6.9
포르투갈	18.1	10.5	9.8
슬로베니아	7.8	5.5	4.2
슬로바키아	6.9	8.4	7.1
핀란드	25.5	27.1	23.4
스웨덴	18.0	19.3	16.3
아이슬란드('18)	23.0	20.0	16.2
노르웨이	14.5b	17.0b	11.4b
스위스('22)	28.9	19.7	17.3
영국('18)	25.4	16.3	12.9
터키('22)	9.3	5.8	4.6
OECD-27	13.9	11.7	10.1

주: 1)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 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2) OECD평균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3) 16-29세 기준임
4)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는 각 학력수준별 졸업 인구 중 장애인 인구 비율임
4) 아이슬란드, 영국: 2018년 자료, 스위스, 터키: 2022년 자료 (2024-7-22 인출)

자료: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다운로드일 2024-07-22)

- OECD 국가의 2023년 16-29세 이하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초등 졸업 이하(ISCED levels 0-2)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13.9%, 중등 교육 11.7%, 고등교육 10.1%임
  -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장애인 비율이 낮아지는 편임

OECD국가는 학력수준을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연결할 수 있음

3) 고용

(1) 고용률

〈표 14-3-1〉 OECD 국가 장애인 고용률(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벨기에	40.7	45.0	36.6	66.4	71.7	61.0
체코	38.6	43.3	34.2	68.5	77.1	59.6
덴마크	46.7	49.5	44.5	78.1	79.8	76.3
독일	51.5	55.3	47.4	72.1	77.7	66.7
에스토니아	49.5	45.7	52.5	68.6	71.8	65.6
아일랜드	29.8	31.8	27.7	60.9	64.6	57.1
그리스	35.5	44.1	28.6	58.5	69.3	47.5
스페인	44.3	50.8	39.3	60.5	66.3	54.5
프랑스	56.2	60.8	52.7	66.1	71.1	60.9
이탈리아	45.6	54.7	38.1	58.9	69.6	48.2
룩셈부르크	62.5	69.7	56.5	64.9	72.1	57.0
헝가리	23.7	24.0	23.4	61.1	66.9	55.3
네덜란드	42.7	47.0	39.6	80.1	84.3	75.7
오스트리아	60.3	65.8	54.9	75.6	81.2	70.1
폴란드	33.9	36.8	31.3	63.9	71.1	56.6
포르투갈	51.0	54.6	48.3	67.8	70.9	64.5
슬로베니아	47.0	49.9	44.3	68.4	71.4	65.3
슬로바키아	31.9	34.5	29.5	62.6	69.6	55.5
핀란드	60.8	59.9	61.6	73.2	75.4	70.9
스웨덴	66.2	69.0	64.3	75.7	77.4	73.8
영국	47.6	50.5	45.1	75.4	80.4	70.3
아이슬란드	66.9	69.5	65.0	84.0	83.7	84.3
스위스	69.0	74.4	64.9	81.6	87.3	75.4
터키	41.1	61.3	26.5	51.0	71.2	29.5
한국[주4)]	34.0	42.9	22.0	-	-	-
OECD-25	47.7	52.2	43.6	68.5	74.2	62.6

주: 1) OECD평균은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LFS(2011) 및 한국의 연령 기준은 15-64세임
3)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2011년에 조사된 LFS(2011)자료로 장애정의는 기본적인 활동들의 어려움 중 하나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기본적인 활동에는 보기(안경을 쓰고도 보는데 어려움), 듣기(보청기를 사용함에도 듣는데 어려움), 걷거나 계단 오르기, 앉거나 서기, 기억하고/집중하기, 의사소통(남의 말을 이해하고, 이해되어짐), 손을 내밀거나 뻗는 것, 구부리는 것, 물건을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잡고/쥐고/돌리는 것 등임
- 한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자료이며, 동 조사에서의 장애는 2023년 5월 15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의미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4),「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5)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이하) 중 장애인 취업자 비율임

자료: 1) Eurostat,「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24-07-22)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4),「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47.7%로 비장애인 68.5%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34.0% 이며, 남성 42.9%, 여성 22.0%임(2023년 기준)
-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인 국가들은 스위스 69.0%, 아이슬란드 66.9%, 스웨덴 66.2% 등임
  ※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23)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15-64세 이하)은 69.2%, 남성 76.9%, 여성 61.4% 임

(2)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

〈표 14-3-2〉 OECD 국가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벨기에	65.2	34.8	76.0	24.0
체코	86.4	13.6	96.0	4.0
덴마크	62.7	37.3	75.6	24.4
독일	68.5	31.5	75.0	25.0
에스토니아	88.2	11.8	91.3	8.7
아일랜드	69.3	30.7	77.3	22.7
그리스	92.2	7.8	93.9	6.1
스페인	83.2	16.8	85.6	14.4
프랑스	75.6	24.4	83.7	16.3
이탈리아	81.3	18.7	84.8	15.2
룩셈부르크	76.7	22.6	83.1	16.7
헝가리	74.1	25.9	94.7	5.3
네덜란드	39.3	60.7	52.6	47.4
오스트리아	77.0	23.0	77.0	23.0
폴란드	83.8	16.2	93.5	6.5
포르투갈	82.0	18.0	91.5	8.5
슬로베니아	85.1	14.9	91.8	8.2
슬로바키아	87.3	12.7	96.4	3.6
핀란드	83.0	16.9	86.7	13.2
스웨덴	65.0	35.0	77.2	22.8
영국	68.4	31.2	75.4	24.4
아이슬란드	74.9	24.8	82.3	17.7
스위스	58.6	40.8	69.6	30.1
터키	79.9	20.1	89.9	10.1
한국[주4)]	57.8	42.2	-	-
OECD-24	75.2	24.7	83.4	16.6

주: 1) 24개국의 장애인 취업자 중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며, OECD-24 평균은 24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본 자료는 '2011 EU Labour Force Survey'의 원자료 수치를 가공한 것임. 원자료 수치는 무응답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3) LFS(2011) 연령 기준은 15-64세임
4) 한국의 근로형태는 주 36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전일제, 주36 시간미만 근무의 경우 시간제로 구분함

자료: 1)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24-07-22)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4),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 취업자 중 전일제 비율은 평균 75.3%로 비장애인 83.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OECD국가는 취업 장애인 중 100명중 24.6명이, 비장애인은 100명 중 약 16.6명이 평균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함
- 2023년 한국 임금근로 장애인(15-64세) 중 전일제 근로는 57.8%, 시간제 근로는 42.2%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4)

〈표 14-3-3〉 OECD 국가 성별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벨기에	82.6	17.4	44.5	55.5
체코	92.2	7.8	79.4	20.6
덴마크	77.8	22.2	50.0	50.0
독일	84.8	15.2	48.5	51.5
에스토니아	95.0	-	83.4	16.6
아일랜드	81.0	19.0	55.5	44.5
그리스	95.5	4.5	88.1	11.9
스페인	94.4	5.6	72.1	27.9
프랑스	90.8	9.2	62.5	37.5
이탈리아	91.1	8.9	69.9	30.1
룩셈부르크	94.5	5.0	58.5	40.7
헝가리	77.0	23.0	71.5	28.5
네덜란드	63.8	36.2	17.5	82.5
오스트리아	92.3	7.7	59.1	40.9
폴란드	85.5	14.5	82.1	17.9
포르투갈	87.0	13.0	77.7	22.3
슬로베니아	89.4	10.6	80.6	19.4
슬로바키아	90.6	9.4	84.0	16.0
핀란드	87.4	12.5	79.4	20.5
스웨덴	82.0	18.0	52.6	47.4
영국	83.6	15.9	53.9	45.7
아이슬란드	91.1	-	62.4	37.6
스위스	83.0	16.6	36.8	62.4
터키	89.8	10.2	63.3	36.7
OECD-24	86.8	13.7	63.9	36.0

주: 1) 24개국의 취업자 중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며, OECD-24 평균은 24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본 자료는 '2011 EU Labour Force Survey'의 원자료 수치를 가공한 것임. 원자료 수치는 무응답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3) LFS(2011) 연령 기준은 15-64세임

자료: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24-07-22)

- OECD 국가 2011년 남성 장애인 취업자 중 전일제 비율은 평균 86.8%, 여성 장애인은 63.9%로 여성장애인의 전일제 비율이 낮음
  • OECD 국가의 남성 장애인 취업자 중 시간제 비율은 평균 13.7%, 여성 장애인은 36.0%로 여성장애인의 시간제 비율이 높음

(3) 실업률

〈표 14-3-4〉 OECD 국가 장애인 실업률(15-64세, 2022)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벨기에	6.1	6.4	5.8	5.6	5.9	5.2
체코	2.2	1.7u	2.7	2.3	1.8	2.8
덴마크	6.2	7.2	5.3	4.0	4.0	4.2
독일	5.4	6.0	4.7	2.8	2.9	2.6
에스토니아	10.1	11.7	8.6	5.1	5.4	4.8
아일랜드	8.9	9.8u	8.0u	4.3	4.1	4.5
그리스	22.7	20.0u	26.0u	12.4	9.2	16.5
스페인	22.6d	22.9d	22.3d	12.4d	10.7d	14.3d
프랑스	10.5d	11.6d	9.5d	6.9d	7.0d	6.8d
이탈리아	12.8	12.9	12.6	8.0	7.0	9.3
룩셈부르크	5.6	6.4	4.7	4.3	4.0	4.7
헝가리	9.5	11.9	7.2u	3.5	3.6	3.4
네덜란드	5.6	5.4	5.7	2.9	2.8	3.1
오스트리아	8.4	8.5	8.3	4.2	4.4	4.0
폴란드	6.3	6.7	5.9u	2.8	2.8	2.8
포르투갈	8.8	8.0	9.4	6.0	5.6	6.4
슬로베니아	9.7	10.9u	8.5u	3.6	3.3	4.0
슬로바키아	8.6	9.6	7.6u	6.0	5.7	6.4
핀란드	9.8	12.3	7.8	5.7	5.8	5.6
스웨덴	12.0	13.0	11.3	7.1	6.6	7.5
영국	6.3			3.0		
아이슬란드	5.5	6.9	4.3	3.6	3.9	3.3
스위스	6.8	6.9	6.7	3.8	3.5	4.1
터키	10.8	11.3	10.1	10.6	9.0	13.9
한국('23)주3)	3.9	4.0	3.7			
OECD-25	8.35	8.58	7.09	5.07	4.82	5.67

주: 1) 25개국의 실업률을 의미하며, OECD평균은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p.123」 결과임
3) LFS(2011) 및 한국 연령 기준은 15-64세임
4) 장애인 실업률 =(실업자 수/15-64세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1) Eurostat, 「Unemployment rates by level of disability (activity limitation)」, lfsa_urgaeddl, 검색일 2024-07-22)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4),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2023년 OECD 국가의 장애인 평균 실업률은 8.35%로 비장애인 4.94%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2023년 한국의 장애인 실업률은 3.9% 이며, 남성 4.0%, 여성 3.7%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4)
-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장애인 실업률을 보인 국가들은 스페인 23.3%, 헝가리 19.4% 등임
  ※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23)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15-64세 이하)은 2.7%, 남성 2.7%, 여성 2.7% 임.

4) 재정

(1)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표 14-4-1〉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호주	1.73	2.36	2.56	2.27	2.33	2.39	2.44	2.50	2.56	2.54	2.35	2.25	2.04	2.88	-	-
오스트리아	2.14	2.44	2.41	2.22	2.26	2.25	2.26	2.27	2.25	2.18	2.11	2.05	2.00	1.99	-	-
벨기에	2.60	2.92	2.01	2.10	2.52	2.58	2.68	2.77	2.85	2.89	2.92	2.99	3.10	3.20	-	-
캐나다	1.14	1.13	0.94	0.90	0.88	0.84	0.82	0.79	0.77	0.76	0.74	0.73	0.72	0.74	0.76	-
칠레	0.87	0.88	0.80	0.71	0.81	0.77	0.74	0.72	0.70	0.74	0.75	0.75	0.74	0.76	1.01	0.78
콜롬비아	-	-	-	-	0.05	0.05	0.05	0.05	0.06	0.05	0.07	0.08	0.09	0.08	0.10	0.09
코스타리카	-	-	-	-	-	0.05	0.06	0.06	0.06	0.07	0.07	0.33	0.34	0.44	0.44	-
체코	2.16	2.22	2.42	2.20	1.97	1.91	1.83	1.83	1.75	1.73	1.74	1.71	1.76	1.86	-	-
덴마크	3.67	4.11	3.81	4.43	5.90	5.83	5.81	5.59	5.41	5.21	4.94	4.86	4.47	4.49	-	-
에스토니아	-	-	1.54	1.75	2.29	2.16	2.12	2.16	2.14	2.25	2.32	2.28	2.30	2.33	-	-
핀란드	4.15	4.93	3.68	3.66	3.88	3.77	3.81	3.82	3.78	3.59	3.41	3.20	3.17	3.16	-	-
프랑스	2.05	2.06	1.68	1.80	1.62	1.63	1.66	1.66	1.67	1.68	1.69	1.70	1.70	1.70	1.95	-
독일	1.95	2.23	2.11	1.95	1.98	1.93	1.98	2.04	2.04	2.09	2.11	2.24	2.30	2.37	-	-
그리스	1.19	0.79	1.43	1.42	1.85	2.01	2.00	1.86	1.86	1.33	1.35	1.27	1.23	1.28	-	-
헝가리	-	-	2.61	2.79	2.36	2.12	2.01	1.91	1.91	1.84	1.73	1.63	1.55	1.50	-	-
아이슬란드	1.28	1.79	2.16	2.58	2.41	2.55	2.67	2.72	2.83	2.68	2.65	2.87	2.93	3.12	-	-
아일랜드	1.72	1.89	1.15	1.45	2.37	2.22	2.11	2.10	1.91	1.47	1.48	1.43	1.39	1.33	-	-
이스라엘	-	1.75	2.05	2.38	2.46	2.43	2.45	2.43	2.48	2.52	2.57	2.70	2.85	2.89	3.19	2.94
이탈리아	1.89	1.47	1.33	1.48	1.68	1.60	1.74	1.80	1.81	1.79	1.76	1.73	1.73	1.75	-	-
일본	0.54	0.63	0.68	0.66	0.89	0.93	0.96	0.97	0.97	1.02	1.04	1.06	1.09	1.12	1.22	-
한국	0.24	0.30	0.32	0.52	0.50	0.52	0.55	0.54	0.53	0.56	0.56	0.60	0.64	0.71	0.82	-
라트비아	-	0.00	1.54	1.35	2.06	1.87	1.73	1.80	1.88	2.07	2.14	2.14	2.15	2.26	-	-
리투아니아	-	-	1.87	1.77	2.24	1.94	1.90	1.81	1.82	2.00	2.04	2.05	2.14	2.12	-	-
룩셈부르크	2.88	3.07	3.00	3.32	2.68	2.68	2.71	2.70	2.61	2.51	2.37	2.43	2.41	2.44	-	-
멕시코	0.02	0.05	0.06	0.05	0.05	0.05	0.04	0.04	0.04	0.04	0.03	0.05	0.05	0.05	-	-
네덜란드	5.87	4.67	3.30	3.31	3.24	3.18	3.19	3.07	2.95	3.38	3.33	2.86	2.86	2.84	-	-
뉴질랜드	2.79	2.61	2.61	2.94	2.52	2.42	2.40	2.51	2.49	2.42	2.37	2.33	2.35	2.36	2.65	2.78
노르웨이	4.63	4.56	4.56	4.30	4.18	3.80	3.72	3.73	3.84	4.32	4.51	4.40	4.26	4.49	-	-
폴란드	3.28	5.54	3.44	2.90	2.46	2.40	2.37	2.42	2.35	2.35	2.33	2.23	2.07	1.95	-	-
포르투갈	2.30	2.31	2.24	2.11	1.93	1.94	1.80	1.90	1.81	1.78	1.73	1.70	1.68	1.74	-	-
슬로바키아	-	1.98	2.21	1.44	1.80	1.82	1.87	1.88	1.87	1.83	1.88	1.93	1.85	1.88	-	-
슬로베니아	-	-	2.59	2.37	2.26	2.19	2.12	2.07	1.99	1.95	1.88	1.78	1.81	1.90	-	-
스페인	2.22	2.41	2.32	2.49	2.51	2.48	2.41	2.42	2.44	2.41	2.41	2.41	2.37	2.53	-	-
스웨덴	5.17	4.68	4.93	5.22	4.08	3.97	3.84	3.93	3.87	3.80	3.69	3.57	3.51	3.37	-	-
스위스	2.35	2.83	2.85	3.17	2.76	2.82	2.70	2.80	2.61	2.68	2.70	2.76	2.70	2.74	-	-
터키	0.17	0.18	0.21	0.21	0.37	0.40	0.45	0.44	0.45	0.43	0.51	0.48	0.45	0.48	-	-
영국	2.00	2.51	2.19	2.08	1.96	1.97	1.96	1.91	1.80	1.81	1.80	1.84	1.70	1.33	1.33	-
미국	0.97	0.97	0.89	1.01	1.20	1.20	1.22	1.21	1.17	1.14	1.10	1.06	1.01	0.98	0.98	-
OECD - Total	2.14	2.20	2.02	2.04	2.09	2.04	2.03	2.03	2.01	2.00	1.98	1.96	1.93	1.98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표 14-4-2〉와 현물급여(benefits in kind)〈표 14-4-3〉를 합한 수치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 2019년 OECD 국가의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98%로 한국의 0.71%에 비해 약 2.8배 이상 높은 수준임
  • 국가별로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3.37%), 덴마크(4.49%), 노르웨이(4.49%)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2배 수준인 반면, 멕시코(0.05%), 콜로비아(0.08%)는 매우 낮은 편임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

- OECD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ALMP(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등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 관련 복지지출을 수집하고 있음. 장애인관련 지출은 근로무능력 항목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됨. 현금급여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되며, 현물급여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가 포함됨

(2)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 지출 비율

〈표 14-4-2〉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 지출 비율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호주	1.71	2.00	2.06	1.83	1.94	1.99	2.02	2.08	2.11	2.07	1.95	1.91	1.85	1.95	-	-
오스트리아	1.93	2.21	2.14	1.89	1.81	1.81	1.81	1.80	1.77	1.70	1.63	1.57	1.52	1.48	-	-
벨기에	2.55	2.12	1.67	1.70	2.05	2.09	2.16	2.26	2.33	2.34	2.36	2.44	2.55	2.61	-	-
캐나다	1.14	1.13	0.94	0.90	0.88	0.84	0.82	0.79	0.77	0.76	0.74	0.73	0.72	0.74	0.76	-
칠레	0.70	0.69	0.79	0.70	0.81	0.76	0.74	0.71	0.69	0.73	0.74	0.75	0.74	0.75	1.00	0.77
콜롬비아	-	-	-	-	0.05	0.05	0.05	0.05	0.06	0.05	0.07	0.08	0.09	0.08	0.10	0.09
코스타리카	-	-	-	-	-	0.05	0.05	0.06	0.06	0.07	0.07	0.33	0.34	0.44	0.44	-
체코	2.16	2.07	2.23	2.04	1.88	1.81	1.73	1.73	1.65	1.65	1.65	1.61	1.66	1.76	-	-
덴마크	2.96	3.23	2.77	3.19	3.59	3.50	3.45	3.30	3.16	3.02	2.81	2.75	2.67	2.71	-	-
에스토니아	-	-	1.39	1.61	1.96	1.87	1.84	1.88	1.86	1.95	1.98	1.96	1.99	2.00	-	-
핀란드	3.75	4.21	2.96	2.80	2.83	2.67	2.63	2.59	2.50	2.37	2.21	2.07	2.00	1.94	-	-
프랑스	1.66	1.62	1.54	1.63	1.54	1.55	1.57	1.58	1.59	1.60	1.61	1.62	1.61	1.62	1.86	-
독일	1.60	1.61	1.44	1.27	1.24	1.21	1.23	1.26	1.26	1.27	1.28	1.28	1.29	1.32	-	-
그리스	1.15	0.77	1.40	1.40	1.83	2.00	1.98	1.84	1.84	1.27	1.30	1.22	1.15	1.23	-	-
헝가리	-	-	2.37	2.56	2.14	1.92	1.81	1.70	1.60	1.61	1.56	1.46	1.37	1.33	-	-
아이슬란드	0.76	1.14	1.32	1.59	1.71	1.85	1.87	1.89	1.93	1.82	1.92	2.06	2.07	2.19	-	-
아일랜드	1.68	1.83	1.12	1.41	2.30	2.15	2.05	2.05	1.87	1.43	1.44	1.39	1.36	1.30	-	-
이스라엘	-	1.33	1.62	1.90	2.03	2.01	2.02	1.99	2.03	2.05	2.09	2.11	2.23	2.24	2.45	2.32
이탈리아	1.85	1.41	1.25	1.40	1.57	1.51	1.66	1.71	1.73	1.71	1.69	1.67	1.66	1.68	-	-
일본	0.48	0.52	0.53	0.54	0.62	0.63	0.63	0.62	0.61	0.61	0.61	0.61	0.62	0.64	0.67	-
한국	0.22	0.24	0.23	0.34	0.33	0.33	0.34	0.34	0.34	0.34	0.33	0.33	0.36	0.39	0.41	-
라트비아	-	0.00	1.23	1.12	1.79	1.58	1.45	1.51	1.55	1.70	1.77	1.79	1.78	1.89	-	-
리투아니아	-	-	1.48	1.51	1.97	1.69	1.68	1.60	1.56	1.73	1.78	1.80	1.89	1.86	-	-
룩셈부르크	2.68	2.84	2.44	2.35	1.66	1.62	1.65	1.61	1.53	1.47	1.41	1.38	1.33	1.37	-	-
멕시코	0.02	0.04	0.06	0.05	0.05	0.05	0.04	0.04	0.04	0.04	0.03	0.05	0.05	0.05	-	-
네덜란드	5.87	4.51	3.10	3.14	2.90	2.86	2.88	2.79	2.63	2.56	2.52	2.07	2.04	1.99	-	-
뉴질랜드	2.70	2.60	2.61	2.93	2.47	2.37	2.35	2.46	2.45	2.42	2.37	2.32	2.35	2.36	2.64	2.77
노르웨이	3.93	3.55	3.71	3.54	3.63	3.29	3.22	3.20	3.29	3.75	3.91	3.80	3.68	3.88	-	-
폴란드	3.06	5.26	3.41	2.71	2.28	2.22	2.18	2.23	2.16	2.15	2.14	2.09	1.96	1.86	-	-
포르투갈	2.25	2.26	2.20	2.06	1.88	1.92	1.77	1.88	1.79	1.77	1.71	1.68	1.66	1.72	-	-
슬로바키아	-	1.86	2.04	1.26	1.61	1.62	1.67	1.67	1.65	1.62	1.65	1.69	1.62	1.66	-	-
슬로베니아	-	-	2.35	2.16	2.01	1.94	1.83	1.78	1.68	1.66	1.61	1.50	1.54	1.58	-	-
스페인	2.17	2.35	2.20	2.29	2.25	2.22	2.16	2.19	2.20	2.17	2.20	2.20	2.15	2.31	-	-
스웨덴	4.75	3.45	3.38	3.47	2.21	2.05	2.06	2.07	2.04	2.00	1.94	1.81	1.72	1.63	-	-
스위스	1.97	2.24	2.20	2.41	2.18	2.23	2.11	2.21	2.04	2.07	2.08	2.15	2.08	2.13	-	-
터키	0.12	0.12	0.23	0.27	0.28	0.27	0.28	0.29	0.27	0.27	0.28	0.26	0.23	0.25	-	-
영국	1.81	2.26	1.95	1.73	1.51	1.49	1.48	1.45	1.49	1.50	1.49	1.53	1.39	1.33	1.33	-
미국	0.97	0.97	0.89	1.01	1.20	1.20	1.22	1.21	1.17	1.14	1.10	1.06	1.01	0.98	0.98	-
OECD - Total	1.99	1.92	1.72	1.71	1.71	1.66	1.64	1.64	1.61	1.59	1.58	1.56	1.53	1.56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 OECD 국가의 경우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 비율은 1990년대 1.9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9년 1.56%로 나타남
  - 한국은 2019년 0.39%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1.56%의 약 1/4 수준임
  - 한국은 1990년 0.22%에서 2005년에 약 0.34%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 0.39% 수준임

(3)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물급여 지출 비율

〈표 14-4-3〉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물급여 지출 비율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호주	0.02	0.36	0.50	0.44	0.39	0.40	0.42	0.43	0.45	0.48	0.40	0.34	0.19	0.93	-	-
오스트리아	0.21	0.23	0.27	0.33	0.45	0.45	0.45	0.47	0.48	0.48	0.48	0.48	0.48	0.51	-	-
벨기에	0.05	0.80	0.34	0.40	0.48	0.49	0.53	0.51	0.52	0.55	0.56	0.55	0.55	0.59	-	-
캐나다	-	-	-	-	-	-	-	-	-	-	-	-	-	-	-	-
칠레	0.17	0.19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콜롬비아	-	-	-	-	-	-	-	-	-	-	-	-	-	-	-	-
코스타리카	-	-	-	-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체코	-	0.15	0.18	0.16	0.10	0.09	0.10	0.10	0.10	0.09	0.09	0.09	0.10	0.10	-	-
덴마크	0.71	0.88	1.04	1.24	2.30	2.32	2.36	2.29	2.25	2.19	2.13	2.11	1.80	1.78	-	-
에스토니아	-	-	0.15	0.15	0.33	0.29	0.27	0.28	0.28	0.30	0.34	0.32	0.31	0.34	-	-
핀란드	0.40	0.73	0.73	0.86	1.06	1.10	1.17	1.23	1.28	1.22	1.20	1.13	1.17	1.22	-	-
프랑스	0.38	0.43	0.15	0.17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9	-
독일	0.35	0.62	0.67	0.69	0.74	0.72	0.75	0.78	0.78	0.82	0.84	0.97	1.01	1.06	-	-
그리스	0.04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6	0.04	0.05	0.08	0.05	-	-
헝가리	-	-	0.24	0.23	0.22	0.20	0.21	0.21	0.31	0.23	0.18	0.17	0.18	0.17	-	-
아이슬란드	0.51	0.65	0.84	0.99	0.70	0.70	0.80	0.83	0.90	0.85	0.73	0.81	0.86	0.94	-	-
아일랜드	0.04	0.06	0.03	0.04	0.07	0.07	0.06	0.06	0.05	0.03	0.04	0.03	0.03	0.03	-	-
이스라엘	-	0.42	0.42	0.48	0.43	0.42	0.43	0.44	0.45	0.47	0.48	0.59	0.62	0.65	0.74	0.62
이탈리아	0.03	0.06	0.07	0.07	0.10	0.09	0.09	0.09	0.08	0.08	0.07	0.07	0.07	0.07	-	-
일본	0.06	0.11	0.15	0.12	0.27	0.30	0.33	0.35	0.36	0.41	0.43	0.45	0.47	0.49	0.55	-
한국	0.03	0.07	0.09	0.18	0.17	0.19	0.21	0.20	0.19	0.21	0.23	0.27	0.28	0.32	0.41	-
라트비아	-	-	0.31	0.22	0.27	0.29	0.28	0.29	0.33	0.36	0.37	0.35	0.36	0.37	-	-
리투아니아	-	-	0.39	0.27	0.27	0.25	0.23	0.21	0.25	0.27	0.26	0.25	0.26	0.25	-	-
룩셈부르크	0.20	0.23	0.56	0.97	1.03	1.05	1.06	1.08	1.08	1.04	0.96	1.05	1.08	1.08	-	-
멕시코	0.00	0.01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네덜란드	0.00	0.16	0.20	0.16	0.34	0.33	0.31	0.27	0.32	0.83	0.82	0.80	0.82	0.85	-	-
뉴질랜드	0.09	0.00	0.00	0.01	0.05	0.05	0.05	0.05	0.04	0.00	0.00	0.00	0.00	0.00	0.01	0.01
노르웨이	0.70	1.01	0.85	0.76	0.55	0.51	0.49	0.53	0.55	0.57	0.60	0.60	0.58	0.61	-	-
폴란드	0.21	0.28	0.03	0.19	0.19	0.18	0.19	0.19	0.19	0.20	0.19	0.14	0.11	0.08	-	-
포르투갈	0.05	0.05	0.04	0.05	0.05	0.02	0.02	0.02	0.02	0.01	0.02	0.02	0.02	0.02	-	-
슬로바키아	-	0.12	0.16	0.18	0.20	0.20	0.20	0.21	0.22	0.22	0.23	0.24	0.23	0.22	-	-
슬로베니아	-	-	0.24	0.21	0.25	0.25	0.29	0.29	0.31	0.29	0.27	0.27	0.27	0.32	-	-
스페인	0.04	0.06	0.12	0.20	0.25	0.26	0.25	0.24	0.24	0.23	0.22	0.22	0.22	0.22	-	-
스웨덴	0.42	1.24	1.55	1.75	1.87	1.92	1.78	1.86	1.83	1.81	1.75	1.76	1.80	1.74	-	-
스위스	0.38	0.59	0.65	0.76	0.58	0.59	0.59	0.59	0.58	0.61	0.62	0.61	0.62	0.61	-	-
터키	0.05	0.07	0.01	0.01	0.15	0.20	0.23	0.23	0.23	0.22	0.23	0.22	0.22	0.23	-	-
영국	0.19	0.25	0.25	0.36	0.45	0.48	0.47	0.46	0.31	0.31	0.31	0.31	0.31	-	-	-
미국	-	-	-	-	-	-	-	-	-	-	-	-	-	-	-	-
OECD - Total	0.17	0.31	0.32	0.36	0.41	0.42	0.42	0.43	0.43	0.44	0.43	0.44	0.43	0.47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물급여 비율은 2019년 0.47%로 2014년 0.43%에 비해 0.04%p감소하였으며, 한국은 2019년 0.32%로 OECD 평균(0.47%)에 비하여 약 2/3배 수준임
  - 한국의 경우 현물급여 수준은 2010년 0.17% 2015년 0.21%로 약 0.04%p 증가하였으며, 2019년 0.32%로 증가함

※ 한국은 2011년 10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정책 대상자는 2급('13) → 3급('15)으로 점진적인 확대가 있었음

(4)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

〈표 14-4-4〉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0년)

(단위: %)

구분	2010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4	1.41	–	0.53	–	0.01	0.39	–	0.00	0.39
오스트리아	1.81	1.29	0.13	–	0.21	0.19	0.45	0.30	0.05	0.11
벨기에	2.05	1.43	–	0.03	0.57	0.02	0.48	0.42	0.03	0.03
캐나다	0.88	0.38	0.43	–	0.06	–	–	–	–	–
칠레	0.81	0.54	0.01	0.01	0.25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5	–	–	0.05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	–	–
체코	1.88	1.23	0.01	0.08	0.47	0.11	0.1	0.07	0.00	0.03
덴마크	3.59	2.22	–	0.20	1.02	0.16	2.3	1.01	0.80	0.49
에스토니아	1.96	1.19	–	–	0.26	0.50	0.33	0.28	0.05	0.00
핀란드	2.83	1.95	0.15	0.08	0.47	0.18	1.06	0.36	0.29	0.40
프랑스	1.54	0.91	0.00	–	0.50	0.13	0.08	0.01	0.00	0.07
독일	1.24	0.03	0.07	0.02	0.30	0.82	0.74	0.50	0.22	0.03
그리스	1.83	1.27	–	–	0.21	0.34	0.02	–	0.01	0.01
헝가리	2.14	1.08	–	–	0.51	0.56	0.22	0.12	0.05	0.05
아이슬란드	1.71	1.67	–	–	0.03	0.01	0.7	0.46	0.01	0.23
아일랜드	2.3	1.10	–	–	0.81	0.38	0.07	–	–	0.07
이스라엘	2.03	1.45	0.28	–	–	0.30	0.43	0.01	0.16	0.25
이탈리아	1.57	0.55	–	–	0.17	0.86	0.1	0.04	0.00	0.05
일본	0.62	0.38	0.09	0.02	0.07	0.06	0.27	0.23	0.00	0.04
한국	0.33	0.11	0.12	0.06	–	0.04	0.17	0.01	0.00	0.16
라트비아	1.79	0.93	–	–	0.53	0.34	0.27	0.18	0.02	0.07
리투아니아	1.97	1.28	0.15	0.04	0.39	0.12	0.27	0.11	0.03	0.13
룩셈부르크	1.66	0.95	0.24	–	0.27	0.20	1.03	1.03	–	–
멕시코	0.05	0.01	0.03	–	–	0.00	0.01	–	–	0.01
네덜란드	2.9	1.86	–	–	0.81	0.23	0.34	–	0.34	0.00
뉴질랜드	2.47	0.07	–	–	–	2.40	0.05	0.00	0.00	0.05
노르웨이	3.63	2.13	0.00	–	1.33	0.17	0.55	0.19	0.26	0.10
폴란드	2.28	1.15	0.04	–	0.71	0.38	0.19	0.17	0.02	–
포르투갈	1.88	1.56	–	–	0.30	0.02	0.05	0.00	0.04	0.01
슬로바키아	1.61	0.98	–	–	0.39	0.24	0.2	0.19	0.00	0.00
슬로베니아	2.01	0.77	0.00	0.00	0.97	0.27	0.25	0.19	0.06	0.00
스페인	2.25	1.24	–	0.90	0.00	0.12	0.25	0.15	0.08	0.03
스웨덴	2.21	1.51	0.10	0.00	0.61	0.00	1.87	1.41	0.16	0.30
스위스	2.18	1.00	0.20	0.26	0.61	0.11	0.58	0.47	0.08	0.04
터키	0.28	0.21	0.03	–	0.04	0.01	0.15	0.00	0.14	0.01
영국	1.51	1.35	0.00	–	0.13	0.03	0.45	0.24	0.02	0.20
미국	1.2	0.83	0.05	–	0.03	0.29	–	–	–	–
OECD-Total	1.71	1.03	0.10	0.15	0.42	0.27	0.41	0.28	0.09	0.10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 2010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71%로 장애연금 1.03% 기타상병보조금 0.42%가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1%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8%의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3%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2%, 장애연금 0.11%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17%로 기타 현물급여 0.17%, 거주 돌봄 서비스가 0.01%로 나타남

〈표 14-4-5〉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1년)

(단위: %)

구분	2011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9	1.45	–	0.52	–	0.02	0.4	–	0.00	0.40
오스트리아	1.81	1.29	0.12	–	0.21	0.19	0.45	0.30	0.05	0.10
벨기에	2.09	1.46	–	0.02	0.60	0.02	0.49	0.43	0.03	0.03
캐나다	0.84	0.37	0.41	–	0.06	–	–	–	–	–
칠레	0.76	0.50	0.01	0.01	0.24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5	–	–	0.05	–	–	–	–	–	–
코스타리카	0.05	0.03	–	–	–	0.02	0	–	–	0.00
체코	1.81	1.20	0.01	0.08	0.42	0.11	0.09	0.06	0.00	0.03
덴마크	3.5	2.25	–	0.12	0.99	0.14	2.32	0.97	0.87	0.49
에스토니아	1.87	1.13	–	–	0.27	0.47	0.29	0.24	0.05	0.00
핀란드	2.67	1.82	0.14	0.08	0.46	0.16	1.1	0.37	0.30	0.43
프랑스	1.55	0.93	0.00	–	0.50	0.12	0.08	0.01	–	0.07
독일	1.21	0.03	0.06	0.02	0.31	0.79	0.72	0.49	0.22	0.02
그리스	2	1.39	–	–	0.21	0.40	0.02	–	0.01	0.01
헝가리	1.92	0.97	–	–	0.41	0.54	0.2	0.10	0.06	0.05
아이슬란드	1.85	1.80	–	–	0.03	0.01	0.7	0.60	0.01	0.09
아일랜드	2.15	1.04	–	–	0.73	0.38	0.07	–	–	0.07
이스라엘	2.01	1.42	0.28	–	–	0.31	0.42	0.01	0.16	0.25
이탈리아	1.51	0.51	–	–	0.17	0.83	0.09	0.04	0.01	0.05
일본	0.63	0.39	0.09	0.02	0.07	0.06	0.3	0.25	0.00	0.05
한국	0.33	0.11	0.13	0.05	–	0.04	0.19	0.02	0.01	0.17
라트비아	1.58	0.84	–	–	0.38	0.36	0.29	0.19	0.02	0.08
리투아니아	1.69	1.06	0.13	0.04	0.37	0.09	0.25	0.10	0.03	0.12
룩셈부르크	1.62	0.90	0.24	–	0.28	0.21	1.05	1.05	–	–
멕시코	0.05	0.01	0.03	–	–	0.00	0	–	–	0.00
네덜란드	2.86	1.83	–	–	0.81	0.22	0.33	–	0.32	0.00
뉴질랜드	2.37	0.06	–	–	–	2.31	0.05	0.00	0.00	0.05
노르웨이	3.29	2.03	0.00	–	1.11	0.16	0.51	0.19	0.22	0.10
폴란드	2.22	1.08	0.03	–	0.69	0.42	0.18	0.16	0.02	–
포르투갈	1.92	1.59	–	–	0.31	0.02	0.02	0.00	0.01	0.01
슬로바키아	1.62	0.99	–	–	0.39	0.24	0.2	0.20	0.00	0.00
슬로베니아	1.94	0.74	0.00	0.00	0.93	0.27	0.25	0.19	0.06	0.00
스페인	2.22	1.27	–	0.84	0.00	0.11	0.26	0.15	0.08	0.03
스웨덴	2.05	1.30	0.09	0.00	0.66	0.00	1.92	1.45	0.16	0.31
스위스	2.23	0.99	0.19	0.26	0.68	0.11	0.59	0.47	0.08	0.04
터키	0.27	0.20	0.02	–	0.04	0.01	0.2	0.19	0.00	0.00
영국	1.49	1.27	0.00	–	0.18	0.04	0.48	0.23	0.01	0.24
미국	1.2	0.83	0.05	–	0.04	0.29	–	–	–	–
OECD-Total	1.66	1.00	0.10	0.14	0.40	0.26	0.42	0.29	0.09	0.10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 2011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6%로 장애연금 1.00%, 기타상병보조금 0.40%가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2%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9%의 가장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3%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3%, 장애연금 0.1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19%로 기타 현물급여 0.17%,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2%로 나타남

〈표 14-4-6〉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2년)

(단위: %)

구분	2012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2.02	1.48	–	0.52	–	0.02	0.42	–	0.00	0.42
오스트리아	1.81	1.27	0.12	–	0.21	0.20	0.45	0.30	0.05	0.10
벨기에	2.16	1.52	–	0.02	0.61	0.02	0.53	0.46	0.03	0.03
캐나다	0.82	0.36	0.40	–	0.07	–	–	–	–	–
칠레	0.74	0.48	0.01	0.01	0.23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5	–	–	0.05	–	–	–	–	–	–
코스타리카	0.05	0.03	–	–	–	0.02	0.00	–	–	0.00
체코	1.73	1.17	0.01	0.08	0.40	0.06	0.10	0.07	0.00	0.03
덴마크	3.45	2.23	–	0.16	0.94	0.13	2.36	0.99	0.86	0.51
에스토니아	1.84	1.13	–	–	0.25	0.46	0.27	0.23	0.05	0.00
핀란드	2.63	1.79	0.15	0.08	0.46	0.16	1.17	0.40	0.30	0.48
프랑스	1.57	0.98	0.00	–	0.49	0.11	0.08	0.01	–	0.08
독일	1.23	0.03	0.06	0.02	0.33	0.80	0.75	0.51	0.22	0.02
그리스	1.98	1.35	–	–	0.19	0.43	0.02	–	0.01	0.01
헝가리	1.81	1.17	–	–	0.38	0.26	0.21	0.11	0.06	0.04
아이슬란드	1.87	1.82	–	–	0.04	0.01	0.80	0.65	0.01	0.14
아일랜드	2.05	1.02	–	–	0.66	0.37	0.06	–	–	0.06
이스라엘	2.02	1.44	0.29	–	–	0.29	0.43	0.01	0.17	0.26
이탈리아	1.66	0.65	–	–	0.17	0.85	0.09	0.04	0.01	0.04
일본	0.63	0.39	0.09	0.02	0.07	0.06	0.33	0.29	0.00	0.04
한국	0.34	0.11	0.14	0.05	–	0.04	0.21	0.01	0.01	0.19
라트비아	1.45	0.77	–	–	0.33	0.35	0.28	0.18	0.02	0.08
리투아니아	1.68	1.04	0.13	0.03	0.38	0.09	0.23	0.10	0.03	0.10
룩셈부르크	1.65	0.89	0.23	–	0.32	0.21	1.06	1.06	–	–
멕시코	0.04	0.01	0.03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88	1.81	–	–	0.85	0.22	0.31	–	0.31	0.00
뉴질랜드	2.35	0.06	–	–	–	2.29	0.05	0.00	0.00	0.05
노르웨이	3.22	2.03	0.00	–	1.04	0.16	0.49	0.19	0.21	0.10
폴란드	2.18	1.08	0.02	–	0.69	0.39	0.19	0.17	0.02	–
포르투갈	1.77	1.45	–	–	0.30	0.03	0.02	0.00	0.01	0.01
슬로바키아	1.67	1.02	–	–	0.41	0.24	0.20	0.20	0.00	0.00
슬로베니아	1.83	0.62	0.00	0.00	0.96	0.26	0.29	0.21	0.08	0.00
스페인	2.16	1.34	–	0.72	0.00	0.10	0.25	0.14	0.08	0.03
스웨덴	2.06	1.24	0.08	0.00	0.74	0.00	1.78	1.35	0.16	0.27
스위스	2.11	0.96	0.18	0.27	0.60	0.10	0.59	0.47	0.09	0.04
터키	0.28	0.21	0.03	–	0.04	0.01	0.23	0.22	0.00	0.00
영국	1.48	1.19	0.00	–	0.26	0.03	0.47	0.23	0.01	0.23
미국	1.22	0.85	0.05	–	0.04	0.29	–	–	–	–
OECD-Total	1.64	1.00	0.10	0.14	0.40	0.25	0.42	0.30	0.09	0.10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 2012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4%로 장애연금 1.00%, 기타상병보조금 0.40%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2%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0%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4%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4%, 장애연금 0.1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1%로 기타현물급여 0.19%,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로 나타남

〈표 14-4-7〉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3년)

(단위: %)

구분	2013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2.08	1.54	–	0.52	–	0.02	0.43	–	0.00	0.43
오스트리아	1.8	1.26	0.12	–	0.22	0.19	0.47	0.31	0.05	0.11
벨기에	2.26	1.58	–	0.02	0.64	0.02	0.51	0.45	0.03	0.03
캐나다	0.79	0.35	0.38	–	0.07	–	–	–	–	–
칠레	0.71	0.47	0.01	0.01	0.22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5	–	–	0.05	–	–	–	–	–	–
코스타리카	0.06	0.03	–	–	–	0.02	0.00	–	–	0.00
체코	1.73	1.16	0.01	0.08	0.43	0.06	0.10	0.07	0.00	0.03
덴마크	3.3	2.22	–	0.11	0.86	0.11	2.29	0.91	0.84	0.54
에스토니아	1.88	1.15	–	–	0.26	0.47	0.28	0.23	0.06	0.00
핀란드	2.59	1.77	0.15	0.08	0.45	0.15	1.23	0.42	0.31	0.50
프랑스	1.58	0.99	0.00	–	0.48	0.11	0.08	0.00	–	0.08
독일	1.26	0.03	0.06	0.02	0.34	0.82	0.78	0.54	0.21	0.02
그리스	1.84	1.25	–	–	0.17	0.41	0.02	–	0.01	0.01
헝가리	1.7	1.13	–	–	0.37	0.21	0.21	0.11	0.06	0.04
아이슬란드	1.89	1.83	–	–	0.04	0.01	0.83	0.70	0.01	0.13
아일랜드	2.05	1.08	–	–	0.57	0.39	0.06	–	–	0.06
이스라엘	1.99	1.40	0.30	–	–	0.29	0.44	0.01	0.16	0.27
이탈리아	1.71	0.66	–	–	0.16	0.88	0.09	0.04	0.00	0.04
일본	0.62	0.38	0.09	0.02	0.07	0.07	0.35	0.31	0.00	0.04
한국	0.34	0.12	0.13	0.05	–	0.04	0.20	0.01	0.01	0.19
라트비아	1.51	0.76	–	–	0.36	0.39	0.29	0.18	0.03	0.08
리투아니아	1.6	0.95	0.12	0.02	0.43	0.08	0.21	0.08	0.02	0.11
룩셈부르크	1.61	0.85	0.22	–	0.32	0.22	1.08	1.08	–	–
멕시코	0.04	0.00	0.03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79	1.84	–	–	0.80	0.16	0.27	–	0.27	0.00
뉴질랜드	2.46	0.05	–	–	–	2.41	0.05	0.00	0.00	0.05
노르웨이	3.2	1.98	0.00	–	1.06	0.16	0.53	0.19	0.24	0.10
폴란드	2.23	1.08	0.02	–	0.74	0.39	0.19	0.17	0.02	–
포르투갈	1.88	1.57	–	–	0.28	0.03	0.02	0.00	0.01	0.01
슬로바키아	1.67	1.04	–	–	0.37	0.25	0.21	0.21	0.00	0.00
슬로베니아	1.78	0.59	0.00	0.00	0.96	0.24	0.29	0.21	0.08	0.00
스페인	2.19	1.40	–	0.69	0.00	0.10	0.24	0.14	0.08	0.02
스웨덴	2.07	1.17	0.08	0.00	0.82	0.00	1.86	1.41	0.17	0.28
스위스	2.21	0.94	0.18	0.26	0.74	0.10	0.59	0.46	0.09	0.03
터키	0.29	0.21	0.03	–	0.05	0.01	0.23	0.22	0.00	0.00
영국	1.45	1.04	0.00	–	0.38	0.03	0.46	0.22	0.02	0.23
미국	1.21	0.84	0.04	–	0.04	0.29	–	–	–	–
OECD-Total	1.64	0.99	0.09	0.13	0.41	0.25	0.43	0.30	0.09	0.10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 2013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4%로 장애연금 0.99% 기타상병보조금 0.4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20%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4%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3%, 장애연금 0.1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0%로 기타 현물급여 0.19%,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로 나타남

〈표 14-4-8〉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4년)

(단위: %)

구분	2014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2.11	1.57	–	0.52	–	0.02	0.45	–	0.00	0.45
오스트리아	1.77	1.20	0.12	–	0.23	0.22	0.48	0.33	0.05	0.11
벨기에	2.33	1.62	–	0.02	0.67	0.02	0.52	0.47	0.01	0.04
캐나다	0.77	0.33	0.37	–	0.07	–	–	–	–	–
칠레	0.69	0.43	0.01	0.01	0.25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6	–	–	0.06	–	–	–	–	–	–
코스타리카	0.06	0.04	–	–	–	0.03	0.00	–	–	0.00
체코	1.65	1.09	0.01	0.08	0.42	0.06	0.10	0.07	0.00	0.03
덴마크	3.16	2.12	–	0.11	0.82	0.11	2.25	0.90	0.79	0.56
에스토니아	1.86	1.15	–	–	0.27	0.44	0.28	0.23	0.05	0.00
핀란드	2.5	1.70	0.15	0.07	0.44	0.14	1.28	0.43	0.31	0.54
프랑스	1.59	1.00	0.00	–	0.49	0.11	0.08	0.00	–	0.08
독일	1.26	0.03	0.06	0.02	0.35	0.80	0.78	0.55	0.21	0.02
그리스	1.84	1.23	–	–	0.18	0.44	0.02	–	0.01	0.01
헝가리	1.6	1.02	–	–	0.41	0.17	0.31	0.18	0.09	0.04
아이슬란드	1.93	1.88	–	–	0.04	0.02	0.90	0.76	0.00	0.13
아일랜드	1.87	1.02	–	–	0.49	0.37	0.05	–	–	0.05
이스라엘	2.03	1.40	0.30	–	–	0.33	0.45	0.01	0.16	0.28
이탈리아	1.73	0.67	–	–	0.16	0.90	0.08	0.04	0.01	0.04
일본	0.61	0.37	0.08	0.02	0.07	0.06	0.36	0.32	0.00	0.05
한국	0.34	0.12	0.12	0.05	–	0.05	0.19	0.01	0.00	0.18
라트비아	1.55	0.78	–	–	0.36	0.40	0.33	0.21	0.02	0.09
리투아니아	1.56	0.90	0.12	0.02	0.44	0.09	0.25	0.11	0.02	0.12
룩셈부르크	1.53	0.78	0.21	–	0.30	0.24	1.08	1.08	–	–
멕시코	0.04	0.00	0.03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63	1.80	–	–	0.70	0.13	0.32	–	0.32	0.00
뉴질랜드	2.45	0.02	–	–	–	2.43	0.04	0.00	0.00	0.04
노르웨이	3.29	2.03	0.00	–	1.09	0.18	0.55	0.20	0.25	0.10
폴란드	2.16	1.04	0.02	–	0.69	0.41	0.19	0.18	0.02	–
포르투갈	1.79	1.47	–	–	0.29	0.03	0.02	0.00	0.00	0.01
슬로바키아	1.65	1.04	–	–	0.35	0.26	0.22	0.22	0.00	0.00
슬로베니아	1.68	0.52	0.00	0.00	0.94	0.23	0.31	0.23	0.08	0.00
스페인	2.2	1.37	–	0.72	0.00	0.11	0.24	0.14	0.08	0.02
스웨덴	2.04	1.10	0.07	0.00	0.88	0.00	1.83	1.40	0.16	0.27
스위스	2.04	0.91	0.17	0.27	0.59	0.10	0.58	0.45	0.10	0.04
터키	0.27	0.21	0.00	–	0.05	0.01	0.23	0.22	0.00	0.01
영국	1.49	1.19	0.00	–	0.27	0.02	0.31	0.09	0.01	0.21
미국	1.17	0.82	0.04	–	0.03	0.28	–	–	–	–
OECD-Total	1.61	0.97	0.09	0.13	0.40	0.26	0.43	0.31	0.09	0.11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 2014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1%로 장애연금 0.97% 기타상병보조금 0.40%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3%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1%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4%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2%, 장애연금 0.1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19%로 기타 현물급여 0.18%,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로 나타남

〈표 14-4-9〉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5년)

(단위: %)

구분	2015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2.07	1.55	–	0.50	–	0.02	0.48	–	0.00	0.48
오스트리아	1.7	1.09	0.12	–	0.23	0.27	0.48	0.33	0.05	0.11
벨기에	2.34	1.65	–	0.02	0.66	0.02	0.55	0.47	0.02	0.05
캐나다	0.76	0.32	0.36	–	0.07	–	–	–	–	–
칠레	0.73	0.42	0.01	0.01	0.29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5	–	–	0.05	–	–	–	–	–	–
코스타리카	0.07	0.04	–	–	–	0.03	0.00	–	–	0.00
체코	1.65	1.06	0.01	0.07	0.44	0.06	0.09	0.06	0.00	0.02
덴마크	3.02	2.03	–	0.13	0.77	0.10	2.19	0.88	0.73	0.58
에스토니아	1.95	1.19	–	–	0.30	0.46	0.30	0.25	0.05	0.00
핀란드	2.37	1.60	0.15	0.07	0.43	0.12	1.22	0.81	0.33	0.08
프랑스	1.6	1.00	0.00	–	0.49	0.10	0.08	0.00	–	0.08
독일	1.27	0.02	0.06	0.02	0.35	0.81	0.82	0.59	0.21	0.02
그리스	1.27	0.67	–	–	0.18	0.42	0.06	–	0.04	0.01
헝가리	1.61	0.91	–	–	0.41	0.29	0.23	0.10	0.10	0.03
아이슬란드	1.82	1.76	–	–	0.03	0.03	0.85	0.73	0.00	0.12
아일랜드	1.43	0.77	–	–	0.37	0.30	0.03	–	–	0.03
이스라엘	2.05	1.39	0.31	–	–	0.36	0.47	0.01	0.17	0.29
이탈리아	1.71	0.66	–	–	0.16	0.90	0.08	0.04	0.00	0.03
일본	0.61	0.37	0.08	0.02	0.07	0.08	0.41	0.35	0.00	0.06
한국	0.34	0.11	0.12	0.05	–	0.06	0.21	0.04	0.00	0.17
라트비아	1.7	0.77	–	–	0.48	0.46	0.36	0.24	0.02	0.10
리투아니아	1.73	0.89	0.12	0.02	0.62	0.09	0.27	0.11	0.02	0.14
룩셈부르크	1.47	0.75	0.21	–	0.29	0.23	1.04	1.04	–	–
멕시코	0.04	0.01	0.03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56	1.76	–	–	0.69	0.11	0.83	–	0.82	0.00
뉴질랜드	2.42	0.00	–	–	–	2.42	0.00	0.00	0.00	0.00
노르웨이	3.75	2.46	0.00	–	1.13	0.16	0.57	0.21	0.26	0.10
폴란드	2.15	0.97	0.02	–	0.77	0.40	0.20	0.18	0.02	–
포르투갈	1.77	1.41	–	–	0.32	0.03	0.01	0.00	0.00	0.01
슬로바키아	1.62	1.00	–	–	0.37	0.25	0.22	0.21	0.00	0.00
슬로베니아	1.66	0.47	0.00	0.00	0.97	0.22	0.29	0.21	0.08	0.00
스페인	2.17	1.33	–	0.77	0.00	0.08	0.23	0.14	0.07	0.02
스웨덴	2	1.01	0.06	0.00	0.92	0.00	1.81	1.38	0.16	0.27
스위스	2.07	0.90	0.17	0.27	0.63	0.10	0.61	0.47	0.10	0.04
터키	0.27	0.20	0.00	–	0.05	0.01	0.22	0.21	0.00	0.01
영국	1.5	1.25	0.00	–	0.22	0.02	0.31	0.09	0.01	0.21
미국	1.14	0.79	0.04	–	0.03	0.27	–	–	–	–
OECD-Total	1.59	0.94	0.09	0.13	0.41	0.26	0.44	0.32	0.11	0.09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 2015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59%로 장애연금 0.94% 기타상병보조금 0.4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4%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2%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4%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2%, 장애연금 0.11% 등이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1%로 기타 현물급여 0.17%,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4%로 나타남
- 한국의 2014년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4%로 동일한 반면에, GDP 대비 현물급여는 0.19%에서 0.21%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가 2014년 0.01%에서 2015년 0.04%로 증가함

〈표 14-4-10〉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6년)

(단위: %)

구분	2016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5	1.47	-	0.47	-	0.01	0.40	-	0.00	0.40
오스트리아	1.63	1.01	0.12	-	0.22	0.28	0.48	0.33	0.05	0.11
벨기에	2.36	1.71	-	0.01	0.63	0.02	0.56	0.49	0.03	0.05
캐나다	0.74	0.32	0.35	-	0.08	-	-	-	-	-
칠레	0.74	0.41	0.01	0.01	0.32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7	-	-	0.07	-	-	-	-	-	-
코스타리카	0.07	0.04	-	-	-	0.03	0.00	-	-	0.00
체코	1.65	1.02	0.02	0.08	0.47	0.07	0.09	0.06	0.00	0.02
덴마크	2.81	1.92	-	0.08	0.71	0.09	2.13	0.86	0.67	0.60
에스토니아	1.98	1.21	-	-	0.31	0.47	0.34	0.28	0.05	0.00
핀란드	2.21	1.50	0.14	0.06	0.40	0.12	1.20	0.77	0.33	0.11
프랑스	1.61	1.00	0.00	-	0.51	0.10	0.08	0.00	-	0.08
독일	1.28	0.02	0.06	0.02	0.35	0.82	0.84	0.61	0.21	0.02
그리스	1.3	0.68	-	-	0.20	0.42	0.04	-	0.03	0.01
헝가리	1.56	0.85	-	-	0.42	0.29	0.18	0.09	0.07	0.02
아이슬란드	1.92	1.88	-	-	0.03	0.01	0.73	0.57	0.00	0.15
아일랜드	1.44	0.77	-	-	0.36	0.31	0.04	-	-	0.04
이스라엘	2.09	1.38	0.32	-	-	0.39	0.48	0.01	0.17	0.30
이탈리아	1.69	0.65	-	-	0.15	0.89	0.07	0.04	0.00	0.03
일본	0.61	0.37	0.08	0.02	0.07	0.08	0.43	0.37	0.00	0.06
한국	0.33	0.11	0.12	0.05	-	0.06	0.23	0.05	0.00	0.17
라트비아	1.77	0.75	-	-	0.55	0.48	0.37	0.23	0.02	0.12
리투아니아	1.78	0.87	0.12	0.02	0.68	0.09	0.26	0.11	0.02	0.12
룩셈부르크	1.41	0.73	0.19	-	0.27	0.22	0.96	0.96	-	-
멕시코	0.03	0.01	0.03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52	1.75	-	-	0.68	0.09	0.82	-	0.81	0.00
뉴질랜드	2.37	0.00	-	-	-	2.37	0.00	0.00	0.00	0.00
노르웨이	3.91	2.58	0.00	-	1.18	0.16	0.60	0.22	0.28	0.10
폴란드	2.14	0.88	0.01	-	0.83	0.42	0.19	0.13	0.06	0.01
포르투갈	1.71	1.34	-	-	0.34	0.03	0.02	0.00	0.01	0.01
슬로바키아	1.65	1.01	-	-	0.40	0.25	0.23	0.22	0.00	0.00
슬로베니아	1.61	0.43	0.00	0.00	0.98	0.21	0.27	0.20	0.07	0.00
스페인	2.2	1.30	-	0.83	0.00	0.07	0.22	0.13	0.07	0.02
스웨덴	1.94	0.95	0.05	0.00	0.94	0.00	1.75	1.33	0.16	0.27
스위스	2.08	0.90	0.16	0.28	0.64	0.10	0.62	0.48	0.10	0.04
터키	0.28	0.22	0.00	-	0.06	0.01	0.23	0.22	0.00	0.01
영국	1.49	1.29	0.00	-	0.19	0.02	0.31	0.08	0.01	0.21
미국	1.1	0.77	0.04	-	0.03	0.26	-	-	-	-
OECD-Total	1.58	0.92	0.09	0.13	0.42	0.26	0.43	0.31	0.11	0.09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 2016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58%로 장애연금 0.92% 기타상병보조금 0.4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3%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1%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3%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2%, 장애연금 0.1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3%로 기타 현물급여 0.17%,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5%로 나타남

〈표 14-4-11〉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7년)

(단위: %)

구분	2017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1	1.44	–	0.46	–	0.01	0.34	–	0.00	0.34
오스트리아	1.57	0.96	0.11	–	0.22	0.28	0.48	0.33	0.05	0.11
벨기에	2.44	1.75	–	0.04	0.61	0.04	0.55	0.49	0.01	0.05
캐나다	0.73	0.30	0.35	–	0.08	–	–	–	–	–
칠레	0.75	0.41	0.01	0.01	0.33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8	–	–	0.08	–	–	–	–	–	–
코스타리카	0.33	0.04	–	–	–	0.29	0.00	–	–	0.00
체코	1.61	0.97	0.02	0.08	0.48	0.07	0.09	0.07	0.00	0.02
덴마크	2.75	1.83	–	0.13	0.70	0.09	2.11	0.83	0.65	0.62
에스토니아	1.96	1.20	–	–	0.32	0.45	0.32	0.27	0.05	0.00
핀란드	2.07	1.38	0.14	0.06	0.38	0.11	1.13	0.75	0.25	0.12
프랑스	1.62	1.01	0.00	–	0.51	0.10	0.08	0.00	–	0.08
독일	1.28	0.02	0.05	0.02	0.35	0.82	0.97	0.74	0.21	0.02
그리스	1.22	0.63	–	–	0.17	0.42	0.05	–	0.04	0.01
헝가리	1.46	0.76	–	–	0.43	0.28	0.17	0.09	0.06	0.02
아이슬란드	2.06	2.01	–	–	0.04	0.02	0.81	0.60	0.04	0.17
아일랜드	1.39	0.75	–	–	0.33	0.32	0.03	–	–	0.03
이스라엘	2.11	1.41	0.33	–	–	0.38	0.59	0.02	0.21	0.36
이탈리아	1.67	0.63	–	–	0.16	0.88	0.07	0.03	0.00	0.03
일본	0.61	0.37	0.08	0.02	0.07	0.07	0.45	0.39	0.00	0.06
한국	0.33	0.11	0.11	0.05	–	0.06	0.27	0.10	0.01	0.16
라트비아	1.79	0.73	–	–	0.56	0.50	0.35	0.22	0.02	0.11
리투아니아	1.8	0.87	0.12	0.02	0.71	0.09	0.25	0.10	0.02	0.14
룩셈부르크	1.38	0.71	0.19	–	0.27	0.21	1.05	1.05	–	–
멕시코	0.05	0.01	0.04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07	1.65	–	–	0.32	0.10	0.80	–	0.80	0.00
뉴질랜드	2.32	0.00	–	–	–	2.32	0.00	0.00	0.00	0.00
노르웨이	3.8	2.51	0.00	–	1.14	0.15	0.60	0.22	0.28	0.10
폴란드	2.09	0.83	0.01	–	0.84	0.41	0.14	0.09	0.05	0.01
포르투갈	1.68	1.29	–	–	0.36	0.04	0.02	0.00	0.01	0.01
슬로바키아	1.69	0.99	–	–	0.44	0.27	0.24	0.23	0.00	0.00
슬로베니아	1.5	0.30	0.00	0.00	0.99	0.21	0.27	0.20	0.07	0.00
스페인	2.2	1.27	–	0.87	0.00	0.07	0.22	0.13	0.07	0.02
스웨덴	1.81	0.88	0.05	0.00	0.88	0.00	1.76	1.36	0.14	0.26
스위스	2.15	0.89	0.16	0.28	0.71	0.11	0.61	0.48	0.10	0.04
터키	0.26	0.20	0.00	–	0.06	0.01	0.22	0.21	0.00	0.01
영국	1.53	1.33	0.00	–	0.18	0.02	0.31	0.09	0.01	0.21
미국	1.06	0.74	0.04	–	0.03	0.25	–	–	–	–
OECD-Total	1.56	0.90	0.09	0.14	0.41	0.26	0.44	0.31	0.11	0.09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 2017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56%로 장애연금 0.90% 기타상병보조금 0.4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4%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1%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3%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1%, 장애연금 0.11%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7%로 2016년에 비해 0.04%p 증가하였으며, 기타 현물급여 0.16%,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1%로 나타남

〈표 14-4-12〉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8년)

(단위: %)

구분	2018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85	1.39	-	0.46	-	0.01	0.19	-	0.00	0.19
오스트리아	1.52	0.90	0.11	-	0.23	0.28	0.48	0.33	0.05	0.11
벨기에	2.55	1.84	-	0.04	0.63	0.05	0.55	0.49	0.01	0.04
캐나다	0.72	0.28	0.36	-	0.08	-	-	-	-	-
칠레	0.74	0.39	0.01	0.01	0.33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9	-	-	0.09	-	-	-	-	-	-
코스타리카	0.34	0.04	-	-	-	0.30	0.00	-	-	0.00
체코	1.66	0.94	0.02	0.07	0.56	0.08	0.10	0.08	0.00	0.02
덴마크	2.67	1.79	-	0.12	0.68	0.08	1.80	0.90	0.67	0.23
에스토니아	1.99	1.23	-	-	0.33	0.43	0.31	0.27	0.04	0.00
핀란드	2	1.31	0.14	0.06	0.38	0.11	1.17	0.77	0.28	0.13
프랑스	1.61	1.00	0.00	-	0.52	0.09	0.08	0.00	-	0.08
독일	1.29	0.02	0.05	0.02	0.36	0.82	1.01	0.78	0.21	0.02
그리스	1.15	0.56	-	-	0.17	0.43	0.08	-	0.06	0.01
헝가리	1.37	0.66	-	-	0.45	0.27	0.18	0.09	0.07	0.02
아이슬란드	2.07	2.02	-	-	0.03	0.02	0.86	0.65	0.04	0.17
아일랜드	1.36	0.73	-	-	0.32	0.31	0.03	-	-	0.03
이스라엘	2.23	1.51	0.34	-	-	0.39	0.62	0.02	0.22	0.38
이탈리아	1.66	0.62	-	-	0.16	0.88	0.07	0.03	0.00	0.03
일본	0.62	0.38	0.07	0.02	0.07	0.08	0.47	0.41	0.00	0.06
한국	0.36	0.12	0.12	0.06	-	0.06	0.28	0.11	0.01	0.16
라트비아	1.78	0.72	-	-	0.57	0.50	0.36	0.23	0.03	0.11
리투아니아	1.89	0.90	0.13	0.02	0.76	0.08	0.26	0.09	0.02	0.15
룩셈부르크	1.33	0.68	0.19	-	0.29	0.17	1.08	1.08	-	-
멕시코	0.05	0.00	0.04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04	1.62	-	-	0.32	0.10	0.82	-	0.82	0.00
뉴질랜드	2.35	0.00	-	-	-	2.35	0.00	0.00	0.00	0.00
노르웨이	3.68	2.46	0.00	-	1.09	0.13	0.58	0.22	0.27	0.09
폴란드	1.96	0.76	0.00	-	0.80	0.41	0.11	0.06	0.05	0.01
포르투갈	1.66	1.14	-	-	0.38	0.15	0.02	0.00	0.01	0.01
슬로바키아	1.62	0.94	-	-	0.43	0.25	0.23	0.22	0.00	0.00
슬로베니아	1.54	0.27	0.00	0.00	1.07	0.19	0.27	0.20	0.07	0.00
스페인	2.15	1.25	-	0.83	0.00	0.07	0.22	0.13	0.07	0.02
스웨덴	1.72	0.82	0.04	0.00	0.86	0.00	1.80	1.39	0.15	0.26
스위스	2.08	0.86	0.15	0.28	0.69	0.11	0.62	0.48	0.10	0.04
터키	0.23	0.17	0.00	-	0.06	0.01	0.22	0.21	0.00	0.01
영국	1.39	1.21	0.00	-	0.16	0.02	0.31	0.09	0.01	0.21
미국	1.01	0.71	0.03	-	0.03	0.24	-	-	-	-
OECD-Total	1.53	0.87	0.09	0.14	0.41	0.26	0.43	0.32	0.11	0.08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 2018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53%로 장애연금 0.87% 기타상병보조금 0.4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3%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2%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6%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1%, 장애연금 0.12%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8%로 2017년에 비해 0.03%p 증가하였으며,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p 증감함

〈표 14-4-13〉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9년)

(단위: %)

구분	2019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5	1.45	-	0.50	-	0.01	0.93	-	0.00	0.93
오스트리아	1.48	0.85	0.11	-	0.25	0.28	0.51	0.35	0.05	0.12
벨기에	2.61	1.88	-	0.04	0.64	0.05	0.59	0.52	0.03	0.04
캐나다	0.74	0.29	0.37	-	0.08	-	-	-	-	-
칠레	0.75	0.39	0.01	0.01	0.34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8	-	-	0.08	-	-	-	-	-	-
코스타리카	0.44	0.04	-	-	-	0.40	0.00	-	-	0.00
체코	1.76	0.95	0.02	0.07	0.65	0.08	0.10	0.08	0.00	0.02
덴마크	2.71	1.81	-	0.13	0.69	0.08	1.78	0.92	0.63	0.23
에스토니아	2	1.26	-	-	0.33	0.40	0.34	0.30	0.04	0.00
핀란드	1.94	1.26	0.13	0.06	0.38	0.11	1.22	0.77	0.30	0.15
프랑스	1.62	1.01	0.00	-	0.52	0.09	0.08	0.00	-	0.08
독일	1.32	0.02	0.05	0.03	0.38	0.83	1.06	0.82	0.21	0.02
그리스	1.23	0.53	-	-	0.20	0.50	0.05	-	0.04	0.01
헝가리	1.33	0.60	-	-	0.45	0.29	0.17	0.10	0.06	0.02
아이슬란드	2.19	2.13	-	-	0.04	0.02	0.94	0.76	0.04	0.15
아일랜드	1.3	0.71	-	-	0.28	0.31	0.03	-	-	0.03
이스라엘	2.24	1.52	0.35	-	-	0.36	0.65	0.02	0.23	0.40
이탈리아	1.68	0.63	-	-	0.16	0.89	0.07	0.03	0.00	0.03
일본	0.64	0.38	0.08	0.02	0.08	0.08	0.49	0.43	0.00	0.06
한국	0.39	0.13	0.13	0.07	-	0.07	0.32	0.12	0.01	0.18
라트비아	1.89	0.71	-	-	0.65	0.52	0.37	0.24	0.02	0.11
리투아니아	1.86	0.90	0.12	0.02	0.73	0.09	0.25	0.08	0.01	0.16
룩셈부르크	1.37	0.67	0.18	-	0.36	0.16	1.08	1.08	-	-
멕시코	0.05	0.01	0.04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1.99	1.60	-	-	0.30	0.09	0.85	-	0.84	0.01
뉴질랜드	2.36	0.00	-	-	-	2.36	0.00	0.00	0.00	0.00
노르웨이	3.88	2.63	0.00	-	1.12	0.13	0.61	0.23	0.28	0.10
폴란드	1.86	0.71	0.00	-	0.84	0.31	0.08	0.04	0.04	0.00
포르투갈	1.72	1.14	-	-	0.40	0.18	0.02	0.00	0.02	0.00
슬로바키아	1.66	0.92	-	-	0.50	0.24	0.22	0.22	0.00	0.00
슬로베니아	1.58	0.25	0.00	0.00	1.10	0.23	0.32	0.25	0.07	0.00
스페인	2.31	1.24	-	1.00	0.00	0.07	0.22	0.13	0.07	0.02
스웨덴	1.63	0.76	0.04	0.00	0.83	0.00	1.74	1.34	0.15	0.25
스위스	2.13	0.86	0.14	0.29	0.72	0.11	0.61	0.46	0.10	0.04
터키	0.25	0.18	0.00	-	0.06	0.01	0.23	0.22	0.00	0.01
영국	1.33	1.26	-	-	0.07	-	-	-	-	-
미국	0.98	0.69	0.03	-	0.03	0.24	-	-	-	-
OECD-Total	1.56	0.87	0.09	0.15	0.43	0.27	0.47	0.34	0.11	0.10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 2019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56%로 장애연금 0.87% 기타상병보조금 0.43%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7%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4%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9%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3%, 장애연금 0.13%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32%로 2018년에 비해 0.04%p 증가하였으며, 기타현물급여 0.02%p,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p 증감함

〈표 14-4-14〉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20년)

(단위: %)

구분	2020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0.76	0.29	0.38	–	0.09	–	–	–	–	–
칠레	1	0.41	0.01	0.01	0.57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1	–	–	0.10	–	–	–	–	–	–
코스타리카	0.44	0.05	–	–	–	0.39	0.00	–	–	0.00
체코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1.86	1.09	0.00	–	0.67	0.10	0.09	0.01	–	0.09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2.45	1.68	0.39	–	–	0.37	0.74	0.02	0.30	0.43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0.67	0.40	0.07	0.02	0.09	0.08	0.55	0.46	0.00	0.09
한국	0.41	0.13	0.13	0.07	–	0.08	0.41	0.20	0.02	0.19
라트비아	–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2.64	0.00	–	–	–	2.64	0.01	0.00	0.00	0.01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1.33	1.27	–	–	0.06	–	–	–	–	–
미국	0.98	0.68	0.03	–	0.03	0.24	–	–	–	–
OECD-Total	–	–	–	–	–	–	–	–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표 14-4-15〉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21년)

(단위: %)

구분	2021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0.77	0.37	0.01	0.01	0.38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9	–	–	0.09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	–	–
체코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2.32	1.62	0.37	–	–	0.32	0.62	0.02	0.24	0.37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	–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2.77	0.00	–	–	–	2.77	0.01	0.00	0.00	0.01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미국	–	–	–	–	–	–	–	–	–	–
OECD-Total	–			–	–	–	–	–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08-20)

5) 복지

〈표 14-5-1〉 주요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상대적 비율
미국 ('18)	47.6	24.0	2.0
아일랜드	7.1	5.5	1.3
한국 ('21)	39.4	15.1	2.6
에스토니아	11.6	10.3	1.1
포르투갈	13.3	9.0	1.5
슬로베니아	7.2	5.6	1.3
덴마크	7.0	5.2	1.3
스페인	12.6	11.0	1.1
핀란드	3.3	2.5	1.3
이탈리아	14.2	9.7	1.5
독일	7.9	6.1	1.3
그리스	11.4	9.7	1.2
벨기에	7.1	4.3	1.7
폴란드	9.5	9.0	1.1
오스트리아	6.8	7.9	0.9
헝가리	13.1	6.3	2.1
프랑스	10.5	7.2	1.5
룩셈부르크	13.9	14.3	1.0
체코	5.2	2.7	1.9
스위스('22)	10.8	7.4	1.5
네덜란드	6.0	5.2	1.2
슬로바키아	8.2	9.3	0.9
노르웨이	5.9	6.1	1.0
스웨덴	9.3	6.7	1.4
OECD 평균	10.9	7.8	1.4

주: 1) 2000년대 중반 근로가능연령(20-64세)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내 장애인 비율임
2) OECD 평균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계산한 수치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OECD의 빈곤선 설정은 중위소득 60%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한국의 수치는 중위소득의 50%를 적용하여 도출된 수치이기에, 국가간 빈곤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음

자료: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EU 「In-work at-risk-of-poverty rate by level of disability (activity limitation), sex and age」 HLTH_DPE050

미국: 2018년, 21-64세, 2018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한국 2023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 OECD 국가의 2023년 장애인 빈곤위험률은 평균 10.9%로 비장애인의 7.8%에 비하여 약 1.4배 높음.
  - 한국의 경우, 2021년 기준 장애인 빈곤율이 39.4%로 OECD 국가의 평균 10.9%보다 약 3.6배, 비장애인 14.6%에 비해 약 2.6배 높음
  - 특히 미국(25.9%)과 한국(39.4%)은 높은 장애인 빈곤율을 보이는 동시에, 두 집단 간(장애인 vs 비장애인) 격차가 큼
- 이에 반해 핀란드(3.3%), 체코(5.2%), 노르웨이(5.9%) 등의 국가들은 낮은 빈곤율과 비장애인과의 빈곤율 격차를 보임

OECD 국가의 빈곤위험률

- OECD 국가의 장애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위험율(=빈곤율)은 각 국가의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 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임
  - 가처분소득에는 사회적 소득이전으로서 공·사적연금, 공공부조,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됨
- OECD에서는 빈곤선 설정 시 중위소득 50%, 60%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동 지표에서는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함

6) 정신건강

(1) 정신질환관련 병상 수

〈표 14-6-1〉 OECD 국가 인구 천 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단위: 수/인구천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호주	0.39	0.39	0.4	0.41	0.41	0.41	0.42	–	–	–	–	–	–	–
오스트리아	0.71	0.71	0.74	0.75	0.74	0.75	0.75	0.75	0.73	0.69	0.69	0.72	0.72	–
벨기에	1.47	1.45	1.44	1.41	1.4	1.4	1.38	1.36	1.35	1.41	1.41	1.41	1.41	1.41
캐나다	0.36	0.36	0.37	0.37	0.35	0.35	0.35	0.34	0.37	0.36	0.37	0.37	0.36	–
칠레	0.17	0.14	0.1	0.1	0.1	0.1	0.1	0.1	0.15	0.14	0.14	0.14	0.14	0.13
콜롬비아	0.01	0.01	0.02	0.03	0.04	0.02	0.03	0.04	0.06	0.07	0.09	–	–	–
코스타리카	0.21	0.2	0.2	0.19	0.19	0.18	0.18	0.18	0.16	0.15	0.13	0.06	0.09	–
체코	1.01	0.99	0.98	0.96	0.95	0.96	0.95	0.94	0.93	0.92	0.88	0.91	0.88	–
덴마크	0.57	0.53	–	0.54	–	–	0.4	0.47	0.48	0.52	0.52	0.52	0.53	0.52
에스토니아	0.53	0.54	0.54	0.52	0.52	0.52	0.51	0.51	0.52	0.51	0.50	0.50	0.46	–
핀란드	0.75	0.71	0.69	0.64	0.61	0.62	0.58	0.53	0.54	0.59	0.35	0.33	0.30	–
프랑스	0.88	0.87	0.88	0.88	0.87	0.86	0.85	0.83	0.82	0.81	0.80	0.79	0.77	–
독일	1.18	1.23	1.25	1.26	1.27	1.27	1.28	1.28	1.30	1.31	1.30	1.31	1.31	–
그리스	0.75	0.73	0.77	0.7	0.72	0.73	0.71	0.74	0.74	0.69	0.68	0.68	0.68	–
헝가리	0.89	0.9	0.9	0.9	0.87	0.87	0.87	0.87	0.85	0.84	0.75	0.77	0.76	–
아이슬란드	0.48	0.48	0.47	0.46	0.44	0.44	0.43	0.38	0.37	0.36	0.35	–	–	–
아일랜드	0.39	0.35	0.35	0.35	0.35	0.35	0.34	0.34	0.34	0.33	0.32	0.32	0.33	–
이스라엘	0.45	0.45	0.44	0.42	0.43	0.42	0.42	0.4	0.39	0.39	0.39	0.38	0.37	0.37
이탈리아	0.1	0.1	0.1	0.1	0.09	0.09	0.09	0.09	0.09	0.08	0.08	0.08	0.08	–
일본	2.71	2.69	2.68	2.67	2.66	2.65	2.63	2.62	2.61	2.59	2.57	2.58	2.58	–
한국	–	–	–	–	–	–	–	–	–	–	–	1.28	1.30	1.26
라트비아	1.28	1.29	1.29	1.25	1.26	1.26	1.28	1.25	1.22	1.19	1.12	1.11	1.09	–
리투아니아	1.07	1.11	1.11	1.1	1.08	1.03	1.01	0.99	0.98	0.97	0.87	0.87	0.83	–
룩셈부르크	–	–	–	–	–	0.79	0.78	0.76	0.74	0.81	0.80	0.80	0.79	0.77
멕시코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3	0.03	0.03	0.03	0.03	–
네덜란드	–	–	–	–	–	0.99	0.97	0.94	0.86	0.8	0.79	1.12	0.79	–
뉴질랜드	0.22	0.2	0.2	0.17	0.23	0.24	0.3	0.3	0.3	0.32	0.32	0.36	0.33	0.32
노르웨이	1.34	1.3	1.21	1.16	1.16	1.14	1.11	1.07	1.05	1.04	1.01	1.01	1.00	–
폴란드	0.63	0.64	0.64	0.64	0.65	0.65	0.66	0.65	0.62	0.63	0.61	0.60	0.61	–
포르투갈	0.65	0.64	0.63	0.65	0.63	0.64	0.64	0.64	0.64	0.63	0.63	0.63	0.63	–
슬로바키아	0.8	0.77	0.78	0.82	0.82	0.81	0.81	0.81	0.81	0.81	0.80	0.80	0.80	–
슬로베니아	0.65	0.65	0.67	0.66	0.66	0.67	0.66	0.66	0.66	0.65	0.64	0.64	0.63	–
스페인	0.4	0.38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5	0.36	0.36	–
스웨덴	0.48	0.47	0.46	0.46	0.45	0.44	0.43	0.43	0.41	0.41	0.40	0.40	0.40	–
스위스	1.01	0.97	0.97	0.96	0.92	0.93	0.93	0.94	0.93	0.93	0.94	0.95	0.99	–
터키	0.06	0.06	0.06	0.06	0.06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
영국	0.54	0.52	0.5	0.48	0.46	0.42	0.4	0.38	0.37	0.35	0.34	0.34	0.35	–
미국	–	–	–	–	–	–	–	0.31	0.31	0.31	0.35	0.35	0.35	–
OECD평균	0.68	0.67	0.67	0.66	0.66	0.67	0.66	0.65	0.64	0.64	0.62	0.67	0.66	

주 : 1) 정신과 진료 병상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병상임. 일반병원의 정신과 병상과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병상을 포함함(OECD, 2013)
2) OECD 평균은 당해년도(혹은 인접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연구진이 평균한 값임
3) 일부 국가의 값이 추가되어 OECD 평균이 이전 보고서와 다를 수 있음 (검색일 2024-07-29)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 2022년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는 1.30으로, OECD 국가 평균 0.66에 비해 높은 수준임

(2)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표 14-6-2〉 OECD 국가 인구 10만 명당 (공공)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단위: 개)

구 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2011	2020
멕시코	0.01	0.32
한국	0.01	0.51
폴란드	0.03	1.04
미국	0.06	-
포르투갈	0.07	0.62
일본	0.30	0.89
호주	0.67	0.71
독일	1.57	3.04
프랑스	4.73	-
아이슬란드	16.67	10.91
아일랜드	17.89	5.98
OECD	3.18	2.67

자료: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원자료: OECD Mental Health Questionnaire 2012; WHO Mental Health Atlas 2011, 2020

-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는 2010년 0.01개소에서 2020년 0.51개소로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의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평균 2.67개소에 비해 아직 부족한 실정임

※ OECD 국가들은 과거 정신질환 관련 지원을 치료적 접근에 우선을 두고 있었다면, 최근에서는 치료적 접근보다는 지역사회 내(Community)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변경하고 있음

(3)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

〈표 14-6-3〉 OECD 국가 의료공급기관별 정신건강 총 의료비 지출

(단위: 1인당 USD, %)

구분	독일		한국		네덜란드		체코	
	1인당 USD	%	1인당 USD	%	1인당 USD	%	1인당 USD	%
병의원	146.7	33.0	71.7	66.4	294.6	45.4	36	69.4
장기요양	117.2	26.3	11.4	10.6	237.4	36.6	2.3	4.4
외래진료	78.1	17.5	14.7	13.6	48.4	7.5	11.7	22.6
조제약	55	12.4	6.9	6.4	33.7	5.2	0.1	0.2
기타 공급원	48.1	10.8	3.3	3.0	34.3	5.3	1.8	3.4
총지출	445	100.0	108.1	100.0	648.4	100.0	51.9	100.0

주: 1) 네덜란드: 병원지출의 89%는 정신건강 및 중독물질남용 병원에 대한 지출임
2) 체코: 병원지출의 75%는 정신건강 및 중독물질남용 병원에 대한 지출임
자료: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표 14-6-4〉 주요 OECD 국가 국민 1인당 정신건강 지출

(단위: 1인당 USD)

구분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미국[1] (17)
	244.6	61.8	9.1	4.6	200.5	393.3	580.8	16.7	71.5	103	4.47	0.9	21.2	343.8

주: 원자료에서 제시된 자국 화폐기준 금액을 USD로 변환한 수치임 (기준일: 2024.08.20. 하나은행 기준)
원자료: WHO Mental Health Atlas, 2020

- 주요 국가 및 의료공급기관 별 정신건강 지출을 살펴보면, 한국과 체코의 경우 비교국가인 독일과 네덜란드에 비해 낮은 지출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정신건강 관련 의료공급기관에 대한 총 의료비는 국민 1인당 108.1$로 대부분의 비용이 병원에 집중되어 있음(OECD, 2014)
-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정신건강에의 지출 금액은 4.47$로 미국(343.8$), 독일(580.8$), 프랑스(393.3$), 호주(244.6$), 일본(103$) 등의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은 정신건강 체계 속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정신건강지출수준을 의미함. 정신건강지출관련 구체적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세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 이에 OECD에서는 ICD-10(5장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단 알츠하이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가능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련 지출을 소개하고 있음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표 14-6-5〉 OECD 국가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칠레	전체	–	–	–	–	–	–	2.1	1.2	1.4	1.3	1.1	1.6	1.1	–	–
	남	–	–	–	–	–	–	2.3	1.3	1.5	1.2	1	1.8	1.1	–	–
	여	–	–	–	–	–	–	1.9	0.9	1.2	1.4	1.3	1.4	1.2	–	–
체코	전체	–	–	3.6	4.6	5	5.8	5.3	6.6	6.2	6.4	6.9	6.4	3.3	2.2	–
	남	–	–	3.4	4.2	5.5	6	4.8	6.2	5.9	6.2	6.7	6.1	3	2	–
	여	–	–	3.8	5.2	4.4	5.3	6.2	7.2	6.8	6.7	7	6.9	3.8	2.5	–
덴마크	전체	3.4	2.8	2.9	2.8	2.9	2.9	2.9	2.8	2.7	2.7	–	–	–	–	–
	남	3.3	2.8	3	2.8	3	2.8	2.8	2.6	2.6	2.7	–	–	–	–	–
	여	3.6	2.8	2.6	2.8	2.8	3.1	3.1	3	2.7	2.6	–	–	–	–	–
핀란드	전체	–	2.6	2.5	2.5	2.6	2.3	2.4	2.2	2.3	2.7	2.5	2.4	2.6	2.1	–
	남	–	2.5	2.2	2.3	2.5	2.1	2.2	2.1	2.2	2.6	2.4	2.4	2.5	2	–
	여	–	2.7	3	2.9	2.6	2.5	2.7	2.5	2.4	3	2.5	2.4	2.5	2.4	–
이스라엘	전체	2.8	3.2	3.2	2.7	3.2	3.3	2.6	3	3.4	3.6	3.8	3.5	3.4	3.5	3.7
	남	2.5	3.2	2.9	2.6	3.2	2.8	2.7	2.9	3.3	3	3.5	3.2	3.1	3.2	3.6
	여	3.3	3.3	3.7	3	3.1	3.9	2.6	3.1	3.5	4.4	4.3	3.8	3.8	4	3.8
한국	전체	3.2	3.4	3.5	3.6	3.8	3.9	4	4.1	4.1	4.1	4.3	4.4	4.4	4.2	–
	남	2.9	3.1	3.3	3.4	3.6	3.8	3.9	4	4.1	4.1	4.2	4.3	4.2	4.1	–
	여	3.7	4.2	4	4.2	4.2	4.2	4.1	4.4	4.3	4.3	4.6	4.6	4.7	4.5	–
라트비아	전체	–	–	2.2	1.3	1.6	2.5	3.1	0.4	2.7	2.5	2.1	1.1	2.9	2.5	–
	남	–	–	2.2	1.5	1.4	1.5	2.9	0.3	2.4	2.4	2.5	1	2.4	2.6	–
	여	–	–	2	0.8	2.2	4.8	3.8	0.8	3.4	2.8	1.3	1.3	4.1	2.5	–
리투아니아	전체	1.1	1.6	1.3	1.3	1.5	1.2	1.4	1.4	1.2	1.4	1.4	1.0	1.1	1.4	–
	남	0.9	1.5	1.2	1.0	1.4	1.0	1.4	1.4	1.1	1.1	1.1	1.0	1.2	1.3	–
	여	1.4	1.8	1.7	2	1.8	1.4	1.5	1.3	1.4	2.1	2.1	1.1	1.0	1.4	–
네덜란드	전체	–	–	–	–	–	–	–	–	2.6	2.9	3	2.8	–	–	–
	남	–	–	–	–	–	–	–	–	2.5	2.7	3	2.8	–	–	–
	여	–	–	–	–	–	–	–	–	2.7	3.2	3.1	2.7	–	–	–
뉴질랜드	전체	1.4	2.7	2.6	2.4	3.4	3.2	5.6	3.2	–	–	–	–	–	–	–
	남	1.1	3.2	2.9	2.4	3.2	2.9	6.1	2.4	–	–	–	–	–	–	–
	여	1.7	2	1.9	2.3	3.5	3.7	4.7	4.2	–	–	–	–	–	–	–
노르웨이	전체	–	–	–	–	3.2	2.8	4.2	5.1	3.9	4.6	3.1	3.4	2.5	2.3	–
	남	–	–	–	–	3.3	2.5	3.9	5.6	3.1	4.5	3.7	2.9	2.8	2.3	–
	여	–	–	–	–	3.2	3.2	4.6	4.3	5.2	4.8	2.4	4.2	2.1	2.3	–
스웨덴	전체	2.7	2.7	3	2.7	2.7	2.6	2.9	2.7	2.8	2.5	2.5	2.5	1.3	–	–
	남	2.5	2.8	3.1	2.7	2.8	2.5	2.8	2.6	3	2.6	2.3	2.6	1.2	–	–
	여	2.9	2.5	2.9	2.7	2.6	2.7	2.8	2.7	2.4	2.3	2.7	2.3	1.3	–	–

주: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검색일 2024-08-20)

- OECD 인구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일생에 걸쳐 1번은 정신질환을 앓는 등 정신질환의 부담이 상당히 큼(OECD, 2014a).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는 입원진료와 지역사회연계, 환자관리에 초점을 둔 지표임
  -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 인구보다 높음. 1 보다 높은 '초과사망비'는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높음을 의미함
  - 한국의 2021년 조울증의 초과사망비는 4.2로 노르웨이 2.3, 핀란드 2.1, 리투아니아 1.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으로 나타남

〈표 14-6-6〉 OECD 국가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캐나다	전체	3.8	3.8	3.7	3.7	3.7	3.8	3.8	4.0	4.0	3.9	4.0	4.1	–	–	–
	남	3.7	3.6	3.7	3.4	3.6	3.6	3.6	3.8	3.9	3.7	3.8	4	–	–	–
	여	3.9	3.9	3.8	4	3.8	4.1	4	4.3	4.1	4.2	4.3	4.3	–	–	–
칠레	전체	2.7	3.3	2.7	2.4	3.1	3.3	2.7	3.5	3.2	2.9	2.7	3.2	2.7	–	–
	남	2.2	4.2	3	2.2	3.6	3.3	3	3.3	2.9	2.7	2.8	3.3	2.4	–	–
	여	3.4	1.7	2.2	2.6	2.4	3.2	2.2	3.8	3.8	3.3	2.5	3.2	3.1	–	–
체코	전체	–	–	4.8	6.8	6.2	6.8	6.9	9.1	9.0	9.3	8.6	8.4	3.0	3.0	–
	남	–	–	4.5	6.1	5.4	5.8	6.1	8.3	9	9	8.5	7.6	2.8	2.7	–
	여	–	–	5.2	7.8	7.5	8.4	8.3	10.4	8.8	9.8	8.8	9.8	3.5	3.5	–
덴마크	전체	3.8	4.0	3.7	4.1	4.1	3.9	4.5	4.1	4.0	4.7	–	–	–	–	–
	남	3.9	4.2	3.5	4.1	4	4	4.5	3.7	3.9	4.4	–	–	–	–	–
	여	3.7	3.8	3.9	4.1	4.2	3.6	4.6	4.6	4.1	5.1	–	–	–	–	–
핀란드	전체	–	2.9	3.0	3.0	3.0	3.0	3.2	2.9	3.2	3.2	3.4	3.3	3.1	3.3	–
	남	–	2.7	2.7	2.5	2.7	2.9	2.6	2.5	3.0	2.9	3.0	3.1	2.8	3.0	–
	여	–	3.5	3.6	3.9	3.5	3.1	4.4	3.7	3.5	3.7	4.0	3.6	3.4	4.0	–
이스라엘	전체	3.3	3.4	3.3	3.4	3.3	3.5	3.3	3.3	3.6	3.7	3.7	4.1	4.0	3.9	4.2
	남	3.1	3.4	2.9	3.2	3.2	3.2	3.3	3.2	3.4	3.5	3.3	3.9	3.6	3.6	4.0
	여	3.5	3.3	3.7	3.6	3.4	3.9	3.2	3.4	3.8	4	4.2	4.4	4.5	4.3	4.4
한국	전체	4.0	4.2	4.3	4.3	4.4	4.3	4.3	4.3	4.4	4.4	4.5	4.5	4.6	4.6	–
	남	3.7	3.8	4	3.9	4	4	3.9	3.9	4.1	4.1	4.2	4.1	4.3	4.2	–
	여	4.8	5.1	4.9	5.1	5.1	5.2	5.3	5.1	5.1	5	5.3	5.3	5.4	5.6	–
라트비아	전체	–	–	2.1	2.1	2.0	2.0	2.1	1.9	1.9	2.0	2.1	2.1	2.3	2.1	–
	남	–	–	2	1.6	1.9	1.8	1.8	1.7	1.4	1.7	2	1.8	2.0	1.8	–
	여	–	–	2.3	3.4	2.3	2.4	2.7	2.3	2.9	2.8	2.3	2.8	3.0	2.9	–
리투아니아	전체	1.7	1.8	1.7	1.7	1.7	1.8	1.9	1.8	1.7	1.9	1.7	1.8	2.1	2.0	–
	남	1.5	1.5	1.5	1.6	1.4	1.6	1.6	1.6	1.5	1.7	1.4	1.6	1.8	1.8	–
	여	2.3	2.5	2.5	2.3	2.5	2.3	2.5	2.1	2.4	2.6	2.5	2.3	2.7	2.5	–
네덜란드	전체	–	–	–	–	–	–	–	–	3.0	3.7	3.8	3.8	–	–	–
	남	–	–	–	–	–	–	–	–	3.1	3.7	3.9	3.8	–	–	–
	여	–	–	–	–	–	–	–	–	2.9	3.7	3.7	3.7	–	–	–
뉴질랜드	전체	4.4	4.6	3.5	5.2	5.1	4.7	4.9	4.4	–	–	–	–	–	–	–
	남	6.2	3.5	4.1	3.5	4.8	3.3	4.2	3	–	–	–	–	–	–	–
	여	2.1	6.1	2.7	7.2	5.7	6.6	5.9	6.3	–	–	–	–	–	–	–
노르웨이	전체	–	–	–	–	4.5	4.9	6.3	5.6	5.7	6.6	5.2	3.3	5.0	4.0	–
	남	–	–	–	–	4.6	4.4	6.4	4.8	5.4	6.9	5.8	4	4.7	4.1	–
	여	–	–	–	–	4.3	5.5	6.1	6.7	6	6.2	4.3	2.3	5.3	3.8	–
스웨덴	전체	4.0	4.2	4.0	4.0	4.9	4.4	4.2	4.6	4.9	4.4	4.6	4.5	2.0	–	–
	남	3.8	3.9	3.9	3.8	4.6	3.9	4.3	4	4.4	4.1	4.4	3.8	2.0	–	–
	여	4.1	4.6	3.9	4.2	5.1	5.2	4.2	5.7	5.6	5.0	4.9	5.6	2.2	–	–

주: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검색일 2024-08-20 인출)

• 2021년 한국 조현병 환자의 초과사망비(일반인구집단의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는 4.6으로, 노르웨이의 4.0 등과 함께 다른 OECD국가 대비 다소 높은 편임

(5)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로 인한 평균 입원일수

〈표 14-6-7〉 OECD 국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로 인한 평균 입원일수

(단위: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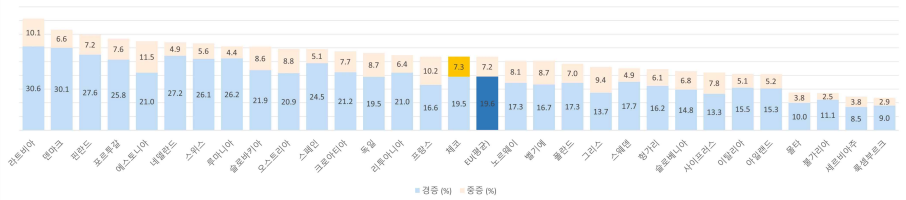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호주	24.9	25.5	22.8	23.4	23	31.3	41.3	24	25.4	26.5	28.2	29.8	-	
오스트리아	31.5	31.0	31.1	29.4	35.2	34.5	28.8	34.7	32.1	36.5	38.7	36.6	35.3	
벨기에	11.2	11.7	11.8	11.9	11.7	-	9.9	9.9	10.1	9.6	10.2	10.3	9.9	
캐나다	23.7	23.4	23.9	42	41.9	44.3	42.6	40.4	38.2	37.9	32.2	35.9	37.7	
칠레	108.1	88	76.3	70.5	57.8	87	94.6	64.9	61.6	75.9	65.1	59.1	65.7	58.2
코스타리카	90.9	36	41.4	66.9	69.2	96.6	91.9	40.2	53.6	27.1	22	15.3	16.5	17.7
체코	72.5	70.1	73.3	71.1	69.5	69.1	71	73.1	72.6	68.8	75.7	75.7	67.0	
덴마크	35.6	36.3	34.6	29.7	28.7	27.9	29.3	-	-	-	-	-	-	
핀란드	58.9	51.7	56.3	59.4	57.8	52.1	57.7	50.9	40.4	-	47.1	41.5	41.9	
프랑스	4.7	4.5	4.6	4.5	4.4	4.3	36.5	37.2	37.1	37.9	43.2	41.5	39.0	
독일	33.9	33.3	32.2	32	32.8	33.3	34.3	35.2	35.9	36.3	36.1	35.9	-	
그리스	358.2	219.0	190.0	163.0	143.0	109.0	142.7	102.5	-	-	-	-	-	
헝가리	37.9	39.9	41	37.6	38.2	41.5	40.4	42.5	42.6	41.8	47.2	39	33.7	
아이슬란드	-	16	17.6	18	16.2	-	19.1	17.2	-	17.2	-	-	18.3	
아일랜드	27.8	26.6	32	23.1	21.2	30.8	27.4	23.6	25.6	24.2	20.6	21.0	26.6	
이스라엘	70.6	65.1	63.8	68.6	59.7	70.1	70.8	61.5	59.0	68.8	64.0	57.9	58.1	
이탈리아	16.3	16.5	16.1	16.1	15.9	15.9	16.0	15.9	15.1	15	15.9	15.3	15.3	
한국	204	199.7	196.2	207.2	201.2	251.9	223.3	237.8	234.3	216.1	242.3	194.7	247.5	
라트비아	-	-	-	32.7	32.9	33.6	34.5	33.1	46.6	47.1	47.4	49.1	40.1	
리투아니아	-	-	30.9	29.3	29.4	29	28	27.3	28	34.7	34.4	32.5	34.3	
룩셈부르크	47.9	46.8	42.8	46.2	46.5	45.7	49.4	-	-	-	-	-	-	
멕시코	46.5	44.9	48.7	55.1	54.6	70.5	65.1	46	64.8	48.5	72.8	58.1	46.7	
네덜란드	28.5	25.7	27.8	31	27.9	27.8	31.2	29.4	27.4	27.7	26.8	27.8	28.9	
뉴질랜드	46.2	53.4	49.6	45.6	43.8	47.9	40.8	43.4	38.7	38.4	39.8	-	-	
노르웨이	3	29	26.5	26.4	25.1	25.7	23.3	21.6	21.1	21.7	21.6	22.5	22.1	22.4
폴란드	61.6	57.6	43.6	42.8	43.2	59.5	60.5	61.7	57.8	58.4	57.3	59.5	-	
포르투갈	21.5	21.5	20.8	21.5	20.9	21.7	-	-	22.5	23.9	25.4	25.3	25.9	28.4
슬로바키아	36.5	34.6	35.8	-	34.6	35.4	35.7	36.2	35.6	36.1	36.7	37.1	-	
슬로베니아	53.9	52.5	55.4	52.0	54.9	53.2	55.1	50.8	49.4	47.4	39.2	37.0	36.6	
스페인	33.7	30.8	31.2	32.1	30.5	31.6	34.7	56.6	87.0	83.5	97.2	81.0	80.0	
스웨덴	35.3	-	-	38.5	33.9	47.1	48.2	48.8	46.9	46.8	43.1	49.2	51.3	
스위스	53.9	50	42.9	42.5	38.7	36.7	36.5	34.5	36.0	36.8	37.3	36.0	35.2	
터키	-	24.8	16.3	22.6	29.1	14.3	15.0	14.5	15.8	-	-	-	-	
영국	106.3	104.5	106.1	109.4	98.2	98	100.4	-	94.8	66.3	61.5	68.2	68.0	
미국	10.1	-	-	-	-	-	-	-	-	-	-	-	-	
OECD-평균	57.92	50.65	48.23	48.54	46.22	52.42	49.79	45.27	48.53	46.79	49.27	46.78	47.26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자료인출일: 2024-0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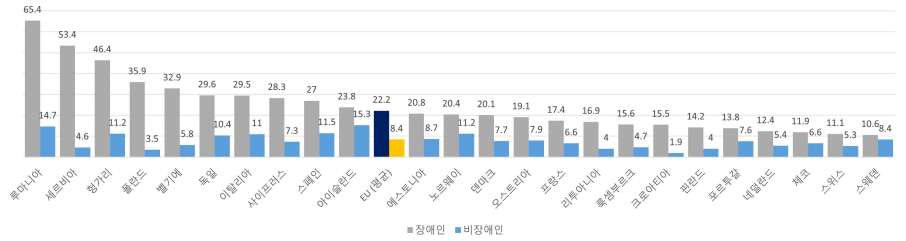
• 2022년 한국의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Schizophrenia, schizotypal and delusional disorders) 환자 평균 입원일수는 247.5일로 OECD 평균 47.26일의 약 5.2배 수준임

2. EU

[그림 3-2-1] EU 국가의 장애인 출현율 - 장애정도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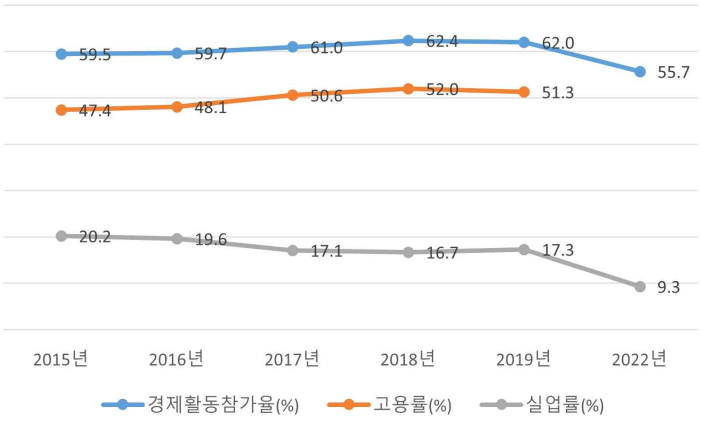
[그림 3-2-2] EU 국가의 학업중단율(18-29세) - 장애유무별(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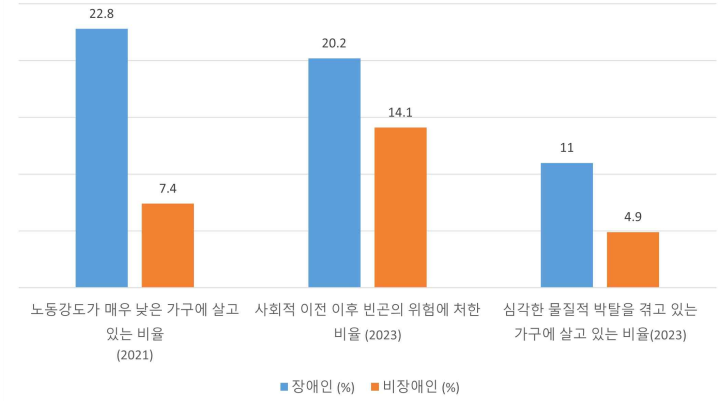
- 2023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출현율은 26.8%임
  -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을 살펴보면, 라트비아(40.7%), 덴마크(36.7%), 핀란드(34.8%)는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 출현율을 보임, 반면, 룩셈부르크(11.9%), 불가리아(13.6%), 몰타(13.8%)는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 출현율을 보임.

- 2022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학업중단율은 22.2%로 비장애인의 8.4% 보다 13.8%p 높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루마니아(65.4%), 세르비아(53.4%), 헝가리(46.4%) 등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스웨덴(10.6%), 스위스(11.1%), 체코(11.6%) 등은 낮은 편임
  -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스웨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학업중단율 차이가 거의 없는 편임

[그림 3-2-3] EU 국가의 장애인 고용 현황 - 연도별



[그림 3-2-4] EU 국가의 빈곤 현황 - 장애유무별(2021년)



- 유럽연합 국가(2015년-2018년: 28개 국가 평균, 2019년: 27개 국가 평균)의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 59.5%에서 2019년 6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55.7%로 감소함
  - 고용률은 2015년 48.1%에서 2018년 52.0%로 증가하였고, 2019년 51.3%로 소폭 감소함
  - 실업률은 2015년 20.2%에서 2019년 17.3%로 감소하였고, 2022년 9.3%로 대폭 감소함

-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이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22.8%로 비장애인의 7.4%에 비해 15.4%p 높음
  - 장애인이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은 2023년 기준 20.2%로 비장애인의 14.1%에 비해 6.1%p 높음
  - 장애인이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은 2023년 기준 11.0%로 비장애인의 4.9%에 비해 6.1%p 높음

1) 장애인구

(1) 장애출현율

〈표 15-1-1〉 EU 국가 장애출현율 – 연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유럽연합(평균)	27.4	25.4	24.2	24.6	25.0	24.5e	24.9	25.2	27.0	26.8
오스트리아	33.0	33.1	34.2	34.2	34.1	33.9	31.9	27.5	28.9	29.7
벨기에	24.0	23.6	24.7	24.8	25.2	27.2b	25.0	24.4	25.6	25.4
불가리아	18.0	19.3	16.2	18.8	16.6	16.1	16.2	17.7	14.6	13.6
크로아티아	28.9	35.1	32.3	32.9	33.4	34.4	32.6	31.9	30.8	28.9b
사이프러스	18.3	20.8	16.0	19.8	24.0	23.5	23.1	19.1	19.2	21.1
체코	23.6	24.9	25.2	28.1	28.0	28.6	29.4	24.7	26.6	26.8
덴마크	28.2	30.5	28.7	30.2	29.0	31.1	33.0	35.2	36.1	36.7
에스토니아	34.1	35.0	32.3	34.4	39.5	35.0	32.6	33.4	30.5	32.5
핀란드	32.6	33.1	32.6	33.5	34.2	35.5	35.0	28.2	33.9	34.8
프랑스	24.8	25.2	25.7	25.4	25.2	25.0	25.1b	22.7	25.3p	26.8
독일	36.2	21.2b	21.3	22.1	22.3	21.8	24.5b	24.5	30.3	28.2e
그리스	24.0	24.8	24.7	24.3	23.8	23.1	23.5	23.3	22.2	23.1
헝가리	26.4	27.7	26.9	26.1	25.4	24.8	22.8	21.5	23.0	22.3
아일랜드	17.6	17.6	16.4	17.0	15.8	16.1	19.4	18.3	20.4	20.5
이탈리아	29.0	29.0	22.3	23.9	23.7	22.1	22.4	22.2	22.7	20.6
라트비아	37.4	38.4	37.4	41.3	40.0	39.5	39.7	37.1	38.5	40.7
리투아니아	25.8	30.7	29.3	30.1	30.6	31.7	32.6	31.2	27.9	27.4
룩셈부르크	23.8	25.7	27.0	28.3	27.2	25.5	24.7b	25.5b	28.5b	11.9
몰타	10.0	9.8	12.9	11.8	11.9	11.8	14.1	16.7	15.1	13.8
네덜란드	28.4	30.7	29.5	30.4	31.2	29.3	28.6	29.9	32.3	32.1
폴란드	24.2	24.4	22.8	24.0	24.0	24.4	24.4	23.0	24.2	24.4
포르투갈	35.2b	36.1	33.0	33.3	33.5	33.0	32.1	34.9	34.0	33.4
루마니아	26.4	26.1	26.1	27.6	26.5	25.4	25.9	29.4	28.7	30.6
슬로바키아	32.0	31.5	29.4	31.9	31.2	31.4	32.1	30.5	30.6	30.5
슬로베니아	29.8	31.5	31.2	36.3	35.4	28.5	22.1	21.4	20.9	21.6
스페인	23.6	24.8	22.4	18.6	20.6	18.4	22.8	28.0	30.4	29.6
스웨덴	12.8b	12.9	12.6	13.1	13.0	13.1	12.9	19.4	21.7	22.6
영국	23.0	23.4	24.2	25.2b	27.3	–	–	–	–	–
스위스	31.6	29.9	31.3	29.8	30.4	30.2	28.7	29.5	31.7	
아이슬란드	17.9	18.2	20.2	25.6	26.0	27.7	–	–	–	
노르웨이	15.7	15.9	16.9	16.3	16.9	19.6	20.0	19.0	20.9	25.4
세르비아	16.2	17.3	15.9	18.7	13.4	14.2	12.7	11.7	12.3	

주: 1) 1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4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SILC_12 / 검색일: 2024-08-20)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3년 EU 국가의 장애출현율은 26.8%로, 2022년(27.0%)과 큰 변화는 없음
  - 2023년 국가별 장애출현율을 살펴보면, 라트비아(40.7%), 덴마크(36.7%), 핀란드(34.8%)는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출현율을 보인 반면, 룩셈부르크(11.9%), 불가리아(13.6%), 몰타(13.8%)는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출현율을 보임.

※ EU SILC 장애 개념
- EU SILC 문항 중 '지난 6개월 동안 건강상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제한됨', '제한됨'에 응답한 사람을 장애가 있다고 정의함

〈표 15-1-2〉 EU 국가 장애출현율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장애정도	
		남성	여성	16-64세	65세 이상	중증	경증
유럽연합(평균)	26.8	24.3	29.2	18.6	51.7	7.2	19.6
오스트리아	29.7	27.6	31.7	23.9	50.9	8.8	20.9
벨기에	25.4	22.9	27.8	20.3	42.1	8.7	16.7
불가리아	13.6	11.4	15.6	6.5	32.0	2.5	11.1
크로아티아	28.9b	26.7b	30.9b	16.1b	65.0b	7.7b	21.2b
사이프러스	21.1	20.7	21.4	13.1	55.2	7.8	13.3
체코	26.8	24.1	29.2	17.0	56.1	7.3	19.5
덴마크	36.7	33.6	39.6	32.8	48.3	6.6	30.1
에스토니아	32.5	29.6	35.0	23.4	59.2	11.5	21.0
핀란드	34.8	30.9	38.8	28.5	51.3	7.2	27.6
프랑스	26.8	24.3	29.1	19.9	45.7	10.2	16.6
독일	28.2e	26.2e	30.1e	19.4e	54.7e	8.7e	19.5e
그리스	23.1	21.1	24.9	10.0	58.9	9.4	13.7
헝가리	22.3	19.2	25.1	12.7	53.3	6.1	16.2
아일랜드	20.5	19.1	21.9	16.0	40.1	5.2	15.3
이탈리아	20.6	18.7	22.5	10.4	47.8	5.1	15.5
라트비아	40.7	35.9	44.3	29.3	72.2	10.1	30.6
리투아니아	27.4	24.5	29.8	16.8	59.2	6.4	21.0
룩셈부르크	11.9	10.3	13.5	9.6	23.3	2.9	9.0
몰타	13.8	11.6	16.2	7.8	37.0	3.8	10.0
네덜란드	32.1	29.3	34.9	25.9	52.2	4.9	27.2
폴란드	24.4	22.3	26.1	15.4	49.8.	7.0	17.3
포르투갈	33.4	28.4	37.9	23.3	59.2	7.6	25.8
루마니아	30.6	25.5	35.2	15.7	74.8	4.4	26.2
슬로바키아	30.5	28.0	32.9	20.6	67.5	8.6	21.9
슬로베니아	21.6	21.1	22.1	16.0	39.8	6.8	14.8
스페인	29.6	26.8	32.2	23.2	50.5	5.1	24.5
스웨덴	22.6	19.6	25.7	19.4	32.2	4.9	17.7
영국	-	-	-	-	-	-	-
스위스[주1)]	31.7	27.8	35.6	27.4	47.1	5.6	26.1
아이슬란드	-	-	-	-	-	-	-
노르웨이	25.4	20.5b	30.4b	23.3b	32.8b	8.1b	17.3b
세르비아[주1)]	12.3	10.4	14.0	6.4	29.4	3.8	8.5

주: 1) 2023년 기준으로, 1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스위스, 세르비아는 2022년 기준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SILC_12 / 검색일: 2024-08-20)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3년 EU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출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여성 장애출현율은 29.2%로 남성 24.3%에 비해 4.9%p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65세 이상 장애출현율은 51.7%로 16-64세 18.6%에 비해 높음.
    특히 루마니아(74.8%)와 라트비아(72.2%)는 65세 이상 장애출현율이 7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경증 장애출현율은 19.6%로 중증 7.2%에 비해 12.4%p 높음.
    특히, 에스토니아(11.5%), 프랑스(10.2%), 라트비아(10.1%)는 중증 장애출현율이 10% 이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건강

(1) 만성질환자 비율

〈표 15-2-1〉 EU 국가 장애인의 만성질환자 비율 – 연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유럽연합(평균)	82.8e	85.9e	85.6e	84.6e	85.2e	85.9e	82.8u	82.6u	81.6	82.7
오스트리아	78.9	79.3	80.3	82.3	78.8	81.0	81.8	85.2	85.0	85.4
벨기에	78.9	79.8	80.5	78.4	77.5	77.6b	80.2	80.2	83.3	84.0
불가리아	74.9	72.9	84.4	86.0	86.9	85.5	83.6	76.6	82.3	85.5
크로아티아	80.4	79.7	85.3	87.5	84	84.7	83.6	79.1	81.2	82.3b
사이프러스	92.8	94.9	94.0	94.5	97.4	97.4	98.3	98.9	97.6	98.3
체코	95.3u	95.7u	95.2u	93u	94.3u	93.9u	94.3u	97.2	97.1	97.8
덴마크	70.2	68.3	71.7	70.7	71.8	71.6	72.0	72.8	71.1	73.1
에스토니아	95.0	94.5	93.3	92.4	87.7	86.6	87.9	90.7	96.3	94.4
핀란드	83.0	83	84.9	84.7	84.6	83.5	82.2	93.1	90.7	90.3
프랑스	86.9	85.5	87.2	86.7	86	85.7	86.3b	88.5	88.1p	86.5
독일	79.4	98.8	98.5	98.8	98.4	98.6	–	–	88.8u	90.5e
그리스	87.3	78.2	80.1	80.8	84.4	87.0	88.5	95.8	93.8	94.8
헝가리	95.9	96.4	94.0	93.5	94.0	96.8	97.8	98.0	97.5	96.9
아일랜드	91.7	90.8	91.5	90.7	88.7	89.9	87b	91.9	91.4	92.1
이탈리아	69.8	70.1	57.1	50.2	55.2	56.5	63.5	64.1	60.4	60.0
라트비아	92.2	91.9	90.7	87.1	86.1	90.2	88.4	87.0	88.2	88.7
리투아니아	87.9	86.5	88.7	86.4	87.6	84.4	84.5	83.6	88.6	91.1
룩셈부르크	60.7	59.7	66.6	64.6	65.2	68.7	69.6b	65.5b	56.1b	78.8
몰타	82.8	88.8	87.5	84.3	82.9	85.9	84.9	82.4	85.5	86.2
네덜란드	80.5	78.5	78.2	77.8	74.8	79.9	79.2	80.4	79.4	80.8
폴란드	89.4	90.3	94.1	94.3	94.0	94.0	93.4	93.1	93.1	95.0
포르투갈	80.8	80.9	80.8	82.1	80.9	81.6	83.0	77.0	79.0	80.5
루마니아	70.0	71.2	68.0	69.2	68.9	68.4	70.6	64.9	64.4	65.8
슬로바키아	82.7	84.3	83.8	80.7	82.4	85.2	88.9	93.4	93.2	91.5
슬로베니아	78.2	77.7	80.5	79.6	80.8	76.1	90.1	87.1	89.2	91.0
스페인	82.6	86.9	86.1	85.5	88.8	87.5	82.4	78.1	76.7	75.2
스웨덴	90.6	90.6	90.4	90.6	90.0	91.9	89.3	88.3	86.3	86.0
영국	100.0	100	100.0	100.0b	100.0	–	–	–	–	–
스위스	75.5	73.9	75.1	73.8	73.3	74.7	73.5	74.8	76.0	–
아이슬란드	100.0	100.0	100.0	74.4	72.6	–	–	–	–	–
노르웨이	91.3	91.4	90.7	90.1	93.7	91.4	92.2	–	100.0	100.0
세르비아	76.7	81.0	83.0	83.8	81.9	80.8	82.2	86.0	85.1	–

주: 1) 16세 이상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6개월 간 만성질환 유무를 조사한 결과임
2) 2014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H020 / 검색일: 2023-07-27)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3년 EU국가의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은 82.7%로, 2022년(81.6%)에 비하여 소폭 증가함
• 2023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노르웨이가 1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이프러스(98.3%), 체코(97.8%), 헝가리(96.9%)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이탈리아(60.0%), 루마니아(65.8%), 덴마크(73.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15-2-2〉 EU 국가 장애인의 만성질환자 비율 (2022)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장애정도	
		남성	여성	16-64세	65세 이상	중증	경증
유럽연합(평균)	82.7	81.6	83.6	80.6	85.0	95.1	78.2
오스트리아	85.4	85.8	85.1	85.9	84.7	97.0	80.5
벨기에	84.0	83.2	84.7	84.7	82.9	94.1	78.8
불가리아	85.5	86.1	85.0	80.1	88.3	94.7	83.4
크로아티아	82.3b	81.8b	82.7b	82.1b	82.5b	95.8b	77.4b
사이프러스	98.3	98.3	98.3	98.0	98.6	98.7	98.1
체코	97.8	97.8	97.7	98.0	97.5	99.3	97.2
덴마크	73.1	66.8	78.3	70.7	77.9	82.6	71.0
에스토니아	94.4	93.4	95.1	92.5	96.4	98.3	92.2
핀란드	90.3	89.5	90.9	88.4	93.1	98.9	88.1
프랑스	86.5	85.0	87.6	84.1	89.3	93.0	82.5
독일	90.5e	90.0e	90.8e	91.1e	89.8e	97.2u	87.5e
그리스	94.8	94.3	95.3	94.3	95.1	98.1	92.6
헝가리	96.9	96.8	96.9	96.4	97.2	98.5	96.3
아일랜드	92.1	93.6	91.0	92.8	91.0	97.7	90.2
이탈리아	60.0	57.1	62.3	51.7	64.8	93.9	48.8
라트비아	88.7	88.8	88.6	84.6	93.2	99.1	85.2
리투아니아	91.1	91.3	91.0	86.0	95.4	97.8	89.0
룩셈부르크	78.8	73.2	83.3	76.4	84.0	85.3	76.7
몰타	86.2	83.9	88.0	85.6	86.7	92.9	83.6
네덜란드	80.8	81.4	80.3	81.4	79.9	96.3	78.0
폴란드	95.0	95.4	94.8	93.8	96.1	98.7	93.5
포르투갈	80.5	77.9	82.2	74.9	86.0	90.6	77.5
루마니아	65.8	62.1	68.2	50.8	75.1	97.6	60.4
슬로바키아	91.5	90.2	92.5	89.9	93.3	99.0	88.6
슬로베니아	91.0	89.4	92.5	89.8	92.7	95.7	88.9
스페인	75.2	73.8	76.4	69.4	84.0	89.8	72.2
스웨덴	86.0	85.5	86.4	85.0	87.7	92.2	84.3
영국	-	-	-	-	-	-	-
스위스[주1)]	76.0	73.9	77.6	74.1	80.0	80.4	75.1
아이슬란드	-	-	-	-	-	-	-
노르웨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르비아[주1)]	85.1	84.6	85.4	71.9	93.4	91.0	82.4

주: 1) 2023년 기준으로, 1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스위스, 세르비아는 2022년 기준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H020 / 검색일: 2024-07-28)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3년 EU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여성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은 83.6%로 남성 81.6%에 비해 2.0%p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65세 이상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은 85.0%로 16-64세 80.6%에 비해 4.4%p 높음. 특히 노르웨이,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는 65세 이상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이 매년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중증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은 95.1%로 경증 78.2%에 비해 16.9%p 높음. 특히 노르웨이(100%), 체코(99.3%), 라트비아(99.1%) 등은 중증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이 9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3) 주거

(1) 주거박탈률

〈표 15-3-1〉 EU 국가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박탈률 - 연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3
유럽연합(평균)	4.5	4.4	4.1	3.7	3.8	3.8e	4.4e	
오스트리아	3.7	3.9	4.6	4.4	4.1	3.5	2.9	3.1
벨기에	0.7	0.9	1.5b	1.8	1.9	1.7b	2.0	1.4
불가리아	12.5	10.8	9.1	8.5	7.9	6.1	6.7	4.9
크로아티아	8.2	7.7	7.3	7.1	6.4	5.9	5.2	3.3b
사이프러스	1.4	0.6	0.7	1.3	0.8	1.1	0.3	
체코	3.7	2.9	2.9	1.5	1.9	1.9	2.2	2.3
덴마크	1.7	2.9	2.2	2.8	3.0	2.3	2.9	6.1
에스토니아	3.9	2.7	4.0	3.5	2.4	3.3	2.8	3.4
핀란드	1.4	1.0	1.0	0.8	0.8	1.0	0.9	1.3
프랑스	1.8	1.8	2.2	1.7	2.5	2.1	3.0b	3.7
독일	1.7	1.3	1.4	1.5	1.7	1.8	1.9b	
그리스	6.8	6.6	6.3	5.9	5.4	5.7	5.9	4.4
헝가리	14.6	13.8	14.7	14.3	6.1	5.9	6.1	9.8
아일랜드	0.7	1.4	0.8	0.6	1.2	0.9	1.3b	
이탈리아	9.1	7.8	6.1	4.4	5.7	5.2	6.2	
라트비아	16.1	14.9	13.9	14.4	13.9	12.5	11.3	11.8
리투아니아	6.9	8.3	6.5	6.4	6.1	6.8	4.7	4.4
룩셈부르크	1.4	1.6	1.7	2.0	2.0	2.6	2.5b	
몰타	0.5	1.0	0.8	0.9	1.7	2.0	0.7	
네덜란드	0.7	0.4	1.4	0.9	1.1	1.1	1.4	0.4
폴란드	9.2	11.1	11.5	10.3	10.5	9.2	-	
포르투갈	4.3	4.2	4.6	3.5	3.4	3.4	3.1	
루마니아	16.9	15	13.5	12.6	12.5	10.8	10.7	8.1
슬로바키아	3.1	3.7	3.9	5.5	4.0	4.0	3.6	3.1
슬로베니아	6.7	5.8	4.2	4.1	4.4	3.0	4.2	3.8
스페인	1.2	1.0	1.5	0.7	1.8	1.8	3.5	2.8
스웨덴	3.4	3.6	4.9	4.5	4.9	3.0	1.9	3.3
영국	1.6	1.4	1.3	1b	1.6	-	-	
스위스	1.3	1.2	1.9	1.1	1.3	1.4	1.2	
아이슬란드	2.5	2.1	2.0	1.2	1.3	-	-	
노르웨이	1.2	1.6	1.1	1.3	1.2	0.7	0.7	
세르비아	18.8	20.2	19.4	20.8	15.7	17.9	12.7	

주: 1) 16세 이상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심각한 주거박탈률을 조사한 결과임
2) 2014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HC030 / 검색일: 2024-7-29)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0년 유럽연합 국가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박탈률은 4.4%로 2019년에 비하여 증가함
  • 2020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박탈률을 살펴보면, 세르비아가 1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라트비아(11.3%), 루마니아(1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EU SILC 주거박탈의 정의
- EU SILC에서 주거박탈은 주거 내 거주 인구가 많고, 편의시설이 열악함을 의미함(내용 출처-EUROSTAT statistics explained)

(2) 주거비 부담률

〈표 15-3-2〉 EU 국가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 - 연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유럽연합(평균)	13.1	12.5	12.5	12.5	12.4	12.1e	8.9	8.5	10.6	11.1
오스트리아	7.1	6.6	7.5	7.3	7.2	7.6	7.5	8.0	8.5	8.0
벨기에	15.7	15.0	15.9	14.4	15.0	12.9b	13.5	13.3	13.8	14.3
불가리아	15.0	21.6	27.2	29.0	25.0	22.4	22.0	16.8	24.2	15.3
크로아티아	10.4	10.2	9.8	8.9	8.3	7.9	7.6	8.0	7.3	7.8b
사이프러스	4.8	2.5	2.4	2.7	1.3	1.5	2.2	2.6	2.7	3.2
체코	16.1	16.8	15.1	15.8	-	12.5	11.6	9.1	10.7	13.0
덴마크	20.9	20.3	20.7	22.1	21.9	21.0	19.1	19.6	20.8	21.0
에스토니아	8.7	6.9	5.6	5.3	5.5	5.1	4.8	4.8	7.1	9.4
핀란드	6.3	7.1	4.4	5.1	-	5.2	6.1	4.8	7.0	7.1
프랑스	5.5	7.3	5.9	6.0	5.4	7.0	7.2b	-	8.4p	8.0
독일	20.6	21.6	22.6	20.8	19.2	17.7	10.2b	13.5	15.0	16.2e
그리스	39.9	39.7	34.1	34.9	34.5	33.7	29.4	24.9	28.4	31.5
헝가리	13.6	9.6	10.6	12.2	-	4.5	3.7	2.7	11.5	9.8
아일랜드	6.0	4.7	5.6	4.6	3.2	4.2	3.4b	2.3	3.3	4.3
이탈리아	8.0	7.8	9.0	7.4	8.3	8.9	6.9	6.5	7.1	6.3
라트비아	11.6	9.6	9.4	8.8	-	7.3	6.0	6.3	7.5	9.1
리투아니아	9.9	12.9	11.8	8.9	7.2	6.3	3.3	3.2	5.0	6.4
룩셈부르크	8.3	8.0	8.5	7.4	12.3	12.2	10.7b	7.0b	15.0b	17.6
몰타	1.6	1.4	3.0	1.8	1.3	2.4	3.1	3.0	3.4	6.4
네덜란드	19.4	18.0	15.5	14.2	13.4	14.8	11.5	13.1	16.0	15.2
폴란드	11.3	9.9	9.3	9.0	8.7	7.9	7.8b	9.3	8.4	8.9
포르투갈	8.3	8.2	6.8	6.9	5.9	5.6	3.7	5.9	5.1	4.3
루마니아	17.0	16.5	15.4	13.8	-	11.1	8.9	8.4	10.2	10.7
슬로바키아	9.6	8.9	9.1	12.2	5.3	5.0	4.7	6.6	2.7	5.4
슬로베니아	7.5	7.0	6.7	6.1	6.6	5.1	6.3	6.2	5.0	5.5
스페인	9.2	8.4	8.1	8.1	7.8	7.1	8.0	9.5	8.9	7.5
스웨덴	13.2	11.0	11.7	15.1	14.7	17.1	13.6	14.8	17.2	18.2
영국	11.7	11.8	12.1	14.6b	18.5	-	-	-	-	-
스위스	17.5	17.2	18.6	18.1	19.5	21.6	20.6	20.7	19.6	-
아이슬란드	9.2	9.8	6.2	10.2	8.2	-	-	-	-	-
노르웨이	8.5	14.5	12.6	11.4	12.0	18.5	12.7	14.0b	15.2	15.6
세르비아	34.6	36.4	-	38.7	36.0	24.7	23.8	17.9	17.2	-

주: 1) 16세 이상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과다부담률을 조사한 결과임
2) 2014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HC060 / 검색일: 2024-7-8)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3년 유럽연합 국가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은 11.1%로 2022년에 비하여 0.5% 증가함
  - 2023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을 살펴보면, 그리스가 3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덴마크(21.0%), 스웨덴(1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사이프러스(3.2%), 아일랜드, 포르투갈 (각 4.3%)은 상대적으로 주거비 과담부담률이 낮게 나타남

EU SILC 주거비 과다부담률의 정의

- 주거비 과다부담률은 전체 가구 중 주거비가 가처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함. 여기서 주거비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로, 주거유지비,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을 포함함(내용출처-EUROSTAT(2019) Disability statistics-/housing conditions)

(3) 주거지 내 환경 문제

〈표 15-3-3〉 EU 국가 장애인의 주거지 내 환경 문제 - 연도별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붕이 새거나, 벽, 바닥 등은 젖었거나, 창문 틀 및 바닥이 부패된 주거지에 살고 있음	19.3	19.1	18.8	17.2e	17.8e	16.9e	18.6	18.6e		18.9e
목욕 및 샤워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3.1	3.0	2.9	3.0e	2.6e	2.5e	2.6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3.1	3.0	3.1	3.3e	2.8e	2.7e	2.7			
너무 어두운 주거지에 살고 있음	7.4	7.2	7.1	6.8e	7.3e	7.1e	8.3u			8.3e
이웃 또는 거리에서 소음이 심한 주거지에 살고 있음	21.6	21.5	20.9	21.1e	21.6e	21.0e	20.9e			22.5e
오염, 얼룩 또는 다른 환경적 문제가 있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3.0	13.3	13.2	13.0e	13.8e	14.1e	12.8e			11.2e
지역 내 범죄, 폭력 또는 공공기물 파손이 발생하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6.7	16.6	13.3	15.0e	15.2e	14.9e	13.4e			13.0e
적절하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없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4.0	13.6	13.4	11.4	11.0	10.3e	10.7	11.3	13.8	15.1

주: 1) 16세 이상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주거지 내 환경 문제를 조사한 결과임
2) 2014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HC070 ~ HLTH_DHC140 / 검색일: 2024-08-20)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3년 EU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주거 내 환경 문제를 살펴보면, '이웃 또는 거리에서 소음이 심한 주거지에 살고 있음'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붕이 새거나, 벽, 바닥 등은 젖었거나, 창문 틀 및 바닥이 부패된 주거지에 살고 있음' 18.9%, '지역 내 범죄, 폭력 또는 공공기물 파손이 발생하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3.0%, '오염, 얼룩 또는 다른 환경적 문제가 있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1.2% 순으로 나타남

4) 교육

(1) 학업중단율

〈표 15-4-1〉 EU 국가의 학업중단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2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24.3	24.0	20.3	20.8	21.8	22.2	8.4	13.8
오스트리아	22.1	22.6	22.6	16.5	15.4	19.1	7.9	11.2
벨기에	24.5	19.9	20.5	20.6	13.7	32.9	5.8	27.1
불가리아	40.0	42.8	41.0	34.9	(16.3)	-	10.0	-
크로아티아	15.0	19.4	17.0	21.9	18.4	15.5	1.9	13.6
사이프러스	23.5	21.7	16.5	18.6	8.0	28.3	7.3	21.0
체코	10.9	13.4	19.1	17.0	(8.2)	11.9	6.6	5.3
덴마크	13.6	11.6	12.2	7.8	18.0	20.1	7.7	12.4
에스토니아	22.7	22.6	26.9	16.9	20.3	20.8	8.7	12.1
핀란드	17.0	13.6	16.1	14.9	20.3	14.2	4.0	10.2
프랑스	15.5	16.1	21.0	19.4	19.2	17.4	6.6	10.8
독일	26.8	27.7	26.3	26.1	30.0	29.6	10.4	19.2
그리스	17.3	12.4	17.1	17.5	(7.8)	-	4.0	-
헝가리	21.9	28.3	27.6	24.9	17.1	46.4	11.2	35.2
아이슬란드	16.7	-	-	-	-	23.8	15.3	8.5
아일랜드	24.1	40.0	25.6	9.5	(28.3)	-	3.0	-
이탈리아	22.1	30.8	25.6	28.9	27.0	29.5	11.0	18.5
라트비아	27.1	25.1	17.3	19.9	16.6	-	7.3	-
리투아니아	43.2	42.9	25.1	15.4	15.9	16.9	4.0	12.9
룩셈부르크	14.3	21.5	17.3	22.0	17.0	15.6	4.7	10.9
몰타	(49.6)	(63.0)	(44.9)	(43.9)	a	-	7.8	-
네덜란드	14.0	15.5	12.3	9.3	15.4	12.4	5.4	7.0
노르웨이	-	-	36.7	21.8	-	20.4	11.2	9.2
폴란드	18.8	16.7	11.8	14.9	10.5	35.9	3.5	32.4
포르투갈	35.9	31.6	32.8	32.0	23.2	13.8	7.6	6.2
루마니아	41.1	42.7	31.3	33.6	41.4	65.4	14.7	50.7
세르비아	22.3	33.4	21.6	25.8	-	53.4	4.6	48.8
슬로바키아	8.9	12.1	9.4	10.3	18.3	-	5.7	-
슬로베니아	8.1	8.8	6.0	7.8	5.7	-	3.6	-
스페인	45.7	45.5	31.2	33.9	32.4	27.0	11.5	15.5
스웨덴	(13.4)	(20.2)	11.7	(19.4)	(6.5)	10.6	8.4	2.2
스위스	10.0	7.3	-	8.4	-	11.1	5.3	5.8
영국	30.0	24.9	12.6	18.8	-	-	-	-

주: 1) 2014년~2018년은 18-29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2019, 2022년은 18세-2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8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 ) 수치는 관측지가 20-49명 수준으로 해석시 주의해야 함. a는 관측지가 20명 미만을 의미함

자료: 1) ANED(2018)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 People with disabilities
2) ANED(2019)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tables(EU SILC 2017)
3) ANED(2020)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 tables(EU SILC 2018)
4) EDE(2020)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EU SILC 2019)
5)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edat_lfse_40 / 검색일: 2024-07-28)

- 2022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학업중단율은 22.2%로 나타남
  • 비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은 8.4%로 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3.8%p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 학업중단율은 루마니아(65.4%), 세르비아(53.4%), 헝가리(46.4%) 등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스웨덴(10.6%), 스위스(11.1%), 체코(11.6%) 등은 낮은 편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루마니아(50.7%p), 세르비아(48.8%p)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이 비장애인과 격차가 크게 나타난 반면, 스웨덴(2.2%p)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학업중단율 차이가 2.2%p로 크기 않음

(2) 고등교육 이수율

〈표 15-4-2〉 EU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2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27,5	29,3	30.9	32.6	32.5	28.2	43.2	-15.0
오스트리아	28,6	29,7	32.4	36.0	34.7	30.7	45.1	-14.4
벨기에	30,6	33,4	32.3	36.3	30.4	21.6	50.3	-28.7
불가리아	12,5	14,4	15.1	13.7	(6.4)	-	32.6	-
크로아티아	17,6	15,3	22.2	19.2	28.7	13.5	36.5	-23.0
사이프러스	38,3	44,2	34.3	37.7	42.7	37.1	60.2	-23.1
체코	16,6	15,5	24.4	32.7	27.1	27.1	33.7	-6.6
덴마크	40,4	44,8	43.2	44.3	49.5	32.0	53.5	-21.5
에스토니아	36,8	34,4	30.8	45.1	44.0	31.5	45.1	-13.6
핀란드	41,4	42,2	40.3	41.1	40.1	34.9	45.2	-10.3
프랑스	32,4	35,0	37.8	38.0	42.5	36.0	51.8	-15.8
독일	18,7	15,6	20.6	18.7	25.1	22.8	40.5	-17.7
그리스	28,7	26,3	26.8	26.5	20.2	-	44.6	-
헝가리	20,5	19,8	19.5	20.7	33.7	-	32.5	-
아이슬란드	37,9	-	-	-	-	28.4	43.0	-14.6
아일랜드	46,5	39,9	44.6	45.4	(30.4)	36.9	64.7	-27.8
이탈리아	20,7	20,7	18.0	22.3	16.6	14.1	29.7	-15.6
라트비아	24,8	26,5	41.1	37.3	32.1	-	46.1	-
리투아니아	24,4	23,0	25.8	37.0	54.1	38.2	59.1	-20.9
룩셈부르크	33,1	34,4	27.4	34.4	46.8	45.6	62.2	-16.6
몰타	4,2	13,5	(15.9)	18.4	(40.2)	-	42.9	-
네덜란드	36,4	42,0	43.6	47.0	41.7	37.7	56.4	-18.7
노르웨이	25,7	32,8	34.9	31.8	-	37.9	60.3	-22.4
폴란드	22,0	26,7	31.9	27.5	33.1	12.8	43.0	-30.2
포르투갈	21,3	22,1	27.0	29.1	24.0	26.6	41.5	-14.9
루마니아	15,4	25,5	22.5	21.7	22.6	-	25.1	-
세르비아	10,7	13,6	15.3	17.7	-	9.1	33.7	-24.6
슬로바키아	33,1	30,0	25.4	22.7	34.6	-	40.6	-
슬로베니아	29,2	33,6	35.1	36.9	34.4	27.4	48.1	-20.7
스페인	27,6	33,4	34.3	31.0	36.1	28.2	50.6	-22.4
스웨덴	31,3	44,8	33.0	29.0	(21.8)	38.5	54.4	-15.9
스위스	40,1	40,1	-	40.7	-	39.6	53.4	-13.8
영국	34,5	34,4	41.4	46.2	-	-	-	-

주: 1) 2014년-2018년은 30-39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2019년은 30-3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2022년은 25-3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 2018년 EU평균은 28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 2022년 EU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 ) 수치는 관측치가 20-49명 수준으로 해석시 주의해야 함. a는 관측치가 20명 미만을 의미함

자료: 1) ANED(2018)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 People with disabilities
2) ANED(2019)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tables(EU SILC 2017)
3) ANED(2020)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 tables(EU SILC 2018)
4) EDE(2020)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EU SILC 2019)
5)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lfs_9920 / 검색일: 2024-07-28)

OECD국가는 학력수준을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본 데이터는 ISCED levels 5~8 이수 이상을 조사한 결과임

- 2022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고등교육 이수율은 28.2%로 나타남
  - 비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3.2%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5.0%p 낮음
- 2022년 기준으로 국가별로 살펴보면, 룩셈부르크(45.6%), 스위스(39.6%), 스웨덴(38.5%)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세르비아(9.1%), 폴란드(12.8%)등은 낮은 편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체코(6.6%p), 핀란드(10.3%p)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의 차이가 적게 나타난 반면, 폴란드(30.2p), 벨기에(28.7%p) 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 차이가 크게 나타남

5) 고용

(1) 고용률

〈표 15-5-1〉 EU 국가의 고용률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48.7	47.4	48.1	50.6	52.0	51.3	75.6	-24.3
오스트리아	54.2	53.4	56.4	56.3	56.5	54.6	77.5	-22.9
벨기에	38.7	38.5	40.5	42.5	43.8	44.1	77.3	-33.2
불가리아	33.5	38.8	34.2	39.5	35.4	40.2	76.6	-36.4
크로아티아	28.3	33.8	35.0	33.8	34.3	37.0	71.0	-34.0
사이프러스	45.2	45.7	43.5	47.3	49.7	52.4	77.4	-25.0
체코	40.0	43.0	43.9	49.4	51.9	55.2	81.2	-26.0
덴마크	50.6	56.1	55.9	57.7	60.9	60.1	78.9	-18.8
에스토니아	55.1	58.5	56.8	62.2	64.3	64.9	85.9	-21.0
핀란드	55.2	53.8	53.9	54.4	58.3	56.9	77.8	-20.9
프랑스	52.0	52.5	56.3	55.5	57.2	56.9	75.1	-18.2
독일	59.7	50.8	48.9	51.8	50.0	53.3	82.2	-28.9
그리스	27.8	34.3	36.2	36.7	31.1	32.6	62.8	-30.2
헝가리	34.2	39.6	41.6	46.7	48.3	50.2	79.3	-29.1
아이슬란드	51.2	50.1	-	-	-	-	-	-
아일랜드	28.3	29.1	26.2	32.2	37.3	32.6	76.5	-43.9
이탈리아	49.8	49.5	48.9	51.8	51.9	51.6	68.6	-17.0
라트비아	54.9	57.3	58.2	61.8	61.1	60.8	79.0	-18.2
리투아니아	35.7	40.5	46.4	47.3	49.8	53.9	79.8	-25.9
룩셈부르크	57.8	53.7	52.2	53.0	51.1	51.5	73.1	-21.6
몰타	28.2	25.8	29.0	37.2	42.5	47.1	75.8	-28.7
네덜란드	48.3	52.2	53.6	58.5	60.6	56.3	83.1	-26.8
노르웨이	52.3	48.4	47.8	49.0	47.8	-	-	-
폴란드	37.9	37.8	37.6	42.5	40.2	43.3	75.8	-32.5
포르투갈	48.1	51.1	50.5	56.1	58.4	59.8	79.1	-19.3
루마니아	41.9	43.4	43.5	43.7	45.5	46.3	74.3	-28.0
세르비아	25.8	23.6	22.9	25.2	25.7	-	-	-
슬로바키아	52.8	53.4	52.3	57.7	56.5	56.3	79.4	-23.1
슬로베니아	46.4	51.8	51.2	53.7	55.6	55.0	76.0	-21.0
스페인	38.5	42.1	40.5	40.1	43.1	39.0	69.8	-30.8
스웨덴	56.6	52.2	52.0	52.6	52.7	58.4	82.4	-24.0
스위스	70.4	68.1	67.6	-	67.2	-	-	-
영국	47.3	46.8	48.9	52.9	58.2	-	-	-

주: 1) 20세-6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8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1) ANED(2018)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 People with disabilities
2) ANED(2019)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tables(EU SILC 2017)
3) ANED(2020)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 tables(EU SILC 2018)
4) EDE(2020)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EU SILC 2019)

- 2019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고용률은 51.3%로 나타남
  •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76.2%로 장애인의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4.2%p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에스토니아(64.9%), 라트비아(60.8%), 덴마크(60.1%)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아일랜드(32.6%), 크로아티아(37.0%), 스페인(39.0%) 등은 낮은 편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차이를 살펴보면, 아일랜드(43.9%p), 불가리아(36.4%p), 크로아티아(34.0%p)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편임. 반면, 이탈리아(17.0%p), 프랑스(18.2%p), 라트비아(18.2%p) 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임

〈표 15-5-2〉 EU 국가의 고용률 -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장애정도	
		남성	여성	중증	경증
유럽연합(평균)	51.3	53.9	49.0	29.8	58.8
오스트리아	54.6	59.5	71.1	26.3	62.6
벨기에	44.1	46.2	69.9	15.9	58.4
불가리아	40.2	39.2	73.4	-14.7	45.4
크로아티아	37.0	38.2	63.2	22.5	42.1
사이프러스	52.4	56.6	73.3	26.2	60.8
체코	55.2	57.9	76.2	27.2	64.1
덴마크	60.1	62.9	73.6	38.4	65.4
에스토니아	64.9	64.1	80.2	47.1	71.8
핀란드	56.9	53.2	71.4	33.2	62.1
프랑스	56.9	56.9	71.7	43.4	63.6
독일	53.3	55.7	76.9	29.0	64.3
그리스	32.6	36.7	28.9	21.3	40.9
헝가리	50.2	52.9	74.4	20.8	60.5
아일랜드	-	-	-	-	-
이탈리아	32.6	38.8	70.6	17.7	38.9
라트비아	51.6	59.8	66.7	24.8	58.4
리투아니아	60.8	59.5	73.7	35.9	65.2
룩셈부르크	53.9	52.5	74.2	18.2	60.1
몰타	51.5	55.1	68.4	35.0	58.2
네덜란드	47.1	60.2	73.5	-45.6	47.5
노르웨이	56.3	59.7	76.5	22.9	63.0
폴란드	-	-	-	-	-
포르투갈	43.3	45.1	70.4	24.4	50.3
루마니아	59.8	62.1	74.6	42.0	63.9
세르비아	46.3	56.9	69.9	-12.4	54.3
슬로바키아	-	-	-	-	-
슬로베니아	56.3	60.1	74.1	30.1	64.6
스페인	55.0	55.1	71.4	45.6	58.6
스웨덴	39.0	40.7	66.1	21.3	42.7
스위스	58.4	58.1	79.8	44.6	64.1
영국	-	-	-	-	-

주: 1) 2019년 기준이며, 20세-6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EDE(2020)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EU SILC 2019)

(2) 실업률

〈표 15-5-3〉 EU국가의 실업률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2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20.2	19.6	17.1	16.7	17.3	9.3	5.8	3.5
오스트리아	18.1	16.7	15.4	15.6	18.3	8.4	3.9	4.5
벨기에	22.5	19.8	19.9	17.5	16.4	6.0	5.4	0.6
불가리아	28.8	26.7	22.4	21.8	16.2	-	4.1	-
크로아티아	36.9	34.0	34.7	33.0	27.9	9.0	6.5	2.5
사이프러스	26.5	28.1	21.9	24.7	20.7	11.1	6.4	4.7
체코	23.8	25.0	18.7	15.6	12.6	2.2	2.2	0.0
덴마크	15.0	15.3	15.8	12.6	12.7	6.0	3.6	2.4
에스토니아	9.5	10.3	8.3	8.9	8.7	9.9	4.7	5.2
핀란드	20.4	20.8	21.3	18.8	18.0	9.4	5.2	4.2
프랑스	16.8	17.1	17.1	17.1	16.9	10.2	6.4	3.8
독일	23.5	23.9	20.9	22.8	20.1	5.3	2.6	2.7
그리스	34.7	32.2	32.0	32.8	31.1	22.7	12.2	10.5
헝가리	20.2	17.9	14.7	15.4	12.4	9.5	3.3	6.2
아이슬란드	7.4	-	-	-	-	5.3	3.0	2.3
아일랜드	28.1	32.0	26.1	22.1	20.1	8.7	3.8	4.9
이탈리아	20.0	22.1	17.5	16.7	16.8	12.6	7.7	4.9
라트비아	16.2	15.7	14.1	13.6	15.2	12.5	6.3	6.2
리투아니아	25.0	20.3	20.9	20.0	16.4	14.5	5.4	9.1
룩셈부르크	12.8	12.1	12.2	13.4	13.4	5.4	3.8	1.6
몰타	17.6	14.4	9.0	5.6	3.7	-	3.0	
네덜란드	11.2	10.0	7.0	6.9	7.2	5.2	2.3	2.9
노르웨이	9.4	9.9	11.9	10.5	-	3.9	2.4	1.5
폴란드	20.8	19.4	15.3	14.3	13.4	6.3	2.7	3.6
포르투갈	24.1	24.2	19.5	18.6	17.6	8.7	5.7	3.0
루마니아	4.3	3.9	2.9	0.9	2.5	9.6	5.1	4.5
세르비아	53.6	57.1	57.1	51.9	-	17.4	9.2	8.2
슬로바키아	17.0	17.0	13.3	13.2	13.2	8.6	5.7	2.9
슬로베니아	22.9	24.1	20.6	19.0	20.5	9.6	3.5	6.1
스페인	34.7	34.2	31.6	32.8	30.0	22.6	12.0	10.6
스웨덴	16.9	20.6	20.3	22.7	16.6	11.1	5.7	5.4
스위스	6.6	7.3	-	7.2	-	6.6	3.6	3.0
영국	11.2	8.7	8.5	6.6	-	-	-	-

주: 1) 20세-6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8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1) ANED(2018)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 People with disabilities
2) ANED(2019)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tables(EU SILC 2017)
3) ANED(2020)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 tables(EU SILC 2018)
4) EDE(2020)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EU SILC 2019)
5)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lfsa_urgaeddl / 검색일: 2024-07-28)

- 2022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실업률은 9.3%로 나타남
  • 비장애인의 실업률은 5.8%로 장애인의 실업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3.5%p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 실업률을 살펴보면, 그리스(22.7%), 스페인(22.6%), 크로아티아(17.4%)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체코(2.2%), 노르웨이(3.9%) 등은 낮은 편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업률 차이를 살펴보면, 스페인(10.6%), 그리스(10.5%)등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편인 반면, 체코(0.0%), 벨기에(0.6%) 등은 격차가 작은 편임

(3) 경제활동참가율

〈표 15-5-4〉 EU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2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59.5	59.7	61.0	62.4	62.0	55.7	83.1	-27.4
오스트리아	65.2	67.7	66.6	66.9	66.8	61.4	85.9	-24.5
벨기에	49.7	50.4	53.1	53.1	52.7	44.4	81.9	-37.5
불가리아	54.5	46.7	50.9	45.3	48	13.3	82	-68.7
크로아티아	53.5	53.1	51.7	51.2	51.3	34.9	80	-45.1
사이프러스	62.1	60.5	60.6	66.0	66.1	50.1	87	-36.9
체코	56.5	58.5	60.7	61.5	63.1	78.2	83.7	-5.5
덴마크	66.0	66.0	68.5	69.7	68.8	60.8	91.6	-30.8
에스토니아	64.6	63.3	67.8	70.6	71	67.4	91.2	-23.8
핀란드	67.5	68.1	69.1	71.8	69.4	74.2	90	-15.8
프랑스	63.0	67.9	66.9	69.0	68.4	61.2	83.6	-22.4
독일	66.3	64.3	65.4	64.7	66.7	64.1	88.6	-24.5
그리스	52.5	53.4	54.0	46.3	47.4	23.8	77.7	-53.9
헝가리	49.6	50.7	54.7	57.1	57.3	31.7	87	-55.3
아이슬란드	54.2	-	-	-	-	65.9	94.9	-29.0
아일랜드	40.5	38.5	43.5	47.9	40.8	48.4	86.6	-38.2
이탈리아	62.0	62.7	62.8	62.3	62	43.6	73.1	-29.5
라트비아	68.3	69.0	72.0	70.6	71.7	57.5	87.6	-30.1
리투아니아	54.1	58.2	59.8	62.2	64.5	48.1	89.4	-41.3
룩셈부르크	61.6	59.4	60.3	59.0	59.4	68	80.5	-12.5
몰타	31.3	33.9	40.8	45.1	49	51.8	86.0	-34.2
네덜란드	58.7	59.5	62.9	65.0	60.6	65.1	93.1	-28.0
노르웨이	53.5	53.0	55.6	53.4	-	53.8	91.7	-37.9
폴란드	47.8	46.7	50.2	46.9	50	34.9	83.2	-48.3
포르투갈	67.3	66.7	69.7	71.8	72.5	59.8	86.3	-26.5
루마니아	45.3	45.3	45.0	45.9	47.5	27.8	76.4	-48.6
세르비아	50.9	53.3	58.7	53.5	-	25.7	78.2	-52.5
슬로바키아	64.3	63.0	66.5	65.1	64.9	53.4	86.2	-32.8
슬로베니아	67.2	67.4	67.7	68.6	69.2	52.8	84.2	-31.4
스페인	64.5	61.5	58.5	64.1	55.7	48.7	83.8	-35.1
스웨덴	62.9	65.4	66.0	68.1	70.1	69.8	91.4	-21.6
스위스	72.9	72.9	-	72.4	-	72.4	89.7	-17.3
영국	52.7	53.6	57.8	62.4	-	-	-	-

주: 1) 20세-6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8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1) ANED(2018)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 People with disabilities
2) ANED(2019)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tables(EU SILC 2017)
3) ANED(2020)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 tables(EU SILC 2018)
4) EDE(2020)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EU SILC 2019)
5)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lfsa_argaeddl / 검색일: 2024-07-28)

- 2022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55.7%로 나타남
  •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3.1%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27.4%p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체코(78.2%), 핀란드(74.2%), 스위스(72.4%)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불가리아(13.3%), 그리스(23.8%), 세르비아(25.7%), 루마니아(27.8%) 등은 낮은 편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를 살펴보면, 불가리아(68.7%), 그리스(53.9%)등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인 반면, 체코(5.5%), 룩셈부르크(12.5%), 핀란드(15.8%) 등은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6) 빈곤

(1)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표 15-6-1〉 EU국가 내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25.4	25.7	23.8	22.7	22.8e	22.6	22.8	7.4	15.4
오스트리아	17.2	16.6	16.7	16.1	17.8	17.3	20.7	5.6	15.1
벨기에	40.2	39.1	33.6	31.5	31.8b	33.5	34.3	7.9	26.4
불가리아	22.9	27.6	26.3	25.3	24.1	22.7	20.8	7.0	13.8
크로아티아	29.8	27.7	27.3	26.4	24.4	24.6	22.7	6.9	15.8
사이프러스	24.5	23.4	26.4	19.1	18.8	17.5	22.7	4.7	18.0
체코	23.1	22.3	20.1	16.6	18.7	19.6	18.3	2.8	15.5
덴마크	23.3	26.3	24.1	20.6	18.4	18.9	18.3	7.1	11.2
에스토니아	18.8	19.3	18.3	15.1	16.4	15.5	13.4	2.8	10.6
핀란드	22.3	22.7	20.0	20.8	19.5	19.1	19.6	7.2	12.4
프랑스	20.4	17.4	17.7	17.6	19.3	24.6b	26.9	7.9	19.0
독일	29.4	30.2	28.9	28.2	25.7	29.1b	28.9	7.0	21.9
그리스	30.1	33.8	32.4	35.2	39.6	34.0	31.9	12.8	19.1
헝가리	25.2	23.8	20.6	20.8	19.3	16.6	20.6	3.6	17.0
아일랜드	45.1	47.4	39.7	34.5	38.8	31.5b	38.2	8.6	29.6
이탈리아	20.4	22.1	21.2	22.1	23.0	22.3	23.6p	11.4p	12.2
라트비아	16.2	16.2	15.2	16.3	16.4	15.5	15.1	4.4	10.7
리투아니아	27.3	29.9	26.2	21.5	18.2	18.2	22.2	5.3	16.9
룩셈부르크	15.5	15.5	14.5	19.3	19.4	21.5b	17.4b	4.5b	12.9
몰타	34.6	34.5	28.3	21.4	15.1	19.9	16.0	3.7	12.3
네덜란드	25.3	24	24.1	19.8	25.1	25.0	24.0	5.2	18.8
폴란드	21.6	21.8	19.4	21.5	17.9	17.5	18.2p	3.2p	15.0
포르투갈	21.2	19.8	16.3	15.8	14.3	11.0	11.2	4.5	6.7
루마니아	20.1	18.3	17.7	17.9	15.0	15.6	17.8	3.7	14.1
슬로바키아	13.2	11.8	9.8	10.4	12.0	12.1	-	-	-
슬로베니아	13.9	15.0	13.4	12.4	12.8	16.9	18.2	3.0	15.2
스페인	30.6	32.9	31.4	28.7	34.0	24	21.4	10.2	11.2
스웨덴	27.3	27.3	24.4	26.3	21.9	24.6	19.4	7.4	12.0
영국	31.6	31.5	26.7b	22.9	-	-	-	-	-
스위스	11.8	13.4	13.5	13.6	14.6	12.7	-	-	-
아이슬란드	19.2	16.4	11.9	11.2	-	-	-	-	-
노르웨이	27.7	27.6	27.3	28.8	32.5	25.4	-	-	-
세르비아	36.6	41.7	36.1	34.6	39.2	39.3	-	-	-

주: 1) 60세 이하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5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PE040 / 검색일: 2024-08-17)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1년 유럽연합 국가의 장애인 중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은 22.8%로 전년대비 증가함
  - 비장애인 중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은 7.4%로 장애인 중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15.4%p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국가별로 장애인 중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아일랜드 38.2%, 벨기에 34.3%, 그리스 31.9%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포르투갈 11.2%, 에스토니아 13.4%, 라트비아 15.1% 등은 낮은 편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차이를 살펴보면, 아일랜드 29.6%, 벨기에 26.4%, 독일 21.9%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편임

Europe 2020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사는 사람

- Europe 2020은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인구'의 구성요소로 낮은 노동 강도를 포함시켰으며,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전에 의존하고 공통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기에 사회적 배제와 비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봄
- 낮은 노동 강도는 지난 1년 동안 총 근로가능한 날 중 20% 미만만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는 가구 내 근로 가능한 가구원이 지난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이 이론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기간의 2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

(2) 사회적 이전(social transfers) 이후 빈곤 위험

〈표 15-6-2〉 EU국가 내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19.6	20.0	20.2	20.5	21.3	21.5e	21.0	21.1	20.5	20.2	14.1	6.1
오스트리아	16.1	16.6	16.1	15.7	16.3	16.5	16.5	17.9	17.3	17.2	12.6	4.6
벨기에	22.1	22.2	22.4	20.9	23.5	20.3b	21.2	18.8	21.1	17.9	10.1	7.8
불가리아	24	30.3	30.8	35.5	31.2	34.5	37.5	31.6	37.0	24.2	19.7	4.5
크로아티아	25.3	28.5	27.7	29.0	29.5	30.0	31.4	31.8	32.7	34.9b	13.9b	21.0
사이프러스	21.9	21.8	22.3	22.6	22.8	23.1	22.3	21.6	23.2	24.2	11.1	13.1
체코	14.1	13.7	14.1	16.2	19.1	20.2	19.0	12.4	17.5	14.9	7.3	7.6
덴마크	14.1	13.9	14.3	14.6	15.6	12.9	13.9	14.6	15.1	14.7	10.7	4.0
에스토니아	31.1	32.8	35.0	34.8	38.5	35.7	35.9	34.0	44.4	37.9	18.1	19.8
핀란드	17.7	16.7	15.4	14.2	15.4	15.5	15.8	13.5	17.6	16.6	10.8	5.8
프랑스	15.3	16.0	13.6	13.2	13.7	15.6	16.3b	18.5	18.4p	18.3	12.5	5.8
독일	22.7	26.0	26.4	26.3	26.2	24.2	23.1b	22.4	19.2	20.3e	12.3e	8.0
그리스	19.8	19.8	18.9	18.9	16.6	17.7	17.7	18.0	19.7	20.0	18.0	2.0
헝가리	14.3	14.4	14.9	15.3	16.6	18.3	19.7	21.1	20.4	20.4	9.7	10.7
아일랜드	20.3	22.3	26.6	24.5	28.4	23.5	22.6b	24.3	24.2	18.7	9.1	9.6
이탈리아	19.1	18.8	19.6	18.6	20.0	21.1	20.5	19.2	20.1	21.4	17.5	3.9
라트비아	27.3	30.3	33.6	32.8	37.3	36.7	33.7	37.5	36.0	34.1	17.1	17.0
리투아니아	24.5	30.6	31.8	35.1	35.0	31.3	32.0	32.6	37.7	36.6	16.9	19.7
룩셈부르크	16.0	16.5	17.8	18.3	20.3	20.2	19.9b	19.2b	18.7b	20.9	16.8	4.1
몰타	21.0	23.9	25.7	23.2	23.6	26.1	26.1	27.1	29.0	24.8	14.2	10.6
네덜란드	14.0	12.7	15.0	15.3	15.5	17.1	17.9	21.4	21.6	21.5	11.7	9.8
폴란드	18.3	19.0	20.7	20.3	22.1	22.5	22.6	22.0	19.1	19.8	13.2	6.6
포르투갈	21.5	22.4	23.5	22.4	22.2	22.4	20.3	23.0	20.0	21.1	13.8	7.3
루마니아	20.4	21.6	21.7	22.2	25.4	26.4	26.1	26.0	23.5	20.4	19.0	1.4
슬로바키아	11.2	10.9	10.2	11.4	11.4	11.1	13.0	12.8	13.6	12.4	12.6	-0.2
슬로베니아	19.2	17.8	17.8	17.6	18.7	18.9	21.7	19.7	20.0	21.4	10.9	10.5
스페인	20.9	20.5	21.9	22.4	23.4	23.6	24.4	23.1	21.3	21	17.8	3.2
스웨덴	19.7	23.0	24.6	26.0	25.5	23.5	24.5	22.6	24.5	23.5	13.7	9.8
영국	21.5	21.0	19.8	22.9b	23.9	-	-	-	-	-	-	-
스위스	18.6	20.5	18.3	19.6	19.0	20.8	19.1	19.4	21.9	-	-	-
아이슬란드	9.0	9.1	9.2	12.0	9.6	-	-	-	-	-	-	-
노르웨이	14.7	18.8	16.6	14.9	16.4	20.1	17.6	13.5b	14.9	13.9	11.4	2.5
세르비아	28.9	30.4	30.2	32.8	31.3	30.0	33.1	33.7	29.9	-	-	-

주: 1) 16세 이상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4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사회적 이전 이후 소득이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60%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4)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PE020 / 검색일: 2024-08-17)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3년 유럽연합 국가의 장애인 중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은 20.2%로 전년 대비 감소함
  - 비장애인 중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은 14.1%로 장애인 중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6.1%p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23년 기준으로 국가별로 장애인 중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을 살펴보면, 에스토니아 37.9%, 리투아니아 36.6%, 크로아티아 34.9%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슬로바키아 12.4%, 덴마크 14.7% 등은 낮은 편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 차이를 살펴보면, 크로아티아 21.0%, 에스토니아 19.8%, 리투아니아 19.7% 등이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편임

(3) 물질적 박탈

〈표 15-6-3〉 EU국가 내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13.5e	12.8e	11.8e	11.2e	11.5e	11.3e	10.9	10.5	11.0	4.9	6.1
오스트리아	4.7	5.4	5.5	5.2	4.9	4.4	3.7	5.5	6.7	2.0	4.7
벨기에	13	14.2	12.4	11.6	12.4b	13.5	12.4	11.2	11.4	3.7	7.7
불가리아	46.7	46.2	43	36.6	34.4	34.6	28.4	28.9	28.1	16.5	11.6
크로아티아	13.8	13.3	13.8	11.4	9.7	9.8	7.8	8.1	6.9b	1.4b	5.5
사이프러스	11.1	9	10.7	6.5	4.5	4.6	4.1	5.4	4.8	1.6	3.2
체코	8.3	7	7.2	5.4	4.6	3.9	2.9	3.6	4.3	1.5	2.8
덴마크	6.5	6.7	6.8	6.6	7.4	6.8	6.4	7.3	8.6	2.6	6
에스토니아	7.4	5.3	8.4	6.9	6	5.4	4	7	4.9	0.9	4
핀란드	1.8	3.1	3.7	4.4	3.4	3.5	2.2	3.9	5.5	1.7	3.8
프랑스	10.4	9.9	9.6	10.9	13.5	11.9b	11.2	12.0b	10.9	4.3	6.6
독일	12.3	10.5	9.4	8.4	7.7	9.4b	9.1	9.7	10.9e	4.7e	6.2
그리스	16.4	17.7	18.5	17.5	17.9	15.7	15	15	16.7	11.9	4.8
헝가리	29.9	26.6	22.2	17.5	17.2	16.1	17.7	16.3	17.9	7	10.9
아이슬란드	5	2.6	2	1.4	-	-	-	-	-	-	-
아일랜드	17.0u	14.9u	13.7u	12u	14.6u	11.7bu	11.8	10.4	12.1	3.5	8.6
이탈리아	14.6	12.5	9.3	8.9	10.5	8.7	8.3	6.2	6.9	4.0	2.9
라트비아	22.7	19.4	19.6	16.9	13.3	11.6	8.7	14.1	10.7	3.6	7.1
리투아니아	22.6	23.2	24	20.6	17.3	14	10.9	12.7	10.8	4.2	6.6
룩셈부르크	4.3	4.2	3.6	3.6	3.3	3.2b	3.8b	3.6b	4.8	1.7	3.1
몰타	16.1	12.4	9.9	11.3	13.4	10	9.2	10.8	10.4	2.9	7.5
네덜란드	8.4	6.5	6.1	6.3	6.8	5.5	5.2	5.5	5.1	1.5	3.6
노르웨이	5.3	4.8	5.8	4.6	7.9	6.3	4.5b	5.6	6.5	1.3	5.2
폴란드	12.2	9.5	10.1	9.8	7.2	5.4	6.3	6.3	6.6	1.8	4.8
포르투갈	14.5	13.3	13.3	11.2	10.2	10	10.8	9.8	9.1	2.9	6.2
루마니아	41	41	37.9	35.7	33.3	33.5	31.5	31.6	28.4	15.1	13.3
세르비아	44.5	32.2	43.3	35.7	29.2	29.6	30.9	29.7	-	-	-
슬로바키아	11	9.8	8.7	7.3	8	7.6	8.2	8.1	8.8	4.8	4
슬로베니아	8.9	7.8	9.2	6.7	5.8	7.4	5.6	3.2	4.7	1.3	3.4
스페인	10.2	13	14.1	16.6	13	14	13	10.9	13.3	6.2	7.1
스웨덴	3.9	3.6	2.9	4.3	3.3	5	4	6.1	6.7	1.4	5.3
스위스	3.7	2.8	2.7	3.2	4.7	3.1	3.3	4.4	-	-	-
영국	9.8	10.1	7.7b	7.2	-	-	-	-	-	-	-

주: 1) 16세-6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5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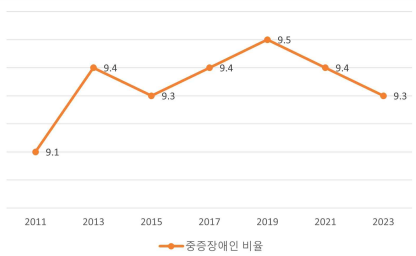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의 격차가 큰 국가들을 살펴보면,
  • 루마니아(13.3%p), 불가리아(11.6%p), 헝가리(10.9%p)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코(2.8%p), 이탈리아(2.9%p), 룩셈부르크(3.1%p)는 비율의 격차가 낮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 EU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2022년에 비하여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이 0.5%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스페인의 경우 2022년도 10.9%에서 2023년도 13.3%로 2.4% 증가하여 EU 평균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반면, 라트비아(14.1%→10.7%), 루마니아(31.6%→28.4%) 등의 국가는 2022년에 비해 2023년 물질적 박탈을 겪는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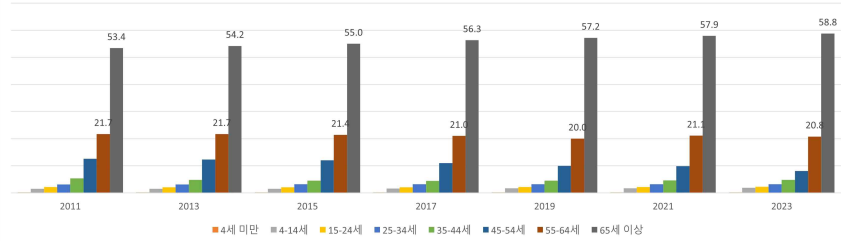
Europe 2020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

-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는 '경제적 긴장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물질적 박탈 항목 9개 중 최소 4개가 강제적으로 부족한 가구 비율을 나타낸다.
  1. 대출금. 임대료. 공과금 등 체납
  2. 1주일간 집을 떠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능력
  3. 2일마다 고기. 닭고기. 생선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
  4. 예기치 못한 재정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5. 가구는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살 수 없음
  6. 가구는 컬러 TV를 살 여유가 없음
  7. 가구는 세탁기를 살 여유가 없음
  8. 가구는 차를 살 여유가 없음
  9. 가정 내 적정한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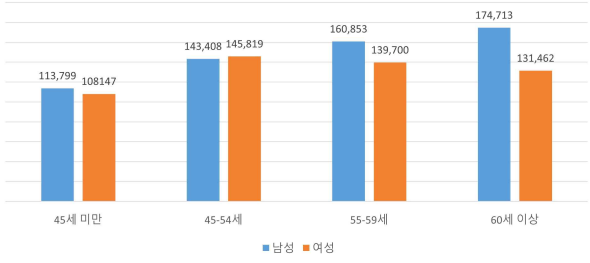
3.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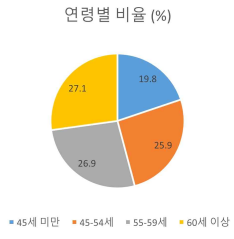
[그림 3-3-1]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연령별





[그림 3-3-2]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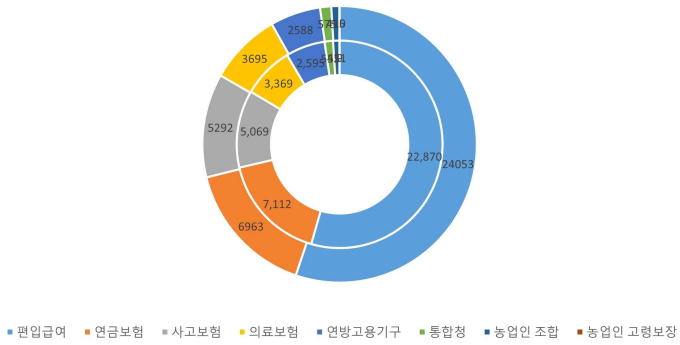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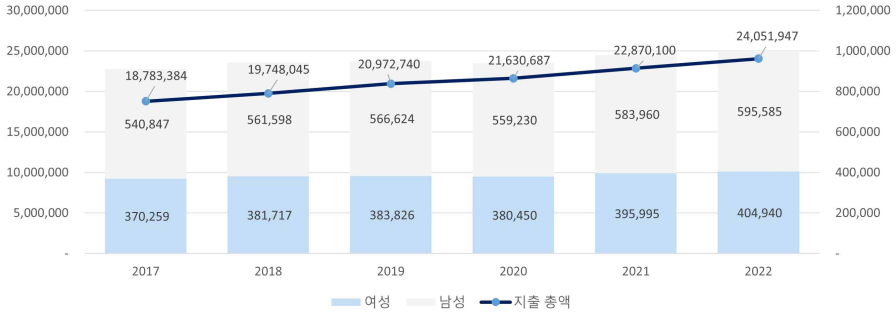
중증장애인구
- 2023년 기준 독일 중증장애인은 7,862,325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함
- 연령별 비율은 65세 이상이 58.8%로 가장 높았고, 55세~64세가 20.8%로 그 뒤를 이음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독일 중증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은 매우 뚜렷함.

중증장애인 고용
- 2022년 기준 1,118,070명의 중증장애인 및 준중증장애인이 고용됨
-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54.3%로 과반을 넘고, 45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은 80.2%에 이름
- 2022년 기준 남성장애인 고용비율은 53%로 여성장애인 고용비율인 47%를 상회함
- 여성장애인 고용비율은 2012년 43.7%를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별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60세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14.2% 포인트에 이름

[그림 3-3-3] 독일: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 현황(2021년)



[그림 3-3-4] 독일: 중증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 - 연도별



2022년 독일 장애인 재활 및 참여급여 지출 현황

- 총 지출액은 43,591백만 유로로, 2021년의 42,001백만 유로에서 3.8% 증가함
- 이 중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급여는 24,053백만 유로로 전체 지출액의 55.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임
  - 통합지원급여는 2020년에는 53.5%, 2021년에는 54.5%를 차지했으며, 매년 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함
- 연금보험에서 지급된 재활 및 참여급여는 총 6,963백만 유로로, 전체 급여의 16%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임
  - 연금보험의 재활 및 참여급여 중 의료재활급여는 4,723백만 유로로 전체 재활 및 참여급여의 10.8%를 차지함
  - 연금보험에서 지급된 의료재활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공된 의료재활급여 총 3,695백만 유로(8.5%)를 초과한 수치임

1) 장애인구

(1) 중증장애인

〈표 16-1-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전체 인구(A)		80,767,463	82,175,700	82,521,653	83,166,711	83,237,124	84,669,000
중증장애인(B)		7,548,965	7,615,560	7,766,573	7,902,960	7,795,340	7,862,325
비율(B/A)		(9.4)	(9.3)	(9.4)	(9.5)	(9.4)	(9.3)
성별	남성	3,851,568	3,866,994	3 928 519	3,983,749	3,917,360	3,937,005
		(51.0)	(50.8)	(50.6)	(50.4)	(50.3)	(50.1)
	여성	3,697,397	3,748,566	3 838 054	3,919,211	3,878,025	3,925,320
		(49.0)	(49.2)	(49.4)	(49.6)	(49.7)	(49.9)
연령별	4세 미만	13,928	14,703	15,495	17,008	15,995	15,820
		(0.2)	(0.2)	(0.2)	(0.2)	(0.2)	(0.2)
	4-14세	113,956	116,119	121,972	131,235	135,730	149,310
		(1.5)	(1.5)	(1.6)	(1.7)	(1.7)	(1.9)
	15-24세	161,857	161,688	166,216	173,157	175,385	178,915
		(2.1)	(2.1)	(2.1)	(2.2)	(2.2)	(2.3)
	25-34세	236,602	245,741	251,261	255,356	251,065	249,175
		(3.1)	(3.2)	(3.2)	(3.2)	(3.2)	(3.2)
	35-44세	363,342	345,138	342,298	353,716	360,280	373,675
		(4.8)	(4.5)	(4.4)	(4.5)	(4.6)	(4.8)
	45-54세	931,886	910,665	860,586	790,371	700,760	639,595
		(12.3)	(12.0)	(11.0)	(10.0)	(9.9)	(8.1)
	55-64세	1,635,787	1,629,214	1,634,544	1,664,445	1,643,550	1,636,045
		(21.7)	(21.4)	(21.0)	(20.0)	(21.1)	(20.8)
	65세 이상	4,091,607	4,192,292	4,374,201	4,517,672	4,512,565	4,619,790
		(54.2)	(55.0)	(56.3)	(57.2)	(57.9)	(58.8)

주: 원호청(Versorgungsamt) 발급 증명서를 소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통계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am Jahresende)」

중증장애인구

- 2023년 독일의 중증장애인은 7,862,325명으로 2021년에 비해 약 67,000명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은 9.3%로 2021년에 비해 소폭 감소함
- 성별
  - 남성은 약 50.1%, 여성은 약 49.9%로 남성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1년에 비해 남성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여성의 비율은 증가함.
  - 여성 중증장애인 비율을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연령
  - 65세 이상이 58.8%로 가장 높았고, 55세~64세가 20.8%로 그 뒤를 이음
  - 5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비율이 79.6%에 이르고,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비율 또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독일에서 중증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은 매우 뚜렷함

독일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개념

- 장애인은 인식과 환경 관련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동등한 사회 참여를 높은 개연성으로 6개월 이상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1항에 따른 손상은 신체와 건강상태가 연령 전형적인 상태에서 일탈한 경우에 존재한다. 장애의 위험은 1항에 따른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존재한다(사회법 제9권 제2조)
  -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이라는 용어는 독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지적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로 여전히 '정신적 장애'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독일적 상황을 반영함. 현행 독일의 장애개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일 장애개념 상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손상"이 의미하는 바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손상"임
  -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GdB)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나, 장애정도 30 이상인 경우에도 준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장애판정은 주정부 산하 원호청에서, 준중증장애인 인정은 연방고용기구에서 담당함

〈표 16-1-2〉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계		7,548,965 (100.0)	7,615,560 (100.0)	7,766,573 (100)	7,902,960 (100)	7,795,340 (100)	7,862,325 (100)
장애 정도 (GdB)	50	2,410,406 (31.9)	2,479,064 (32.6)	2,556,693 (32.9)	2,632,239 (33.3)	2,677,655 (34.3)	2,766,475 (35.2)
	60	1,202,750 (15.9)	1,203,371 (15.8)	1,217,048 (15.7)	1,217,037 (15.4)	1,194,030 (15.3)	1,193,305 (15.2)
	70	830,074 (11.0)	833,863 (10.9)	847,880 (10.9)	858,322 (10.9)	841,845 (10.8)	845,730 (10.8)
	80	904,636 (12.0)	915,363 (12.0)	935,474 (12.0)	962,219 (12.2)	949,255 (12.2)	964,905 (12.3)
	90	358,292 (4.7)	386,687 (5.1)	391,097 (5.0)	396,678 (5.0)	380,195 (4.9)	375,170 (4.8)
	100	1,815,807 (24.1)	1,797,212 (23.4)	1,818,381 (23.4)	1,836,465 (23.2)	1,752,355 (22.5)	1,716,745 (21.8)
장애 유형	사지 일부 또는 전체 상실	62,390 (0.8)	59,625 (0.8)	55.766 (0.7)	52,778 (0.7)	49,895 (0.6)	49,030 (0.6)
	사지의 기능제한	985,086 (13.0)	959,762 (12.6)	912,339 (11.7)	885,014 (11.2)	838,860 (10.8)	810,110 (10.3)
	척추, 몸통의 기능 제한, 흉부 변형	906,221 (12.0)	886,920 (11.6)	852,252 (10.9)	824,598 (10.4)	795,155 (10.2)	766,670 (9.8)
	전맹 및 시각장애	357,018 (4.7)	354,569 (4.7)	350,822 (4.5)	349,036 (4.4)	334,600 (4.3)	328,680 (4.2)
	언어 또는 말장애, 전농, 난청, 균형 장애	315,799 (4.2)	319,351 (4.2)	317,748 (4.1)	321,627 (4.1)	318,880 (4.1)	323,960 (4.1)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 변형 및 기타	180,697 (2.4)	179,436 (2.4)	178,313 (2.3)	181,968 (2.3)	182,620 (2.3)	187,910 (2.4)
	내부기관 및 기관계 기능손상	1,870,556 (24.8)	1,899,752 (24.9)	1.935,064 (24.9)	2,003,278 (25.3)	2,003,250 (25.7)	2,066,655 (26.3)
	척수 마비, 뇌병변 장애, 정신적·심리적 장애, 중독질환	1,539,007 (20.4)	1,598,275 (21.0)	1,661,143 (21.4)	1,756,976 (22.2)	1,786,335 (22.9)	1,854,055 (23.6)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	1,332,191 (17.6)	1,357,870 (17.8)	1,503,126 (19.4)	1,527,685 (19.3)	1,485,740 (19.1)	1,473,255 (18.7)

자료: 1)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am Jahresende)」
2)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중증장애인 표 2023(Tabellen Schwerbehinderte 2023)

2023년 기준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에 따른 중증장애인 현황

- 전체 중증장애인 중 장애정도(GdB) 50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2,766,475명(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장애정도 100인 장애인은 1,716,745명(21.8%)으로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장애정도는 90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의 4.8%를 차지함
- 전체 중증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장애정도 50-60을 판정받았으며, 장애정도가 가장 심한 최중증장애인(GdB 100)은 전체 중증장애인 5명 중 1명의 비율로 나타남
- 2011년 이후 장애정도별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GdB 50을 판정받은 중증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GdB 60과 GdB100을 인정받은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현황

- 내부기관 및 기관계 기능손상이 2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척수 마비, 뇌병변 장애, 정신적·심리적(지적·정신) 장애, 중독장애가 22.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3년 이후 상기 두 유형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표 16-1-3〉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dB)·장애유형(2023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장애정도(GdB)					
		50	60	70	80	90	100
계	7,862,325	2,766,475	1,193,305	845,730	964,905	375,170	1,716,745
	(100)	(35.2)	(15.2)	(10.8)	(12.3)	(4.8)	(21.8)
사지 일부 또는 전체 상실	49,030	9,910	5,575	7,385	7,790	4,325	14,035
	(100)	(20.2)	(11.4)	(15.1)	(15.9)	(8.8)	(28.6)
사지의 기능제한	810,110	304,075	155,655	108,225	89,060	43,335	109,760
	(100)	(37.5)	(19.2)	(13.4)	(11.0)	(5.3)	(13.5)
척추, 몸통의 기능 제한, 흉부 변형	768,670	364,375	143,310	92,435	66,730	31,220	70,660
	(100)	(47.4)	(18.6)	(12.0)	(8.7)	(4.1)	(9.2)
전맹 및 시각장애	328,680	54,475	29,980	30,480	28,890	23,120	161,735
	(100)	(16.6)	(9.1)	(9.3)	(8.9)	(7.0)	(49.2)
언어 또는 말장애, 전농, 난청, 균형장애	323,960	90,415	48,865	44,905	43,020	20,035	76,720
	(100)	(27.9)	(15.0)	(13.9)	(13.3)	(6.2)	(23.7)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 변형 및 기타	187,910	81,810	39,730	15,355	21,380	5,965	23,665
	(100)	(43.5)	(21.1)	(8.2)	(11.4)	(3.2)	(12.6)
내부기관 및 기관계 기능 손상	2,066,655	694,475	320,515	196,025	290,825	100,490	464,320
	(100)	(33.6)	(15.5)	(9.5)	(14.1)	(4.9)	(22.5)
척수 마비, 뇌병변 장애, 정신적·심리적 장애, 중독장애	1,854,055	644,660	235,430	193,905	238,725	75,750	465,595
	(100)	(34.8)	(12.7)	(10.5)	(12.9)	(4.1)	(25.1)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	1,473,255	522,280	214,240	157,015	178,480	70,930	330,310
	(100)	(35.5)	(14.5)	(10.7)	(12.1)	(4.8)	(22.4)

자료: 1)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am Jahresende)」
2)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중증장애인 표 2023(Tabellen Schwerbehinderte 2023)

2023년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GdB) 현황
- 장애정도 50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
  - 주로 기능이 일부 제한되거나 신체구조가 일부 상실된 경우에 해당
  - '사지의 기능제한(37.5%)', '척추, 몸통의 기능제한 및 흉부 변형(47.4%)', '언어 및 말장애, 전농, 난청, 균형 장애(27.9%)', '한쪽 또는 양쪽 유방상실, 변형 및 기타(43.5%)', '내부기관 및 기관계 기능손상(33.6%)','척수마비, 뇌병변 장애, 정신적·심리적(지적·정신) 장애, 중독장애(34.8%)'
- 장애정도 100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
  - 기능과 신체구조 전체가 상실된 경우에 해당
  - '전맹 및 시각장애(49.2%)'와 '사지 일부 또는 전체 상실(28.6%)'로, 일생생활 및 사회참여에 가장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됨

〈표 16-1-4〉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원인별

(단위: 명, %)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계	7,548,965	7,615,560	7,766,573	7,902,960	7.795.340	7,862,325
	(100)	(100)	(100)	(100)	(100)	(100)
선천적 장애	298,308	290,248	258,517	257,541	253.450	250,575
	(4.0)	(3.8)	(3.3)	(3.3)	(3.3)	(3.2)
산업재해	67,190	63,585	57,994	55,774	53.000	
	(0.9)	(0.8)	(0.7)	(0.7)	(0.7)	
교통사고	38,172	36,594	30,818	30,031	28.985	
	(0.5)	(0.5)	(0.4)	(0.4)	(0.4)	102,640
가정 내 사고	7,205	6,870	6,051	5,785	5.545	(1.3)
	(0.1)	(0.1)	(0.1)	(0.1)	(0.1)	
그 외의 사고	24,731	23,688	20,942	20,315	19.455	
	(0.3)	(0.3)	(0.3)	(0.3)	(0.2)	
전쟁, 군복무 및 대체복무 상해	34,171	24,425	17,106	13,192	10.565	8,755
	(0.5)	(0.3)	(0.2)	(0.2)	(0.1)	(0.1)
일반 질병	6,416,813	6,583,463	6,855,042	7,062,264	7.013.055	7,118,075
	(85.0)	(86.4)	(88.3)	(89.4)	(90.0)	(90.5)
기타	662,375	586,687	520,103	458,058	411.285	382,285
	(8.8)	(7.7)	(6.7)	(5.8)	(5.3)	(4.9)

주: 1) 2021년 이후 통계 자료는 비밀유지절차(Geheimhaltungsverfahren)에 의해 5의 배수로 반올림하여 표기
2) 연방통계청의 2023년 산업재해 및 사고 통계는 통합 자료로 제공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am Jahresende)」

중증장애의 주요 원인

- 2023년 기준 일반 질병(예방접종 부작용 포함)이 전체 중증장애 원인의 약 90%를 차지함
  - 독일의 장애개념은 사회참여제약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질병으로 인한 기능제약은 사회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손상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장애 인정 범위에 포함될 뿐 아니라, 대다수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중증장애의 주요 원인으로서 일반 질병의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더욱 두드러짐
- 2018년에 제정된 연방참여법에서는 인식과 환경 관련 장벽과의 상호작용을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요소가 중증장애 주요 원인의 비중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음
- 선천적 장애와 산업재해 및 사고로 인한 장애는 각각 3.2%와 1.3%로 일반 질병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함. 일반 질병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선천적 장애의 비중은 점차 감소함

2) 교육

(1) 특수교육

〈표 16-2-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의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단위: %)

구분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2022/23
장애학생 비율	계	7.2	7.4	7.6	7.7	7.7	7.5
	특수학교 재학비율	4.2	4.2	4.2	4.2	4.3	4.2
	일반학교 재학비율	3.0	3.2	3.4	3.5	3.4	3.3
통합교육비율		41.2	42.3	43.9	43.7	44.5	44.1

자료: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Kultusministerkonferenz), 「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촉진(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Schulen 2013 – 2022)」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 비율
- 2022/2023년 기준 전체 독일 학생 중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의 비율은 7.5%를 기록함
- 독일 거주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비율은 2015/16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22/2023년에 다시 감소함

학교 유형별 장애학생 비율
- 2022/2023년 기준 전체 독일 학생 중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비율은 2016/2017년 이후 전년의 4.4%에 비해 0.1-0.2% 포인트 감소한 4.2-4.3%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됨
- 전체 독일 학생 중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비율은 2015/2016년의 2.7%에 비해 0.6% 포인트가 증가한 3.3%를 기록함

통합교육 비율
- 2022/2023년 기준 전체 장애학생 대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비율, 즉 통합교육 비율은 44.1%를 차지함.
- 독일 통합교육 비율은 2013/2014년의 31.4%에 비해 2022/2023년에 12.7% 포인트 증가하여 단기간에 큰 상승세를 보임

〈표 16-2-2〉 학교유형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 현황-연도별

(단위: 명, %)

년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특수교육적 지원 총 수치		학교별			
			특수학교		일반학교(통합교육)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2015/16	517,384	100.0	322,518	62.3	194,866	37.7
2016/17	523,796	100.0	317,985	60.7	205,811	39.3
2017/18	539,965	100.0	317,480	58.8	222,485	41.2
2018/19	556,317	100.0	320.992	57.7	235,325	42.3
2019/20	571,671	100.0	325,368	56.1	246,303	43.9
2020/21	581,991	100,0	327,526	56.3	254,465	43.7
2021/22	590,116	100.0	332,150	55.5	257,966	44.5
2022/23	595,696	100.0	337,663	55.9	258,033	44.1

자료: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Kultusministerkonferenz), 「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촉진(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Schulen 2013 – 2022)」

학교유형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 현황

- 2022/2023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수는 595,696명으로 2015/2016년에 비해 약 8만 명 증가함
-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337,663명으로 55.9%를,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258,033명으로 44.1%를 차지하여 그 격차가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지만, 2014/2015년의 37.2% 포인트에 비해 크게 감소함
- 2015/2016년 이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비율, 즉 통합교육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각 주정부가 2015년 유엔 국가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하여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서 기인함

〈표 16-2-3〉 지원영역별 특수교육적 지원 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 현황 (2021/2022 대비 2022/2023년)

(단위: 명)

구분	2021/2022년			2022/2023 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전체 수	582,418			595,696		
특수교육적 지원영역	특수학교	일반학교	합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합계
학습	110,975	121,913	232,888	111,278	121,727	233,005
시각	4,756	5,015	9,771	4,800	4,730	9,530
청각	9,976	11,865	21,841	9,892	10,864	20,756
언어	30,346	28,930	59,276	30,451	29,708	60,159
신체 및 운동발달	25,154	14,139	39,293	25,381	14,281	39,662
정신적(지적) 발달	89,399	14,208	103,607	93,141	14,133	107,274
정서 및 사회적 발달	44,277	59,243	103,520	44,858	59,920	104,778
복합적 지원 및 미분류	4,963	2,249	7,212	5,191	2,476	7,667
학습, 언어, 정서 및 사회적 발달	1,646	-	1,646	1,842	-	1,842
질병	10,658	404	11,062	10,829	194	11,023
합계	332,150	257,966	590,116	337,663	258,033	595,696

주: 특수교육적 지원은 '학습',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언어', '지적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청각', '시각','시각',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복합적 지원(또는 미분류)의 10가지 영역으로 세분되며, 이 영역들은 특수학교(정식 명칭: 촉진학교) 유형의 기준이 됨
자료: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Kultusministerkonferenz), 「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촉진(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Schulen 2013 - 2022)」

지원영역별 장애학생 현황

- 2022/23년 기준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은 595,696명으로, 전년에 비해 5,580명이 증가함
- 2022/2023년 기준으로, 감각 장애 학생의 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반면, 학습, 언어, 신체 및 운동발달,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정신적(지적) 발달 영역의 학생 수는 증가함
- 학습 영역의 학생 수는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2018/19년 대비 2022/23년에 학습 영역의 지원을 받는 학생 수가 40,405명이 늘어나면서, 타 영역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2022/23년 기준 학습영역의 지원을 받은 학생은 233,005명으로 전체 장애학생의 39%, 독일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함
- '학습' 영역은 그 뒤를 이은 '정신적(지적) 발달(18%)'과 '정서 및 사회적 발달(17.6%)' 영역을 크게 상회하여, 이 두 영역의 비율을 합산한 35.6%보다 3.4% 포인트 초과한 수치를 나타냄

지원영역별 통합교육 현황

- 2022/23년 기준 학습 영역의 지원을 받는 학생 중 47.8%는 특수학교에, 52.2%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으로, 이 영역은 통합교육 비율이 더 높은 영역임. 청각(52.3%), 정서 및 사회적 발달(57.2%) 또한 통합교육의 비율이 더 높음
- 시각(49.6%)과 언어(49.4%) 영역은 근소한 차이로 특수학교 재학 비율이 더 높고, 신체 및 운동발달(64%), 복합지원 및 미분류(67.7%), 정신적(지적) 발달(86.83%) 영역은 특수학교 재학 비율이 통합교육 비율을 높게 상회함.
- 정신적(지적) 발달의 경우 통합교육 비율은 13.2%에 불과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재학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학습, 언어, 정서 및 사회 발달 영역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 학생은 100%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며, 질병으로 인한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는 학생도 98.2%가 특수학교에 재학 중

〈표 16-2-4〉 특수학교 현황 - 연도별

(단위: 개소, 명)

구분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학교 수		2,913	2,865	2,835	2,819	2,806	2,792	2,795
학급 수	소계	33.196	33,305	33,483	33,811	34,487	34,911	35,388
	학습영역 학급 수	9,378	8,270	8,118	8,057	10,007	10,072	10,296
	기타 영역 학급 수	23,065	24,029	24,347	24,657	23,343	23,755	24,046
	질병 영역 학습 수	753	1,005	1,019	1,096	1,137	1,083	1,147
학급당 학생 수		9.5	9.5	9.6	9.6	9.5	9.5	9.5
교사 수		60,588	60.501	60,279	60,265	61,808	62,277	63,751
교사 당 학생 수		5.2	5.2	5.3	5.4	5.3	5.3	5.3

주: 기타 영역은 특수교육적 지원 영역 중 '학습'과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영역을 제외한 ,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언어', '정신적(지적)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청각', '시각', '학습, 언어, 정서 및 사회적 발달', '복합적 지원(또는 미분류)' 영역을 의미

자료: 1)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Kultusministerkonferenz), 「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촉진(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Schulen 2013 – 202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2022/2023년 기준 독일의 특수학교는 2,795개, 특수학급은 35,388개임
- 특수학교는 2012/13년 3,258개소에 비해 463개소가 감소함. 동일 기간 특수교육적 지원 요구를 가진 학생 수의 증가 상황에서 나타난 특수학교의 감소추세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통합교육의 점진적 확대와 관련됨
- 전체 특수학급의 수는 2016/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 이는 한편으로 통합교육이 확대되면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증가한 데서, 다른 한편으로 질병으로 인한 특수교육적 지원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학급 수가 증가한 데서 비롯함
- 학습 영역의 지원을 받는 학생을 위한 학급 수는 2016/17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0/21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됨. 특히 2020/21년에 학습 영역 특수학급은 전년 대비 1,950개로 증가하고, 2022/23년까지 총 2,239개가 증가하여 이 영역을 제외한 학급 수 증가분을 크게 상회함.

특수교사

- 2022/23년 기준 독일의 특수교사는 63,751명으로, 2019/2020년 대비 3,486명 증가함
- 특수교사의 수는 2016/17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함. 이러한 증가는 2020/21년을 기점으로 학습 영역의 특수학급의 수 증가에 따라 특수교사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함

학급당 학생 수 및 특수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 2014/2015년 이후로 거의 변동 없거나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2/23년 기준으로 각각 9.5명, 5.3명으로 나타남

3) 고용

(1)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표 16-3-1〉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일자리 - 연도별

(단위: 명, 개,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일자리 현황	사용자	164,631	168,693	171,599	173,326	174,919	178,690
	전체 일자리	28,195,647	29,048,664	29,585,005	29,384,128	29,755,176	30,626,037
	집계 대상 일자리	-	-	-	24,705,206	25,049,929	25,720,072
	고용의무 일자리	1,146,111	1,178,857	1,199,025	1,191,886	1,208,842	1,241,611
	고용의무 이행	1,101,131	1,128,771	1,146,459	1,139,503	1,135,018	1,142,638
고용률	전체 고용률	4.6	4.6	4.6	4.6	4.8	4.7
	민간부문 고용률	4.1	4.1	4.1	4.1	4.3	4.2
	공공부문 고용률	6.5	6.5	6.5	6.4	6.3	6.2

주: 집계 대상 일자리 수는 전체 일자리 수에서 직업훈련 및 기타 직책을 제외한 것으로 고용률 산정 시 사용되는 지표
자료: 연방고용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중증장애인 고용(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äftigung)」

독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2015년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 및 일자리, 고용의무 이행 일자리 증가세(2020년,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일시적 감소)
- 2022년 기준 전체 30,626,037개 일자리 중 고용의무 일자리는 1,241,611개, 고용의무가 이행된 일자리는 1,142,638개(이 중 초과이행 일자리 225,792개), 불이행된 일자리는 324,765개
- 2022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4.7%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5%에 미치지 못함

독일의 장애인 고용의무제(사회법 제9권 제154조1항)

- 월평균 일자리 20개 이상 민간 또는 공공부문 사업자는 일자리 수의 5% 이상 (준)중증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지님.
- 월평균 일자리 40개 미만 사업자는 1명의 장애인, 60개 미만인 사업자는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 공공부문 고용의무: 최고연방기관 및 하위 부서, 연방 대통령실, 연방 상원 및 하원, 연방 헌법재판소, 연방 최고법원, 연방법원, 연방철도자산관리, 각 주정부 기관 및 하위 부서, 주 의회, 감사원, 주 헌법재판기관, 기타 주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에 따른 법인, 기관 및 재단 등에 해당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직업훈련생 및 준중증장애인(GdB 30-40) 포함됨. 여성 중증장애인은 특별 고려 대상
- 특례(사회법 제9권 제155조1항)
  - 사업자는 고용의무 이행 시 일반노동시장에서 장애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는 장애인을 적절한 비율로 고용해야 함
  - 장애로 인해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현저히 낮은 업무 성과를 보이거나, 비정상적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나 발작 장애로 장애정도가 최소 50이거나,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50세 이상인 장애인 대상
- 중복계산제도(사회법 제9권 제159조)
  - 3개 일자리 이행 간주: 직업참여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생, 장애인 작업장 근무 후 일반노동시장에 고용된 장애인 1인 고용
  - 2개 일자리 이행 간주: 직업훈련생, 직업훈련 수료후 고용된 장애인(첫 1년 한정), 근로예산 수급 장애인(첫 2년 한정) 1인 고용

〈표 16-3-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2022년)

(단위: 명, %)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전체			1,118,070(100)	592,779(53.0)	525,134(47.0)
연령	45세 미만		222,008(19.8)	113,799(51.3)	108,147(48.7)
	45-54세		289,255(25.9)	143,408(49.6)	145,819(50.4)
	55-59세		300,585(26.9)	160,853(53.5)	139,700(46.5)
	60세 이상		306,209(27.1)	174,713(57.1)	131,462(42.9)
고용 대상	정규고용	중증장애인	906,481	478,817(52.8)	427,525(47.2)
		준중증장애인	202,781	108,676(53.6)	94,092(46.4)
	직업훈련	중증장애인	7,975	4,702(59.0)	3,269(41.0)
		준중증장애인	833	584(70.1)	249(29.9)
산업 부문	농업, 임업, 어업		2,067	-	-
	광업, 에너지 및 수도 공급, 폐기물 처리 산업		24,885	-	-
	제조업		259,506	-	-
	건축업		22,459	-	-
	상업, 자동차 판매, 유지보수 및 수리		96,094	-	-
	교통 및 물류		66,044	-	-
	요식 및 숙박업		12,054	-	-
	정보 및 통신		27,647	-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7,038	-	-
	부동산, 학문 및 기술 서비스(자유업)		63,463	-	-
	기타 경제 서비스		41,481	-	-
	임시 고용		9,320	-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험		219,829	-	-
	교육 및 교습업		42,196	-	-
	보건		81,938	-	-
	시설 및 사회복지		83,666	-	-
	기타 서비스 및 가계		28,243	-	-
	미분류		160	-	-

주: 1) 중복계산제도로 고용의무가 이행된 일자리 수와 실제 고용된 중증장애인 수는 불일치함
2) 현재 독일의 모든 공식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는 "경제분야분류, 2008판(WZ 2008)"에 근거
3) 기타 경제 서비스는 자동차 임대나 경제활동에 자주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임대 등 일반적인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포함
4) 기타 서비스는 특정 집단, 즉 고용주, 자영업자, 근로자 등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특정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단체의 활동을 포함

자료: 1) 통합청(https://www.bih.de/bih/), 통합청연례보고(BIH-Jahresbericht)
2) 연방고용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중증장애인 고용(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äftigung)」

2022년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연령
  - 고용된 중증장애인 1,118,070명 중 55세 이상 고령자가 54.3%
  - 4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80.2%, 60세 이상은 27.4%로, 중증장애인의 고령화가 뚜렷함
- 성별
  - 여성 장애인의 고용비율은 2012년에 43.7%를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22년 현재 47%로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별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60세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14.2% 포인트에 이름
- 산업 부문별
  - 제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전체 고용된 장애인 중 23.2%인 259,506명이 제조업에 종사하며, 이는 독일의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에서 기인함
  - 공공부문은 약 20%를 차지하며, 이는 공공부문의 의무고용 이행률이 높기 때문임.

(2)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표 16-3-3〉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고용률 (2022년)

(단위: 개, 명, %)

구분		고용의무 고용주	전체 일자리	집계 대상 일자리	고용의무 일자리	고용의무 이행	불이행	고용의무 초과이행	고용률
2022년	전체	178,690	30,626,037	25,720,072	1,241,611	916,846	324,765	225,792	
	민간부문	166,580	23,968,160	20,091,320	958,807	657,485	301,322	137,760	
	공공부문	12,110	6,657,877	5,628,752	282,804	259,361	23,443	88,031	
	일자리 20-39 사업장	81,704	3,045,362	2,320,499	81,704	43,065	38,639	23,398	
	민간부문	78,209	2,902,969	2,219,601	78,209	40,673	37,536	21,378	
	공공부문	3,495	142,393	100,899	3,495	2,392	1,103	2,020	
	일자리 40-59 사업장	31,171	1,925,797	1,525,199	62,342	36,074	26,268	12,237	
	민간부문	29,430	1,807,367	1,439,435	58,860	33,422	25,438	10,756	
	공공부문	1,741	118,430	85,764	3,482	2,652	830	1,480	
	일자리 60 이상 사업장	65,815	25,652,878	21,874,374	1,097,565	837,707	259,858	190,157	4.7
	민간부문	58,941	19,257,824	16,432,284	821,738	583,390	238,348	105,626	4.2
	공공부문	6,874	6,397,054	5,442,090	275,827	254,317	21,510	84,531	6.2

자료: 연방고용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중증장애인 고용(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äftigung)」

독일 장애인 고용률 산정
- 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가장 비중이 높은 일자리 60개 이상 사업장이 산정대상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실제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수의 비율이 아니라, 집계 대상 일자리 대비 고용의무가 이행된 일자리의 비율로 산정
- 집계 대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에서 직업훈련이나 기타 직책을 제외한 일자리를 지칭
- 2022년 기준 독일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이 이행된 837,707개 일자리와 초과 이행된 190,157개 일자리의 합이 21,874,374개 집계 대상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값으로 4.7%에 이름

〈표 16-3-4〉 사업장별 고용의무 이행 현황 (2022년)

(단위: 개, %)

구분	고용의무 고용주	고용의무이행	고용의무이행 중 초과이행	고용의무 부분이행	고용의무 불이행
전체 사업장	178,690	68,850(38.5)	43,061(24.1)	63,609(35.6)	46,231(25.9)
민간부문	166,580	61,757(37.1)	37,225(22.3)	59,808(35.9)	45,015(27.0)
공공부문	12,110	7,093(58.6)	5,836(48.2)	3,801(31.4)	1,216(10.0)
일자리 20-39 사업장	81,704	38,916(47.6)	17,981(22.0)	7,989(9.8)	34,799(42.6)
민간부문	78,209	36,679(46.9)	16,679(21.3)	7,700(9.8)	33,830(43.3)
공공부문	3,495	2,237(64.0)	1,302(37.3)	289(8.3)	969(27.7)
일자리 40-59 사업장	31,171	11,722(37.6)	7,471(24.0)	12,228(39.2)	7,221(23.2)
민간부문	29,430	10,687(36.3)	6,698(22.8)	11,698(39.7)	7,045(23.9)
공공부문	1,741	1,035(59.4)	773(44.4)	530(30.4)	176(10.1)
일자리 60 이상 사업장	65,815	18,212(27.7)	17,609(26.8)	43,392(65.9)	4,211(6.4)
민간부문	58,941	14,391(24.4)	13,848(23.5)	40,410(68.6)	4,140(7.0)
공공부문	6,874	3,821(55.6)	3,761(54.7)	2,982(43.4)	71(1.0)

주: 독일 연방고용기구는 2021년 이후 조정금 유형에 따른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사업장의 고용의무 이행을 유형별로 즉, 초과이행, 부분이행, 불이행으로 세분해 통계 자료를 제공함

자료: 연방고용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중증장애인 고용(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äftigung)」

독일의 조정금 제도

- 고용주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시 납부
- 2022년 기준 조정금 유형
  - 조정금 1: 연평균 고용률 3%이상 5%미만 – 매 결원 당 125유로
  - 조정금 2: 연평균 고용률 2%이상 3%미만 – 매 결원 당 220유로
  - 조정금 3: 연평균 고용률 2%미만 – 매 결원 당 320유로
  - 단, 일자리 40개 미만 사업장에서 연평균 장애인 고용이 1명 미만인 경우 125유로, 60개 미만인 사업장에서 연평균 장애인 고용이 1명 미만인 경우 220유로, 두 명 미만인 경우 125유로의 조정금 부과
- 2024년 이후 조정금
  - 연평균 고용률 3%이상 5% 미만 – 매 결원 당 140유로
  - 연평균 고용률 2%이상 3% 미만 – 매 결원 당 245유로
  - 연평균 고용률 0%이상 2% 미만 – 매 결원 당 360유로
  - 연평균 고용률 0% – 매 결원 당 720유로
  - 단, 일자리 40개 미만인 사업장에서 연평균 장애인 고용이 1명 미만인 경우 140유로, 0명인 경우 210유로, 일자리 60개 미만인 사업장에서 연평균 장애인 고용이 2명 미만인 경우 140유로, 1명 미만인 경우 245유로, 0명인 경우 410유로의 조정금 부과

(3) 고용 관련 지출

〈표 16-3-5〉 통합청(Integrationsämter) 지출 현황(2019/2020년)

(단위: 백만 유로, 건)

구분		2019년		2020년	
		지출액	사례/대상	지출액	사례/대상
중증장애인 및 준중증장애인 대상 급여	근로지원(보조공학)	5.37	1,849	5.42	1,810
	통근(이동지원)	4.35	909	4.25	693
	경제적 자립	0.46	112	0.52	78
	장애에 적합한 주거획득 및 유지	0.47	130	0.32	95
	직업적 지식과 기능의 유지 및 확장	5.04	2,167	3.88	1,863
	특수상황지원	2.25	1,149	2.13	964
	근로보조인	38.14	3,938	38.83	3,577
	지원고용	1.32	388	1.24	338
	합계	57.40	10,642	56.59	9,418
사용자 대상 급여 (통합기업제외)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12.53	1,716	10.54	1,469
	장애에 적합한 훈련 및 근무 환경 조성	26.57	8,399	27.53	8,234
	현저한 부담에 대한 지원	177.95	45,311	173.51	41,584
	직업훈련 수당 및 보조금	0.92	425	0.87	419
	사업장 내 통합관리	0.06	-	0.08	-
	합계	218.03	55,851	212.53	51,706
통합기업 대상 급여		102.01	13.550	118.34	13,590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프로그램		50.28	-	42.08	-
통합전문가 대상 급여		94.29	62,400	100.07	60,000
기관 지원		37.56	336	30.72	190
교육 및 홍보		6.78	34,143	5.68	8,000
모델 및 연구계획		17.98	-	13.48	-
기타 급여		1.88	-	3.00	-
포괄적 개인예산		0.44	-	0.23	-
합계		586.53	-	583	-

주: 1) 사용자 대상 급여 중 "현저한 부담에 대한 지원"에서 현저한 부담 상황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고용된 장애인이 지나치게 낮은 성과를 보이거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 또는 발작 장애를 가진 경우 등을 지칭함. 이 급여는 중증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급여로, 주로 지속적인 임금비용 보조 형태로 제공됨
2) "사업장 내 통합관리"는 장기적인 근무 불능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가능한 한 조속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장 차원의 제도
3) "기관지원"은 장애인작업장과 같은 장애인고용기관의 지원을 의미
자료: 통합청 및 사회적 보상기구 연방연합(BIH), 「BIH 연례보고(BIH-Jahresbericht)」

통합청(Integrationsamt)
-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조정금(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용자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 직접적인 취업알선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이미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유지에 중점
- 통합청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준)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2020년 통합청(Integrationsämter)의 수입 및 지출 현황
- 수입
  - 조정금 수입은 2016년 금액 인상 이후 증가추세, 2024년 조정금 유형이 4분되고 액수가 재 인상된 이후 더 증가할 전망
  - 2020년 조정금 수입 중 약 20%를 연방노동사회부(BMAS)의 조정금 기금(Ausgleichsfonds)에 납부 후 627백만 유로의 예산 배정
- 지출
  - 2020년 통합청의 총 지출은 약 583백만 유로로, 2019년 대비 0.4% 감소
  - 사용자 대상 급여(36.5%) 〉 통합기업 지원(20.3%) 〉 통합전문가 대상 급여(17.2%)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사용자 대상 급여 중 현저한 부담에 대한 지원은 173백만 유로로, 통합청 지출 개별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중증장애인 대상 급여는 약 56백만 유로로 전체 통합청 지출의 약 10%를 차지, 이 중 근로보조인 지원이 약 39백만 유로로 중증장애인 대상 급여 중 약 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19년 대비 2020년 통합청의 지출 중 기관지원 항목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지난 5년 간 꾸준히 이어진 감소세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장애인 작업장 내 보호고용이 감소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이 강화된 데서 기인함

(4)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표 16-3-6〉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실업자 수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장애정도 50이상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비율
2015년	2,794,664	179,809	156,013	6.4
2016년	2,690,975	170,508	148,391	6.3
2017년	2,532,837	162,373	140,359	6.4
2018년	2,340,082	156,621	134,129	6.7
2019년	2,266,720	154.696	132,009	6.8
2020년	2,695,444	169,691	143,453	6.3
2021년	2,613,489	172,484	145,026	6.6
2022년	2,418,133	163,507	144,407	6.8

자료: 연방고용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노동시장 분석-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Analyse Arbeitsmarkt-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표 16-3-7〉 (준)중증장애인 실업 현황-성별, 연령별, 국적별(2022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실업 현황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비율	전년도 대비 중증장애인 실업 증감비율
전체		2,418,133	163,507	100	-5.2
성별	남성	1,312,584	97,573	59.7	-4.9
	여성	1,105,541	65,934	40.3	-5.6
연령	25세 미만	203,469	5,781	3.5	-7.6
	25-54세	1,627,227	79,388	48.6	-8.4
	55세 이상	587,265	78,339	47.9	-1.5
국적	독일	1,601,331	139,433	85.3	-5.8
	외국	816,794	24,074	14.7	-1.8

자료: 연방고용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노동시장 분석-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Analyse Arbeitsmarkt-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2022년 (준)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 연도별 추이
  -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실업자가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 실업자 대비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비율은 0.5% 포인트 하락
  - 2021년에 비장애인 실업자는 감소한 반면, (준)중증장애인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여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비율도 상승
  - 2022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실업자가 동반 감소했으나,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비율은 상승하여 팬데믹 이전 최고 수준인 6.8%대에 도달
- 성별
  - 2022년 기준 장애 유무와 무관하게 남성 실업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
  - 중증장애인 남성 실업자의 비율은 59.5%로 54.3%를 차지한 전체 남성 실업자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
  - 2022년 전체 실업자 중 25-54세 청장년층은 약 67.3%이고, 55세 이상 고령자는 24.3%에 불과
  - 반면, 중증장애인 실업자 중 25-54세는 48.6%, 5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47.9%로, 고령자 비율이 전체 실업자보다 높음. 이는 고령 중증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유지가 특별히 어려움을 보여줌
  - 5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고용은 통합청에서 지급하는 사용자 대상 급여 중 '현저한 부담에 대한 지원'의 신청 요건이기도 함

〈표 16-3-8〉 (준)중증장애인 장기 실업 현황(2022년 평균)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실업자			172,484(100)	163,507(100)
장기실업자			80,248(46.5)	75,796(46.4)
실업지속기간(비율)	12개월 이하		92,236(53.5)	87,712(53.6)
	12개월 이상	12개월~23개월	39,666(23.0)	32,698(20.0)
		24개월 이상	40,478(23.5)	43,027(26.3)
		진술 없음	105(0.1)	70(0.0)

자료: 연방고용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노동시장 분석-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Analyse Arbeitsmarkt-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2022년 (준)중증장애인 장기실업 현황

-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
  - 전체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163,507명 중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75,796명으로 46%를 차지
  - (준)중증장애인 장기 실업자 비율은 전체 장기 실업자 비율(38%)을 상회함
- 24개월 이상 장기 실업
  - 전체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중 24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43,027명으로 26.3%를 차지
  - 이는 2021년 대비 2.8% 포인트,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3.9%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중증장애인의 장기실업문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평균 실업 지속기간
  - 2022년에 실업상태를 종료한 (준)중증장애인의 평균 실업지속기간은 52.2주로, 2020년의 78.8주보다 단축됨
  - 2022년에 실업상태를 종료한 전체 실업자의 평균 실업지속기간인 38.7주보다는 김

4) 재정

(1) 재활 및 참여급여 지출

〈표 16-4-1〉 재활 및 참여급여 지출 현황(2022년)

(단위: 백만 유로, %)

담담기관에 따른 급여항목	2021	2022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건강보험	3,369	3,695	9.7
입소 후속 재활 총괄	1,900	1,990	4.8
입소 재활 총괄	449	558	24.2
부모 재활	6	5	-8.7
외래 재활 총괄	134	149	11.2
재활인 사고보험 기여금 (대납)	91	79	-13.6
재활스포츠/기능훈련	126	211	66.7
기타 보충 급여	107	111	4.5
사회소아센터 내 급여	287	308	7.2
업무부담 테스트 및 작업치료	0.58	0.42	-28.2
조기진단 및 촉진 급여	183	196	6.9
보충적 재활 급여(DMP)	11	12	14.1
개인예산	75	76	1.0
연금보험	7,112	6,963	-2.1
의료 재활 급여	4,930	4,723	-4.2
근로생활참여 급여(LTA)	1,230	1,237	0.6
예방, 아동재활, 후속조치, 기타 급여	549	608	10.7
사회보험 기여금 (대납)	403	396	-1.9
개인예산	0.55	0.50	-8.2
농업인 고령보장	9	10	8.9
사고보험	5,069	5,292	4.4
외래치료 및 의치	1,748	1,804	3.2
입원 치료 및 재가 간병	1,203	1,254	4.2
부상자수당 및 특별 지원	865	925	6.9
기타 치료비	1,094	1,168	6.7
근로생활참여 급여(LTA)	159	141	-11.2
농업인 조합	421	415	-1.3
개인예산	1.97	1.82	-7.9
연방고용기구	2,595	2,588	-0.3
근로생활참여 의무급여	2,474	2,471	-0.1
근로생활참여 심사급여	106	102	-4.1
개인예산	14	15	5.7
통합청	555	575	3.6
근로생활 동행지원	450	467	3.9
노동시장프로그램	42	52	23.8
기타급여:	64	56	-11.5
(그 중) 개인예산	0.32	0.58	84.5
통합지원	22,870	24,053	5.2
의료 재활 급여	84	106	26.3
근로생활참여 급여:	5,111	5,221	2.1
(그 중) 장애인작업장(WfbM) 취업 급여	5,064	5,165	2.0
교육 참여 급여	2,003	2,302	15.0
사회 참여 급여:	15,268	16,001	4.8
(그 중) (활동)지원 급여	11,777	12,190	3.5
기타 급여	404	423	4.6
지출 전체	42,001	43,591	3.8

주: 독일의 Eingliederungshilfe 급여는 국내에 편입부조로 번역되어 왔으나, 'Eingliederung'은 원래 Integraition의 순독일어 표현으로, 독일 노동사회부에서 발간한 "Social Security at a glance"에서도 Integration assistence로 번역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지원으로 변경하여 번역함. 2018년 연방참여법 제정 이후 Eingliederungshilfe는 사회법 제9권으로 통합·재편되면서 구 사회법 제12권에 근거한 사회부조가 아니라 재활 및 참여급여로 체계화되었는데, '부조'라는 명칭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음.

자료: 재활기구 연방연합(Bundesarbeitsgemeinschaft für Rehabilitation e. V.: BAR), 「재활정보(Reha-Info)」

2022년 독일의 장애인 재활 및 참여급여 지출 현황
- 총 지출액
  - 43,591백만 유로로, 2021년의 42,001백만 유로에서 3.8% 증가
  - 통합지원 (Eingliederungshilfe)급여
    24,053백만 유로로 전체 재활 및 참여급여의 55.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임
    2020년에는 53.5%, 2021년에는 54.5%를 차지했으며, 매년 5% 이상의 증가율 기록
  - 연금보험 재활 및 참여급여
    6,963백만 유로로 전체 재활 및 참여급여의 16%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임
    그 중 의료재활급여가 4,723백만 유로로 전체 재활 및 참여급여의 10.6% 차지
    연금보험 의료재활급여는 건강보험 의료재활급여 총 3,695백만 유로(8.5%)를 초과
    연금보험의 의료재활급여는 신청자가 연금수급 상태에 진입하지 않고 근로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한정됨
- 주요 개별 급여
  - 사회 참여급여(통합급여 하위 항목)
    16,001백만 유로로 전체 재활 및 참여급여의 36.7%에 해당
    (활동)지원 급여가 사회참여 급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근로생활 참여급여(통합급여 하위 항목)
    장애인 작업장 취업 급여 중심
    5,221백만 유로로, 연금보험, 사고보험, 연방고용기구에서 제공하는 근로생활 참여급여 총합 3,951백만 유로를 초과함
    이 수치는 근로생활 참여급여가 일반 노동시장 참여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작업장의 비중이 큼을 보여줌

독일의 장애인 재활 및 참여급여
- 재활 및 참여급여 체계
  - 의료재활급여
  - 근로생활 참여급여
  -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급여
    의료재활급여
    근로생활 참여급여
    교육 참여급여
    사회 참여급여
- 독일 장애인 재활 및 참여급여의 재편
  - 2018년 연방참여법(BTHG) 제정 이후 기존의 사회법 제12권의 통합지원급여는 사회법 제9권으로 통합됨
  - 장애인의 참여 강화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직업재활은 근로생활 참여급여로, 교육지원은 교육 참여급여로 명칭 변경
  -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급여의 하위 급여인 의료재활급여와 근로생활 참여급여는 재원을 담당할 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거나, 장애인 작업장 관련 사안 등 일부 제한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료재활급여 및 근로생활 참여급여와 구분됨
- 재활 및 참여급여 주관기관(각각 사안에 따라 재원 담당)
  - 의료재활급여: 건강보험, 연금보험, 사고보험, 통합지원 담당기관
  - 근로생활 참여급여: 연금보험, 사고보험, 연방고용기구, 통합청, 통합지원 담당기관
  - 교육 참여와 사회 참여급여: 통합지원 담당기관

5) 복지

(1) 장애인 통합지원

〈표 16-5-1〉 장애인 통합지원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단위: 천유로,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출 총액		19,748,045	20,972,740	21,630,687	22,870,100	24,051,947
전체 수급자 수		943,315	950,450	939,680	979,955	1,000,525
성별	남성	561.598	566.624	559,230	583,960	595,585
	여성	381.717	383.826	380,450	395,995	404,940
연령	18세 미만	276,045	278,974	274,095	295,530	309,020
	18~39세	270,217	270,908	267,450	272,555	271,905
	40~64세	339,872	341,964	338,210	347,340	350,770
	65세 이상	57,181	58,604	59,930	64,530	68,830

주: 장애인 통합지원 수급자 통계는 해당 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합지원급여를 수급한 모든 사람을 포함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장애인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 Empfaenger von Eingliederungshilfe: Geschlecht, Altersgruppen, Leistungsarten

2022년 장애인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 현황
- 연도별 추이
  - 2022년 통합지원급여 수급 장애인은 1,000,525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
  - 2020년은 통합지원이 사회부조에서 재활과 참여급여로 전환된 시기로, 체계 재편으로 데이터 수집 방법과 수급자 분류방식이 조정되면서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함
  - 2022년 통합급여 총 지출액은 24,051,947천 유로로 전년 대비 5.2% 증가
  - 통합지원급여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
- 성별
  - 전체 통합급여 수급자의 약 60%가 남성, 약 40%가 여성으로, 남성 수급자의 비중이 더 높음
- 연령
  - 통합지원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34세이며, 전체 수급자의 31%인 309,020명이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임
  -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만 제공되는 치료교육 급여는 약 196,000명이 받았으며, 이 중 85%가 7세 미만의 유아
  - 40-64세의 중장년층이 전체 수급자의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비율은 6.9%로 낮은 편인데, 이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중증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과 대비됨

장애인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
- 법적 근거: 사회법 제9권 제99조
  - 장애로 인해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거나 그러한 상당한 장애의 위협을 받는 장애인에게 사회생활참여(Teilhabe am gesellschaftlichen Leben)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
  - 즉, 신청자에게 상당한 사회생활 참여 제약이 존재하고, 이것이 해당 급여를 통해 해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수급권 인정
- 연방참여법(BTHG) 제정 이후 변경 사항
  - 2019년까지 사회법 제12권에 근거하여 사회부조의 일환으로 제공
  - 2020년 이후 BTHG의 단계적 시행과정에서 사회법 제9권 2부로 통합되어 재활 및 참여급여로 재편됨
  - 재활 및 참여관련 사안에 한정해서 제공되고, 기존 통합지원급여에 포함되었던 생계보장급여는 사회부조를 담당하는 사회청 소관으로 잔존함
  - 통합지원은 급여 분리를 통해 기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재편성됨

〈표 16-5-2〉 장애인 통합지원 항목별 수급자 및 지출액(2022년)

(단위: 명, 유로)

통합지원 항목	이용자	지출액
통합지원 합계	1,000,525	24,051,947,031
의료재활 급여	33,460	106,246,201
근로생활참여 급여	286,625	5,219,610,028
장애인작업장(WfbM) 취업 급여	284,130	5,165,325,116
WfbM 외 작업장 취업 급여	860	13,656,951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 급여	2,085	40,627,961
교육참여 급여	99,015	2,302,222,513
사회참여 급여	755,450	16,000,754,201
주거급여	30,870	145,855,585
자가 급여(성인 동거인 부재)	2,230	8,859,403
특별한 주거형태에서의 주거 급여	28,180	132,051,272
부부, 생활동반자, 주거공동체에서의 주거 급여	545	4,799,190
(활동)지원 급여	509,640	12,189,821,716
치료교육 급여	195,575	1,681,582,109
실용 지식 및 기능의 습득 및 유지 급여	92,730	1,829,119,852
의사소통 촉진급여	1,480	13,022,223
차량지원 급여	1,020	7,105,521
이동지원	39,575	112,892,733
보조기기	2,745	6,857,862
방문보조금	12,645	14,496,600
기타 통합지원	34,425	423,114,097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장애인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 Bruttoausgaben der Eingliederungshilfe

2022년 통합지원급여 지출 현황
- 총 지출: 1,000,525명의 장애인에게 24,051,947,031유로 지급(대면 서비스, 현물, 정액, 개인 예산 형태)
- 사회 참여급여
  - 통합지원급여 중 가장 비중이 큰 하위 급여로 755,450명에게 16,000,754,201유로가 지급되면서 통합지원급여 총 지출액의 66.5%를 차지
  - 사회 참여급여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활동)지원 급여로, 사회참여 급여의 76%를 차지
- 근로생활 참여급여
  - 286,625명의 장애인에게 5,219,610,028유로 지급
  - 통합지원급여 총 지출액의 21.7%로 두 번째로 큰 비중 차지

장애인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의 하위 급여
- 의료재활급여
  - 건강보험 또는 연금보험에 우선 청구할 권리가 없는 장애인을 위한 급여
  - 특히, 중독환자나 정신질환자에게 제공
  - 요양, 재활스포츠, 조기 진단, 치료 등의 항목 포함
- 근로생활 참여급여
  - 통합기업이나 지원고용의 형태로도 고용되기 어려우나 적어도 최소한의 경제적으로 유용한 작업성과를 낼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급여
  - 장애인 작업장에서의 고용 지원이 주를 이루나, 근로예산(Budget für Arbeit) 및 직업훈련예산(Budget für Ausbildung)도 포함
- 교육 참여급여
  - 연방참여법이 제정되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에 따른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급여
  -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일반교육 시스템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동행, 학습지원, 수화통역지원, 의사소통 보조기기, 점자보조기기 등 제공,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준비나 인턴쉽 참여 지원
- 사회 참여급여
  - 장애인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가능한 한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급여
  - 세부 항목
    - 주거급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택 구입, 개조, 장비 설치 및 유지 보수 지원
    - (활동)지원급여: 부모지원, 가사지원, 생활계획, 여가활동, 공동체 및 문화생활참여 지원
    - 치료교육서비스: 미취학 아동을 위한 조기교육
    - 실용지식 및 기능의 습득 및 유지 급여: 일상생활 기능습득, 직업준비, 의사소통향상, 점자교육 등
    - 의사소통 촉진급여: 수화통역 등
    - 차량지원급여: 자동차구입, 추가 장비 설치,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 등
    - 이동지원: 이동 서비스 지원
    - 보조기기: 컴퓨터 등 보조기기 지원

6) 정신건강

(1)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지원

〈표 16-6-1〉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지원 수급자 현황(2021년)

(단위: 명)

구분		시작된 급여	끝난 급여	12월 31일 시점의 급여
합계		45,804	36,270	106,615
성별	남성	31,634	24,913	76,774
	여성	14,170	11,357	29,841
연령별	6세 이하	1,847	388	1,850
	6~8세	11,540	3,161	13,952
	9~11세	14,300	9,410	35,080
	12~14세	8,315	9,781	28,603
	15~17세	5,355	6,873	16,300
	18세 이상	4,447	6,657	10,830
장소별	외래/부분입원	38,338	29,193	89,869
	돌봄지원인	340	303	1,127
	생활시설	7,126	6,774	15,619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아동 및 청소년 지원 통계(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2021년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지원 수급자 현황
- 통합지원급여 수급자: 2021년 12월 31일 기준, 106,615명, 전년 대비 7.9% 증가
- 통합지원 수급 개시자: 45,804명, 전년 대비 13.1% 증가
- 통합지원 수급 완료자: 36,270명, 전년 대비 10.7% 증가
- 성별 비중: 2021년 12월 31일 기준, 남성이 약 72%로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음
- 연령대 비중
  - 9-11세: 전체 수급자의 32.9%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12-14생: 전체 수급자의 26.8%
  - 두 연령대가 전체 수급자의 약 60%를 차지
- 통합지원의 형태: 외래 및 부분입원이 84.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 목적: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 대상
  - 정서장애: 자폐스펙트럼 장애, ADHD, 난독증, 난산증, 섭식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및 조울증, 조현병, 성격장애, 중독질환 등
  - 참여장애: 특정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한 가지 생활영역에서만 참여가 저해되어도 수급 가능
- 주관기관
  - 청소년청
  - 정신적(지적), 신체적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은 현재 통합지원 담당기관에서 제공
  - 2028년 이후 청소년청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모든 유형의 통합지원을 전담할 예정
- 급여 구성: 의료재활급여, 근로생활 참여급여, 생계유지 및 기타 보충급여, 교육참여급여, 사회참여급여
- 구체적 지원 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치료교육을 제공하는 보육, 학교동행(통합보조), 사립학교 및 기숙학교 또는 개별수업 비용지원, 여가활동보조, 일상생활보조, 직업훈련지원, 사회성 훈련, 보호주거, 위탁가정, 시설입주, 상담, 코칭 등

(2) 정신질환 관련 병원

〈표 16-6-2〉 정신질환 관련 병원 및 병상 현황(2022년)

(단위: 개)

병원 수					
구분			2020	2021	2022
전체			1,903	1,887	1,893
일반병원			1,558	1,534	1,526
기타 병원	기타병원 전체		345	353	367
	정신과, 심리치료, 신경과, 노인의학 중점 병원	전체	282	290	301
		100 병상 미만	124	129	138
		100~199 병상	71	74	74
		200~499 병상	79	79	80
		500 병상 이상	8	8	9
	순수 주간 또는 야간 병동		63	63	66
국군병원			4	4	5
병상 수					
전체			487,783	483,606	480,382
일반병원의 병상			441,818	437,021	432,848
기타 병원	정신과, 심리치료, 신경과, 노인의학 중점 병원	전체	45,965	46,585	47,534
		100 병상 미만	5,859	5,942	6,305
		100~199 병상	9,761	10,177	10,195
		200~499 병상	25,236	25,402	25,644
		500 병상 이상	5,109	5,064	5,390
	순수 주간 및 야간 병동		-	-	-
군병원의 병상			937	928	1,017

주: 집계 대상 병상은 입원 병동에 위치한 병상으로 부분입원, 외래치료, 연구 및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병상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병원 기본데이터(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2022년 독일 정신질환 관련 병원 및 병상 현황

- 독일 병원 분류
  - 일반 병원: 2022년 기준 1,526개
  - 기타 병원: 367개
    정신과 및 심리치료 병상만 있는 시설
    정신과, 심리치료 및 신경과 병상이 있는 시설
    정신과, 심리치료 및 노인의학 병상이 있는 시설
    정신과, 심리치료, 신경과 및 노인의학 병상이 있는 시설
    순수 주간 또는 야간 병동: 병원 체류 24시간 미만 부분 입원치료 전담 시설-

- 병상 규모
  - 정신과 병원 중 병상이 100개 미만인 병원은 45.8%, 병상이 500개 이상인 병원은 3%로, 소규모 병원의 비율이 더 높음
  - 반면, 일반 병원은 소규모와 대규모 병원의 비율은 각각 29.8%와 16.2%
  - 2022년 기준 독일 병원 전체 병상 480,382개 중 9.9%에 달하는 47,534개가 정신과 병원에 설치
  - 2020년 이후 일반 병원의 병상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정신과 병원의 병상 수는 모든 규모의 병원에서 증가

(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표 16-6-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수(2022년)

(단위: 명)

구분	환자입원				환자퇴원					
		그 중			그 중					
	입원 병동 치료	다른 병원으로부터 입원	동일병원의 일시입원으로부터 입원	입원병동으로부터 퇴원	다른 병원으로 이송	예방 및 재활기관으로의 이송	돌봄기관으로의 이송	동일 병원의 부분입원 병동으로 이송	사망	평균 치료 기간
병원 전체	16,793,880	614,311	9,231	16,353,681	622,097	311,377	426,166	10,703	457,824	7.2
일반 병원	16,245,657	561,375	8,401	15,811,506	595,569	302,372	406,354	7,030	455,166	6.5
정신 의학과 전체	548,223	52,936	830	542,175	26,528	9,005	19,812	3,673	2,658	27.1
100 병상 미만	54,637	1,878	52	54,417	1,360	828	336	207	63	33.4
100~199 병상	113,824	10,530	181	112,252	5,063	1,917	2,968	606	433	28.8
200~499 병상	313,182	33,889	559	309,402	15,698	5,088	11,782	2,574	1,701	25.8
500 병상 이상	66,580	6,639	38	66,104	4,407	1,172	4,726	286	461	25.3
군인병원	42,033	981	-	40,930	1,592	481	571	-	1,74	6.1

주: 입원환자 중 부분입원환자, 휴가 등의 이유로 일시 퇴원하였다가 재입원한 환자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병원 기본데이터(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2022년 독일 정신질환 관련환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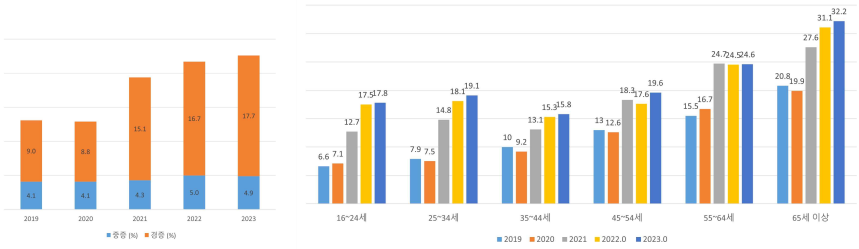
- 입원 환자 현황
  - 전체 입원 환자: 16,793,880명으로 전년 대비 42,232명 증가하였으나,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약 1,940만 명보다 13.4% 낮은 수치
  - 일반병원 입원환자: 16,245,657명으로 전년 대비 0.18% 증가
  - 정신과 병원 입원환자: 548,223명으로 전년 대비 2.27% 증가하였으며, 전체 입원환자의 3.3%를 차지

- 퇴원 환자 현황
  - 정신과 병원 퇴원환자는 542,175명
  - 퇴원환자 중 약 11%: 타 병원으로 26, 528명, 예방 및 재활기관으로 9,005명, 돌봄 기관으로 19,812명, 부분입원병동으로 3,673명 이송되어 치료 및 재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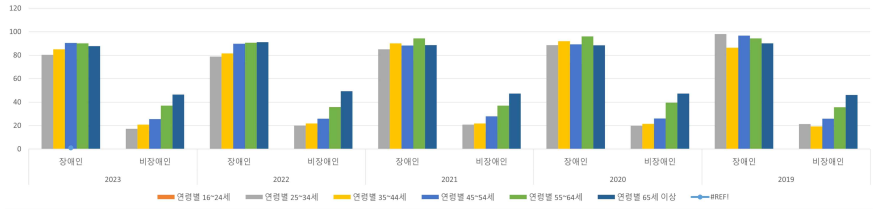
- 평균 입원 기간
  - 독일 전체 병원: 7.2일
  - 일반병원: 6.5일
  - 정신과 병원: 27.1일로, 일반병원 평균 입원기간을 4배 이상 초과
  - 평균 입원기간은 병상 점유율에 영향을 미쳐, 2022년 기준 일반병원은 69%를 차지한 데 비해, 정신과 병원은 이보다 16.4% 포인트 높은 85.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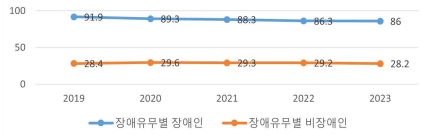
4.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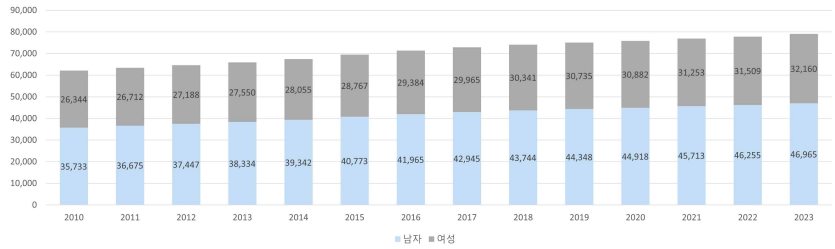
[그림 3-4-1] 스웨덴: 장애인출현율 - 연도별, 장애정도별



[그림 3-4-2] 스웨덴: 만성질환 인구비율(2023년) - 연도별, 장애유무별, 연령별







- 2023년기준 스웨덴의 장애인출현율은 22.6%로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이 4.9%, 경증이 11.7%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6~24세에서 17.8%, 35~34세에서 19.1%, 35~44세 15.6%, 45~54세 19.6%, 55~64세 24.6%, 65세 이상 32.2%로 나타남
- 2023년 기준, 모든 연령대에서 장애인의 만성질환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특히, 16~24세에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84.4%)이 비장애인(15.8%)에 비해 약 5.3배 높게 나타났고, 65세 이상에서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90.1%)이 비장애인(46.1%)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남.

1) 장애인구

〈표 17-1-1〉 스웨덴의 장애인 출현율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연령별

(단위: %)

구분		2023	2022	2021	2020	2019
연도별	전체	22.6	21.7	19.4	12.9	13.1
성별	남	19.6	18.9	16.8	10.8	10.6
	여	25.7	24.5	22.0	15.1	15.6
장애정도별	심한장애	4.9	5.0	4.3	4.1	4.1
	심하지않은장애	17.7	16.7	15.1	8.8	9.0
연령별	16~24세	17.8	17.5	12.7	7.1	6.6
	25~34세	19.1	18.1	14.8	7.5	7.9
	35~44세	15.8	15.3	13.1	9.2	10.0
	45~54세	19.6	17.6	18.3	12.6	13.0
	55~64세	24.6	24.5	24.7	16.7	15.5
	65세 이상	32.2	31.1	27.6	19.9	20.8

주: 16세 이상 인구 대상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SILC_12 / 검색일: 2024-08-14)

〈표 17-1-2〉 스웨덴 취업인구 중 근로능력 저하 장애인 비율 -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총		5.2	3.8	4.5
연령별	16-29세	4.8	3.8	4.3
	30-49세	4.4	3.3	3.8
	50-64세	6.8	4.4	5.5
교육수준별	고졸이하	8.3	5.6	6.6
	고졸	6.5	4.4	5.3
	고등교육	3.8	2.3	3.2

주: 근로능력 저하는 스웨덴 통계청이 실시한 노동력조사(Labor Force Surveys)에서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함' 또는 '동의함'을 응답한 사람을 의미
자료: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3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4

- 2023년 스웨덴의 장애인구비율은 22.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기준으로 남성(19.6%)에 비해 여성(25.7%)의 장애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상에서 전체 인구의 32.2%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스웨덴 전체 취업인구 중 근로능력 저하 장애인의 비율은 4.5%이며, 이 중 여성(5.2%)이 남성(3.8%)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임
  - 고연령(50-64세)층에서 5.5%, 저학력(고졸이하)층에서 6.6%로 근로능력 저하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스웨덴의 장애 개념

- 스웨덴은 장애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짐. "활동의 제약(activity limitation)" 혹은 "이동성 감소(reduced motion)", "활동능력의 감소(reduced activity)" 등의 표현으로 장애의 개념을 대신하고 있음

2) 건강

〈표 17-2-1〉 스웨덴의 만성질환 인구비율 - 연도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2023		2022		2021		2020		2019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연도별	전체	86.0	28.2	86.3	29.2	88.3	29.3	89.3	29.6	91.9	28.4
성별	남	85.5	26.0	85.2	27.2	87.0	27.2	86.9	27.3	92.5	26.2
	여	86.4	30.6	87.2	31.4	89.3	31.6	91.1	32.1	91.4	30.9
연령별	16~24세	75.6	15.2	73.6	14.3	75.5	14.0	73.3	17.1	84.4	15.8
	25~34세	80.3	17.3	78.9	20.0	85	20.9	88.6	19.8	98	21.4
	35~44세	85.1	20.8	81.5	21.8	90.1	21.8	92.0	21.5	86.5	19.3
	45~54세	90.5	25.6	89.8	25.9	88.2	28	89.3	26.1	96.7	25.9
	55~64세	90.1	37.0	90.6	35.9	94.3	37.1	96	39.6	94.3	35.6
	65세 이상	87.7	46.5	91.1	49.4	88.7	47.3	88.5	47.3	90.1	46.1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ehis_cd1d / 검색일: 2024-08-14)

〈표 17-2-2〉 스웨덴의 만성질환 출현율 - 질환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2014						2019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질환별	관절염	27.9	20.6	33.4	5.8	4.1	7.7	31.1	25.9	35.2	8.4	6.3	10.7
	요추질환	30.4	27.1	32.9	8.1	7.6	8.5	30.3	27.2	32.8	10.0	9.0	11.1
	경추질환	28.3	23.8	31.7	9.3	8.4	10.3	25.6	20.9	29.3	10.3	8.1	12.7
	천식	12.4	8.3	15.4	5.6	5.3	5.9	11.8	9.0	14.1	5.6	5.0	6.3
	만성 호흡기질환 (천식제외)	4.1	3.7	4.3	0.4	0.5	0.3	4.0	4.2	3.8	0.6	0.4	0.7
	심장질환	2.7	4.5	1.4	0.5	0.7	0.2	3.1	4.5	2.0	0.3	0.5	0.2
	관상동맥질환 또는 협심증	3.9	4.3	3.7	0.4	0.5	0.2	3.4	4.3	2.6	0.4	0.5	0.4
	고혈압	27.4	26.3	38.4	11.2	10.9	11.5	28.6	29.9	27.5	13.8	14.4	13.1
	고지혈증							12.1	14.7	9.9	4.8	5.3	4.2
	뇌졸중	2.9	3.1	2.8	0.3	0.3	0.3	2.6	2.8	2.4	0.3	0.4	0.3
	간경변	0.4	0.7	0.1	0.1	0.2	0.1	0.3	0.2	0.4	0.1	0.2	0.1
	요실금	14.7	10.8	17.7	3.3	1.7	5.0	15.7	11.8	18.9	4.8	2.9	6.9
	신장질환	3.1	3.9	2.5	0.9	1.3	0.4	3.7	4.4	3.2	0.9	0.9	0.9
	당뇨병	9.9	12.1	8.2	2.5	2.8	2.1	12.2	15.3	9.8	3.5	4.0	2.9
	알레르기	24.1	20.4	27.0	21.1	19.5	23.0	25.7	20.7	29.8	23.6	22.5	24.8
	만성 우울증	20.0	15.0	23.8	5.2	4.3	6.2	22.9	20.5	24.9	7.2	6.5	8.0

자료: Statista Consumer Insights, 「Prevalence of health conditions in Sweden」, 2024

- 2023년 스웨덴에서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진 비율은 86.0%, 비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진 비율은 28.2%로 장애인의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기준으로 16~24세 연령대에서 장애인의 만성질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5배 높게 나타난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약 1.9배 높게 나타나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이 비장애인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
- 2014년에 비해 2019년 모든 질환의 만성질환 출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

〈표 17-2-3〉 스웨덴 장애인의 우울감 수준 - 성별, 장애유무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심한 우울증상	중간정도 우울증상	가벼운 우울증상	우울증상 없음
2014	장애인	중증	전체	26.7	42.3	15.6	15.4
			남	24.4	39.7	15.3	20.6
			여	28.2	44.1	15.8	11.9
		경증	전체	6.5	14.3	7.7	71.5
			남	5.6	13.4	7.9	73.1
			여	7.3	14.9	7.6	70.2
	비장애인		전체	1.2	4.4	3.2	91.2
			남	0.6	3.6	2.9	92.9
			여	1.9	5.4	3.6	89.1
2019	장애인	중증	전체	26.8	39.7	12.9	20.6
			남	23.9	35.8	11.9	28.4
			여	29.7	43.6	13.9	12.8
		경증	전체	9.7	17.8	8.1	64.4
			남	8.9	17.2	8.2	65.7
			여	10.3	18.3	8.0	63.4
	비장애인		전체	2.1	5.4	3.3	89.2
			남	1.6	5.1	3.5	89.8
			여	2.6	5.7	3.0	88.7

주: 1) 1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장애정도에 따른 우울증 정도를 조사한 결과임
2) European Health Interview Survey(EHIS) 3차 조사에서 다음의 기준으로 우울증상의 정도를 구분함
심한 우울증상: 측정문항(MHA1~MH1H) 중 5개 이상의 항목이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도 우울증상: 측정문항(MHA1~MH1H) 중 2~4개의 항목이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벼운 우울증상: 측정문항(MHA1~MH1H) 중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이 1개 이하 포함된 경우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ehis_mh1d / 검색일: 2024-08-14)

- 2019년 기준으로 스웨덴 장애인의 우울증 정도를 살펴보면 '우울증상 없음'의 비율은 중증장애인이 20.6%, 경증장애인이 64.4% 인 반면, '우울증상이 있음(가벼운 우울증상, 중간정도 우울증상, 심한 우울증상)'의 비율은 중증장애인이 79.4%, 경증장애인은 35.6%임
  - 장애유무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우울증상이 있음' 비율은 경증과 중증 모두 비장애인(10.8%)에 비해 높음
  - 성별로 살펴보면, '우울증상이 있음'을 응답한 중증장애인 여성(87.2%)은 남성(71.6%)보다 15.6% 높았으며, 경증장애인 여성(36.6%)도 남성(34.3%)보다 2.3% 더 높음

3) 고용

〈표 17-3-1〉 스웨덴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 장애유무별, 성별

(단위: %)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2023	총		61.7	63.2	62.4	83.4	89.5	88.0
	기능장애	근로능력저하있음	55.0	55.3	55.2			
		근로능력저하없음	86.4	81.8	83.9			
2022	총		59.7	65.6	62.5	86.4	89.1	87.8
	기능장애	근로능력저하있음	51.2	59.0	54.7			
		근로능력저하없음	87.5	81.6	84.3			

주: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수/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2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3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3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4

〈표 17-3-2〉 스웨덴 장애인의 취업률 – 장애유무별, 성별

(단위: %)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2023	총		52.0	52.3	52.2	79.4	83.2	81.4
	기능장애	근로능력저하있음	44.5	45.1	44.8			
		근로능력저하없음	80.0	70.5	74.8			
2022	총		48.4	55.4	51.7	79.1	82.8	81.0
	기능장애	근로능력저하있음	39.9	48.7	43.8			
		근로능력저하없음	75.5	70.8	73.0			

주: 취업률 = (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자료: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2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3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3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4

〈표 17-3-3〉 스웨덴 장애인의 실업률 – 장애유무별, 성별

(단위: %)

연도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2023	총		15.7	17.2	16.4	8.0	7.0	7.5
	기능장애	근로능력저하있음	19.1	18.5	18.8			
		근로능력저하없음	7.5	13.8	10.8			
2022	총		18.9	15.6	17.3	8.3	7.1	7.7
	기능장애	근로능력저하있음	22	17.4	19.8			
		근로능력저하없음	13.7	13.3	13.5			

주: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자료: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2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3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3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4

- 2023년 기준 스웨덴의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장애인구비율은 62.4%로, 전체인구 88%보다 낮음
  - 근로능력의 저하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8%이고 근로능력의 저하가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83.9%임. 이는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88.0%)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
- 스웨덴의 장애인 취업률은 52.2%로, 전체인구 81.4%보다 낮음
  - 근로능력의 저하가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 여성의 취업률은 80.0%로, 비장애인 여성의 취업률(79.4%)과 차이가 적음 이는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88.0%)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
- 스웨덴의 장애인 실업률은 16.4%로, 전체인구 7.5%보다 약 2.2% 높음

〈표 17-3-4〉 근로능력저하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 후 지원을 받은 비율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총		82.6	83.6	83.1
연령별	16-29세	-	-	69.3
	30-49세	81.1	81.8	81.5
	50-64세	87.6	90.7	88.9
교육수준별	고졸이하	-	-	84.6
	고졸	83.5	84.2	83.8
	고등교육	78.3	86.8	81.0

자료: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3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4

〈표 17-3-5〉 근로능력저하 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별 비율

(단위: %)

	여성	남성	전체
근무시간 조정	46.2	36.2	41.8
업무속도 조정	51.0	50.1	50.6
맞춤형 작업제공	40.4	44.3	42.2
맞춤형 보조장치	26.8	23.2	25.2
건물/공간의 개조	14.7	10.8	13.0
보조인 지정	9.9	10.3	10.1
기타	15.7	10.9	13.6

자료: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3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4

- 2023년 스웨덴의 작업능력 저하 장애인 근로자의 83.1%가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6-29세에서는 69.3%, 30-49세에서는 81.5%, 50-64세에서는 88.9%가 지원을 받고있음
  -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하 84.6%, 고졸 83.8%, 고등교육 이수자 81.0%가 지원을 받고 있음
- 작업능력 저하 장애인 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업무속도 조정(50.6%), 맞춤형 작업 제공(42.2%), 근무시간 조정(41.8%) 등의 순으로 응답함

〈표 17-3-6〉 스웨덴 기관 형태별 장애인 취업 현황 – 기업형태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연도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민간부문
2023	비장애인	전체		6.2	16.6	5.2	70.7
	장애인	전체		4.0	20.8	4.6	69.9
		성별	여성	4.0	29.3	6.2	59.8
			남성	3.0	12.3	1.5	82.6
		기능장애	근로능력저하있음	3.6	21.8	4.1	69.8
			근로능력저하없음	4.8	19.5	5.5	69.6
2022	비장애인	전체		6.3	15.6	5	71.8
	장애인	전체		4.1	19.2	5.5	70.0
		성별	여성	4.4	29.4	8.1	57.9
			남성	3.7	9.3	3.0	81.8
		기능장애	근로능력저하있음	2.9	17.9	6.0	72.3
			근로능력저하없음	6.1	20.6	4.8	67.7

자료: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2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3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3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4

〈표 17-3-7〉 스웨덴 장애인 취업자 고용형태 – 장애유무별, 성별

(단위: %)

	구분			정규직	기간제
2023	비장애인	전체		87.0	13.0
	장애인	전체		80.6	19.4
		성별	여성	79.7	20.3
			남성	81.6	18.4
		기능장애	근로능력저하있음	79.7	20.3
			근로능력저하없음	82.4	17.6
2022	비장애인	전체		85.4	14.6
	장애인	전체		79.9	20.1
		성별	여성	79.2	20.8
			남성	80.5	19.5
		기능장애	근로능력저하있음	80.7	19.3
			근로능력저하없음	80.6	19.4

자료: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2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3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3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4

- 2023년 기업 형태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부문에 취업한 장애인의 비율(69.9%)이 가장 높았고, 지방에서 일하는 비율(4.6%)은 가장 낮았음
  - 2023년 기준으로 민간부문에서 남성 장애인(82.6%)이 여성 장애인(59.8%)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반면, 지방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 장애인(29.3%)의 비율이 남성 장애인(12.3%)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2023년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장애인 중 정규직(80.6%)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비장애인 중 정규직(87.0%) 비율보다 약 7% 낮게 나타남

4) 복지

〈표 17-4-1〉 스웨덴 장애인수당 수령자 수_성별, 연도별

(단위: 명)

연도	장애수당 수령자의 수		
	전체	여	남
2011	61,390	33,027	28,363
2012	61,728	33,157	28,571
2013	62,846	33,592	29,254
2014	63,626	34,021	29,605
2015	64,062	34,251	29,811
2016	64,277	34,346	29,931
2017	63,990	34,129	29,861
2018	61,904	32,955	28,949
2019	58,056	31,002	27,054
2020	53,292	28,538	24,754
2021	47,553	25,622	21,931
2022	42,572	22,944	19,628

주: 1) 은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19-65세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 신청이 불가능함
2) 기존 장애수당을 대체하기 위해 장애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들어가는 장애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추가비용수당(Additional cost allowance for adults)이 2019년 1월 1일 도입되었으며, 기존 장애수당을 수령중인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함.

자료: Socialstyrelsen, 「Statistik om socialtjänstinsatser till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3」. 2024

〈표 17-4-2〉 스웨덴 장애아동 보육수당 수령자 수_성별, 연도별

(단위: 명)

연도	장애아동 보육수당 수령자의 수		
	전체	여성	남성
2011	43,828	37,619	6,209
2012	46,492	39,705	6,787
2013	49,011	41,713	7,298
2014	52,013	44,110	7,903
2015	55,496	46,834	8,662
2016	58,332	49,006	9,326
2017	59,956	50,097	9,859
2018	60,423	50,263	10,160
2019*	46,255	38,340	7,915
2020	24,836	21,183	3,653
2021	56,148	45,051	11,097
2022	71,043	55,199	15,844

주: 1) 장애아동보육수당(Childcare allowance)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보살핌 및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급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함
2) 기존 장애아동보육수당을 대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아동보호자수당(Child carer's allowance)이 도입됨

자료: Socialstyrelsen, 「Statistik om socialtjänstinsatser till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3」. 2024

- 스웨덴의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은 2018년까지 매년 6만 명대가 수급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 신청이 불가능하여, 매년 수급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2023년에는 총 42,572명이 수급함
- 스웨덴의 장애아동 보육 지원을 위해 기존에는 장애아동 보육수당(Childcare allowance)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장애아동 보호자수당(Child carer's allowance)이 도입됨. 2023년에는 총 71,043명이 장애아동 보호자 수당을 수급함
  - 장애아동 보호자수당(Child carer's allowance) 수급자는 여성(55,199명)이 남성(15,844명)에 비해 약 3.5배 많음

〈표 17-4-3〉 SoL 서비스 수급 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서비스 유형별

(단위: 명)

SoL 서비스	성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안알람 서비스	여	7,484	7,786	8,475	8,517	8,485	8,604	8,686
	남	6,376	6,679	7,182	7,248	7,355	7,439	7,613
일반 주택에서의 방문요양	여	11,620	11,514	11,531	11,107	10,881	11,142	10,915
	남	10,047	9,969	9,993	9,904	9,889	9,936	9,750
특별 주거서비스 제공	여	2,209	2,281	2,305	2,242	2,294	2,459	2,323
	남	3,276	3,379	3,406	3,345	3,452	3,652	3,529
음식제공 (도시락배달)	여	1,680	1,616	1,597	1,636	1,651	1,681	1,692
	남	2,433	2,314	2,204	2,327	2,285	2,211	2,207
보호자 동행	여	3,165	3,204	3,199	2,946	2,713	2,641	2,535
	남	2,428	2,456	2,395	2,263	2,136	2,041	1,941
단기 간병	여	1,147	1,117	1,106	1,043	1,032	1,049	1,055
	남	1,716	1,735	1,610	1,492	1,507	1,471	1,428
주간 활동	여	3,451	3,556	3,328	2,964	3,134	3,174	2,943
	남	3,536	3,591	3,479	3,079	3,247	3,284	3,154
임시 위탁 간호	여	410	482	391	396	373	353	320
	남	438	564	477	478	493	458	383
주거 지원	여	16,216	17,246	18,129	18,716	19,321	20,336	21,214
	남	15,138	15,924	16,810	17,513	18,160	19,049	19,608
연락담당자/가족	여	3,083	3,309	3,241	3,155	3,134	3,128	3,063
	남	2,613	2,631	2,618	2,662	2,650	2,628	2,573
기타 지원	여	1,286	1,291	1,383	1,349	1,472	1,488	1,502
	남	1,551	1,578	1,704	1,689	1,895	1,919	1,954
합	여	35,339	36,488	37,323	37,126	37,585	38,524	39,189
	남	33,871	34,842	35,738	35,895	36,627	37,446	37,783

주: 2023년 10월 31일 기준
자료: Socialstyrelsen, 「Statistik om socialtjänstinsatser till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3」. 2024

〈표 17-4-4〉 2023년 SoL 서비스 수급 장애인 수 - 연령별, 성별, 서비스 유형별

(단위: 명)

SoL 서비스	0-19세		20-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합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보안알람 서비스	10	13	58	43	280	231	568	414	1,556	1,143	4,145	3,783	6,617	5,627
일반 주택에서의 방문요양	39	53	142	135	602	565	996	772	1,974	1,417	4,204	4,162	7,957	7,104
특별 주거서비스 제공	12	14	54	103	190	379	217	390	372	560	1,004	1,390	1,849	2,836
음식제공 (도시락배달)	1	2	4	7	51	64	76	103	234	263	726	1,139	1,092	1,578
보호자 동행	36	48	48	33	125	116	229	157	543	308	1,054	877	2,035	1,539
단기 간병	19	30	22	43	33	67	29	57	43	75	162	216	308	488
주간 활동	7	6	86	81	329	489	418	482	661	580	833	837	2,334	2,475
임시 위탁 간호	79	139	10	3	10	5	15	10	19	19	69	91	202	267
주거 지원	179	156	1,316	1,193	3,987	4,338	3,643	3,339	3,591	2,904	3,150	2,904	15,866	14,834
연락담당자/가족	48	67	150	118	347	346	406	364	644	491	867	669	2,462	2,055
기타 지원	116	230	106	148	261	352	209	242	227	249	233	291	1,152	1,512
합	484	692	1,753	1,699	5,262	5,957	5,492	5,135	7,042	5,871	10,696	10,473	30,729	29,827

주: 2023년 10월 31일 기준
자료: Socialstyrelsen, 「Statistik om socialtjänstinsatser till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2023」. 2024

※ 사회서비스법 (The Social Service Act, 이하 SoL)
-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모토로 하여, 개인의 사회적 상황에 맞춰 개개인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또한,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환자를 위한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 전체 SoL 서비스를 수급한 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과 방문요양 서비스 수급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7-4-5〉 LSS 서비스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단위: 명)

	합계	남자	여성
2010	62,077	35,733	26,344
2011	63,387	36,675	26,712
2012	64,635	37,447	27,188
2013	65,884	38,334	27,550
2014	67,397	39,342	28,055
2015	69,540	40,773	28,767
2016	71,349	41,965	29,384
2017	72,910	42,945	29,965
2018	74,085	43,744	30,341
2019	75,083	44,348	30,735
2020	75,800	44,918	30,882
2021	76,966	45,713	31,253
2022	77,764	46,255	31,509
2023	79,125	46,965	32,160

출처 : Socialstyrelsen, 「Statistik om insatser enligt lagen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 2023」, 2024

〈표 17-4-6〉 2023년 LSS 서비스 수급자 상세 - 연령, 성별

(단위: 명)

		그룹1		그룹2		그룹3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연령별	0-19	5,438	10,539	2	5	183	223
	20-44	15,473	22,609	111	173	402	522
	45-64	6,192	7,539	377	724	1,124	1,309
	65-79	1,642	2,021	189	296	754	759
	80-	189	191	9	7	76	48
총 인원수		28,933	42,899	688	1,205	2,539	2,861
평균연령		35.2	32.5	56.9	56.6	54.6	52.9
총 서비스수		45,107	65,315	934	1,711	2,695	3,065
1인당 서비스수		1.56	1.52	1.36	1.42	1.06	1.07
LSS 적용 평균연수		13.7	13.1	11.3	11.8	12.1	11.8

주: LSS 서비스 수급자 그룹은 다음의 기준으로 분류함
그룹1 : 지적 장애와 자폐증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사람
그룹2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성인기의 뇌손상 이후 중대하고 지속적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
그룹3 : 노화에 의하지 않은, 영구적 신체/정신적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출처: Socialstyrelsen, 「Statistik om insatser enligt lagen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 2023」, 2024

〈표 17-4-7〉 2023년 LSS 서비스 유형별 이용 장애인 수 - 성별, 서비스 유형별

(단위: 명)

LSS 서비스 유형	그룹1		그룹2		그룹3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개인별 상담 및 맞춤 지원	875	1,369	94	149	1,102	1,112
동행 서비스	2,183	3,164	128	191	384	310
연락 담당자	7,248	8,780	107	179	245	286
재가서비스	1,106	2,760	7	9	43	37
단기 야외체류 지원	2,934	5,484	1	5	42	50
아동 단기 돌봄 서비스	1,784	3,127	1	1	20	29
위탁가정	10	25	0	0	0	1
아동 주거 서비스	292	487	0	1	5	4
성인 주거 서비스	11,088	15,768	250	459	796	1,154
기타 주거 지원	182	252	13	29	58	82
일상 활동 지원	17,412	24,111	333	688	0	0

주: 2023년 10월 31일 기준
출처: Socialstyrelsen, 「Statistik om insatser enligt lagen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 2023」, 2024

- 전체 LSS 서비스 수급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함
- 서비스 유형별 수급자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1그룹과 2그룹은 일상활동지원과 성인 주거서비스의 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 3그룹은 개인별 상담 및 맞춤지원 서비스 수급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 이하 LSS)

-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LSS)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조건을 보장받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또한, 심각하고 만성적인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완적으로 지원
- 자격을 갖춘 개인은 무료 수급권을 갖고, 주당 20시간 미만까지는 지자체, 이상인 경우 사회보험청에 서비스를 신청
- 지원 대상자
  - 지적 장애가 있고 자폐증이나 자폐증과 유사한 상태의 사람들
  - 성인으로서 뇌 손상 후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지적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
  -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결과가 아닌 다른 중증 및 회복 불가능한 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이나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 LSS의 서비스 지원형태
  - 상담 및 기타 개인 지원: 장애인과 관계자들의 상황에 맞추어 영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의 의학적·심리적·사회적·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코디네이터가 상담 및 지원을 시행
  - 활동지원: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제공 (예. 드레싱, 위생관리, 의사소통 등)
  - 동행 서비스: 여가 및 문화 활동 등 사회 활동을 함께하여 돕는 서비스
  - 연락 담당자: 친척이나 친구와의 접촉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원을 제공
  - 재가 서비스: 장애인의 부양자가 쉴 수 있도록 정규 및 비상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
  - 단기 야외체류 지원: 장애인의 환경변화를 유도하고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가정이나 캠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서비스
  - 아동 단기돌봄: 12세 이상의 장애 아동을 위한 방과 전/후 집 밖에서 지도, 감독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아동 주거서비스: 부모와 살 수 없는 아동 및 청소년이 다른 가정이나 그룹홈과 같은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성인 주거서비스: 성인을 위함 그룹홈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일상 활동지원 서비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또는 뇌손상 후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을 위하여 센터나 다른 작업장에서 수행하는 서비스

5) 인권

〈표 17-5-1〉 노동 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 -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2022)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기능장애	근로 능력 저하 있음	39.0	35.1	37.2
	근로 능력 저하 없음	23.2	16.5	19.6
연령별	16-29세	30.0	22.7	26.4
	30-49세	35.5	36.0	35.8
	50-64세	37.9	27.8	33.4
교육수준별	고졸이하	37.7	24.3	29.9
	고졸	37.1	35	36.1
	고등교육	30.9	25.1	28.8

출처 :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2

〈표 17-5-2〉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차별의 종류 - 성별(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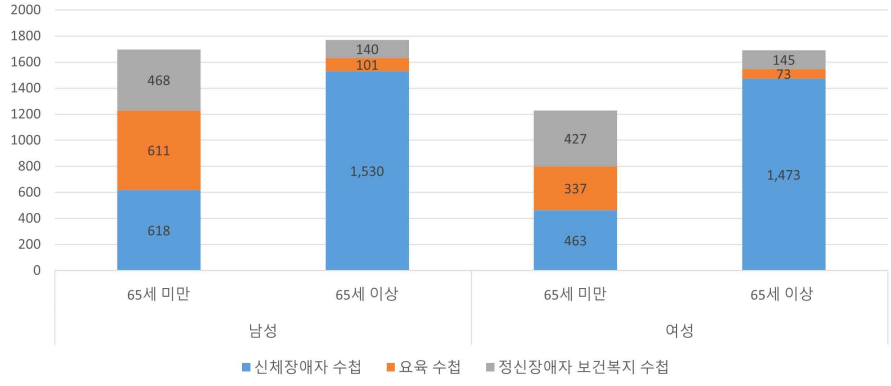
장애차별	여	남	전체
지원하지 않은 분야 배치	15.1	14.9	15.0
왕따 또는 괴롭힘	13.8	10.8	12.4
해고	11.0	9.3	10.2
승진 및 인사	7.8	7.6	7.7
기타	34.9	29.2	32.2

출처 : Statistics Sweden,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상황)」.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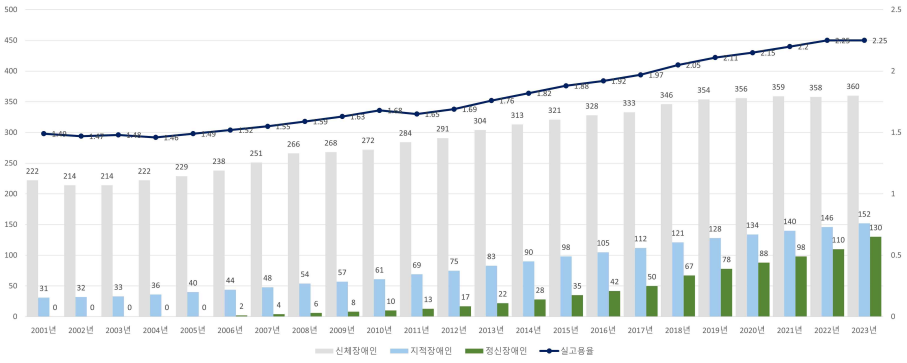
-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근로능력의 저하가 있는 경우 37.0%, 근로능력의 저하가 없는 경우 19.6%로 나타남
-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차별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지원하지 않은 분야에의 배치(15.0%)였으며, 그 다음으로 왕따 또는 괴롭힘(12.4%)과 해고(10.2%)가 많이 발생함

5. 일본

[그림 3-5-1] 일본: 장애수첩 소지자 수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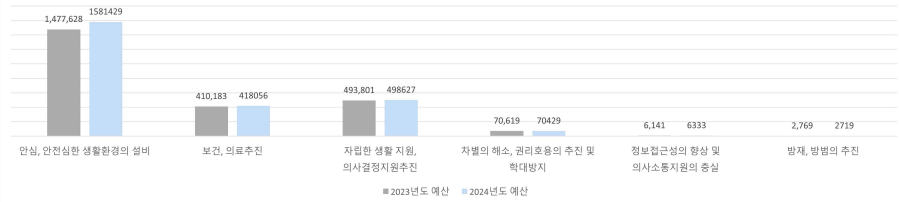


[그림 3-5-2] 일본: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상황 – 장애별, 연도별



- 장애수첩소지자 수로 살펴본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수는 신체장애인(신체장애자수첩) 4,159명, 지적장애(요육수첩) 1,140명, 정신장애인(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1,202명임 (연령 미상 포함)
- 민간기업(45.5명 이상 규모의 기업: 법정고용률 2.3%)에 고용 된 장애인의 수는 642178.0명으로 전년보다 28,220명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인은 360천명, 지적장애인은 152천명, 정신장애인은 130천명으로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증가폭이 컸음

[그림 3-5-3] 일본: 장애인 시책 관련 예산 개요(2024년)



- 2024년 기준 일본 장애인 시책 관련 예산 총 금액은 2,841,629백만엔으로 안심, 안전한 생활환경의 설비 예산이 전체 예산 중 55.7%를 차지하며, 자립한 생활 지원, 의사결정 지원 추진 예산 17.5%, 보건 의료 추진 예산 14.7% 순임

1) 장애인구

〈표 18-1-1〉 장애자수첩 소지자 수 - 성별, 장애유형별

(단위: 천 명)

구분	성	전체	장애자수첩 소지자	장애자수첩 정류 (복수회답가능)			수첩비소지 및 자립지원 등을 받는 자
				신체장애자 수첩	요육 수첩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	
65세 미만	전체	3,357	2,609	1,081	949	898	748
	남성	1,890	1,508	618	611	468	383
	여성	1,461	1,097	463	337	427	364
	미상	5	4	1	1	4	2
65세 이상 및 연령 미상	전체	5,411	3,491	3,078	191	304	1920
	남성	2,406	1,708	1,530	101	140	698
	여성	2,869	1,681	1,473	73	145	1188
	미상	136	103	75	16	19	33

자료: 후생노동성(2024).「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8-1-2〉 일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령별

(단위: 만 명)

구분		전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신체장애인	18세 미만	7.2	9.6	0.4
	18세 이상	419.4	394.7	7.0
	연령미상	9.3	11.6	-
	전체	436	415.9	7.3
지적장애인	18세 미만	22.5	74.6	1.1
	18세 이상	85.1	33.4	12.2
	연령미상	1.8	6.0	-
	전체	109.4	114.0	13.2
		전체	외래환자	입원환자
정신장애인	20세 미만	59.9	59.5	0.4
	20세 이상	554.6	526.3	28.4
	연령미상	0.3	0.3	0
	전체	614.8	586.1	28.8

주: 1) 정신장애인 수는 지적장애를 제외한 수에 뇌전증과 알츠하이머환자의 수를 더한 환자 수임
2) 신체장애인 수에는 고령자 시설 입소자는 포함하지 않음
3) 반올림이 된 관계로 각 항목의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이하 동일)

자료:「신체/지적장애인」
- 재가장애인 : 후생노동성(2016).「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 시설장애인 : 후생노동성(2018).「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정신장애인」
- 외래환자 : 후생노동성(2020).「환자조사」
- 입원환자 : 후생노동성(2020).「환자조사」.

〈표 18-1-3〉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단위: 천 명)

구분	1970년	1980년	1987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전체	1,408	1,977	2,506	2,803	3,015	3,327	3,576	3,864	4,287	4,159
0~17세	94	-	93	81	82	82	93	73	68	96
18세~64세	872	1,150	1,346	1,333	1,246	1,218	1,237	1,111	1,013	985
65세~	442	826	1,068	1,330	1,587	2,004	2,211	2,655	3,112	2,962
미상	-	-	-	58	99	22	35	25	93	116

주: 1980년에는 신체장애인 (0-17세)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자료: 1) 후생노동성(~2006).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2) 후생노동성(2011,2016,2022)「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8-1-4〉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천 명)

구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전체	2,803	3,015	3,327	3,576	3,864	4,287	4,159
시각장애	357	311	306	315	316	312	273
청각/언어장애	369	366	361	360	324	341	379
지체부자유	1,602	1,698	1,797	1,810	1,709	1,931	1,581
내부장애	476	639	863	1,091	930	1,241	1,365
미상	-	-	-	-	585	462	562

자료: 1) 후생노동성(~2006).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2) 후생노동성(2011,2016,2022)「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8-1-5〉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단위: 천 명)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1년	2016년	2021년
전체	297	329	419	622	962	1,140
0~17세	86	94	117	152	214	282
18세~64세	188	212	274	408	580	669
65세~	8	14	12	58	149	166
미상	16	14	12	4	18	24

자료: 1) 후생노동성(~2005).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2) 후생노동성(2011,2016,2022)「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8-1-6〉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장애정도별

(단위: 천 명)

구분	전체	중 증	그 외	미 상
2021년	1,140	420	587	134
2016년	962	373	555	34
2011년	622	242	303	77
2005년	419	165	204	50
2001년	329	138	151	40
1996년	297	128	159	10
1991년	284	124	146	14

주: 재가장애인에 한함
자료: 후생노동성(2016,2022).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8-1-7〉 일본 정신장애인 (외래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단위: 만 명)

구분	1992년	1995년	199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전체	223.9	267.5	290.0	287.8	361.1	389.1	586.1
0-24세	22.8	27.2	27.7	27.9	36.3	38.5	79.0
25세-34세	34.9	39.5	35.8	33.7	36.2	36.2	54.2
35-44세	34.2	46.2	50.0	50.4	58.5	58.2	78.3
45-54세	36.8	37.7	41.6	40.2	52.4	63.9	98.0
55-64세	33.8	39.7	43.3	37.8	45.5	47.7	71.4
65-74세	32.0	36.0	39.9	33.3	47.8	51.4	69.4
75세-	28.9	40.6	51.4	64.2	84.9	93.3	136.2
	0.5	0.5	0.6	1.0	1.0	0.7	0.3

주: 2014년도의 조사에서는 미야기(宮城)현의 일부와 후쿠시마(福島)현을 제외함
자료: 후생노동성(2020).「환자조사」

〈표 18-1-8〉 일본 정신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단위: 천 명)

구분	20세 미만	20세 이상
남성	383(63.9%)	2,259(40.7%)
여성	217(36.2%)	3,286(59.2%)
소계	599(100%)	5,546(100%)
	65세 미만	65세 이상
남성	1,898(48.6%)	744(33.2%)
여성	2,006(51.4%)	1,497(66.8%)
소계	3,905(100%)	2,240(100%)

자료: 후생노동성(2020).「환자조사」

- 2021년 기준, 재택 신체장애인 415만 9천명의 연령계층별 내역을 보면 18세 미만이 9만 6천명, 18세 이상 65세 미만은 98만 5천명, 65세 이상 296만 2천명으로 조사됨
- 일본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고령화율)은 조사 시점인 2021년 기준 28.9%에 달함(총무성,「인구추계」, 2021년 12월 기준 확정치)
- 재택 신체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 재택 신체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1970년에는 약 31.4% 정도였던 것이 2021년에는 약 71.2% 정도까지 상승함

- 2021년 기준, 재택 지적장애인 114만 명의 연령별 내역을 보면 18세 미만이 28만 2천명,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66만 9천명, 65세 이상이 16만 6천명임. 18세 미만의 비율이 신체장애인에 비해 높은 반면, 65세 이상의 비율은 낮은 점에 특징이 있음
- 재택 지적장애 인구는 2016년과 비교하여 약 18만 명 증가함. 지적장애는 보통 발달기에 나타나며, 이후에 새롭게 지적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체장애인의 경우에서처럼 고령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과거에 비해 지적장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요육수첩(지적장애아의 치료교육에 관한 기록장) 보유자의 증가가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됨

- 2020년 기준 외래진료 정신장애인은 총 586만 1천명으로, 이중 25세 미만은 79만 명, 25세 이상 65세 미만은 301만 9천명 65세 이상은 205만 6천명으로 조사됨
- 연령에 따른 정신장애인 성비를 보면 65세 미만에서는 남성 189만 8천명 대비 여성 200만 6천명이며, 65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74만 4천명 대비 여성 149만 7천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많음

- 2021년 기준, 신체장애자 수(장애인 수첩 소지자 수)를 성별로 보면 65세 미만에서는 남성 61만 8천명 대비 여성이 46만 3천명, 65세 이상에서는 남성 153만명 대비 여성이 147만 3천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많음
- 지적장애자 수(요육수첩 소지자 수)를 성별로 보면 65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61만 1천명 대비 여성이 33만 7천명, 65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10만 1천명 대비 여성이 7만 3천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많음
- 정신장애인의 남녀별 수에 대해 2022년에는 20세 미만에서는 남성 38만 3천명 대비 여성 21만 7천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많은 반면, 20세 이상에서는 남성 225만 9천명 대비 여성 328만 6천명으로 여성의 비중이 더 많음

2) 교육

〈표 18-2-1〉 특별지원교육관련 연도별 예산 개요

(단위: 백만 엔)

항목	연도별 예산금액				
	2019	2020	2021	2022	2023
특별교육지원의 충실 등	2,487	2,454	3,546	3,467	4,414
특별지원교육 취학장려비 부담 등	12,164	12,397	12,413	13,649	13,516
특별지원교육설비정비비 등 보조	3	4	6	6	7
의무교육비 등 국고보조금	111,624	113,071	113,229	-	-
공립학교 시설설비	-	-	-	-	-
사립고등학교 경상비 조성비 등 보조	7,776	7,820	8,000	8,428	8,735
독립행정법인, 국립특별지원교육총합연구소 운영비 등	1,083	1,103	1,101	1,084	1,058
합계	135,138	136,848	138,295	26,634	27,430

주: 특별지원교육관계예산으로 특정화할 수 없는 것은 「-」로 표시함
자료: 문부과학성(2023).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8-2-2〉 특별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학생 전체	1,745,909	6,246,268	3,277,892	3,037,863	14,307,932
특별지원학교	1,203 (0.07%)	49,580 (0.79%)	32,497 (0.99%)	65,355 (2.15%)	148,635 (1.04%)
특별지원학급	-	252,580 (4,04%)	100,858 (3.08%)	-	353,438 (2.47%)
합계	1,203 (0.07%)	302,160 (4.84%)	133,355 (4.07%)	65,355 (2.15%)	502,073 (3.51%)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학생 전체	1,807,191	6,310,070	3,298,707	3,088,795	14,504,763
통급지도를 받는 학생	-	154,559	27,649	1,671	183,879

자료: 문부과학성(2023). 「특별지원교육자료」

- 전체 학생 14,307,932명 중,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148,635명(전체의 1.04%), 특별지원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은 353,438명(전체의 2.47%), 통급에 의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은 183,879명(전체의 1.27%)임

일본의 특별지원교육

- 장애를 가진 아동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화하여 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개개인의 학습 욕구와 장애 상태를 반영하여, 특별지원학교 및 초·중학교의 특별지원학급이나 통합학급에서의 특별 교육과정, 소규모 학급, 특별히 배려된 교과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직원, 장애를 고려한 시설 및 설비 등을 활용하여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각장애인 : 양쪽 눈의 시력이 대략 0.3미만 또는 시력 이외의 시각기능장애가 발생한 사람들 중, 돋보기 등을 사용해도 일반 문자, 도형 등의 시각적 인지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
  - 청각장애인 : 양쪽 귀의 청력 수준이 대략 60데시벨 이상인 사람들 중 보청기 등을 사용해도 정상적인 말소리를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것
  - 지적장애인
    지적 발달의 지체가 있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자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
    지적 발달의 지체 정도가 위의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 중, 사회생활에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람
  - 지체부자유자
    보장구를 사용해도 도보, 필기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의 부자유
    지체부자유 상태가 위의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 중 상시 의학적 관찰지도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부자유
  - 병약자
    만성 호흡기 질환, 신장질환 및 신경질환, 악성 신생물, 기타 질환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의료 또는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질병 보유자
    신체 허약 상태가 계속해서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수준

〈표 18-2-3〉 특별지원학교의 운영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합계	
	교실 수	학생 수	교실 수	학생 수	교실 수	학생 수	교실 수	학생 수
지적장애	22,141	108,802	9,953	46,367	338	1,492	32,432	156,661
지체부자유	2,295	3,353	832	1,134	32	52	3,159	4,539
병약·신체허약	2,026	3,181	914	1,487	28	38	2,968	4,706
약시	401	461	153	172	4	5	558	638
난청	968	1,364	418	563	15	18	1,401	1,945
언어장애	538	1,113	143	202	6	16	687	1,331
자폐증·정서장애	24,898	132,061	10,257	49,887	360	1,670	35,515	183,618
총 합계	53,267	250,335	22,670	99,812	783	3,291	76,720	353,438
담임 교원 수(명)	56,660		24,858		839		82,357	
설치학교 수(개)	16,455		7,959		157		24,571	

주: 국립, 공립,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한 결과
자료: 문부과학성(2023).「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8-2-4〉 특별지원학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장애 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
1991년	960	70	107	193	193	97
1996년	975	71	107	511	191	95
2001년	996	71	107	525	198	95
2006년	1,006	71	104	543	197	91
2011년	1,049	86	118	673	314	138
2012년	1,059	87	120	681	324	139
2013년	1,080	85	120	706	334	143
2014년	1,096	85	118	725	340	145
2015년	1,114	83	118	745	345	145
2016년	1,125	84	120	761	349	149
2017년	1,135	82	116	776	350	149
2018년	1,141	81	117	781	350	152
2019년	1,146	82	118	786	352	151
2020년	1,149	86	119	790	352	158
2021년	1,160	84	119	801	354	154
2022년	1,171	82	118	814	357	153

주: 2006년 까지는 학교별로 집계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복수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는 각각의 장애유형별로 중복해서 집계 함
자료: 문부과학성(2023).「특별지원교육자료」

- 2022년 기준 초·중학교 중 특별지원학교가 설치되어있는 학교는 총 24,571개이고, 교실의 수는 총 76,720개소임. 또한 담임교원의 수는 82,357명, 학생 수는 총 353,438명임
- 특별지원학교는 1991년에 960개였지만, 2022년에는 1,171개로 해마다 증가해 왔음. 특히,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1991년에는 193곳 이었으나, 2022년에는 814개소로 가장 크게 증가함

〈표 18-2-5〉 특별지원학교 교직원 수

(단위: 명)

구분	국립	공립	사립	전체
전임교원수	1,515	84,986	315	86,816
겸임교원수	246	6,112	71	6,429
전임직원수	165	13,851	105	14,121

자료: 문부과학성(2023).「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8-2-6〉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 - 연도별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1998년	1,685	1,000	473	3,158
2003년	1,447	803	1,038	3,288
2008년	1,399	768	957	3,124
2013년	1,443	832	940	3,215
2017년	1,240	782	806	2,828
2018년	1,242	769	869	2,880
2019년	1,247	754	822	2,823
2020년	1,187	719	784	2,690
2021년	1,217	729	794	2,740
2022년	1,224	714	764	2,702

자료: 문부과학성(2023).「특별지원교육자료」

- 특별지원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전임교원 수는 86,816명, 겸임교원 수는 6,429명, 전임직원 수는 14,121명임
  -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더욱 요구되고는 가운데, 특별지원교사의 전문 면허증 보유 비율 향상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특별지원학교 교사면허증 등의 보유 비율을 높이기 교사의 채용, 교육, 배치시 면허증의 보유 여부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특별지원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도도부현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노력중임

-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방문교육 : 심신의 장애가 중증이거나 중복(복수의 중증장애)되어 특별지원학교 등에 다니며 교육을 받기 곤란한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사가 학생들이 거주하는 가정·병원·시설 등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함. 1969년 치바, 카나가와 현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1974년 전 도도부현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이 방문지도원의 경비를 보조하기 시작함

〈표 18-2-7〉 통급(通級) 지도를 받는 학생 수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장애 유형									
	언어장애	자폐증	정서장애	약시	난청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다동성 장애	지체부자유	병약/ 신체허약	합계
초등학교	46,389	29,306	19,376	196	1,725	25,927	31,490	105	45	154,559
중학교	774	6,743	4,908	39	362	7,994	6,741	50	38	27,649
고등학교	12	711	270	4	12	214	425	4	19	1,671
합계	47,175	36,760	24,554	239	2,099	34,135	38,656	159	102	183,879

주: 1) 자교통급(自校通級)·타교통급(他校通級)·순회교육(巡回指導) 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은 해당하는 모든 방법을 합산함
2) 위 표는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 전 사전과정의 합계를 나타냄
자료: 문부과학성(2023).「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8-2-8〉 통급(通級) 지도를 받는 학생 수의 추이

(단위: 명)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언어장애	27,718	29,860	33,606	38,754	39,691	43,630	47,175
자폐증	-	7,047	12,308	24,175	25,635	32,347	36,760
정서장애	4,184	3,589	8,613	16,072	19,155	21,837	24,554
약시	162	153	179	214	222	237	239
난청	1,581	1,915	2,044	2,122	2,207	1,956	2,099
학습장애	-	3,682	10,769	20,293	22,389	30,612	34,135
주의력결핍,다동성장애	-	3,406	10,324	21,300	24,709	33,827	38,656
지체부자유	1	14	26	134	124	159	159
병약/신체허약	6	19	13	31	53	92	102
합계	33,652	49,685	77,882	123,095	134,185	164,697	183,879

주: 1) 2006년부터 "주의력결핍다동성장애" 또는 "학습장애", 그리고 "자폐증"이 통급지도 대상으로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새롭게 규정
(2005년도 이전에는 주로 "정서장애"의 통급지도교실 로서 대응)
2) 본교통급, 타교통급, 순회지도 중 복수의 방법으로 지도를 받는 학생은 해당되는 모든 방법에 중복 합산함
3)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전 사전교육과정 포함
자료: 1) 문부과학성(2023).「특별지원교육자료」
2) 초중등교육국특별지원교육과(2020)「통급에 의한 지도실시 상황 조사결과에 대해서」

- 2003년에는 초,중,고를 모두 합쳐서 33,652명이었던 통급 지도를 받는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1년 기준 183,879명임

통급(通級)

- 초·중학교 일반학급에 재적중인 학생 중, 언어 장애, 자폐증, 정서장애, 약시, 난청, 학습장애(L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각 교과 등의 지도는 일반 학급에서 실시하고, 장애에 따른 학습 또는 생활의 어려움을 개선·극복하기 위한 특별지도는 특별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교육 형태
- 장애아동에게는 특별지원학교 및 초·중학교의 특별지원학급, 통급에 의한 지도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중 통급에 의한 지도내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초·중학교 등과 같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특별 지원 교육의 추진에 관한 조사 연구 협력자 회의에서 고등학교에서 통급에 의한 지도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 2016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된 후, 2018년부터 시행됨
- 또한 2018년 3월에 고등학교 표준 시행령을 개정해 공립 고등학교에서 통급에 의한 지도를 위한 가배(加配) 정수조치(학생 수에 따른 교원의 수 배정제도)를 가능하게 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은 학습지도요령 등에 따라 개별 지도 계획 또는 개별 교육지원 계획을 작성하는 등, 개별 아동 학생의 장애 상태에 맞춘 지도 내용 및 방법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함
- 자교통급(自校通級) :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통급 지도 교실이 설치되어 있어, 그 교실에서 지도를 받는 형태
  타교통급(他校通級) :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통급 지도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다른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통급 지도 교실에 방문하여 지도를 받는 형태
  순회교육(巡回指導) : 통급 지도 담당 교원이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학교를 순회하여) 지도를 실시하는 형태

〈표 18-2-9〉 특별지원학교 중등부 졸업 후의 상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교육훈련기관등		취직		사회복지 시설 입소/통소		기타	
시각장애	136	136	100.0	-	-	-	-	-	-	-	-
청각장애	340	340	100.0	-	-	-	-	-	-	-	-
지적장애	8,088	7,977	98.6	11	0.1	1	0.01	42	0.5	57	0.7
지체부자유	1,468	1,435	97.8	1	0.1	-	-	21	1.4	11	0.7
병약/신체허약	257	252	98.1	-	-	-	-	3	1.2	2	0.8
합계	10,289	10,140	98.6	12	0.1	1	0.01	66	0.6	70	0.7

주: 1) 표는 2022년 3월 졸업자의 통계결과임
2) 국립, 공립,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한 결과
3)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지원시설 등 갱생시설, 실업자 구직시설, 의료기관 등을 포함함
4) 중학교 특별지원학급 졸업자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통소자들을 포함함
5)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각 구분의 비율의 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음에 유의
자료: 문부과학성(2023).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8-2-10〉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교육훈련기관등		취직		사회복지 시설 입소/통소		기타	
시각장애	232	86	37.1	10	4.3	26	11.2	84	36.2	26	11.2
청각장애	442	168	38.0	34	7.7	132	29.9	96	21.7	12	2.7
지적장애	18,489	81	0.4	244	1.3	6,089	32.9	11,140	60.3	935	5.1
지체부자유	1,684	47	2.8	25	1.5	85	5.1	1,418	84.2	109	6.5
병약/신체허약	344	17	4.9	24	7.0	58	16.9	205	59.6	40	11.6
합계	21,191	399	1.9	337	1.6	6,390	30.1	12,943	61.1	1,122	5.3

주: 1) 국립, 공립,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한 결과
2) 표는 2022년 3월 졸업자의 통계결과임
3)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지원시설 등 갱생시설, 실업자 구직시설, 의료기관 등을 포함함
4) 중학교 특별지원학급 졸업자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통소자들을 포함함
5)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각 구분의 비율의 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음에 유의
자료: 문부과학성(2023).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8-2-11〉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 졸업자의 취직 직업별

(단위: 명)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신체허약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전문적/기술적	5	2	7	2	1	3	16	19	35	4	1	5	1	-	1	28	23	51
사 무	1	4	5	12	18	30	222	140	362	22	18	40	4	2	6	261	182	443
판 매	1	-	1	5	1	6	314	182	496	1	1	2	2	4	6	323	188	511
서비스	2	3	5	7	3	10	409	298	707	2	-	2	5	5	10	425	309	734
보 안	-	-	-	-	-	-	8	-	8	-	-	-	1	-	1	9	-	9
농 업	1	-	1	-	-	-	117	21	138	1	-	1	5	-	5	124	21	145
어 업	-	-	-	-	-	-	6	1	7	-	-	-	-	-	-	6	1	7
생산공정	1	-	1	39	21	60	870	208	1,078	1	1	2	4	3	7	915	233	1,148
운송/기계운전	-	-	-	-	-	-	41	10	51	1	-	1	-	-	-	42	10	52
건 설	-	-	-	1	-	1	60	-	60	-	-	-	-	-	-	61	-	61
운반/청소	2	-	2	7	4	11	777	202	979	4	1	5	4	1	5	794	208	1,002
기 타	-	-	-	-	4	4	103	62	165	2	1	3	-	1	1	105	68	173
합계	13	9	22	73	52	125	2,943	1,143	4,086	38	23	61	26	16	42	3,093	1,243	4,336

자료: 문부과학성(2023).「특별지원교육자료」

- 중등부 졸업생의 98.6%는 진학하고, 고등부 졸업생은 61.1%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30.1%가 취업을 하고 있음
  - 장애인이 평생 자립하여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과 직업적인 자립이 중요함. 그러나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자 중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비율이 약 61.1%에 달하는 반면, 취업자의 비율은 약 31%에 불과해 직업 자립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3) 고용

〈표 18-3-1〉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상황

(단위: 명, 개, %)

구분	고용 현황			기업 현황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기업 수	달성비율
2023년	27,523,661.0	642,178.0	2.33	54,239	108,202	50.1
2022년	27,281,606.5	613,958.0	2.25	52,007	107.691	48.3
2021년	27,156,780.5	597,786.0	2.20	50,306	106,924	47.0
2020년	26,866,997.0	578,292.0	2.15	49,956	102,698	48.6
2019년	26,585,858.0	560,608.5	2.11	48,898	101,889	48.0

자료 :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표 18-3-2〉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연도별

(단위: 천명, %)

구분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율
	전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2003년	247	214	33	-	1.48
2004년	258	222	36	-	1.46
2005년	269	229	40	-	1.49
2006년	284	238	44	2	1.52
2007년	303	251	48	4	1.55
2008년	326	266	54	6	1.59
2009년	333	268	57	8	1.63
2010년	343	272	61	10	1.68
2011년	366	284	69	13	1.65
2012년	383	291	75	17	1.69
2013년	409	304	83	22	1.76
2014년	431	313	90	28	1.82
2015년	454	321	98	35	1.88
2016년	475	328	105	42	1.92
2017년	495	333	112	50	1.97
2018년	534	346	121	67	2,05
2019년	560	354	128	78	2.11
2020년	578	356	134	88	2.15
2021년	598	359	140	98	2.20
2022년	614	358	146	110	2.25
2023년	642	360	152	130	2.25

주: 1) 민간기업 법정 의무고용률은 2021년 4월 1일부터 2.3%이며, 고용의무 대상은 45.5명 이상 규모의 기업임 (이전은 2.0%, 50명 이상)
2) 장애인 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전체를 말함
◦ 1993년~2005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중증 신체·지적장애인 단시간근로자
◦ 2006년~2010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0.5로 계산)
◦ 2011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중증 이외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 (0.5로 계산)
3) 각 연도 6월 1일 기준.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일본의 장애인 고용 제도

-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전체 직원 중 장애인(신체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의 비율을 "법정 고용률"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장애인고용촉진법 43조 제 1항)
- 직원을 45.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해야함

- 45.5명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에 고용 된 장애인의 수는 642,178.0이며, 실고용률은 2.33%로 전년보다 0.08%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인은 360천명, 지적장애인은 152천명, 정신장애인은 130천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증가폭이 컸음
- 실제 고용률은 사상 최대치 2.33%(전년 2.25%)를 기록하였으며, 법정고용률 달성 기업의 비율은 50.1%(전년 48.3%)임

-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고용된 장애인 수는 43.5~100명 미만의 규모 기업에서 70,302.5명, 100~300인 미만 규모 기업에서 122,195.0명, 300~500인 미만의 기업은 54,084.5명, 500~1000명 미만의 기업은 73,435.4명, 1,000명 이상 기업은 322,160.5명으로 모든 기업 규모의 장애인 고용수가 전년보다 증가함
- 민간기업 전체 실고용률(2.25%)과 비교해 500~1,000인 미만과 1,000인 이상 규모 기업의 실고용률이 높게 나타남
- 모든 규모의 민간기업에서 전체 법정고용률 달성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체 기업 평균 법정고용률인 50.1%와 비교해 100~300인 규모(53.3%), 500~1,000인 규모(52.4%), 1,000인 이상 규모(67.5%)기업의 법정고용률 달성이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8-3-3〉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기업규모별

(단위: 명, 개, %)

구분	기업 현황			고용 현황		
	기업 수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근로자 수	고용장애인 수	실고용률
규모 합계	108,202	54,239	50.1	3,611,353.0	642,178.0	2.33
43.5~100명 미만	55,929	26,372	47.2	3,611,353.0	70,302.5	1.95
100~300명 미만	36,926	19,684	53.3	5,685,618.5	122,195.0	2.15
300~500명 미만	7,025	3,295	46.9	2,481,809.5	54,084.5	2.18
500~1000명 미만	4,825	2,527	52.4	3,110,460.0	73,435.5	2.36
1000명이상	3,497	2,361	67.5	12,634,420.0	322,160.5	2.55

주: 1) 근로자 수는 고용의무 장애인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이며, 2010년 7월 1일 부터는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2) 202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4〉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산업별

(단위: 명, 개, %)

구분	기업 현황			고용 현황		
	기업 수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근로자 수	고용장애인 수	실고용율
산업 합계	108,202	54,239	50.1	27,523,661.0	642,178.0	2.33
농·임·어업	410	245	59.8	43,442.5	1,032.0	2.38
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	75	37	49.3	10,728.0	224.5	2.09
건설업	4,830	2,468	51.1	858,432.0	17,981.0	2.09
제조업	25,535	14,543	57.0	7,042,740.5	163,068.0	2.32
전가가스열 공급수도업	280	142	50.7	212,582.5	5,113.5	2.41
정보통신업	6,443	1,926	29.9	1,755,423.0	33,442.5	1.91
운수업, 우편업	7,521	4,242	56.4	1,593,487.0	38,143.0	2.39
도·소매업	16,414	6,654	40.5	4,332,651.5	95,588.5	2.21
금융·보험업	1,436	573	39.9	1,104,449.5	25,274.5	2.29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2,113	800	37.9	514,089.0	10,093.5	1.96
학술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	3,813	1,341	35.2	1,330,713.0	29,252.0	2.20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3,151	1,539	48.8	771,805.5	17,218.0	2.23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2,937	1,342	45.7	486,023.0	11,963.0	2.46
교육, 학습지원업	2,381	875	36.7	524,152.5	9,471.0	1.81
의료, 복지	18,688	11,612	62.1	3,173,138.5	97,951.5	3.09
복합서비스사업	883	413	46.8	288,991.0	6,446.5	2.23
서비스업	11,292	5,487	48.6	3,480,812.0	79,915.0	2.30

주: 2023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5〉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제조업별

(단위: 명, 개, %)

구분	기업 현황			고용 현황		
	기업 수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근로자 수	고용장애인 수	실고용율
제조업 합계	25,535	14,543	57.0	7,042,740.5	163,068.0	2.32
식료품, 담배	4,054	2,676	66.0	900,831.5	23,243.5	2.58
섬유, 의복	920	588	63.9	133,306.5	3,306.5	2.48
목재 가구	559	364	65.1	81,136.5	1,961.5	2.42
펄프, 종이, 인쇄	1,913	1,020	53.3	345,316.5	7,516.0	2.18
화학 공업	2,758	1,417	51.4	868,045.5	19,753.0	2.28
요업·토석	736	424	57.6	155,290.5	3,355.0	2.16
철강	534	308	57.7	169,861.5	3,897.0	2.29
비철금속	466	272	58.4	137,573.5	3,128.0	2.27
금속 제품	2,804	1,569	56.0	382,973.0	8,206.5	2.14
전기 기계	2,589	1,486	57.4	1,207,503.0	28,502.0	2.36
기타 기계	5,646	3,089	54.7	1,955,676.0	44,386.5	2.27
기타	2,556	1,330	52.0	705,226.5	15,812.5	2.24

주: 202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산업별로 봤을 때, 고용된 장애인의 수는 모든 산업에서 전년보다 증가함 (산업 전체 실고용율 2.25% → 2.33%)
  - 의료·복지(3.09%),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2.46%),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2.41%) 등이 법정 고용률(2.3%)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학습지원업(1.81%), 정보통신업(1.91%), 부동산업, 물품임대업(1.96%)등은 법정고용률을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제조업별로 봤을 때, 고용된 장애인의 수는 모든 산업에서 전년보다 증가함 (제조업 전체 실고용율 2.26% → 2.32%)
  - 식료품, 담배(2.58%), 섬유·의복(2.48%), 목재·가구(2.42%) 제조업의 경우 법정 고용률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속제품(2.14%), 요업·토석(2.16%), 펄프·종이·인쇄(2.18%) 제조업의 경우 법정 고용률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표 18-3-6〉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 기업규모별

(단위: 개, %)

구분		전체	43.5~100미만	100~300미만	300~500미만	500~1000미만	1000명 이상
미달성 기업 수		53,963	29,557	17,242	3,730	2,298	1,131
부족인원	0.5명 또는 1명	35,991	27,273	7,115	904	496	203
	1.5명 또는 2명	10,774	2,284	6,892	868	532	198
	2.5명 또는 3명	3,785	-	2,331	849	438	167
	3.5명 또는 4명	1,979	-	727	710	385	157
	4.5명 이상 9명 이하	1,279	-	177	396	417	289
	9.5명 이상 20명 이하	132	-	-	3	30	99
	20.5명 이상 50명 이하	21	-	-	-	-	21
	50.5명 이상	2	-	-	-	-	2
고용장애인이 0명인 기업 수		31,643	27,310	4,313	18	2	0

주: 1) 부족인원이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 추가로 더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를 말함
2) 202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7〉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업 수	전체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수				
			Ⓐ 중도신체장애인 중도지적장애인	Ⓑ 중도신체/지적 장애인 단시간	Ⓒ중도이외의 신체/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중도이외의 신체/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	ⒶⒷⒸⒹ 합계
특례자기업	598	47,872.5	11,227	226	24,067	202	46,848.0

주: 1) 근로자 수는 고용의무 장애인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이며, 2010년 7월 1일 부터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2) 장애인 수 산정에 있어 중증 신체·지적장애인은 2명, 중증 이외 신체·지적장애인 및 정신 장애인은 1명,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1명, 중증 이외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각각 산정함
3) 2023년 6월 1일 기준 현황.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2023년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은 총 53,963개사이며, 그 중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31,643개사로 전체 미달성 기업 중 58.6%를 차지함

- 2023년 특례 자회사는 598개사(전년대비 19개사 증가), 고용 장애인은 46,848.0명(전년대비 2,991명 증가)임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란?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특별한 배려를 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모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고용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례자회사 인증 요구사항

- 모회사는 해당 자회사의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등)을 지배 (자회사의 의결권 과반수를 가지는 것 등)
- 자회사의 요건
  ① 모회사와의 인적관계가 긴밀할 것(구체적으로는 모회사에서의 임원 파견 등)
  ② 고용 된 장애인이 5명 이상이며, 전체 직원을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함. 또한 고용된 장애인이 차지하는 중증신체장애인, 지적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③ 장애인의 고용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 전임 지도원의 배치 등)
  ④ 기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이 확실하게 달성 될 것으로 인정될 것

〈표 18-3-8〉 전년도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현황			고용 현황		
	기관 수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근로자 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율
국가기관	44	44	100	340,474.5	9,703.0	2.85
도도부현기관	164	153	93.3	363,592.0	10,409.0	2.86
시정촌기관	2,462	1,846	75.0	1,341,687.5	34,535.5	2.57
도도부현등 교육위원회	95	58	61.1	726284.5	16501.0	2.27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9〉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현황			고용 현황		
	기관 수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근로자 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율
전체	44	44	100	340,707.5	9,940.0	2.92
행정기관	38	38	100	311,259.0	9,121.5	2.92
입법기관	5	5	100	4,011.0	115.0	2.87
사법기관	1	1	100	25,437.5	703.5	2.77

주: 1) 국가기관의 법정 의무 고용률은 2.6%임
2) 202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10〉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9,940.0	5,877.5	311.5	3,751.0
행정기관	9,121.5	5,304.0	299.5	3,518.0
입법기관	115.0	64.0	9.0	42.0
사법기관	703.5	509.5	3.0	191.0

주: 1) 국가기관의 법정 의무 고용률은 2.6%임
2) 202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2023년 기준 일본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장애인 고용수와 실제 고용 비율은 모두 이전 조사보다 상승
  - 국가: 고용 장애인 수 9,940.0명(전년도 9,703.0명), 실고용률 2.92%(전년도 2.85%)
  - 도도부현: 고용 장애인 수 10,627.5명(전년도 10,409.0명), 실고용률 2.96%(전년도 2.86%)
  - 시정촌: 고용 장애인 수 35,611.5명(전년도 34,535.5명), 실고용률 2.63%(전년도 2.57%)
  - 교육위원회: 고용 장애인 수 16,999.0명(전년도 16,501.0명), 실고용률 2.34%(전년도 2.27%)

〈표 18-3-11〉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현황			고용 현황		
	기관 수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전체	163	152	93.3	359,503.0	10,627.5	2.96
도도부현 지사부국	47	47	100.0	279,375.0	8,267.5	2.96
기타 도도부현 기관	116	105	90.5	80,128.0	2,360.0	2.95

주: 1)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県)을 말하며, 도쿄도(東京都), 홋카이도(北海道),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와 토호쿠(東北) 등 43개의 현(県)으로 구성됨
2) 일본 도도부현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6%임
3) 202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12〉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10,627.5	8,426.0	262.5	1,939.0
도도부현 지사부국	8,267.5	6,542.5	211.0	1,514.0
기타 도도부현 기관	2,360.0	1,883.5	51.5	425.0

주: 1)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県)을 말하며, 도쿄도(東京都), 홋카이도(北海道),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와 토호쿠(東北) 등 43개의 현(県)으로 구성됨
2) 일본 도도부현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6%임
3) 202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13〉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현황			고용 현황		
	기업 수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시정촌 기관	2,460	1,910	77.6	1,353,753.5	35,611.5	2.63
	(2,462)	(1,846)	(75.0)	(1,341,687.5)	(34,535.5)	(2.57)

주: 1) 시정촌 :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시군구(市郡區)와 유사함
2) 일본 시정촌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6%임
3) 202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14〉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시정촌 기관	35,611.5	27,700.5	1,499.0	6,412.0
	(34,535.5)	(27,537.0)	(1,432.5)	(5,566.0)

주: 1) 시정촌 :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시군구(市郡區)와 유사함
2) 일본 시정촌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6%임
3) 202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도도부현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10627.5명이며, 실제 고용률은 2.96%임. 도도부현 지사부국은 47개 기관 전체가 고용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기타 도도부현 기관은 116개 기관 중 105개 기관이 고용 목표치를 달성함
- 시정촌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35,611.5명이며, 전년보다 1,076명 증가. 실제 고용률은 2.63%로 전년대비 0.06%p 상승함. 2,460개 기관 중 1,910개 기관이 달성하여 목표치의 77.6%를 달성함

〈표 18-3-15〉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현황			고용 현황		
	총 기업 수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총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전체	95	64	67.4	726,615.5	16,999.0	2.34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47	31	66.0	638,830.0	14,936.0	2.34
시정촌 교육위원회	48	33	68.8	87,785.5	2,063.0	2.35

주: 1)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법정 의무고용률은 2.5%임
2) 202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16〉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16,999.0	12,382.0	953.0	3,664.0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14,936.0	10,971.0	795.0	3,170.0
시정촌 교육위원회	2,063.0	1,411.0	158.0	494.0

주: 1)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법정 의무고용률은 2.5%임
2) 202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일본 교육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16,999명이며, 실제 고용률은 2.34%로 법정 의무고용률 2.5%에는 미치지 못함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고용율은 2.34%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2.35%)
-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47개 기관 중 31기관이,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48개 기관 중 33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 기준을 달성함

〈표 18-3-17〉 독립 행정법인등의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현황			고용 현황		
	총 기업 수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총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전체	369	308	83.5	467,326.5	12,879.5	2.76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 제외)	93	80	86.0	218,020.5	6,294.5	2.89
국립대학법인	86	77	89.5	149,826.0	4,096.5	2.73
지방 독립행정법인 등	190	151	79.5	99,480.0	2,488.5	2.50

주: 1)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등을 의미함
2)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6%임
3) 202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18〉 독립 행정법인등의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12,420.5	8,026.0	1,870.5	2,983.0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 제외)	6,294.5	4,348.5	441.0	1,505.0
국립대학법인	4,096.5	2,178.5	1,064.0	854.0
지방 독립행정법인 등	2,488.5	1,499.0	365.5	624.0

주: 1)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등을 의미함
2)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6%임
3) 202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독립행정법인(법정고용률 2.6%)등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12,879.5명으로 전년보다 459명 증가하였으며, 실제 고용률은 2.76%로 전년대비 0.04%p 상승함
- 독립행정법인(국립대학법인 등을 제외)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93개 기관 중 80개 기관이 달성하였으며, 국립대학법인은 86개 기관 중 72개 기관이, 지방독립행정법인 등은 190개 기관 중 151개 기관이 달성함

〈표 18-3-19〉 일본 "Hello Work"를 통한 장애인 취업소개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명, %)

구분	신규구직신청건수	전년대비	유효구직자수	전년대비	취직건수	전년대비	취업률	전년대비
2010년	132,734	5.4	169,116	7.1	52,931	17.0	39.9	3.9
2011년	148,358	11.8	182,535	7.9	59,367	12.2	40.0	0.1
2012년	161,941	9.2	198,755	8.9	68,321	15.1	42.2	2.2
2013년	169,522	4.7	207,956	4.6	77,883	14.0	45.9	3.7
2014년	179,222	5.7	218,913	5.3	84,602	8.6	47.2	1.3
2015년	187,198	4.5	231,066	5.6	90,191	6.6	48.2	1.0
2016년	191,853	2.5	240,744	4.2	93,229	3.4	48.6	0.4
2017년	202,143	5.4	255,612	6.2	97,814	4.9	48.4	△0.2
2018년	211,271	4.5	272,481	6.6	102,318	4.6	48.4	0.0
2019년	223,223	5.7	300,512	10.3	103,163	0.8	46.2	△2.2
2020년	211,923	△5.1	331,260	10.2	89,840	△12.9	42.4	△3.8
2021년	223,971	5.7	358,539	8.2	96,180	7.1	42.9	0.5
2022년	233,429	4.2	382,100	6.6	102,537	6.6	43.9	1.0
2023년	249,490	6.9	406,591	6.4	110,756	8.0	44.4	0.5

자료: 후생노동성(2023).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표 18-3-20〉 일본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건수 - 장애유형별

(단위: 건, 명, %)

구분	신규구직신청건수	전년대비(%)	유효구직자수	전년대비(%)	취직건수	전년대비(%)
전체	249,490	6.9	406,591	6.4	110,756	8.0
신체장애인	59,202	1.9	120,925	2.7	22,912	4.6
지적장애인	37,515	5.4	58,047	2.3	22,201	7.9
정신장애인	137,935	11.6	209,411	9.3	60,598	12.1
기타	14,838	△8.0	18,208	13.1	5,045	△15.6

자료: 후생노동성(2023).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249,490건으로 전년 대비 6.9% 성장하였으며, 취업 건수는 110,756건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함. 이 중 정신장애인의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137,935건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취업 건수는 60,598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함
- 취업률(취업 건수/신규 구직 신청 건수)은 44.4%로 전년 대비 0.5p 증가

※ Hello Work(공공직업안내소)

- 국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후생노동성)가 설치한 행정기관. 공식 명칭은 공공직업안정소이며, 주로 직업소개 사업을 운영함. 헬로우 워크의 기본적인 업무는 구직자와 기업의 고용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알선임. 고용관계 성립을 위해 구인 소개, 상담창구에서 상담, 자기분석 지원, 직업훈련에 관한 상담, 이력서작성 지원, 면접 대책, 추천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
- Hello Work에서는 이처럼 구인 정보 소개 뿐만 아니라 이직/전직에 관한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또한 Hello Work에서 취급하고 있는 채용 정보는 Hello Work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검색·열람이 가능하며, 여기에 게재된 구인 정보는 민간이 운영하는 취업사이트 등에 개제되는 경우도 있음. 이 외에도 고용 보험 제도의 창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함

〈표 18-3-21〉 장애인 해고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해고 수	장애종류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2008년	2,774	1,856	795	123
2009년	2,354	1,561	711	82
2010년	1,333	773	492	68
2011년	1,253	852	342	59
2012년	1,539	1,002	394	143
2013년	1,248	732	376	140
2014년	1,192	714	379	99
2015년	1,448	723	395	330
2016년	1,335	588	428	319
2017년	2,272	714	735	823
2018년	1,980	782	607	591
2019년	2,074	844	636	594
2020년	2,191	951	641	599
2021년	1,656	718	468	470
2022년	1,605	499	562	544
2023년	2,407	738	733	936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표 18-3-22〉 장애인 해고 수 - 해고 사유별

(단위: 명)

구분	해고 사유			합계
	사업 폐지	사업 축소	기타	
2023년 4월	64 (137)	81 (67)	19 (1)	164 (205)
2023년 5월	82 (67)	41 (33)	1 (11)	124 (111)
2023년 6월	39 (90)	72 (67)	5 (20)	116 (177)
2023년 7월	76 (57)	33 (63)	4 (4)	113 (124)
2023년 8월	91 (131)	51 (25)	4 (6)	146 (162)
2023년 9월	72 (49)	70 (14)	2 (8)	144 (71)
2023년 10월	56 (46)	24 (45)	7 (18)	87 (109)
2023년 11월	87 (55)	48 (19)	12 (1)	147 (75)
2023년 12월	150 (53)	50 (16)	8 (9)	208 (78)
2024년 1월	83 (61)	56 (33)	4 (8)	143 (102)
2024년 2월	99 (43)	88 (36)	5 (4)	192 (83)
2024년 3월	341 (231)	472 (67)	10 (10)	823 (308)
연도 합계	1,240 (1,020)	1,086 (485)	81 (100)	2,407 (1,605)

주: ( )내는 전년도 수치임
자료: 후생노동성(2023).「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장애인 해고 수는 2008년 2,7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그 후 2023년 2,40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 2023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Hello Work에 신고 된 장애인 해고는 총 2,407명이며, 해고사유 별로는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 1,240명, 사업 축소로 인한 해고 1,086명, 기타 사유 81명임 (2022년도는 1,605명)

4) 재정

〈표 18-4-1〉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개요 – 2023~2024년도

(단위: 백만)

구분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총 금액	2,695,100	2,841,629	146,529
분야별 시책 합계	2,695,015	2,841,535	146,520
[안심, 안전한 생활환경의 설비]	1,477,628	1,581,429	103,801
1. 주택의 확보 (어린이가정청·후생노동성·국토교통성)	1,477,307	1,581,142	103,835
2. 이동하기 쉬운 환경정비 (경찰청·국토교통성)	60	63	3
3. 접근성에 고려한 시설, 제품 등의 보급촉진 (법무성·국토교통성)	231	165	−66
4. 장애인을 배려한 마을 만들기의 종합적 추진 (경찰청·농림수산성·국토교통성·환경성)	30	59	29
[정보접근성의 향상 및 의사소통지원의 충실]	6,141	6,333	192
1. 정보통신에 있어서 정보접근성 향상 (총무성·후생노동성)	2,447	2,484	37
2. 정보제공의 충실 (총무성·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3,691	3,846	155
3. 의사소통 지원의 충실 (후생노동성)	–	–	–
4. 행정정보 접근성의 향상 (총무성)	3	3	0
[방재, 방범의 추진]	2,769	2,719	−50
1. 방재대책 추진 (내각부·어린이가정청·부흥청·후생노동성·국토교통성)	–	–	–
2.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한 재해로부터의 부흥의 추진 (부흥청·후생노동성)	1,835	1,756	−79
3. 방범대책 추진 (내각부·경찰청·어린이가정청·후생노동성)	914	953	39
4. 소비자 문제 방지 및 피해로부터의 구제 (소비자청·법무성)	20	10	−10
[차별의 해소, 권리옹호의 추진 및 학대방지]	70,619	70,429	−190
1. 권리 옹호의 추진, 학대 방지 (법무성·후생노동성)	51,251	51,081	−170
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 (내각부·경찰청·법무성·후생노동성)	19,368	19,348	−20
[자립 생활 지원, 의사 결정 지원의 추진]	478,224	498,627	20,403
1. 의사결정지원 추진 (후생노동성)	–	–	–
2. 상담 지원 체제 구축 (내각부·후생노동성)	10	11	1
3. 지역 이행 지원, 재택 서비스 등의 충실 (후생노동성)	9,858	9,818	−40
4.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의 충실 (어린이가정청·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467,169	487,612	20,443
5. 장애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등 (후생노동성)	1,187	1,186	−1
6. 복지 용구 및 기타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기기의 보급 촉진·연구개발 및 신체장애인 보조견 육성 등 (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	–	–	–
7. 장애 복지 지원 인재의 육성·확보 (후생노동성)	–	–	–
[보건, 의료추진]	410,183	418,056	7,873
1. 정신 보건·의료의 적절한 제공 등 (법무부·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7,713	8,327	614
2. 보건·의료의 충실 등 (어린이가정청·후생노동성)	242,825	249,256	6,431
3. 보건 의료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 개발 등의 추진 (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	11,819	11,483	−336
4. 보건·의료 지원 인력의 육성·확보 (후생노동성)	40	40	0
5. 난치병에 대한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 (후생노동성)	147,786	148,950	1,164
6.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등의 예방·치료 (후생노동성)	–	–	–

구분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행정 배려의 충실]	696	686	-10
1. 사법 절차 등에 있어서의 배려 등 (경찰청·법무부·후생노동성)	696	686	-10
2. 선거 등에 있어서의 배려 등 (총무성)	-	-	-
3. 행정기관 등의 배려 및 장애인 이해의 촉진 등 (전 부처)	-	-	-
4. 국가 자격에 대한 배려 등 (전 부처)	-	-	-
[고용/취직, 경제적 자립의 지원]	219,748	231,739	11,991
1. 종합적인 취업 지원 (후생노동성)	23,597	24,108	511
2. 경제적 자립 지원 (전 부처)	190,939	202,225	11,286
3. 장애인 고용 촉진 (전 부처)	3,766	4,366	600
4. 장애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및 다양한 취업 기회의 확보 (총무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국토교통성)	1,446	1,040	-406
5. 일반취업이 곤란한 장애아에 대한 지원 (후생노동성)	-	-	-
[교육의 진흥]	27,772	30,078	2,327
1. 인클루시브 교육 시스템의 추진 (문부과학성)	27,145	27,935	790
2. 교육 환경의 정비 (문부과학성)	7	1,516	1,509
3. 고등 교육에서 장애 학생 지원의 추진 (문부과학성)	35	49	14
4. 평생을 통한 다양한 학습 활동의 충실 (문부과학성)	564	578	14
[문화예술활동/스포츠 등의 진흥]	1,198	1,376	178
1. 문화 예술 활동, 여가·휴양 활동의 충실을 위한 사회 환경의 정비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300	296	-4
2.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의 정비, 패럴림픽등 경쟁 스포츠에 관한 대책 추진 (문부과학성)	898	1,080	182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연계의 추진]	58	63	5
1. 국제 사회를 향한 정보 발신의 추진 등 (내각부·외무성)	58	63	5
2. 국제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추진 (내각부·외무성)	-	-	-
3. 정부 개발 원조를 통한 국제 협력의 추진 등 (외무성)	-	-	-
4. 장애인의 국제 교류 등의 추진 (내각부·외무성·후생노동성)	-	-	-
[시책의 원활한 추진]	85	94	9
1. 연계/협력의 확보 (내각부)	26	26	0
2. 이해촉진/홍보계발에 관련된 대처의 추진 (내각부·법무성·후생노동성·국토교통부)	59	68	9

주: 1) 표는 장애인 기본 계획 (제4차) 〈2018~ 2022년도〉의 분야별 시책 추진 체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
2) 표는 백만 엔 미만은 반올림해서 백만 단위로 나타내고 있음
3)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결산 금액 총계」 항목은 장애인 시책 관계의 금액을 특정 할 수 있는 시책/사업에 합계액임
4) 장애인 시책 관계의 금액을 특정 할 수없는 시책/사업은 '-'로 표기함
5) 각 분야별 시책 등에 관한 재계 분은 계상하고 있지 않음
자료: 내각부(2023). 「2023년 장애인백서」

5) 복지

〈표 18-5-1〉 장애가구를 위한 주택건설 - 공영주택,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

(단위: 호)

구분	공영주택건설호수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우대조치호수
2004년	132	2,157
2005년	128	1,282
2006년	107	1,663
2007년	66	686
2008년	70	537
2009년	102	674
2010년	97	387
2011년	83	144
2012년	36	213
2013년	20	103
2014년	59	67
2015년	54	183
2016년	49	36
2017년	31	32
2018년	46	244
2019년	11	43
2020년	77	227
2021년	26	27
2022년	51	84

주: 1)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우대조치 호수에는 고령자 또는 고령자포함가구등에 대한 우대조치 호수를 포함함
2) 우대조치는 당첨 확률을 일반보다 20배 높이는 것임
자료: 내각부(2023). 「2023년 장애인백서」

공공 임대 주택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 신설되는 모든 공영주택,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 개량주택 및 공사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심신의 특성에 맞춘 설비 설치를 고려하여 배리어프리를 표준 사양으로 하고 있음.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개축 혹은 개선을 통해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고 있음
-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공영주택 건설 시에는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에 따른 조성의 한도액을 특례적으로 상향 조정함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 한 주택 스톡 형성 추진

-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한 주택 스톡을 형성하기 위해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설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체 기능이 저하 된 경우에도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설계를 고려함.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증권화지원사업인 '플랫35S'는 배리어프리성이 우수한 주택에 대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음

〈표 18-5-2〉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단차의 해소

(단위: 개소, %)

구분	총 시설 수				이동 원활화 기준				총 시설 수에 대한 비율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철도역	3,460	3,348	3,251	3,580	3,237	3,135	3,090	3,288	93.6	93.6	95.0	91.8
버스터미널	44	42	36	41	41	39	34	39	93.2	92.9	94.4	95.1
여객선터미널	15	9	8	13	14	9	8	13	93.3	100.0	100.0	100.0
공항	42	27	16	38	39	27	16	33	92.9	100.0	100.0	86.8

주: 총 시설 수는 1일당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의 여객 시설 수
자료: 국토교통성(2023).「대중교통이용 등 이동 원활화실적보고서」

〈표 18-5-3〉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장애인용 화장실

(단위: 개소, %)

구분	총 시설 수				이동 원활화 기준				총 시설 수에 대한 비율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철도역	3,249	3,161	3,074	3,340	2,996	2,906	2,832	2,956	92.2	91.9	92.1	88.5
버스터미널	35	33	27	32	25	23	27	27	71.4	69.7	81.5	84.4
여객선터미널	13	9	8	13	11	8	8	13	84.6	88.9	100.0	100.0
공항	42	27	16	38	42	27	16	37	100.0	100.0	100.0	97.4

주: 총 시설 수는 1일당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의 여객 시설 수
자료: 국토교통성(2023).「대중교통이용 등 이동 원활화 실적 보고서」

〈표 18-5-4〉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단위: 개소, %)

구분		총 차량 수				이동 원활화기준을 따른 차량 수				차량 총수에 대한 비율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철도		52,150	52,535	52,645	52,648	29,699	27,545	40,027	39,287	56.9	53.8	76.0	74.6
버스	논 스텝 버스	44,282	45,496	46,226	48,025	30,117	29,779	29,489	29,373	68.0	65.5	63.8	61.2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버스	10,192	10,961	11,688	13,517	664	661	674	746	6.5	6.0	5.8	5.5
	공항버스	172	165	—	—	69	62	—	—	40.1	37.6	—	—
	대여버스	—	—	—	—	1,157	1,157	—	—	—	—	—	—
복지택시		—	—	175,425	—	45,311	42,622	29,657	—	—	—	16.9	—
여객선		659	666	668	686	370	366	356	332	56.1	55.0	53.3	48.4
비행기		602	620	641	667	602	620	639	661	100.0	100.0	99.7	99.1

자료: 국토교통성(2023).「대중교통이용 등 이동 원활화 실적 보고서」

〈표 18-5-5〉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등 설치 상황

(단위: 기)

구분	연도별 설치 수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고령자 등 감응 신호기	6,460	6,506	6,557	6,638	6,655	6,724	6,771
보행자 감응 신호기	1,199	1,173	1,221	1,261	1,308	1,331	1,346
시각 장애인용 부가 장치	21,023	20,838	20,621	20,301	20,013	19,680	19,483
음향식 보행자 유도 부가 장치	4,577	4,476	3,569	3,559	3,516	3,469	3,409
보행자 지원 장치	844	713	534	510	506	534	536

자료: 내각부(2023). 「2023년 장애인백서」

- 2023년도 장애인백서에 의하면, 고령자 감응 신호기 6,460기, 보행자 감응 신호기 1,199기, 시각 장애인용 부가 장치 21,023기, 음향식 보행자 유도 부가 장치 4,577기, 보행자 지원 장치 844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한 신호기 등의 설치

- 음향을 이용해서 신호 표시 상태를 알려주는 음향식신호등, 신호 표시판에 파란불이 켜지는 시간까지의 대기시간 및 파란불의 남은시간을 표시하는 경과시간 표시기능이 있는 보행자용 조명 장치, 보행자 등과 차량이 통행하는 시간을 분리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보/차 분리형 신호 등의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기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6) 정신건강

〈표 18-6-1〉 정신과병원의 상황 - 병원수, 병상수

(단위: 개소)

내용	병원수	허가병상수	신고 병상수				정신 병상수	휴상중
			계	야간개방	종일폐쇄	이외		
특별기능병원	76	3,183	3,017	848	2,007	162	98	1
지역의료지원병원	100	4,832	4,390	778	3,437	175	115	9
일반병원	340	64,459	62,722	13,775	45,666	3,281	1,229	24
정신 병상만을 보유하는 병원	1,029	236,193	230,672	47,565	172,827	10,280	4,353	77
합계	1,545	308,667	300,801	62,966	223,937	13,898	5,795	111
도도부현립 정신과병원등	136	17,483	15,681	1,938	13,041	702	393	27
지정병원	936	223,266	219,300	45,083	164,692	9,525	4,145	51
비지정병원	473	67,918	65,820	15,945	46,204	3,671	1,257	33
합계	1,545	308,667	300,801	62,966	223,937	13,898	5,795	111

자료: 후생노동성「정신 보건 복지 자료 (2022) 」

〈표 18-6-2〉 정신과 병원의 개황

(단위: 개소)

	병원수	병동수	병상수
특정 기능 병원	76	99	3,017
지역 의료 지원 병원	100	124	4,390
일반 병원	340	1,253	62,722
정신병상만 있는 병원	1,029	4,430	230,672
도도부 현립 정신과 병원 등	136	420	15,681
지정 병원	936	4,196	219,300
비지정 병원	473	1,290	65,820

자료: 후생노동성「정신 보건 복지 자료 (2022) 」

- 특정 기능 병원: 고도의 의료의 제공, 고도의 의료 기술의 개발 및 고도의 의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능력 등을 갖춘 병원으로서, 제2차 의료법 개정에 있어서 2005년부터 제도화
- 지역 의료 지원 병원: 의료 시설 기능의 체계화의 일환으로서 환자에게 친밀한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소개 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 의료 기기 등의 공동 이용 실시 등을 통해 , 제 1 선의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 의사 등을 지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지역 의료의 확보를 도모하는 병원으로서 적절한 구조 설비 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도도부현 지사가 개별적으로 승인
- 일반병원: 상기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병상 이외의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
- 정신병상만 있는 병원: 모든 병상이 정신병상인 의료기관
- 비해당: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
- 도도부 현립 정신과 병원 등: 정신 보건 복지법 제19조의 7 제2항에 근거하는, 나라, 도도부현 및 도도부현 이외의 지방 공공 단체가 설립한 지방 독립 행정법인이 설립 주체인 의료 기관(모든 병상이 조치 입원의 수입 가능 병상)
- 지정 병원: 정신 보건 복지법 제19조의 8에 근거하는 지정 병원(일부의 병상이 조치 입원의 수입 가능 병상)
- 비지정 병원: 조사표에서 비지정 병원 혹은 비해당이라고 회답한 시설

Ⅳ 지표설명

1. 국내통계 지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개요	-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인 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사함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와 '장애인 심층면접조사'로 나뉨 •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 : 가구조사, 장애판별조사 • 장애인 심층면접조사 :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출현율 ▪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한 것임 ▪ 3년 주기로 산출함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 조사항목으로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이 있음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 이상의 것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환경적 상호작용 등이 요구되는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 조사항목으로는 전화 사용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집안일, 빨래하기,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 본인 물건 관리하기 등이 있음 - 월평균 가구소득 ▪ 기본급, 상여금, 사업소득, 축산·어업·농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보험수령액, 연금, 증권수익, 임대료,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보조금 등 가구원 전원이 1개월간 버는 수입을 모두 합한 월평균 금액 ▪ 현금, 현물, 사적·공적 이전소득은 포함하며, 바우처 금액은 제외함 ▪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 월평균 가구지출 ▪ 식료품비(주부식비),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공과금, 내구재구입, 부채 및 이자 납부 등 가구원 전원이 한 달 쓰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 ▪ 저축, 사업용도,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은 제외 ▪ 연간 총 지출액만 아는 경우에는 연간 총 지출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 ▪ 조사항목으로는 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보호·간병비, 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기타 등이 있음 - 건강보험 가입 여부 ▪ 직장건강보험: 사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 ▪ 지역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 ▪ 의료급여 1종·2종: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로, 의료급여 1종·2종에 가입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일반수급가구: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 의료·교육·자활·이행급여 특례 • 의료: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가구원 개인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급여. 의료급여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1종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희귀 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질환자는 2종 의료급여가 지원됨 • 교육: 중고등학생 학비로 지출되는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함 • 자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급함 • 이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 창업에 성공하여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가구들 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 교육급여 지급 - 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
조사주기	- 1980년 이후 5년 마다 조사 - 1996년 12월 9일 지정통계로 지정 - 관련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 총 11차례 실시(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정보출처	- http://stat.mw.go.kr - http://www.kihasa.re.kr

○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 생활체육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함 -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 '장애인 생활체육 비실행 실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으로 나뉨
조사기관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생활체육 참여형태 ▪ 생활체육(운동) : 일상생활 가운데 각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가시간에 개인의 자발적인 참가의지에 의하여 주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함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목적, 집 안에서 운동하는 자

구분	최근 1년간 운동여부	운동 목적	운동 횟수	운동 시간	운동 장소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실시	재활치료 이외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실시	실행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분류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cst.go.kr - http://www.kosad.or.kr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조사개요

-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건강 관련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함
-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 건강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장애인 건강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건강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통계를 제시하고 보급하는게 주된 목적임
-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다빈도질환',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장애인 진료비', 그리고 '장애인 사망현황'으로 나뉨

조사기관

- 국립재활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이상지질혈증(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한 개인이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주의군은 한 개인이 2가지 이하 가지고 있는 상태임

구분	기준
복부 비만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이완기혈압 85mmHg 이상 또는 문진표상 '고혈압'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높은 혈당	공복 혈당 100mg/dL 이상 또는 문진표상 '당뇨병'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높은 중성지방혈증	혈관 내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150mg/dL 이상 또는 문진표상 '이상지질혈증'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HDL 콜레스테롤이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미만 또는 문진표상 '이상지질혈증'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수검률: 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일반건강검진 대상인원*100

▪ 실시범위 및 대상: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검진대상	실시주기
지역 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 ('17,'19) 홀수년도, ('16,'18,'20) 짝수년도	· 2년에 1회
직장 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년도 대상자	· 비사무직 1년 1회 · 사무직 2년 1회
직장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중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 ('17,'19) 홀수년도, ('16,'18,'20) 짝수년도	· 2년에 1회

▪ 주요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판정 기준

판정 결과	판정 기준
정상A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경계)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일반 질환의심	일반건강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고혈압·당뇨 질환의심 (확진검사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이 의심되어 검사 등이 필요한 자
유질환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

- 암검진 수검률

▪ 수검률: 암검진 수검인원/암검진 대상인원*100

▪ 실시범위, 대상, 실시주기, 검진항목

구분	검진대상	실시 주기	검진항목
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 ('17,'19) 홀수년도, ('16,'18,'20) 짝수년도	2년	· 위장조영검사 · 위내시경검사 · 조직검사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인 자 전체	1년	· 분변잠혈반응검사 · 대장이중조영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 조직검사
간암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만성 간질환자 등)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단, 전 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6개월 (연2회)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인 여성 중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 ('17,'19) 홀수년도, ('16,'18,'20) 짝수년도	2년	· 유방촬영(양측)
자궁 경부암	· 만 20세 이상인 여성 중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 ('17,'19) 홀수년도, ('16,'18,'20) 짝수년도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19년 8월부터 실시)	· 만 54-74세 홀수/짝수년도 출생자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17,'19) 홀수년도, ('16,'18,'20) 짝수년도 -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2년	· 저선량흉부CT

- 구강검진 수검률
  - 수검률: 구강검진 수검인원/구강검진 대상인원*100

- 장애인 의료인용 현황
  - 진료실 인원: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 수
  - 입내원일수: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를 통칭함
  -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입내원일수/진료실인원
  - 1회당 진료비: 총 진료비/입내원일수

- 장애인 진료비 현황
  -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
  - 본인부담금: 심사 결정 된 총 진료비 중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rc.go.kr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조사개요	- 다문화가족에 대한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등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조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내용은 크게 '가구 구성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만 9~24세 청소년 자녀'로 나뉨 • 가구 구성표 : 가구 구성, 가구 특성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상태, • 기타 일반사항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 상태, 기타 일반사항 • 만 9~24세 청소년 자녀 : 가족관계, 학교생활,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 외국 성장 자녀, 경제 • 활동 상태
조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조사주기	- 3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ogef.go.kr - http://www.kwdi.re.kr/

○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응하여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생성하여 정부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함 - 「주택법」 제5조 1항,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내용으로는 현 주택의 거주 특성, 주택가격/임대료, 주택대출금/주거비부담, 이사경험 및 주거만족도, 주택 가치관, 가구주가 된 이후의 주택 구입경험 및 소유현황, 향후 2년 내 이사계획 및 희망주택, 가구현황 등이 있음
조사기관	- 국토연구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주택 ▪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아래의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춤 •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 ▪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일반단독주택(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 다가구단독주택(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 •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그 외 :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주택), 오피스텔(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쪽방(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공식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주거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주거용도로 사용되나 건축 재료나 구조측면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기타(사람이 거주하나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 ▪ 점유형태 • 전세 : 전세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 •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해 가는 경우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 주거지원프로그램 ▪ 주거비 보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주거급여가 포함됨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모자가정, 등록장애인,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 입주 대상임 • 국민임대주택 :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며 30년간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등록장애인의 경우 20% 이내 우선 공급 대상임 • 장기전세주택 : 시중 전세가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주택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Shift가 대표적인 예임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의미로 정부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정부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 •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 현재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며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
조사주기	- 1년 주기(일반조사는 짝수해, 특수조사는 홀수해에 실시) - 특수조사 대상으로는 노인가구·장년가구·시설거주 노인, 장애인가구, 임대주택가구, 저소득가구가 있음 • 노인가구·장년가구·시설거주 노인 : 2007년 실시 • 장애인가구 : 2009년, 2015년, 2019년 실시 • 임대주택가구 : 2011년 실시 • 저소득가구 : 2013년 실시 • 신혼부부가구(패널) : 2014년, 2015년 • 주택이외의 거처: 2017년 실시
정보출처	- http://www.molit.go.kr - http://www.onnara.go.kr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조사개요	-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현황을 살펴보고, 기초자료를 생성하여 정부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교육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특수학교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진학률, 취업률 ▪ 진학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전공과, 전문대,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 •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 * 100 ▪ 취업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 수 대비 취업한 학생비율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oe.go.kr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조사개요	-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ohw.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 취업자 • 조사대상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함 •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일시휴직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 •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 실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적극적 구직활동 :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됨 - 종사상지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 ▪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년 이상, 고용계약 미설자 중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일정한 사업(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주나 또는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동일가구 내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무보수로 18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로,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 이상) 일한 사람 - 산업, 직업 ▪ 산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내용 ▪ 직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종사한 일의 기능별 종류 - 구직단념자 ▪ 통계청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함 ▪ EDI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돼서 +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지난 1년 내 구직경험 여부 기준 제외)를 의미함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s://edi.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고용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조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기업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의무사업주 단위. 한 개의 기업체는 다수 사업체(사업장)를 포괄할 수 있으며, 국내 여타 조사의 '사업체'를 단위로 하므로 비교 시 유의 ▪ 상시근로자 • 해당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고,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임금산정기초일이 월16일 이상일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산입) ▪ 장애인 고용기업체 • 현재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근무 중인 기업체 ▪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 현재 근무 중인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없는 기업체 ▪ 장애인고용의무기업체 •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기업체 ▪ 장애인 고용률 • 상시근로자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조사주기	- 2년 주기 / 2019년부터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s://edi.kead.or.kr

○ 중소기업청·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장애인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조사함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기업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뜻함(「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조사주기	- 2년 주기
정보출처	- www.smba.go.kr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조사개요	- 가구특성별 자산과 부채의 규모 등 가계의 재무건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변화, 지속기간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함
조사기관	-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로서 봉급, 임금과 상여금 ▪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차감한 금액 ▪ 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자본이득) 및 실물자산소득(임대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장애수당 등 ▪ 사적이전소득: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및 민간회사나 교회,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사적인 생활비 보조금 등 - 소비지출액 ▪ 식료품비: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를 포함한 비용임 ▪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 교육비: 보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 등 ▪ 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 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 서비스 등 ▪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차량구입비는 제외 ▪ 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기), 통신 서비스(일반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 기타 소비지출: 의류, 오락 문화,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등 - 비 소비지출액 ▪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을 의미함 ▪ 세금: 소득세 및 총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가구 간 이전지출: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 자녀 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 ▪ 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 이자비용: 금융기관, 직장,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빈곤갭: 빈곤선(중위소득 50%)과 빈곤층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며, 빈곤의 심화정도를 나타냄 ▪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가처분 소득: 경상소득 - 비 소비지출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kostat.go.kr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현황과 건물유형별 및 지역별 설치율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편의시설 종류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 또는 침실, 관람석 또는 열람석, 접수대 또는 작업대,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편의시설 설치율 ▪ 편의시설 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100
조사주기	- 5년 주기 - 총 5차례 실시(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정보출처	- http://www.mohw.go.kr - http://www.koddi.or.kr

○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조사개요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DB를 업데이트하고, 7대 도시 교통복지수준 및 이동편의지수 평가를 통해 각 도시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를 통하여 현재 실정에 맞는 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조사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저상버스, 특별 교통수단 ▪ 저상버스 :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기존 버스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 ▪ 특별 교통수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개인용무에 차량으로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드려 사회활동과 복지향상 및 재활하는데 기여하는 수단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eak.mltm.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조사개요	- 시계열적 조사 분석을 통해 디지털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디지털정보화 수준 및 세부지수 ▪ 디지털정보화수준(디지털정보격차지수)은 모바일 기반 유무선 융합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격차지수(종합)= 디지털정보접근지수(0.2)+디지털정보역량지수(0.4)+디지털정보활용지수(0.4) ▪ 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여부'로 측정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접근지수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컴퓨터 이용능력'과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으로 측정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역량지수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기기 이용능력(0.5)

	▪ 디지털정보활용지수는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로 측정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활용지수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ia.or.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실태조사」

조사개요	-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실태를 계량적으로 측정·평가·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 방향 도출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조사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 인식의 용이성 •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 제공,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자동 재생 금지, 콘텐츠 간 구분 ▪ 운영의 용이성 • 키보드 사용 보장, 초점 이동, 조작 가능, 응답 시간 조절, 정지 기능 제공,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반복 영역 건너뛰기, 제목 제공, 적절한 링크 텍스트 ▪ 이해의 용이성 • 기본 언어 표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콘텐츠 선형 구조, 표의 구성, 레이블 제공, 오류 정정 ▪ 견고성 마크업 오류 방비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ia.or.kr

○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조사개요	- 장애인 학대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학대예방, 피해자지원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0 제2호에 의거하여 실시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학대 유형(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언어적인 방법(폭언, 협박, 비하 등)이나 비언어적인 방법(무시, 비웃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이나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 ▪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놓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 ▪ 유기·방임: 유기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방임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ia.or.kr

○ 기타자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외)

조사개요	-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등록 현황 ▪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함 - 장애정도심사 ▪ 2007년 4월 중증장애 위탁업무 실시 → 2010년 1월 장애등급 심사제도 시행 및 확대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이란 ▪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 및 상시 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0%에서 2017년부터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제27조, 제28조의2. 시행 2017.1.1.) : 2017년 ~ 2018년: 3.2% → 2019년 이후: 3.4% ▪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2015년 ~ 2016년: 2.7% → 2017년 ~ 2018년: 2.9% → 2019년 이후: 3.1% - 장애인 고용 부담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장애인일자리사업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됨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생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를 말함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등급)와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산재보험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 임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임 ▪ 신청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 규모, 장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 -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임.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됨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급여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하여 행하여짐. 다만 다른 급여의 보호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정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음 - 장애인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임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함 - 장애수당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게 지원함 ▪ 가구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해체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특례를 적용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함 -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지원함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함 ▪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되며, 심의결과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을 선정함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의 상태, 가정환경 및 사회활동 정도,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됨. 급여는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구성됨(활동지원급여:1~15구간,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성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함 ▪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함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언어발달 지원 사업
  -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시각, 청각 등록장애인이거나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때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자녀를 지원함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를 선정함(소득별 차등지원)

- 장애아가족양육 지원 사업
  -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함
  -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1~3급 장애아동을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장애여성을 지원하고, 저소득 이거나 저학력장애인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권리의 보장을 돕는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음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함. 또한 부모 양육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을 제공함. 서비스 대상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함
  - 만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으로,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 서비스 대상은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임. 다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 및 기능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류 및 기능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 교육 · 직업 ·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 · 취미 · 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 ·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수어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 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 · 미술 · 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류 및 기능
  -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정신건강 관련 기관 종류 및 기능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생활지도 등 제공하는 기관
  - 정신요양시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제공하는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수립, 조정,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광역, 기초로 구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
  - 자살예방센터: 지역사회 내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제도
  -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 지원주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자체의 장, 장애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 지원내용: 신청대상 및 지원 구분에 따라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방법: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지급대상: 산재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유형 및 용도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 및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 관련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근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본인부담금 20%) ▪ 보급품목: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응급알림 e서비스 ▪ 응급알림 e서비스는 위험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이 화재 등의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주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임
조사주기	-
정보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제도별 사업안내서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2. 국외통계 지표

1) OECD

○ OECD(2010),「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조사개요	-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의 이해 도모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두 가지 정의 개념을 이용 • 정책적인 진행절차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자기보고식에 의해 보고한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빈곤위험률 ▪ 빈곤율 = 근로가능연령(20-64세)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내 장애인 비율임 ▪ OECD국가의 장애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위험율(=빈곤율)은 각 국가의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 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임 ▪ 가처분소득에는 사회적 소득이전으로서 공사적연금, 공공부조,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됨 ▪ OECD에서는 빈곤선 설정 시 중위소득 50%, 60%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조사주기	- vol 1 :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2006) - vol 2 : 호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2007) - vol 3 :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2008) - 종합보고서 발간(2010) - 부정기
정보출처	- http://www.oecd.org/els/disability

○ OECD(2014),「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정신질환 관련 정책 및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관련 질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별 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인구 10만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 지역사회 내(Community)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 정신건강 지출 ▪ 정신건강 체계 속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정신건강지출수준 ▪ 정신건강지출관련 구체적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세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 ▪ 이에 OECD에서는 ICD-10(5장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단 알츠하이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가능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련 지출을 소개하고 있음
조사주기	- 부정기
정보출처	- http://www.oecd.org/

○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건강 및 보건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 정신과 진료 병상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병상임. 일반병원의 정신과 병상과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병상을 포함함(OECD, 2013) -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조사주기	-
정보출처	- http://www.oecd.org/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EX)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로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Expenditure), 자발적 민간(Voluntary private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Public Social Expenditure)을 포함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반정부지출(중앙정부, 지방정부)과 사회보험급여, 공기업의 교통 및 할인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사회복자보건노동과 관련된 지출과 사회보험지출을 포함 - OECD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ALMP(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등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 관련 지출을 수집하고 있음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현금 + 현물급여) 비율 ▪ 9개 항목 중 장애인복지지출은 근로무능력 항목으로 현금급여로서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 현물급여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가 포함됨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장애, 산업재해, 질병)	현금급여	-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 산재보험(산재보험)(pensions: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 상병급여(산재보험)(paid sick leave: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 기타상병보조금(paid sick leave: 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 - 기타 현금급여
	현물급여	- 거주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residential care/home-help service) -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 - 기타 현물급여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비율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물급여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비율 |
| 조사주기 | - |
| 정보출처 | -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

○ EU-SILC(the 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조사개요	- EU 국가들의 소득, 사회적 배제 및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
조사기관	- Eurostat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출현율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을 의미) ※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 For at least the past sic months, to what extent have you been limited because of a health problem in activities people usually do? -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 졸업 인구 중 장애인 비율 ※ 학력수준은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조사주기	-
정보출처	-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

조사개요	- EU 국가들의 노동시장의 상황과 추세에 대한 정보 제공 - 15세 이상 근로가능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하는 목적을 가짐 - '장애 고용'조사는 2011년에 추가적으로 실시한 부가조사(ad-hoc module)임
조사기관	- Eurostat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정의 ▪ 기본적인 활동들의 어려움 중 하나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 기본적인 활동에는 보기(안경을 쓰고도 보는데 어려움), 듣기(보청기를 사용함에도 듣는데 어려움), 걷거나 계단 오르기, 앉거나 서기, 기억하고/집중하기, 의사소통(남의 말을 이해하고, 이해되어짐), 손을 내밀거나 뻗는 것, 구부리는 것, 물건을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잡고/쥐고/돌리는 것 등임 - 고용률 ▪ 장애인(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 -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 ▪ 장애인(15-64세 인구) 취업자 중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15-64세) 중 실업자 비율
조사주기	-
정보출처	-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2) EU

○ EU-SILC(the 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조사개요	- EU 국가들의 소득, 사회적 배제 및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
조사기관	- Eurostat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출현율 ▪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을 의미) ※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 For at least the past sic months, to what extent have you been limited because of a health problem in activities people usually do? - 만성질환자 비율 ▪ 지난 6개월 간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의 비율 - 주거박탈률 ▪ 주거 내 거주 인구가 많고, 편의시설이 열악한 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 - 주거비 과다부담률 ▪ 주거비 과다부담률은 전체 가구 중 주거비가 가처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함. 여기서 주거비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주거유지비,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을 포함함 - 교육 관련 지표 ▪ 학업중단율: 18-29세 인구 중 정규 교육과정을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그만 둔 비율 ▪ 고등교육 이수율: 30-39세 이구 중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비율 - 고용 관련 지표: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빈곤 관련 지표 ▪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사는 사람: 낮은 노동 강도는 지난 1년 동안 총 근로가능한 날 중 20% 미만만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는 가구 내 근로 가능한 가구원이 지난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이 이론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기간의 2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 ▪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사람: 사회적 이전 이후 소득이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60%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는 '경제적 긴장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물질적 박탈 항목 9개 중 최소 4개가 강제적으로 부족한 가구 비율을 나타냄 1. 대출금. 임대료. 공과금 등 체납 2. 1주일간 집을 떠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능력 3. 2일마다 고기. 닭고기. 생선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 4. 예기치 못한 재정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5. 가구는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살 수 없음 6. 가구는 컬러 TV를 살 여유가 없음 7. 가구는 세탁기를 살 여유가 없음 8. 가구는 차를 살 여유가 없음 9. 가정 내 적정한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조사주기	- 1년
정보출처	-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 People with disabilities(ANED) -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tables(ANED)

3) 독일

○ Stätistische Bundesamt(DESTATIS)

조사개요	- 독일의 정치, 행정, 경제 및 시민 등 객관적이고 질적인 가치가 있는 주요 통계적 정보들을 제공 및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 ;한 개인의 기능침해(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50 이상(GdB50이상)으로 중증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장애인(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2항) ▪ 장애인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침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침해가 사회적 관점과 환경에 근거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6개월 이상 사회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조사주기	- 매2년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Home/_inhalt.html

○ Die Gesundheitsberichterstattung des Bundes

조사개요	- 독일 인구의 건강상황과 보건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 제공 - 국민보건의 전제조건, 건강 상황, 건강행동과 건강의험요소, 건강문제와 질병, 보건 관리, 보건 및 건강지출, 비용 그리고 국민보건재정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Statistische Bundesamt: DESTATIS) - 로베르트 코흐연구소(Robert Koch-Institu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Statistische Bundesamt(DESTATIS)의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과 동일 - 사회부조(Sozialhilfe) 중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 편입급여는 장애인만을 위한 공적급여로서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임 ▪ 편입급여는 2018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급여자격이 확대됨
조사주기	- 온라인정보시스템: 수시 업그레이드 - 출판물(중점보고서, 논문, 간행물 등): 정기(매달) 또는 비정기
정보출처	- https://www.gbe-bund.de/gbe/

○ Statistische Veröffentlichungen der Kulturministerkonferenz

조사개요	- 독일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교육문화부장관협의체(Der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어 "Kultusministerkonferenz")
장애판별 기준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가 있는 학생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Sonderpädagogischer Förderbedarf)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란 개별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학습을 위한 지원(촉진)을 의미 ▪ 특수교육적 지원은 크게 '학습',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언어', '지적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청각', '시각',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복합적 지원(또는 분류 어려움)과 같은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촉진학교(예전의 특수학교)의 유형이 됨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통합교육비율 및 교육배치 비율 ▪ '장애학생비율'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비율을 의미 ▪ '특수학교재학비율'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비율을 의미 ▪ '일반학교재학비율'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일반학교에 통합하여 지원받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비율을 의미 ▪ '통합비율'이란 전체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수 중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을 의미 ▪ '특수교육적 지원내용'이란 특수교육적 요구를 지닌 아동의 교육적 지원 내용을 의미
조사주기	- 매년 (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Schulen) - 2년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allgemeinen Schulen ohne Förderschulen)
정보출처	- https://www.kmk.org/dokumentation-statistik/statistik/schulstatistik.html

○ BIH Jahesbericht-Hilfen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im Beruf

조사개요	- 중증장애인의 고용상황 - 중증장애인과 사업주에 대한 급여
조사기관	- 연방통합청(Integrationsamt)과 중앙부조사무소 (Hauptfuersorgestelle)의 연방노동연합체(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Integrationsämter und Hauptfürsorgestellen (BIH) e.V.)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 ▪ 여기에서 직업훈련생 및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장애인(GdB 30~50)도 포함되며 중증장애 여성은 더욱 특별히 고려됨. ▪ 직업 훈련생이나 견습생이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훈련받고 있다면 의무고용의 두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인정하며 또한 심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의무고용에서 최대 세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
조사주기	- 매년 발행 ▪ BIH Jahesbericht 2015/2016 (2016년 8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16/2017 (2017년 10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17/2018 (2018년 8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18/2019 (2019년 8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19/2020 (2020년 12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20/2021 (2021년 12월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bih.de/integrationsaemter/medien-und-publikationen/publikationen/jahresberichte/

○ ZB Info-Behinderung und Beruf

조사개요	- 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현황과 다양한 정보 제공
조사기관	- 연방통합청(Integrationsamt)과 중앙부조사무소 (Hauptfuersorgestelle)의 연방노동연합체(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Integrationsämter und Hauptfürsorgestellen (BIH) e.V.)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고용 관련 지출 ▪ 연방통합청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실행,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고용조정금 (고용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등을 의미 ▪ 동 지표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급여, 통합프로젝트 지원,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통합전문가들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회심리 상담을 위한 담당자들 급여, 제도적 지원, 기타급여를 포함함. ① 고용주에 대한 급여 : 근로 및 훈련자리 조성, 근로 및 훈련장소의 장애에 적합한 시설,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 직업훈련 수당과 장려금,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 ②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 ③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 공학적 근로지원, 근로현장으로의 이동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장애 적합한 주거획득 및 유지, 직업적 지식×기능의 유지 확장을 위한 방안참여 지원, 특별한 생활상황 지원, 근로보조인 비용지원, 지원고용 ④ 통합전문가들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회심리 상담을 위한 담당자들 급여 ⑤ 제도적 지원 ⑥ 기타 급여 ※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은 근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불능상황(병, 출산으로 인한)을 극복하고 고용 당사자들에게 근로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두는 경영관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됨 ※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는 직업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별, 경제적 비용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로 이때 명백하게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지원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임 ※ '통합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전환기적 지원으로 시설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준비생 등을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며 직업연수 및 직업중재 등이 속함 ※ 연방통합청 ▪ 중증장애인의 권리, 특히 노동생활 편입을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으로 주마다 조직화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유사한 기관 주된 기능으로는 크게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실행. ▪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고용조정금 (고용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등을 포함하며, 통합청 운영비용의 많은 부분은 기업들의 고용조정금을 통하여 운영됨
조사주기	- 매년 3~4회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bih.de/integrationsaemter/medien-und-publikationen/publikationen/zb-info/

○ Die Arbeitsmarktberichterstattung: Der Arbeitsmarkt in Deutschland-Die Arbeitsmarktsituation von schwerbehinderten Menschen

조사개요	-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시장의 현황 관찰 - 다양한 근로그룹(장애인, 노인, 여성, 외국인, 실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조사기관	- 연방노동에이젠트(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실업률 ▪ 고용상황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고용보험의무 사업장을 구하거나 노동에이전트에서 노동중개노력을 하거나 또는 실업자 등록을 하는 장애인(사회법전 제3권 제16조)
조사주기	- 20인 이상의 고용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 에이전트에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해 고지(사회법전 제9권 제80조 제2항) 과정에 따른 정보수집 - 매년 발행
정보출처	-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Navigation/Statistik/Arbeitsmarktberichte/Personengruppen/Personengruppen-Nav.html

○ 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Jahreszahlen)

조사개요	- 중증장애인의 노동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 제공
조사기관	- 연방노동에이젠트(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 - 중증장애인 실업 ▪ 고용상황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고용보험의무 사업장을 구하거나 노동에이전트에서 노동중개노력을 하거나 또는 실업자 등록을 하는 장애인(사회법전 제3권 제16조) - 노동정책 ▪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과 방안에 대한 분석
조사주기	- 매년 ▪ 20인 이상의 고용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 에이전트에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해 고지(사회법전 제9권 제 80조 제2항) 과정에 따른 정보수집
정보출처	-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DE/Navigation/Statistiken/Themen-im-Fokus/Menschen-mit-Behinderungen/Menschen-mit-Behinderungen-Nav.html

○ Bundesagentur fuer Arbeit (Statistik)-Arbeitsmarkt in Zahlen

조사개요	- 사회보장보험(의료보험, 연금보험, 돌봄보험, 실업보험) 현황 총괄
조사기관	- 연방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조정금 납부 수준 ▪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고용부담금'과 동일한 기능을 함 ※ 조정금 액수 ▪ 60인 이상의 근로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 중 실제 고용률에 따라서 115유로에서 290유로까지 다양하게 산정 ▪ 60인 미만의 근로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된 의무고용인원에 따라서 산정
조사주기	- (일반적) 고용통계: 매달 - 사회보장의무대상자 현황: 매 3개월 - 고용지속기간과 노동급여 현황: 매년
정보출처	-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DE/Navigation/Statistiken/Fachstatistiken/Beschaeftigung/Beschaeftigung-schwerbehinderter-Menschen/Beschaeftigung-schwerbehinderter-Menschen-Nav.html

○ 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조사개요	- 장애인 편입급여의 수급자와 지출상황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편입급여 ▪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중증장애 아동도 포함)에게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편입)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임. 즉 지속적인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고 또한 그러한 욕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때 제공하는 급여임 ▪ 편입급여는 2020년부터 '연방참여법(Bundesteilhabegesetz)의 계획에 따라서 사회부조에서 하나의 독립적 형태의 급여로 분리되어 18살 이상의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급여로 변환되었으며 통계 또한 '사회법전 9권에 따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nach dem SGB IX)'이란 항목으로 독립적으로 산출됨 ▪ 장애인 편입급여의 산정 • 편입급여의 지원금액은 중증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자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확정함 ▪ 편입급여제공형태 • 장애인 편입급여는 일반적으로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개인예산제의 형태로서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함
조사주기	-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2019년까지 매 2년(홀수년도)/2020년 이후 매년 - Die Gesundheitsberichterstattung des Bundes: 2020년 이후 매년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Soziales/Sozialhilfe/Eingliederungshilfe_Behinderte.html -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Soziales/Sozialhilfe/Tabellen/22161-eh-empf-laender-ilj-2021.html - https://www.gbe-bund.de/gbe/pkg_isgbe5.prc_menu_olap?p_uid=gast&p_aid=89738684&p_sprache=D&p_help=3&p_indnr=783&p_indsp=&p_ityp=H&p_fid=

○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Kinder und Jugendliche

조사개요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편입급여 상황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아동 및 청소년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편입급여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는 '청소년부조(사회법전 제8권)'의 틀 안에서 제공되는 사회부조의 한 형태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예: 독자성과 사회적 능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임 •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 급여 중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청(Jugendamt)이 담당기관임 ▪ 편입급여제공형태 • 외래 지원: 외래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촉진강좌, 치료 등을 지원 • 부분병동 지원: 유치원, 부분변동 시설 또는 특수교육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유형 • 돌봄지원인 지원: 예를 들면 아동의 적절한 주간돌봄인을 위한 지원 • 주야간 시설 및 기타 주거형태 지원: 예를 들면 생활시설의 지원
조사주기	- 매년 -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Erzieherische Hilfe,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junge Menschen, Hilfe für junge Volljährige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SiteGlobals/Forms/Suche/Servicesuche_Formular.html?documentType_=publication&templateQueryString=Eingliederungshilfe+f%C3%BCr+seelisch+behinderte+Kinder+und+Jugendliche

○ 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조사개요	- 독일의 의료기관을 위한 환자실태, 의료인력과 비의료인력, 병상수치, 그리고 의료기관형태에 다른 의료기계 등에 관한 통계 정보 제공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사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병원형태: 병원통계를 위한 병원형태는 일반적 병원과 기타 병원으로 구분함 ▪ 일반병원: 진료과에 입원병동(입원병상)을 가진 병원 ▪ 기타병원: • 전적으로 정신의학적 또는 정신요법적인 병상을 가진 병원 •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그리고 신경학적 병상을 가진 병원 •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그리고 노인성 치료 병상을 가진 병원 •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신경학적, 노인성 치료 병상을 가진 병원 • 순수한 주간 또는 야간병원
조사주기	- 매년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Gesundheit/Krankenhaeuser/Publikationen/

○ Reha-Info

조사개요	- 독일의 재활관련 공적기관들의 연합체로서 장애인 재활급여(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재활급여 지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
조사기관	- 각 재활담당기관
장애판별 기준	- 한 개인의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사람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급여는 사회법전 제9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의료적 재활: 장애를 극복 또는 완화하고, 장애의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급여 ▪ 근로에 참여: 장애인의 생업능력을 유지, 증진, 회복시키고,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 사회생활에 참여: 일상의 사회생활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타인에 의한 수발로부터 최대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 생계지원 및 보충적 급여: 재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급여 - 급여기관으로는 법정의료보험담당기관(연방보건부 소속), 연방노동에이전트, 법정사고보험담당기관, 법정연금보험담당기관. 전쟁희생자원호와 전쟁희생자복지, 사회부조기관(연방노동사회부), 아동·청소년 조력담당기관 (연방가족·고령자·여성·청년부 소속), 통합청(연방노동사회부 소속)으로 구분
조사주기	- 일년에 6회 온라인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bar-frankfurt.de/service/reha-info/

4) 스웨덴

○ Situationen på arbetsmarknaden för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조사개요	- 스웨덴의 장애인 노동 시장 상황 조사
조사기관	- 스웨덴 통계청 (Statistics Sweden)
주요 지표 및 내용	- 스웨덴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여 장애출연율, 노동능력 감소, 고용률, 실업률을 파악 - Eurostat에서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스웨덴과 EU 수치를 비교
조사주기	- 매년
정보출처	- Statistics Sweden (http://www.scb.se/en/) -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 Statistik om socialtjänstinsatser till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조사개요	- 스웨덴의 사회복지법(SoL)과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LSS)에 따른 장애인 수급 현황 조사
조사기관	- 스웨덴 국립보건복지위원회 (Socialstyrelsen)
주요 지표 및 내용	- 연도별, 성별 장애인수당(Disability allowance) 수령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아동 보육수당(Child carer's allowance) 수령자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SoL서비스 수급 장애인 수와 수급 서비스 유형 - 연도별, 성별, 연령별, 그룹별 LSS서비스 수급 장애인 수와 수급 서비스 유형
조사주기	- 2014년이후 매년 실시
정보출처	- https://www.socialstyrelsen.se/statistik-och-data/statistik/alla-statistikamnen/socialtjanstinsatser-till-personer-med-funktionsnedsattning/

5) 일본

○ 2016년 생활하기 어려움 등에 관한 조사(전국재택장애아・장애인 등 실태조사) 결과의 개요
- 平成28年 生活のしづらさなどに関する調査（全国在宅障害児·者等実態調査） 結果の概要

조사개요	- 장애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재택 장애 아동과 등 (난치병 등 환자와 지금까지의 법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함)의 생활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장애보건복지부 기획과
장애판별 기준	▪ 전국 약 2,400 센서스 조사구 ▪ 10에 거주하는 재택 장애 아동과 장애인등 (장애인 수첩 소지자) ▪ 2 의사로부터 난치병 진단 된 자, 장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활하고 괴로움이 있는 자 - 조사표 배포 수 12,601 명, 조사표 회수 수 7,179 명 (회수율 57.0 %), 유효 회답 수 6,175 명이었다. ▪ 1 돗토리현 구라요시시는 돗토리 현 중부 지진의 영향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2 장애인 수첩, 요육 수첩 또는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 3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으로부터 "안경 등을 사용해도 보이지 않는다" "소리와 목소리가 들리지 않다" "걷거나 계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기억하는 것과 집중하는 것이 곤란하다" 등의 답변이 있는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재택장애인 수첩소지자 (추정치)는 428.7 만명, 요육수첩소지자 (추정치)는 96.2 만명,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소지자 (추정치)는 84.1 만명으로 모두 지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증가 - 장애인 수첩 소지자 등의 추계치

총	593.2만명	2011年 511.2만명
障害者手帳所持者 장애인 수첩소지자	559.4만명	2011年 479.2만명
身体障害者手帳所持者신체장애인 수첩소시자	428.7만명	2011年 386.3만명
療育手帳所持者요육수첩 소지자	96.2만명	2011年 62.2만명
精神障害者保健福祉手帳所持者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소시자	84.1만명	2011年 56.8만명
障害者手帳非所持者で、自立支援給付等を受けている者 장애인수첩 비소지자중 자립지원혜택을 받은자	33.8만명	2011年 32.0만명

	-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 수첩 소지자중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5세 미만은 32.1 %, 65 세 이상은 19.8 %임
조사주기	- 2016.12.01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toukei/list/seikatsu_chousa_r04.html

○ 특별지원교육자료 - 特別支援教育資料 (2022년도)

조사개요	- 조사의 목적 ▪ 특별 지원 교육의 실시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클루시브 교육 시스템을 향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장애를 가진 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 발달 지연은 아니지만 발달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학생의 실태를 밝히고, 향후 시책의 본연의 자세 나 교육의 본연의 자세 검토의 기초 자료로 함
조사기관	- 문부과학성 초,중등국 특수교육과
주요 지표 및 내용	- 특별지원학교 수, 학교 설치 기준 학급 수 재적 유아, 아동 학생 수 및 교직원 수 - 국·공·사립 합계 - - 특별지원학교 지원 장애종별 학교 수, 설치 학급 기준 학급 수 및 재적 유아 아동 학생 수-국·공·사립 합계- - 특별지원학급 수, 특별지원학급 재적 아동 학생 수 담당 교원 수 및 특별 지원 학급 설치 학교 수 - 국·공·사립 - - 통급에 의한 지도를 받고 있는 아동 학생 수 담당 교원 수 및 통급 지도 설치 학교 수 - 공립 - -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아동 학생 수 - 특별지원학교 (학교 설치 기준) 장애 종별 중복 장애 학급 재적 비율 추이 - 국·공·사립 계 -
조사주기	- 매년 5월1일
정보출처	- http://www.mext.go.jp/a_menu/shotou/tokubetu/material/1406456.htm

○ 환자조사 - 患者調査

조사개요	- 이 조사는 병원 및 진료소 (이하 "의료 시설"이라한다)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입원·내원시의 상황과 환자 이름 등의 실태를 밝히고, 아울러 지역별 환자 수를 추정함으로써 의료 행정의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일본 후생 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 추정 환자 수: 조사당일, 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에서 진료 한 환자의 추정 수임 - 추정 퇴원 환자 수: 조사 대상 기간 중 (2014년 9월 1일 ~ 30일)에 병원, 일반 병원을 퇴원 한 환자의 추정 수임 - 퇴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 조사 대상 기간 중 (2014년 9월 1일 ~ 30 일)에 퇴원 한 환자의 입원 일수의 평균임 - 진료율: 추정 환자 수를 인구 10 만 대로 나타낸 숫자임 ▪ 진료율(인구 10 만 대) = 추정 환자 수 / 추계 인구 × 100,000 - 총 환자 수 (병상별 추계): 조사 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조사 일에는 의료 시설에서 진료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함)의 수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추정 한 것임 ▪ 총 환자 수 = 입원 환자 수 + 초진 외래 환자 수 + (기존 외래 환자 수 × 평균 진료 간격 × 조정 계수 (6/7)) - 병상의 종류 ▪ 정신 병상: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 ▪ 감염 병상:"감염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 114호)에 규정하는 일류 감염, 2 류 감염 (결핵을 제외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및 지정 감염 및 새로운 감염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 ▪ 결핵 병상: 결핵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 ▪ 요양 병상: 병원의 병상 (정신 병상 감염 병상, 결핵 병상을 제외함) 또는 일반 병원의 병상 중 주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 ▪ 일반 병상: 정신 병상 감염 병상, 결핵 병상, 요양 병상 이외의 병상을 말함
조사주기	- 3년마다 실시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toukei/list/10-20-kekka_gaiyou.html

○ 의료시설 (동태) 조사・병원보고의 개괄 - 医療施設（動態）調査・病院報告の概況

조사개요	- 이 조사는 전국의 의료 시설 (의료법에 규정 된 병원·진료소)의 분포 및 정비 실태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 시설의 진료 기능을 파악하고 의료 행정의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정책총괄관
주요 지표 및 내용	Ⅰ 의료 시설 조사 - 시설 수: 시설의 종류별로 본 시설 수, 개설자별로 본 시설 수, 병상의 규모별로 본 시설 수, 진료 과목별로 본 시설 수 - 병상 수: 병상의 종류별로 본 병상 수, 개설자별로 본 병상 수, 도도부현별로 본 인구 10만대의 병원 병상 수 Ⅱ 병원보고 ▪ 환자 수: 1일 평균 입원·신 입원·퇴원 환자 수, 병원의 1일 평균 외래 환자 수, 병원의 도도부현별로 본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 - 병상 이용률 - 평균 입원 일수: 병상의 종류별로 본 평균 입원 일수, 병원의 도도부현별로 본 평균 입원 일수 - 병원 종사자 수: 병원의 직종별로 본 종사자 수, 병원의 직종별로 본 100 병상 당 상근 환산 종사자 수, 병원의 도도부현별로 본 인구 10만대 상근 환산 의사 수
조사주기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iryosd/21/

○ 장애인백서 - 障碍者白書

조사개요	- 장애인 백서는 장애인 기본법 (1970 년 법률 제 84 호) 제 13 조에 따라 1994 년부터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장애인을 위해 강구한 시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임
조사기관	- 일본 내각부
	-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기타의 심신 기능의 장애가있어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영위하기에 현저하게 곤란한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제 1 장 : 장애인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 새로운 장애인 기본 계획 (제 4 차)의 책정 - - 제 2 장 :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반 조성 - 제 3 장 : 사회 참여 향한 자립 기반 조성 - 제 4 장 : 일상생활의 기반 만들기 - 제 5 장 : 살기 좋은 환경의 기반 조성 - 제 6 장 : 국제 활동
정보출처	- https://www8.cao.go.jp/shougai/whitepaper/index-w.html

○ 장애인고용상태 - 障害者雇用状況

조사개요	- 현재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고용 상황에 대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 등에 보고를 요청하여 집계 한 것
조사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민간 기업〉 (법정 고용률 2.0 %) - 고용 장애인 수, 실 고용률 모두 과거 최고를 갱신. ▪ 고용 장애인 수는 49 만 5,795.0 명, 전년 4.5 % (2 만 1,421.0 명) 증가 ▪ 실제 고용률 1.97 %, 전년 대비 0.05 포인트 상승 ▪ 법정 고용률 달성 기업의 비율은 50.0 % (전년 대비 1.2 % 포인트 상승) 〈공공 기관〉 (동 2.3 %,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는 2.2 %) ※ ()는 전년 값 - 고용 장애인 수 및 실제 고용 비율 모두 전년에 비해 높음 ▪ 국가 : 고용 장애인 수 7,593.0 명 (7,436.0 명), 실 고용률 2.50 % (2.45 %) ▪ 도시 : 고용 장애인 수 8,633.0 명 (8,474.0 명), 실 고용률 2.65 % (2.61 %) ▪ 시정촌 : 고용 장애인 수 2 만 6,412.0 명 (2 만 6,139.5 명), 실 고용률 2.44 % (2.43 %) ▪ 교육위원회 : 고용 장애인 수 1 만 4,644.0 명 (1 만 4,448.5 명), 실 고용률 2.22 % (2.18 %) 〈독립 행정법 인 등〉 (2.3 %) ※ ()는 전년 값 ▪ 고용 장애인 수 및 실제 고용 비율 모두 전년에 비해 높음 ▪ 고용 장애인 수 1 만 276.5 명 (9,927.0 명), 실 고용률 2.40 % (2.36 %)
조사주기	- 매년 6 월 1 일에 실시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stf/houdou/0000187661.html

○ 장애인의 취업소개 상태 등 - 障害者の職業紹介状況等

조사개요	- 장애인의 취업 상황을 정리 한 것.
조사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233,434건으로 전년 대비 4.2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취업 건수는 102,537건으로 전년 대비 6.6 %의 증가를 기록함 - 취업 건수 취업률 ▪ 신체장애인 21,914 건 37.7 % ▪ 지적장애인 20,573 건 57.8 % ▪ 정신장애인 54,074 건 43.8 % ▪ 기타장애인 5,976 건 37.0 % ▪ 합계 102,537 건 43.9 % - 산업별 취업 건수는 많은 순으로 "의료 복지" (35,566 건, 구성비 36.4 %), "제조업"(13,595개, 동 13.9 %), "도매, 소매업"

	(12,412 건, 동 12.7 %), "서비스업" (10,288 건, 동 10.5 %) 순임 -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헬로우 워크에 신고가 있던 장애인의 해고자 수는 2,272 명 이었다 (2016 년도는 1,335명)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stf/houdou/0000208340.html

○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 社会福祉施設等調査

조사개요	-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 재소자, 종사자의 상황 등을 파악하고, 사회 복지 행정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후생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 시설 수·정원 ▪ 시설의 종류별 시설 수를 보면, "보육 등"은 27,137 시설로 전년에 비해 872 시설, 3.3 % 증가. 또한 "유료 양로원 (서비스 고령자 용 주택 이외)"은 13,525 시설로 전년에 비해 955 시설, 7.6 %증가. 시설의 종류별로 정원을 보면, "보육 등"은 2,645,050 명으로 전년에 비해 87,917 명, 3.4 % 증가. 또한 "유료 양로원 (서비스 고령자 용 주택 이외)"은 518,507 명으로 전년에 비해 35,715 명, 7.4 % 증가 - 경영 주체 별 시설 수 ▪ 시설의 종류별로 경영 주체별 시설 수의 구성 비율을 보면, 기타 사회 복지 시설 등을 제외한 각 유형에서 "사회 복지 법인"의 비율이 가장 많아지고 있음. 또한 "유료 양로원 (서비스 고령자 용 주택 제외)는" 비영리법인 (회사)"가 82.6 %로 가장 많아짐 ▪ 사업소 수 ▪ 사업의 유형으로 사업소 수를 보면, "주택 개호 사업"이 23,074 사업소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131 사업소,0.6 % 증가함. 다음으로 많은 것은 "중도 방문 개호 사업"이 20,952 사업소이며, 전년에 비해 98업소 0.5 % 감소함. 또한 전년 증가률을 보면, "방과후 등 데이서비스 사업"이 20.4 %로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아동 발달 지원 사업"이 20.0 %임 - 경영 주체 별 사업소 수 ▪ 사업 유형별로 경영 주체 별 사업소 수의 구성 비율을 보면, 단기 입소 사업에서는 "사회 복지 법인"이 74.8 %로 가장 많으며, 주택 개호 사업, 중증 방문 개호 사업, 동행 원호 사업에서는 "영리 법인 (회사)"가 가장 많고, 각각 68.1 %, 69.2 %, 70.4 %임
조사주기	-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fukushi/17/index.html

○ 공공교통이동 등 원활화 실책보고 - 公共交通移動等円滑化実績報告

조사개요	-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23 조에 따라 공공교통기관 등은 국토교통장관에게 여객시설 및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등으로부터 제출 된 이동 등 원활화 실적 등 보고서의 집계 결과임
조사기관	- 일본 국도교통성 교통소비자행정/공공교통사고 피해자지원
주요 지표 및 내용	- 대중 교통의 배리어 프리 화의 진행 상황 - 여객 시설의 배리어 프리 화의 추이 - 차량 등의 배리어 프리 화의 추이
조사주기	- 매년 연도말
정보출처	- https://www.mlit.go.jp/sogoseisaku/barrierfree/sosei_barrierfree_mn_000003.html



2024 장애통계연보

발 행 일 : 2024년 9월
발 행 인 : 이경혜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0463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행복드림여성장애인기업

ISSN 3022-0645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